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26. 5.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목 차

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 1

1. 구성경위 ····· 1

2. 구성현황 ····· 2

가. 위원명단 ····· 2

나. 직원명단 ····· 4

Ⅱ.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개황 ····· 6

1. 조사목적 ····· 6

2. 조사범위 ····· 8

3. 조사방법 ····· 9

4. 조사대상기관 ····· 10

5. 조사기간 ····· 11

6. 조사일정 ····· 12

7. 증인 및 참고인 ····· 16

가. 기관보고 ····· 16

나. 청문회 ····· 22

Ⅲ. 국정조사 실시내용 ····· 32

1. 기관보고 ····· 32

가. [4월 3일, 1차] ····· 32

1) 법무부 및 수원구치소 ····· 32

2) 대법원(법원행정처) ····· 50

3) 국가정보원 ····· 95

4) 금융감독원 ····· 102

5) 대검찰청 ····· 108

6) 서울고등검찰청 ····· 119

7) 수원고등검찰청 ····· 127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132

9) 수원지방검찰청 ····· 135

나. [4월 7일, 2차] ····· 149

1) 법무부 및 서울구치소 ····· 149

2) 대법원(법원행정처) ····· 174

3) 대검찰청 ····· 232

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292

5) 서울고등검찰청 ····· 298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301

7) 수원지방검찰청 ····· 320

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322

9)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326

10) 예금보험공사 ····· 373

다. [4월 9일, 3차] ····· 384

1) 법무부 ····· 384

2) 국방부 ····· 392

3) 해양수산부 ····· 406

4) 감사원 ····· 410

5) 국가정보원 ····· 433

6) 대검찰청 ····· 441

7) 대전지방검찰청 ····· 464

8) 해양경찰청 ····· 474

2. 현장조사 ····· 488

가. [4월 9일, 1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488

나. [4월 9일, 2반, 수원지방검찰청] ····· 493

다. [4월 23일, 1반, 감사원] ····· 499

라. [4월 23일, 2반, 금융감독원] ····· 508

3. 청문회 주요 질의·답변 요지 ····· 528

가. [4월 14일, 1차 청문회] ····· 528

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 528

나. [4월 16일, 2차 청문회] ····· 603

1)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사건 ·· 603

2) 기타 ····· 694

다. [4월 21일, 3차 청문회] ····· 698

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698

2) 국가통계 조작 사건 ····· 754

3)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 784

4) 기타 ····· 811

라. [4월 28일, 4차 청문회] ····· 818

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818

2)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사건 ·· 869

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881

4) 국가통계 조작 사건 ····· 887

5)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 895

Ⅳ. 국정조사 결과 ····· 898

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별 경위 및 진상규명 내용 ····· 898

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898

나. 대장동 사건 ····· 950

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986

라. 위례 신도시 사건 ····· 993

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996

바. 통계조작 사건 ····· 1003

사.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 1009

2.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 사항 및 대책 ····· 1018

3. 증인 고발 사항 ····· 1020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국정조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국정조사위원회의 구성

1. 구성경위

가. 2026년 3월 11일 한병도 의원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제출됨.

나. 2026년 3월 19일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20인을 선임·통지함(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인).

다. 2026년 3월 19일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회부함.

라. 2026년 3월 2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함.

마. 2026년 3월 21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상정하여 무제한토론을 거쳐, 3월 22일 원안대로 승인함.

2. 구성현황

가. 위원명단

(2026. 3. 19. 구성)

구분	교섭단체	위원	비고
위원 (20인)	더불어민주당 (11인)	서 영 교 박 성 준 김 승 원 박 선 원 박 지 원 양 부 남 윤 건 영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주 희 전 용 기	
	국민의힘 (7인)	곽 규 택 김 재 섭 나 경 원 송 석 준 신 동 욱 윤 상 현 조 배 숙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인)	차 규 근 손 솔	

※ 위원 사보임 현황
- 박지원 → 김동아 (2026. 3. 23., 더불어민주당)
- 김재섭 → 김형동 (2026. 3. 24., 국민의힘)
- 조배숙 → 이상휘 (2026. 3. 24., 국민의힘)
- 윤건영 → 정태호 (2026. 3. 31., 더불어민주당)
- 나경원 → 박형수 (2026. 4. 1., 국민의힘)
- 박형수 → 나경원 (2026. 4. 6., 국민의힘)

(2026. 4. 30. 기준)

구분	교섭단체	위원	비고
위원 (20인)	더불어민주당 (11인)	서 영 교 박 성 준 김 동 아 김 승 원 박 선 원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주 희 전 용 기 정 태 호	(위원장) (간사)
	국민의힘 (7인)	김 형 동 곽 규 택 나 경 원 송 석 준 신 동 욱 윤 상 현 이 상 휘	(간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인)	차 규 근 손 솔	

나. 직원명단

(2026. 4. 30. 기준)

소속	직위	성명	비고
법제사법위원회 (29인)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입법조사관	김남영	
	입법조사관	김익두	(2026. 3. 27.~)
	입법조사관	김병관	
	입법조사관	성선애	(2026. 3. 27.~)
	입법조사관	김형섭	
	입법조사관	이혜미	(2026. 3. 27.~)
	입법조사관	최준호	(2026. 3. 27.~)
	입법조사관	류호연	(2026. 3. 27.~)
	입법조사관	김나윤	(2026. 3. 27.~)
	입법조사관	임윤섭	
	입법조사관	노경훈	
	입법조사관	박은정	(2026. 3. 27.~)
	입법조사관	안은주	
	입법조사관	최한슬	
	입법조사관	노장원	
	입법조사관	최용국	
	입법조사관	김수나	
	입법조사관	김현성	
	입법조사관	이강욱 (~2026. 3. 27.)	허금복 (2026. 3. 27.~)
	행정관	김기연 (~2026. 3. 27.)	주은정 (2026. 3. 27.~)
	행정관	문종민	

(2026. 4. 30. 기준)

소속	직위	성명	비고
법제사법위원회 (29인)	주 무 관	김 민 옥	
	주 무 관	박 옥 서	
	주 무 관	김 수 자 (~2026. 3. 27.)	서 현 진 (2026. 3. 27.~)
	주 무 관	김 남 경	
	주 무 관	이 지 영 (~2026. 3. 27.)	강 량 인 (2026. 3. 27.~)
	주 무 관	김 영 희	

※ 겸무 명령 현황

- 겸무(면): 이강욱(2026. 3. 27. 국회사무처),
  김수자(2026. 3. 27. 외교통일위원회),
  김기연(2026. 3. 27.,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지영(2026. 3. 2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겸무(명): 김익두, 성선애, 이혜미, 최준호, 류호연, 김나윤, 박은정, 허금복,
  서현진, 강량인, 주은정(2026. 3. 27. 법제사법위원회)

Ⅱ.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개황

1. 조사목적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등 조작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남용되었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음.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 ①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협박, ②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변조, ③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 ④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사건축소 및 구형, ⑤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 ⑥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 수사 등 조작기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최근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남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아 사건의 핵심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고, 정영학 또한 본인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면서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음.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 간 사건에 관한 진술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접견과 소주·연어 등 음식물 수시 반입을 허용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 뿐만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김성태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당시 정부 인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선택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자행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대표적으로 통계조작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가격 통계를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등에 압박하여 통계를 '조작'했다며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던 검찰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작'이라는 표현을 '수정'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애초부터 기획된 과잉 수사였음을 방증하는 것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서도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 수사, 정부 문서 등 증거에 대한 자의적 해석, 왜곡된 법리 적용 등 조작기소가 자행되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최근 재판부에서는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5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고발했던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하하여 이러한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졌음.

아울러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여, 대선 개입과 여론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표적 수사에 나섰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음. 특히 명예훼손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강행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비판이 잇따랐음.

이에 위에서 열거한 사건 등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며, 다시는 이러한 검찰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함.

2. 조사범위

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나. 위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다. 위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라. 위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마.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3. 조사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나.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

다.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

마.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바.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시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

4. 조사대상기관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감사원, 통일부, 법무부,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대전지방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양천경찰서, 분당경찰서, 경기도청, 성남시청,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대통령기록관,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 기타 기관 : ㈜호반건설, ㈜쌍방울, ㈜퓨처코어(구, 나노스㈜), ㈜광림, 케이에이치필룩스㈜, 케이에이치건설㈜, 케이에이치강원개발㈜, ㈜장원테크, 한국거래소(시장감시본부 포함), 삼일회계법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위더미디어(뉴스버스), 리포액트, 리어예술단,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서류등의 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음.

나. 증인 및 참고인

○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

5. 조사기간: 2026. 3. 20.(금) ~ 2026. 5. 8.(금) (50일)

가. 기관보고: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나. 현장조사: 현장검증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다. 청문회: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라.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

6. 조사일정

가. 국정조사 전체 일정

회의차수(날짜)	주요 활동	비고
제1차 전체회의 (2026. 3. 20.)	○ 위원장 선임의 건 ○ 간사 선임의 건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2차 전체회의 (2026. 3. 25.)	○ 간사 선임의 건 ○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 기관보고 요구의 건 ○ 증인 출석요구의 건 ○ 서류등 제출 요구의 건	
제3차 전체회의 (2026. 3. 31.)	○ 청문회 실시의 건 ○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증인 출석요구 추가 등의 건 ○ 현장조사 실시의 건	
제4차 전체회의 (2026. 4. 3.)	○ 증인 비공개의 건 ○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기관보고(1차) ○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제5차 전체회의 (2026. 4. 7.)	○ 기관보고(2차)	
현장조사 (2026. 4. 9.)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제6차 전체회의 (2026. 4. 9.)	○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기관보고(3차)	

회의차수(날짜)	주요 활동	비고
제7차 전체회의 (2026. 4. 14.)	○ 증인 비공개의 건 ○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국정조사청문회 실시(1차) ○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제8차 전체회의 (2026. 4. 16.)	○ 증인 비공개의 건 ○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국정조사청문회 실시(2차) ○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 동행명령장 추가 발부의 건	
제9차 전체회의 (2026. 4. 20.)	○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 ○ 현장조사 실시의 건	
제10차 전체회의 (2026. 4. 21.)	○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철회의 건 ○ 참고인 비공개의 건 ○ 국정조사청문회 실시(3차) ○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현장조사 (2026. 4. 23.)	○ 감사원 ○ 금융감독원	
제11차 전체회의 (2026. 4. 28.)	○ 증인 비공개의 건 ○ 국정조사청문회 실시(4차)	
제12차 전체회의 (2026. 4. 30.)	○ 증인 고발의 건 ○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나. 기관보고 세부일정

날짜	주요 활동	비고
2026. 4. 3.(금)	○ 기관보고 -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1차
2026. 4. 7.(화)	○ 기관보고 -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서울구치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 예금보험공사	2차
2026. 4. 9.(목)	○ 기관보고 - 법무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해양경찰청	3차

다. 청문회 세부일정

날짜	주요 활동	비고
2026. 4. 14.(화)	○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	1차
2026. 4. 16.(목)	○ 대장동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	2차
2026. 4. 21.(화)	○ 서해 공무원 피격 ·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	3차
2026. 4. 28.(화)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종합 청문회	4차

라. 현장조사 세부일정

날짜	주요 활동	비고
2026. 4. 9.(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1반) - 구치감, 검사실(1006호, 1008호, 1010호) 등 현장조사 ○ 수원지방검찰청(2반) - 검사실(1313호), 영상녹화실 등 현장조사	분반하여 실시
2026. 4. 23.(목)	○ 감사원(1반) - 감사보고서 등 열람, 조사실 등 확인 ○ 금융감독원(2반)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 경과 보고 등	

7. 증인 및 참고인[1)]

가. 기관보고

1) 4. 3. 기관보고 (증인 33/36)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증인	정성호	법무부장관	
2	증인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3	증인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	
4	증인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5	증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찰청 차장검사)	
6	증인	정용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차장검사)	
7	증인	이정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8	증인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9	증인	김봉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0	증인	한태환	수원구치소장	
12	증인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13	증인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	
14	증인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15	증인	오이택	법무부 특별점검팀 교정관	
16	증인	김용진	前 법무부 구치감 배치계장	

1) 이하 표의 음영 부분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참고인임.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7	증인	문희철	前 법무부 계장	
18	증인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불출석 사유서 제출
19	증인	국가정보원 증인1	당시 직원(요원), 주재관	비공개 의결
20	증인	국가정보원 증인2	당시 감사관	비공개 의결
21	증인	국가정보원 증인3	감사책임관	비공개 의결
22	증인	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23	증인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24	증인	곽영환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	
11	증인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7	증인	고두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검사	
25	증인	박성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30	증인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증인 선서 거부
26	증인	양익준	수원지방검찰청 공판1부장	
31	증인	윤석정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28	증인	송민경	대구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 부부장검사	※ 불출석 사유서 제출
29	증인	안병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32	증인	김현창	수원구치소 교사	
33	증인	전진걸	수원구치소 교사	
34	증인	김동규	수원구치소 교사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35	증인	황성준	수원구치소 교사	
36	증인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 불출석 사유서 제출

2) 4. 7. 기관보고 (증인 32/36)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증인	정성호	법무부장관	
2	증인	김도형	대전지방교정청장 (前 서울구치소장)	
3	증인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4	증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5	증인	정용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	
6	증인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7	증인	김봉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8	증인	장준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9	증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10	증인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11	증인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	
12	증인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13	증인	김민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14	증인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15	증인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6	증인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17	증인	이정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18	증인	허정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19	증인	이주용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 불출석 사유서 제출
20	증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1	증인	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22	증인	이건웅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3	증인	이창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24	증인	김태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불출석 사유서 제출
25	증인	전효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6	증인	정일권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7	증인	김익수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8	증인	김경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29	증인	이정규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30	증인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31	증인	김세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32	증인	안병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33	증인	조재학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불출석 사유서 제출
34	증인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35	증인	조도준	검사 (한국거래소 파견)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36	증인	이준동	검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3) 4. 9. 기관보고 (증인 39/49)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증인	정성호	법무부장관	※ 불출석 사유서 제출
2	증인	안규백	국방부장관	
3	증인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4	증인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5	증인	김호홍	국가정보원 제2차장	
6	증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7	증인	김도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8	증인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9	증인	김진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10	증인	최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1	증인	이상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2	증인	이희동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13	증인	박영식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4	증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 불출석 사유서 제출
15	증인	김숙동	감사원 국장 (한국행정연구원 파견)	※ 불출석 사유서 제출
16	증인	손종국	감사원 외교국방감사국 제1과 감사관	
17	증인	윤휘철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관	
18	증인	이상훈	감사원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실 감사관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9	증인	강민우	감사원 부감사관 (국외훈련)	
20	증인	장문기	감사원 부감사관 (휴직)	
21	증인	우동호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 불출석 사유서 제출
22	증인	신정환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 감사주사	
23	증인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24	증인	박진영	합참정보본부 정보부장	
25	증인	박길선	합참정보본부 정보운영처장	
26	증인	김성구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사단장	
27	증인	권경선	육군 제8기동사단 참모장	
28	증인	오영호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 대외정책 전문경력관	
29	증인	윤형진	국방부 주미 국방무관	
30	증인	최준혁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보좌관	
31	증인	최태종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 대미협의담당	
32	증인	하정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제20항공작전전대장	
33	증인	류현주	서울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담당	
34	증인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 불출석 사유서 제출
35	증인	김경규	인천해양경찰서 119정 정장 (전 인천해경 형사계장)	※ 불출석 사유서 제출
36	증인	김태균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전 형사과장)	
37	증인	도기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전 기획수사과)	
38	증인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전 인천해경 해양경찰서장)	
39	증인	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 (전 수사국장)	
40	증인	안성식	해양경찰청 전 형사과장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41	증인	이수선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전 중부지방해경 수사계장)	
42	증인	장대운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 보안과장 (전 심사과장)	
43	증인	최경근	해양경찰청 전 중부지방해경 수사과장	※ 불출석 사유서 제출
44	증인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불출석 사유서 제출
45	증인	국가정보원 증인2	당시 감사관	비공개 의결
46	증인	국가정보원 증인3	당시 감사책임관	비공개 의결
47	증인	국가정보원 증인4	감찰 실무자	비공개 의결
48	증인	국가정보원 증인5	감찰책임관	비공개 의결
49	증인	이창연	-	

나. 청문회

1) 4. 14. 청문회 (증인 39/50, 참고인 7/7)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증인	정용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	
2	증인	이정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3	증인	안병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4	증인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증인 선서 거부
5	증인	고두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검사	
6	증인	전종택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내란특검 파견 중)	※ 불출석 사유서 제출
7	증인	서현욱	前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8	증인	천재인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9	증인	김춘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	
10	증인	오이택	법무부 특별점검팀 교정관	
11	증인	원대로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검찰주사	
12	증인	이상봉	서울구치소 사회복귀 과장	
13	증인	강우영	수원구치소 교위	
14	증인	김동규	수원구치소 교사	
15	증인	김용제	수원구치소 교사	
16	증인	박재훈	수원구치소 교사	
17	증인	봉우리	수원구치소 교사	
18	증인	성기현	수원구치소 교사	
19	증인	안세원	수원구치소 교사	
20	증인	전진걸	수원구치소 교사	
21	증인	황성준	수원구치소 교사	
22	증인	김관	前 교도관	
23	증인	윤주성	前 교도관	
24	증인	유증수	前 수원구치소 교도관 (퇴직)	※ 불출석 사유서 제출
25	증인	이화영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26	증인	신명섭	前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27	증인	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동행명령장 발부 -집행불발
28	증인	방용철	前 쌍방울 부회장	
29	증인	김태헌	前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30	증인	김형수	前 쌍방울 미래전략본부장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31	증인	양선길	前 쌍방울 사장 (前 디모아 대표이사)	
32	증인	박상웅	前 쌍방울 이사	
33	증인	장석환	前 쌍방울 재무이사	
34	증인	장진우	前 쌍방울 홍보실장	
35	증인	박상민	前 쌍방울 회장 수행비서	
36	증인	지승만	前 쌍방울 이사	
37	증인	김영남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38	증인	서민석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	
39	증인	이완희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	※ 불출석 사유서 제출
40	증인	이한이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41	증인	정원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42	증인	김국훈	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 의장	
43	증인	류현재	-	
44	증인	배상윤	KH그룹 회장	
45	증인	안부수	前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 불출석 사유서 제출
46	증인	안소연	안부수 딸	
47	증인	조경식	前 KH그룹 부회장	
48	증인	한성구	팝콘필름유한회사 대표이사 (前 아이오케 컴퍼니 대표)	※ 불출석 사유서 제출
49	증인	노은채	前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50	증인	국가정보원 증인1	당시 직원(요원), 주재관	
51	참고인	김현철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 변호사	
52	참고인	백정화	-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53	참고인	봉지욱	前 뉴스타파 기자	
54	참고인	이우일	-	
55	참고인	이창환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 변호사	
56	참고인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57	참고인	조성우	금융감독원 하노이 소장	

2) 4. 16. 청문회 (증인 27/41, 참고인 3/3)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증인	정용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	
2	증인	이원석	前 검찰총장	
3	증인	김태훈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4	증인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5	증인	김민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6	증인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7	증인	정일권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8	증인	김경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9	증인	김영석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휴직)	※ 동행명령장 발부 -집행불발
10	증인	홍상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	
11	증인	이주용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동행명령장 발부 -집행불발
12	증인	남재현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3	증인	임우열	대검찰청 수사관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4	증인	조효주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관	※ 불출석 사유서 제출
15	증인	문영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속기사	
16	증인	김태연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속기사	
17	증인	김남호	검찰사무관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18	증인	고형곤	법무법인 플래닛 대표변호사	
19	증인	김민수	법무법인 정명 변호사	
20	증인	김영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1	증인	박환택	법무법인 청와 변호사	
22	증인	송경호	법무법인 플래닛 대표변호사	
23	증인	신봉수	법무법인 에스피 변호사	
24	증인	유경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25	증인	전병덕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26	증인	호승진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27	증인	김만배	前 머니투데이 기자 前 화천대유 대주주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동행명령장 발부 -동행명령 거부
28	증인	남욱	변호사	
29	증인	정영학	회계사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동행명령장 발부 -동행명령 거부
30	증인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변호사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동행명령장 발부 -동행명령 거부
31	증인	정순욱	前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32	증인	박태선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33	증인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34	증인	김은정	호반건설 전무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35	증인	강철호	철거업자	
36	증인	이기성	분양대행업자	※ 변호인 대동
37	증인	이문현	고철업자	
38	증인	정재창	前 보문건설 대표 (前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39	증인	최진협	노래방시설 운영자	
40	증인	미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속기사	
41	증인	미상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관	
42	참고인	김경수	한국정책연구소 기획실장	
43	참고인	백종덕	법무법인 로우 변호사	
44	참고인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	

3) 4. 21. 청문회 (증인 28/35, 참고인 22/29)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증인	김성한	前 국가안보실장	
2	증인	서주석	前 국가안보실 제1차장	
3	증인	김태효	前 국가안보실 제1차장	※ 불출석 사유서 제출 출석(14:30~)
4	증인	신인호	前 국가안보실 제2차장	
5	증인	강건작	前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6	증인	김규현	前 국가정보원장	
7	증인	노은채	前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8	증인	도진호	前 국가정보원 감찰실 보안과장	※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9	증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동행명령장 발부 -동행명령 집행(출석)
10	증인	김숙동	감사원 국장 (한국행정연구원 파견)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동행명령장 발부 -동행명령 집행(출석)
11	증인	손종국	감사원 외교국방감사국 제1과 감사관	
12	증인	강민우	감사원 부감사관 (국외훈련)	
13	증인	이시원	前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14	증인	서정식	前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불출석 사유서 제출
15	증인	최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6	증인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17	증인	이상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8	증인	이건웅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	증인	강일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	증인	박길배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1	증인	이창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22	증인	이창연	前 검찰수사관	※ 불출석 사유서 제출
23	증인	정봉훈	前 해양경찰청장	
24	증인	김병로	前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25	증인	이명준	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26	증인	안성식	前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27	증인	김성종	前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28	증인	김대한	前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	
29	증인	김만배	前 머니투데이 기자 前 화천대유 대주주	※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30	증인	남욱	변호사	
31	증인	정영학	회계사	※ 불출석 사유서 제출
32	증인	조우형	대장동 대출 브로커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동행명령장 발부 -동행명령 집행(출석)
33	증인	이철수	조우형 사촌	
34	증인	이종민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장	
35	증인	이강길	前 씨세븐 대표	※ 불출석 사유서 제출 출석(17:40~)
36	참고인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37	참고인	윤성원	前 국토교통부 1차관	
38	참고인	이문기	前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39	참고인	권혁진	前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40	참고인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 본부장	
41	참고인	김홍진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42	참고인	하동수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43	참고인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44	참고인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45	참고인	김민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46	참고인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47	참고인	조성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48	참고인	김수상	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49	참고인	김영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0	참고인	이명섭	부산지방항공청장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51	참고인	좌명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 총괄과 서기관	
52	참고인	최민석	국토교통부 서기관	
53	참고인	허온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서기관	
54	참고인	홍승희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 총괄과 사무관	
55	참고인	박진홍	국토교통부 서기관 (주베트남 대사관 파견)	
56	참고인	이랑	국토교통부 서기관 (OECD사무국 파견)	
57	참고인	미상	한국부동산원 재직	
58	참고인	미상	한국부동산원 재직	
59	참고인	윤성현	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60	참고인	김우철	前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61	참고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62	참고인	김용진	前 뉴스타파 대표	
63	참고인	봉지욱	前 뉴스타파 기자	
64	참고인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4) 4. 28. 청문회 (증인 21/22, 참고인 4/4)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증인	정성호	법무부장관	
2	증인	안규백	국방부장관	※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후 출석)
3	증인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4	증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5	증인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6	증인	김호홍	국가정보원 2차장	
7	증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후 출석)
8	증인	정용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	※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후 출석)
9	증인	이정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10	증인	김태훈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후 출석)
11	증인	박영식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2	증인	이윤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부장검사	
13	증인	이진하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	
14	증인	이시원	前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15	증인	김성구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사단장	
16	증인	김성종	前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17	증인	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18	증인	박상웅	前 쌍방울 이사	
19	증인	안부수	前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 불출석 사유서 제출
20	증인	하동혁	통일운동가	
21	증인	증인A	국가정보원 당시 직원(요원), 주재관	
22	증인	증인B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속기사	
23	참고인	윤성원	前 국토교통부 차관	
24	참고인	김현철	변호사	
25	참고인	김국훈	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 의장	
26	참고인	봉지욱	前 뉴스타파 기자	

Ⅲ. 국정조사 실시내용

1. 기관보고

가. [4월 3일, 1차]

1) 법무부 및 수원구치소(부록)

가) 보고내용

Ⅰ 개요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이화영**(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을 주장**하여 논란 발생

- 이화영은 재판 진행 중 '지난해 수원지검에서 연어를 먹고 술을 마셨다'고 주장

-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음식과 술이 반입된 사실이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입장 발표*('24. 4.)

* **[뉴스 1 전문] 검찰 "이화영 '연어 술파티' 허위 주장 … 회유·진술조작 없었다."**

-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①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②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③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오늘(`24. 4. 17.) 음주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3. 6. 30.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 이후에도 이화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23. 6.경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

- 국회 및 다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발생

Ⅱ 주요 경과

1 법무부 교정본부 특별점검팀 실태조사

○ **(배경)**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실태조사 지시(’25. 7.)

- 법무부 특별점검팀(7명)을 편성하여 각종 자료, 직원 및 수용자 진술 확인

○ **(경과)** 실태조사 결과, 수원지검 발표 내용이 조사로 확인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발견되었음

- (’25. 7.) 실태조사 점검반 구성 및 관련 자료 분석

- (’25. 8.) 수원구치소 현장 조사, 관련 직원 및 수용자 진술 확인

  · ’24. 4. 17. 당시 수원지검 계호 교도관 38명 조사

  · 이화영 및 수용자 2명의 진술(‘이화영으로부터 술을 마셨다고 들었다’는 취지) 확보 등

- (’25. 9. 17.) 실태조사 결과 관련 보도자료 배포

  ·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외부음식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 취식 및 음주 정황 확인

· 수원지검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공범들이 접촉한 정황 확인

· 쌍방울 직원이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한 정황 확인

·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한 정황 확인 등

2 대검찰청에 실태조사에 따른 진상파악 등 지시

○ 「법무부 감찰규정」 상 법무부의 직접 감찰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감찰관이 공석인 점 고려,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및 결과보고 지시('25. 9.)

- 법무부 특별점검팀 실태조사 관련 자료 이첩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검찰의 자율성 보장) ①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② 법무부는 제1항에 따른 검찰의 자체 비위조사와 감사 후에 필요한 경우 비위조사와 감사를 수행한다.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2.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나.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은폐할 의도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비위 중 제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다만, 검찰총장 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

3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 진상조사 착수

○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TF'를 구성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 등 진행 중('25. 9. 18. ~)

Ⅲ 향후 계획

○ 향후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예정

○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

○ 국회의 국정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혹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 [붙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 구치소 수감 시 상황

붙임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 구치소 수감 시 상황

○ 주요 피의자 입출소 현황

연번	성명	거실	비고
1	이화영	독거	수원(구) 수용 중
2	AOO	출소	수원(구) 보석출소
3	BOO	출소	수원(구) 보석출소
4	COO	출소	수원(구) 보석출소
5	DOO	출소	수원(구) 보석출소

○ 주요 피의자 출정 현황(전체)

연번	성명	검사조사 횟수(기소 전 / 후)
1	이화영	79회 (6 / 73)
2	AOO	191회 (14 / 177)
3	BOO	146회 (6 / 140)
4	COO	70회 (13 / 57)
5	DOO	56회 (14 / 42)

○ 주요 피의자 출정 현황('23. 5. 17.)

연번	성명	검사조사 시작	검사조사 종료
1	이화영	10:00	20:30
2	AOO	14:00	20:30
3	BOO	14:00	20:30
4	COO	출정 없음	출정 없음
5	DOO	14:00	20:30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 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지?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된 공소제기나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검찰 인사권을 이용한 공소취소가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생각됨.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는지?	○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지휘할 생각 없음.
○ 기소가 잘못된 것이라면 공소를 취소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무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 현재의 국정조사는 과거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 각 언론사 및 의원들이 공개하는 부분적인 녹취록들만으로 문제가 있진 않은지?	○ 서민석 변호사에게 자료 요구함.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건의 별건으로 사건이 전환되는 경우를 경험한 적 있는지?	○ 경험한 적 없음.
○ 진술 회유 협박 관련 박상용 검사의 발언 등에 대해 법무부 감찰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계속 감찰이 진행 중임.
○ 쌍방울이 500만 불을 북한에	○ 그러한 투자유치 자료가 있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송금한 것은 1억 불 희토류 계약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300만불 송금도 김성태의 방북을 위한 대금일 뿐이 아닌지?	는 사실 알고 있음.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고 엄중하게 조사하겠음.
○ 법무부 특별점검보고서에 '김성태 외부도시락 제공이 수원구치소와 검사가 협의하여 제공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는데, 전문을 제출하길 요청함.	○ 재판 중인 사건에서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음. 재판부도 자료유출 경고한 것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겠음.
○ 국정원장이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이창연 특별수사관이 주도했던 감찰결과서는 수원지검에 공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언하였는바, 윤석열 정권 당시 국정원은 최소 한동훈 또는 윤석열·김건희와 공모한 것임. 또한,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이 다수 발견된 것도 박상용 검사 정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이전의 국정원장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더 보아야 함.	
○ 고두성 검사 포함해 서로 감싸고 격려하고 진술조작, 입 맞추기 하고 있음. 범죄은닉, 증거인멸 하고 있음. 서로 연락 못하게 해야 함.	○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국정조사 과정을 종합해 엄중히 조치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상용 검사 감찰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곧 감찰결과 발표를 할 예정인지?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인지?	○ 감찰의 구체적인 내용 말하긴 어렵지만, 5월 17일 정도가 감찰 관련 여러 시효가 있는 날이라 신속히 종합하여 정리하겠음.
○ 교도관들을 격려해주길 바람.	○ 알겠음.
○ 원칙을 지켜가면서 일하는 교도관들의 권한을 짓밟는 등 검사의 월권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인지?	○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검찰의 자정 능력에 대하여 많은 생각이 들며, 이러한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검찰의 악의적인 쪼개기 기소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인지?	○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임.
○ 2025.9.17.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 이후 수원지검, 국정원과 관련된 검사들을 모두 징계했어야 마땅한데,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인지?	○ 교도관들의 증언들만을 토대로 징계하기에는 법적 분쟁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검찰 내부적으로 감찰을 하고, 더 나아가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지시했던 것임.
○ 녹취록에 드러난 박상용 검사의 육성을 통해서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봄.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내일 당장이라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검찰 라인에서 조작을 했던 담당자들에 대해서 징계위원을 꾸려서	○ 금일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하고, 인권침해 TF 감찰 결과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보완하여 최종적인 감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할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신속히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 김성태와 검찰 단합으로 진술 변경, 돈으로 안부수 진술 변경, 협박으로 이화영 진술 변경 등은 명백한 조작 기소라고 생각함.	
○ 박상용 검사가 인천지검에서 근무 중인데,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며, 해당 검사는 방송 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공수처 수사 대상 신분이기도 함. 이에 대기발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람.	○ 조치하겠음.
○ 캄보디아에 있는 KH 배상윤 회장에 대하여 국내 로펌을 통해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 로펌에 협조 요청 하겠음.
○ 국정조사의 여섯 가지 목적과 관련하여, 금일 국정조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녹음 등에 기반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함. 이에 관련 사안에 대해 자체 자정노력 및 감찰을 실시하시길 당부함.	○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음.
○ 수원지검의 2022년 11월 16일자 쌍방울 주가조작 관련 정보제공 요청 공문 및 2023년 7월	○ 알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7일자 긴급조치 요청 공문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한 배경과 이유에 대하여 확인해주기 바람.	
○ 고두성 검사가 언급한 국정조사 대응 단체 대화방과 관련하여, 해당 대화방에서 어떠한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객관적 증거에 기초해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든 오염될 위험이 있는 관련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지?	○ 객관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밀하게 해야 함.
○ 대장동 사건에서 시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자 검사가 분양가 엑셀파일의 수치를 임의로 수정해 진술자에게 제시하며 허위진술을 만들어냈고, 녹취록에 없던 ‘윗어르신’, ‘실장님’ 등의 표현까지 끼워넣었다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상 증거위조이자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가 아닌지?	○ 매우 중대한 범죄임.
○ 위례 사건에서는 검찰이 쥐어짜낸 진술만으로 시장 재직 시	○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공모혐의를 씌웠지만, 정작 해당 사업자들 모두가 최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핵심 물증인 안부수 수첩과 국정원 문건 등 명백한 증거들을 검찰이 초기에 제대로 제출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히 객관의무 위반이 아닌지?	○ 피의자나 혐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같이 판단하고 제출해야 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배제하고 공범들 간 입맞춤을 유도한 뒤 협박으로 진술을 조작하는 방식의 수사기법이 대한민국 형사법과 수사매뉴얼은 어디에 있는지?	○ 절대 용납되지 않는 방법임.
○ 성남 FC사건은 애초 경찰이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 검찰이 물증을 외면한 채 협박·회유로 얻은 진술과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적시했다가 변호인 항의와 재판부 지적 후 뒤늦게 공소장을 수정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아닌지?	○ 엄중한 감찰과 드러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주시기 바람.
○ 증권범죄나 지능범죄에 대해	○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대책이 있는지?	진행될 것이며, 검찰도 금융·주가조작 등 특수사건 분야에서 수사를 충실히 수행하겠음.

(나) 이진수 증인(법무부 차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종범은 박상용 검사이고 주범은 별도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박상용 검사가 수사하는 방식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행동이 박상용 검사 혼자만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지금 진행되는 TF에서 확인되어야 할 내용임.
○ 2025. 9. 22.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한 후 진술세미나 또는 연어파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위증에 해당하나?	○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으로 보임.

(다) 한태환 증인(수원구치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연어 술파티를 재현할 수 있는지?	○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은 알지 못함.

(라) 전진걸 증인(수원구치소 교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상용 검사에게 혼자서 항의	○ 혼자 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같이 있었는지?	
○ 보고서상 서류를 주고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	○ 당시 방용철이 관계자에게 휴대용 서류를 건네려고 한 것을 본인이 적발하였고, 이것을 출정 교감에게 보고하였음.
○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 교감이 이를 회수하였음.
○ 그 서류가 무엇인지 아는지?	○ 어떤 종류의 내용인지는 확실히 모름.
○ 고두성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 연어·술 반입 여부는 모르나, 커피, 다과 등 외부음식 반입은 있었음.
○ 외부음식이 반입되고, 공범들끼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검사가 마련해준 것을 목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지?	○ 그러함.
○ 수사관이나 검사 없이 공범들끼리만 있는 것을 본 적 있는지?	○ 1313호 맞은편 창고에서 수사관, 검사 없이 장시간 얘기하면서 대기하는 걸 본 적 있음. 당시 저의 요구로 그 이후 부터는 검찰청 직원이 상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전 근무 때는 어떠했는지 모르는지?	○ 저의 근무 외에는 잘 모름.
○ 증인이 수원구치소에서 김성태 회장을 담당한 기간은?	○ 정확한 기간은 기억나지 않음.
○ 김성태와 공범들이 마주하는	○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것을 본 적이 있는지?	
○ 박상용 검사의 행태에 항의한 적 있는지? 어떤 연유로 하였는지?	○ 있음. 공범 분리문제와 가족들 접견으로 문제를 제기함.
○ 구속된 피의자는 신분의 관리가 교도관에게 있는 것이 원칙인지?	○ 맞음.
○ 검사의 승인하에 공범을 만나고 외부음식을 반입하는 등의 문제를 박상용 검사가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이견이 있고 항의한 것이 맞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 아님. 출정 시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 부정물품 수수나 도주, 자살, 자해 등의 교정사고 문제 때문에 외부접촉을 차단하는데, 사전에 교도관과 협의 없이 외부인과 접촉하게 해서 본인이 개입, 항의함.
○ 수원지검 고두성 검사의 감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전화로 이루어졌음.
○ 전화로 무엇을 물었는지?	○ 외부음식 반입이 있었는지 물었음.
○ 뭐라고 답변했는지?	○ 연어나 술은 잘 모르겠고 커피나 다과는 반입한 적 있다고 답변하였음.
○ 어떤 상황에서 항의를 했는지?	○ 외부 접견인과의 무단 접촉은 교정사고 우려로 교정직원의 개입이 불가피한 사안이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그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 못마땅해 하였으나 결국 요구에 따라 접견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수사관도 배치했음.
○ 구속 피의자·피고인 관리상 교	○ 그건 보지 못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의 근접이 필요한데도 창고·영상녹화실에서 교사들을 내보내고 진술 연습을 했다는 제보도 있음.	

(마) 황성준 증인(수원구치소 교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외부음식 반입 등을 보았다고 했는데 맞는지?	○ 맞음.
○ 당시 그 모습을 보고 심경이 어떠하였는지?	○ 교도관 업무를 하면서 회의감이 들었음.
○ 진술하신 것 중에 “불쾌하였다. 소풍 온 것처럼 해서 불쾌하였다”고 하였는데 맞는지?	○ 맞음.
○ 전화로 무엇을 물었는지?	○ 정해진 답변을 듣기 원했던 것처럼 빨리 지나가고 끝났음.

(바) 김현창 증인(수원구치소 교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전진걸 증인이 답변한 내용 그대로 목격한 것이 맞는지?	○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저도 본 적은 있음.
○ 혹시 박상웅이나 박상민 등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1313호실에 대기하고 있는 것도 본 적 있는지? 해당 직원들은 와서 조사를 받은 것인지? 무엇을	○ 있음. 참고인이라고 해서 그냥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했던 것인지?	
○ 김성태나 쌍방울 관련자들이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걸 목격한 적 있는지?	○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계속 봤음
○ 그 때 김성태가 혹시 지시하거나 음식을 시키는 것을 목격한 적 있는지?	○ 그런 장면은 목격한 적은 없고, 영상녹화실이 있으면 저희가 주로 바깥 통로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듣지는 못함. 그러나 얘기하는 장면은 목격한 적 있음.
○ 영상녹화실 밖에서 대기하시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지?	○ 잘 들리지 않음. 혹시나 모를 신체접촉만 확인함.
○ 영상녹화실에 검사나 수사관 없이 김성태나 이화영, 박용철 등만 앉아 있던 적도 있는지?	○ 제가 근무할 때는 수사관 한 명씩은 동석하였음.
○ 고검장 출신의 높은 변호사가 김성태나 이화영에게 접촉해서 얘기하는 것을 본 적 있는지?	○ 변호사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일하는 저희 직원분한테 고검장 출신이라고 얘기한 걸 들은 기억은 있음.
○ 그렇게 해서 이화영을 만났는지?	○ 거기까지는 알지 못함.
○ 원래 변호인도 아니었는데 왔다는 것인지?	○ 제 기억으로는 변호사 한 분이 검사실로 들어가셨고, 저 분이 고검장 출신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음.
○ 정상적으로 수임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지?	○ 거기까지는 알지 못함.
○ 동시에 공범관계인 사람을 불	○ 출정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러 2인 이상 동시조사를 100여회, 3인 이상 동시조사를 25회 하는 등 진술조작 세미나를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이 사건 말고 또 있었는지?	범들을 자유롭게 같이 조사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음.
○ 오후 8시 반까지 있었던 김성태, 방용철은 수원구치소에서 식사를 못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저녁을 해결했는지?	○ 보통 야간까지 조사가 있으면 구치감에 수용자를 데리고 와서 구치소에서 온 식사를 제공하고 약속한 시간에 검사실에 수용자를 데리고 올라감.
○ 그런데 김성태 등은 쌍방울 직원들이 수시로 외부음식을 반입해 갈비탕, 초밥 등을 구치감이 아닌 검사실이나 창고에서 먹었다는 것인지?	○ 처음 외부음식을 제공할 때는 검사실 쪽 창고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후에는 구치감에서 식사하였음.
○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에게 이렇게 외부음식을 제공하거나 검사실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마어마한 특혜가 아닌지?	○ 특혜라기보다는 특별한 상황으로, 관외출장 등으로 수용자가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경우 책임감독자의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검사실에서 수용자 식사를 제공한 적은 있음.
○ 영상녹화실에서 구속 피고인·피의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는지?	○ 영상녹화실에서는 검찰 측이 수사의 중요성을 이유로 근접해 있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던 것 같음.
○ 나가 있으라고 했는지?	○ 직접적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는 없었지만, 나가 있기를 바라는 분위기를 느꼈음.

(사) 김동규 증인(수원구치소 교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5월 17일 그날 직접 연어회덮밥을 받아온 것이 맞는지?	○그러함. 제가 1층 검찰청사에서 수사관과 함께 받아왔음.
○외부 배달업체로부터 받아온 것인지?	○정확하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바깥에서 받아왔음.
○연어회덮밥을 받아서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이 먹은 것인지?	○그러함.

2) 대법원(법원행정처)

가) 보고내용

1-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등은 9 ~ 29면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733 등 / 수원고등법원 2024노620 / 대법원 2025도810]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나) 2022고합733 <병합사건: 2023고합185, 2023고합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2022. 10. 14. 접수	이화영 방○○	2022.10.28. 11:00(속행) 2022.11.11. 11:00(속행) 2022.11.25. 11:00(속행) 2022.12.09. 11:00 (준비기일종결) 2024.02.29. 14:30 (준비기일종결)	2022.12.20. 10:00(속행) 2023.01.03 10:00(속행) 2023.01.06 10:00(속행) 2023.01.10 10:00(속행) 2023.01.13 10:00(속행) 2023.01.16 10:00(속행) 2023.01.17. 14:00(속행) 2023.01.27 10:00(속행) 2023.01.31 10:00(속행) 2023.02.03 10:00(속행) 2023.02.07 10:00(속행) 2023.02.10 10:00(속행) 2023.02.14 10:00(속행) 2023.02.21 10:00(속행) 2023.02.24 10:00(속행) 2023.02.28 10:00(속행) 2023.03.03 10:00(속행) 2023.03.07 10:00(속행) 2023.03.10 10:00(속행) 2023.03.14 10:00(속행) 2023.03.17 10:00(속행) 2023.03.21 10:00(속행) 2023.03.24 10:00(속행) 2023.03.28 10:00(속행) 2023.03.31 10:00(속행) 2023.04.04 10:00(속행) 2023.04.07. 10:00 (심문기일-심문종결) 2023.04.07 10:00(속행) 2023.04.11 10:00(속행) 2023.04.18 10:00(속행) 2023.04.25 10:00(속행) 2023.05.09 10:00(속행) 2023.05.16 10:00(속행)	1. 이화영 - 판시 2022고합733 사건 제1의 다.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6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년, 벌금 250,000,000(이억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0(오십만)원), 추징 325,950,843(삼억이천오백구십오만팔백사십삼)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방○○ - 2022고합733 사건 제2의 나.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2021. 10.경 증거인멸교사의 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2023.05.23 10:00(속행) 2023.05.30 10:00(속행) 2023.06.13 10:00(속행) 2023.06.20 10:00 (일부속행/일부연기) 2023.06.20. 14:15 (일부속행/일부연기) 2023.06.27 10:00(속행) 2023.06.27. 14:15 (일부연기/일부속행) 2023.07.04 10:00(속행) 2023.07.11 10:00(속행) 2023.07.18 10:00(속행) 2023.07.25. 10:00(연기) 2023.07.25. 14:00(연기) 2023.08.08. 10:00(연기) 2023.08.22. 10:00(연기) 2023.08.22. 14:00(속행) 2023.08.29 10:00(속행) 2023.09.05 10:00(속행) 2023.09.12 10:00(속행) 2023.09.19 10:00(속행) 2023.09.26 10:00(속행) 2023.10.10 10:00(속행) 2023.10.24. 10:00 [연기(추정)] 2024.01.09. 10:00 [일부속행/일부속행(추정)] 2024.01.16 10:00(속행) 2024.01.23 10:00(속행) 2024.01.30 10:00(속행) 2024.02.27. 10:00(연기) 2024.03.05 10:00(속행) 2024.03.12 10:00(속행) 2024.03.19 10:00(속행) 2024.03.26 10:00(속행) 2024.03.29 10:00(속행) 2024.03.29. 14:00(연기) 2024.04.02 10:00(속행) 2024.04.04. 14:00(기일변경) 2024.04.04 10:00(속행) 2024.04.08. 14:30(변론종결) 2024.06.07. 14:00(판결선고)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2024노62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2024. 6. 21. 접수	이화영 방○○		2024.07.26. 10:30(속행) 2024.08.22. 15:15(속행) 2024.09.05. 10:00(속행) 2024.09.05. 15:00(속행) 2024.09.26. 14:00(속행) 2024.10.17. 14:00(속행) 2024.10.24. 14:00(속행) 2024.10.31. 14:00(변론종결) 2024.12.19. 14:00(판결선고)	1. 이화영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판시 2022고합733 사건 제1의 다.항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벌금 250,000,000(이억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700,000(칠십만)원) 가납명령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추징 325,950,843(삼억이천오백구십오만팔백사십삼)원 가납명령,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방○○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판시 2022고합733 사건 제2의 나.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제2부 (차) 2025도81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2025. 1. 13. 접수 2025. 6. 5. 확정	이화영 방○○			1.이화영, 2.방○○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1-2.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882 / 수원고등법원 2023노576 / 대법원2025도4373]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나) 2022고합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2022. 11. 29. 접수	안○○		2023.01.26. 10:50(속행) 2023.02.23. 14:10(속행) 2023.03.20. 10:10(속행) 2023.03.27. 10:10(속행) 2023.03.31. 10:10(속행) 2023.04.11. 10:10(기일변경) 2023.04.17. 10:10(기일변경) 2023.04.19. 10:10(변론종결) 2023.05.23. 14:00(판결선고)	안○○ - 징역 3년6월,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증거은닉교사의 점.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다) 2023노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2023. 6. 9. 접수	안○○		2023.07.19. 15:40 (기일변경(추정)) 2023.07.20. 16:30(기일변경) 2023.07.17. 14:30(속행) 2023.08.17. 16:00(속행) 2023.09.14. 16:00(속행) 2023.10.16. 15:00(속행) 2023.10.26. 15:00(속행) 2023.11.06. 14:00(속행) 2023.11.09. 15:10 [속행(추정)] 2024.09.06. 14:15(기일변경) 2024.09.20. 16:10(속행) 2024.10.25. 15:30(속행) 2024.12.13. 15:00(변론종결) 2025.02.20. 14:00(판결선고)	안○○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유기징역 1년6월 일부무죄 2019. 1. 24.경 14만 5,040달러 및 180만 위안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법원 제3부 (카) 2025도4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2025. 3. 13. 접수	안○○		2025.07.17. 선고기일 [기일변경(추정)]	

1-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등은 30 ~ 34면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72(분리) 등 / 수원고등법원 2024노869]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다) 2023고합72 <병합사건: 2023고합443 2024고합337> <분리사건: 2023고합72(분리) 2024고합337(병합, 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등 2023. 3. 3. 접수	김성태 양○○ 김○○	2023. 2. 23. 10:00(속행) 2023. 3. 9. 10:00(속행) 2023. 3. 23. 10:00(속행) 2023. 4. 6. 10:00(속행) 2023. 4. 20. 10:00(속행) 2023. 5. 11. 10:00 (준비기일종결) 2025. 3. 7. 14:00 (준비기일종결)	2023. 5. 26. 10:00(속행) 2023. 6. 2. 10:00(속행) 2023. 6. 9. 10:00(속행) 2023. 6. 16. 10:00(속행) 2023. 6. 23. 10:00(속행) 2023. 7. 7. 10:00(속행) 2023. 7. 14. 10:00(속행) 2023. 7. 21. 10:00(속행) 2023. 7. 28. 10:00(속행) 2023. 8. 11. 10:00(속행) 2023. 8. 18. 10:00(속행) 2023. 8. 25. 10:00(속행) 2023. 9. 1. 10:00(속행) 2023. 9. 8. 10:00(속행) 2023. 9. 15. 10:00(속행) 2023. 9. 22. 10:00(속행) 2023. 10. 6. 10:00(속행) 2023. 10. 13. 10:00(속행) 2023. 10. 20. 10:00(연기) 2023. 10. 27. 10:00(속행) 2023. 11. 3. 10:00(속행) 2023. 11. 10. 10:00(속행) 2023. 11. 17. 10:00(속행) 2023. 11. 24. 10:00(속행) 2023. 12. 1. 10:00(속행) 2025. 12. 8. 10:00(속행) 2025. 12. 15. 10:00(속행) 2023. 12. 22. 10:00(속행) 2024. 1. 5. 10:00(속행) 2024. 1. 12. 10:00(속행) 2024. 1. 19. 10:00(속행) 2024. 1. 26. 10:00(속행) 2024. 2. 23. 14:00(기일변경) 2024. 2. 23. 13:40(연기) 2024. 3. 15. 10:00(속행) 2024. 3. 22. 10:00(속행) 2024. 4. 5. 10:00 (일부연기/일부속행)	※ 일부선고[2023고합72(분리), 2023고합121(병합, 분리), 2024고합337(병합)] 1. 김성태 - 피고인을 판시 2023고합72사건 제II.2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2023고합72사건 제II.2항 죄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지급 관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김○○ - 징역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2024. 4. 19. 10:00(속행) 2024. 4. 26. 10:00(속행) 2024. 5. 3. 10:00(연기) 2024. 5. 7. 14:00 (일부속행/일부연기(추정)) 2024. 5. 10. 14:00(속행) 2024. 5. 13. 14:00(속행) 2024. 5. 14. 14:00 (일부사건 변론종결) 2024. 7. 12. 13:50 (일부사건 분리선고) 2024. 8. 30. 14:20(속행) 2024. 9. 6. 11:00(속행) 2024. 9. 27. 14:30(연기) 2024. 10. 18. 15:30(속행) 2024. 11. 8. 14:10(연기) 2024. 11. 22. 14:10(연기) 2024. 12. 6. 15:00(속행) 2025. 1. 10. 15:00(속행) 2025. 3. 7. 14:00 (기일변경(추정)) 2025. 4. 4. 14:00(속행) 2025. 4. 25. 14:00(기일변경) 2025. 4. 25. 14:30(속행) 2025. 6. 13. 15:00(속행) 2025. 6. 20. 14:30(속행) 2025. 7. 4. 14:30(속행) 2025. 8. 11. 14:00(속행) 2025. 8. 25. 14:00(속행) 2025. 9. 8. 14:00(속행) 2025. 9. 22. 14:00(기일변경) 2025. 9. 29. 14:00(속행) 2025. 10. 20. 14:00(기일변경) 2025. 10. 27. 14:00(속행) 2025. 11. 3. 14:00(기일변경) 2025. 11. 17. 14:00(기일변경) 2025. 12. 8. 14:00(속행) 2026. 1. 12. 14:00(속행) 2026. 3. 16. 14:00(속행) 2026. 4. 13. 14:00(예정) 2026. 4. 13. 15:00(예정) 2026. 4. 13. 16:00(예정) 2026. 4. 13. 17:00(예정)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나) 2024노869 뇌물공여등 2024. 8. 12. 접수	김성태 김○○		2025.01.14. 16:30(속행) 2025.03.18. 14:00(기일변경) 2025.03.18. 15:00(속행) 2025.05.13. 14:00(기일변경) 2025.05.13. 14:30(속행) 2025.06.24. 14:00(속행) 2025.07.22. 14:00(속행) 2025.09.02. 14:00(기일변경) 2025.10.21. 14:00(속행) 2025.12.09. 14:00(속행) 2026.03.10. 14:00(기일변경) 2026.03.13. 14:00(기일변경) 2026.04.10. 14:00(예정)	

1-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등은 35 ~ 40면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474 / 수원고등법원 2026노370]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다) 2024고합47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 2024. 6. 12. 접수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2024. 8. 27. 10:00(속행) 2024. 10. 8. 10:00(속행) 2024. 11. 12. 10:00(속행) 2024. 12. 17. 10:00 (준비기일종결) 2025. 4. 23. 11:30(속행) 2025. 5. 27. 14:00(속행) 2025. 7. 22. 10:30 (준비기일종결)	2025. 9. 9. 10:00(속행) 2025. 11. 4. 10:00(속행) 2026. 1. 13. 14:00(속행) 2026. 2. 12. 14:00(일부 종결 및 판결선고, 일부 속행) 2026. 3. 9. 14:00(속행) 2026. 4. 6. 14:00(예정) 2026. 5. 11. 14:00(예정)	※ 일부선고 3. 김성태 - 공소기각판결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다) 2026노370 뇌물공여등 2026. 3. 6. 접수	김성태			

보도자료 2024. 6. 7.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뇌물수수 등 사건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4. 6. 7.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에 대하여 징역 8년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억 5,000만 원 등을 선고하였다.

1. 주문

- 피고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1년 6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 징역 8년,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2] /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무죄
- 피고인 방○○[쌍방울그룹 부회장]: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뇌물공여죄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2021. 10.경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각 무죄

2. 범죄사실 요지

가. 피고인 이화영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인 방○○ 및 김○○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문○○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7,637,915원 상당의 뇌물수수

※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방○○, 김○○[쌍방울그룹 회장], 안○○ 및 쌍방울그룹 직원 정○○, 심○○, 김△△, 지○○, 송○○, 노○○ 등의 진술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경기도 내부 문건 등에 의하여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수수 인정

※ 피고인 이화영이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인 방○○ 및 김○○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2) 천원 이하 버림, 이하 같음

않아 무죄

2) 정치자금법 위반

● 피고인 방○○ 및 김○○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문○○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18,312,928원 상당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방○○, 김○○, 안○○ 및 쌍방울그룹 직원 정○○, 심○○, 김△△, 지○○, 송○○, 노○○, 한○○, 김◇◇ 등의 진술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차량 입출차 내역 등에 의하여 피고인 이화영의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

※ 경기도 평화부지사 취임 전 일부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부분은 피고인 이화영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기간 동안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은 피고인 이화영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무죄

3) 외국환거래법 위반

● 피고인 방○○ 등과 공모하여,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미화 합계 164만 달러[3]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

※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방○○, 김○○, 안○○, 김▽▽ 등의 진술과 국가정보원 문건, 경기도 내부 보고서, 김□□ 작성 회의록 등에 의하여 피고인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인정

※ 환치기 방법으로 180만 위안을 국외로 수출하였다는 부분은 지급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

※ 피고인 방○○ 등과 공모하여,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미화 합계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였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

● 피고인 방○○ 등과 공모하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미화 합계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

※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방○○, 김○○, 김◇◇의 진술 및

3) 만 달러 이하 버림, 이하 같음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의 진술과 경기도 공문,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의 메모, 북한 송□□ 작성 영수증 등에 의하여 피고인 이화영의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인정

※ 환치기 방법으로 70만 달러를 국외로 수출하였다는 부분은 지급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

※ 피고인 방○○ 등과 공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리□□을 통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미화 합계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였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

4) 증거인멸교사

● 김○○ 등과 공모하여,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이화영 및 김○○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

※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김○○, 피고인 방○○, 쌍방울그룹 직원 지○○, 송○○, 정○○ 등의 진술과 관련자들의 형사판결문,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피고인 이화영의 증거인멸교사 인정

나. 피고인 방○○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 피고인 이화영에게 합계 107,637,915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합계 218,312,928원 상당의 정치자금 부정기부, 위와 같이 이화영에게 뇌물,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합계 224,557,428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업무상배임 및 회사의 자금 101,393,415원을 횡령

●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여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김○○의 도피 생활을 돕는 등으로 범인도피

● 피고인 이화영과 공모하여,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

※ 피고인 방○○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

※ 피고인 방○○이 2021. 10.경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는 부분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

※ 나머지 무죄부분은 피고인 이화영과 동일함

3. 양형 이유

가. 피고인 이화영

①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1년 6월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 징역 8년, 벌금 2.5억 원, 추징 3억 2,595만 원

-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 또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였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음.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음
-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 다만, 약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나. 피고인 방○○

①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② 뇌물공여죄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7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2024노620 사건

2024. 12. 19.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4노620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선고기일 : 2024. 12. 19.(목) 14:00

◆ 선고결과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화영]

· 피고인을 판시 2022고합733 사건 제1의 다.항 죄(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 피고인으로부터 325,950,843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방○○]

· 피고인을 판시 2022고합733 사건 제2의 나.항 죄(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2022고합733 사건 제2의 나.항 죄에 대하여는 1년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항소심 판단 결과 정리

원심 **2022고합733호** 사건				
피고인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항소심**
피고인 이화영	특가법위반 (뇌물)	평화부지사 재직 중 뇌물수수	유죄	**원심 결론 유지**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중 뇌물수수	이유 무죄	**원심 결론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평화부지사 재직 前後 법인카드 제공, 문○○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법인차량 제공 등	유죄 (일부 이유 무죄)	**원심 결론 유지**
피고인 방○○	뇌물공여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유죄	**원심 결론 유지**
		킨텍스 대표이사에 대한 뇌물공여	이유 무죄	**원심 결론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김성태와 공모하여 이화영에게 정치자금 기부	유죄 (일부 이유 무죄)	**원심 결론 유지**
	업무상배임	이화영에게 법인카드 등 제공하여 쌍방울 등에 손해를 가함	유죄 (일부 이유 무죄)	**원심 결론 유지**
	업무상횡령	문○○에 급여 지급하여 쌍방울 자금 횡령	유죄	**원심 결론 유지**
	증거인멸교사	2021. 11. 10.경 재무팀 직원 등에게 자신과 이화영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유죄	**원심 결론 유지**
	증거은닉교사	2022. 6. 20.경	유죄	**원심 결론 유지**

		엄○○에게 자신과 김성태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	김성태 도피 도움	유죄	**원심 결론 유지**
원심 2023고합185호 사건				
피고인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항소심**
피고인들	외국환거래법위반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외화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유죄 (일부 이유 무죄)	**원심 결론 유지** *일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 항소 ×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외화 무허가 지급	무죄	**원심 결론 유지** *공소장 변경 有
		방북 비용 대납 목적 외화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유죄 (일부 이유 무죄)	**원심 결론 유지** *일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 항소 ×
		방북 비용 대납 목적 외화 무허가 지급	유죄 (일부 이유 무죄)	**원심 결론 유지** *공소장 변경 有
원심 2023고합229호 사건				
피고인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항소심**
피고인들	증거인멸교사	2021. 10.경, 김성태, 지○○과 공모하여 이화영, 김성태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이화영 : 유죄 (일부 이유 무죄) 피고인 방○○ : 무죄	**원심 결론 유지**
피고인 이화영	증거인멸교사	2021. 11.경, 김성태, 방○○ 및 김○모와 공모하여 자신 및 김성태, 방○○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유죄 (일부 이유 무죄)	**원심 결론 유지**

◆ 피고인 이화영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주요 내용

□ 특가법위반(뇌물)의 점 부분

○ 이 사건 법인카드는 문○○이 쌍방울로부터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 원심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김성태, 방○○로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 법원 역시 원심이 든 사정과 다음의 추가 사정 등에 기초하여,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 쌍방울이 직원이 아니거나 형식적으로 채용되었을 뿐이어서 쌍방울의 업무를 한 바 없는 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할 이유가 없음

  · 피고인이 쌍방울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용권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함

○ 문○○이 수령한 급여를 피고인이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원심은, 문○○이 피고인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이 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생활비를 부담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문○○이 수령한 급여를 피고인이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 법원 역시 원심이 든 사정과 몇 가지 추가 사정에 기초하여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대하여

- 원심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담당하

였고, 김성태 등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함

- 이 법원 역시 원심이 든 사정과 다음의 추가 사정 등에 기초하여,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의사를 북한 측에 표명하거나 협력사업에 대한 통일부장관 승인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부분

○ 경기도 평화부지사 취임 전 기간(2018. 5. 15.부터 2018. 7. 9.까지) 유○○에게 지급된 급여, 법인카드 및 카니발 차량 지원 부분에 대하여

- 원심은 여러 사정을 들어, 운전기사 유○○에게 지급된 이 부분 급여 등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임 후 기간(2020. 1. 14.부터 2022. 8. 25.까지) 피고인에게 제공된 법인카드, 법인차량, 문○○ 급여 부분에 대하여

- 원심은,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임 이후인 2020. 1. 14.부터 2022. 8. 25.까지 공직선거의 후보자, 정당의 간부였거나 또는 적어도 이에 준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김성태도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부분 법인카드 등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 법원 역시 원심의 든 사정과, 피고인이 김성태 등으로부터 렉서스 차량을 제공받아 운행하였다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점,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카드 사용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의 사정 등에 기초하여,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부분

○ 피고인이 스마트팜 비용 50억 원의 지급을 김○혜 등에게 약속한 적이 없고, 김성태가 대납하였다는 자금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원심은, 피고인이 북한 측에 스마트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점,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스마트팜 사업 진행 독촉이 있었던 점, 북한 김○혜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쌍방울그룹의 전후 움직임 등 여러 사정을 들어, 김성태, 방○○이 피고인으로부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북한 송○○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 법원 역시 원심이 든 사정과 다음의 추가 사정 등에 기초하여,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 2018. 10. 29.자 국가정보원 문건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북한 측 인사 김○철 등으로부터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는 등 성의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 김성태, 방○○은 원심 및 이 법원에서의 법정 진술은 그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진술은 당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 안부수 등 여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 김성태, 방○○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나노스 주가 부양 등을 노리고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방북 비용 대납 목적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부분

○ 김성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닌 김성태 본인의 단독 방북을 위하여 북한 측에 자금을 지원한 것일 뿐, 피고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원심은, 김성태, 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김성태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 및 이에 피고인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 법원 역시 원심이 든 사정과, 다음의 추가 사정 등에 기초하여,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 김성태, 방○○은 당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심 법정 진술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 김성태, 방○○의 2019. 5. 및 2020. 1. 출입국 기록, 피고인의 2023. 7. 21. 자 옥중 서신의 내용, 2019. 7.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국제대회 기간 중 김성태의 공개 발언, 채○○이 작성한 출장비용 정산서 기재 내용,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시가와 방북 비용 협의 및 지급 시기의 관계, 경기도의 2019. 12. 13.자 중국 현안 출장 결과보고서의 내용, 안부수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 김성태, 방○○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사정들이 존재함

□ 증거인멸교사의 점 부분

○ 피고인은 김성태 등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거나 김성태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원심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김성태 등에게 법인카드 자료의 처리를 부탁하여 김성태가 지○○ 등으로 하여금 이 부분 증거인멸행위를 하도록 교

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 피고인 방○○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주요 내용

□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부분

○ 이화영에 대한 법인카드 지급 등이 뇌물공여에 해당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원심은, 이화영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

- 이 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의 점 부분

○ 이화영에 대한 뇌물공여 등은 모두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통한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쌍방울그룹 전체의 경영상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LHY'라는 이니셜 등으로 은밀하게 관리한 점, 문○○은 전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급여를 지급한 점, 이화영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에 관하여 쌍방울그룹이 자금 사용 관련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주요 내용

□ 피고인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중 특가법위반(뇌물)죄 및 피고인 방○○의 뇌물공여 부분

○ 원심은, 쌍방울그룹이 킨텍스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시기나 상황이 아니었던 점, 킨텍스는 대북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 이화영이 김성태, 피고인 방○○으로부터 킨텍스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법인카드 등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함

○ 이 법원 역시 원심이 든 사정과 몇 가지 추가 사정 등에 기초하여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중 일부 이유 무죄 부분

○ 원심은, 피고인 이화영의 경기도 평화부지사 취임 전 수수 이익 중 이 사건 제1, 2카드 부분에 대하여 그 이익 제공이 피고인 이화영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기간 동안 수수 이익 부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 이화영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함

○ 이 법원 역시 원심이 든 사정과 몇 가지 추가 사정 등에 기초하여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 피고인들에 대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500만 달러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부분

○ 원심은, 이 사건 500만 달러를 직접 수령한 사람은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인데, 위 500만 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나 김성태 등에게 위 500만 달러를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 이 법원도 원심이 든 사정과 다음의 추가 사정 등에 기초하여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조선아태위를 조선노동당의 산하단체 또는 위장단체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제대상자 지정에 관한 기획재정부고시가 제한적,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음

- 김성태, 피고인 방○○이 이 사건 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위 송○○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3장의 작성명의인은 모두 '아태(조선아태위) 부실장 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은 조선아태위 부실장 지위에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피고인들에 대한 방북 비용 관련 100만 달러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부분

○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부분 100만 달러를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위 100만 달러를 조선노동당에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함

○ 이 법원 역시 원심이 든 사정과 몇 가지 추가 사정 등에 기초하여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이화영

○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

○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를 그

만둔 후에도 계속하여 법인카드, 수행비서의 급여, 차량 및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는데, 그 금액이 2018. 5.경부터 2022. 8.경까지 4년간 합계 3억 2,000만 원가량이고, 그중 경기도 정무부지사 및 평화부지사 재직 중 뇌물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1억 700만 원에 달함

○ 피고인은 2015년경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공직에 취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하였고, 2019. 5. 12. 쌍방울그룹과 북한 민경련 사이의 합의가 성립된 직후 수행비서를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수령하게 하기도 하였음

○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범행은 피고인이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휴대수출하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선노동당에 전달되도록 하였다는 것임

○ 비록 위 범행의 실행행위는 김성태가 하였고, 비용 대납 경위에는 쌍방울그룹 자체의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 또한 그 지급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을 한 책임이 있음

○ 이 사건 증거인멸교사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쌍방울그룹 직원들이 증거인멸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음

○ 다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았음

○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음

○ 김성태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북 송금을 결심하고, 실행하기는 하였

으나 그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의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음

○ 증거인멸교사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쌍방울그룹 내부의 구체적인 증거인멸행위는 김성태, 방용철의 주도로 이루어졌음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음

□ 피고인 방○○

○ 피고인은 김성태와 공모하여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약 1억 700만 원을 공여하고, 이화영에게 법인카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18,312,928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

○ 피고인과 이화영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교사하였고, 김성태의 해외도피 생활에 도움을 주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

○ 또한 피고인은 이화영, 김성태와 공모하여 다수의 회사직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휴대수출하였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책임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인 구성요건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김성태의 지시에 따라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음

대법원 2025도810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前경기도 평화부지사인 피고인 이화영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인 피고인 방○○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810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이화영은 쌍방울 그룹 회장 김○○과 부회장 방○○로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킨텍스 대표이사의 각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음

▣ 피고인 방○○은 위와 같이 김○○과 공모하여 피고인 이화영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 이러한 뇌물 및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피해자 ㈜쌍방울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고(21. 11.), 증거은닉을 교사하고, 범인인 위 김○○을 도피시킴

▣ 피고인들은 위 김○○과 공모하여, 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미화 500

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인 김영철에게 지급하고 이를 통하여 조선노동당에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미화 1,645,040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수출하였고, ②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미화 300만 달러를 위 김영철에게 지급하고 이를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미화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수출하였음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증거인멸을 교사하고(21. 10.), 피고인 이화영은 김△△ 등과 공모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함

나. 소송경과

▣ 제1심 및 원심판단의 요지

공소사실			제1심	원심
이화영	유죄	정치자금법위반 부분(무죄 부분 제외) 분리선고	징역 1년 6월	징역 8월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각 무죄 부분 제외)	징역 8년 및 벌금 2.5억 원	징역 7년 및 벌금 2.5억 원
		추징	325,950,843원	325,950,843원
	무죄	스마트팜 관련 무허가 지급 외국환거래법위반	무죄(주문)	항소기각
		스마트팜 관련 19. 1.경 180만 위안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외국환거래법위반	이유무죄	공소사실 철회
		스마트팜 관련 19. 1.경 200만 달러 미달액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외국환거래법위반	판단누락	공소사실 철회
		스마트팜 관련 19. 4.경 300만 달러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외국환거래법위반	이유무죄	공소사실 철회
		방북 비용 대납 관련 70만 달러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외국환거래법위반	이유무죄	공소사실 철회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중 뇌물, 평화부지사 재직 전 법인카드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평화부지사 재직 중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부분(각 유죄 부분 제외)	이유무죄	이유무죄
방○○	유죄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분리선고(무죄 부분 제외)	징역 6월, 집유 1년	징역 6월, 집유 1년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21.11.10.),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각 무죄 부분 제외)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무죄	스마트팜 관련 무허가 지급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21.10.경)	무죄(주문)	항소기각
		스마트팜 관련 19. 1.경 180만 위안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외국환거래법위반	이유무죄	공소사실 철회
		스마트팜 관련 19. 1.경 200만 달러 미달액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외국환거래법위반	판단누락	공소사실 철회
		스마트팜 관련 19. 4.경 300만 달러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외국환거래법위반	이유무죄	공소사실 철회
		방북 비용 대납 관련 70만 달러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외국환거래법위반	이유무죄	공소사실 철회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중 뇌물공여, 평화부지사 재직 전 법인카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평화부지사 재직 중 정치자금법 위반 및 위 무죄 부분 관련 업무상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21.11.경)(각 유죄 부분 제외)	이유무죄	이유무죄

▣ 검사 및 피고인 이화영이 각 상고하였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주요 쟁점

▣ 공소제기 후 작성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김○○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

▣ 뇌물죄의 증명 및 성립 여부

▣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증명 및 성립 여부

▣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증명 및 성립 여부

▣ 일부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공소사실 특정 여부

나. 판결 결과

▣ 쌍방 상고기각(원심판결 확정)

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가 공소제기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나 증거인멸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공소사실의 특정,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및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인멸죄에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보도자료 2024. 7. 12.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의 뇌물공여 등 사건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4. 7. 12. 전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 등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

1. 주문

- 피고인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뇌물공여죄 등 징역 2년 6월 /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 관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
- 피고인 김○○(쌍방울그룹 이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범죄사실 요지

가. 피고인 김성태

1) 외국환거래법 위반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미화 합계 164만 달러[4]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

※ 피고인 김성태는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

※ 다만, 환치기 방법으로 180만 위안 및 300만 달러를 국외로 수출하였다는 부분은 지급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

4) 만 달러 이하 버림, 이하 같음

※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목적으로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미화 합계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였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

●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미화 합계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

※ 피고인 김성태는 230만 달러 상당의 지급수단을 국외로 수출하였다는 범죄사실 인정. 다만, 환치기 방법으로 70만 달러를 국외로 수출하였다는 부분은 지급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

※ 피고인 김성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북한 송□□을 통해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였다'는 부분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김성태 및 방○○의 관련사건 진술, 경기도 내부 문건 등에 의하여 피고인 김성태의 이 부분 외국환거래법 위반 인정

※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리□□을 통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미화 합계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였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

2) 뇌물공여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문○○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07,637,915원 상당의 뇌물공여

※ 피고인 김성태는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

※ 피고인 김성태가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이화영에게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3) 정치자금법 위반

● 이화영에게 법인카드, 법인차량을 제공하거나 문○○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18,312,928원 상당의 정치자금 부정기부

※ 피고인 김성태는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김성태 및 방○○, 유○○ 등의 진술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화영의 경력 및 정치활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 김성태의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

※ 경기도 평화부지사 취임 전 이화영에게 일부 법인카드를 제공한 부분은 이화영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화영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기간 동안 정치자금 부정기부 부분은 이화영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무죄

4)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 이화영에게 합계 107,637,915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합계 218,312,928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합계 224,557,428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업무상배임 및 회사의 자금 101,393,415원을 횡령

※ 피고인 김성태는 불법영득(이득)의 의사 및 고의가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 김성태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인정

※ 경기도 평화부지사 취임 전 이화영에게 일부 법인카드를 제공한 부분은 불법이득의 의사와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

5) 증거인멸교사

●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김성태 및 이화영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

※ 피고인 김성태는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미화 합계 500만 달러 상당을 북한 조선아태위에 지급함으로써 미승인 협력사업 시행

※ 피고인 김성태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신 지원하는 행위가 위 법률이 적용되는 '협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스마트팜 사업은 수년간 지속예정되어

'협력사업'에 해당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은 '시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김성태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지급 관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미화 3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는 부분은 협력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

나. 피고인 김○○ (외국환거래법 위반)

●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

※ 피고인 김○○는 범죄사실 인정

※ 김성태 등과 공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송□□, 리□□을 통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미화 합계 3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

※ 환치기 방법으로 180만 위안, 300만 달러, 70만 달러를 각 국외로 수출하였다는 부분 및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미화 합계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위 피고인 김성태와 같은 이유로 각 무죄

3. 양형 이유

가. 피고인 김성태

①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② 뇌물공여죄 등: 징역 2년 6월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함

● 또한,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 초기 상당기간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상횡령·배임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함

- 다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나. **피고인 김○○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김성태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474 피고인 김성태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수원지방법원(재판장 부장판사 송병훈)은 2026. 2. 12. 선고된 2024고합474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72 공소사실 중 무허가 외화 지급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이하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라 한다)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뇌물공여죄)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1. 2023고합72 사건 중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 2023고합72 사건 중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사건 진행 경과

- 2023. 2. 3. 공소제기
- 2024. 4. 19. 공소장변경
- 2024. 7. 12. 제1심 판결
- 현재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4노869) 계속 중

▣ 이 사건 진행 경과

- 2024. 6. 12. 공소제기
- 2026. 2. 12. 제1심 판결

▣ 2023고합72 사건 중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뇌물공여) 비교

명목	금액	죄명	범행일시	장소	상대방	금액 귀속주체
스마트팜 비용	200만 달러	외국환거래 법위반죄	2019. 1. 24.	중국 심양 (능라도 식당)	김영철 (송명철 경유)	조선노동당
		뇌물공여죄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300만 달러	외국환거래 법위반죄	2019. 4. 6(150만 달러) 2019 4. 11.(150만 달러)	중국 광저우	김영철 (송명철 경유)	조선노동당
		뇌물공여죄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방북비용	200만 달러	외국환거래 법위반죄	2019. 12. 1.	중국 심양 (서머셋 호텔)	김영철 (송명철 경유)	조선노동당
		뇌물공여죄	2019. 11. 하순 ~2019. 12. 1.		송명철	조선노동당
	100만 달러	외국환거래 법위반죄	2019. 7. 2020. 1.	필리핀 마닐라 중국 심양	리호남	조선노동당
		뇌물공여죄	2019. 7. 하순경(70만 달러) 2019. 11. 하순~ 2019. 12. 1. (30만 달러)		리호남	리호남

▣ 관련 법령

●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 관련 법령[구 외국환거래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3. 제15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제15조(지급절차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뇌물공여죄 관련 법령(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40조는 '상상적 경합'이란 표제 하에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한 개의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형법에 정의 규정이 없어 학계에서는 그 해석방법으로 '자연적 관찰방법'과 '구성요건적·법적 관찰방법' 등이 대립한다. 그러나 '한 개의 행위'란 사회적 일반인의 생활경험을 기준으로 사실로서 존재하는 자연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형법이 '죄'와 '행위'를 구분하고 있듯이(형법 제37 내지 40조 참조) '죄수', 즉 일죄인지 수죄인지를 판단하는 '죄수론'과 수죄가 성립한 경우의 처벌 문제인 '경합론'은 구별된다. 즉 죄수판단을 거쳐 수죄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 경합관계(상상적 경합관계 또는 실체적 경합관계)의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죄수결정은 경합관계의 판단에 있어 선결문제이다. 이때 '죄수론'은 인간의 행위가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하였는지, 그 형태는 어떠한지 등을 구성요건적 해석을 통해 밝히는 범죄론의 마지막 영역이므로, 죄수판단에서는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적 불법과 책임을 세밀하게 포착해 하나의 행위를 수죄로 평가하는 이중적인 평가도 가능하다[대법원 역시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반면, 경합판단은 죄수판

단에서 평가한 구성요건적 불법과 책임을 이중평가금지라는 양형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죄수판단에서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반영한 구성요건적 불법과 책임을 이중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② 형법 제40조는 포괄일죄나 법조경합으로서 일죄가 부정되어 수죄로 판단된 어떤 행위가 한 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는 한 개의 행위가 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수죄의 법정형을 단순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경우 책임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입법자가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죄수판단에 있어 보호법익을 포함한 불법구성요건이라는 기준을 통해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수죄의 경합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또다시 규범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규범적 판단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40조의 입법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③ 동일한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는 그 의미를 달리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 형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어떠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제115조, 제125조, 제131조 제1항, 제245조, 제297조의2)을 여럿 두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 '행위'를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형법에서 사용된 '행위'라는 용어는 구성요건적·법적 관찰방법에 따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일반인의 생활경험을 기준으로 사실로서 존재하는 자연적 행위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한 개의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④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7294 판결 등). 또한 법률해석은 일반 국민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이는 경합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일반 국민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처벌받았다면 그 행위로 더 이상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경합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보호법익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범적 판단을 적용한다면, 일반 국민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합관계를 알 수 없어 처벌받은 행위로 또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지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⑤ 검사의 공소제기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더라도(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조), 준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적용 가능한 불법구성요건을 모두 검토해 한꺼번에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이 여러 번 형사재판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경합문제가 자연관찰적 방법이 아닌 구성요건적·법적 관찰방법을 통해 판단된다면, 법률전문가인 검사 역시 경합문제를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어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하여 여러 번 공소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방대한 조직과 법률지식을 갖춘 검사가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란 미명 하에 규범적 판단을 달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다. 이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 반한다. 법원 역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죄명만 달리해 다시금 재판을 해야 하는 등 소송경제에도 반한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수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양 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①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허가 없이 외국환을 지급하는 자를 처벌하는 죄이고,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죄이다. 위 각 죄에서 행위는 '지급'과 '공여'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지급'을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줌'으로, '공여'를 '어떤 물건이나 이익 따위를 상대편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표준국어대사전상 '지급'과 '공여'의 사전적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양자는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그 표현만을 달리한 것으로 그 실질은 모두 동일하다.

②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지급 상대방이 조선노동당인 반면, 뇌물공여죄는 공여 상대방이 조선아태위(스마트팜 비용)와 조선노동당 및 리호남(방북 비용)으로 양 죄가 일치하지 않으나,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행위는 피고인이 송명철에게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및 방북비용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각각 건네고, 리호남에게 방북비용 명목으로 100만 달러를 건넨 것이고, 뇌물공여죄의 행위도 이와 동일하다. 즉 지급과 공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동일하다(김영철, 송명철, 리호남은 모두 북한 측 인사로 피고인이 북한 측 인사에게 최초 돈을 건넸다면 그 이후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면, 금액 귀속주체보다는 금액을 제공의 직접 상대방이 동일한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양 죄는 행위자, 범행일시, 장소, 금액이 정확히 일치한다.

③ 설령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3호, 제15조 제2항과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의 문언 자체에 의할 때 양 죄의 행위태양이 달라 실행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각각의 실행행위가 부분적으로만 중첩되거나 동일한 경우이더라도 그 실행행위가 '각 구성요건의 주요부분 또는 필수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행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대법원 1996. 4. 12. 95도231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 죄에 있어 행위자가 모두 피고인이고, 범행일시, 장소,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모두 동일하다(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지 못할 이유는 없다).

4. 판결 의의

- ▣ 죄수판단과 경합판단을 구분한 후, 경합판단 시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한 개의 행위'란 사회적 일반인의 생활경험을 기준으로 사실로서 존재하는 자연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임
- ▣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뇌물공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설시한 최초의 판결임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리호남이 필리핀 가서 언제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도착하자마자 받았는지, 도착 이후에 받았는지? 1심 판결 읽어봤는지? 신뢰할 만 하다고 되어있는데 신뢰할 수 없음.	○ 알지 못함.
○ 상기한 금감원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함.	○ 알겠음.
○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 당한 이유 알고 있는지?	○ 재판중인 사안에 영향 미친다면 말씀드리기 곤란함.
○ 수원지검에서의 진술세미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2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50회 이상 세미나 한 것임. 50회 이상 세미나 하고도 진술서 남기지 않은 것은 파기환송 사건에 못지않게 위법성이 크다고 생각함.	○ 재판중인 사안에 영향 미친다면 말씀드리기 곤란함.
○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선고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는 것인지?	○ 그렇지 않을 듯함.
○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를 녹취한 내용에 대하	○ 답변할 사항이 아닌 듯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 아닌지?	○ 그러함.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잘못된 것인지?	○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존중함.
○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마무리하면 될 것인데 국회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불법 아닌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률의 취지가 존중되기를 바람.
○ 녹취록을 들었을 때 박상용 검사가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지 서민석 변호사가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지?	○ 녹취록상 대화의 상당 부분은 검사가 말하고 있음.
○ 2025. 9. 22.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한 후 진술세미나 또는 연어파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위증에 해당하나?	○ 재판 중이므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검사가 변호인에게 회유하는 내용으로 전화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임.
○ 이화영 판결문에는 김성태를 건실한 중견기업의 대표로서 주가조작이나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음. 김성태의 전과 등 전력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	○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는지? ○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의 변론을 맡았으며, 2022년 수원지검의 쌍방울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밀이 유출되어 김성태의 해외 도피와 증거인멸로 이어졌음. 김성태 전 회장이 2023년 1월 압송되기 전 이미 검찰과 상호 소통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남석 변호사의 역할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됨. ○ 김성태 씨가 접견 온 부하들에게 했던 말 등을 고려할때 결국 김성태 씨는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실을 덮어준 것을 계기로 박상용 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것임. ○ 수원지검은 이미 2022년 말부터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나노스 주가 부양을 위한 시세차익 목적이었음을 인지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가조작 혐의를 덮어주는 대가로 김성태를 회유한 것임. ○ 국정조사의 여섯 가지 목적과 관련하여, 금일 국정조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녹음 등에 기반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밝혀졌다고 생각함. 이에 법원 행정처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자체 자정노력 및 감찰을 실시하시길 당부함.	
○ 금융감독원장이 쌍방울의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판결문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좋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당초에 수원지검은 쌍방울 주가조작에 대한 인지가 있었으나, 수사기밀을 쌍방울에 사전 유출하고 김성태는 박상용 검사가 원하는 진술함으로써 쌍방울 주가조작을 덮었음.	
○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 판단에 중요한 검찰 주장 반대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누락된 채 진행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는지?	○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함.
○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 판단에 매우 중요한 물증들이 많이 누락된 채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지?	○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음.
○ 금감원 및 법무부 보고내용을 종합할 때, 김성태 등 핵심 관계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로 털어주는 등의 편의 제공이 진술을 회유·조작하거나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	○ 증거의 취사 선택의 문제이므로 그런 인상을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데 그런 인상을 받으셨는지? ○ 판결문에는 김성태를 주가조작 의도가 없는 건실한 사업가로 판단했으나, 금감원은 유죄 혐의를 명확히 확인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으므로 판결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면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하는 방법임.
○ 지금까지 진술세미나, 연어 제공, 쌍방울 직원들 수발 등의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박상용 검사와 법무부의 답변이었으나, 금일 구치소 교사들이 연어회덮밥을 수사관과 같이 내려가서 들고 올라왔다고 증언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지?	○ 알지 못함.

3) 국가정보원

가) 보고내용: 2급 비밀로 기관보고 시 별도 배포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 이종석 증인(국가정보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정원 문건에 협조자가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에 취업하고, 나노스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안부수를 배제하는 결정이 있었으며, 대남 공작원 리호남이 대북사업을 통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부양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존재함. 해당 자료는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닌지?	○ 그렇게 보고 있음.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직접증거 없이 관련자 진술에 의존해 구성되고,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안부수 등을 통해 진술 형성에 관여했다는 내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말씀하신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하며,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들로는 대북송금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일반 직원들이 검찰에 일방적으로 협조한 것도 아님. 국정원의 과거 문제 역시 일반 직원이 아니라 정무직의 책임이 컸던 만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서 애정 어린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람.
○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정	○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원장의 입장에서 2급 비밀 서류 등을 국정조사에 다 제출해도 되는지?	한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고 보았음.
○ 휴민트 정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공작을 할 가능성이 있진 않은지?	○ 그 사람의 직접 진술이 아닌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의 진술임.
○ 기관보고에 따르면, 대북송금이 쌍방울 측의 일련의 대북사업 과정으로 보여질 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 맞는지?	○ 그렇게 보고 있음.
○ 국정원에서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보고했으나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들 아닌지?	○ 발언 당시에는 현실성 없다고 판단하였음.
○ 북미정상회담 깨진 이후 김정은이 남한과 절대 이야기 하지 말라 한 시점은? 그런데 이 시점에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추진할 수 있었겠는지?	○ 2019년 여름 이후에는 완전히 끊어짐. 방북 추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음.
○ 대북송금 사건의 큰 구조는 정치검찰과 정치를 추종하는 외부의 국정원 정무직, 공직기강실의 검사 등이 수원지검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가정보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그렇게 생각함.
○ 윤석열 정권 당시 만들어진 현안대응 TF에서 쌍방울 사건을 조사한 바 있는데, 수원지검에	○ 쌍방울이 북한과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돈이 오고 간 것이기 때문에 쌍방울이 아닌 경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는 이러한 국정원 자료 66개 중 13개만 선택해서 가져가고, 대북송금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다른 여러 자료는 가져가지 않은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지?	도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방북 의전 비용 중 200만 달러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 민경련의 송명철에게 주었음.
○ 원장님께서도 참석하신 필리핀 대회에 송명철이 있었는지?	○ 제 기억으로는 있었음.
○ 중국 가서 200만 달러를 받은 사람이 송명철인데, 송명철이 2019년 7월 24일에 필리핀에 와 있었는데, 송명철한테 그 돈을 주면 되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는지?	○ 송명철에게 줘야 함. 사업 파트너가 민경련이기 때문에, 정찰총국 소속인 리호남에게 준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임.
○ 리호남은 출입국기록상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고, 필리핀에 와 있는 송명철한테 주면 되는 것 아닌지?	○ 그러함.
○ 2019년 5월 초, 2019년 8월 28일자 국정원 문서에 의하면, 북한이 경기도를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	○ 알고 있음.
○ 이화영 부지사 부탁으로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했는데 경기도를 배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음.	
○ 2019년 9월 6일 선거무효형을 선고받고 그 이후에 방북 의전 비용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상	○ 국정원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 관련 보고서가 딱 한 편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 경기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식적이지 않음.	간부가 5월에 1심이 나왔을 때는 방북을 추진해보고 싶었는데 2심 결과 때문에 방북은 이제 물 건너 갔다며 허탈해 했다는 내용임.
○ 경기도 대외협력국 문서에 따르면 초청을 해달라는 문구가 있음.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지 않은지?	○ 일반적 문구이며, 다른 지자체도 대북사업을 할 때 현장을 가려면 단장으로서 지사나 시장을 이야기함.
○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은 만나고 싶다는 문구를 넣지 않는지?	○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함.
○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아태평화회의가 있었던 당시 쌍방울 김성태, KH그룹 배상윤이 대회 참석 후 하얏트 정호일 등과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하고 정킷을 운영하는 조폭, 정읍식구파 나홍규에게 수십억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정보를 갖고 있는지?	○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므로 뒤에 출석한 간부(증인)들에게 답변을 받으면 되실 듯함.
○ 국정원 TF에서 쌍방울과 관련된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모든 정보를 전수 조사했는지?	○ 전부는 아니고 4개 부서에 대해서 유도윤이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전무하며, 이에 따라 검찰이 2023년 5~6월경 진술 회	○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음. 저희 첩보 정보에 따르면 김성태, 안부수가 2019년 주가 조작했고, 안부수가 나노스 이사로 취임했고, 검찰이 그때 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유 및 조작 기소를 시도하였음. 국가정보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를 위해 돈을 주었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화영과 안부수가 국정원의 가치 있는 정보 협조자로 활동했던 정황이 확인됨. 안부수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북한 접촉은 주가조작 수익 배분을 위한 것이었으며, 리호남 등 북측 인사와 공모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한 현금화 구조를 구축했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와 증언이 존재함. 정작 경기도는 북한으로부터 사업에서 배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가조작 관련 물적 증거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전문진술에만 의존하여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려 한 정치적 기획 수사임.	로 송명철한테 쌍방울이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조작과 대북송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임.
○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 내 현안대응 TF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조사를 하고 작성한 보고서에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연관성이 없었다는 결론이 맞는지? 유도윤 부장검사가 위 보고서의 내용, 즉 경기도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관련성이 없다는 보고서의 내용이나 자료 등은 보내지 않	○ 보고서의 결론은 그러하며, 검찰의 의견과 다른지 확인하지 못하지만 선별적으로 13건을 보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았다는 것인지?	
○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는 자료는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그렇게 생각함.
○ 현 정부 이전에 국정원이 작성한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보니 검찰의 주장에 반하는 상당수가 검찰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맞는지?	○ 그러함.
○ 국정원장 취임 이후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일정한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고, 적어도 균형감 있는 수사는 아니라는 느낌이었는지?	○ 그러함.
○ 쌍방울과 경기도 간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이창연 특별수사관의 감찰 결과보고서는 수원지검에 공식 제출되지 않았는지?	○ 관계가 없어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사업권 획득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사업 관련 정보 등이 재판에는 제출되지 않고 국정원에서 다수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인지?	○ 그러함.
○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는 이야기와 관련해, 이를 받았다는 리호남은 해당 시기 김성태가 줬다는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
○ 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하여	○ 그 당시 우주영상으로 확인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실제로 황해도 지역에 스마트팜이 건설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었음.
○ 국정원의 보고에 의하면 리호남은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명여권을 사용하여 이동하였으며, 7월 26일부터는 또 다른 제3국에 체류했다는 것인지?	○ 그러함.
○ 500만 불, 300만 불이 실제로 송금되었다는 것인지?	○ 이는 검찰의 주장이며, 국정원에는 송금 관련 일체의 정보가 없음.

(나) 익명의 증인(국가정보원 직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아태평화회의가 있었던 당시 쌍방울 김성태, KH그룹 배상윤이 대회 참석 후 하얏트 정호일 등과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 2023년 2월 해외에서 입수한 첩보에 나와 있음.
○ 70억 원은 리호남에게 준 게 아니라 바카라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 아닌지? 거액 손실의 첩보는 갖고 계신 것인지?	○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수십억 원의 채무를 졌다는 정보는 자료를 통해 확인했고 가지고 있음.

4)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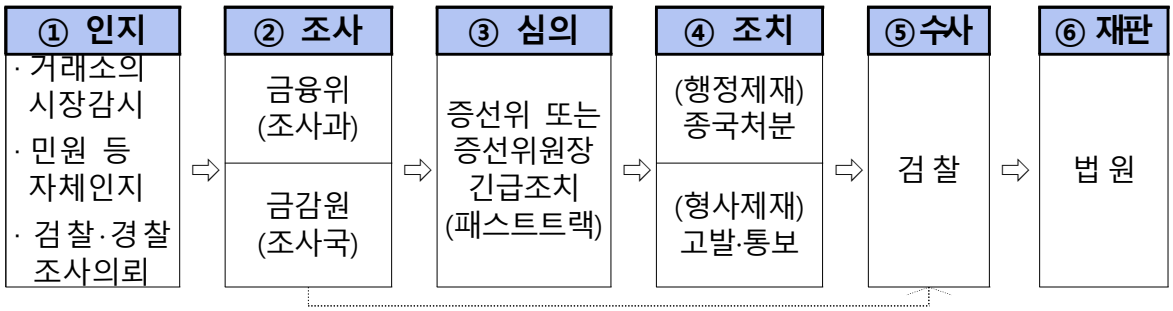
가) 보고내용

1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개요 및 절차

□ **(규제) 자본시장법**은 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시세조종, 부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금지**

□ **(처리절차)** 불공정거래 조사는 **①사건인지** → **②조사 실시** → **③증선위 심의·의결** → **④조치**로 진행

○ **검찰 수사 진행중** 사건,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사건,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검찰에 통보**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 진행 중 사건 등의 경우 증선위원장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

□ **(조사업무 성격)**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라는 행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이자, **형사절차의 사전적 성격**이 동시에 존재

○ 과징금 및 금융투자업자 제재 등 **행정제재**는 **증선위 의결**로 **종결**되나, **대부분**이 형사벌 사안으로 **검찰**로 **고발** 및 **통보**

2 쌍방울 그룹 및 관계자 조사 진행경과

□ **(검찰 조사요청)** ‘22.11.17. 검찰(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조사 실시**를 **요청**

□ **(금감원 조사)** ‘22.11.24. **금융감독원**은 쌍방울 등 관계사에 대해 **조사 착수**

□ **(조사결과 처리)** ‘23.8월 **금융감독원**은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절차**를 통해 **검찰**에 조사결과를 **통보**

※ 구체적인 조사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 이찬진 증인(금융감독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쌍방울이 대북사업 부실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유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보고한 것이 맞는지?	○ 그렇게 보고 있음.
○ 검찰에서 김성태 사건 관련 금감원 자료를 가져가지 않은 이유는?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금감원의 의견은?	○ 잘 알지 못함. 6월 말에나 연락이 와서 8월에 전달하였음. 기소 의견이었고 자료정리를 했으나 가져가지 않았음.
○ 검찰에서 김성태와 관련한 금	○ 잘 알지 못함. 6월 말에 연락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융감독원의 자료를 가지고 가지 않았던 이유는?	이 와서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음.
○ 조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 유죄 취지로, 당연히 기소될 것으로 생각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을 인정했는데 검찰이 기소 시 그걸 뺀 것이 아닌지?	○ 금융감독원에서는 관련하여 자료를 정리했는데, 검찰에서 자료를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2023. 6. 말 수원지검이 금융감독원에 부정거래 금지 위반, 외환보유액 보고의무 위반, 주요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혐의로 긴급조치 요청(패스트트랙)을 하였으나, 공시의무 위반으로만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시기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고, 배상윤 사건의 경우도 패스트트랙을 요청하였으나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부당이득이 100억에 달하는 큰 사건임.
○ 2018년 김성태의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가 많지 않은지?	○ 과거 금감원에서 조사한 바 있음.
○ 김성태가 상습 주가 조작범으로 확인된 것이 아닌지? 실제 형사처벌범인데도 빠르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 범죄혐의를 국정원이 선택적으로 수사, 기소한 것은 김성태의 수사 협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으로 생각함.	
○ 2022년 11월 17일 수원지검이 금감원에 쌍방울그룹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실시를 요청했고, 11월 24일 즉시 조사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착수 후, 2023년 1월경 조사를 완료하고 수원지검을 방문하여 쌍방울-광림-비비안 3개사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결과를 설명한 사실이 맞는지?	
○ 3개사 부정거래 혐의는 유죄의 충분한 소명이 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가져오면 일체 자료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 맞는지?	○ 금융실명법상 임의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압수수색이 유일한 방법이어서 그렇게 요청하였음.
○ 이후 시간이 도과되었고 검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이 맞는지?	○ 맞음.
○ 이후 6월 30일에 패스트트랙으로 요청을 했고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으로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못 준 것이 맞는지?	○ 패스트트랙으로는 줄 수 없음. 맞음.
○ 검찰은 계속 사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5년 1월에 결국 불기소처분한 것임.	○ 맞음.
○ 결국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혐의를 봐주고 대가로 김성태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이화영을 잡기 위한 진술을 확보했고,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결국 묻어두고 소재로 활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 당시 조사한 부당이득액이 100억원이 넘음. 당연히 중죄로 처리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사건을 가져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후 상황을 금감원이 판단하기가 곤란하나 이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보고받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마스크 공급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무혐의, 쌍방울 계열사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 무혐의에 대해 검찰이 금감원의 자료 비협조 및 수사 착수에 필요한 정보 부족을 사유로 불기소처분한 사례처럼,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은 문제임.	
○ 수원지검의 2022년 11월 16일자 쌍방울 주가조작 관련 정보제공 요청 공문과 2023년 7월 17일자 긴급조치 요청 공문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 후 정보가 제공되었음에도 수원지검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인지? 불기소 처분이 된 시점은 언제인지?	○ 수원지검이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미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요청한 것임. 마무리된 것은 25년 1월임.
○ 1월 30일 검찰에 제출한 금감원 측 자료 제출 바람.	○ 1월 30일 미팅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중간 자료를 바탕으로 구술로 진행되었고 해당 중간 자료는 제출하였음.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주가조작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수원지검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2022년 10월 3일자 수원지검 보고서에는 2018년 12	○ 수원지검에서 15개의 항목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온 것이었고, 자료를 제출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월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을 추진하여 나노스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이후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이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을 하면서, 관련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되었음을 전제로 주가조작 여부 및 그 근거를 밝히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쌍방울 주가조작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보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묻힌 것은 아닌지?	

5) 대검찰청

가) 보고내용

Ⅰ 주요 수사 및 재판 경과

□ 수사 경과

○ 대검찰청은 ’21. 10.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그룹 및 핵심 계열사의 법인자금 횡령 및 자금세탁 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수원지검에 이첩하였음

○ 수원지검은 수사에 착수하여 쌍방울 그룹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였음

○ 이후 수원지검은 ’22. 10. 14.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평화부지사 및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중 쌍방울 前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음

○ ’23. 2. 3. 前 쌍방울 회장을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외환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에 800만 불을 지급하였다는 등 내용의 뇌물공여죄, 정치자금법위반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음

○ ’23. 3. 21.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前 쌍방울 회장과 공모하여 외환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에 800만 불을 지급하였다는 등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하였음

○ ’24. 4. 8. 前 쌍방울 회장을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 800만 불을 지급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하였음

○ ’24. 6. 12. 前 경기도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죄로,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죄로, 前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재판 경과

○ ’24. 6. 7.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쌍방울 법인카드 및 자금 수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징역 합계 9년 6월, 일부 무죄 등)

○ ’24. 7. 12. 前 쌍방울 회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징역 2년 6월 및 일부 무죄 등)

○ ’24. 12. 19.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징역 합계 7년 8월, 일부 무죄 등), 위 판결은 ’25. 6. 5.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

○ ’26. 2. 12. 前 쌍방울 회장의 뇌물공여(대북송금으로 인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는 먼저 기소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행위 태양이 중첩되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으나,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이 달라 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하였음

Ⅱ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한 진상조사

○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공판 과정에서 담당검사로부터 외부음식과 음주를 제공받으면서 진술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위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정황들이 확인되어, ’25. 9. 18.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TF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

○ 인권침해점검 TF에서는 계호 교도관,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총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 중이고, 최근에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가 새로운 녹음파일을 공개하여, 이에 대한 추가 확인도 진행할 예정임

○ 또한,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인권침해점검 TF에 진술 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음

○ 인권침해점검 TF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건의 별건으로 사건이 전환되는 경우를 경험한 적 있는지?	○ 경험한 적 없음.
○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변호인에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녹취파일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누군가 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수사 관행이 일반적인지?	○ 일반적이지 않음. 녹취파일은 저희도 확인중임.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문 녹취파일 요청하고 있음.
○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 거부한 것에 대한 입장은?	○ 참담하고, 그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함.
○ 쌍방울 관계자들이 돈을 살라미로 갖고 나갔다고 했는데, 그 돈은 갖고 나갈 수 없음. 그런데 이 돈을 왜 이화영을 위해 김성태가 돈을 줬다고 했는지 알고 있는지?	○ 공소사실 정도만 알고 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장이나 금감원이 보고한 모든 것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검사는 이제 수사권 없음. 국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함. 막중한 사명감을 갖길 바람.	
○ 1월 17일 김성태가 국내에 압송되고 2월 3일 기소되었는데, 금감원이 검찰에 가서 압색영장 발부받아 가져가라고 한 때가 1월 30일임. 2월 3일 기소범죄 사실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들어가 있었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2월 3일 기소할 때 해당 자료를 포함시키자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아무 관심 없이 묵묵부답으로 돌려보냄. 검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에서 가져온 자료는 기소하지 않고 봐줘야겠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은지?	○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음.
○ 지금 국정조사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조작기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였음.
○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탄핵하는 방어권 보장은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 맞음.
○ 2023.2.16.에 서로 발생시기가 다른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을 묶어서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 사건 발생시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사건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부피가 부족해 억지로 부풀려서 구속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	
○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2023.9.18.에는 백현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하여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음. 이후 9개월 뒤인 2024.6.12.에야당 대표를 엮어서 추가 기소를 하였는데, 이는 이화영 1심 일부 유죄 선고 후 5일 뒤임.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 방어권을 보장받는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었을 것 같은지?	○ 위원님 말씀이라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
○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 이에 따르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쪼개기 기소 또한 공소권 남용인 것 같은데 동의하는지?	○ 재판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임.
○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당부하듯 통화하는 것을 보면, 이재명	○ 그렇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경기도지사를 기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누군가 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검찰의 수사 방식이 이렇게 바뀐 것인지?	
○ 김성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작성하였음에도 검찰에서 해당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고 주가조작으로 기소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음.
○ 검찰의 수사가 사건을 설계하거나 결론을 정해두고 이루어진다면 괜찮은 것인지? 피고인의 변호인 등에서 일정한 방향으로의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 잘못된 것임.
○ 결론을 정해두고 일정한 협조를 구하는 식의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사후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것 아닌지?	○ 그러함.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별건수사 아닌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수사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로 나아간 것 아닌지?	○ 금융정보원의 자료에서 시작된 수사인 건 맞음.
○ 원래 변호인에게 일정한 방향	○ 그렇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으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검찰의 수사인지?	
○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를 들으니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은지?	○ 통화 내용 전체를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음.
○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는 허용되는지?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 이번 국정조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등 본연의 업무에 힘쓰고 있음.
○ 녹취록이 짜깁기된 것으로 들리는지?	○ 지금까지 본 내용으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들림.
○ 인권침해TF 운영 중인데 언제까지 운영될 계획인지? 오늘 확인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국정원과 금감원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 뇌물을 주는 이유는 아쉬운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주는 거고, 또 받는 게 있으니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닌지?	○ 그러함. 직무 대가성이 그것임.
○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변화 과정을 보면, 반복적인 소환과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힘들었을 것임. 그러한 압박 속에서 검찰 수사 방향에 맞는 진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임.	○ 객관의무를 가지고 공소유지에 임하겠음.
○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반복적인 출	○ 법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석요구, 심리적인 압박, 정당한 변호인 조력권 박탈, 선처 암시 등의 과정에서 바뀐 것 아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작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 대검 인권침해 TF의 고두성 검사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보임.	○ 진상조사 TF와 상의해보겠음.
○ 쌍방울 주가조작 유죄혐의 검찰에 통보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묻은 것이 맞는지?	○ 확인하겠음.
○ 쌍방울 주가조작 수사한 검사에 대해 감찰하고 있는지? 바로 감찰할 필요가 있음.	○ 감찰한 적 없음. 살펴보겠음. 지금 단계에서는 감찰을 말할 수 없음.
○ 수원지검 입장문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 살펴보겠음. 진상조사 진행중이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하겠음. 수사대상의 가능성은 열어두겠음.
○ 박상용이 수사기밀 누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박상용 검사의 행동에 검사로서 자괴감이 드는지?	○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박상용 검사의 SNS 게시 건을 살펴보면 근무시간 중에도 게시 중인 것으로 확인됨.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보임. 감찰이 필요함.	○ 정치적 중립성 관점에서 게시물을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함. 신속히 감찰할지 살펴보겠음.
○ 서울고검, 수원고검의 감찰은 대략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국	○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예정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민들이 궁금해 하심. 이미 확인된 것은 순차적으로 빨리 발표해서 국민들이 진실을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음. ○ 김성태 및 김태헌 접견 녹취록에서 검찰의 부당한 행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음. 검사들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국민을 위해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람.	
○ 사법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수사를 박상용 검사 혼자 하였는지?	○ 여러 사람이 하였음.

(나) 주민철 증인(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구체화 됨. 검찰이 특정한 방향의 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한 건 위법한 거래의 시도임.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로 보이는지?	○ 적절한 수사로 보이지 않음.
○ 이화영 부지사는 부장검사에게 불려가 보충질의까지 받았음.	○ 진상조사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 질문은 늘 이재명 당시 대표와 관련된 거였음. 이는 수사 초점이 이재명 당시 대표와 연결되는 진술을 완성하는데 맞춰지는게 아니었는지? ○ 이화영 부지사는 7월 12일 김형태 변호사에게 검찰과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압박 속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기록함. 이러한 이화영 진술 변화가 과연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가공할 압박과 위법한 회유 과정에서 조작된 것이 아닌지?	○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림.

6) 서울고등검찰청

가) 보고내용

Ⅰ 개요

○ 서울고검은 '25. 9. 법무부장관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언 관련 조사 및 결과보고' 지시 및 대검 지시에 따라서, 인권침해점검TF를 구성하고 관련 진상조사와 수사 등을 진행하였음

Ⅱ 주요 경과

○ 주요경과는 다음과 같음

- 법무부장관은 '25. 9. 17. 대검찰청(감찰3과장)에 『이화영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보고』 지시를 하였음 [실태점검기록 송부]

<주요 지시내용>

-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25. 7.말부터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4. 10. 국회 법사위에서 증언한 음식물 제공 등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음
- 위 실태조사 결과, ⅰ) 일부 위법.부당한 수사 정황, ⅱ) '24. 4.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으므로,
- 검찰은 그 진상을 확인하여 비위 발생 여부 및 진상확인 결과 등을 신속히 보고

- 대검은 ’25. 9. 18. 서울고검(감찰부장)에게 『인권침해점검 TF 구성 및 진상조사 확인 및 결과보고』 지시를 하였음 [실태점검기록 송부]

<주요 지시내용>

-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 인권침해 의혹 등 비판이 있으므로, 업무관행 점검·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인권침해점검TF』를 구성하고,

- 위 팀이 법무부장관의 지시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대상자 비위가 인정될 경우『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보고할 것

- 위 지시에 따라, 9. 18. 서울고검 감찰부장(정용환 검사)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점검TF를 구성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음 (현 팀장 : 곽영환 감찰부장)

※ 팀원 :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1명), 40기 부부장 2명 / 정기인사 등 복귀

○ 주요 조사상황은 다음과 같음

- 이후 법무부 실태점검기록, 교도관들 및 쌍방울 관계자 조사 진행

- 10. 2.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 감찰요청서 송부

- 11 5. 비비안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 12 5. 박상웅·방용철·안부수 구속영장(사전) 청구 / 12. 11. 각 기각

- 이후 쌍방울 관계자, 교도관 등 조사

- 김성태 前 쌍방울회장 2회 피의자조사(‘26. 1. 8., 1. 20.)

- 박상용 검사 3회 참고인조사('25. 12. 30., '26. 1. 5., 1. 14.)

-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2. 23.), 서민석 변호사(3. 5.) 등 조사

Ⅲ 참고사항 및 향후계획

○ 서울고검은 4. 1. 서민석 변호사 측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녹음파일을 모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 위 녹음파일 제출받아 분석 후 계속 진상조사, 수사를 진행토록 하겠음

○ 3. 3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부터 "TF에서 확보 내지 생성한 위 보고 관련 기록 일체", "수사기록 및 재판 기록을 확보한 경우 해당 기록 일체" 등 송부요청을 받았고,

- 4. 1. 추가로 특검으로부터 "사건 이첩 및 기록과 자료 일체 송부요청"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 중임

○ 이번 국정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 증거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조사와 수사를 진행토록 하겠음 ▨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연어·술 반입 등 진술세미나 의혹 이후 특별점검을 지휘한 게 맞는지? 조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맞음. 관련 교도관들 소환하고, 출정일지, 외부방문객 내역, 쌍방울 법인카드 등을 조사하였음.
○ 실제 연어·술이 반입된 게 맞는지? 김성태가 원하는 음식이 수시로 제공되었는지? 영상녹화실에서 진술세미나가 있었는지? 쌍방울 직원이 상주하여 수발하였는지?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 행태에 항의하였는지? 성실한 조사가 필요함.	○ 현재 진상조사 중임. 다만, 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피의사실로 적시되어 있음. 진상조사 중이고 일부는 대검에 보고한 상황임.
○ 검사실에서 공범들 간의 금전거래와 관련한 설명을 요청함.	○ 구속영장 피의사실에 적시했던 것처럼 안부수와 쌍방울 임직원들 간에 안부수의 증언시기 즈음해서 금전거래를 약정하고, 쌍방울의 안부수 딸 전세금 지원과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고, 쌍방울 회사자금 횡령 배임 의혹이 있어서 피의사실로 적시했음.
○ 1313호에 주류반입과 관련된 사실이 있었는지?	○ 구속영장청구 피의사실에 적시한 것이고, 진상조사 결과 보고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임.
○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아	○ 정보는 들어봤음. 진상조사 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태평화회의가 있었던 당시 쌍방울 김성태, KH그룹 배상윤이 대회를 참석한 후 하얏트 정호일 등과 현지 호텔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추가 수사는 하지 않았는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인권침해점검TF와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진행하지 않음.
○ TF에서 3명에 대해 영장 청구한 것에 대한 혐의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 검사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공범들 간 금전거래 약정 확인, 검찰청으로의 주류 반입 관련 등으로 영장 청구함.
○ 진술 세미나가 있었는지?	○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진상 관계 조사 후 밝히겠음.
○ 교도관들이 구치소에서 접견한 기록에 따르면 “이화영이 왔다갔다 해” 등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김성태는 “한잔해야하는데 술 한잔 하면서 정리해야하는데” 등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사실인지?	○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 있는 것은 사실임.
○ 회덮밥이 들어간 날 3명이 같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 그와 관련된 진술이 확인된 것은 있으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기가 어려움.
○ 김성태 전 회장이 184회 출정하는 과정에서 박상웅, 박상민이 상주하듯 출입하며 수발을 든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출입한 것인지? 참고인이 아님에도 참고인 출입증이 발급된 경위와 법적 문제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함. 아울러 해당 사안이 직권	○ 참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1313호실 직원이 이를 입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임. 금일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사항을 확대해 나가며 성실히 임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남용 등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수사 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음.	
○ 박상용 검사의 위법·부당 행태와 관련하여 윗선에 대한 감찰 조사는 진행 중인지? 안부수가 쌍방울로부터 딸 관련 금품지원을 받은 후에 진술을 변경했다는 내용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것인지? 김성태와 안부수의 범죄 연결고리가 박상웅인데, 박상웅이 참고인 신분으로 수시로 출입한 경위 및 그에 대한 박상용 검사의 조력 또는 방조·기획 여부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 바람.	○ 알겠음.
○ 쌍방울 직원인 박상웅, 박상민이 참고인이라는 명분으로 수없이 김성태와 면회를 했고, 교도관들이 항의했다는 것도 확인했는지?	○ 일부 진술로 확인되었음.
○ 대기 명목으로 1315호 창고에 공범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장면을 교도관들이 목격했고, 박상용 검사가 이러한 만남을 주선했다는 교도관들의 답변을 확인했는지?	○ 진술 내용으로 확인함.
○ 확인한 내용에 따라 수원지검 입장문이 모두 반박되는지?	○ 진상조사 중이고 일부 확인된 부분도 있음.

(나) 곽영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감찰부장은 무슨 일을 하는지? 감찰했는지?	○ 법무부장관 및 대검에서 지시한 인권침해 점검을 총괄하고 있고, 감찰은 상당히 진행하였음.
○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가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생각하는지?	○ 적법하다고 생각함.
○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위헌·불법인지? 국정조사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도 진상규명, 의정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법에 그 취지가 담겨 있음.	○ 성실히 임하고 있음.
○ 박상용 검사는 SNS에서 국정조사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 중립위반임.	○ 그렇다고 생각함.
○ 오늘 박상용 검사가 제출한 소명서 확인했는지? 위원장은 공개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음.	○ 박상용 검사의 소명서의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보았음.
○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영장 청구를 언급하며 진술을 강요한 녹취가 공개되고, 연어·술파티 및 공범 간 자유로운 대화를 위해	○ 곧 있으면 마무리되므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창고에 모아 놓은 사실 등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진상조사한 자료가 몇 페이지 정도 되는지?	○ 진상조사 결과 생성된 자료가 한 30권, 한 1만 6000페이지 정도 됨. 현재까지 교도관 11명에 대한 73차례 조사 등 방대한 조사를 진행 중임.

7) 수원고등검찰청

가) 보고내용

Ⅰ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회 위증 사건 재판 중 법정퇴정 진상조사 경과

□ 진상조사 개요

○ 수원고등검찰청은 법무부·대검으로부터 「공판 담당 검사들이 2025. 11. 25. 피고인 이화영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퇴정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를 받고 감찰팀을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였음

□ 법정퇴정 관련 재판 경과

○ ’25. 2. 25. 이화영 불구속기소

○ ’25. 8. 19. 제4회 공판준비기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결정(12. 15.~19. 진행 예정)

○ ’25. 11. 25. 제10회 공판준비기일, 공판검사 4명 재판장(송병훈, 사연 35기) 기피신청 후 퇴정

○ ’25. 12. 8. 수원지법 기피신청 기각

○ ’25. 12. 17. 검찰 즉시항고

○ ’26. 1. 30. 수원고법 항고 기각

○ ’26. 3. 제11~13회 공판준비기일

○ ’26. 6. 8.~19. 국민참여재판 진행 예정

□ 진상조사 경과

○ 수원고등검찰청은 관련자료에 대한 포렌식, 대상자들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여,

- 대상자들의 기피신청 및 법정 퇴정행위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국민참여재판 저지를 위해 재판정지효가 있는 기피신청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 대검에 정상적으로 사전 보고를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였음

○ 수원고등검찰청은 2026. 3. 현재 대검찰청 감찰부에 최종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임

○ 감찰 과정에서 접견 녹취록 등이 수사기록·목록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경위를 포함하여 추가 진상 확인 절차가 진행 중임

Ⅱ 수원고검 공소유지 현황

○ 수원고등검찰청은 「김성태가 외환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에 800만 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사건(수원고법 2024노869)」의 공소유지 중이고 공판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음

- ’23. 2. 3. 김성태 구속기소

- ’24. 7. 12. 김성태 1심 선고

※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 ’24. 7. 18. 쌍방 항소
- ’25. 1.~12. 제1~7회 공판기일
- ’26. 3. 9. 변론병합 신청(2026노370 뇌물공여)
- ’26. 3. 19. 공소장변경 신청

※ 김성태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상상적경합 관계를 전제로 별건 뇌물공여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 「김성태가 대북 사업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800만 불을 북한에 대신 지급하였다는 혐의의 뇌물공여 사건(수원고법 2026노370)」에 대하여 공소유지 중이고 공판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음

- ’24. 6. 12. 김성태 불구속 기소
- ’26. 2. 12. 제3회 공판기일(김성태 공소기각 즉일 선고)

※ 공소기각 사유 : 본건 및 별건 외국환거래법위반은 행위 태양이 중첩되는 등의 이유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

- ’26. 2. 19. 김성태 공소기각 부분 항소제기

○ 수원고등검찰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겠음 ▨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 이정현 증인(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월 17일 김성태가 국내에 압송되고 2월 3일 기소되었는데, 금감원이 검찰에 가서 압색영장 발부받아 가져가라고 했던 금감원 자료 이외 15건의 더 큰 혐의들이 있는데, 수사 중 사안으로 사안이 복잡하므로 일단 참고만 해 달라고 함. '수사 중 사안'이라고 명시한 것은 잘못되었고, 15건에 해당하는 결정문의 제출을 요청함.	○ 혐의없음 결정됨. 15건에 대한 결정문 제출 검토하겠음.
○ 혐의없음 결정 시점은 언제인지?	○ 2025년 1월임.
○ 검사들이 집단퇴장하여 재판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감찰상황과 그 내용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임.	○ 진상조사를 마치고 3월에 대검에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대검에서 감찰 절차가 진행중인 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드리기 곤란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했고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는 대로 엄정히 조치하겠음.
○ 술파티가 없었다는 박상용 검사의 주장과 부합하는 과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	○ 2024년 4월에 발표한 바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 당시 자체감찰 결과 발표에서 공범자를 머무르게 한 일시, 장소 등을 확인했고, 쌍방울 직원들이 박상용 검사 방에 출입하고 김성태 개인사무실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던데 맞는지? 결국 이화영의 진술이 맞는 것인데 사실과 다른 허위보고를 하고 이를 발표한 것은 문제이므로, 형사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확인했음. 그 부분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겠음.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 기관보고

Ⅰ 사건 개요

□ 관련자

○ **피고발인** : 김성태(쌍방울 前회장), 방용철(쌍방울 前부회장), 안부수(前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박○○(쌍방울 前이사), 성명불상의 검찰·금융당국 관계자들

○ **고발인**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 고발사실의 요지

○ **피고발인 김성태 등**

- '19. ~ '22.경 대북사업 등 이슈를 이용하여 쌍방울 그룹 계열사(비비안, 나노스, 광림, 미래산업 등) 및 KH그룹 계열사 등 10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위반 등]

○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 '22. 11. ~ '23. 4.경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을 통해 안부수로 하여금 '시세조종 목적'의 800만 달러를 '방북비 대납 목적'이라는 진술로 변경하게 함 [직권남용 등]

○ **성명불상의 금융당국 관계자 등**

- '22. 4.경 쌍방울 그룹 계열사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 후 급락하는 전형적인 이상 급등락 패턴을 보였음에도 외부 압력 또는 내부 유착 등에 의해 관련 조사를 무마·중단시킴 [직권남용 등]

Ⅱ 수사 경과

○ ’26. 1. 7.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

- 수사 요청사항 : ▲관련 종목의 이상거래 구간 전후 한국거래소 주문·체결 원장 및 매매주체 분석, ▲시세조종 관여 의심계좌 등 계좌추적, ▲금감원·거래소의 심리착수/종결 문서 등 확인

○ ’26. 1. 14.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이첩

○ ’26. 1.~ 서울남부지검, 사건 수사 중

Ⅲ 향후 계획

○ 고발장에 기재된 쌍방울 그룹 계열사 등 10개 종목의 주가 변동 관련 자료 및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여,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의 실체 관계를 규명할 계획임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고발장에 기재된 10개 종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성상헌 증인(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11월에 수원지검에 수사요청 시 보낸 자료에는 쌍방울그룹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15개가 상세히 조사되어 있었는데,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이 맞는지?	○ 맞음.
○ 15개 중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광림의 횡령 혐의, 제우스1호 투자조합 관련 조합원에게 4,532억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한 혐의 등에 대해 자료를 확보해서 15건에 대해 모두 조사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김성태를 봐주고 이재명, 이화영 죽이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살펴보겠음.
○ 금감원에서는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했다고 결론을 냈으나, 검찰은 자료를 받지 않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허위 공시한 것으로만 기소한 것을 알고 있는지? 주가조작과 시세조정에 따른 죄에 형량과 추징에 차이가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임.	○ 내용에 대해 알고 있음. 알겠음.

9) 수원지방검찰청

가) 보고내용

Ⅰ 수사착수 경위 및 주요 수사경과

□ 수사착수 경위

○ 수원지검은 ’21. 10. 대검으로부터 쌍방울 그룹 및 핵심 계열사의 법인자금 횡령, 자금세탁 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하였음

○ 수원지검은 위 정보를 토대로 ’21. 11.부터 ’22. 12.까지 쌍방울 그룹,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쌍방울 그룹의 ‘미승인 대북협력사업 추진’, ‘외화 밀반출’ 정황이 파악되어 그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였음

- 수사진행 중 ’22. 5. 쌍방울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여,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일부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되었음

○ 이후 ’23. 1.경 검거된 쌍방울 전 회장 및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북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 조선노동당에 외화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어 남북교류협력법위반에 대한 수사도 아울러 진행되었고, 대북송금에 이른 경위, 가담한 공범까지 수사가 확대되었음

□ 주요 수사경과

○ ’22. 10. 14.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음

- 공소사실의 요지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 쌍방울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등 내용임

○ 또한 ’23. 2. 3. 쌍방울 전 회장을 쌍방울 기업비리 및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음

- 공소사실의 요지는 쌍방울 기업비리* 및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외환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에 800만 불을 지급하였다는 등 내용임

  * 쌍방울 기업비리 : 쌍방울 계열사 법인자금 횡령, 주식 고가매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 ’23. 3. 21.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추가기소하였음

- 공소사실의 요지는 쌍방울 전 회장과 공모하여 외환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에 800만 불을 지급하였다는 등 내용임

○ ’24. 4. 8. 쌍방울 전 회장을 남북교류협력법위반으로 추가기소하였음

- 공소사실의 요지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북한에 800만 불을 지급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였다는 내용임

○ ′24. 6. 12. 전 경기도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으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남북교류협력법위반으로, 쌍방울 전 회장을 ㈑뇌물공여로 각 기소하였음

- 공소사실의 요지는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외환당국의 허가 및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 800만 불을 지급시켰다는 내용임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은 ′23. 3.경 이미 기소가 되어 이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남북교류협력법위반으로만 추가 기소되었고, 쌍방울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위반도 ′23. 2. 및 ′24. 4. 이미 기소되어 이번 기소에는 ㈑뇌물공여만 추가되었음

○ ′25. 1.～5.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음

Ⅱ 주요 재판경과

○ '24. 6. 7. 먼저 기소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쌍방울 법인카드 및 자금 수수),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1심 선고가 있었음

- 선고 결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합계 9년 6월, 일부 무죄 등이 선고되었음

○ '24. 7. 12. 쌍방울 전 회장 등의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에 대해 1심 판결이 (분리) 선고되었음(쌍방울 기업비리에 대해서는 1심 계속 중임)

- 선고 결과,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 및 일부 무죄* 등이 선고되었음

  * 일부 뇌물공여는 직무관련성 없다는 이유로, 일부 정치자금법위반은 정치활동하는 자가 아님을 이유로, 일부 외국환거래법위반은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대상자에게 지급사실 인정되지 않고, 환치기 방법으로 제공되어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 선고

○ '24. 12. 19.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쌍방울 법인카드, 비서 급여 등 수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되었음

- 선고 결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합계 7년 8월, 일부 무죄* 등이 선고되었고, '25. 6. 5.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일부 뇌물수수는 직무관련성 없다는 이유로, 일부 정치자금법위반은 정치활동하는 자가 아님을 이유로, 일부 외국환거래법위반은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대상자에게 지급사실 인정되지 않고, 환치기 방법으로 제공되어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 선고

○ '26. 2. 12. 쌍방울 전 회장의 뇌물공여(대북송금으로 인한 제3자 뇌물공여)는 먼저 기소된 외국환거래법위반과 행위태양이 중첩되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음

- 이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과 뇌물공여는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이 달라 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하였음

  ※ 주요 피고인별 수사결과 및 재판 상황은 [별지] 참조

[별지]

주요 피고인별 수사결과 및 재판 상황

피고인	사건명	죄명	재판 경과
가OO (前 경기도지사)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24. 6. 12 불구속 기소 **(1심, 추정중)**
나OO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나OO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확정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22. 10. 14. 구속 기소 **(징역 7년 8월 확정)**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수수 등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등	'24. 6. 18. 불구속 기소 **(1심 계속)**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남북교류협력법위반	'24. 6. 12 불구속 기소 **(1심 계속)**
	나OO 정치자금법위반 등 국민참여재판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	'25. 2. 25. 불구속 기소 **(1심 계속)**
다OO (쌍방울 前 회장)	쌍방울 횡령·배임 등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23. 2. 3. 구속 기소 **(1심 계속) (일부 1심 선고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심)**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수수 등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24. 6. 18. 불구속 기소 **(1심 계속)**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뇌물공여	'24. 6. 12 불구속 기소 **(공소기각, 항소심)**
	나OO 정치자금법위반 등 국민참여재판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25. 2. 25. 불구속 기소 **(1심 계속)**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 김봉현 증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3. 5. 17. 18시 이후 김성태 회장 비서의 18시 출입기록이 없다고 수원지검이 발표한 바 있는데, 해당 사실과 관련하여 방문증 태그 기록을 제출하면 확인 가능한 것이 아닌지?	○ 방문증 출입기록은 관련 법원에 이미 제출하였음.
○ 2023. 5. 17. 방문증 태그 기록에 따르면 쌍방울 관계자 중 저녁에 출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 박상웅임.
○ 2023. 5. 17. 태그기록에 따르면 박상웅이 18시 41분 승강기2입 13층, 20시 34분 승강기2출 13층으로 되어 있는데, 13층은 박상용 1313호를 의미하고 박상용 검사실을 의미하는 것인가?	○ 그렇게 보임.
○ 대북송금 사건의 미편철된 녹음파일 관련하여, 언제 발견되었으며, 미편철된 수사자료는 누가 요청했는지? 이는 검찰에 불리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고, 중대한 범죄사실이므로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집단퇴정 관련 수원고검에서 진상조사 중에 발견됨.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나, 누가 요구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음.
○ 2024. 4. 19. 발표한 수원지검 입장문에 따르면 교도관 전원	○ 아까 증언과 배치되는 건 사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함. 거짓말이 맞는지?	
○ 해당 입장을 아직 유지하는 것인지?	○ 제가 발표한 입장문이 아님.
○ 1315호는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 장소가 아니고 식사 자체가 행해진 바도 없으며, 쌍방울 직원이 음식을 반입한 바도 전혀 없고, 교도관이 계호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더더욱 없으며, 음식을 주문하여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해당 입장이 아직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해당 사안 관련 이화영 부지사를 위증죄로 기소까지 하였는지?	○ 그렇게 알고 있음.
○ 이렇게 폭압적으로,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있는지?	○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임. 당시 수원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교도관들이 술 먹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해당 보고서에는 쓰여 있음.
○ 술을 생수통에 넣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교도관님들께서 증언하신 바와 같이 박상웅과 박상민이 수시로 커피나 외부음식을 가져왔다고 하지 않았는지? 왜 제대로 조사	○ 조사결과가 미흡한 건 사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인지? 잘한 것이라 생각하는지?	
○ 해당 내용 관련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람.	
○ 국회에서 이화영의 술파티 주장과 답변에 대해 위증 논란이 되어 이화영이 위증으로 기소가 되었음. 이화영을 기소하면서 아무도 조사 안 한 것이 맞는지? 참고인은 조사했는지?	○ 조사를 거부하여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참고인은 전화를 통해 술 냄새를 맡았는지, 술 먹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등의 확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 서현욱 검사실 앞 창고에서 박용철, 김성태, 이화영, 박상용, 안부수의 녹취록과 파일이 약 30권에 1만 5,000페이지 나왔다는데 맞는지? 이것을 편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편철을 안 했다면 범법행위가 될 것임.	○ 서현욱 검사 방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록이 좀 나온 것으로 들었음. 증거로서 가치가 없었는지 어떤 경위로 편철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함.
○ 수원지검이 발표한 입장문이 허위라는 것이 검찰 조사로 확인되었는데 시정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진상조사가 진행중임.
○ 시정 발표 할 것인지?	○ 검토해 보겠음.
○ 정용환 검사가 정리 및 점검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 반복소환이 잦았던 것은 사실임.
○ 그렇게 해본 적 있는지?	○ 본인은 그렇게 해본 적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면 진상조사에서 밝혀질 것임.
○ 밝혀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물고 조치를 취해야 함.
○ 구치소 교사들의 증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지?	○ 선서를 하고 한 증언이니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함.
○ 수원지검에서 일어난 일이니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물을 것인지?	○ 유념해서 검토하겠음.

(나) 양익준 증인(수원지방검찰청 공판1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쌍방울 사건 공판 중인지?	○ 그러함.
○ 금일 증인들의 발언을 들었는지?	○ 그러함.
○ 수원지검장의 박상웅 태그기록 언급 관련 자료를 받았음. 이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임. 들었는지?	○ 그러함.
○ 공판부장은 재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 공소유지를 총괄하고 있음.
○ 재판 관련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는지?	○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음.
○ 공판 유지하면서 대북으로 송금된 내역을 본 적 있는지? 이는 대북송금이 아니라 캐리어 달러 밀반출 아닌지? 대북송금이 아니라 책장에 달러를 조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씩 넣고 수십 명이 함께 반출하여 캐리어에 싣고 나간 것이라 생각함.	

(다) 고두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검사가 왜 이화영을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진술을 받으려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수사 당시에 박상용 검사 관련 내용 듣지 못했는지?	○ 구체적인 경위는 잘 모르겠음. 층이 달라서 잘 모름. 상부 지시가 있었던 적 없었음.
○ 현재 재판중이라고 했는데, 리호남이 필리핀으로 가서 언제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도착하자마자 받았는지, 도착 이후에 받았는지? 어디 호텔인지? 최소 스위트룸인데 그런 호텔을 예약한 적 없다고 함. 행사가 있었던 콘래드마닐라 호텔임. 박상용, 배상윤 등이 저녁에 3.9KM 떨어진 오카다 호텔을 가서 도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못함.	○ 기소한 이후 시간이 지나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2019년 7월 정도였음. 기억이 나지 않음.
○ 주가조작 수사팀 검사는 누구인지? 노골적으로 수사 덮고 직무유기 하였음.	○ 박상용이 아니고, 조승현 부장 및 그 검사들임.
○ 쌍방울 조작 기소를 박상용 검	○ 그렇게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와 함께 하였고, 특히 수원지검의 연어·술파티에 대해 부실조사로 덮은 당사자가 되었으며, 대장동 및 위례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되었음. 향후 검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의하기를 바람.	
○ 전진걸 증인이 진술한 외부음식 반입에 대한 답변을 기록했는지? 왜 진상보고서에는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기록했는지?	○ 내부 보고자료에 기록함. 해당 사실 관련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임.
○ 진술 세미나, 연어·술 파티를 수원지검 검사로서 조사했는데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고형근 차장이나 신봉수 검사장의 지시는 없었는지?	○ 형사6부장의 지시임. 그 밖에 지시자는 제 보고라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는 본 적 없음.
○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수사에 관여하였는지? 안부수, 박용철, 김성태를 조서 작성 없이 면담한 적 있는지? 박상용 검사와 친분도 있고, 함께 근무하면서 대북송금 사건을 조사한 본인이 연어·술 파티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하여 회피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수사에 참여하였고, 신속한 확인을 위하여 조서 작성 없이 조사한 적 있음. 나름대로 충실하게 조사함.
○ 수원지검 입장문이 본인 작성은 아니고 누가 작성한지 모른다는 것인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관여한 바 없는지?	○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 입장문 발표 시점 등도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원지검의 2024. 6. 7. 이화영 1심 유죄판결 후 5일 만에 이재명 제3자 뇌물죄 기소에 참여하였는지? 그 기소의 공로로 영전되어 서울중앙지검 발령된 것 아닌지?	○ 기소에 참여하였음. 서울중앙지검 발령은 그로 인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음.
○ 서울중앙지검 2025년 6월 발령 후 맡은 첫 사건은 무엇인지?	○ 공판5부에 배치되어 대장동 재판 등 이재명 관련 사건 맡음.
○ 수원지검에서 박상용 위법수사에 협력하고 영전하여 대장동 재판 등을 맡은 것은 아닌지?	○ 답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임.
○ 대검 인권침해 TF의 감찰을 받고 있거나 감찰대상으로 통지받은 적 있는지? 조사받은 적 있는지?	○ 없음. 조사받은 적은 없지만 면담을 한 적은 있음.
○ 국정조사특위 대응 준비와 관련하여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몇 명이 참여하였고,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지?	○ 송민경, 박상용, 김성훈 부장 및 함석우 검사 등 다섯 명이 참여하여 과거 언론기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화를 나누었음.
○ 당시 박상용 검사는 부부장검사였는지? 수사팀 내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박상용 검사의 행태와 관련하여 수사팀 차원에서 해당 역할이 부여된 것인지?	○ 당시 박상용 검사는 평검사였으며, 수사팀은 수사 증거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기소 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금일 처음 들은 것인지?.	○ 오늘 처음 들었음.
○ 김성태가 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였다고 한다면, 그 구체	○ 밀반출 또는 환치기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적인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책 속에 숨겨 밀반출하였고, 약 20명 이상의 쌍방울 직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기억하나, 기억이 일부 훼손되어 정확하지 않음
○ 김성태가 이화영 또는 이재명에게 어떠한 채무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달러를 책에 숨겨 전달하는 고생까지 감수하면서 자금을 제공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 그 이유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 말씀드리기 곤란함.

(라) 안병수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상용 검사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는지? 고두성 검사가 언급한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지?	○ 박상용 검사와 약 한 달 정도 함께 수사에 참여하였으며, 해당 단체 대화방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음.
○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금일 처음 들은 것인지?	○ 오늘 처음 들었음.
○ 수사 당시에 박상용 검사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는지? 차장이 지시했는지?	○ 전전 수사팀에서 한 것임.

나. [4월 7일, 2차]

1) 법무부 및 서울구치소

가) 보고내용

Ⅰ 사건별 수사 및 재판 경과

1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

○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① **민간업자 등에 대한 본류(本流) 사건은 항소심** 재판 중이고, ② **정진상 등에 대한 별도 기소 사건은 1심** 재판 중

〈 사건 개요 : 특경법위반(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 〉

○ **피고인**

- ① 유동규(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
- ② 정진상(前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2명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들은 '14. 8. ~ '23. 1.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사의 내부비밀 유출 및 이용, 예상이익 포기 등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진행 및 이익 배분을 통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고, 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 등

○ **주요 경과**

- '21. 10. ~ '23. 1. 유동규·김만배·남욱 특경(배임) 등 구속기소, 정영학·정민용 불구속 기소

※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은 '23. 1. '2기 수사팀'에서 추가 기소

- ’23. 3. 정진상 등 2명 특경(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등 불구속 기소

- ’25. 10. 31. **유동규 등 사건 1심 선고**[*](손해액 불상의 업무상배임 등 유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 무죄)[*]

※ **유동규**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 8.1억 원, **김만배** 징역 8년, 추징 428억 원, **남욱**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 37억 원

- **유동규 등 항소심 재판 중**[**](피고인들 항소제기)

※ **정진상 등 사건**은 1심 재판 중

[대장동 수사팀 변동 사항 및 사건 처리 현황]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비고
< 1기 > 이정수 검사장 (’21. 6. ~ ’22. 5.)	**4차장 김태훈** (’21. 7. ~ ’22. 5.) **경제범죄형사부장 유경필** (’21. 7. ~ ’22. 2.)	’21. 10. 21. 유동규 기소 [특가(뇌물)] ’21. 11. 1. 유동규 기소 [특경(배임)] ’21. 11. 22.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특경(배임) 등] ’21. 12. 21. 정민용 기소 [특경(배임) 등]
	4차장 김태훈 (’21. 7. ~ ’22. 5.) **반부패1부장 정용환** (’21. 7. ~ ’22. 7.)	’22. 1. 28. 김만배 기소 [청탁금지법위반] ’22. 4. 4. 남욱 [특경(횡령) 등], 유동규 기소 [증거인멸교사] ’22. 5. 16. 김만배 기소 [특경(횡령)]
< 2기 > 송경호 검사장 (’22. 5. ~ ’24. 5.)	**4차장 고형곤** (’22. 5. ~ ’24. 5.) **반부패1부장 엄희준** (’22. 7. ~ ’23. 9.)	’22. 12. 9. 정진상·유동규 기소 [특가(뇌물) 등]
	4차장 고형곤 (’22. 5. ~ ’23. 9.) **반부패3부장 강백신** (’22. 7. ~ ’23. 9.)	’23. 1. 12. 유동규·정민용·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이해충돌방지법위반] ’23. 3. 22. 정진상 등 기소 [특경(배임) 등] ※ 수사 : 반부패3부, 기소 : 반부패1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 중 '별건수사' 관련 판시]

○ **(판단 요지)** 법원은 검찰이 2021. 11.~12.경 피고인들을 특경(배임)으로 기소한 이후, 피고인들을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로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면서, 2022. 1. 1. 이후에 작성된 조서에 대해 증거 불채택

※ 2022. 1. 1.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내용부인시 증거능력 없음

○ **(증거배제 이유)** 법원은 ▲결국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기소(23. 1.)를 위하여 준비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당해 사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반면, ▲먼저 기소된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는 기소 후 피고인을 조사한 조서를 증거로 쓰게 되는 모순, ▲형사소송법 개정 후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별건을 빌미로 재조사한 증거들을 대량으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야기, ▲공판중심주의를 기초로 하는 형사소송 절차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배제

※ **법원은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사건 수사를 빌미로 배임 사건 공소장 변경을 위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판시**

2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사건

○ 위례신도시 관련 사건은, ① **민간업자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정진상 등에 대한 별도 기소 사건은 1심** 재판 중

〈 사건 개요 :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

○ **피고인**

- ① 유동규(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
- ② 정진상(前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2명

○ **공소사실 요지**

- '13. 7.경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등이

취득한 공사의 내부 비밀(공모일정, 사업타당성 평가, 공모지침서 등 관련)을 이용하여 '13. 12. 3. 남욱, 정영학, 정재창이 구성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 '14. 8. ~ '18. 1. 경 이익 분배 결과 남욱 등이 42억 원, 호반건설이 169억 원 상당을 취득

○ **주요 경과**

- '22. 9. 유동규 등 5명 각 불구속 기소
- '22. 11. ~ '23. 3. 정진상 등 2명 기소(정진상 구속)
- '26. 1. 28. **유동규 등 사건 1심 선고***(전부 무죄, 검찰 항소 부제기로 확정)

※ **정진상 등 사건**은 1심 재판 중

[위례 사건 무죄 선고 요지]

○ **[내부 비밀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 피고인들이 사업일정, 공모지침서 내용 등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하여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사실 인정

○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과 비밀 이용 간 인과관계 없음]** 피고인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로, 검찰이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특정한 "배당이익"과 피고인들의 "비밀 이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3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관련, 김용·남욱은 일부 유죄, 유동규·정민용은 무죄를 각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 사건 개요 : 특가법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

○ **피고인**

- **김용**(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前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파트장), **남욱**(변호사)

○ **공소사실 요지**

- **(김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유동규로부터 ① '13. 설·추석 무렵 합계 2,000만 원 수수 ② '13. 4. 경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가 조성한 자금 7,000만 원 수수 ③ '14. 4. 경 남욱으로부터 1억 원 수수 **[특가법위반(뇌물)]**

- **(김용·유동규·정민용·남욱)** '21. 4. ~ 8. 김용·유동규·정민용은 남욱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 8억 4,700만 원 불법 수수 **[정치자금법위반]**

○ **주요 경과**

- '22. 11. 정치자금법위반 기소(김용 구속)

- '22. 12. 특가법위반(뇌물) 기소

- ’23. 11. 30. **1심 선고**(일부 유죄, 일부 무죄)

※ **김용**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 **남욱** 징역 8월, **유동규·정민용** 각 무죄

- ’25. 2. 6. **2심 선고**(쌍방 항소기각)

- **현재 상고심 재판 중**

※ 상고심에서,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받았다고 기소된 금원을 사실은 자신이 채무상환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참고인(철거업자 강철호) 진술서가 제출되었고, 남욱 또한 별건 재판에서 위 참고인의 주장 취지와 부합하게 증언

4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 윤석열의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등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인 등의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총 2개 사건이 1심 재판 중**

〈 사건 개요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등 〉

○ **피고인**

- **김만배**(前 화천대유 회장), **신학림**(前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前 뉴스타파 대표), **송평수**(前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특위 대변인) **등 7명**

○ **공소사실 요지**

- **(김만배)** ’21. 9. 15. 신학림 등에게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뉴스타파** 등이 보도

- **(김만배, 신학림)** 신학림은 위 허위 인터뷰 및 보도 대가로 ’21. 9. 20. 1억 6,500만 원 수수

- **(신학림, 한상진, 김용진)** 공모하여, ’22. 3. 6. 위 허위 인터뷰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보도

- **(봉지욱)** ’22. 2. 21. ~ 28. 조우형의 인터뷰 왜곡 등으로 윤석열이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처럼 **JTBC**를 통해 허위보도

- **(송평수, 허재현)** ’22. 3. 1. 녹취록을 왜곡하여 윤석열이 조우형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리포액트**를 통해 허위보도

○ **주요 경과**

- ’24. 7. ~ 8. 피고인들 기소(김만배·신학림 구속)

- **현재 2개 사건 모두 1심 재판 중**

※ 검찰은 1심 재판부로부터 본건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고, 공소사실 대폭 수정(67쪽→30쪽)

Ⅱ 대장동 사건 관련 진상조사 경과

1 개요

○ 법무부는 **4회**('25. 9. 23., '25. 11. 12., '25. 11. 19., '25. 12. 5.)에 걸쳐 대장동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 접수**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

- 대상자 : 대장동 2기 수사팀 9명*

* 고형곤, 엄희준, 강백신, 정일권, 호승진, 이주용, 홍상철, 김영석, 김경완

[대장동 수사팀 변동 사항 및 사건 처리 현황]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비고
< 1기 > **이정수 검사장** ('21. 6. ~ '22. 5.)	**4차장 김태훈** ('21. 7. ~ '22. 5.) **경제범죄형사부장 유경필** ('21. 7. ~ '22. 2.)	'21. 10. 21. 유동규 기소 [특가(뇌물)] '21. 11. 1. 유동규 기소 [특경(배임)] '21. 11. 22.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특경(배임) 등] '21. 12. 21. 정민용 기소 [특경(배임) 등]
	4차장 김태훈 ('21. 7. ~ '22. 5.) **반부패1부장 정용환** ('21. 7. ~ '22. 7.)	'22. 1. 28. 김만배 기소 [청탁금지법위반] '22. 4. 4. 남욱 [특경(횡령) 등], 유동규 기소 [증거인멸교사] '22. 5. 16. 김만배 기소 [특경(횡령)]
< 2기 > **송경호 검사장** ('22. 5. ~ '24. 5.)	**4차장 고형곤** ('22. 5. ~ '24. 5.) **반부패1부장 엄희준** ('22. 7. ~ '23. 9.)	'22. 12. 9. 정진상·유동규 기소 [특가(뇌물) 등]
	4차장 고형곤 ('22. 5. ~ '23. 9.) **반부패3부장 강백신** ('22. 7. ~ '23. 9.)	'23. 1. 12. 유동규·정민용·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이해충돌방지법위반] '23. 3. 22. 정진상 등 기소 [특경(배임) 등] ※ 수사 : 반부패3부, 기소 : 반부패1부

- 감찰 요청인 :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 한준호, 전용기, 이건태, 박선원, 양부남, 김기표, 이주희

2 비위혐의 요지

① **1차 감찰 요청**('25. 9. 23.)

- **대장동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사건** 관련,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담당검사들의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 등**

② **2차 감찰 요청**('25. 11. 12.)

- **남욱, 유동규를 회유**하기 위해 **별건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또는 기소하지 않고,** 회유된 진술을 통해 **허위의 조서를 작성**하고, 정영학 제출 엑셀 파일에 대장동 평당 예상 분양가를 임의 기재 등

③ **3차 감찰 요청**('25. 11. 19.)

- 김용, 정진상 및 이재명을 조작된 공소사실로 기소하기 위하여, **남욱 등을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 내지 회유 등**

④ **4차 감찰 요청**('25. 12. 5.)

-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 관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녹취록 조작 의혹 ① – 재창이형 → 실장님]

- 1기 수사팀이 '21. 10. 정영학으로부터 녹취파일을 제출받아 작성한 녹취록에는 '재창이형'이라고 기재되었던 부분이, 2기 수사팀이 '22. 8. 정영학으로부터 동일한 녹취파일을 제출받아 작성한 녹취록에는 '실장님'으로 기재되어 있음

⇒ 검찰이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사안을 왜곡하였다는 의혹

'22. 9. 27. 회신받은 정영학 녹취록('13. 4. 16.자) 중 해당 부분

남 욱	이제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정영학	예, 예. 거기가 방이 여러 개 있나 봐요.
남 욱	방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
정영학	그 일, 일식집?
남 욱	일식집이 아니라 술집이더라고, 5층이.
정영학	아, 오,
남 욱	바예요, 바.
정영학	아...

[녹취록 조작 의혹 ② - 위례신도시 → 윗어르신]

- 기존 녹취록(1기 수사팀 작성)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라고 기재되었던 부분이, 다른 녹취록(1기 수사팀 작성)에는 '윗 어르신'으로 기재되어 있음

⇒ '윗 어르신' 문구를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을 겨냥하여 조작하였다는 의혹

'21. 10. 20. 회신받은 정영학 녹취록('13. 8. 30.자) 중 해당 부분(남자1 : 남욱)

남 자1	문제, 예.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정영학	음...
남 자1	'내부적으로 니가 알아서 할 문제, 할 문제고 윗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정영학	예, 음...
남 자1	'그렇게 직원들한테도 너 준 일정대로 그렇게 진행하게끔 그런 구조로 진행할 거라고,'
정영학	음...
남 자1	'다, 서류 다 줘놨고 얘기해놨으니까,'
정영학	네, 네, 네.
남 자1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영학	네, 네.
남 자1	'너도 차질 없, 차질 없이 해라.'
정영학	음...
남 자1	요 정도입니다.

[녹취록 조작 의혹 ③ - 용이하고]

- 녹음 음성에는 '용이하고' 부분이 없음에도, 녹취록(1기 수사팀)에는 '용이하고'라고 기재

⇒ '해당 문언을 추가하여 김용 전 부원장이 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의혹

2021. 10. 20. 회신받은 정영학 녹취록(2013. 3. 5.자) 중 해당 부분(남자1 : 김만배)

정영학	하여튼 공사 설립할 때 제일 고생 많으신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남 자1	아니, 아니, 그거는 형이 고생한 게 아니라,
정영학	예.
남 자1	한구 형이 고생을 했지, 최윤길 의장하고.
정영학	네, 네, 네. 그,
남 자1	이상훈 선배하고 용이하고. 근데,
정영학	강한구 위원장님 이렇게까지, 저희는 못 했었거든요. 할 적에. 솔직히.

3 진행 경과

○ 법무부는 검사에 대한 감찰과 관련하여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감찰 요청 민원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였고,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검찰의 자율성 보장) ①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② 법무부는 제1항에 따른 검찰의 자체 비위조사와 감사 후에 필요한 경우 비위조사와 감사를 수행한다.

- 대검찰청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서울고등검찰청 관내에 있는 검찰청에서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서울고등

검찰청에 진상조사 등을 지시하였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성된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진상조사 등 진행 중**임

4 향후 계획

○ 진상조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예정

○ 공수처에도 동일한 내용이 고발되어 수사 중이므로, 향후 공수처의 수사 내용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음

Ⅲ 사건 관련자 수감 당시 상황

1 주요 관련자 내역

('26. 3. 26. 기준)

연번	성명	수용현황	죄명	비고
1	김만배	수용중	특가법(뇌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2	남욱	수용중	특가법(뇌물)	변호사, NSJ홀딩스 실소유주
3	유동규	수용중	특가법(뇌물)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4	정영학	수용중	특가법(배임)	회계사
5	정민용	수용중	특가법(배임)	변호사
6	김용	출소	정치자금법 위반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2 주요 관련자 입·출소 현황

('26. 3. 26. 기준)

연번	성명	입소일	출소일	거실	비고
1	김만배	'21. 10. 1.	'22. 10. 20.	독거	구속기간만료
		'25. 10. 31.	-	독거	수용중
2	남욱	'21. 10. 19.	'21. 10. 20.	독거	구속기간만료
		'21. 11. 3.	'22. 11. 21.	독거	구속기간만료
		'25. 10. 31.	-	혼거	수용중
3	유동규	'21. 10. 14.	'21. 10. 14.	독거	구속영장청구기각
		'21. 11. 3.	'22. 10. 12.	독거	구속집행정지
		'22. 10. 16.	'22. 11. 24.	독거	구속기간만료
		'23. 2. 17.	'23. 9. 7.	독거	구속기간만료
		'24. 6. 20.	'24. 11. 20.	독거	보석출소
		'25. 10. 31.	-	혼거	수용중
4	정영학	'25. 10. 31.	-	혼거	수용중
5	정민용	'21. 11. 3.	'21. 11. 4.	독거	구속영장청구기각
		'25. 10. 31.	-	혼거	수용중
6	김 용	'22. 10. 19.	'23. 5. 4.	독거	보석출소
		'23. 11. 30.	'24. 5. 8.	독거	보석출소
		'25. 2. 6.	'25. 3. 7.	독거	화성직업훈련(교) 이송
		'25. 3. 7.	'25. 8. 20.	독거	보석출소

3 주요 관련자 출정 현황

('26. 3. 26. 기준, 단위 : 건)

연번	성명	기소일자	총계	검찰조사[1]			법원재판
				계	기소전	기소후	
1	김만배	'21. 11. 22.	250	18	7	11	197
		'23. 3. 8.		30	9	21	
		'24. 7. 8.		5	3	2	
2	남욱	'21. 11. 22.	131	30	9	21	101
3	유동규	'21. 10. 21.	105	31	8	23	74
4	정영학	법정구속	5	-	-	-	5
5	정민용	법정구속	3	-	-	-	3
6	김용	'22. 11. 8.	37	16	13	3	21

1) 해당 사건으로 수감 중 진행된 모든 조사 건수

4 향후 계획

○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사건 관련자들의 공범 분리 등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위례신도시 사건 관련

(가) 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장동 사건 관련 민간업자들이 ① 민간개발 허용 ②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 분리 ③ 환지 방식의 토지보상 ④ 자신들의 구획계 채택 ⑤ 자신들을 민간사업자로 지정할 것을 이재명 시장에게 요청했으나 이재명 시장은 요청을 모두 거절함. 이후 부동산 상승기 때 시장이 추가로 1,120억원을 요구해 1,120억을 받게 됨. 이재명 시장이 민간업자와 결탁되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정황임. 이재명 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5,503억을 공공환수함.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와 결탁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재판 중인 사안이나, 계속 이 사건은 면밀히 보고 있었음.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당시에도 이재명 시장으로서의 성공적인 치적으로 평가받아서 당선되었던 것임.
○ 직무대리 명령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임명장을 주지 않고 먼저 가서 일하도록 하는 것인지?	○ 검찰에서 법무부에 요청을 하면, 장관이 직무대리 발령을 함.
○ 직무대리 발령 후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수사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인지?	○ 그 당시에는 장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나, 오늘 지적된 문제는 서울 고검 인권침해 TF나 대검에서 적절하게 조사를 할 거라 봄.
○ 5월에 먼저 가서 일을 시작해	○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기 수사팀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사건을 감찰할 필요 ○ 정용환 검사가 2022년 7월까지 대장동 사건 수사팀장이었는데, 2022년 5월 공판부에 직무대리로 온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수사자료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 부적절한 수사 행태를 보인 엄희준·강백신 검사에 대해 즉각 감찰하고, 퇴직자들을 수사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 ○ 정일권 검사는 남욱을 48시간 동안 구치감에 가둬놓고 있다가 불러서 애들 사진을 보여주고, “애들을 봐야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고 함. 이런 말은 조폭들이 신체 포기 각서 요구할 때나 쓰는 말인데, 이게 비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 정일권 검사의 발언은 2022년 9월 남욱에 대한 것인데,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22시간 30분 유동규를 조사함. 이때 유동규는 돈을 전달한 방법, 장소, 3,000만원을 공여했다는 등의 진술이 바뀌었	는지 알아보겠음. ○ 공판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검사가 사건들을 기록 검토 및 열람하는 것이 적법한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점검할 것임. ○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조사 중이며,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적절한 행태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 매우 부적절하고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데, 단순히 면담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임. 강압수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확인할 필요.	
○ 2022년 10월 13일 김영석 검사가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박태선으로부터 백팩을 압수할 때 작성한 압수 조서임.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이라고 적혀 있음.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으로 피의자 입건이 되어 있었는지?	○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재명 대표는 입건된 적이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유는?	○ 다른 사건에 관련되서 조사하다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취지는 정확히 모름.
○ 당시 수사팀 내부에 이미 최종 목표가 이재명 죽이기라는 공감대와 지시가 팽배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작성된 것임. 만약 이런 내용을 상급 지휘관이 못 봤다면 그것도 심각한 직무유기 아닌지? 설사 단순 오기라 하더라도 당장 수정하고 해당 검사 징계해야 할 사항임.	○ 압수 조서 작성할 때 담당 검사가 부장까지 결재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임.
○ 김영석 검사가 위의 허위 압수 조서 쓴 날짜가 10월 13일인데, 10월 14일부터 3일동안 이 수사팀이 유동규를 밀실로 불러서 조서 한 장 남기지 않고 24	○ 부적절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을 하면서 회유했음. 이게 우연인지? ○ 10월 13일에 서류상으로 이재명을 피의자로 결론지어 놓고서 14일부터는 그 결론에 맞추어서 본격적으로 유동규를 비롯한 그 일당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것으로 보임.	
○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10월 1일에 검찰에 최초로 제출한 대장동 예상 분양가 엑셀 파일 원본에서는 평당 분양가가 1,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영학에게 제시한 출력물에는 1,500만원으로 둔갑됨. 당시 남재현 검사가 원본 파일 숫자를 임의로 1,500만원으로 바꿔서 출력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지난해 홍상철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검사가 1,500만원을 입력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음. 그런데 당시 작성된 수사 보고서에는 이 1,500만원짜리 파일이 정영학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원본인 것처럼 편철되어 있음. 엑셀에는 1,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임의로 증거로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임.	○ 자료의 증거 조작 또는 위조와 관련해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서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음.
○ ‘재창이 형’, ‘위례신도시’ 녹취	○ 첫 번째 건은 확인된 사실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록 조작은 정진상과 이재명 시장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된 녹취록인 것으로 보이는데, 확정된 것인지?	고, 두 번째 건은 남욱이 위례신도시라고 진술함.
○ 대장동, 위례, 성남FC, 김용 등의 사건의 목표는 1차적으로 2024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함이었다고 판단함. 그러나 총선 패배 이후 김건희 비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수사를 안할 수 없다고 해 송경호 지검장부터 제거하고, 이원석 총장을 패싱하게 된 것임.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임명해 내란범을 풀어주고 김건희 호위무사 역할을 함.	
○ 박상용검사와 서민석변호사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드러난 사실은 박상용검사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검찰의 조직적 범죄 정황이라고 보임. 박상용 검사가 검사장, 부장검사를 설득할테니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지인들 수사 안 할테니 협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 수사 전체의 적법성 내지 법원에 제출된 증거 전반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건임.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상조사하겠음.
○ 박상용 검사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음. 정치활동을 했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및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것임. 법무부장관으로서 지휘를 명확히 할 필요	○ 그러함. 그렇게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상용의 행태는 검사들이 본인을 건들지 못할 것이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김학의 사건과 같은 구조이므로 국조 끝나고 특검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필요	○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2차 특검 출범 후 관련 기록 일체를 가져갔음. 2차 특검의 수사범위에 속하는지 다툼이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회의 결단으로 특검을 새로 구성해 수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것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조작이라고 보는지?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변경하여 정진상, 이재명 성남시장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아닌지?	○ 고검에서 감찰하여 경위를 파악중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중대한 사건임.
○ 사건 관련성이 없는 가족 사진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하여 피의자를 신문하였는데, 불법·강압수사가 아닌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대장동 수사와 관련하여, 압수조서의 ‘피의자 이재명’이 오기라고 진술하였는데, 법조인들은 오탈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지?	○ 철저하게 함.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인물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는 것은 단순 오기나 착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음 청문회 전까지 확실히 조사해서 보고해주기 바람.	○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서 면밀히 살피고 있음.
○ 증인, 변호인, 수사관과 교도관 배석도 없이, 피의자가 조사받는 검사집무실과 외부에 칸막	○ 그런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내용 파악이 불가능하니 부적법하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가 되어 있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더라도 적법한 수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여러 검사가 모여 모해목적 위증을 교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불법영장을 받아서 불법구금하고 또 직권을 남용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감찰과 수사 필요	○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의 진상조사, 2차특검의 수사나 국회의 별도 특검 구성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봄
○ 임의로 수치 입력한 출력물을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것처럼 중요증거인 엑셀파일 증거자료로 편철하였고, 수사기록이 시기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짐. 일련의 과정이 일반적인 공무원들에게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 이례적인 상황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가 꼼꼼히 챙겨보고 있음
○ 철저한 조사 후 공문서위조 사실이 밝혀지면 어떠한 조치를 할 것 인지?	○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를 통해 확인해 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수사까지 할 계획임
○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서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인력보강 없이 할 수 있겠는지? 징계시효의 문제는 어떠한지?	○ 서울고검 감찰부에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 인력 배치를 해야 함.	○ 상당한 의지를 가진 검사들이 가야 하는 등의 이유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고검 감찰부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별도의 진상조사기구를 만드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없음.
○ 정일권 검사가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를 수사하면서 환부를 도려낸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자녀 사진을 보여준 건 협박 아닌지? 정일권 검사는 인도적 차원의 제시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타당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조사에 불응한다고 하여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구금장소에서 자녀사진을 보여준 것도 피의자 본인으로서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
○ 검찰이 특경가법을 전제하고 수사한 내용들은 법리가 무너졌다고 봄. 사실관계 확인이 되는 경우 법령 위반한 사람들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인지? 반드시 조치 바람.	○ 법원에서도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음. 고의적인 조작이라고 한다면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고, 자체 조사나 필요시 특검이 필요할 것으로 봄.
○ 정치검찰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하여 내부감찰도 한계가 명확하며, 법무부와 검찰조직 내에 내외부 인사를 포함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	○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함.
○ 9월 16일~9월 18일 2박3일간 남욱을 구치감에 구금하고 협박해서 진술을 바꾼 이후, 이어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구속된 유동규도 똑같이 체포하여 중앙지검 구치감에 구금하였음. 알고 있었는지?	○ 처음 듣는 사실임.

(나) 이응철 증인(법무부 검찰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장동 사건 수사지휘검사”가 2022년 5월부터 반부패 1부장 엄희준 검사로 표기되어 있는데, 적절한 표기인지?	○ 엄희준 증인이 기록만 검토했다고 진술한바,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으로 보임.

(2)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관련

(가) 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의 발단이 된 조우형은 자백과 이강길 등의 관계자 진술도 있었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것, 피의자가 아닌 일반 참고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 일반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은 이례적이고 부실한 수사였고, 명예훼손 수사로 이를 지적하는 언론을 겁박한 것이 강백신 검사였음. 이상에 대하여 감찰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	○ 수사는 잘 모르나 당시 윤석열 검사의 처리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

(3) 그 밖의 지적 사항

(가) 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1년에 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판결이 있는데, 무슨 사건인지 아시는지?	○ 기억이 나지 않음.
○ 검찰은 유우성씨의 2010년 과거사건을 꺼내어 외환관리법으로 2014년에 기소하였고, 대법원은 2021년에 이를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된 사건을 2023년에 검찰이 위증교사로 다시 기소하였음. 유우성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공소권 남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성임. 검찰이 특정 목적으로 특정인 제거를 위해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함. 이번 국정조사와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엄중하게 조사하여 밝혀져야 함.

2) 대법원(법원행정처)

가) 보고내용

1-1. 대장동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등은 15 ~ 32면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70 등 / 서울고등법원 2025노3114]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나) 2021고합970 <병합사건: 2021고합1015, 1100, 1205, 2022고합83, 236, 237, 347, 2023고합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2021. 10. 21. 접수	유○규 김○배 남○ 정○학 정○용	2021.12.06. 15:00(속행) 2021.12.24. 10:00 (준비기일종결) 2024.02.02. 10:00(속행) 024.02.05. 10:00 (준비기일종결)	2021.11.10. 10:00(기일변경) 2021.11.24. 10:00 (기일변경(추정)) 2022.01.10. 10:00(속행) 2022.01.17. 10:00(속행) 2022.01.21. 10:00(속행) 2022.01.24. 10:00(속행) 2022.02.04. 10:00(속행) 2022.02.07. 10:00(속행) 2022.02.14. 10:00(속행) 2022.02.24. 10:00(속행) 2022.02.25. 10:00(속행) 2022.02.28. 10:00(속행) 2022.03.02. 10:00(속행) 2022.03.07. 10:00(속행) 2022.03.11. 10:00(속행) 2022.03.14. 10:00(속행) 2022.03.18. 10:00(속행) 2022.03.21. 10:00(속행) 2022.03.25. 10:00(속행) 2022.04.01. 10:00(속행) 2022.04.04. 10:00(속행) 2022.04.08. 10:00(속행) 2022.04.11. 10:00(속행) 2022.04.18. 10:00 (심문기일-심문종결) 2022.04.22. 10:00(속행) 2022.04.25. 10:00(연기) 2022.04.29. 10:00(속행) 2022.05.02. 10:00(속행) 2022.05.03. 10:00(속행) 2022.05.06. 10:00(속행) 2022.05.09. 10:00(속행) 2022.05.13. 10:00(속행) 2022.05.16. 10:00(속행) 2022.05.20. 10:00(속행)	1.유○규 - 유기징역 8년 벌금 400,000,000(사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일백만)원) 가납명령 추징 810,000,000(팔억일천만)원 가납명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2.김○배 - 유기징역 8년 추징 42,801,650,000(사백이십팔억일백육십오만)원 가납명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3.남○ - 유기징역 4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4.정○학 - 유기징역 5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5.정○용 - 유기징역 6년 벌금 3,800,000,000(삼십팔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3,800,000(삼백팔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3,722,000,000(삼십칠억이천이백만)원 가납명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자의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2022.05.23. 10:00(속행) 2022.05.27. 10:00(속행) 2022.05.30. 10:00(속행) 2022.06.03. 10:00(속행) 2022.06.10. 10:00(속행) 2022.06.17. 10:00(속행) 2022.06.20. 10:00(속행) 2022.06.24. 10:00(속행) 2022.07.01. 10:00(속행) 2022.07.08. 10:00(속행) 2022.07.11. 10:00(속행) 2022.07.15. 10:00(속행) 2022.07.22. 10:00(속행) 2022.07.25. 10:00(속행) 2022.08.08. 10:00(속행) 2022.08.12. 10:00(속행) 2022.08.19. 10:00(속행) 2022.08.22. 10:00(속행) 2022.08.26. 10:00(속행) 2022.09.02. 10:00(속행) 2022.09.05. 10:00(속행) 2022.09.16. 10:00(속행) 2022.09.19. 10:00(속행) 2022.09.23. 10:00(속행) 2022.09.30. 10:00(속행) 2022.10.07. 10:00(속행) 2022.10.14. 10:00(기일변경) 2022.10.21. 10:00(속행) 2022.10.24. 10:00(속행) 2022.10.28. 10:00(속행) 2022.11.04. 10:00(속행) 2022.11.07. 10:00(속행) 2022.11.11. 10:00(속행) 2022.11.18. 10:00(속행) 2022.11.21. 10:00(속행) 2022.11.25. 10:00(속행) 2022.12.02. 10:00(속행) 2022.12.05. 10:00(속행) 2022.12.09. 10:00(속행) 2022.12.16. 10:00(기일변경) 2022.12.19. 10:00(기일변경) 2022.12.23. 10:00(기일변경) 2023.01.13. 10:00(속행) 2023.01.16. 10:00(속행)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2023.01.20. 10:00(속행) 2023.01.27. 10:00(속행) 2023.01.30. 10:00(속행) 2023.02.10. 10:00(속행) 2023.02.13. 10:00(기일변경) 2023.02.24. 10:00(기일변경) 2023.02.27. 10:00(속행) 2023.03.03. 10:00(속행) 2023.03.06. 10:00(속행) 2023.03.10. 10:00(속행) 2023.03.15. 10:00(속행) 2023.03.17. 10:00(속행) 2023.03.20. 10:00(속행) 2023.03.24. 10:00(속행) 2023.03.27. 10:00(속행) 2023.03.31. 10:00(속행) 2023.04.03. 10:00(속행) 2023.04.10. 10:00(속행) 2023.04.12. 10:00(속행) 2023.04.17. 10:00(속행) 2023.04.19. 10:00(기일변경) 2023.04.21. 10:00(기일변경) 2023.04.24. 10:00(기일변경) 2023.05.01. 10:00(속행) 2023.05.15. 10:00(속행) 2023.05.17. 10:00(기일변경) 2023.05.17. 14:00(속행) 2023.05.22. 10:00(기일변경) 2023.05.24. 10:00(기일변경) 2023.06.05. 10:00(속행) 2023.06.23. 10:00(기일변경) 2023.07.17. 14:00 (속행(추정)) 2023.09.18. 10:00(속행) 2023.09.25. 10:00(기일변경) 2023.10.06. 10:00(속행) 2023.10.13. 10:00(속행) 2023.10.20. 10:00(속행) 2023.10.23. 10:00(속행) 2023.10.27. 10:00(속행) 2023.11.03. 10:00(속행) 2023.11.06. 10:00(속행) 2023.11.10. 10:00(속행) 2023.11.13. 10:00(속행)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2023.11.20. 10:00(속행) 2023.11.24. 10:00(속행) 2023.12.04. 10:00(속행) 2023.12.08. 10:00(기일변경) 2023.12.11. 10:00(기일변경) 2023.12.18. 10:00(연기) 2023.12.22. 10:00(속행) 2024.01.08. 10:00(속행) 2024.01.15. 10:00(속행) 2024.01.19. 10:00(속행) 2024.02.26. 10:00(속행) 2024.03.08. 10:00(속행) 2024.03.15. 10:00(속행) 2024.03.22. 10:00(속행) 2024.03.25. 10:00(속행) 2024.04.01. 10:00(속행) 2024.04.05. 10:00(속행) 2024.04.08. 10:00(속행) 2024.04.15. 10:00(속행) 2024.04.19. 10:00(속행) 2024.04.22. 10:00(속행) 2024.04.29. 10:00(속행) 2024.05.03. 10:00(속행) 2024.05.13. 10:00(속행) 2024.05.17. 10:00(속행) 2024.05.31. 10:00(속행) 2024.06.10. 14:00(속행) 2024.06.14. 10:00(속행) 2024.06.17. 14:00(속행) 2024.07.08. 10:00(속행) 2024.07.12. 10:00(속행) 2024.07.15. 10:00(속행) 2024.07.22. 10:00(속행) 2024.07.26. 10:00(속행) 2024.08.12. 10:00(속행) 2024.08.19. 10:00(속행) 2024.08.23. 10:00(속행) 2024.09.02. 10:00(속행) 2024.09.09. 10:00(속행) 2024.09.30. 10:00(속행) 2024.10.07. 10:00(속행) 2024.10.14. 10:00(속행) 2024.10.21. 10:00(속행) 2024.10.28. 10:00(속행)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2024.11.01. 10:00(속행) 2024.11.11. 10:00(속행) 2024.11.15. 10:00(속행) 2024.11.18. 10:00(속행) 2024.11.25. 10:00(속행) 2024.11.29. 14:00(속행) 2024.12.02. 10:00(속행) 2024.12.09. 10:00(속행) 2024.12.13. 10:00(속행) 2024.12.16. 10:00(속행) 2025.01.06. 10:00(속행) 2025.01.10. 10:00(속행) 2025.01.13. 10:00(속행) 2025.01.20. 10:00(속행) 2025.01.24. 10:00(속행) 2025.02.03. 10:00(속행) 2025.02.10. 10:00(속행) 2025.02.17. 10:00(속행) 2025.02.21. 10:00(속행) 2025.02.24. 10:00(속행) 2025.02.28. 10:00(속행) 2025.03.10. 10:00(속행) 2025.03.17. 10:00(속행) 2025.03.21. 10:00(속행) 2025.03.24. 10:00(기일변경) 2025.03.24. 10:30(속행) 2025.03.28. 10:00(속행) 2025.03.31. 10:00(속행) 2025.04.07. 10:30(속행) 2025.04.21. 10:00(속행) 2025.04.28. 10:00(속행) 2025.05.12. 10:00(속행) 2025.05.16. 10:00(속행) 2025.05.19. 10:00(속행) 2025.05.26. 10:00(속행) 2025.05.30. 10:00(속행) 2025.06.02. 10:00(속행) 2025.06.09. 10:00(속행) 2025.06.16. 10:00(속행) 2025.06.23. 10:00(속행) 2025.06.27. 10:00(속행) 2025.06.30. 10:00(속행) 2025.10.31. 14:00(선고기일)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 2025노311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 2025. 11. 11. 접수	유○규 김○배 남○ 정○학 정○용	2026.01.23. 14:00 (준비기일종결)	2026.03.13. 14:00(속행) 2026.03.27. 10:30(속행) 2026.04.03. 10:00	

1-2. 대장동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217]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나) 2023고합217 <병합사건: 2023고합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2023. 3. 22. 접수	이○명 정○상	2023.05.11. 10:00(속행) 2023.07.06. 10:00(속행) 2023.07.20. 10:00(속행) 2023.08.11. 14:00(속행) 2023.08.18. 14:00(속행) 2023.09.01. 14:00 (준비기일종결) 2024.01.12. 10:30 (준비기일종결) 2024.02.06. 10:30(속행) 2024.02.16. 10:30 (준비기일종결)	2023.09.15. 10:30(기일변경) 2023.10.06. 10:30(속행) 2023.10.17. 10:30(속행) 2023.10.20. 10:30(속행) 2023.11.03. 14:15(속행) 2023.11.07. 10:30(속행) 2023.11.14 10:30(속행) 2023.11.17 10:30(속행) 2023.11.21 10:30(속행) 2023.11.28. 10:30(기일변경) 2023.12.01. 10:30(기일변경) 2023.12.05 10:30(속행) 2023.12.12. 10:30(기일변경) 2023.12.15. 10:30(기일변경) 2023.12.19 10:30(속행) 2024.01.09. 10:30 (기일변경(추정)) 2024.01.23 10:30(속행) 2024.01.23. 14:15 [공판외기일] 2024.01.26 10:30(속행) 2024.01.30 10:30(속행) 2024.02.27 10:30(속행) 2024.03.12 10:30(속행) 2024.03.19. 10:30(연기) 2024.03.26 10:30(속행) 2024.03.29 10:30(속행) 2024.04.02 10:30(속행) 2024.04.09 10:30(속행) 2024.04.16 10:30(속행) 2024.04.23 10:30(속행) 2024.04.26 10:30(속행) 2024.04.30 10:30(속행) 2024.05.07. 10:30 [일부속행(추정)/일부속행] 2024.05.14 10:30(속행) 2024.05.21. 10:00)(속행) 2024.05.24 10:30(속행) 2024.05.28. 10:30 (일부연기/일부속행)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2024.06.04 10:30(속행) 2024.06.07 10:30(속행) 2024.06.11 10:30(속행) 2024.06.18 10:30(속행) 2024.06.21 10:30(속행) 2024.07.02 10:30)(속행) 2024.07.05 10:30)(속행) 2024.07.09 10:30)(속행) 2024.07.16. 10:30(기일변경) 2024.07.19 10:30(속행) 2024.07.23 10:30(속행) 2024.08.13 10:30(속행) 2024.08.16 10:30(속행) 2024.08.20 10:30(속행) 2024.08.27. 10:30(기일변경) 2024.08.30 10:30(속행) 2024.09.03 10:30(속행) 2024.09.10 10:30(속행) 2024.09.13 10:30(속행) 2024.09.27 10:30(속행) 2024.10.08 10:30(속행) 2024.10.11. 10:30(연기) 2024.10.15 10:30(속행) 2024.10.22 10:30(속행) 2024.10.25 10:30(속행) 2024.10.29 10:30(속행) 2024.11.05 10:30(속행) 2024.11.08 10:30(속행) 2024.11.12 10:30(속행) 2024.12.03 10:30(속행) 2024.12.06 10:30(속행) 2024.12.10 10:30(속행) 2024.12.17 10:30(속행) 2024.12.20 10:30(속행) 2025.01.07 10:30(속행) 2025.01.14 10:30(속행) 2025.01.17 10:30(속행) 2025.01.21 10:30(속행) 2025.02.04 10:30(속행) 2025.02.14 10:30(속행) 2025.02.18 10:30(속행) 2025.03.04 10:30(속행) 2025.03.11 10:30(속행) 2025.03.25 10:30(속행)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2025.04.01 10:30(속행) 2025.04.08 10:30(속행) 2025.04.15 10:30(속행) 2025.04.22 10:30(속행) 2025.04.29 10:30(속행) 2025.05.13. 10:30(기일변경) 2025.05.27. 10:30(기일변경) 2025.06.24. 10:30 [기일변경(추정)] 2025.07.15 10:30(속행) 2025.07.21 10:00(속행) 2025.08.12. 10:00(속행) 2025.08.19. 10:00(속행) 2025.09.05. 10:00(속행) 2025.09.19. 10:00(속행) 2025.10.17. 10:00(속행) 2025.10.24. 10:00(속행) 2025.11.07. 10:00(속행) 2025.11.21. 10:00(기일변경) 2025.12.05. 10:00(속행) 2026.01.30. 10:00(속행) 2026.02.13. 10:00(기일변경) 2026.02.27. 10:00(속행) 2026.03.13. 10:00(기일변경) 2026.03.27. 10:00(기일변경) 2026.02.12. 10:00(속행) 2026.03.11. 10:00(속행) 2026.03.25. 10:00(속행) 2026.04.29. 10:00 2026.05.27. 10:00 2026.06.24. 10:00	

2. 위례신도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898]

사건번호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2022고단4898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2022. 9. 26. 접수 2026. 2. 5. 확정	유○규 주○형 남○ 정○학 정○창		2022.12.07. 10:00(속행) 2023.02.08. 10:00(속행) 2023.03.08. 10:00(속행) 2023.05.10. 14:00(속행) 2023.07.05. 15:00(속행) 2023.08.23. 14:00 [일부속행(추정)/일부속행] 2023.09.20. 14:00(속행) 2023.11.08. 14:00(속행) 2024.01.24. 15:00(기일변경) 2024.03.06. 14:00(속행) 2024.05.29. 14:00(속행) 2024.09.06. 14:00 [일부속행(추정)/일부속행] 2024.10.04. 14:00(속행) 2024.11.08. 14:00(속행) 2024.12.06. 14:00(속행) 2025.01.17. 14:00 [일부속행(추정)/일부속행] 2025.02.07. 14:00(속행) 2025.03.14. 14:00(속행) 2025.04.04. 14:00(속행) 2025.05.02. 14:00(속행) 2025.06.20. 14:00 [일부속행(추정)/일부속행] 2025.08.29. 14:00(속행) 2025.09.26. 14:00(속행) 2025.11.28. 14:00(변론종결) 2026.01.28. 13:30(선고기일)	1.유○규 2.주○형 3.남○ 4.정○학 5.정○창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등은 33 ~ 50면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875 / 서울고등법원 2023노4029 / 대법원 2025도3148]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나) 2022고합875 <병합사건: 2022고합1068> 정치자금법위반 등 접수 2022. 11. 9.	김○ 유○규 정○용 남○	2022.12.23. 10:00(속행) 2023.01.19. 14:00(속행) 2023.02.16. 11:00(종결)	2023.03.07. 10:00(속행) 2023.03.09. 10:00(속행) 2023.03.14. 10:00(속행) 2023.03.16. 10:00(속행) 2023.03.21. 10:00(속행) 2023.03.28. 10:00(속행) 2023.03.30. 10:00(속행) 2023.04.13. 10:00(속행) 2023.04.20. 10:00(속행) 2023.04.13. 15:00 (심문기일/종결) 2023.04.20. 10:00(속행) 2023.04.13. 15:00 (심문기일/종결) 2023.05.04. 10:00(속행) 2023.05.11. 10:00) [일부속행/일부속행(추정)] 2023.05.25. 10:00(속행) 2023.06.01. 10:00(속행) 2023.06.08. 10:00(속행) 2023.06.15. 10:00(속행) 2023.06.22. 10:00(속행) 2023.07.06. 10:00(속행) 2023.07.13. 10:00(속행) 2023.07.20. 10:00(속행) 2023.08.17. 14:00(속행) 2023.08.31. 10:00(속행) 2023.09.21. 10:00(변론종결) 2023.11.30. 14:00(판결선고)	1.김○ - 징역 5년, 벌금 70,000,000(칠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670,000,000(육억칠천만) 2.유○규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정○용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남○ - 징역 8월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23노4029 정치자금법위반 등 2023. 12. 27. 접수	김○ 유○규 정○용 남○	2024.02.22. 16:30(속행) 2024.03.18. 14:00 (준비기일종결)	2024.04.11. 10:00(속행) 2024.04.11. 14:00(속행) 2024.04.29. 14:00(속행) 2024.05.02. 14:00(속행) 2024.05.16. 15:00(속행) 2024.06.03. 14:00(속행) 2024.07.01. 15:00(기일변경) 2024.07.01. 10:00(속행) 2024.08.26. 14:00(속행) 2024.11.04. 10:00(속행)	1.김○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유기징역 5년 벌금 70,000,000(칠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670,000,000(육억칠천만)원 가납명령 피고인 김○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2024.11.28. 10:00(속행) 2024.11.28. 14:30(변론종결) 2025.02.06. 14:00(판결선고)	명한다. 2.유○규, 3.정○용, 4.남○ - 항소기각 판결(변론)
대법원 제1부(아) 2025도3148 정치자금법위반 등 2025. 2. 26. 접수	김○ 유○규 정○용 남○			

4-1.‘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751]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나) 2024고합7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2024. 7. 9. 접수	김○배 신○림 김○진 한○진	2024.07.31. 14:00(속행) 2024.08.23. 10:00(속행) 2024.09.02. 10:00 (준비기일종결)	2024.09.24. 10:00(속행) 2024.10.22. 10:00(속행) 2024.10.29. 10:00(속행) 2024.11.05. 10:00(속행) 2024.11.12. 10:00(속행) 2024.11.19. 10:00(속행) 2024.12.10. 10:00(속행) 2025.01.21. 10:00(속행) 2025.03.11 10:00 [기일변경(추정)] 2025.04.04. 10:00(속행) 2025.05.23. 10:00(속행) 2025.06.20. 10:00(속행) 2025.07.25. 10:00(속행) 2025.09.05. 10:00(속행) 2025.09.19. 10:00(속행) 2025.10.24. 10:20(기일변경) 2025.10.28. 14:00(속행) 2025.12.09. 14:00(속행) 2026.01.13. 14:00(기일변경) 2026.02.10. 14:00(기일변경) 2026.03.10. 14:00(속행) 2026.03.24. 14:00(속행) 2026.04.10 14:00 2026.05.12 14:00 2026.05.26 10:15 2026.06.09 10:15 2026.05.26 10:15	

4-2.‘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918]

사건번호 등	피고인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나) 2024고합9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2024. 8. 13. 접수	봉○욱 송○수 허○현	2025.03.31. 16:00(속행) 2025.04.28. 15:00(속행) 2025.05.26. 11:00(기일변경) 2025.06.09. 11:00(기일변경) 2025.07.07. 11:00(종결)	2025.08.25. 11:00(속행) 2025.09.29. 14:00(속행) 2025.11.03. 14:00(속행) 2025.12.15. 14:00(속행) 2026.01.19. 14:00(속행) 2026.02.02. 14:00(기일변경) 2026.03.16. 14:00(속행) 2026.04.14. 13:30	

재판부 설명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70, 1015(병합), 1100(병합), 1205(병합), 2022고합83(병합), 236(병합), 237(병합), 347(병합), 2023고합27(병합)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2025.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사 건 개 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70, 1015(병합), 1100(병합), 1205(병합), 2022고합83(병합), 236(병합), 237(병합), 347(병합), 2023고합2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피 고 인 :** 1. 유○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 김○배(전 기자, 주식회사 화천대유 회장)
3. 남○(변호사, 천화동인4호 대표)
4. 정○학(회계사, 천화동인5호 대표)
5. 정○용(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

□ **선고기일 :** 2025. 10. 31.(금) 14:00 서관 523호 법정

□ **선고요지**

<피고인 1. 유○규>

징역 8년 및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은 무죄

<피고인 2. 김○배>

징역 8년

추징 428억 원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3. 남○>

징역 4년

<피고인 4. 정○학>

징역 5년

<피고인 5. 정○용>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 37억 2,200만 원

<피고인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1)]

순번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피고인	주요내용	
1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피고인 1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함) 기획본부장이고, 피고인 5는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임. 피고인 2, 3, 4는 공사와 민간의 민관합동개발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측 사업자들(이하 '민간업자들'이라 함)임. - 피고인 1은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내정하고 피고인 5로 하여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기준이 공모지침서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1, 5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심사를 하였음. - 또한 피고인 1, 5는 객관적 검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공사가 1,822억 원 상당 확정이익 배당방안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공모지침서 작성과	**업무상배임으로 유죄 [특경(배임) 이유무죄]**

순번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피고인	주요내용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 주무부서인 개발사업1팀의 추가이익 환수 의견을 묵살하였음. - 이처럼 피고인 1, 5는 피고인 2, 3, 4와 공모하여 공사 임직원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는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공사가 확보했어야 하는 배당이익 672,533,264,293원에서 공사가 실제 지급받은 배당금 183,000,000,000원의 차액인 489,533,264,293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음.	
2	1~5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23. 1.경까지 피고인 1, 5등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방식 및 공모일정, 서판교터널 개설, 공모지침서 주요내용을 이용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합계 788,616,806,1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음.	**무죄 (이유면소)**
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피고인 1은 대장동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업자인 피고인 3, 4, 정○창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3. 4. 2.부터 2013. 8.경까지 뇌물 3억 5,200만 원을 수수하였음.	**3억 1,000만 원 수수 부분 유죄 (일부 이유 무죄)**
4	1,2	**[각 부정처사후수뢰(피고인 1),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뇌물공여약속(각 피고인 2)]** - 피고인 1은 공사의 사장 직무대행 및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 2로부터 2014. 6.경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로 2021. 1. 31. 피고인 2로부터 5억 원의 뇌물(수표 4억 원, 현금 1억 원)을 수수함. - 또한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피고인 2로부터 428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음. -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5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가 운영하던 천화동인1호 법인자금을 보관 중 위 5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위 428억 원을 피고인 1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함.	**각 무죄**
5	1	**[증거인멸교사]** - 피고인 1은 2021. 9. 14.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본인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2021. 9. 29. 동거인 박○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아이폰12 프로맥스 휴대전화기(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함)를 박○선에게 버리라고 지시하여 박○선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음. 이로써 피고인 1은 증거인멸을 교사함.	**유죄**
6	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2는 2021. 10. 14. 서울구치소 외정문 부근에서 피고인 2의 출소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구치소 소속 교사 이○훈에게 현금 165만 원을 제공함.	**유죄**
7	2	**[업무상횡령]** - 피고인 2는 피해자 화천대유와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 천화동인1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제, 김○두, 유○영, 전○옥,	**유죄**

순번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피고인	주요내용	
		서○○나 등이 천화동인1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5명에게 합계 2억 6,500만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인 2의 동생 김○배가 2020. 1.경부터 2021. 9.경까지 화천대유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1억 7,850만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였음. - 총 횡령액: 4억 4,350만 원	
8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고인 2는 나○규가 피고인 2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저지른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 천화동인1호의 자금 100억 원을 이○성이 운영하는 ㈜더감을 통해 나○규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음.	유죄
9	3,5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각 피고인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각 피고인 5)]** - 피고인 5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투자사업파트장 및 투자사업팀장, 전략사업실장으로서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이를 누설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피고인 3으로부터 ① 2016. 3.경부터 2019. 9.경까지 2억 2,200만 원, ② 2020. 9. 10. 20억 원, ③ 2020. 11. 20. 5억 원, ④ 2020. 12. 9. 10억 원 합계 37억 2,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 -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피고인 5에게 37억 2,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중 35억 원은 피고인 3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엔에스제이홀딩스 자금으로 조달하여 위 피해자 법인자금 35억 원을 횡령함. - 피고인 3, 5는 위와 같이 2020년 피고인 3이 뇌물 35억 원을 수수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5가 피고인 3이 운영하는 엔에스제이홀딩스로부터 35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 5가 정상적으로 35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 받은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내어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	각 유죄
10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3은 천화동인4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저스트알에 대한 피고인 3의 개인채무 원리금 상환에 천화동인4호 자금 3,803,052,055원을 사용하여 횡령함. -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천화동인4호 자금 3,803,052,055원을 횡령하면서 천화동인4호가 저스트알에 선급금이나 지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	유죄

1) 이하 개별 공소사실 및 범죄사실을 이 부분 표 기재 순번에 따라 특정하였음.

[주된 쟁점 및 판단의 요지]

공소사실 순번	주된 쟁점 및 판단의 요지		
1	쟁점 1	피고인 1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피고인 2, 3, 4 등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였는지 여부	
	판단 1	결론	내정사실 인정
		이유	- 공사 설립과 이○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피고인 2, 3, 4 등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피고인 3, 4는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피고인 1, 정○상, 김○의 주대를 결제해주는 등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형성됨. - 피고인 2는 2014. 6. 28. 피고인 1, 정○상, 김○과의 만남에서 수용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음. - 수용방식 결정 이후 위 2014. 6. 28. 자 모임을 주도했던 피고인 2가 사업 주도권을 획득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5와 김○걸을 채용하였으며, 피고인 1, 5가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하였음. - 나아가 피고인 2는 피고인 1 등에게 향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피고인 2의 지분 일부 상당액을 배분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쟁점 2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피고인 1, 5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2	결론	임무위배행위 인정
		이유	- 피고인 1은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내정함에 따라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피고인 5에게 지시하여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음. - 피고인 5는 피고인 4와 소통하며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였고,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점하여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음. - 피고인 4는 건설사 배제 등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컨소시엄 구성에 착수하거나 초기 사업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업자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였음. -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절차는 피고인 1, 5가 피고인 2, 3, 4 등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반영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련의 과정이었고, 이는 공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함.
	쟁점 3	피고인 1, 5가 민간업자들과 공모하여 확정이익 외에 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추가 이익 확보를 포기하였는지 여부	
	판단 3	결론	추가 이익 확보 포기 인정

공소사실 순번	주된 쟁점 및 판단의 요지		
		이유	- 민간업자들은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제외하고도 예상 개발이익이 4,000억 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고, 그럼에도 예상 분양가를 조정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등으로 개발이익을 축소하여 공사가 A10 블록을 취득하는 것이 전체 이익의 절반을 취득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피고인 1 등에게 A10 블록을 공사에 제공하기로 제안하였음. - 따라서 A10 블록은 공사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익에 불과함. - 또한 피고인 1, 5는 공사에 A10 블록을 확정이익으로 배분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것이 공사의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객관적,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지한 검토나 고민 없이 민간업자들의 분석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확정이익으로 공사가 A10 부지 또는 그 가액 상당을 받는 것으로 정하였음. - 나아가 피고인 1, 5는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 주무부서인 개발사업1팀의 초과이익 배분 의견을 합리적 근거 없이 묵살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사실상 공사의 이익이 A10 블록 가액 상당(1,822억 원)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는 공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함.
	쟁점 4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판단 4	결론	재산상 손해 발생 인정
		이유	-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행한 역할과 그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출자지분율(50.1%)에 상응하는 이익을 배당받는 것이 공사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이익배당에 해당함. - 한편 피고인 1은 공원 조성 후 예상 개발이익이 4,000~5,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민간업자들로부터 고지·제안받아 알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공사가 A10 블록 가치를 넘는 추가 이익 취득을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1은 민간업자들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함. - 결국 피고인 1, 5의 임무위배행위로 공모공고 절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사업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공사에게 당시 객관적·개연적으로 그 취득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개발이익, 즉 1,822억 원의 2배를 넘는 개발이익의 50%와 확정이익으로 정해진 1,822억 원 사이의 차액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권리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음.
	쟁점 5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의율 여부]	
	판단 5	결론	기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의율 불가.
		이유	- 계약체결로써 채권이 침해되는 배임사건의 기수 시점은 계약체결 시이고,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 이 사건은 사업협약 체결로써 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하여 업무상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기수 시점인 사업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

공소사실 순번	주된 쟁점 및 판단의 요지		
			로 재산상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함. - 사업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이익 1,822억 원이 사업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장차 택지개발 사업이익이 1,822억 원의 2배를 초과하리라는 점을 넘어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불가함. -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을 위한 이 사건 사업협약 체결 당시 민간업자들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역시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결국 피고인들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징역 10년 이하)만 인정되고, 피고인 2,3,4는 업무상 타인사무 처리자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배임죄(징역 5년 이하)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쟁점 1**	서판교터널 관련 공소사실 기재 비밀 중 '서판교 터널의 개설 위치와 해당 위치에 서판교터널이 언젠가는 개설될 것'이라는 정보가 구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법') 제86조 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 제1항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1	**결론**	공소사실 기재 비밀 이용행위 당시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 서판교터널 관련 정보를 이용한 공소사실 기재 비밀 이용행위는 ① 2015. 2.~2015. 4.경 킨앤파트너스 대표 박○수에게 서판교터널 개설 사실을 알려주면서 투자 약속을 받았다는 점(이하 '1차 비밀이용행위'), ② 2016. 8.경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016. 10. 12.~11.16. 그 결과를 회신하는 등 대장동 수용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관련 비밀이 지가상승분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토지 취득 비용을 절감하였다는 점(2차 비밀이용행위)임. - 그런데 '서판교터널 개설 위치와 해당 위치에 서판교터널이 언젠가는 개설될 것'이라는 정보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비밀이용행위 이전에 2014. 2. 자 성남 도시기본계획(변경) 중 최적 도로망 계획, 2014. 12. 22.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공람·공고, 도로 개설 현황(서판교터널과 연결될 도로 초입 부분이 미리 개설)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실이었으므로 위 비밀이용행위 시점 기준 '비밀'로 인정할 수 없음.
	쟁점 2	서판교터널 관련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비밀인 '서판교터널의 사업방식, 비용 부담 주체, 개설 시기 등 관련 정보'의 '비밀' 해당 여부와 관련 비밀이용행위의 존부	
	판단 2	**결론**	보호가치 있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이용행위도 존재하지 않음.
		이유	- 해당 정보는 2016. 1. 12.경 생성(성남시 내부 확정)되어 2016. 11. 8.경 공표되었는바, 공소사실 기재 위 '1차 비밀이용행위' 당시(2015. 2. 내지 2015. 4.경)에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불과함(이를 보호가치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위 공소사실 기재 '2차 비밀이용행위'인 토지보상감정평가 의뢰 당시(2016. 8.경)를 기준으로 해당 정보가 내부적으로는 확정되었

공소사실 순번	주된 쟁점 및 판단의 요지		
			으나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보상금액을 낮추려는 고의 아래 관련 공표를 일부러 늦추었다거나 토지보상시점을 관련 공표 시기 전으로 앞당긴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 3	서판교터널 관련 비밀 외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비밀(사업방식, 사업일정, 공모지침서 주요 내용)과 비밀이용행위의 인정 여부	
	판단 3	**결론**	공소시효 도과(이유 면소)
		이유	- 공소사실과 달리 '출자자가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될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근거'는 공모지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 기재 비밀이용행위도 인정할 수 없음. -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비밀인 '사업방식, 사업일정, 공모지침서 주요내용(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근거 제외)'은 '비밀'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한 피고인 1, 5의 비밀누설, 누설 비밀을 활용한 피고인 2, 3, 4 등 민간사업자 측의 조기 공모 준비와 컨소시엄 구성 등 비밀이용행위와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2015. 8. 19. 성남의뜰의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인한 사업권 취득)을 일응 인정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구 부패방지법위반죄,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는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인정된 비밀 이용행위로써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가액 불상 이익으로 판단함. 따라서 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시점인 2015. 8. 19.경 범죄행위가 종료하고, 그 때부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기산되는데, 검사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23. 1. 12.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인정 비밀이용행위로 인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른 면소판결 선고 대상임. - 다만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함(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324 판결 참조).
3	**쟁점 1**	피고인 1이 2013. 5. 29.경 피고인 3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의 직무관련성 유무	
	판단 1	**결론**	직무관련성 존재
		이유	-피고인 1은 공단 기획본부장으로서 공단이나 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함. -피고인 1은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이○명의 주요 공약 이행업무를 맡았고,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이○명 또는 정○상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또한 피고인 3 등 민간업자들은 피고인 1가 공단 기획본부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민간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
	쟁점 2	피고인 1이 교부받은 구체적인 뇌물액수	

공소사실 순번	주된 쟁점 및 판단의 요지		
	판단 2	결론	3억 1,000만 원 수수
		이유	-피고인 3은 2013. 4. 2.부터 2013. 7. 2.까지 피고인 1에게 3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위 피고인 3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4가 제출한 녹음파일이나 피고인 3, 4가 현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음. -한편 피고인 3은 위 3억 1,000만 원 외에도 2013. 8. 30.까지 피고인 1에게 4,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위 피고인 3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4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움. -따라서 위 3억 1,000만 원만 수뢰액으로 인정.
	쟁점 3	피고인 1이 2013. 4. 2.부터 2013. 4. 17.까지 받은 1억 7,000만 원 관련, 피고인 1이 피고인 3 대신 정○상 또는 김○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판단 3	결론	피고인 1의 주장 배척. 피고인 1이 수수한 뇌물에 해당함.
		이유	-피고인 1이 위 돈을 정○상, 김○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1이 취득한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음.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그 돈이 정○상이나 김○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 따라서 피고인 3이 위 사람들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4	쟁점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수수하거나(5억 원), 수수하기로 약속한 돈(428억 원)은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분배받거나(5억 원), 분배를 다시 약속한(428억 원) 실질을 가지는지 여부	
	판단	결론	-배임 범행 당시 사전에 모의한대로 배임 범행의 재산상 이익을 분배하는 실질을 가짐. 따라서 피고인 1을 각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처벌 불가.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로 인한 특경법(횡령)위반의 점 또한 처벌 불가.
		이유	- 공무원이 관급공사나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등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 당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부풀린 금액 일부를 돌려받기로 모의하고, 이후 모의한대로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 횡령·배임죄만 성립할 뿐 따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임. - 피고인 2는 2015. 2.경 피고인 1에게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주기로 하면서, 향후 발생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피고인 1측 지분에 따라 분배할 것을 약정하였음. - 피고인 1측의 지분은 피고인 2 지분의 3/4 내지 천화동인1호 지분 상당에서 이후 1/2로 변경되었고, 2020. 10.경 700억 원, 2021. 2.경 최종 428억 원으로 변경됨. -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021. 1. 31. 5억 원(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2와 피고인 3 사이 대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위 5억 원은 피고인 1측이 가져가야 할 돈을 분배한 것임(428억 원 도출 과정에서 위 5억 원의 2배인 10억 원이

공소사실 순번	주된 쟁점 및 판단의 요지		
			공제됨). - 결국 위 5억 원, 428억 원은 피고인들의 공동 배임 범행으로부터 비롯된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사전에 모의한대로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죄로만 처벌될 뿐 따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음.
5	쟁점	피고인 1이 박○선을 상대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인멸을 교사하였는지 여부	
	판단	결론	교사 행위 인정
		이유	- 피고인 1의 동거인 박○선은 피고인 1의 교사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박○선의 통화기록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려움(박○선은 본인에 대한 증거인멸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음). - 피고인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2021. 9. 29.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파손하였고, 당일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며, 그 가운데 박○선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할 것을 박○선에게 부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인 1은 이 법원 제9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후 다시 자백을 번복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상을 통해 선임된 김○수 변호사가 박○선에게 휴대전화를 버릴 것을 교사하였다는 취지임. 그러나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인정되지 않음.
7	쟁점	피고인 2가 전○제, 김○두, 유○영, 전○옥, 서○○나, 김○배에게 실제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인지 여부	
	판단	**결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횡령죄 인정.
		이유	- 이○문, 이○성 등 화천대유 관계자의 진술과 전○제, 김○두, 유○영, 전○옥, 서○○나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사람들이 실제 천화동인1호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김○배, 이○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배가 2020. 1.경부터 화천대유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김○배의 경우 2020. 1.경부터 2021. 9.경까지 화천대유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화천대유에서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상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8	쟁점	피고인 2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저지른 개인적 비리를 무마하기 위한 용도로 천화동인1호의 자금 10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	
	판단	**결론**	피고인 2의 개인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천화동인1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인정
		이유	- 이○성 진술에 의하면 나○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과 공사 직원들 사이 유착관계 등을 거론하며 이○성을 협박하였고, 이에 피고인 2가 이○성이 운영하는 더감을 통해 나○규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 2가 이○성의 더감을 통해 나○규의 금강인프라건설에 지급한 100억 원은 더감이 금강인프라건설에 토목공사를 수주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임.

공소사실 순번	주된 쟁점 및 판단의 요지		
			- 나○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 즉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사업자 내정과 공사 직원 간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는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나○규는 실제 피고인 3, 5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적이 있음), 피고인 2는 이를 막기 위해 나○규에게 1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9	쟁점 1		**[피고인 3 뇌물공여, 피고인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피고인 5가 피고인 3으로부터 37억 2,200만 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 5가 공소사실 기재 직무상 부정행위[① 공사 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 및 로비자금 조달 조력, ② 예상 사업이익 규모가 축소된 형식적 사업타당성 용역의뢰, ③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 작성 및 누설, ④ 공사 내부의 반대의견 묵살(공모지침서 확정 등 과정), ⑤ 특정 민간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불공정한 심사 진행, ⑥ 사업협약·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주무부서의 배당 방안 개선 건의 배척, ⑦ 민간업자의 요구에 따른 1공단 분리 관여]를 하였는지 여부 -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판단 1	결론	- 37억 2,200만 원의 수수 인정. - 피고인 5의 일부 직무상 부정행위 인정(위 ① 내지 ⑥ 인정. ⑦은 불인정). - 위 37억 2,200만 원과 위 부정한 행위와의 대가관계, 직무관련성 인정.
		이유	- 피고인 5가 공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① 내지 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직무상 부정행위에 해당함[다만, 공소사실 기재 ⑦ 부정행위는 불인정. 공사가 성남시의 1공단 관련 소송 패소와 그에 따른 PF 대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의 1공단 분리 요청을 수용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부정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5가 공사 소속 직원으로서 성남시장에게 직접 1공단 분리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5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음]. - 피고인 3은 피고인 5에게 2016. 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합계 2억 2,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진술이나 계좌상 충분히 확인됨. 또한 피고인 3은 2020. 9. 10.경부터 2020. 12. 9.경까지 피고인 5에게 ㈜엔에스제이홀딩스(구 천화동인4호) 계좌에서 합계 35억 원을 송금하였음. - 피고인 3은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주체 1인으로 피고인 5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3이 피고인 5의 직무상 부정행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5가 공사 재직 중인 시점에는 생활비 일부를 지급하고(위 2억 2,200만 원), 공사 퇴직 무렵에는 퇴직 후 경제활동을 지원(위 35억 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 이 인정됨.
	쟁점 2		위 35억 원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3, 5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인정 여부
	판단 2	결론	피고인 3의 35억 원 횡령 및 피고인 3, 5의 범죄수익은닉죄 인정
		이유	- 피고인 3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서 위 35억 원을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뇌물

공소사실 순번	주된 쟁점 및 판단의 요지		
			을 공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 - 피고인 3, 5는 공모하여 사실은 위 35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3이 이를 피고인 5에게 다시마 비료 사업과 관련하여 대여 혹은 투자하는 돈인 것처럼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관련 투자약정서, 대여약정서의 작성 및 폐기 경위, 피고인 3의 자금사용처 미확인, 피고인 5의 자금사용처(상당 부분을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자금대여, 월세 등 생활비, 호텔 등 숙박비, 백화점 등에서의 물품구매대금, 차량 구입비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소비) 등에 비추어 이를 사업 투자금 혹은 대여금이라 볼 수 없음].
10	쟁점		- 피고인 3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천화동인 4호(이후 ㈜엔에스제이홀딩스로 상호 변경)의 계좌에서 저스트알의 계좌로 합계 3,803,052,055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 - 위 돈을 마치 천화동인 4호의 저스트알에 대한 선급금(자산)이나 지급수수료인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
	판단	결론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죄 인정
		이유	- 피고인 3은 자신의 저스트알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저스트알의 계좌로 위 3,803,052,055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임. - 그런데 피고인 3은 위 3,803,052,055원을 마치 피해회사가 저스트알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인 것처럼 가장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후 저스트알이 피해회사에게 위 선급금에 해당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위 선급금을 지급수수료(비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판단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함.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피고인 1, 5는 공모지침서에 피고인 2~4 등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였는바,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큼.

-나아가 피고인 1, 5는 미리 내정된 피고인 2, 3, 4.와 협의하여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방침을 정하여 공모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이익 증가에 대비한 초과이익 배분 주장마저 묵살한 채 그대로 사업협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손해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 배당결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음.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음.

○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양형의 이유

□ 피고인 1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임 사건에 대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적극적인 범행 인정으로 실체 파악의 단서를 제공하였음.

·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남.

· 배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확보한 지분에 따라 실제로 배분받은 이익은 5억 원으로, 거액이기는 하나 민간업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그마저도 4억 원은 피고인 3에게 주었음).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 3 등 민간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3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배임 범행 과정에서 개발이익 중 일정지분을 확보함으로써 피고인 2로부터 5억 원을 분배

받거나 428억 원 분배를 약속받는 등 사적 이익을 도모하였음.

· 피고인은 금품 등을 매개로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2 등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내정하였으며, 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피고인 2 등 민간업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사실상 민간업자들이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거나 확정이익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비록 피고인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지시받은 사항만 수행한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로서 민간업자들과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승인받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피고인은 사건 초기 동거인 박○선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하도록 교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한차례 자백하였다가 다시 태도를 바꾸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2013년 뇌물 범행 일부도 부인하고 있음.

□ 피고인 2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피고인 3, 4 등 민간업자들이 피고인 1을 상대로 한 일련의 금품 교부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음

· 횡령 범행의 피해자 화천대유, 천화동인1호가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사의 이익을 A10 블록 가액 상당으로 한정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 4 등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

하면서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49%)이자 실질 대표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피고인 1 등의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실제 배당 결과 배임 범행으로 가장 많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

· 특히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내정 받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공직자인 피고인 1 등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실제로 피고인 1에게 개발이익 중 일부을 분배하거나(5억 원) 분배를 약속하기도(428억 원) 하였음.

· 피고인은 화천대유나 천화동인1호에 허위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개인적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천화동인1호의 자금 100억 원을 나○규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위 각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고, 비록 화천대유, 천화동인1호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각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음.

· 범행 대부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 3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 말경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주도권을 피고인 2에게 넘긴 이후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가 반영되거나 사업협약에 불합리한 이익분배 구조가 확정되는 등 일련의 배임 범행과정에 대한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움.

· 피고인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자 천화동인4호는 피고인의 사실상 1인 회사임.

· 피고인은 2017년까지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실체관계에 관하여 다소나마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부 하였음.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사업 주도권을 피고인 2에게 내준 2014. 말경까지 민간업자들의 대표로서 피고인 1 등에게 거액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음.

· 피고인은 민간업자들 중 피고인 2 다음으로 많은 지분(25%)을 보유하면서 피고인 5를 통해 이 사건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하였으며, 대장동 지주들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모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일련의 배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 동기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은 피고인 5의 부정처사에 대한 대가로 뇌물 37억 2,200만 원을 공여하여 공사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천화동인4호 자금 합계 약 73억 원을 횡령하였으며,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죄수익 발생 원인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하였음.

·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피고인 4

-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재판 초반까지 배임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등 실체 파악의 단서를 제공하였음.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3과 함께 초창기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1에게 교부할 금품을 마련하는 등 유착관계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2014년경부터 PF 대출 자금조달,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대장동 사업이익 관련 사업수지 추정 등 일련의 배임 범행 과정에서 민간 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

·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피고인 5가 이 사건 공모지침서 작성을 전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음.

· 또한 피고인은 공사에 A10 블록을 제공하는 경우 공사가 전체 이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외관이 형성되도록 평당 분양가 등을 조정함으로써 예상 사업이익을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결국 공사의 이익이 A10 블록 가액 상당으로 한정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음.

·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 1, 5 등 공사 담당자들을 대신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수지 분석, 회계, 세무 등을 전담·수행하였는바, 민간업자들이 내린 결정의 근거는 모두 피고인의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던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없었던 피고인 1, 5는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 요청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반부터 돌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선서 후 증언한 내용까지 바꾸어가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배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 5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 사건 공모지침서 작성을 한 실무자로서 피고

인 1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기는 하였으나, 공모지침서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사항의 결정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수수한 뇌물 전부를 피고인이 쓴 것은 아니고(상당 부분을 피고인 1.과 함께 소비), 공범들과 처벌 균형을 고려함.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4와 만나거나 이○주와 소통하면서 공모지침서 내용을 조율하는 등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은 민간업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항이 반영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음.

· 민간업자들이 요청하는 확정이익 등의 내용이 공모지침서나 사업협약에 반영될 경우 공사에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객관적, 합리적인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민간업자들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였으며, 이에 반하는 공사 내부의 의견을 묵살하여 공사가 정당한 개발이익을 취득할 기회마저 박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함.

·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 피고인 3으로부터 37억 2,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바, 뇌물 수령 경위와 그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움.

·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음. <끝>

2022고합875 등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

2023.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

1. 결론(주문 및 판단요지)

<table>
<tr><th>피고인</th><th>주문</th><th colspan="2">판단요지</th></tr>
<tr><td rowspan="5">김 용</td><td rowspan="5">유죄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 6억 7,000만 원</td><td rowspan="2">정치자금법</td><td>2021. 5. 3.경 수수, 2021. 6. 8.경 수수, 2021. 6.하순 내지 7.초순경 수수로서 유동규로부터 전달받은 합계 6억 원 부분 유죄</td></tr>
<tr><td>위 부분 중 전달받지 않은 1억 원 및 전달받지 않은 2021. 8. 초경 1억 4,700만 원 부분 합계 2억 4,700만 원 부분 이유무죄</td></tr>
<tr><td rowspan="3">특가(뇌물)</td><td>2013. 설 및 추석 명절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 뇌물 수수부분 이유무죄</td></tr>
<tr><td>2013. 4.경 7,000만 원 뇌물 수수부분 유죄</td></tr>
<tr><td>2014. 4.경 1억 원 뇌물 수수부분 이유무죄</td></tr>
<tr><td rowspan="2">남 욱</td><td rowspan="2">유죄

징역 8개월</td><td colspan="2">2021. 5. 3.경 기부, 2021. 6. 8.경 기부, 2021. 6.하순 내지 7.초순경 기부로서 김용에게 전달된 합계 6억 원 부분 유죄</td></tr>
<tr><td colspan="2">위 부분 중 김용에게 전달되지 않은 1억 원 및 2021. 8. 초경 1억 4,700만 원 부분 합계 2억 4,700만 원 부분 이유무죄</td></tr>
<tr><td>유동규</td><td>무죄</td><td colspan="2">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없음
(대향범 법리)</td></tr>
<tr><td>정민용</td><td>무죄</td><td colspan="2">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없음
(대향범 법리)</td></tr>
</table>

2. 공소사실의 요지

▣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피고인 김용, 유동규, 남욱, 정민용]

● 공모

■ 피고인 김용은 이재명의 대선 경선을 위한 조직 구축, 지지세력 확보 등 대선 경선준비와 그에 따른 정치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유동규에게 경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유동규는 그 요구를 피고인 남욱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남욱은 피고인 유동규에게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및 부동산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에 관해 편의를 봐 달라고 하며 요청을 승낙함

■ 피고인 유동규는 피고인 정민용에게 피고인 남욱이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설명하며 피고인 남욱으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아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정민용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은 피고인 남욱과 함께 그와 같은 대선 경선 자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도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 김용은 공모하여 피고인 남욱으로부터 이재명을 위한 대선 경선준비 자금을 제공받기로 순차 모의함

● 실행행위

■ 2021. 4. 하순 내지 5. 초순경 1억 원 수수 → 유원홀딩스에서 피고인 김용에게 1억 원 전달

■ 2021. 6. 초순경 5억 원 수수 → 광교포레나 앞에서 피고인 김용에게 이 중 3억 원 전달

■ 2021. 6. 하순 내지 7. 초순경 1억 원 수수 →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 김용에게 위 수수액과 합하여 2억 원 전달

■ 2021. 8. 초순경 1억 4,700만 원 피고인 남욱(이몽주) → 피고인 정민용 수수 → 피고인 유동규에게 1억 4,700만 원 전달

⇒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 김용은 공모하여, 피고인 남욱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8억 4,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피고인 남욱은 이를 부정기부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피고인 김용]

■ 2013. 2. 설 명절 무렵 및 2013. 9. 추석 명절 무렵 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유동규로부터, 피고인의 성남시의회 사무실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 대가로 각 1,000만 원 씩 합계 2,000만 원의 뇌물 수수

■ 2013. 4. 초순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통과된 후 돈을 마련해달라고 하여 남욱에게서 7,000만 원을 받은 유동규로부터, 피고인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 대가로 뇌물 7,000만 원 수수

■ 2014. 4.경 위례개발사업자로 내정된 남욱에게서 1억 원을 받은 유동규로부터, 피고인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 대가로 뇌물 1억 원 수수

⇒ 성남시의회 의원 직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

3.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

가. 소송조건 결여(형식판결)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김용]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 피고인 주장 요지

- 공소장의 상당부분이 이 사건 구성요건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 관련 내용임, 유동규가 민간업자에게 하였다는 진술을 바로 인용하여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공소장에 기재함 ⇒ 법관에게 예단을 주므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제출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판준비절차 또는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 아직 본안에 대한 심리가 개시되기 전에 범죄의 구성요건 적시와 관련이 없는 부분 그밖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 등을 삭제 또는 정정하도록 하여 예단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위법한 공소제기에 기초한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재판부에서 공판준비기일에 구성요건적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 등 심리개시 전까지 삭제 요구 ⇒ **1회 공판기일 본안심리 전 공소장 변경됨**
  - 정치자금법 사건 공소장 :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의 상당 부분 삭제·정리
  - 뇌물 사건 공소장 : 유동규 진술 직접인용 삭제, 취지 압축기재

● 변경 후 공소장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정도의 위법이 없음

■ 변경 후 공소장에도 배경 및 전제사실, 공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다소 불필요하거나 장황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긴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생기게 하여 공개법정에서의 주장과 증명에 기초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데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2) 공소사실 불특정

▣ 피고인 주장 요지

■ 금품수수시기를 '2021. 4.경/6.초순경/8.초순경' 및 '2013년 설, 추석 명절경'으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범행일자로 특정할 수 없음

▣ **판단**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 (2003도8077 판결 등)

● 범행일시로부터의 시간의 경과나 기억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일시를 확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 아님

■ 정치자금법 사건 :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1개월 정도로 제시되어 있고 각 범행경위, 범행장소 등도 명확히 구분 기재

■ 뇌물 사건 : 각 명절과 시간적으로 무관하다고 볼 정도로 떨어진 시

점까지 모두 포함하는 일시표현은 아니고, 범죄의 장소 및 범행방법, 금품의 구성 등에 다른 사항들을 더하여 여타 사실과 구별됨

- 한정적 범위에서의 시점 및 기간의 표기로 인해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함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의 판단에 있어서는 위 공소장 기재 범행일시에서 더욱 범위를 좁혀 **상호 실질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진 범행시점을 범행일시로 보아 판단**하였음

(3) 공소권 남용

▣ 피고인 주장 요지

-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성남시장선거에 있어 이재명 후보자의 조직책임자로서 선거운동을 위해 1억 원을 교부받았다'라고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나, 정작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억 원을 선거운동이 아니라 위례신도시의 대가로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는 검찰의 공소권남용임

▣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99도577 판결 등)

● 수수된 금품의 명목과 대가성 혹은 사용목적을 보는 관점이나 정치자금과 뇌물의 성격에 관한 규범적 평가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고 실체심리를 통해 판단을 할 문제이지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로 공소기각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요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부분에 관하여

㈎ 검찰 면담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 면담시 준수하여야 할 적법절차의 내용

■ 수사기관이 신문이나 조사에 앞서 조서나 다른 수사서류에 기록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수사관행이 이른바 '면담'임

■ 수사준칙[5] 제13조 제2,3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조사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면담은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이므로 변호인의 참여, 진술거부권 등 고지, 수사관 등 참여, 수사과정의 기록과 같이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신문이나 조사에 앞서 변호인 등의 참여권이나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을 결략하거나 수사관 등 참여 및 수사과정의 기록 등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통해 진술을 청취하면 그 면담절차는 위법한 수사절차이고 이를 통해 취득한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위법수집증거 및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는 유죄의 증거는 물론이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다만, 2차적 증거는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임**

㈏ 이 사건 검찰 면담에 관한 구체적 판단

● 유동규의 2022. 10. 5. 면담, 10. 14. ~ 16. 면담 : 모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 등 확인 기재, 면담실시에 관한 구체적 수사보고서 작성됨 ⇒ 면담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 피고인 김용은, 유동규의 면담의 횟수가 잦고 그로인해 진술이 왜곡되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 오랜 기간 지속된 부정부패가 의

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심되는 수사상황에서 기억 환기 등을 위한 면담절차를 수차례 거쳤다는 것으로 신빙성을 일괄배척할 수는 없음

● **유동규의 2022. 9. 26. 면담 : 적법절차 위반**

- 수사 과정 확인서가 2매 작성되었는데, 조사장소 도착시간이 자필진술서에는 '10시'로, 피신조서에는 '10시 03분'으로 상이하게 기재되었고, 조서 열람 종료 시간이 진술서에는 '11시 34분'인데, 피신조서에는 '14시 32분'에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시간적 간격이 3시간에 이름 → 그 이유들에 대한 기재가 없음
- 그 전날까지 부인하던 유동규가 심경변화 후 처음 실시된 면담임에도, 심경변화의 경위나 동기에 대한 구체적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음
- 진술서는 검사가 질문과 방향을 정해주고 유동규가 자필로 내용을 채워 넣은 방식이어서 여타 진술서와 다른 형태임
- 종합해 볼 때, 유동규의 2022. 9. 26.자 피신조서 내지 진술서는 면담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구비한 증거라고 보기 부족함
- 기 조사된 증거이므로, 해당 피신조서 및 이를 제시하며 이루어진 증언부분은 증거배제결정을 함

● **남욱의 2022. 10. 6. 면담 : 적법절차 위반**

- 수사보고서상 면담 시작 시각은 '2022. 10. 6. 10:00경'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남욱이 작성한 진술서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는 조사 장소 도착 및 시작 시각 '17시 20분', 조사 종료 시각 '17시 30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 → 그 이유에 대한 기재가 없음
- 오전 면담시 변호인 참여권 및 진술거부권 등이 고지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수사 과정 확인서'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등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진술서 작성 이전에 이루어진 검사와의 면담과정에서 남욱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이 실제 보장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남욱의 2022. 10. 6. 면담절차는 적법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당시 남욱이 작성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구비한 증거라고 보기 부족함
- 위법한 남욱과의 면담에서 얻은 진술에 기초하여 그 직후 취득된 이몽주의 진술서 및 이몽주가 당시 임의제출한 'Lee list(golf) 메모지'는 위법한 면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 기 조사된 증거이므로, 2022. 10. 6.자 남욱의 진술서, 이몽주의 진술서, Lee list(golf) 메모지 및 이를 제시하며 이루어진 진술부분은 증거배제결정을 함

● 다만, 그 이후 취득된 증거들은 위 각 적법절차 위반 면담 및 그 2차적 증거들과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그 이후 변호인 조력권 등 관련 절차보장이 누락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자발적 의지로 진술 및 증거제출이 이루어졌음)되었으므로 증거로 사용함에 지장이 없음

㈐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기준 : 개별적 신빙성 평가

● 2022. 9. 26.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는 입장이다가, 2022. 9. 26. 오전부터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2022. 10. 5.경에는 수사기관에서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사실 대한 제보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 등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 개발사업 관련 비위 사실 등과 관련한 진술을 지속하고 있음

● 유동규는 자신에게만 비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었고 일부 변호인과의 신뢰도 없어지는 등 배신감을 느끼다가 심경변화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 → 유동규의 심경변화의 경위에 납득불가할 정도 의심

가는 사정이 보이진 아니하나, 당시 유동규는 위례개발사업 관련 비위 등 추가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선처를 기대하며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및 추가구속 등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기 위한 의도 또한 입장 변화와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임

● 판례법리 등을 종합해볼 때,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은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려는 의도 혹은 피고인측이 지적하는 인간됨 등의 사정을 들어 일괄하여 배척할 것은 아니며, 개별 진술에서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일관성, 여타 증거들과의 주요 부분이 합치되는지 등을 보아 **구체적,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타당

▪ 특히, 정치자금 위반은 1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뇌물은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진술하고 있으므로 모든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무리 ⇒ 위 사정과 더불어 진술이 기억의 소멸 혹은 왜곡이나 혼동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혹은 범죄일시나 주요정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거나 막연한지 등도 함께 보아 그 신빙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

(2)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각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용, 남욱]

㈎ 2021. 5. 3.경/6. 8.경/6.하순 내지 7.초순경 범행 : 합계 6억 원 [유죄]

● 각 자금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및 진출입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 됨

● 각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 유동규 진술의 경우 일부 일시 등에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하였으나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로 보이고,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하여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낮지 아니함

- 정민용과 피고인 남욱도 유원홀딩스에서 자금을 받아가는 피고인 김용의 모습을 보았거나 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들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 등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허위로 작출해 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됨

- 피고인 김용의 알리바이 주장은 피고인측 신청 증인이나 진술서가 객관적 자료에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주장이거나, 그 주장에 의하여도 특정된 범행일시와 양립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려움

㈏ 2021. 6. 8.경/6.하순 내지 7.초순경 1억 원 + 2021. 8. 초순경 1억 4,700만 원 : 합계 2억 4,700만 원 [무죄]

- 아래에서 보다시피, 이 사건의 구조는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부정기부한 피고인 남욱 및 그 공범인 유동규, 정민용과 그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피고인 김용 사이에 대향범 관계가 존재함

- 피고인 김용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의 기수에 이르지 않는 이상(정치자금법 부정수수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음), 자금이 조성되었다거나 기부자측에서 조성된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

  - 2021. 6. 8.경 조성된 5억 원 및 6.초순 내지 7.초순 경 조성된 1억 원 중 유동규는 자신이 1억 원을 착복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 더불어 2021. 8. 초순경 조성된 1억 4,700만 원은 이 중 1억 원은 피고인 남욱이 반환받아 갔고, 나머지 4,700만 원은 유동규와 정민용이 사용하였음

  - 이와 같이 사적 사용, 반환 등으로 피고인 김용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합계 2억 4,7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수에 이르지 않아 피고인 김용을 처벌할 수 없고, 그 대향범인 피고인 남욱도 기수에 이르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음

⑶ 특가(뇌물)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용]

㈎ 2013년 설 및 추석 명절 무렵 뇌물 수수 : 합계 2,000만 원 [무죄]

- 2013년 설 및 추석 명절 무렵 피고인에게 각 1,000만 원씩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유동규의 진술은 해당 명절 무렵에 돈을 준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불명확하여 신빙성이 낮음
  - 유동규는 이 사건 및 관련 사건(2022고합1001)에서 정진상은 명절을 계속 챙겼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주며 명절을 챙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음
  - 유동규는 피고인에게 두 번 혹은 여러 차례 1,000만 원을 줬다고 하면서도 대략적인 일시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명절 즈음에 준 사실 자체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음
  - 남욱의 진술이나 자금 마련 내역 및 성남시청 출입내역 등만으로 유동규가 피고인에게 위 명절 즈음 돈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부족함
-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음

㈏ 2013. 4.경 뇌물 수수 : 7,000만 원 [유죄]

- 2013. 4. 초경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그 전후 경위에 관하여는 유동규, 남욱의 진술이 대부분 부합함
- 유동규는 그 무렵 위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거주 아파트의 동수 등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비본질적 부분으로 보이고, 교부 전후 경위에 대한 진술이나 교부할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움

- 유동규는 3억 원을 남욱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정진상과 자신이 나누어 쓸 의도였다는 것인바, 그 경위나 7,000만 원 수수 후 1억 원을 수수하는 과정 등에 관하여 유동규와 남욱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대부분 일치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 이는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후 남욱에게 3억 원을 뇌물로 요구한 유동규가 처음 받은 금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것임 →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충족됨)

㈐ 2014. 4.경 뇌물 수수 : 1억 원 [무죄]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7도12346 판결 등)

● 해당 일시에 자금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공사 설립 및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의 대가'인 뇌물로서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2014. 4.경은 제6회 지방선거가 2달도 남지 않은 때였고, 성남시 의회도 사실상 활동을 마친 상황이었으며 공사 관련 현안이 없음(유동규는 2014. 4. 14. 공사에서 퇴사하기도 한 상황임)

- 피고인은 시의원 재선 이후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게 되는데, 2014. 4. 당시는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였음

- 오히려 일부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탄핵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이라기 보다는 이재명 성남시

장 재선의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원의 성격만 있다고 모든 관련자들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 정치자금 수수 대향범 법리에 따른 무죄 판단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 정치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았고 그에게 금품 등의 분배대상이나 방법, 분배액수 등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특정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한 사자에 불과하여 그 금품 등에 관하여는 정치자금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14도17497, 2017도3449 판결 등).

- 대향범은 범죄자 상호간의 협력행위(대향적 행위와 의사합치)를 예정하는 범죄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여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정치자금 기부자와 수수자는 대향범이고 서로의 행위에 대한 총칙상 공범이 될 수 없음

-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음(☞ 남욱의 부정 '기부'에 가담한 공범이라면, 김용의 부정 '수수'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은 정치활동으로 볼만한 행보를 보인 바 없고, 남욱으로부터 조성되어 온 정치자금을 분배, 관리, 사용할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일부 착복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배달사고'가 있긴 했지만 이를 임의사용의 재량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은 김용의 자금요구를 남욱에게 전달한 후 남욱이 조성한 자금을 김용에게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김용과 구체적인 사용처나 분배대상, 분배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의한 바 없으며, 실제 남욱으로부터 받은 액수 등에 대해 논의하거나 확인, 보고한 바도 없음 ⇔ 오히려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

은 남욱과 자금요구, 전달과 관련하여 수시 연락함

●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이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함**

■ 하지만, 수수자와 기부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부자측 공범도 수수자측 공모공동정범인 것처럼 의율하면, 수수자 입장에서는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부자측 자금조성이 완료된 사정만으로 수수의 죄책을 부담할 우려(**예컨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 정민용이 돈을 받으면 김용이 인지하였는지, 전달되었는지, 착복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곧바로 김용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게 됨**)가 있고, **예비나 미수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처벌범위가 예측불가능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음

■ 유사한 구조의 기소된 이 사건 뇌물 공소사실도 유동규가 뇌물공여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뇌물수수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함(뇌물죄도 대향범임)

■ 피고인 정민용은 이 사건 공판과정 내내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정범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 유동규도 김용의 지속적인 정치자금 요구에 의해 이를 단순 전달했을 뿐 피고인 김용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공동정범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이 법원도 검찰에 정치자금의 수수와 공여의 구조와 관련하여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을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의 검토를 권고한 바 있음 ⇒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을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함 ⇒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무죄 판단을 함**

4. 결론 및 양형의 이유

▣ **피고인 김용, 남욱의 정치자금법위반 :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이유무죄)**

▣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의 정치자금법위반 : 전부 무죄

▣ 피고인 김용의 특가(뇌물) :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이유무죄)

▣ 유죄부분과 관련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용, 남욱]

○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1995년경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의사결정 및 행정 전반의 권한과 책임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그 재량의 폭도 넓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성과 리더십 외에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구비하여야 하여야 한다. 더불어 그 재량행사에 있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서도 예산심의권, 출석요구권, 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 등을 통해 적절한 사전, 사후견제가 행해져야 한다.

○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하는 책무를 핵심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용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남욱 등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들, 유동규 및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 이를 반대하는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가 있음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되었고, 이후 공사가 위 민간업자들의 이권개입의 통로가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심지어 피고인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시장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데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하였고, 민간업자들은

이들과의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행태까지 보였다.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이다.

● **피고인 김용 [징역 5년,[6] 벌금 7,000만 원, 추징 6억 7,000만 원]**

- 불리한 정상 :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도 정면으로 훼손하였음.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의정활동 과정에서 민간업자 이익에 부합하는 적극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개발사업 인허가는 공사와 성남시가 주관하는 업무이고 피고인에게 직접적 개입, 결정 권한은 없음. 중한 처벌전력 없음

● **피고인 남욱 [징역 8개월]**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고, 이권개입의 저의를 가지고 기부하였음. 실제로 6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부정기부됨
- 유리한 정상 : 모든 범행 인정하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조성된 전액이 기부된 것은 아님

▣ **무죄부분**

●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 : 전부무죄(주문 무죄선고)

● 피고인 김용 : 2억 4,700만 원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 1억 2,000만 원 뇌물 수수 부분(이유무죄)

● 피고인 남욱 : 2억 4,700만 원 정치자금 부정기부 부분(이유무죄)

---

6) 양형기준 참고 : 뇌물죄 [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치자금법위반 행위와 경합범(권고형 하한만을 준수)

서울고등법원

피고인 김O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및 이O명의 대선 경선자금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유O규, 정O용, 남O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노4029 판결]

(제13형사부: 부장판사 백강진, 고법판사 김선희, 이인수)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① 성남시의회 의원이었던 피고인 김O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피고인 유O규로부터 2013. 4.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직무와 관련하여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2013. 설 및 추석 경 각 1,000만 원, 2014. 4.경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② 이O명의 대선 경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인 피고인 김O이 피고인 남O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1. 5.부터 2021. 7. 초순경까지 6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위 금액을 기부한 피고인 남O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를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③ 피고인 유O규, 정O용은 피고인 김O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유O규, 정O용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남O으로부터 피고인 정O용을 거쳐 피고인 유O규에게 건네졌으나 종국적으로 피고인 김O에게 건네지지 않은 2억 4,700만 원에 대한 피고인 김O, 남O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피고인 김O, 남O은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④ 다만 피고인 김O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김O 부분을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파기하여 피고인에 김O에 대한 형을 다시 정하여 원심과 같은 형(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 추징 6억 7,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유O규, 정O용, 남O에 대한 검사의 항소의 항소와 피고인 남O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였다.

1. 피고인 김O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 추징 6억 7,000만 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일부 유죄)

- 2013. 설 및 추석경 각 1,000만 원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김O이 피고인 유O규로부터 위 각 시기에 위 각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부분 무죄(이유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함
- 2013. 4.경 7,000만 원 - 피고인 김O이 시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산하기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유O규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함
- 2014. 4.경 1억 원 - 피고인 김O이 그 무렵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김O의 시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종료하기 직전이고 피고인 유O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퇴사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선거자금으로 수수한 금액으로 판단됨. 이 부분 무죄(이유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함

▣ 정치자금법위반 (일부 유죄)

- 2021. 5. 3.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 피고인 남O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하고 피고인 정O용을 거쳐 피고인 유O규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유O규가 2021. 5. 3. 피고인 김O에게 위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됨
- 2021. 6. 8. 정치자금 3억 원 수수 - 피고인 남O이 정치자금으로 피고인 정O용

을 거쳐 피고인 유O규에게 5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유O규가 2021. 6. 8. 피고인 김O에게 그 중 3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됨

- 2021. 6. 말경~7. 초순경 1억 원 수수 - 피고인 남O이 정치자금으로 피고인 정O용을 거쳐 피고인 유O규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유O규는 위 1억 원과 위 5억 원 중 남은 2억 원에서 임의사용하고 남은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2021. 6.말경~7.초경 피고인 김O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남O은 총 8억 4,700만 원을 피고인 유O규에게 건넸으나, 피고인 유O규는 그 중 6억 원만을 피고인 김O에게 전달하고, 1억 4,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700만 원은 정O용에게 주었으며, 1억 원은 피고인 남O에게 반환하였는데, 피고인 김O에게 전달되지 않은 위 2억 4,7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김O이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김O은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유O규를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 김O 제출의 구글 타임라인에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려움
- 결국 피고인 김O에 대하여 6억 원의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인정하고, 2억 4,7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타당함

2. 피고인 유O규, 피고인 정O용 (무죄)

▣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교부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피고인 유O규, 정O용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님
- 피고인 김O과 함께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 피고인 김O만큼의 정범성의 표지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정

치적 목적을 같이 하고 과거 선거운동을 도와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범성의 표지가 인정될 수 없음. 피고인 유O규는 당초 자신 등이 받을 대장동 배당금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할 의사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어 피고인 남O으로부터 기부받기로 하고 정치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김O에게 건넸는바 피고인 유O규의 의사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의사만 있었을 뿐 기부받을 의사는 없었다고 보이고, 유O규, 정O용이 일부 착복한 것은 정치자금의 활용으로서 정치자금의 분배, 관리라고 볼 수 없음

-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유O규, 정O용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타당함

3. 피고인 남O(징역 8개월)

▣ 정치자금법위반(일부 무죄)

- 피고인 남O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피고인 김O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6억 원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원심 판단은 타당함
- 피고인 김O에게 전달되지 않은 2억 4,700만 원에 대하여는 기부가 완료되지 않았고, 미수범처벌규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타당함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위례신도시 사건 관련

(가)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차 수사팀은 2022년 9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20일 동안 유동규를 집중 면담하였는데 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수사보고서가 총 11페이지인데 면담 내용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음. 그런데 이 면담 이후 유동규의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음. 고문에 가까운 수사 행위, 조서도 남기지 않고 원하는 진술을 만들어 내는 행위가 정상적인 수사인지? 수사준칙에 반하는 행태가 아닌지? 형사소송법과 관련 준칙을 위반하여 이끌어낸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 현대의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정도면 위법 사항 아닌지? ○ 2008년 이대엽 시장 당시 이강길 씨가 사업시행자로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800억원 대출을 받았는데, 2009년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남욱 변호	○ 형소법에는 소환할 경우 조사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음. 수사준칙은 잘 모르지만 사실관계와 준칙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에게 자문 비용으로 8억원을 줌. 이는 남욱의 아버지가 포항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상득과 친하기 때문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공교롭게 LH가 민간사업자와 경쟁하지 말라고 하는 훈시를 직접 하기도 함. 정영학은 회계사로 이강길 밑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 사업 분쟁 등으로 녹음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신빙성이 높은 증거가 됨. 정재창도 이강길 밑에서 일하던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며, 유동규와 골프 치며 수백만 원씩 잃어 주고 돈 전달창구 역할을 함. 이재명 시장 때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공영개발을 못하도록 막은 것임.	
○ 남욱도 초기에는 유동규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대장동 2기 수사팀부터 진술이 바뀜. 이런 자료들이 김용 부원장 재판에 다 제출되었는지? 제출되었다면 그럼에도 유죄가 나온 것이	○ 확인해 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므로 이는 심각한 오류가 있음.	
○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대원칙인지?	○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맞음.
○ 오늘 기관보고한 내용 중에 판결 내용에 이런 방식의 적법절차가 훼손된 것과 관련한 판시 사항이 있었음. 맞는지? 헌법가치인 적법절차가 무너진 수사는 저는 폭력이나 다름없다 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판시한 것이 맞는지?	○ 그러함. 준수되어야 할 법리와 함께 설시되어 있음. 맞음.
○ 포렌식에서 가져온 전자정보 중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그러함.
○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불법 아닌지?	○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갖고만 있으면 불법인지?	○ 따로 판단해 봐야 함. 다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는 있음.
○ 2025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용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음. 정치검찰의 조작과 유동규의 위증으로 잘못이 드러난 것인데,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대법관은 왜 임명하지 않는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	○ 심리를 마치면 판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말씀 전달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대법관 임명을 촉구함.	
○ 검사가 피의자를 회유해서 위증을 하게 만들었다면 모해 목적 위증교사죄로 볼 수 있는지?	○ 일반론적으로 그럴 수 있음.
○ 위증을 토대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새로운 피의자를 구속시켰다면 불법구금죄로 볼 수 있겠는지? 당연히 직권남용죄가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 일반론적으로 그럴 수 있음. 법리가 복잡하여 단언하기 어려움.
○ 검찰이 부적법하게 공소장을 기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 기소되지 않은 부분은 판단할 수 없고, 기소되어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판결할 수 없음.
○ 김용 부원장의 법정 증언 녹취서와 판결문이 다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보이는데 경위와 견해는? 허위 공문서 작성인지 단순 실수인지?	○ 심증 형성 과정과 판결문 집필 과정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
○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서는 독과수 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지?	○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봄.
○ 이재명 대표를 특경가법 위반으로 기소할 당시 “특경법 위반죄는 이득액에 따라 가중되므로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판례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2)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관련

(가)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관련하여,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재판부가 석명준비명령의 형태로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라는 말까지 써서 지적을 한 것 알고 있는지?	○ 들은 바 있음.
○ (법원행정처장, 강백신) 당시 재판부가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간접정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지?	○ 정확한 내용은 모름.

3) 대검찰청

가) 보고내용

Ⅰ 대장동 사건

□ 사건 개요

○ ’15.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하여, 성남시 관계자들이 사업자 선정, 이익 분배 등에 있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4,895억 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 및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하여 내부 비밀을 이용하여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자 선정되도록 하여 7,886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 등으로 민간사업자와 성남시 관계자 등이 기소된 사건

○ 1기 수사팀은 ’21. 10. ~ ’22. 5.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및 민간사업자들을 특경법위반(배임)죄 등으로 순차 기소하였음(3명 구속, 2명 불구속)

○ ’22. 5.~7.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이동으로 수사팀이 변경되었음

○ 2기 수사팀은 ’23. 1.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및 민간사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하였음

○ 이후 2기 수사팀은 ’23. 3. 前 성남시장 및 정책비서관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와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 등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현재 前 성남시장 사건은 기일 추정, 정책비서관 사건만 1심 재판 중임

○ ’25. 10.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및 민간사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까지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 부분은 민간업자들의 이익액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 선고되었고, 손해액 불상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유죄 선고되었음

○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 부분은 해당 내용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비밀 이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과 민간사업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

※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기관보고 참조(이하 사건들 모두 같음)

□ 수사팀 변동 사항과 사건 처리 현황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비고
<1기 수사팀> 이정수 검사장 (’21. 6.~’22. 5.)	4차장 **김태훈**(’21. 7.~’22. 5.) 경제범죄형사부장 **유경필**(’21. 7.~’22. 2.)	’21. 10. 21. 유동규 기소 [특가(뇌물)] ’21. 11. 1. 유동규 기소 [특경(배임)] ’21. 11. 22. 김만배, 남욱, 정영학 기소 [특경(배임) 등] ’21. 12. 21. 정민용 기소 [특경(배임) 등]
	4차장 **김태훈**(’21. 7.~’22. 5.) 반부패1부장 **정용환**(’21. 7.~’22. 7.)	’22. 1. 28. 김만배 기소 [청탁금지법위반] ’22. 4. 4. 남욱 [특경(횡령) 등], 유동규 기소 [증거인멸교사] ’22. 5. 16. 김만배 기소 [특경(횡령)]
<2기 수사팀> 송경호 검사장 (’22. 5.~’24. 5.)	4차장 **고형곤**(’22. 5.~’24. 5.) 반부패1부장 **엄희준**(’22. 7.~’23. 9.)	’22. 12. 9. 정진상·유동규 기소 [특가(뇌물) 등]
	4차장 **고형곤**(’22. 5.~’23. 9.) 반부패3부장 **강백신**(’22. 7.~’23. 9.)	’23. 1. 12. 유동규·정민용·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이해충돌방지법위반] ’23. 3. 22. 이재명·정진상 기소 [특경(배임) 등] ※ 수사는 반부패3부, 기소는 반부패1부)

Ⅱ 위례 사건

□ 사건 개요

○ ’13.경 위례 개발사업 관련하여,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알려주고, 민간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 선정이 되고, 이익을 취득한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민간사업자와 성남시 관계자 등이 기소된 사건

○ ’22. 9.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및 민간사업자들 불구속 기소

- ’26. 1. 1심 선고(무죄)

○ ’23. 3. 前 성남시장 및 정책비서관 불구속 기소

- 前 성남시장 사건은 기일 추정, 정책비서관 사건만 1심 재판 중

□ 수사팀 현황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비고
송경호 검사장 (’22. 5.~’24. 5.)	4차장 **고형곤**(’22. 5.~’24. 5.) 반부패1부장 **엄희준**(’22. 7.~’23. 9.)	’22. 9. 불구속 기소(유동규 등 5명) ’23. 3. 불구속 기소(이재명, 정진상)

Ⅲ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사건 개요

○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3.~’14.경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합계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1. 4.~8.경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파트장과 함께 민간사업자로부터 정치자금 합계 8억 4,7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 ’22. 11.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기소

- ’23. 11. 1심 선고(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이유 무죄)

- ’25. 2. 항소심 선고(1심 선고형 유지), 피고인 상고(상고심 중)

□ 수사팀 현황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비고
송경호 검사장 (’22. 5.~’24. 5.)	(정치자금법위반) 4차장 **고형곤**(’22. 5.~’23. 9.) 반부패3부장 **강백신**(’22. 7.~’23. 9.)	’22. 10. 수사착수 ’22. 10. 22. 구속기소
	(뇌물사건) 4차장 **고형곤**(’22. 5.~’24. 5.) 반부패1부장 **엄희준**(’22. 7.~’23. 9.)	’22. 11. 수사착수 ’22. 12. 27. 불구속기소(병합)

Ⅳ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 사건 개요

○ ’21. 9.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사업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브로커를 봐줬다’는 취지의 허위 언론보도를 하였다는 혐의로 언론 관계자 등이 기소된 사건

○ ’24. 7. 前 화천대유 회장, 前 뉴스타파 전문위원 구속 기소, 기자 및 前 뉴스타파 대표 불구속 기소

○ ’24. 8. 기자 2명 및 前 민주당 화천대유 특위 대변인 불구속 기소

□ 수사팀 현황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비고
송경호 검사장 (’22. 5.~’24. 5.)	차장 **고형곤**(’22. 5.~’24. 5.) 반부패3부장 **강백신**(’22. 7.~’23. 9.) 반부패1부장 **강백신**(’23. 9.~’24. 6.)	’23. 8. 수사 착수
이창수 검사장 (’24. 5.~’25. 6.)	차장 **조상원**(’24. 6.~’25. 6.) 반부패1부장 **이준동**(’24. 6.~’25. 8.)	’24. 7. 구속 기소(김만배,신학림) 불구속 기소(한상진,김용진) ’24. 8. 불구속 기소(봉지욱,송평수,허재현) 불기소(김우철,최현,이진동,윤진희) ’25. 5. 잔여사건 불기소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대검찰청,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포함)

(1)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위례신도시 사건 관련

(가)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장동 사건 관련 민간업자들이 ① 민간개발 허용 ②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 분리 ③ 환지 방식의 토지보상 ④ 자신들의 구획계 채택 ⑤ 자신들을 민간사업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재명 시장에게 요청했으나 이재명 시장은 요청을 모두 거절함. 이후 부동산 상승기 때 시장이 추가로 1,120억원을 요구해 1,120억을 받게 됨. 이재명 시장이 민간업자와 결탁 되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정황임. 이재명 시장은 이 사업 통해 5,503억 공공환수를 함.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와 결탁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려움.
○ 누구를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열두 달 계속 다 뒤져서 찾는 걸 정치 보복이라고 한 윤석열의 정의에 동의하시는지?	○ 적절한 수사 방식은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기존 수사팀에서 대표적인 친윤검사들인 엄희준, 강백신 검사로 물갈이된 후, 새로운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결된 수사를 뒤집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검찰이 늘상 해오던 방식인지?	○ 늘상 해오던 방식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음. 다만, 22년도 7월이면 정부 교체 이후에 고검 검사급 인사가 시행된 시점인 건 맞음.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 부터 직무대리 명령으로 먼저 와서 일을 했던 것까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임.
○ 직무대리로 와서 두 달 동안, 그것도 정식 인사 발령도 없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지?	○ 현재까지 확인한 바는 없음. 당시 직무대리 명령이 났었던 사실은 확인함.
○ 2022년 5월에 직무대리 발령까지 하면서 급하게 수사를 해야할 사정이 있었는지?	○ 정확한 사실 관계는 관련 수사를 진행해 보겠음.
○ 2022년 5월 2기 수사팀 직무대리 발령 이후 유동규가 9월부터 입장을 번복하고 10월에 석방이 되었는데, 우연의 일치라 하기에는 조직적임.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단순히 2기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아닌 검찰의 조직적인 결정으로 봐야하므로 인권TF는 이와 관련된 지시 또는 회의가 검찰 지휘체계 하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함께 봐야할 필요	○ 그렇게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장동 수사팀이 변경된 과정이 전반적인 의혹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증인이 파악하는 정도가 안일한 측면이 있음.	
○ 대북송금 사건 녹취록에서 이재명이 주범,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듯이, 대장동 사건의 경우 유동규를 종범으로 만들기 위해 정진상 및 이재명 시장을 주범으로 만드는 구도가 그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임.	
○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되면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일정을 진행하지 않는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소시효가 도과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 당시에 어느 정도 수위까지 쟁점이 되었는지 확인하지 못 함.
○ 2013년 12월 위례 사건 사업시행자가 지정됨. 2015년 8월 19일 대장동 사건의 사업 시행자 지정됨. 2020년 12월 2일 위례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고, 2021년 12월 1일 대장동 사건 기소 완료됨.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다음 달에 대장동 2기 수사	○ 그러함. 시계열표 보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팀이 구성됨. 2022년 8월 18일 대장동 사건 관련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 그리고 공소시효가 도과된 후 2022년 9월 16일 남욱을 체포함. 이 과정 알고 있는지?	
○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까지 수사한 이유는 이재명 당 대표를 표적으로 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검찰이 이렇게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 첫째, 2기 수사팀이 어떤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수사 절차에 임했는지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함. 둘째, 시효 도과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시점을 행위의 종료로 볼 것인지 그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실제로 취득한 마지막 시점을 종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었고 당시 기소한 팀에서는 그 기소 시기에 대한 견해를 달리해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직무대행이 언급한 것처럼 수사팀은 이익이 현실화됐을 때 기수가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논리이고 이론이 있는 논리임.	
○ 수사 당시 2박 3일을 구치감에 가두고 모포 한 장만 제공한 것은 검사들이 법을 이용하여 고문을 한 것과 마친가지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구치감에서 사람을 재워본 적이 있는지?	○ 이례적인 일임.
○ 하늘에 맹세코 검찰이 진술거래, 수사무마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검사는 객관적 법집행 기관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음.
○ 정영학이 정재창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23년도 6월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신청을 거부했고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음. 정재창은 입을 닫고 2022년 7월 대장동 일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측이 3억원의 목적지에 대해서 묻자 증언을 거부하였고, 2024년 8월의 증인심문에서도 똑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음. 왜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지?	○ 장기사건 적체로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지금 수사 중에 있음. 앞의 팀에서 어떤 이유로 늦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팀에서는 분명히 수사 중임.
○ 정진상의 진술 없이 ‘정진상을 통해 보고했다’는 공소장 작성이 대한민국 검찰의 통상적인 규칙인지?	○ 금전거래가 있는 사건에서의 직접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함. 직접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간접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됨.
○ 형사재판에는 불고불리의 원칙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 있음. 대향범 관련 재판부도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권고했으나 검사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법원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었음.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검사들이 공소장 변경하지 않으며 끝내 버텼음.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지?	
○ 재판부가 위와 같이 명시했다면 항소심에서 예비적 내지 선택적 공소사실로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해야했는데 그러지 않아 무죄가 나온 것은 고의적인 방치임.	
○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권고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거부하여 유동규·정민용에게 무죄가 선고되게 방치하였는지?	○ 처음부터 수수 공범 구조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어 항소심까지 유지된 것이며, 현재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임.
○ 위 과정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한 바는 없음.
○ 대질조사 아닌데 가족(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을 불러서 조사한 것이 통상적인지? 장시간 면담 형식을 빌어 24시간 동안 면담한 것은 이례적이고 부적절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없는 것에	○ 통상적이지는 않음. 그 과정 자체가 기록에 남아 있다면 위법·탈법 소지는 없으나, 3일간 걸쳐 장시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봄. 피신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로 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대한 의견은?	기 어려움.
○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의 나이키 백팩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것은 이재명 죽이기, ‘답정너’식 수사임.	○ 입건 전 단계였으므로 실제와 다른 것이 맞음. 오기라고 보고받음.
○ 압수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오기라고 보고받은 것이 맞는지?	○ 그렇게 보고받았음.
○ 왜 잘못 기재된 것인지. 이재명을 타겟으로 의도하고 한 수사로 보여지는데?	○ 의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봄.
○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면 범죄인지 징계의 대상인지?	○ 범죄 행위 조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면 범죄 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꾼 것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조작으로 보임. 녹취록을 어디에서 만든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제출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는지? 녹취록 조작 의혹 1, 2를 부패3부에서 제출한 기록으로 확인하였는데?	○ 속기사들이 각 공소유지 담당 부서에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음.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그러한 진술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같은 경제 관련된 사건에 가족사진이 필요한지? 필요할 수도 있다는	○ 압수 연관성 같은 것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음. 지금 이 경우에는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건지?	음.
○ 전자정보를 즉시 폐기하지 않고 사진을 이용해서 피의자를 심문하였는데, 불법·강압수사가 아닌지?	○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마음 아프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함.
○ 김성훈 검사가 쌍방울 사건의 수사 검사인데 쌍방울 사건을 감찰하는 감찰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이는 부적절한 인사로 보이는데?	○ 배치된 이후에 부임을 했고, 김성훈 검사가 배치된 감찰2과는 전국 청의 사무감사를 하는 부서임.
○ 김경완 검사가 방 안에서 피의자와 단 둘이 면담을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의 조사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수사 장소가 따로 있는데 개인 집무실에서 조사해도 되는지?	○ 검사실마다 개별 구성이 달라 교도관이나 참여계장의 가시범위 내이고 가까운 거리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임.
○ 해당 검사실은 참여계장이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그 경우에도 적법하다고 보는지?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적법한 조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지?	○ 교도관이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계장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임.
○ 집무실은 개인이 기록을 검토하는 곳임에도 유동규의 경우 피신도 작성하고 면담 등 모든 조사를 집무실에서 받았음에도 그것을 적법하다고 말하는 것인지?	○ 위법한지 여부를 질문하셔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답변한 것임.
○ 조서에 검사와 계장의 서명날	○ 그렇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둘은 항상 같이 조사하라고 교육을 받고, 김경완 검사의 조사는 그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임. 총장대행이 알고 있는 기준은 다른 것인지?	
○ 구글 타임라인의 원시데이터(Primitive data)는 한 번 저절로 저장되면 불변이라는 의미인데,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 증거의 신빙성은 부인하고, 단독 면담으로 조서를 받아 증거로 제시 하였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가 맞았는지?	○ 저희 수사에 대한 비판은 공감하나,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 관련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거능력 측면의 문제가 있어 배척되었고, 상고심이 진행중이므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음.
○ 검사는 국가공무원이고 검사가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인지? 도장날인된 의견서도 공문서인지? 검사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처벌받은 내용 있는지? 검사 압수조서에 사람과 사건이 명백히 다르게 기재한 내용이 있는데 처벌된 예가 없는 것은 문제임.	○ 검사는 국가공무원이고 검사가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임. 도장날인된 의견서도 일반적으로 공문서임. 검사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처벌받은 것은 확인한 바 없음.
○ 강백신, 엄희준 증인은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와 관련하여 유동규와 남욱을 불법 체포하였고,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서는 독과수이론에 의해서 증거증력이 없	○ 증거능력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음. 독과수 이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 검찰이 주장하는 이 4,895억 원 산정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전체 배당 가능 이익을 9,607억 원으로 잡고 그 중 70%인 6,725억 원을 공공이 가져야 할 정당한 몫으로 보고 여기서 실제 도시개발공사가 받은 1,830억 원을 빼서 만든 금액으로, 이 70%의 산정기준이 없다는 점, 재판부에서도 검사 제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여 이 70%의 최초 제안, 최종 결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임.	○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음.
○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의 인력을 어느 정도 배정하였는지? 인원은?	○ 지난 인사로 복귀해서 지금 현재는 서울고검 감찰부 고유 인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검사 기준으로 감찰부 자체는 한 3~4명 정도임.
○ 2~3월에 인력을 요청하였다고 하였는데, 중요한 시국이므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인력 보강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겠음.

(나)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장동 수사 주임검사로 관여한 것이 맞는지?	○ 1기 수사팀 팀장이었음.
○ 1기 수사팀은 유동규와 남욱, 김만배 등을 조사하고 2021년 11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이 발표 아는지?	○ 언론보도 내용 알고 있음.
○ 당시 1기 수사팀이 관여했는데 1기 수사팀이 부실하거나 무능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성실하게 수사를 완료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이 없었다는 건지?	○ 저희 모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했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됨.
○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하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만 진행됐음. 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엄희준, 강백신 등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지?	○ 엄희준, 강백신 부장이 2021년 5월 이후에 중앙지검 직무 대리 발령을 받고 서울고검 내에 있는 공판5부의 사무실을 사용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음. 다만 이들이 당시에 2022년 7월 정식으로 중앙지검 1부장, 특수 3부장을 보임하기 전 기간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지까지는 객관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한 상태임.
○ 2022년 5월 직무대리로 발령하면서 2기 수사팀이 오고 7월 정식 발령을 받아서 구성됨. 7	○ 2022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는 못 함. 7월까지 1기 수사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월까지 1기 수사팀에 근무를 한 것인지? 그때 당시 2기 수사팀으로 다 넘어갔는지?	에 근무하였음.
○2기 수사팀이 구성되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라인으로 수사가 전개되었는데, 소위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로 검찰 내에서 알려진 것인지?	○답변 곤람함.
○2기 수사팀이 이렇게 빠르게 구성되어 1기 수사팀이 교체된 이유를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함.
○2022년 7월까지 수사팀장이었는데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2022년 5월에 공판부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자료를 검토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사실인지?	○그렇게 답변한 것을 들었는데,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2년 5월 엄희준, 강백신 검사가 서울고검에 배치된 이후 두 사람이 반부패 1부나 3부 검사를 접촉하거나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함.
○강백신·엄희준 증인이 대장동 사건 기록을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기록을 반부패 1부와 3부에서 누가 보관하였는	○원본은 분산해서 보관하였고, 파일은 드라이브 형태로 보관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접속이 가능하였음. 수사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파일 접속권한은 누가 부여할 수 있는지?	이나 차장, 검사장이 가능할 것임.
○주임검사 외의 검사가 주임검사의 승낙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수사기록을 볼 권한을 주었다면 주임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이 아닌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당시에 수사 기록이 드라이브에 올려서 열람됐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까지는 확인한 적 없음.
○드라이브에 업로드가 돼서 열람한 흔적이 있다는 부분도 확인이 안되는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서 수사팀원들이 공유했던 것은 맞지만, 수사팀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했는지까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
○2022년 7월 이후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으로 근무하였음.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의 책임자인데, 수사팀 교체 관련 부분 감찰 진행이 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이첩받아 검토 중임. 그 부분까진 접근하지 못하였음.
○TF 진행 중인 감찰 건과 관련하여 대검 감찰부, 법무부에 일정하게 보고를 해 왔는지?	○보고해 왔음.
○정영학 녹취록 확보하였는지? 다 들어보았는지?	○그러함. 분량이 많아 검사들끼리 분담해서 들음.
○“내가 크는데 베팅을 좀 해야 될 데들이 있다. 그걸 좀 도와줘라, 이거는 2층도 알아서도 안되고, 그 다음에 너 말고는,	○1기 수사팀은 해당 녹취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충실히 검토했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결론을 내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니 부인도 알아서는 안된다."는 2013. 3. 21. 정영학 녹취록은 남욱과 정영학 사이의 대화인데, 남욱이 유동규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상황을 정영학에게 설명한 것임. 그런데 왜 시장님이 너희들을 싫어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음. 해당 녹음을 보면, 이 때 주고받은 돈은 유동규가 철거업자로부터 빌린 3억원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함. 이는 유동규 개인 채무 변제용임. 당시 수사검사로서의 판단은?	
○ 정재창 자수서 관련 대장동1기 수사팀은, 유동규의 "빚갚는 용도"로, 2기 수사팀은 김용 "뇌물용"으로 둔갑되었고, 3기 수사팀은 "빚 갚는 용도"를 재증언하였음. 이처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결정적임. 유동규가 받은 것을 왜 2기 수사팀에서 김용이 받은 것으로 둔갑시킨 것인지?	○ 2022년 7월 이후의 수사 및 공판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함.
○ 대검 감찰부장이 박성재 전 장관이 알박기한 김성동 부장이 맞는지? 대검 감찰부에 김성훈 부장이 최근까지 근무했는데, 김성훈 부장이 지난번 단톡방	○ 김성동 부장은 맞지만 평가 부분은 답변하기 곤란함. 단톡방 멤버인지는 언론보도 보고 알았음. 대검 감찰부의 업무분장까지는 제가 알지 못함. 대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멤버 중 한 명인 것을 알고 있는지? 김성훈 부장이 고검에서 진행하는 감찰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내부의 상황까지 알지 못함.
○ 단톡방 멤버가 감찰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찰 대상이 감찰 내용을 보고 받는 상황을 알았는지?	○ 성실히 조사하고 있음.
○ 단톡방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확보하였는지?	○ 해당 자료 확보 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확보 노력하겠음.
○ 2022년 5월 검사들이 바뀐 이후부터 사건들이 다시 만들어짐. 윤석열 정권은 민정수석실이 없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사 검증단 통해 이들을 배치한 것임.	
○ 강백신, 엄희준 증인 등이 2022년 5월 직무대리 발령으로 와서 기록을 보았다는 것을 당시 알았는지?	○ 대장동 수사팀이 1팀과 2팀이 있는데, 본인은 1팀 팀장이었음. 당시 몰랐음.
○ 직무대리 발령받은 사람들과 수사와 관련된 협조가 있었는지?	○ 협조 내지 의견 공유 없었음.
○ 다른 검사들은 협조가 있었는지?	○ 알지 못함.
○ 1기 수사팀에서 제출된 녹취록에 ‘재창이 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기 수사팀에서는 ‘실장님’으로 녹취록이 조작됨.	○ 1기 수사팀은 녹음 파일을 속기사들에게 그대로 보냈고, 받은 그대로 제출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녹취록이 조작된 경위를 확인해 보았는지? 빠른 확인이 필요함.	○ 확인해보지 못함. 빠르게 확인하겠음.
○ 천화동인 1호 소유 관련 1기 수사팀 당시 진술 또는 녹취록들이 2기 수사팀에서 바뀌었는데, 1기 수사팀에서는 천화동인 1호 소유가 유동규로 정리되었던 것이 맞는지?	○ 그런 취지였음.
○ 2기 수사팀에서 유동규, 김용, 정진상으로 확대되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는지? 2기 후속 수사팀이 오면 1기 수사팀의 의견을 듣거나 하지 않는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던 것인지?	○ 2022년 7월 이후 수사 및 공판 상황에 대하여 공유받은 바가 없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근거가 없음. 그러함.
○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 인력 보강은 요청하지 않는 것인지?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 2~3월경부터 계속 요청중임. TF의 현원은 1명임. 팀장이 감찰부장이고, 감찰부에서 통상 업무를 하는 검사가 도와주고 있음.
○ 1기 수사팀에서 이재명 전 시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 등에 대해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 것이 맞는지?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기소하면서 본류 사건 공소장을 변경할 때 배임액을 유동규, 남욱 기소 당시의 651억원에서	○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하였음.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음. 본인은 2022년 7월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4,895억원으로 확대하였는데, 이 배임의 특정이 가능한 근거나 정황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 특경가법은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규정임. 이때 대금을 산정할 때 어떤 사건보다도 엄밀성이 요구되는 것이 맞는지?	○ 맞음.
○ 2022년 7월에 1기 수사팀이 2기로 교체되는데, 교체될 당시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사유를 들은 바가 있는지?	○ 인사 이유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알지 못함.
○ 1기 수사팀이 검토·확보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과 2기 수사팀이 직무대리 당시 검토했던 자료, 확보했던 자료가 서로 상이한지, 같은지?	○ 본인은 2기 수사팀에서 생성한 자료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음.
○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찰 내용 대검 감찰부에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보고하거나 또 요청한 사항, 혹시 요청한 사항 중에 대검 감찰부에서 묵살한 사항이 있는지?	○ 건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대검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봄.
○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요청사항 중 인원 보강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어떤 사항이 있는지? 상설특검 요청 건의사항	○ 묵살이라는 표현보다는 별도의 회신이나 의견을 받은 바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묵살된 것이 맞는지? ○ 대검 감찰부장에게 보고한 것이 맞는지?	○ 맞음.

(다) 박철우 증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남욱이 2025년 11월 7일 정진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대장동 2차 수사팀의 회유와 협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함. 2차 수사팀은 구치소 수감 중이던 남욱을 체포해서, 중앙지검 검찰청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구금했다고 하는데, 구치감 시설은 햇볕이 들지 않는 시설로 남욱에게 2박 3일 내내 모포 한 장만 주어짐. 적절한지?	○ 구치감에 가본 적은 없음. 통상의 수사 방식에 비추어서 이례적임.
○ 구치감에서 사람을 재워본 적이 있는지?	○ 기억하는 한에서는 없음.
○ 4월 9일 중앙지검 구치감 현장검증 시 함께 봐야 할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9월 밤이 추운데 콘크리트 바닥의 좁은 구치감에서 모포 한 장으로 버티라고 하는 것은 고문이고, 현장 검증에서 당시 제공한 모포도 같이 보여주시길 바람.	○ 그렇게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장동 사건 수사지휘 검사(2022.5~12.) 목록에 반부패 1부장으로 엄희준 검사가 있는데, 2022년 5월부터 엄희준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한 것이 맞는지?	○ 오류였을 것 같음. 그 이유는 엄희준 검사가 2022년 5월부터 수사 기록 검토에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식 지휘라인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5월부터 표기한 것은 저희 중앙지검 차원에서 잘못 전달된 것 같음.
○ 지금 위증교사 본범 김진성이 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인인데, 알선수재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사건을 계속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재명 당대표 사건에서 김진성의 진술을 조절할 생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서 보고 바람.	○ 본인이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왜 늦어졌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수사 진행중에 있음. 중앙지검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음.

(라) 이정우 증인(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당시 남욱으로부터 11억 8000만원 받은 범죄혐의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 제가 담당하였던 부분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부분임.

(마) 허정 증인(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의 과학수사부장 경험에 대하여 질의하겠음. 김용 사건에서 문제된 구글 타임라인 관련, 2021년도에 자택 근처에 있던 더크루즈처치(교회)가 2022년에 공교롭게도 유동규의 유원홀딩스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구글 타임라인 결과를 보면 자택(서초동)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기타 후보로 더크로스처치가 함께 나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 본인이 구글 타임라인 분석을 거의 해 본 적은 없음.

(바) 정일권 증인(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남욱 씨가 구치감 있을 때, 면담한 내용 관련,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우리는 배를 갈라 장기를 다 드러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라고 했다는데, 이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과정에서 “남욱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던 상황에서, 배를 가른다고 하진 않았고, 수사	○ 당시 남욱 씨와 이야기할 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한 사실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과정이 의사의 치료과정과 같기 때문에 환부만 신속히 도려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포렌식 자료 중 사진이 있었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한 피고인에게 도의적, 인도적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는 증인이 한 말이 맞는지? 최소한 환부, 수술, 신속히 도려낸다는 표현을 쓴 것은 맞는지?	
○ 남욱이 구치감에 있을 때 변호인 접견을 못했다고 하는데, 변호인 접견은 왜 막았는지?	○ 막은 적은 없음. 남욱 씨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접견 관련 내용 고지하였음.
○ 남욱이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의적 인도적 차원에서 보여줬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오랫동안 못봤는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 이미 당시 1년 가량 구금되어 있던 사정이 있어 그럴 것으로 생각함. 남욱 씨의 가족이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하였음.
○ 가족들의 사진은 어떻게 구했는지?	○ 이전 수사팀에서 확보한 수사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아이들 사진 보여주는 것이 수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 남욱 씨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남욱 이외에 유동규, 정재창, 김만배 등에게 가족사진 보여주고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없는지?	○ 없음.
○ 남욱 씨의 친구들은 어느 정도	○ 구체적 인원은 기억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조사했는지? 공판조서에는 14건 언급되어 있음.	남욱 씨가 자금 조성 시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을 조사한 것은 맞으며, 남욱 씨가 인정하거나, 거래내역·녹취록 등에서 확인되는 관련자들만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음.
○남욱을 수사하다 왜 친구들을 수사하는지?	○위원님께서 남욱 관련 자금거래 내역 있는 사람 조사했는지 물어보셔서 그렇다고 답변드린 것임. 그 사이에 친구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남욱 씨의 법정 증언과 같이 남욱은 정일권 증인이 말한대로 받아들이지 않음.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수사기법으로써 사진을 의식적으로 찾아와 보여준 것 아닌지?	○의식적으로 찾아온 것은 아님.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
○아이들 사진 보여주고 잘 선택해라 이런 거는 깡패 영화에서만 봤지 우리가 검사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음. 후회하시는지?	○제가 잘 선택해라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은 없음. 제가 남욱 씨에게 당시에 이야기했던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해달라는 취지였음.
○가족사진은 남욱이 먼저 보여달라 했는지? 몇 장 보여줬는지? 남욱씨는 뭐라고 했는지? 고마워했는지? 그게 압박이 아니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음. 제 기억에는 한 장으로 알고 있음. 그것에 대해 특별하게 말하진 않았음. 고맙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눈물을 보이긴 했음. 당시 제가 남욱 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게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압박·회유·협박하거나 강압적인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고 인도적인 차원에서였음.
○ 가족사진을 보여주면서 수사하는 방식을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수사할 때도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심리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들 사진을 보여준 적 없음. 잘 생각하라고 말한건 그런 취지가 아니라, 가족사진을 보여주고 본인과 가족들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음. 심리적으로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안정을 시키고 싶은 마음에서였음.
○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렌식 자료 중에 사진이 있었고 도의적, 인도적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사진을 찾은 것인지?	○ 제가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포렌식 자료에서 봤던 것으로 기억함.
○ 압수물에 가족사진이 있을 필요가 없음. 검찰이 수사하는데 아이들 사진을 갖고 갈 필요가 없음. 맞는지?	○ 전임팀에서 적법하게 확보했을 거라 생각함.
○ 일반적인 압수물에 가족사진이 들어가는지? 남욱씨의 어떤 사건에서 가족사진이 필요했던 것인가? 지금 이 사건 무슨 사건인가?	○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임.
○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미국에 있는 아들과 같이 했는지? 그	○ 남욱씨 사건에서 가족사진이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래서 가족사진이 필요한 것인지?	족사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일반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임. 사진은 전임팀 자료에 있어서 보여드렸던 것임.
○ 포렌식에서 찾은 것 같다고 말씀 주셨음. 맞는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중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는 폐기해야함. 그런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수사에 활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맞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남욱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 있었고, 자금이 차명계좌나 가족계좌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함.
○ 가족계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가족사진이 필요했다고 보시는지?	○ 가족사진 자체의 필요성 여부를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임팀에서 압수되어있었고, 적법하게 압수되었을 거라고 생각함.
○ 가족사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위법,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심리적으로 활용했다고 봄.	○ 저는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었음.
○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남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낸서 도려내는 방법과 환부를 도려내는 방법이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검사에게 답	○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아이들 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있음. 당시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변해라.”라고 한 것이 아닌지?	가 들어갔던 것임.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 비유하여, 치료가 가능하도록 사실만 얘기해 달라고 말한 것임.
○ 남욱에게 잘 생각해 보고 검사한테 잘 진술하라고 하였는지?	○ 잘 생각해보고 잘 진술하라 이렇게... 그때 담당 검사는 이주용 검사였음. 당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술을 하라는 취지였음.
○ 남욱이 3일 동안 평균 8시간의 조사를 받은데 대해 정일권 증인은 남욱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그랬다고 답변을 했는데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임. 진술을 하게 하려고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고, 첫날 체포영장을 발급하여 조사한 뒤 구치소로 돌려보내지 않고 구치감에 보냈는데, 인권수사준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처음부터 장기간 구금을 의도한 것인지?	○ 체포영장에 구금장소를 서울중앙지법의 구치감으로 명시함. 장기간 구금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었음.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까지만 체포할 수 있었음.
○ 남욱이 어디에 있을 때 체포영장 발급하였는지?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여 무엇을 조사한 것인지? 구속되어 있는데 왜 체포한 것인지? 서울구치소에 있다면 찾아가면 될 것이	○ 당시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구치소 구금 중이었고, 출석요구서 발부에 응하지 않아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했음. 찾아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아닌지?	음.
○ 체포해서 무엇을 조사했는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체포한 것인지? 체포해서 무엇을 얻어낸 것인지?	○ 본인이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고 남욱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당시 체포영장에 의해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를 했고, 무엇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조사했을 뿐임.
○ 남욱의 배를 가르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당시가 이주영 검사가 남욱을 심문할 때 남욱이 증언 거부하니까 협박이든 회유든 설득이든 하려고 간 것 아닌지? 위례 사건은 2013년, 2014년 사건으로 정영학 녹취록에 한 두번 언급된 정도의 사건이 아닌지? 이런 사건에 반부패수사부 전체가 붙어서 할 사건이라고 보는지? 이런 사건에 남욱을 체포해서 48시간 구금하고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한 것은 단순히 해당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한 것이 아닌지?	○ 이주영 검사의 조사가 실질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고 조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음. 그때까지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되지 않았음.
○ 위례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았는지? 위례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김용·정진상을 엮기 위해서	○ 그런 것이 아님.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한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렇게 노력한 것 아니었는지?	
○ 호반건설 관련해서, 2022년 8월경 호반건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은 2014년경부터 호반 및 계열사 법인자금 보관 중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수십억 원을 조성하고 이기성과 남욱 등을 통해 유동규 등에 전달하며 임의로 소비 또는 횡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욱만 기소하고 호반건설 관계자들은 기소하지 않았음.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이재명·정진성·김용 관련 진술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서가 아닌지?	○ 당시에 증거관계가 명확한 부분에 한해서 먼저 수사가 시작되었음. 현재 해당 사건이 수사중이므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려움.
○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당시 남욱으로부터 11억 8000만원 받은 범죄혐의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 아는 바가 없음.
○ 남욱 씨의 증언 관련된 보도, 오늘 확인된 말 등으로 증인이 조사 당시에 했던 말이 협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협박은 본인의 취지와 별개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친숙의 정도 그리고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이 모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임.	○ 법조 원로들이 많이 사용했던 환부만 도려낸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임.

(사) 김익수 증인(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보았는지?	○ 본인은 당시 개별적인 수사를 담당하지는 않아서 개별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개별 증거들을 확인하지는 않았음.
○ 정일권, 김경완 검사들도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기록을 받았는지?	○ 그런 사실은 일단 본인 기억에는 없음.

(아)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강백신, 엄희준) 윤석열 정권 직후인 2022년 5월 각각 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받았는지?	○ 발령받은 것으로 기억함. 공판5부 부부장이었음. 당시 동부지검 소속이어서 통상적으로 고검장 선에서 파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무실은 고검 건물에 있었음.
○ (강백신, 엄희준) 가장 중요한 현안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 조국 공판을 하고 있었고, 대장동 사건 기록 검토함. 중앙검사장 지시를 받았기에 기록만 검토해서 보고한 것으로 기록함.
○ (강백신, 엄희준) 기록을 종이로 받았는지 파일로 받았는지?	○ 기억이 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SB로 받았는지, 온라인상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강백신, 엄희준) 정일권, 이주용, 박성진, 이종광, 김경완, 송보형, 호승진, 홍상철, 김영석, 송민주 검사도 함께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는지?	○정기인사 명령때 발령받은 검사들임.
○수사검사가 공판검사로, 부장검사가 부부장검사로 발령받은 것에 의문은 없었는지? 이재명 당시 대표를 목적으로 두고 기록을 검토한 것인지?	○중앙지검 정식 인사 전이었기 때문에 공판부의 부부장으로 배치된 것으로 기억함.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사실은 없음.
○(강백신, 엄희준) 송경호, 고형곤의 호출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 사항을 처리하는 현안대응 TF에 들어간 것 아닌지?	○현안대응TF는 알지 못하며, 인사명령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을 뿐임.
○(강백신, 엄희준) 녹취록이 조작된 경위를 아는 증인이 있는지? 누구는 재창이형으로 누구는 실장님으로 다르게 알 수 있는 것인지?	○조작된 것이 아님. 구체적인 경위는 법정에서 다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영학 씨가 녹취록을 여러 번 걸쳐 제출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 낼 때 추가로 낸 녹취록이 있어 전체적으로 의뢰하여 속기사가 해 준 것을 그대로 보관했다 제출한 것임.
○(강백신, 엄희준) 재창이 형이라고 하는 녹음파일은 하나인지? 녹음파일 확인해 보았는	○그러함. 파일을 확인해보진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강백신, 엄희준) 2022년 5월 직무대리로 공판5부에 발령받았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생산한 문서가 무엇인지?	○기록을 보고 기록에 대한 검토 보고 함.
○(강백신, 엄희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공식 라인을 통해 보고하였음.
○(강백신, 엄희준) 보고서들은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에 편철이 되는 것인지? 기록 검토하고 생산한 문서 중 편철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내부용이라 공식적인 수사기록으로 편철하지 않음.
○(강백신, 엄희준) 보고서로 제한하지 않고, 생산한 문서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편철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음. 통상적인 내부 보고용 자료는 기록에 첨부하지 않음.
○유동규와 그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조사받은 것을 알고 있는지?	○같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함.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나이키 백팩 압수한 것 기억나는지? 그 압수조서 기재사항에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 기억하는지?	○정확한 경위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하였던 것은 기억함. 논란이 되어 보고받은 기억이 있음.
○당시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었는지?	○당시 여러 고발사건이 있어 여러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치자금법 위법 피의사건이라고 압수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맞는지? 이재명 대표는 당시 입건되었거나 피의자 신분이 아님.	○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음. 일일이 압수조서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을 대부분 확인하진 않음.
○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의 압수조서에 입건이 되어 있지 않은 이재명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담당 검사의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이재명 당시 대표를 목표로 수사해왔던 것이 드러난 것으로 단순 오기라고 보기는 어려움.	○ 피의자 이재명으로 되어 있는 사건이 당시 여러 건 있었음. 이 압수조서는 현장에서 있었던 착오로 오기임. 당시 본인이 담당 부장검사였음. 의도적으로 넣은 것은 아님.
○ 정일권 검사는 강백신 증인 밑에 있는지?	○ 본인은 반부패 3부장이었고, 정일권 검사는 반부패 1부 소속이었음.
○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이름이 나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	○ 기억으로는 이름이 나왔던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오래 전 일이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거절하면서 거절 취지의 문건을 제출한 사람이 호승진 검사인데, 그때 지휘 내지 결재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받은 차장과 검사장, 총장은 누구인지?	○ 호승진 부장은 제 아래에 있던 부부장이었음. 보고 받고 그렇게 의사 결정을 하였음. 의견서를 낸 시기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음.
○ (강백신, 엄희준, 김경완) 철거	○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업자 강철우 씨를 소환하여 조사한 적이 있는지?	
○(강백신, 엄희준)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재명 당 대표,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의 혐의를 찾을 수 있는지? 녹취록에 한정하여 본다면 어떠한지?	○방대한 기록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답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특정 부분에 한정하여 답변하기 어려움. 녹취록이 가지는 증거 가치는 법정에서 설명이 되고 있음.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의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년 10월 13일 16시 35분경 서울중앙지검 601호 검사실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음. 당시 김형석 검사가 지휘하고 호승진, 강백신 검사에게 보고되었던 것이 아닌지?	○그 체계로 보고된 것은 맞으나 압수조서를 개별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음.
○(강백신, 엄희준) 형사사법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인지 특정 피의자에 대한 기소인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형사분쟁의 해결임.
○(강백신, 엄희준) 대장동, 위례 등 사건 수사에 오로지 실체적 진실 규명만을 위한 수사였는지?	○오로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했고, 혐의 유무는 형법에 따라 판단하였음.
○(강백신, 엄희준)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사장일 때 남욱으로부터 11억 8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확인한 것이 맞는지? 1억	○기록을 봐야함. 어느 부분 특정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음. 기록을 정확히 보지 않고 답변하는 것이 실례가 된다고 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상의 뇌물죄는 특가법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대상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같은 법에 따른 특수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음을 주지바람.	
○ 유동규와 정민용 사건 관련하여, 법원의 공소장 변경 권고에도 검찰이 변경을 거부하여 유동규·정민용이 무죄 선고를 받았고, 50억 클럽 사건은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등 무죄를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 무죄를 받는 설계를 할 수는 없고, 재판의 영역은 검사가 좌지우지할 수 없음. 실무상 법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체적 진실에 따라 검찰에서 끝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
○ 유동규 사건에서 판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하였음에도 변경하지 않고 무죄를 받았음. 공소장을 바꾸라고 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 그런 권유가 있었던 것은 맞음.
○ 유동규 사건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하여, 본인의 소신 때문이었다면 왜 선택적 병합을 하지 않은 것인지? 대법원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	○ 기존의 법리에 따라 유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리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음.
○ (강백신, 엄희준) 윤석열 집권 이후 두 증인을 서울고검에 배치하여 대장동 기록 검토를 해서 수사기획을 하고, 기획수사,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 그렇지 않음. 김용 사건은 수사 중에 유동규의 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강백신, 엄희준) 대장동 배임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을 구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기 위하여 유동규, 남욱을 체포할 당시에는 이미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태였음. 불법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서는 독과수 이론에 의해서 증거증력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였음.
○(강백신, 엄희준) 2022년 5월 31일자로 직무대리 명령받은 것이 맞는지? 직무대리로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검토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음.
○(강백신, 엄희준) 두 증인이 함께 검토하고 따로 검토보고를 작성하였는지? 검토보고의 요지가 무엇인지?	○따로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함. 그 당시 대장동 업자들은 기소가 되어있었고, 그 외 잔여 사건에 대한 검토임.
○(강백신, 엄희준) 검토보고 당시 이재명의 범죄 혐의점에 대하여 작성하였는지?	○당시 보고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자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강백신, 엄희준) 누구 지시로 대장동 자료를 검토하였는지? 통상적으로 기존 수사팀의 의견을 듣지 않는지?	○1기 수사팀이 공판 중이었으므로, 수사를 하면서 공판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서로 협의하였음.
○대장동 사건-정영학 녹취록 사건-기소 검사가 맞는지? 이 부	○맞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음. 녹취록은 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분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지? 녹취록 관련 검토하지 않았는지?	사건에 대한 증거가 아닌 대장동 사건 전체적인 관련 있는 증거임. 당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은 공판하면서 드러났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시 엄희준검사는 녹취록 조작 관련 책임은 강백신 수사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서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 당시 녹취록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은 공판하면서 드러났던 것으로 알고 있음. 조작이 아니고, 속기록은 수사팀에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운영되는 수사팀에서 작성되는 것임.
○ 정재창 씨는 왜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신청을 거부하였는지?	○ 그 당시에 공갈 혐의에 대한 혐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갈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함.
○ 경기남부청에서 정영학이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당시 남욱으로부터 11억 8천만원을 받은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영장신청을 거부당하였는데, 협조자들에게 수사를 무마해준 것이 아닌지?	○ 수사 무마가 아님. 경위를 확인하면 이유가 있었을 것임.
○ 경기남부청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데, 당시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 정재창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올라왔을 때 보고를 받았는지, 사건처리 진행 보고를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아 확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유동규 사건은 어떠한지?	할 필요가 있음. 정재창 씨 관련 경위는 확인하여 보겠음. ○ 역시 확인이 필요함.

(자)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강백신, 엄희준) 윤석열 정권 직후인 2022년 5월 각각 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받았는지?	○ 발령받은 것으로 기억함. 공판 5부 부부장이었음. 발령을 낸 주체는 모름. 당시 서울남부지검 중경단에 근무함.
	○ 사무실은 고검 건물에 있었음.
○ (강백신, 엄희준) 가장 중요한 현안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 중앙검사장이 여러 업무를 지시해 업무를 처리하였고, 대장동 사건 기록 검토함.
○ (강백신, 엄희준) 기록을 종이로 받았는지 파일로 받았는지? USB로 받았는지, 온라인상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 기억이 나지 않음. 종이 파일을 봤던 기억은 남.
○ (강백신, 엄희준) 정일권, 이주용, 박성진, 이종광, 김경완, 송보형, 호승진, 홍상철, 김영석, 송민주 검사도 함께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는지?	
○ 1기 수사팀의 남욱 메모지 압수 사실과 '천화동인 1호 소유자가 김만배와 다른 분'이라는 기재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정민용도 자	○ 1기 수사팀의 메모지 압수 건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 소유는 유동규 것이라는 것을 유동규 본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언급함. ○ 위 진술을 통하여 1기 수사팀은 428억 천화동인 1호 소유를 유동규로 하여 기소했는데, 증인을 포함한 2기 수사팀은 유동규, 남욱을 체포하고 남욱을 감금하면서 별건 고지 방법 등을 통해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고, 이후 김용과 정진상을 기소함.	
○ 김용, 정신상, 이재명 대표를 순차적으로 기소할 때마다 공소장 내용이 진전되었음. 이를 위해서는 정진상의 자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조사했는지? 정진상의 조사나 자백 없이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 및 승인'이라는 공소장 기재가 가능한지?	○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말하기 곤란하나,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기소하였음.
○ (강백신, 엄희준) 송경호, 고형곤의 호출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 사항을 처리하는 현안대응 TF에 들어간 것 아닌지?	○ 발령받아 중앙지검으로 감.
○ (강백신, 엄희준) 녹취록이 조작된 경위를 아는 증인이 있는지? 누구는 재창이형으로 누구는 실장님으로 다르게 알 수	○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있는 것인지?	
○(강백신, 엄희준) 2022년 5월 직무대리로 공판5부에 발령받았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생산한 문서가 무엇인지?	○기록을 보고 기록에 대한 검토 보고 함.
○(강백신, 엄희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고형곤 차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였음.
○(강백신, 엄희준) 보고서로 제한하지 않고, 생산한 문서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편철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음. 자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라 증거의 가치가 없어 편철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함.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답하는 것은 부적절함.
○2024.10.31. 공개된 윤석열 녹취록은 검사가 수사를 할 때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지?	○그 사건은 본인이 잘 모르는 사건임.
○박상용 검사에 관한 녹취록을 보았는지? 녹취록을 들어보면 박상용, 서민석 뿐만 아니라 이화영과 관계된 사람들의 실명이 모두 나옴. 그렇다면 이것은 직접 증거인지, 간접 증거인지, 아니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지?	○언론을 통해서 보았고, 들어보지는 못했음. 본인이 담당하지 않은 사건이므로 답변이 곤란함.
○엄희준 검사가 반부패 1부장일 당시 누구와 일을 하였는지? 정일권 부부장검사와 김경완 검사, 강백신 검사, 호승진 검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 김영석 검사인지?	
○ 반부패 1부와 반부패 3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면서, 반부패 1부와 반부패 3부가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 그 당시 수사하는 내용이 달랐음. 정보공유를 했었음.
○ 정영학 녹취록은 2012~2021년까지 10년에 걸쳐 있는데 엄희준 검사는 이를 모두 들어보았는지?	○ 언론에서 보았음.
○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모두 등장함. 10년간의 녹취라고 하면 직접증거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은지?	○ 대화 내용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함.
○ 엄희준 검사가 수사를 한 내용 중에 주범을 누구로 보았는지?	○ 그것은 공소장과 증거 기록으로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함.
○ 정영학 녹취록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이재명, 김용, 정진상이 나와야 함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움.
○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김용 등이 등장하지 않고,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조작한 것이 아닌지? 조작이 되었다는 취지로 법무부 장관이 진술하였는데?	○ 고의적으로 바꾼 사실이 없음. 장관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녹취록은 조작되지 않았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부패고리의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김용, 정진상을 불어라, 주범으로 이재명을 만들고자 하는 한 편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것임. 이는 대북송금 사건의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안부수, 김성태를 압박해서 대북송금 진술 조작 세미나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구조와 동일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 증거는 조작되지 않았고, 증거의 일부분만 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음.
○ 이재명, 김용, 정진상이 혐의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지?	○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음.
○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박태선의 압수조서에 입건도 되지 않은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 본인이 담당한 사건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내용임. 강백신 검사가 실수라고 진술한 것으로 들었음.
○ 정일권 검사가 “애를 봐야 할 것 아니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내서 수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 것이 실수인지?	○ 정일권 검사의 정확한 진위가 아직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임.
○ (강백신, 엄희준, 김경완) 철거업자 강철우 씨를 소환하여 조사한 적이 있는지?	○ 기억이 나지 않음.
○ 정영학 녹취록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을 내부에서	○ 증거 가치가 높은 것은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아무도 모르게 녹음한 것으로, 객관적 증거로서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지 않는지?	
○(강백신, 엄희준)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재명 당 대표,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의 혐의를 찾을 수 있는지? 녹취록에 한정하여 본다면 어떠한지?	○다른 증거와 종합해서 보아야 할 것임. 녹취록과 다른 증거가 입증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기록 전체를 봐야 답변할 수 있음.
○정진상 실장을 조사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482억을 준다고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조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왜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되었는지?	○조사를 한 사실은 없음. 유동규의 진술이 있었음.
○최소한 정진상의 직접 진술이나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장면에 대한 목격자 진술 또는 이재명에게 보고하였다는 녹취파일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 없이 공소장에 기재해도 되는건지?	○증거의 신빙성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임.
○자백이나 직접증거 없이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수사팀에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음. 유동규의 진술과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였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
○(강백신, 엄희준) 형사사법의 목	○동의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강백신 증인의 말에 동의하는지?	
○(강백신, 엄희준) 대장동, 위례 등 사건 수사에 오로지 실체적 진실 규명만을 위한 수사였는지?	○그러함.
○(강백신, 엄희준)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사장일 때 남욱으로부터 11억 8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확인한 것이 맞는지?	○기록을 봐야 할 것 같음. 금액이 왔다갔다 한 것이 많고,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음.
○위례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을 알고 있는지? 2016년도 대법원 판례는 사업자 취득이 되었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였는지?	○기소의 시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달랐던 것임. 본인은 경제적으로 돈을 취득했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임.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정영학 녹취파일에서 ‘재창이형’이 ‘실장님’으로 바뀐 것이 맞는지?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이 힘듦.
○오마이뉴스에 문자로 ‘실장님’ 문건은 반부패 3부에서 제출한 거라고 문자를 보낸 적은 있는지?	○당시 어느 부서에서 생산한 녹취록인지를 확인하고, 3개의 이슈가 있었는데 3개 모두 담당 부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음.
○기자한테 문자로 보내기 위해서 단순히 이슈가 담당 부서가 아닌지만 확인하고 보낸 것은 아니지 않았는지?	○녹취록 생산이 어디에서 되었는지 그것만 확인했음.
○녹취록에서 ‘실장님’으로 바뀐 것을 기사를 통해서라도 알았	○기자에게 문자를 보낼 때는 녹취록 생산의 출처를 확인해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다면 알고 있는 상태이고, 이를 직접 해명해서 넘겼으면 조작이 맞는게 아닌지?	보낸거고, 그 이후에 고의적으로 조작된 사실이 없다고 들은 바에 따라 증언한 것임.
○(강백신, 엄희준) 서울고검에 파견된 이후 7월 배치 이후 수사계획을 보고하는 일이 맞는지? 그 지시한 일이 대장동·김용 사건 수사기획인지?	○맞음. 당시 중앙검사장이 지시하는 일을 하였음. 대장동 배임사건과 그 외 다른 업무를 하였음.
○(강백신, 엄희준) 대장동 배임사건, 위례신도시 사건을 구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기 위하여 유동규, 남욱을 체포할 당시에는 이미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태였음. 불법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서는 독과수 이론에 의해서 증거증력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불법 체포가 아니라 영장에 의한 적법한 체포였음.
○(강백신, 엄희준) 유동규가 2021년 10월 구속 이후 2022년 7월 27일 이후 접견이 안되는데, 증인들이 접견 제한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함.
○(강백신, 엄희준) 2022년 5월 31일자로 직무대리 명령받은 것이 맞는지? 직무대리로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검사장의 지시에 따라 복수의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하였음.
○(강백신, 엄희준) 두 증인이 함께 검토하고 따로 검토보고를	○같이 검토하였음. 중심 사건의 기록을 먼저 검토하고, 중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작성하였는지? 검토보고의 요지가 무엇인지?	사건과 잔여 사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강백신, 엄희준) 검토보고 당시 이재명의 범죄 혐의점에 대하여 작성하였는지?	○수사자료가 방대하였으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강백신, 엄희준) 누구 지시로 대장동 자료를 검토하였는지? 통상적으로 기존 수사팀의 의견을 듣지 않는지?	○중앙지검장의 지시였음. 1차 수사팀의 결론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아니었고, 잔여사건을 검토하라는 것이었음. 2기 수사팀에도 1기 수사팀 인력이 있어 의사소통하였음.

(차) 김경완 증인(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2022년 10월에 3일간 일평균 8시간씩 유동규를 면담 조사하였는데, 당시 변호인이 참여하였는지? 어디서 면담조사를 하였는지? 검사실이 아니라 집무실이 아닌지?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았음. 검사실에서 하였음. 집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곳임.
○당시 유동규 수사할 때 검찰수사관이 참여하였는지? 유동규 증언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바깥방에 있었다고 하는데?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 안에 검찰수사관이 함께 있었는지?	○참여하였음. 집무실은 열려 있는 공간이었고 수사관들도 참여하였고, 문을 닫고 조사한 적 없음.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 안에는 없었음.
○유동규 조사 시 검사 조사실이 아니라, 방 안에서 조사하였는	○기억이 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 유동규 면담기록 작성 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적었는지? 24시간을 면담한 기록이 11페이지에 불과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 그러함. 구체적으로 기억나진 않지만 최대한 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으려 노력하였음.
○ 증인과의 불법적인 면담 이후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어, 유동규가 받은 뇌물이 정진상과 김용으로 간 뇌물로, 유동규는 단순한 전달자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면담을 통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	○ 진술이 바뀐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경위나 심정까지는 알지 못함.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적 없으며,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질문했을 뿐임.
○ 어떠한 증거를 토대로 유동규에게 질문을 하였는지?	○ 성남시나 공사에서 압수했던 문서들, 녹취파일 등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음.
○ 본인의 질문을 담은 피신을 작성하지 않고 왜 면담기록을 작성한 것인지?	○ 당시 추가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 있었고, 충분히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할 계획이었음.
○ 2022년 10월 13일 유동규와 사실혼 관계인 박태선 씨가 함께 조사할 때 대질조사 하였는지?	○ 조사하지 않았고, 우리 부에서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김형석 검사가 조사한 것 같기는 함.
○ 강철우 씨를 소환하여 조사한 적이 있는지? 검사실에서 부르거나 아니면 수사관이 어디를 방문한 적은 없는지?	○ 수사 과정에서는 없었고, 김용 사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화상증인 심문을 했던 기억은 있음. 본인 기억에는 재판에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 이름은 처음 들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증인, 변호인, 수사관과 교도관 배석도 없이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도 기재하지 않고 증인과 유동규 둘만 면담을 진행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지? 다른 수사도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 참여계장이나 교도관 없이 면담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그렇게 진행한 사례가 없지는 않음.
○ 유동규는 이미 증인이 조사하기 전에 남욱 등으로부터 받은 3억 2500만원 뇌물수수로 기소되어 있었는데, 그 돈이 증인의 단독 조사 이후 유동규의 뇌물에서 정진상·김용의 뇌물로 진술이 변경되는데, 유동규는 뇌물의 전달자로서 종범으로 하여 주범을 따로 만드는 식으로 회유한 것이 아닌지?	○ 그렇지 않음.
○ 검사실에서 유동규를 심문할 때 입회·참여 계장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맞는지? 참여 계장, 교도관이 입회한 조사 건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 옆에 착석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린 것임. 정확한 수치로는 알지 못함.
○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 호승진 검사 등 여러 검사와 함께 같이 공소유지를 담당했는지? 공판 진행 중 검찰이 제출하는 의견서는 공판 관여 검사에게	○ 맞음. 소관이 다르므로 공판 의견서 전체를 알지는 못함. 전체 의견서를 검토하지는 않았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모두 공유되는지?	
○ 유동규와 면담하였는지? 밀실로 불러서 24시간 가까이 조서 한 장 없이 비공개 면담한 사실 맞는지? 호승진 검사는 유동규 면담은 단 1회로 기재, 증인은 3일간의 면담 사실 숨긴 것인지?	○ 면담하였음. 피신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맞음. 호승진 검사와는 다른 팀이여서 잘 모르겠음.
○ 면담 시간 작성한 수사과정 확인서 상에 호승진 검사 면담 이후 김경완 검사가 면담하였다고 기재되어있는데 같이 조사한 것인지?	○ 기재되어 있다면 맞을 것이나 같이 조사한 것은 아님. 호승진 검사와 부서가 달랐고 호승진 검사가 면담 하던 도중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불러서 조사한 것임.
○ 3일 동안 유동규를 신문하였는지? 면담과 조사의 차이는 무엇인지?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을 하는 이유는?	○ 면담 조사하였음.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조사는 면담이고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조사로 구분함. 진술 청취가 필요한 경우 면담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면담한 내용은 수사보고에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김.
○ 3일간 유동규 면담 시 무슨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진술 청취 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조작 수사의 핵심임.	○ 유동규가 전에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해 진술한 것이 있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청취함.
○ 형사소송법 상 원칙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조서를 남겨야 함.	○ 면담기록은 편철하였고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였는지? 면담이라는 명목으로 조서를 남기지 않은 것은 불법으로 보이며, 회유 작업이라고 봄.	
○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김용·정진상 등은 등장하지도 않는데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것이 핵심임. 이러한 지적을 들었는지?	○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음.
○ 특검이 진행되면 정영학 녹취록 증거 조작에 대하여도 수사하게 될 것이고, 대장동 사건 수사팀의 막내인 본인이 꼬리 자르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하여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 1차 수사팀에서 작성한 내용을 활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자세히 알지 못함.
○ 남욱 등 3인이 돈을 만들어서 유동규에게 주고, 유동규가 다시 김용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판에서 소명하였고, 앞으로도 충실히 소명하겠음.
○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유동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	○ 서울 구치소에서 왕래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음. 체포해서 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유동규에 대한 2박 3일 조사를 실시하면서 구치감에 가둬둔 적 없는지?	사를 했던 건 9월이고, 10월은 서울 구치소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수사하였음.
○ 9월에 남욱을 구치감에 가둬둔 다음 유동규도 구치감에 가둬두고 조사한 것 아닌지?	○ 유동규를 체포하여 조사한 건 맞는데, 구치감 구금 여부는 기억나지 않음.
○ 수사 시 항상 이렇게 구치감에 가둬두고 진행하는지?	○ 유동규의 구치감 구금 여부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음. 만약 그랬다면 그곳이 체포 시 인치 구금장소이기 때문일 것임.
○ 유동규에게 배를 가른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는지?	○ 그런 말을 한 바 없음.
○ 변호인과 통화하여 회유하고 협박한 박상용 검사처럼 수사한 적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 그렇게 한 사실이 없음. 평가하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김용에게 돈이 전달된 날짜와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있는지? 유동규의 진술은 1차 수사 때에도 있었던 것인지? 그 진술을 어떻게 받은 것인지?	○ 유동규의 진술을 통하여 특정하였음. 1차 수사 때는 없었던 진술임. 위법하게 한 사실은 없음.
○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당시 남욱으로부터 11억 8000만원 받은 범죄혐의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 정확하게 알지 못함.

(카) 이정규 증인(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당시 남욱으로부터 11억 8000만 원 받은 범죄혐의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증인이 담당 검사였는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 맞는지? 증인과 그 수사를 그 수사를 직접 담당한 다른 검사가 있는지? 증인 위에 부장검사가 누구였는지?	○ 해당 부분은 정민용에게 35억이 갔고 정민용에게 간 35억 중에 일부가 유동규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계좌 추적상 금원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음 1기 수사팀에서 계좌 추적 담당을 같이해서…… 2차 수사팀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음. 강백신 부장님이었음.
○ 해당 사항은 부장검사에게 다 보고했는지? 특수직무유기로 특가법 15조의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말씀드림.	○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차 수사 당시에 계좌 추적으로 나왔던 내용임. 기록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음.

(2)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관련

(가)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부산 저축은행 부실수사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들의 노트북을 불법 수색하고, 검찰은 압수한 봉지욱 기자 핸드폰 이미지를 삭제하였다는 확인서를 전달(2024년 1월 29일)한 당일 영장 없이 해당 이미지를 재압수하였음. 피압수자로부터 압수한 핸드폰에서 자료를 복사한 이후 검찰청 디넷에 넣고 필요한 때마다 꺼내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상 동일성과 무결성을 위해 전체를 확보하는 것은 맞으나, 권한 없이 임의로 추출하여 수사에 활용하지 않음.
○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것, 폐기되었어야 하는 자료를 보관한 것이 문제임. 그리고 별건의 수사시에 기존 압수자료에서 증거자료를 추출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하거나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지? 원칙론과 현실이 다르고,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오늘 보여주신 문서에 나온 내용은 확인하겠음.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관한다는 것이지 별건에서 사건에 활용하지는 않음.
○ 휴대폰은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전체가 보관되고 있다는 것인지?	○ 전체인지는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임.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의사를 확인하고 기소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검찰총장은 처벌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그러함. 의사를 확인해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음.

(나)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언론인 관련 명예훼손담당 부장검사가 맞는지?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명예훼손 사건은 부패·경제범죄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수사권 문제는 재판상 쟁점임. 명예훼손죄명으로 구분하여 수사를 한 것이 아님.
○명예훼손은 명백하게 부패경제범죄는 아닌데 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 검찰 수사권에 명예훼손이 없는데 직접 관련성을 확대하여 수사한 것은 정치검찰임.	○대장동 사건과 기자들에게 금품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하여 관련성 규정에 근거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음.
○공소장 변경하였는지? 기관보고에 따르면 공소장 페이지 수가 줄었는데 맞는지?	○정확한 페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장을 간소화하였음.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관련하여,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공소장 일본(一本)주의 등에 대한 법원의 지적, 이 사건은 이	○재판부 요청으로 검토했던 사실은 기억함. 공소장을 변경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재명 유착 관련 문제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지적이 있었던 점을 기억하는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공소장 일본주의로 공소기각될 수 있으니 공소장을 67쪽에서 30쪽으로 변경한 것이 아닌지?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데, 증인은 기소 전에 처벌의사 확인했는지? 기소 후 2년 지난 후 확인한 것이 맞는지?	○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음.
○ (법원행정처장, 강백신) 당시 재판부가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간접정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지?	○ 재판부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음.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에서 영장 기재사항 외 압수수색 하는 등 위법한 압수수색 인정하는지?	○ 구체적으로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압수수색에서 유리한 사실만 채택하고, 불리한 사실은 채택하지 않은 것 인정하는지?	○ 기억에 없음. 구체적으로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 관련하여 기자에게 금품 살포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하였는지?	○ 기소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만배와 신학림이 이재명 후보를 위하여 보도를 한 것인지? 그 동기가 있다고 본 것인지?	○ 김만배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당선시킴으로써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음.
○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우형 브로커의 불법 대출 담당 검사, 커피 타준 검사, 주임 검사는 누구인지?	○ 당시 대검 중수부 담당이었고, 검사는 박길배 검사였음. 커피를 타준 것은 직원이었음. 주임 검사는 당시 과장 인사이동이 있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음.

(3) 그 밖의 지적사항

(가) 허정 증인(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하였는지? 2024년 12월 3일에 박건영에게 선관위에 출동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지?	○ 맞음. 박건영 과장과 그러한 대화를 한 사실이 없음.
○ 박건영 검사의 상관은 맞는지? 12월 3일 밤 10시반에서 12시 사이에 대검찰청에 있었는지? 박건영에게 지시를 하였는지? 그러면 박건영 검사는 왜 출동하는지?	○ 맞음. 계엄 선포되고 나서 사무실 나오라고 해서 새벽 한두시까지 있었음. 전혀 지시한 적도 없고, 허위사실임.
○ 송재영 대령이 방첩사에서 대기중에 박건영 과장과 송재영 대령이 서로 출동 지시를 받은	○ 허위사실임. 선관위 서버를 대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가서 만질 수도 없음. 송제영 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실을 통화하였다는 증언을 정보위에서 하였고, 해당 사실이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령과 박건영 과장이 통화한 사실은 정확히 모르지만 출동 관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가) 보고내용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경찰 보고사항

1 대장동 · 위례 사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 '21. 9월경부터 **경기남부청**(전담수사팀)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고발 등 17건*을 접수·수사**하였음

* 사건목록은 [붙임]과 같음

○ 이 중 '사업시행자 선정 특혜의혹' 등 **5건은 검찰 이송**하였고,

– 관련사건 **8건은 송치**, **4건은 불송치**하였음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선정 특혜 의혹]

○ '21. 10월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련 고발 1건 접수

○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한 사건**부패방지법위반등과 **동일 건**으로 판단, **'23. 8월 불송치 결정**하였음

2 성남FC 사건

○ ’18. 6월 **분당경찰서**는 ‘성남FC 후원금 수수’ 관련 **고발 접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수사 착수하였음

○ 분당서는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진행하였으나, ’21. 9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하였음

○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법정송치** 후, ’22. 2월경 **성남지청으로부터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되어 보완수사를 진행하였고,

– ’22. 7월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하였음

○ ’22. 9월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지청에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하였음

▸ **(보완수사결과 통보 주요내용)**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일부 A건설社와 관련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완수사결과 통보

▸ **(일부 의견 변경 사유)**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시청·건설社 내부문건, 기존 참고인들의 번복된 진술 등 고려

3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건

○ ’22. 1월경부터 前경기도지사·배우자 등에 대한 **총 16건의 고발 등 접수**,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 착수

※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량 사적사용 ▵수행비서 사적채용 의혹 등

○ ’22. 8월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 **前경기도지사의 배우자와 공무원 1명 송치**, **前경기도지사는 ’22.12월 불송치**하였음

▸**(공무원·배우자 송치 사유)** 관련 공무원이 일부 사적 사용을 인정하고,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들이 확인되었음

▸**(前경기도지사 불송치 사유)** 법인카드 혐의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23. 3월 **수원지검**은 불송치 혐의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재수사결과 (불송치 의견 유지)**를 **수원지검에 통보**하였음

○ 이후, ’24. 1월 **수원지검의 송치 요구**에 따라 **법정 송치**하였음

붙 임 **경찰 수사 대장동 사건 목록(17건)** ※ 종결일자 順

▸ **대장동 관련 사건 총 17건 수사 ⇒ 이송 5건, 불입건·불송치 4건, 송치 8건**

▸ **대장동 사건 관련 1명 구속 등 총 15명 송치(중복 포함)**

연번	피(혐)의자	사건개요	수사사항(요약)
1	**곽OO 등 4명** (前 국회의원)	**곽OO 前 국회의원 뇌물수수**	▸ '21. 09월 고발 접수 ▸ '21. 10월. **검찰 송치요구에 따른 법정송치**
2	**이OO 등 9명** (前성남시장)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 '21. 09월. 고발 접수 ▸ '21. 11월 **서울중앙지검 이송**
3	**김OO 등 10명** (화천대유 대표)	**화천대유 운영 자금 횡령·배임**	▸ '21. 04월 서울용산서 접수 ▸ '21. 11월 **서울중앙지검 이송**
4	**이OO 등 2명** (분양대행 대표)	**화천대유 분양업체 대표 리베이트**	▸ '21. 10월 수사착수 ▸ '21. 11월 **서울중앙지검 이송**
5	**성명불상** (성남시 공무원)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축소 특혜**	▸ '21. 10월 수사착수 ▸ '21. 11월 **불입건(증거불충분)**
6	**김OO** (화천대유 대표)	**김OO 청탁금지법위반**	▸ '21. 10월 의왕서 진정 접수 ▸ '21. 12월 **김OO 송치**
7	**고OO 등 3명** (성남의뜰 대표)	**화천대유 부지매입비 5,700억 불법 조성**	▸ '21. 11월 수사착수 ▸ '22. 01월 **불입건(증거불충분)**
8	**김OO 등 3명** (화천대유 대표)	**천하동인 1호 소유 빌라 무상제공**	▸ '21. 10월 수사착수 ▸ '22. 01월 **불송치(증거불충분)**
9	**최OO 등 3명** (前성남시의장)	**前 성남시의장 최OO 뇌물수수**	▸ '21. 10월 수사착수 ▸ '22. 01월 **최OO(구속), 김OO 송치 / 남O은 관여 정도 불명확해 불송치**
10	**박OO 등 2명** (유OO 지인)	**유OO 휴대전화 은닉 등**	▸ '21. 10월 고발 접수 ▸ '22. 01월 **김OO, 박OO 송치**
11	**박OO 등 5명** (박OO 특검 딸)	**박OO 前 특검 딸 주택법위반**	▸ '21. 10월 수사착수 ▸ '22. 09월 **박OO 등 4명 송치**
12	**강OO 등 2명** (前성남시의원)	**前 성남시의원 강OO 뇌물수수**	▸ '21. 11월 검찰 수사자료 이첩 ▸ '22. 09월 **강OO, 김OO 송치**
13	**홍OO 등 2명** (언론사 회장)	**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위반**	▸ '22. 02월 고발 접수(검찰 이송) ▸ '22. 11월 홍OO 등 2명 송치
14	**정OO 등 2명** (부동산컬설팅업)	**대장동 동업자 간 공갈**	▸ '21. 12월 고소 접수 ▸ '23. 07월 **정OO, 김OO 송치**

연번	피(혐)의자	사건개요	수사사항(요약)
15	**나OO** (토목업체 대표)	**대장동 개발 관련 공갈**	▸ '22. 04월 고소 접수(검찰이송) ▸ '23. 07월 **불송치(증거불충분)**
16	**윤OO 등 2명** (前성남시의원)	**前 성남시의원 뇌물수수**	▸ '21. 11월 검찰 수사자료 이첩 ▸ '23. 09월 **서울중앙지검 이송**
17	**권OO** (前 대법관)	**권OO 前 대법관 변호사법위반**	▸ '22. 01월 고발 접수 ▸ '23. 09월 **서울중앙지검 이송**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가) 황창선 증인(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남욱 조사과정에서 유동규의 3억 6,000만원 수수액을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고, 남욱에게 빚진 35억 중 11억 8,000만원을 정민용을 통해 전달받은 유동규가 사용했음에도 정민용만 기소하고 유동규의 혐의는 수사하지 않고 있음.	○ 최초의 수사기록 수원지검에 제공 요청했으나 협조받지 못했고, 수원지검에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불청구됨.
○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경찰청 경기남부청 수사 2계에서 이강길과 남욱, 나아가 김만배의 50억 클럽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하던 중 수원지검에서 이강길과 남욱을 수사하게 됨에 따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었는데, 관련 수사 담당 직원에게 질의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5) 서울고등검찰청(보고내용)

Ⅰ 개요

○ 법무부는 대검에 ’25. 9.부터 ’25. 12.까지 ‘대장동 사건 수사팀 검사 등 감찰 요청’ 4건을 이첩하였고, 대검은 서울고검에 민원서류 처리지시를 하였음

※ 요청인 :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 서울고검은 대검의 지시에 따라 위 감찰 요청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기관보고를 드리고자 함

Ⅱ 감찰요청 사건 현황 개요

순번	법무부 이첩일	감찰 요청 요지	대 검 지시일
1	’25. 9. 24. 민원 이첩	**[대장동 사건 수사팀 감찰 요청] - 2025. 9. 17.자 감찰요청서**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 유동규, 남욱 수사과정확인서 등 미작성(직무유기) - 유동규 접견제한 후 압박 및 회유(직권남용) - 재판자료인 구글 타임라인 감정보고서를 조선일보에 누설(공무상비밀누설) 등	’25. 10. 2. (감찰1과-10951)
2	’25. 9. 24. 민원 이첩	**[대장동 사건 수사팀 감찰 요청] - 2025. 9. 23.자 감찰요청서** ○ 정진상 관련, - 정영학이 제출한 엑셀파일(대장동 사업 이익 산출 자료)의 평당 분양가 조작(증거 위조) - 유동규, 남욱 등을 회유하여 허위조서 작성(허위공문서작성) 등	’25. 10. 2. (감찰1과-10951)
3	‘25. 11. 18. 민원 이첩	**[대장동 사건 수사팀 감찰 요청] - 2025. 11. 10.자 감찰요청서** 남욱 증인신문을 통해 ① 별건 수사 압박을 통한 진술 강요, ② 허위 피신조서 작성, ③ 유동규, 남욱 회유와 남욱 협박, ④ 김용, 정진상 조작기소 등 위법수사가 밝혀졌으니 감찰 요청	‘25. 12. 2. (감찰1과-13560)
4	‘25. 12. 12. 민원 이첩	**[대장동 사건 수사팀 감찰 요청] - 2025. 11. 19.자 감찰요청서** - 정영학의 녹취록 조작[① “재창이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실장님(정진상)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②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 “윗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테니까“] - 조서 작성 없이 유동규를 수회 면담하여 진술 조작	‘25. 12. 22. (감찰1과-14385)

Ⅲ 주요 경과

○ ’25. 10. 2./10. 대검, 민원서류 처리지시(1차·2차 감찰요청서) / 서울고검, 접수

○ ’25. 10. 21. 서울구치소에 접견 녹음파일, 대화록 등 송부요청

○ ’25. 10. 27. **접견녹음(246개) 및 입회일지(136개) 확보**

○ ’25. 12. 2./3. 대검, 민원서류 처리지시(3차 감찰요청서) / 서울고검, 접수

○ ’25. 12. 22./23. 대검, 민원서류 처리지시(4차 감찰요청서) / 서울고검, 접수

○ ’26. 2. 5. 공수처에 조사협조의뢰(동일 내용의 수사·조사 여부)

○ ’26. 2. 11.~ 동일 내용의 공수처 수사 중 사건 일부(2025공제1129호) 확인, **접견녹음파일 녹취 및 분석, 입회일지 분석 중**

Ⅳ 참고 사항 및 향후 계획

○ **접견녹음파일 및 입회일지 분석**

- 주요 관련자 A, B에 대한 서울구치소 접견녹음 파일 246개 녹취 의뢰 및 분석 중

- 위 A, B에 대한 서울구치소 입회일지 136개 분석 중

○ **관련 사건 재판경과 확인 및 판결문 분석**

- 본건 감찰요청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의 다수의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감찰 요청이므로 재판 진행경과 확인 필요

- 관련 사건 중 일부 선고된 1, 2심 판결문 분석

○ **공수처 수사 경과 확인 예정**

- 감찰요청인이 동일 내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재 공수처 수사 중임

- 본건 비위혐의와 공수처 고발사실이 동일하므로 공수처의 수사 경과를 확인하고 공수처와의 협의를 통한 수사기록 확보 등 효율적인 감찰 방법 모색 중 ▨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보고내용)

Ⅰ 대장동 사건

□ 사건 개요

○ 본건은 「'15.경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 선정, 이익 분배 등에 있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4,895억 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민간사업자와 성남시 관계자 등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 '21. 8.경부터 다수의 언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연이어 보도되었고, '21. 9.경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다수의 고소·고발장과 진정서가 접수되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수사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정민용과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21. 10.경부터 '22. 5.경까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로 순차 기소하였습니다.

○ 이후 '22. 5. 일부 검찰 고위간부 등 인사이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제4차장검사가 변경되었고, '22. 7. 검찰 중간간부 인사이동으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반부패수사1부장(반부패·강력수사1부장에서 명칭 변경), 반부패수사3부장(경제범죄형사부장에서 명칭 변경)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 변경 현황]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기소현황
이정수 검사장 ('21. 6.~'22. 5.)	4차장 **김태훈**('21. 7.~'22. 5.) 반부패1부장 **정용환**('21. 7.~'22. 7.)	'22. 1. 28. 김만배 기소 '22. 4. 4. 남욱, 유동규 기소 '22. 5. 16. 김만배 기소
	4차장 **김태훈**('21. 7.~'22. 5.) 경제범죄형사부장 **유경필**('21. 7.~'22. 2.)	'21. 10. 21. 유동규 기소 '21. 11. 1. 유동규 기소 '21. 11. 22. 김만배, 남욱, 정영학 기소 '21. 12. 21. 정민용 기소
송경호 검사장 ('22. 5.~'23. 9.)	4차장 **고형곤**('22. 5.~'23. 9.) 반부패1부장 **엄희준**('22. 7.~'23. 9.)	'22. 12. 9. 정진상·유동규 기소
	4차장 **고형곤**('22. 5.~'23. 9.) 반부패3부장 **강백신**('22. 7.~'23. 9.)	'23. 1. 12. 유동규·정민용·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23. 3. 22. 이재명·정진상 기소(수사는 반3부, 기소는 반1부)

○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23. 1.경 「유동규와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하여, '14. 8.경부터 비밀의 사전 누설을 통하여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용적률 등을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여 합계 7,88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 그 이후 유동규 등과 민간사업자들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 대한 공모 혐의 관련 이재명 前성남시장과 정진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재명 前성남시장에 대하여는 본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을 병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고, '23. 3. 이재명 前성남시장과 정진상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한편, 유동규 등과 민간사업자들에 대하여는 ’25. 10. 31. 1심에서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까지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부분은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액,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가 선고되었고,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분은 해당 내용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비밀 이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동규 등과 민간사업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변론이 분리되어 기일이 추정된 상태이고, 정진상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 보다 상세한 수사 경과와 재판 경과는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 경과

○ ’21. 9. 23. 고발장 접수[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등]

○ ’21. 9. 26. 정영학 중앙지검에 녹음파일 제출

○ ’21. 10. 21. 유동규 구속 기소[특가법위반(뇌물) 등]

○ ’21. 11. 1. 유동규 불구속 기소[특경법위반(배임) 등]

○ ’21. 11. 22. 김만배, 남욱 구속 기소[특경법위반(배임) 등], 정영학 불구속 기소[특경법위반(배임)]

○ ’21. 12. 21. 정민용 불구속 기소[특경법위반(배임) 등]

○ ’22. 1. 28. 김만배 불구속 기소[청탁금지법위반]

○ ’22. 4. 4. 남욱 불구속 기소[특경법위반(횡령) 등]

○ ’22. 4. 4. 유동규 불구속 기소[증거인멸교사]

○ ’22. 5. 16. 김만배 불구속 기소[특경법위반(횡령)]

○ ’22. 12. 9. 정진상 구속 기소[특가법위반(뇌물) 등], 유동규 불구속 기소[뇌물공여 등]

○ ’23. 1. 12. 유동규, 정민용, 김만배, 남욱, 정영학 불구속 기소[이해충돌방지법위반]

○ ’23. 2. 16.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 ’23. 2. 2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 ’23. 3. 22. 이재명, 정진상 불구속 기소[특경법위반(배임) 등]

※ 이재명의 위례, 성남FC, 정진상의 성남FC 부분도 함께 기소

□ 재판 경과

○ ’25. 10. 31. 서울중앙지법,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1심 선고

- 유동규 :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 810,000,000원, 일부 무죄
- 김만배 : 징역 8년, 추징 42,801,650,000원, 일부 무죄
- 남욱 : 징역 4년, 일부 무죄
- 정영학 : 징역 5년, 일부 무죄
- 정민용 :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 3,722,000,000원, 일부 무죄

※ 피고인들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

※ 검찰 항소 포기

○ ’23. 5.～’26. 3. 서울중앙지법, 정진상 1심 진행 중

※ 서울중앙지법 ’25. 6. 이재명 부분 분리 및 추정

Ⅱ 위례 사건

□ 사건 개요

○ ’21. 9.경 대장동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정영학이 제출한 녹취파일 및 유동규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위례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수사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주지형과 민간사업자인 남욱, 정영학, 정재창이 ’13. 7.경 위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동규가 취득한 성남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하여 남욱 등의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14. 8.~’18. 1.경 남욱 등이 시행이익 42억 원, 호반건설이 배당이익 169억 원 상당을 각 취득하였다」는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로 먼저 기소하였습니다.

○ 그 이후 위 혐의 관련 정진상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 정진상을 구속 기소하였고, 이재명 前성남시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본건,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유동규, 주지형과 민간사업자들에 대하여는 ’26. 1. 28. 1심에서 비밀 이용과 재산상 이득 취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기일이 추정된 상태이고, 정진상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 중입니다.

○ 보다 상세한 수사 경과와 재판 경과는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 경과

○ ’21. 9. 26. 정영학 중앙지검에 녹음파일 제출

○ ’22. 8. 26. 유동규, 주지형, 남욱, 정영학, 정재창 인지

※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정영학이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위례 관련 비리 혐의도 확인되어 수사 착수

○ ’22. 9. 26. 유동규, 주지형, 남욱, 정영학, 정재창 불구속 기소

○ ’22. 11. 19. 정진상 구속 기소

○ ’23. 2. 16.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 ’23. 2. 2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 ’23. 3. 22.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재판 경과

○ ’26. 1. 28. 유동규, 주지형, 남욱, 정영학, 정재창 무죄 선고

※ 검찰 항소 포기

○ ’26. 3. 25. 이재명·정진상 사건 제91회 공판기일 진행

※ ’25. 6. 10. 이재명 사건 분리 및 추정, 정진상 부분만 재판 진행

Ⅲ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 사건 개요

○ ’21. 9.경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할 때 조우형(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을 봐줬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 기사가 불거지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위 의혹의 사실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 그와 같은 상황에서, ’21. 9. 15. 김만배는 신학림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이 조우형을 봐줬다. 이재명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이 대선 3일 전인 ’22. 3. 6.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를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김만배의 인터뷰가 허위였고, 그 허위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 금품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후, 본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후, 검찰은 김만배와 신학림 사이의 금품거래 명목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본건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만배, 신학림을 비롯하여, 기자, 언론사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 [김만배, 신학림, 한상진, 김용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① 김만배가 신학림 등에게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보도해달라고 하고, ② 김만배와 신학림은 그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았으며, ③ 위 1억 6,500만 원을 책자 매매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고, ④ 뉴스타파(대표 김용진, 기자 한상진)는 신학림으로부터 받은 김만배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위 허위사실과 같은 내용을 보도

○ [봉지욱, 허재현, 송평수] ① 봉지욱은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처럼 JTBC를 통해 허위보도하고, 그로 인하여 JTBC의 공정·진실보도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② 송평수는 허재현에게 이철수의 인터뷰 녹취록을 내용을 마치 윤석열이 조우형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허재현에게 전달하고, 허재현은 리포액트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으로 보도

○ 보다 상세한 수사 경과와 재판 경과는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 경과

○ ’23. 8. 29. 김만배, 신학림의 배임수・증재죄, 청탁금지법위반죄 등 인지

○ ’23. 9. 12. 김만배, 신학림, 한상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인지

○ ’23. 10.～12. 허재현, 김용진, 송평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인지

○ ’24. 6. 17. 김만배, 신학림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인지

○ ’24. 7. 8.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김용진・한상진 불구속 기소

○ ’24. 8. 8. 봉지욱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인지

○ ’24. 8. 13. 봉지욱・송평수・허재현 불구속 기소

□ 재판 경과

[2024고합751, 피고인 김만배, 신학림, 한상진, 김용진]

○ ’24. 7. 31.～9. 2. 제1～3회 공판준비기일

○ ’24. 9.～’26. 3. 제1～17회 공판기일 진행

※ 피고인 김만배, 신학림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24. 11. 20.)

[2024고합918, 피고인 봉지욱, 송평수, 허재현]

○ ’25. 3. 31.～7. 7. 제1～3회 공판준비기일

○ ’25. 8.～’26. 3. 제1～5회 공판기일 진행

Ⅳ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 사건]

□ 사건 개요

○ 본건은 「김용이 ’13.~’14.경 유동규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1. 4.~8.경 유동규, 정민용과 함께 남욱으로부터 정치자금 합계 8억 4,7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유동규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22. 10.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김용을 체포한 후 ’22. 11. 김용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유동규, 정민용, 남욱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 외에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로 ’22. 12. 김용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은 ’23. 11. 30.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김용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후 쌍방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은 ’25. 2. 6. 1심과 마찬가지로 김용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보다 상세한 수사 경과와 재판 경과는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 경과

○ ’22. 10. 19. 김용 체포, 김용·정민용 주거 압수수색

○ ’22. 10. 21. 김용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 청구

○ ’22. 10. 22. 구속영장 발부

○ ’22. 10. 24. 민주연구원 등 압수수색

○ ’22. 11. 8.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김용 구속기소, 유동규, 정민용, 남욱 불구속 기소

○ ’22. 12. 27. 김용 특가법위반(뇌물) 불구속 기소

□ 재판 경과

○ ’22. 12.～’23. 9. 총 3회 공판준비기일 및 총 22회 공판기일 진행

○ ’23. 11. 30. 1심 선고

※ ① 김용 :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이유 무죄
② 남욱 : 징역 8월, 이유 무죄 ③ 유동규·정민용 : 무죄

○ ’24. 2.～11. 총 7회 항소심 공판기일 진행

○ ’25. 2. 6. 2심 선고

※ 1심 선고형 유지 / 피고인 김용 법정구속

○ ’25. 2. 10.～13. 검찰 및 피고인 김용 각 상고 제기

※ ’25. 8. 19. 김용에 대한 보석 인용으로 석방

[재판 중 위증 및 위증교사 사건]

□ 사건 개요

○ 본건은 「김용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김용의 측근인 박지민, 서은주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에게 ‘김용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일시에 김용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이홍우는 위 교사 내용대로 허위 증언을 하며 이에 부합하는 허위 휴대폰 일정표 사진을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이 사건 수사는 ’23. 5. 4. 이홍우가 법정에서 「’21. 5. 3. 김용을 만난 사실을 표시한 일정표가 기재된 휴대폰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개시되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위증 범행이 박지민, 서은주의 교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한 후 박지민, 서은주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4. 1. 15. 발부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24. 2. 박지민과 서은주를 구속 기소, 이홍우를 불구속 기소하였고, 1심에서 13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으며 ’26. 5. 13.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수사 경과와 재판 경과는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 경과

○ ’23. 5. 4. 이홍우, 김용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증언

○ ’23. 5. 11. 이홍우 주거지 압수수색(재판부 직권 발부)

○ ’23. 6. 및 8. 이홍우, 김용 변호인 주거지 등 압수수색

○ ’23. 9. 1. 이홍우, 구속영장 기각

○ ’23. 11. 30. 김용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 ’24. 1. 15. 박지민, 서은주 구속영장 발부

○ ’24. 2. 1. 박지민, 서은주 구속 기소, 이홍우 불구속 기소

□ 재판 경과

○ ’24. 2.~ 제1~12회 공판기일 진행

○ ’26. 2. 11. 변론종결

※ ’24. 7. 19. 박지민, 서은주 보석 허가로 석방

○ ’26. 5. 13. 1심 판결 선고 예정

Ⅴ 위증교사 사건

□ 사건 개요

○ 본건은 「前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19. 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이재명 前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고, 이를 이재명 前경기도지사가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 수사요청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송치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3. 2. 김진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압수한 김진성의 휴대전화에서 이재명 前경기도지사와 김진성 사이에 ’19. 2.경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의 증언과 관련된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23. 3.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김진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23. 3.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23. 8. 이재명 前경기도지사를 소환 조사한 이후 본건, 백현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23. 9.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23. 10. 이재명 前경기도지사와 김진성을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24. 11.경 1심 법원은 김진성의 위증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재명 前경기도지사에 대하여는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으로 현재 공판기일은 추정된 상태입니다.

○ 보다 상세한 수사 경과와 재판 경과는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 경과

○	’23. 2. 7.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중 김진성의 휴대전화 압수
○	’23. 3. 17.	김진성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언 관련 통화녹음 재압수
○	’23. 3. 27.	김진성 위증 등 혐의 구속영장 법원 기각
○	’23. 9. 18.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
○	’23. 9. 26.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 ’23. 10. 16. 이재명, 김진성 위증교사 등 불구속 기소

□ 재판 경과

○ ’23. 11.~12. 1심, 제1~2회 공판준비기일 진행

○ ’24. 1.~9. 1심, 제1~9회 공판기일 진행

○ ’24. 11. 25. 1심 판결 선고

※ 이재명 : 무죄 / 김진성 : 벌금 500만 원, 일부 증언 이유무죄

○ ’24. 11. 29. 검찰 항소제기

○ ’25. 3.~4. 항소심, 제1~2회 공판준비기일 진행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2심 공판기일 추정(김진성도 함께 추정)

Ⅵ 성남FC 사건

□ 사건 개요

○ 이 사건은 「성남시가 ’13. 말경 성남FC를 인수한 뒤 ’14.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14. 9.경부터 ’18. 3.경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업체로 하여금 합계 133억 5,000만 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재명 前성남시장 등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 ’18.경 성남시장 선거 낙선자의 고발로 시작되어 분당서에서 불송치결정 되었으나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계속되었고, ’22. 9.경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두산건설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23. 2. 이재명 前성남시장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3. 2. 이재명 前성남시장에 대하여 본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고, ’23. 3. 이재명 前성남시장과 정진상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변론이 분리되어 기일이 추정된 상태이고, 정진상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나, 위례, 대장동 등 사건 심리가 먼저 진행되어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 보다 상세한 수사 경과와 재판 경과는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 경과

○ ’18. 6. 장영하 고발

○ ’21. 9. 분당서, 불송치결정

○ ’22. 2. 성남지청, 보완수사요구

○ ’23. 2. 15. 성남지청, 이재명의 성남FC 사건 중앙지검 이송

○ ’23. 2. 16.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 ’23. 2. 2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 ’23. 3. 22. 이재명, 정진상의 대장동・성남FC 사건, 이재명의 위례 사건 불구속 기소

※ 성남FC 사건 관련, 이재명・정진상은 중앙지법에, 이재명·정진상의 공범(성남시 공무원, 성남FC 관계자), 공여자(두산・네이버 관련자)는 성남지원에 기소

□ 재판 경과

○ ’23. 5. 11. 성남FC 사건 제1회 공판준비기일 진행

○ ’23. 5.～’26. 3. 총 90회 공판기일 진행

※ 위례・대장동 사건에 대해 공판기일 진행하였고, ’25. 6. 10. 이재명 사건 분리하여 현재 추정 중

7) 수원지방검찰청(보고내용)

○ 수원지검은 '22. 10. 4. 경기남부청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실소유자(김만배)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 前 성남시의회 의원(강한구)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 등 사건을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22. 10. 5. 관련 사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였음

※ '26. 3. 24.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

범죄사실 요지

▶ **(강한구)** 김만배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한 후, 김만배로부터 '13. 3.경, '14. 5.경, '19. 10.경 및 '20. 3.경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7,500만 원**을 수수 **[부정처사후수뢰]**

* 사경은 7,000만 원 수수 부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로 의율 송치하고, 2억 500만 원 수수 부분을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의율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부정처사후수뢰죄 한 개의 죄명으로 전부 의율 및 불기소

▶ **(김만배)** 위와 같이 강한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9. 10.경 및 '20. 3.경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뇌물공여]**

* 김만배가 강한구에게 '13. 3.경 및 '14. 5.경 합계 7,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부분은 뇌물공여 공소시효 도과하여 송치되지 아니함

불기소 이유 요지

▶ 피의자들이 일치하여 **대여금 명목**의 금원 교부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조례안 가결 행위를 부정한 처사라고 보기 어려움**

○ 수원지검은 또한 '22. 11. 25. 경기남부청으로부터 위 화천대유 실소유자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사건, 화천대유 실소유자가 일하던 언론사(머니투데이)의 회장(홍선근)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22. 11. 29. 관련 사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였음

※ '2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홍성근 및 김만배에 대하여 각각 벌금 1,500만 원 선고되어 '25. 11. 21. 항소심 확정

범죄사실 요지

▶ **(홍선근)** 언론사 임직원으로, 김만배로부터 연이율 1.5%로 50억 원을 차용하고 '20. 1. 10. 원금만 변제하여 이자액 14,589,040원 상당 수수 **[청탁금지법위반]**

▶ **(김만배)** 홍선근에게 위와 같이 이자를 면제해주어 동 금액 상당 이익 제공**[청탁금지법위반]**

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보고내용)

Ⅰ 성남FC 사건

□ 수사 배경

○ 2017. 10.경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소재 비영리 사단법인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저소득층 부채탕감'이라는 설립 목적과 무관한 성남FC에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이후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現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기인 '15년~'16년경 성남시가 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2018. 6. 바른미래당 측 고발로 수사 개시됨

□ 수사 경과

○ 최초 고발장은 2018. 6. 당청에 접수되어 분당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고, 분당경찰서는 2021. 9. 불송치결정함

※ 고발인 : 장영하[제7회 지방선거 성남시장 낙선자(바른미래당)]

- 최초 불송치결정의 주된 이유는 직무상 행위와 성남FC 후원 간 대가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음 (이는 성남시와 기업 사이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측면)

○ 이후 이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우리 청에 송치되었고, 기록 검토 결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분당경찰서에 관련 자료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완수사요구

○ 분당경찰서로부터 사건 이첩을 받은 경기남부청은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 후 2022. 9. 13.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에 대하여는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송치하였음

○ 이후 당청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① 2022. 9. 30. 두산건설 관련자 2명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하고, ② 2023. 3. 22. 네이버·차병원 등 관련자 7명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음(이재명, 정진상은 같은 날 중앙지검에서 기소)

- 피고인 총 7명 : 김경수(前 성남시 공무원), 이재륜(성남시 공무원), 이석훈(前 성남FC 대표), 이병화(前 두산건설 대표), 이재경(前 두산그룹 부회장), 김진희(前 네이버 I&S 대표), 김상헌(前 네이버 대표)

- ※ 구체적인 공소사실 요지는 아래 표와 같음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네이버 관련] 수뢰자(이석훈) 증뢰자(김진희·김상헌) ※ 중앙지검(이재명, 정진상)에서는 '14년 50억 원 요구 부분도 기소	① '15.~'16. 네이버의 정자동 부지 신사옥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대가로 성남FC에 **40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②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지급받는 것임에도 희망살림을 경유하여 지급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을 가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두산건설 관련] 수뢰자(김경수·이재륜·이석훈) 증뢰자(이병화, 이재경)	'16.~'18. 두산건설 소유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성남FC에 **55억 원을 지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차병원 관련] 수뢰자(김경수·이재륜·이석훈) ※ 증뢰자(차광렬)는 불기소 (시효도과, 공소권 없음)	'15. 성광의료재단 소유 야탑동 부지 용적률 상향 등 대가로 성남FC에 **33억 원을 지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이재명 후원 관련(확정)**]** 박재일(前 성남FC 사무국장)	'17. 2. 성남FC 소속 부하직원 12명이 135만 원을 이재명 후원회에 납부 **[정치자금법위반]** ※ 해당 사건은 2025. 1. 23. 유죄 확정(벌금 300만)

○ 총 6개 업체 중 기소된 3개 업체[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및 관련 사건 등 잔여사건은 현재 우리 청에서 계속 수사 중임

- ① 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관련 제3자뇌물 수수 및 공여자[이재명, 김주하·이경섭(각 前 농협은행장), 박응한(前 알파돔시티 대표), 정지선(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② 차병원 관련 수뢰자 공범(황성택), ③ 네이버 관련 뇌물공여 공범[이해진(네이버 의장)·제윤경(희망살림 상임이사, 前 국회의원)] 및 업무상배임[이해진·김진희(네이버 前 대표)·김상헌(네이버 前 대표)] 사건 등

□ 재판 경과

○ 성남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은 2023. 5.부터 2026. 4. 6.까지 공판준비기일 4회, 공판기일 33회가 진행되었음

○ 한편, 2024. 11. ~ 2025. 7. 재판장 기피신청 등으로 소송진행이 일시 정지된 바 있음

- 재판장이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한 수사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이의신청 및 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였음 (이의신청과 기피신청으로 다투었으나 불복절차 포함 모두 기각)

9)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가) 보고내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 위원회 : 위원장(호선, 정무직공무원), 부위원장·상임위원(호선), 비상임위원 6인

○ 사무처 : 2실, 4국, 1센터, 1단, 27팀, 5지역사무소

2 설치 목적 및 주요 직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조

○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보장

○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인원 현황

구 분 \ 직급별		계	사무총장	1급	2급	3급	4급-7급
합계	정 원	205	1	2	7	27	168
	현 원	201	-	2	6	26	167

※ 사무처 일반직 정·현원 기준(사무총장 포함)

4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기금)	**33,630**	**34,751**	**1,121**	**3.3**
인건비	21,468	22,047	579	2.7
경상비	4,335	4,730	395	9.1
방송심의 활동	4,577	4,698	121	2.6
통신심의 활동	3,250	3,276	26	0.8
심의위원장 인건비	-	**172**	-	-

※ 위원회 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 심의위원장 인건비: 일반회계

Ⅱ. 민원 접수 관련

민원사주 관련 민원 현황

□ 감사원 감사 대상 민원 내역

○ ‘류희림 민원사주’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관련 수사 또는 감사 등을 통해 관련 민원의 범주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25. 3. 13.)에 따라 감사원이 실지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26. 1. 22.)한 감사 보고서에서 판단의 전제 사실관계로 원용한 민원 내역(총 157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관련 민원 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 감사원은 실지감사 과정에서,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보도한 방송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과징금’을 심의·의결한 총 6개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 148건과 함께 민원 취하**로 종결된 민원 9건에 대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음.

※ KBS-1TV ‘KBS 뉴스9’, MBC-TV ‘MBC 뉴스데스크’, MBC-TV ‘PD수첩’, JTBC ‘뉴스룸(’22. 2. 21. 및 2. 28. 방송분)’, JTBC ‘뉴스룸(’22. 3. 7. 방송분)’, YTN-TV ‘뉴스가 있는 저녁’

※※ 총 3인의 민원인이 각 3건의 민원을 신청한 후 심의절차 개시 전 취하를 요청한 건

Ⅲ. 방송 심의 관련

정권 비판 방송에 대한 과잉심의

□ 류희림 방심위 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부정적으로 다룬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심의 진행한 결과,

○ 지상파방송 13건,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26건에 대한 심의·의결하였으며,

- 과징금 부과 6건, 제재조치 7건, 행정지도 13건, 문제없음 13건으로 의결

※ 과징금 부과 6건에 대한 소송결과,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이 중 4건은 패소가 확정되었으며, 2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

<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심의현황 >

의결현황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총계
		KBS	MBC	SBS	YTN-FM	TBS-FM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과징금		1	2	-	-	-	-	2	-	-	1	-	6
제재조치	관계자 징계	-	-	-	-	1	-	-	-	-	-	-	1
	경고	1	-	-	-	-	-	-	-	-	-	-	1
	주의	-	1	-	2	2	-	-	-	-	-	-	5
행정지도	권고	1	-	-	-	-	1	1	3	2	-	4	12
	의견제시	-	-	1	-	-	-	-	-	-	-	-	1
문제없음		-	-	1	-	-	-	-	2	2	1	7	13
총계		3	3	2	2	3	1	3	5	4	2	11	39

Ⅳ. 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

□ 개요 및 결과

○ 국회 감사요구('25.3.13.)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실지감사 '25.6.30.~7.18. / 감사반원 10명) 하였고, 감사원은 2026년 2월 4일 위원회에 감사결과를 최종 통지함.

	국회 감사요구 사항	감사결과	조치할 사항
1	민원사주 의혹	정황은 확인되나, 관련 진술이나 물적증거 등이 없어 단정 곤란	-
2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	아들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확인	(통보) 관할법원에 과태료 통보
3	국회 거짓 증언 반복 및 위증 교사 의혹	동생 민원 접수 사실을 보고 받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한 사실 확인, 직원에 대한 위증 교사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통보)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비위사실 통보 (2번 비위사실 포함)
4	민원사주 의혹 등에 대한 부실 자체감사 의혹	증거자료 확보 등 자체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 확인	(주의) 관련자 2인에 대한 주의 조치
5	제보자 색출 및 인사 불이익 등 보복행위 의혹	물적증거나 위법성 확인 불가	-

□ 조치할 사항에 대한 처리 (※후속 행정처리 절차)

○ 위원장 임명등 위원회 구성 완료 후 ▲ 관할 법원에 대한 과태료 통보, ▲ 인사혁신처 비위사실 통보, ▲ 관련자 2인에 대한 주의 조치(공문발송) 할 계획임.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 관련 경과 사항

◈ 주요 경과 사항

▶ ('23.12.23.) 방심위 직원(비실명 대리신고), '류희림 전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국민권익위 신고

▶ ('24.7.23.)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 위원회 송부

▶ ('25.2.7.) 위원회, '해당 신고사건 송부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 통보

① 조사결과
피신고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특정할 수 없고, 피신고자, 참고인들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② 행정상 조치사항
피신고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24조(종결처리 등)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법 위반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권익위에 이 조사결과를 통보함

▶ ('25.3.13.) 국회, 감사원에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 등 감사 요구

<감사요구사항> ▲민원사주,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 ▲국회 위증 및 위증 교사, ▲부실 자체 감사 의혹, ▲인사 불이익 등

▶ ('25.3.13.) 국민권익위, '신고사건 조사결과 재조사 요구' 위원회 통보

▶ ('25.3.18.) 위원회, '재조사 요구에 대한 의견 요청' 국민권익위 송부

※ 동일 신고사건에 대해 국회 의결이 이루어져 감사원 감사와 기간이 중복되는 점, 감사원 감사결과를 존중해야하는 점, 감사원 피감사 대상에 위원회 자체 감사가 포함되어 정상적인 재조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 요구에 따른 감사실시를 '보류'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재조사 감사 실시 여부'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국민권익위 의견을 요청

▶ ('25.3.25.) 국민권익위,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위원회 송부

※ 보류 조치 등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조사 요구 기간인 60일 도과할 경우 연장기간 및 사유 통보 요청

▶ ('25.4.3.) 위원회, 이해충돌위반 신고사건 재조사 실시 계획 ('25.4.3.~'25.5.12.)

※ 동일 신고 사건에 대해 국회 감사원 감사 의결(2025.3.13.) 및 국민권익위원회 재신고 사건에 대한 감사원 이첩(2025.4.21.)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원 감사와 감사내용 및 기간 등이 중복되고, 감사원 감사에 적극적 협조를 수행하여야 함 등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26.3.10.)

▶ ('26.2.4.)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 위원회 통보

▶ ('26.3.5.) 위원회, '감사원 감사결과 및 이행계획' 국민권익위 송부

<이행계획 내용> 현재 최종 결재권자인 위원장이 부재중인 상황으로 위원회 구성 완료 후 관할 법원에 과태료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임.

<붙임>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청부민원 의혹 사건 관련 민원 내역

※ '26. 1. 22. 발표 감사원 감사 관련, 실지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측 요구 조건에 따라 제출한 민원 내역 기준, 총 157건(취하 : 9건, 과징금 부과 : 148건 / 세부 내역의 경우, 오타, 오기 등 포함 민원인이 직접 기재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연번	신청 일시	단체/개인	프로그램명	방송 일시	민원 제목	민원 내용	처리결과 (심의결과)
1	2023-09-04 17:38:21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3-09-04 19:40	MBC, 2022년 3월 7일 저녁 8시 뉴스데스크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공정성및객관성위반으로판단됨)	취하
2	2023-09-04 17:55:12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50	Jtbc, 2022년 2월 21일, 2월 28일 19시 30분 뉴스룸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전달받은당시윤석열후보와관련된가짜뉴스를마치사실인냥보도한데대해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공정성및객관성위반으로판단됨)	취하
3	2023-09-04 20:08:33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가짜뉴스 심의	지난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윤석렬후보관련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것과 관련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해주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4	2023-09-04 20:29:31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뉴스타파 가짜뉴스 심의요청	2022년 대선전 뉴스타파와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간 가짜인터뷰를 지상파에서 사실인양 보도함 이제라도올바른심의를요청함	과징금 부과
5	2023-09-	개인	MBC 뉴스데	2022-03-	뉴스타파 가짜인터	2022년 지난 대선 때 뉴스타파와 전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간의	과징금 부과

	04 20:37 :31		스크	07 19:40 :00	뷰 지상파 방송이유	가짜인터뷰를 mbc에서 왜 사실인것마냥 보도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필요함	
6	2023 -09- 04 20:48 :23	개인	MBC 뉴스데 스크	2022 -03- 07 19:40 :00	지난대선 때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의 가짜뉴스 전파	지난 대선 때 뉴스타파와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가짜 인터뷰를 mbc가 마치 사실인양 방송함. 지금이라도 올바른 심의필요함.	과징금 부과
7	2023 -09- 04 20:54 :13	개인	MBC 뉴스데 스크	2022 -03- 04 19:40 :00	정확한 보도를 원합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 방심위가 공정하고 정확한 그리고 진실에 위배되지 않는 심의를 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징금 부과
8	2023 -09- 04 21:02 :18	개인	JTBC 뉴스룸	2022 -02- 21 19:00 :00	정확한 보도를 원합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 방심위가 공정하고 정확한 그리고 진실에 위배되지 않는 심의를 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징금 부과
9	2023 -09- 04 21:04 :40	개인	JTBC 뉴스룸	2022 -02- 28 19:30 :00	정확한 내용을 원합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 방심위가 공정하고 정확한 그리고 진실에 위배되지 않는 심의를 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징금 부과
10	2023 -09- 04 21:18 :23	개인	JTBC 뉴스룸	2022 -02- 28 19:30 :00	2022년 대선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선당시 뉴스타파가 전언론 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전달받은(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사실인것으로 보도한데 대하여 방심위가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11	2023 -09-	개인	MBC 뉴스데	2022 -03-	가짜뉴스 보도 건	안녕하세요. 작년이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과징금 부과

	04 21:23 :59		스크	07 19:40 :00	심의해 주세요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mbc뉴스에서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12	2023 -09- 04 21:27 :13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 -03- 07 21:00 :00	Kbs 뉴스 심의바랍 나다.	작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kbs에서 보도한 내용 관련입니다.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13	2023 -09- 04 21:32 :37	개인	JTBC 뉴스룸	2022 -02- 21 19:00 :00	Jtbc뉴스룸 관련 건	지난 2022년 jtbc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뉴스룸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14	2023 -09- 04 21:35 :26	개인	JTBC 뉴스룸	2022 -02- 28 19:30 :00	JTBC 뉴스룸 심의 바랍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jtbc뉴스룸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했습니다.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15	2023 -09- 04 21:42 :37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 -03- 07 21:00 :00	2022년 대선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당시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에게서 받은 가짜뉴스(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진실한 사실로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철저히 심의를 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16	2023 -09- 04 21:43 :38	개인	MBC 뉴스데 스크	2022 -03- 07 19:40 :00	2022 대선 윤석열 후보에 관한 가짜뉴스 심의	2022년 대선 전 뉴스타파가 신학림씨로부터 전달 받은 윤석열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에 대해 방심위가 올바른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징금 부과

					요청		
17	2023-09-04 21:49:50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2022 윤석열 후보 관련 가짜뉴스 심의 요청	2022년 대선 전 뉴스타파가 신학림씨로부터 전달 받은 윤석열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방심위가 올바른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징금 부과
18	2023-09-04 21:52:03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8 19:30:00	2022 대선 윤석열 후보 관련 가짜뉴스 심의 요청	2022년 대선 전 뉴스타파가 신학림씨로부터 전달 받은 윤석열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에 대해 방심위가 올바른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징금 부과
19	2023-09-04 21:54:29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방심위 방송심의 요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20	2023-09-04 21:59:36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03-07 21:00:00	방심위 방송심의 요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21	2023-09-04 22:01:14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2022년 대선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때 뉴스타파가 신학림씨(전언론노조위원장)로부터 받은 가짜뉴스(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일방적으로 사실인것처럼 보도한데 대하여 방심위가 원칙에 맞게 철저히 심의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가짜뉴스가판을치고있는작금의현실이지만대선때와같은중요한시기에검증되지도않은가짜뉴스를일방적을퍼뜨린다면그위험성이얼마나클지는가늠하기가힘듭니다 방심위가존재하는이유를보여주시기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22	2023-09-04 22:01:37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가짜뉴스를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	당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과징금 부과

					다.	보도를 한것에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	2023-09-04 22:05:50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가짜뉴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24	2023-09-04 22:06:56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8 19:30:00	방심위 방송심의 요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언론 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25	2023-09-04 22:07:47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03-07 21:00:00	가짜뉴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26	2023-09-04 22:08:06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03-07 21:00:00	가짜뉴스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22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검증없이 사실인냥 보도를 한것에 대해 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27	2023-09-04 22:09:13	개인	뉴스데스크	2022-03-07 20:00:00	불공정 편파보도	작년 대선 직전(2022년) 전언론 노조위원장 신학림씨로부터 파생된 윤석렬대통령 후보에 대한 거짓 정보를 검증과 여과없이 사실로 보도한 이 매체에 대한 심의를 방심위에서 철저히 해주기 바람.	과징금 부과
28	2023-09-04 22:10:06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가짜뉴스를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22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검증없이 사실인냥 보도를 한것에 대해 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29	2023-09-	개인	뉴스룸	2022-02-	가짜뉴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과징금 부과

	04 22:10 :14			21 19:30 :00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30	2023 -09- 04 22:11 :53	개인	JTBC 뉴스룸	2022 -02- 28 19:30 :00	가짜뉴스를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22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검증없이 사실인냥 보도를 한것에 대해 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31	2023 -09- 04 22:12 :05	개인	JTBC 뉴스룸	2022 -02- 28 19:30 :00	가짜뉴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32	2023 -09- 04 22:23 :09	개인	KBS 뉴스9	2022 -03- 07 21:00 :00	불공정 편파보도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윤석렬 후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 언론 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뉴스타파가받은-를 여과검증없이내보낸책임을물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심의를부탁합니다.	과징금 부과
33	2023 -09- 04 22:24 :03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 -03- 07 19:40 :00	뉴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34	2023 -09- 04 22:25 :33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 -03- 07 21:00 :00	뉴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35	2023 -09- 04 22:27 :15	개인	JTBC 뉴스룸	2022 -02- 21 19:00 :00	뉴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과징금 부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36	2023 -09- 04 22:29 :33	개인	뉴스룸	2022 -02- 21 19:30 :00	불공정 편파보도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전 언론 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뉴스타파가 받은 잘못된 정보를 검증여과없이보도한이방송을방심 위가제대로심의할것을부탁합니다.	과징금 부과
37	2023 -09- 04 22:30 :17	개인	JTBC 뉴스룸	2022 -02- 28 19:30 :00	뉴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38	2023 -09- 04 22:32 :50	개인	MBC 뉴스데 스크	2022 -03- 07 19:40 :00	대선 관련 가짜뉴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 를바람.	과징금 부과
39	2023 -09- 04 22:35 :09	개인	뉴스룸	2022 -02- 28 19:30 :00	불공정 편파보도	2022년 대선 직전 전 언론 노조위원장 신학림씨로부터 뉴스타파가 받은 잘못된 정보를 검증여과없이사실로오해하게끔무 책임하게방송한이프로그램에대해 방심위의철저한심의를요청합니다.	과징금 부과
40	2023 -09- 04 22:35 :26	개인	JTBC 뉴스룸	2022 -02- 21 19:00 :00	대선 관련 가짜뉴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 를바람.	과징금 부과
41	2023 -09- 04 22:36 :38	개인	MBC 뉴스데 스크	2022 -03- 07 19:40 :00	가짜뉴스 방송심의 요청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가 前언노련위원장이었던 신학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사실확인조차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엄중하게 심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42	2023-09-04 22:46:05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03-07 21:00:00	가짜뉴스 방송심의 요청임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가 前언노련위원장이었던 신학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사실확인조차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엄중하게 심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43	2023-09-04 22:52:36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가짜뉴스 방송심의 요청입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가 前언노련위원장이었던 신학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사실확인조차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44	2023-09-04 22:57:14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8 19:30:00	가짜뉴스 방송심의 요청입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가 前언노련위원장이었던 신학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사실확인조차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엄중하게 심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45	2023-09-04 22:59:22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방송심의 조사	대선을 앞두고 윤석렬후보에 대해 신학림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한것에 대한 조사가 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지상파 뉴스에서 선거전에 이와같은 편협적인 사실 확인도 안된일을 국민들에게 사실처럼 보도 했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네요	과징금 부과
46	2023-09-04 22:59:34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뉴스타파 거짓 인터뷰	대선을 앞두고 터진 뉴스타파와 전 언론인의 가짜 녹취록을 Mbc가마치사실인것처럼방송해서 시청자를호도했다는언론보도가 많이나오고있어올바른심의가필요함.	과징금 부과
47	2023-09-04	개인	뉴스데스크	2022-03-07	거짓 편파 방송	지난 2022년 대선직전 뉴스타파가 전 언론 노조위원장 신학림씨가 유포한	과징금 부과

	23:15:53			20:00:00		윤석렬후보관련거짓정보를어떠한 조사검증도없이사실처럼보도한것에대한 방심위의심의를요청합니다.	
48	2023-09-04 23:26:28	개인	KBS 뉴스나인	2022-03-07 21:00:00	거짓 편파 방송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전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으로부터 뉴스타파가 입수한 윤석렬후보에대한거짓정보를받아 여과검증없이진실인양방송한사실에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과징금 부과
49	2023-09-04 23:31:03	개인	뉴스룸	2022-02-21 19:30:00	거짓 편파 방송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전언론 노조위원장이던 신학림으로부터 뉴스타파가입수한윤석렬후보에대 한거짓정보를검증도없이진실로 가장하여거짓보도한것에대한심의 를방심위에요청합니다.	과징금 부과
50	2023-09-04 23:36:52	개인	뉴스룸	2022-02-28 19:30:00	거짓 편파 방송	지난 2022 대선 직전 전직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으로부터 뉴스타파가 입수한윤석렬후보에 대한거짓정보를어떤검증도없이진 실인것처럼보도하여유권자의권리를 침해했으므로방심위의철저한심의 를요청합니다.	과징금 부과
51	2023-09-05 01:24:33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22 19:40:00	신학림 씨 관련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일방적으로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사실인것처럼보도한데대해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52	2023-09-05 01:29:29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신학림 씨 관련	지난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	과징금 부과

						를바랍니다. (3월22일방송으로잘못신청했는데, 수정이안되어서3월7일방송분을다 시신청합니다.)	
53	2023 -09- 05 01:31 :50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 -03- 07 21:00 :00	신학림 씨 관련 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신학림씨 로부터일방적으로전달받은 당시윤석열후보와관련된가짜뉴스 를마치사실인것처럼보도한것을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십시 오	과징금 부과
54	2023 -09- 05 08:32 :34	개인	MBC 뉴스데 스크	2022 -03- 07 19:40 :00	민원 신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55	2023 -09- 05 08:34 :19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 -03- 07 21:00 :00	민원 신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56	2023 -09- 05 08:36 :44	개인	JTBC 뉴스룸	2022 -02- 21 19:00 :00	민원 신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57	2023 -09- 05 08:37 :49	개인	JTBC 뉴스룸	2022 -02- 28 19:30 :00	민원 신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58	2023 -09- 05 08:46 :18	개인	뉴스가 있는 저녁	2022 -03- 07 19:00 :00	보도전문 채널 YTN 2022년 3월 7일 변상욱의 뉴스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데 대해	과징금 부과

					있는 저녁	방심위가 제대로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9	2023 -09- 05 08:57 :18	개인	JTBC 뉴스룸	2022 -02- 21 19:00 :00	가짜뉴스 심의	22년 대선당시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던 신학림씨로부터 전달받은 윤석렬후봐 관련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양 그대로 인용보도한 것에 대해 방심위 차원의 제대로된 심의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과징금 부과
60	2023 -09- 05 09:03 :15	개인	뉴스가 있는 저녁	2022 -03- 07 19:00 :00	보도전문 채널 YTN 2022년 3월 7일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61	2023 -09- 05 09:24 :56	개인	뉴스가 있는 저녁	2022 -03- 07 19:00 :00	보도전문 채널 YTN 2022년 3월 7일 뉴스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가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사실인 것 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제대로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있저]김만배녹취파일파문..."특 검추진"vs"녹취허위" - https://naver.me/Ga2C72tY	과징금 부과
62	2023 -09- 05 09:32 :38	개인	뉴스가 있는 저녁	2022 -03- 07 19:00 :00	YTN의 대선 조작 시도 불공정 방송을 엄벌해주 시기 바랍니다.	YTN의 뉴스프로그램 '뉴스가 있는 저녁'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것 처럼 보도했습니다. 대선 수일 전 방송된 이같은 보도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판단입니다. 방심위가 철저히 심의해주셔서 엄벌에 처하기를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63	2023 -09- 05 10:03 :18	개인	뉴스룸	2022 -02- 28 19:30 :00	Jtbc, 2022년 2월 21일, 2월 28일 19시 30분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전달받은당시윤석열후 보와관련된가짜뉴스를마치사실인 냥보도한데대해	취하

					뉴스룸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공정성및객관성위반으로판단됨)	
64	2023-09-05 10:16:19	개인	KBS 뉴스9	2023-09-04 21:00:00	잘못에 대한 사과 없는 방송	언론노조 위원장인 신학림씨가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려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내보낸 것은 mbc와 kbs 였습니다. 그런데김만배의허위인터뷰와관련한뉴스를내보내면서,이에대한사과는없이그사건만을보도하는것은국민을기만하는행위이며,매우편파적인방송이라고생각합니다. 매번민원을넣어도연장되었다는문자만오고,제대로답변을받은적이없습니다. 제발제대로된답변을받고싶습니다. 빠른민원처리부탁드립니다	과징금 부과
65	2023-09-05 11:09:49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50:00	김난배와 신학림의 허위인터뷰 심의 건	위 두사람 가짜인터뷰 뉴스가 허위인지, 그 배경과 배후여부를 정밀 심사하여 진실을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66	2023-09-05 11:34:45	개인	특집 KBS 뉴스9	2022-03-07 21:00:00	가짜뉴스 심의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것 처럼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67	2023-09-05 11:38:51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가짜뉴스 심의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것 처럼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68	2023-09-05 12:05:52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8 19:30:00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 JTBC 심의 요청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었던 신학림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2022년 2월 21일과 28일 JTBC가 마치 사실처럼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해주시기 바람	과징금 부과
69	2023-09-05 12:44:04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심의를 요청합니다	MBC는 지난 2022년 3월 7일 저녁 8 시 뉴스테스크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는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사실인양보도 한것에 대하여 방심의가 제대로된 심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70	2023-09-05 13:40:20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신학림 씨 관련 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신학림씨로부터일방적으로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71	2023-09-05 14:04:24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50:00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 JTBC 심의관련 요청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던 신학림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2022년 2월 21일과 28일 JTBC가 마치 사실처럼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해주기 바람.	과징금 부과
72	2023-09-05 14:07:28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 JTBC 심의 요청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던 신학림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2022년 2월 21일과 28일 JTBC가 마치 사실처럼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해주기 바람.	과징금 부과
73	2023-09-05 14:15:31	단체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MBC-TV <뉴스데스크>('22.3.7. 19:40)	- 김만배-신학림 씨의 녹취 파일 관련 뉴스타파 보도를 4건의 리포트로 연이어 보도하면서 '해당 녹취 파일의 신뢰도가 높다'며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부풀리고, 녹취된 대화 내용에	과징금 부과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공공 환수를 많이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 등을 총 9분 45초 동안 방송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반박은 단 58초만 방송함. -대장동사건이이미언론에보도된후 김만배씨가검찰수사를앞두고지인과허위로대화하며의도적으로작성한녹취파일을대선3일전진보매체가보도한것에대해,공영방송이허위의녹취록을자세히소개해윤석열후보관련의혹을부풀려보도해대선에 영향을미치려함. -특히형사소송법제310조의2는타인으로부터들은내용은증거로할수 없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공영방송이이렇듯김만배씨가조우형씨로부터들었다는'전언'에불과한내용을 조씨에대한팩트체크등최소한의검증도없이방송함. -방송심의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및제2항,제14조(객관성)위반	
74	2023-09-05 14:17:07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심의를 요청합니다	지난 지상파 mbc 2022년 3월7일 저녁 8시 뉴스데스크 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것에 대하여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75	2023-09-05 14:19:28	단체	특집 KBS 뉴스 9	2022-03-07 21:00:00	KBS-1TV <뉴스 9>('22.3. 7. 21:00)	- 김만배-신학림 씨의 녹취 파일 관련 뉴스타파 보도를 소개하면서 "대선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부풀리고, 녹취된 대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드러났다, 그간 녹취록을 신봉하던 국민의힘이 왜 태도를 바꾸냐고 공세로 전환했습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총 1분 55초 동안 방송하고, 국민의힘의 반박은 단	과징금 부과

						30초만 방송함. -대장동사건이이미언론에보도된후 김만배씨가검찰수사를앞두고지인과허위로대화하며의도적으로작성한녹취파일을대선3일전진보매체가보도한것에대해,공영방송이허위의녹취록을자세히소개해윤석열후보관련의혹을부풀려보도해대선에영향을미치려함. -특히형사소송법제310조의2는타인으로부터들은내용은증거로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공영방송이이렇듯김만배씨가조우형씨로부터들었다는'전언'에불과한내용을조씨에대한팩트체크등최소한의검증도없이방송함. -방송심의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및제2항,제14조(객관성)위반	
76	2023-09-05 14:19:48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7:50:00	심의를 요청합니다	지난 케이블 Jtbc 2022년 2월21일. 2월28일 ? 19시30분 시작 뉴스룸에서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것에 대하여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77	2023-09-05 14:22:06	단체	JTBC 뉴스룸	2022-03-07 19:30:00	JTBC <뉴스룸>('22.3.7. 19:30)	- 김만배-신학림 씨의 녹취 파일 관련 뉴스타파 보도를 약 3분 동안 자세히 소개한 반면,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박은 단 15초만 방송함. -대장동사건이이미언론에보도된후 김만배씨가검찰수사를앞두고지인과허위로대화하며의도적으로작성한녹취파일을대선3일전진보매체	과징금 부과

						가보도한것에대해,허위의녹취록을 자세히소개해윤석열후보관련의혹 을부풀려보도해대선에영향을미치 려함. -특히형사소송법제310조의2는타 인으로부터들은내용은증거로할수 없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김만배씨 가조우형씨로부터들었다는'전언' 에불과한내용을조씨에대한팩트체 크등최소한의검증도없이방송함. -방송심의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및제2항,제14조(객관성)위반	
78	2023-09-05 14:27:07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50:00	가짜뉴스 보도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79	2023-09-05 14:35:38	단체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JTBC <뉴스룸 >('22.2.21. 19:30)	- JTBC가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에 담긴 내용이라며, ▲2월 21일에는 브로커 조우형 씨가 '주임검사인 윤석열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잘해줬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2월 28일에도 남욱 변호사가 조 씨로부터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고, 조 씨의 사촌형인 이철수 씨도 '조 씨가 전관인 박영수 변호사를 써서 수사를 안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는 등, -박영수변호사에의해윤석열중수2 과장이조우형씨에게커피를타주고, 부산저축은행사건관련'봐주기수사 '를했다는허위사실을보도함. -특히해당보도를한봉지욱기자가이 후뉴스타파로이직했다는점에서,대 선당시JTBC와뉴스타파의'정치공작 협업'여부에대한조사도필요함. -방송심의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위반	과징금 부과
80	2023-09-05 14:56:19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8 19:30:00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하여 JTBC 심의 요청합니	2022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전달받은 당시 윤선열 대선 후보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방송하였다. 2022년	과징금 부과

					다	2월 21일과 2022년 2월 28일 JTBC가 마치 사실처럼 방송한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빠르고 제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81	2023-09-05 15:03:24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가짜뉴스에 대한 방심위 심의 요청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신학림씨(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일방적인 제보로 가짜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던 mbc 방송사에 대해 방심위의 엄정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과징금 부과
82	2023-09-05 15:15:01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8-07 19:55:00	심의요청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전 어니론노조 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처럼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83	2023-09-05 15:20:31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심의요청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처럼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84	2023-09-05 15:23:34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30:00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 JTBC 심의요청	2159458 분리등록 ※분리등록:민원인이1건의민원을통해동일프로그램의여러회차내용또는복수의프로그램내용등에대해문제제기를하는경우,방송일자별/프로그램별로민원을구분하여별개의민원으로등록	과징금 부과
85	2023-09-05 15:28:26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8 19:50:00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 JTBC 심의관련 요청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던 신학림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2022년 2월 21일과 28일 JTBC가 마치 사실처럼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해주기 바람.	과징금 부과
86	2023-09-05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8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던 신학림 씨로부터	과징금 부과

	15:33:27			19:50:00	JTBC 심의관련 요청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2022년 2월 21일과 28일 JTBC가 마치 사실처럼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해주기 바람.	
87	2023-09-05 15:37:52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8 19:50:00	심의를 요청합니다	지난 케이블 Jtbc 2022년 2월21일. 2월28일 ? 19시30분 시작 뉴스룸에서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것에 대하여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88	2023-09-05 15:38:36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가짜뉴스 보도 관련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마치 사실처럼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89	2023-09-05 15:39:01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 JTBC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신학림씨로부터일방적으로전달받은 당시윤석열후보와관련된가짜뉴스를 2022년2월21일과28일JTBC가마치 사실처럼보도한데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제대로심의해주기바람.	과징금 부과
90	2023-09-05 15:43:17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50:00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하여 JTBC 심의관련 요청합니다	2022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전달받은 당시 윤선열 대선 후보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방송하였다. 2022년 2월 21일과 2022년 2월 28일 JTBC가 마치 사실처럼 방송한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빠르고 제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과징금 부과
91	2023-09-05 16:08:43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신학림발 가짜뉴스 심의바랍니다	2022년 대선 얼마 전에 뉴스타파가 신학림 씨로부터 전달받은 윤석열후보의 가짜뉴스를 마치 시실처럼 보도한것에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심의해주기바람니다.	과징금 부과

92	2023-09-05 16:18:02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심의를 요청합니다	지난 지상파 mbc 2022년 3월7일 저녁 8시 뉴스데스크 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것에 대하여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93	2023-09-05 16:20:31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심의를 요청합니다	지난 케이블 Jtbc 2022년 2월21일. 2월28일 ? 19시30분 시작 뉴스룸에서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것에 대하여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94	2023-09-05 16:26:01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심의를 요청합니다	지난 지상파 mbc 2022년 3월7일 저녁 8시 뉴스데스크 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것에 대하여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95	2023-09-05 16:27:45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심의를 요청합니다	지난 케이블 Jtbc 2022년 2월21일. 2월28일 ? 19시30분 시작 뉴스룸에서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것에 대하여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96	2023-09-05 16:56:28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심의를 요청합니다	지난 지상파 mbc 2022년 3월7일 저녁 8시 뉴스데스크 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과징금 부과

						사실인냥 보도한 것에 대하여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97	2023-09-05 16:58:08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50:00	심의를 요청합니다	지난 케이블 Jtbc 2022년 2월21일. 2월28일 ? 19시30분 시작 뉴스룸에서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것에 대하여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98	2023-09-05 18:40:32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심의를 요청합니다	Mbc는 지난 2022년 3월 7일 오후 8시경 뉴스데스크에서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제대로된겅력한 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취하
99	2023-09-05 18:46:04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50:00	강력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Jtbc는 2022년 2월21일. 과2월28일 ? 19시30분 뉴스룸에서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하여 방심위가 제대로 된 강력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취하
100	2023-09-05 20:02:33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선거 공작 가짜뉴스	2022년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팩트 체크도 하지않고보도한 것에 대한 심의 요청	과징금 부과
101	2023-09-05 20:04:56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03-07 21:00:00	선거 공작 가짜뉴스	2022년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팩트 체크도 하지않고보도한 것에 대한 심의 요청	과징금 부과
102	2023	개인	MBC	2022	가짜뉴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과징금

	-09-05 20:07:02		뉴스데스크	-03-07 19:40:00	심의요청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부과
103	2023-09-05 20:07:38	개인	JTBC 뉴스룸	2022-03-07 19:30:00	선거 공작 가짜뉴스	2022년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팩트 체크도 하지않고보도한 것에 대한 심의 요청	과징금 부과
104	2023-09-05 20:13:52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8 19:30:00	가짜뉴스 심의요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105	2023-09-05 20:32:06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뉴스타파로 받은 가짜뉴스를 사실인냥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8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106	2023-09-05 20:35:29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대통령선거 조작 인터뷰 심의 요청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 인터뷰뉴스를 사실확인 절차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여론을 호도하였기에 방심위의 철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과징금 부과
107	2023-09-05 20:36:38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 JTBC 심의 요청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던 신학림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2022년 2월 21일과 28일 및 3월7일에 "JTBC뉴스룸", "썰전라이브", 일반 "뉴스" 등을	과징금 부과

						통해 마치 사실처럼 JTBC가 보도하였음. 특히가짜뉴스가마치사실인것처럼 뉴스(프로그램)제목을붙이고김모씨의육성을그대로방송에노출함으로써대선을코앞에둔국민들에게큰 혼란을야기하였음. 이에대해심의해줄것을요청함.	
108	2023-09-05 20:40:27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03-07 21:00:00	대통령선거 조작 인터뷰 심의 요청	2022년 대선 3일 전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에게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KBS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서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에 대해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합당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과징금 부과
109	2023-09-05 20:43:46	개인	JTBC 뉴스룸	2022-03-07 19:30:00	작년 대통령선거 가짜뉴스 심의 요청	2022년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독자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않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철저한 심의와 함께 엄격한 제재를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과징금 부과
110	2023-09-06 08:15:59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8 19:50:00	심의를 요청합니다	지난케이블Jtbc2022년2월21일.2월28일？19시30분시작뉴스룸에서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것에 대하여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111	2023-09-06 08:18:22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8 19:50:00	심의를 요청합니다	지난 케이블 Jtbc 2022년 2월21일. 2월28일？ 19시30분 시작 뉴스룸에서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것에 대하여 방심위가제대로된심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112	2023-09-06 08:23:41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8 19:50:00	강력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Jtbc는 2022년 2월21일. 과2월28일? 19시30분 뉴스룸에서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하여 방심위가 제대로 된 강력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취하
113	2023-09-06 08:28:54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8 19:50:00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 JTBC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신학림씨로부터일방적으로전달받은 당시윤석열후보와관련된가짜뉴스를 2022년2월21일과28일JTBC가마치 사실처럼보도한데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제대로심의해주기바람.	과징금 부과
114	2023-09-06 09:18:51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MBC의 신학림의 가짜인터뷰 보도에 대해 엄정한 심의를 해주기바랍니다	소위 공영방송이라 자칭하는 MBC가 지난 2022년 3월 7일자 뉴스데스크에 사실 확인 관계도 없이,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명제에 대한 어떠한 자기 통제도 없이 신학림이라는 사람의 윤석렬 후보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사실인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방심위가 엄정하게 심의를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일을 묵과하고 넘어갈 경우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공장화는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흔들 국기문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징금 부과
115	2023-09-06 09:23:42	개인	특집 KBS 뉴스9	2022-03-07 21:00:00	KBS의 신학림의 가짜인터뷰 보도에 대해 엄정한 심의를 해주기바랍니다	소위 공영방송이라 자칭하는 MBC가 지난 2022년 3월 7일자 뉴스데스크에 사실 확인 관계도 없이,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명제에 대한 어떠한 자기 통제도 없이 신학림이라는 사람의 윤석렬 후보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사실인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방심위가 엄정하게 심의를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일을 묵과하고 넘어갈 경우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공장화는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흔들 국기문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징금 부과
116	2023-09-06 09:26:51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JTBC의 신학림의 가짜인터뷰 보도에	소위 공정방송이라 자칭하는 JTBC가 지난 2022년 3월 7일자 뉴스데스크에 사실 확인 관계도 없이,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명제에 대한 어떠한 자기 통제도	과징금 부과

					대해 엄정한 심의를 해주기바랍니다	없이 신학림이라는 사람의 윤석렬 후보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사실인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방심위가 엄정하게 심의를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일을 묵과하고 넘어갈 경우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공장화는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흔들 국기문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17	2023-09-06 09:45:28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MBC의 신학림 가짜인터뷰의 무책임한 보도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해주기바랍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118	2023-09-06 09:47:31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03-07 21:00:00	KBS의 신학림 가짜인터뷰의 무책임한 보도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해주기바랍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119	2023-09-06 09:50:33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JTBC의 신학림 가짜인터뷰의 무책임한 보도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해주기바랍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120	2023-09-06 11:41:00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심의요청의 건	2022년 대선당시,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윤석열당사후보와관련된 가짜뉴스를마치사실인냥보도한것에대해 방심위가철저히심의를해주시길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121	2023-09-06 12:07:11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뉴스타파의 윤석열 후보 관련 가짜뉴스	뉴스타파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 언론노조위원장인 신학림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보도한 사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과징금 부과

					보도 건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은공정하고정확한정보제공이라는사명을가지고있으며,특히선거와같이국가의민주주의에근간을둔중요한이벤트에서는그책임이더욱높아집니다.가짜뉴스는공정한선거를위협하고,더나아가민주주의를침해하는가능성을내포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러한행위에대한철저한심의와판단이이루어져야하며,그과정에서방심위는객관적이고공정한판단을내려야할의무가있습니다. 가짜뉴스를사실로보도한언론기관이있다면,이는제대로된심의를통해공론화되어야하며필요한경우적절한조치를취해야합니다.이에따라,방심위는해당사안에대해깊이있는조사를통해언론의공정성과정확성이지켜졌는지,또는어떤의도나목적이있었는지를철저히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결론적으로,방심위는윤석열당시후보와관련된가짜뉴스보도사안에대해철저한심의를진행해야하며,이를통해언론의독립성과공정성을지키는바탕을마련해주기를바랍니다.이는단순히한사안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우리사회의민주주의와언론의신뢰성을결정짓는더큰이슈로다루어져야할것입니다.	
122	2023-09-06 12:08:28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03-07 21:00:00	뉴스타파의 윤석열 후보 관련 가짜뉴스 보도 건	뉴스타파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 언론노조위원장인 신학림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보도한 사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은공정하고정확한정보제공이라는사명을가지고있으며,특히선거와같이국가의민주주의에근간을둔중요한이벤트에서는그책임이더욱높아집니다.가짜뉴스는공정한선거를위협하고,더나아가민주주의를침해하는가능성을내포하고있습	과징금 부과

						니다.그렇기때문에이러한행위에대한철저한심의와판단이이루어져야하며,그과정에서방심위는객관적이고공정한판단을내려야할의무가있습니다. 가짜뉴스를사실로보도한언론기관이있다면,이는제대로된심의를통해공론화되어야하며필요한경우적절한조치를취해야합니다.이에따라,방심위는해당사안에대해깊이있는조사를통해언론의공정성과정확성이지켜졌는지,또는어떤의도나목적이있었는지를철저히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결론적으로,방심위는윤석열당시후보와관련된가짜뉴스보도사안에대해철저한심의를진행해야하며,이를통해언론의독립성과공정성을지키는바탕을마련해주기를바랍니다.이는단순히한사안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우리사회의민주주의와언론의신뢰성을결정짓는더큰이슈로다루어져야할것입니다.	
123	2023-09-06 12:09:24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뉴스타파의 윤석열 후보 관련 가짜뉴스 보도 건	뉴스타파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 언론노조위원장인 신학림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보도한 사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은공정하고정확한정보제공이라는사명을가지고있으며,특히선거와같이국가의민주주의에근간을둔중요한이벤트에서는그책임이더욱높아집니다.가짜뉴스는공정한선거를위협하고,더나아가민주주의를침해하는가능성을내포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러한행위에대한철저한심의와판단이이루어져야하며,그과정에서방심위는객관적이고공정한판단을내려야할의무가있습니다. 가짜뉴스를사실로보도한언론기관이있다면,이는제대로된심의를통해	과징금 부과

						공론화되어야하며필요한경우적절한조치를취해야합니다.이에따라,방심위는해당사안에대해깊이있는조사를통해언론의공정성과정확성이지켜졌는지,또는어떤의도나목적이있었는지를철저히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결론적으로,방심위는윤석열당시후보와관련된가짜뉴스보도사안에대해철저한심의를진행해야하며,이를통해언론의독립성과공정성을지키는바탕을마련해주기를바랍니다.이는단순히한사안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우리사회의민주주의와언론의신뢰성을결정짓는더큰이슈로다루어져야할것입니다.	
124	2023-09-06 12:10:05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8 19:30:00	뉴스타파의 윤석열 후보 관련 가짜뉴스 보도 건	뉴스타파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 언론노조위원장인 신학림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보도한 사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은공정하고정확한정보제공이라는사명을가지고있으며,특히선거와같이국가의민주주의에근간을둔중요한이벤트에서는그책임이더욱높아집니다.가짜뉴스는공정한선거를위협하고,더나아가민주주의를침해하는가능성을내포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러한행위에대한철저한심의와판단이이루어져야하며,그과정에서방심위는객관적이고공정한판단을내려야할의무가있습니다. 가짜뉴스를사실로보도한언론기관이있다면,이는제대로된심의를통해공론화되어야하며필요한경우적절한조치를취해야합니다.이에따라,방심위는해당사안에대해깊이있는조사를통해언론의공정성과정확성이지켜졌는지,또는어떤의도나목적이있었는지를철저히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결론적으로,방심위는윤석열당시후보와관련된가짜뉴스보도사안에대해철저한심의를진행해야하며,이를	과징금 부과

						통해언론의독립성과공정성을지키는바탕을마련해주기를바랍니다.이는단순히한사안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우리사회의민주주의와언론의신뢰성을결정짓는더큰이슈로다루어져야할것입니다.	
125	2023-09-06 13:59:13	개인	JTBC 뉴스룸	2022-03-07 19:50:00	신학림 허위보도 관련 JTBC 심의 요청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던 신학림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2022년 2월 21일과 28일 및 3월7일에 "JTBC뉴스룸", "썰전라이브", 일반 "뉴스" 등을 통해 마치 사실처럼 JTBC가 보도하였음. 특히가짜뉴스가마치사실인것처럼 뉴스(프로그램)제목을붙이고김모씨의육성을그대로방송에노출함으로써대선을코앞에둔국민들에게큰 혼란을야기하였음. 이에대해심의해줄것을요청함.	과징금 부과
126	2023-09-06 21:14:14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윤석열 후보 관련 가짜뉴스 보도 심의 요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취하
127	2023-09-06 21:18:32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03-07 21:00:00	윤석열 후보 관련 가짜뉴스 심의 요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취하
128	2023-09-06 21:21:22	개인	JTBC 뉴스룸	2022-03-07 19:30:00	윤석열 후보 관련 가짜뉴스 심의 요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취하

129	2023-09-06 22:04:40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뉴스타파 관련 가짜뉴스 심의 요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시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130	2023-09-06 22:06:13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03-07 21:00:00	뉴스타파 관련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시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131	2023-09-06 22:08:59	개인	jtbc 뉴스룸	2022-03-07 19:30:00	뉴스타파 관련 가짜뉴스 심의 요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시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132	2023-09-07 02:02:12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뉴스타파 관련 가짜뉴스 심의 요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133	2023-09-07 02:04:22	개인	특집 KBS 뉴스 9	2022-03-07 21:00:00	뉴스타파 관련 가짜뉴스 심의 요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134	2023-09-07 02:06:09	개인	JTBC 뉴스룸	2022-03-07 19:30:00	뉴스타파 관련 가짜뉴스 심의 요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과징금 부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35	2023-09-07 09:46:52	개인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뉴스타파 관련 가짜뉴스 심의 요청내용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136	2023-09-07 09:52:10	개인	특집KBS뉴스9	2022-03-07 21:00:00	뉴스타파 관련 가짜뉴스 심의 요청내용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137	2023-09-07 09:56:14	개인	JTBC 뉴스룸	2022-03-07 09:30:00	뉴스타파 관련 가짜뉴스 심의 요청내용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138	2023-09-07 15:39:30	개인	MBC 뉴스데스크	2022-03-07 19:40:00	뉴스타파 공작인터뷰 방송 방심위 방송심의 요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139	2023-09-07 15:43:18	개인	JTBC 뉴스룸	2022-02-21 19:00:00	뉴스타파 공작인터뷰 방송 방심위 방송심의 요청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람	과징금 부과
140	2023-09-08 15:10:02	단체	뉴스가 있는 저녁	2022-03-07 19:00:00	YTN <뉴스가 있는 저녁>('22.3.7.	- 진행자(변상욱)와 박지훈 변호사가 전날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상세히 소개한 후 "(박지훈)이제껏 일각에서 계속	과징금 부과

					19:00)	의혹으로 주장됐던 내용을 확인시킬 수 있는 녹취록, 김만배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상욱)커피 한 잔만 얻어 마시고 간단하게 사건처리를 하고 나왔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일관되게 두 곳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수사를 해 봐야 될 문제인가요?", "(박지훈)중요한 건 김만배, 남욱 그리고 조우형의 사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그것을 짜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이 세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은 커피 마시고 두 번 조사 받으러 오면 끝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건 그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함. -하지만'뉴스타파'보도는대장동사건이이미언론에보도된후김만배씨가검찰수사를앞두고지인과허위로대화하며의도적으로작성한'가짜인터뷰'에불과함에도,공영방송이대선을불과이틀앞둔민감한시기에최소한의팩트체크도하지않은채,'그간의의혹이김만배의입을통해확인됐다'라며해당녹취록내용이사실에부합한다고몰아가며,'대장동의몸통은윤석열'이라는민주당의주장을뒷받침하는일방적대담만을장시간방송함. -방송심의규정제9조(공정성)제1항및제2항,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등)제1항,제14조(객관성)위반	
141	2023-09-08 15:11:03	단체	뉴스가 있는 저녁	2022-03-07 19:00:00	YTN <뉴스가 있는 저녁>('22.3.7. 19:00)	-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전날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상세히 소개한 후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면 아무 일 없을 거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이에요",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검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친분이 있는 관계 아니었느냐. 그래서 대장동의 원조가 되는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덮은 셈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가	과징금 부과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김만배 씨가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 이게 지금 2~3일 남은 대선 결과에 어떤 파장을 줄 것인지가. 민주당에서는 이것 봐라, 결국은 나오지 않느냐, 이거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김만배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라고 말함. -하지만'뉴스타파'보도는대장동사건이이미언론에보도된후김만배씨가검찰수사를앞두고지인과허위로대화하며의도적으로작성한'가짜인터뷰'에불과함에도,공영방송이대선을불과이틀앞둔민감한시기에최소한의팩트체크도하지않은채,'대장동의원조가되는사건을윤석열검사가덮었다는주장을뒷받침하는녹취'라면서해당녹취록내용이사실에부합한다고몰아가며,'대장동의몸통은윤석열'이라는민주당의주장을뒷받침하는일방적대담만을장시간방송함. -방송심의규정제9조(공정성)제1항및제2항,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등)제1항,제14조(객관성)위반	
142	2023-09-08 15:12:04	단체	뉴스가 있는 저녁	2022-03-07 19:00:00	YTN <뉴스가 있는 저녁>('22.3.7. 19:00)	- <대선판 뒤흔든 김만배의 입…"50억" "수사무마"까지> 리포트에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록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 후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녹취됐고,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진술이 아니라는 점도 앞선 녹취록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라고 보도함. -하지만두사람의대화는경기경제신문과주간조선등언론에서이미대장동관련보도를시작하고이재명경기지사가관련의혹을부인한다음날녹취된것이며,결국김만배씨가검찰수사를앞두고지인과대화하며의도적으로녹음한것임을충분히알수있음에도,'수사가본격화하기전녹취됐고,수사기관제출목적이아니다'라는이유만으로신뢰할수있다는듯허위의사실을방송함. -특히형사소송법제310조의2는타인으로부터들은내용은증거로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공영방송이이렇듯김만배씨가조우형씨로부터들었다는'전언'에불과한내용을조씨에대한팩트체크등최소한의검	과징금 부과

						증도없이방송함. -방송심의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및제2항,제14조(객관성)위반	
143	2023-09-08 15:46:48	단체	JTBC 뉴스룸	2022-03-08 19:30:00	JTBC <뉴스룸>('22.3.7. 19:30)	- 김만배-신학림 씨의 녹취 파일 관련 뉴스타파 보도를 약 3분 동안 자세히 소개한 반면,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박은 단 15초만 방송함. -대장동사건이이미언론에보도된후 김만배씨가검찰수사를앞두고지인과허위로대화하며의도적으로작성한녹취파일을대선3일전진보매체가보도한것에대해,허위의녹취록을 자세히소개해윤석열후보관련의혹을부풀려보도해대선에영향을미치려함. -특히형사소송법제310조의2는타인으로부터들은내용은증거로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김만배씨가조우형씨로부터들었다는'전언'에불과한내용을조씨에대한팩트체크등최소한의검증도없이방송함. -방송심의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및제2항,제14조(객관성)위반	과징금 부과
144	2023-09-10 15:32:13	개인	PD수첩	2022-03-08 22:30:00	가짜방송 내용 심의요청	MBC PD수첩은 지난 22년 대선을 하루앞두고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점검을 빌미로 김만배가 신학림전언론노조의원장과의 가짜인터뷰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윤석열후보에 대한 불리한 방송을 함으로써 노골적인 대선개입 의도가 있어 엄중한 심의를 요청사실확인없이합니다	과징금 부과
145	2023-09-10 17:39:52	개인	PD수첩	2022-03-08 22:30:00	김만배 가짜인터뷰 방송	Mbc pd수첩은 지난 2022년 대선을 하루앞둔 3월8일 방송에서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점검을 빌미로 김만배가 신학림 전언론노조의원장과 한 가짜인터뷰를 여과없이 방영함으로써 노골적 선거개입 혐의가 있어 엄중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과징금 부과
146	2023-09-10 19:00:49	개인	PD수첩	2022-03-08 22:30:00	가짜뉴스 심의요청	Mbc pd수첩은 지난 2022년 대선을 하루앞둔 3월8일 방송에서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점검을 빌미로 김만배가 신학림 전언론노조위원장과 한 가짜인터뷰를 여과없이	과징금 부과

						방영함으로써 노골적 선거개입 혐의가 있어 엄중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147	2023-09-10 19:02:30	개인	PD수첩	2022-03-08 22:30:00	심의요청의 건	Mbc pd수첩은 지난 2022년 대선을 하루앞둔 3월8일 방송에서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점검을 빌미로 김만배가 신학림 전언론노조의원장과 한 가짜인터뷰를 여과없이 방영함으로써 노골적 선거개입 혐의가 있어 엄중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과징금 부과
148	2023-09-10 20:42:27	개인	PD수첩	2022-03-08 22:30:00	PD수첩의 선거법 위반 혐의 심의 요청	mbc pd수첩은 지난 2022년 대선을 하루 앞둔 3월8일 방송에서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점검을 빌미로 김만배가 신학림 전언론노조의원장과 한 가짜인터뷰를 여과 없이 방영함르로서 노골적 선거개입 혐의가 있어 엄중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과징금 부과
149	2023-09-10 21:14:42	개인	PD수첩	2022-03-08 22:30:00	mbc PD수첩의 선거개입 혐의 심의 요청	mbc pd수첩은 지난 2022년 대선을 하루 앞둔 3월8일 방송에서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점검을 빌미로 김만배와 신학림 전언론노조위원장 간의 가짜인터뷰를 사실 확인 없이 방영하여 선거 개입 의혹이 있어 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징금 부과
150	2023-09-10 21:21:32	개인	PD수첩	2022-03-08 22:30:00	pd수첩의 가짜인터뷰 방영 심의요청	지난 대선 당시 mbc pd수첩은 2022년 3월 8일 방송에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점검를 빌미로 김만배와 신학림 전언론노조위원장과 한 가짜 인터뷰를 여과 없이 방영함으로서 노골적 선거개입 혐의가 있어 엄중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과징금 부과
151	2023-09-10 21:24:50	개인	PD수첩	2022-03-08 22:30:00	방송심의 요청	김만배가 신학림전국언론노조위원당과 한 가짜인터뷰를 여과없이 반영해 노골적으로선거에개입한혐의가있으니엄중한심의를요청합니다.	과징금 부과
152	2023-09-	개인	PD수첩	2022-03-	MBC PD수첩	Mbc pd수첩은 지난 2022년 3월8일 방송에서 악의적 선거	과징금 부과

	10 21:33 :16			08 22:30 :00	편파방송에 대한 심의 요청	편파 기획방송의 일환으로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점검을 빌미로 김만배가 신학림 전언론노조의원장과 한 가짜인터뷰를 여과없이 방영함으로써 노골저으로 선거개입한 혐의가 있어 엄중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153	2023 -09- 10 21:39 :32	개인	PD수첩	2022 -03- 08 22:30 :00	pd수첩의 가짜뉴스 심의 요청	mbc pd수첩은 지난 2022년 대선을 하루 앞둔 3월8일 방송에서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점검을 구실로 김만배가 신학림 전언론노조위원장과 나눈 가짜인터뷰를 여과없이 방영함으로서 노골적 선거 개입 혐의가 있어 엄중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과징금 부과
154	2023 -09- 10 21:45 :42	단체	PD수첩	2022 -03- 08 22:30 :00	pd수첩이 대선전 허위정보를 검증없이 보도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1. MBC PD수첩은 20대 대선 바로 전날인 2022년 3월 8일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방송했다. 서정문 PD는 오프닝에서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집중 점검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그런데 방송 내용을 보면 과연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웠다. 2. PD수첩은 20대 대선 최대 이슈가 대장동 비리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 이를 다룬 4자 토론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대장동 특검을 하자며 공격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사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에 완강하게 반대했었다. 그러다 2021년 12월 특검 찬성으로 돌변했다. 이미 대선 전 특검 수사가 불가능해진 시점이었다. PD수첩은 그런 과정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3.PD수첩은대장동자금의뿌리가논란이라면서김만배신학림의거짓말녹음을방송했다."(윤석열중수2과장이)네가조우형이야이러면서..OOO검사가커피뭐하면서몇가지를하	과징금 부과

						더니보내주더래.그래서사건이없어졌어"라는김만배의거짓말을자막까지붙여가며방송했다. 녹음 내용의 진위에 대한 취재 흔적은 없었다.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도 녹음 시점부터 공개까지 사이에 김만배의 말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은 그런 건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러한 사실 검증의무 위반은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9조 1항,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제 14조,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느 아니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또한 제17조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4.PD수첩은김만배녹음뒤에송영길민주당대표의발언을붙였다.송영길대표는"왜대장동몸통이윤석열과박영수인가가증명되는녹취록이공개됐다"고주장했다.이재명후보는'대장동사건의진실이드러나고있다.거짓은참을이길수없다'고일갈했다. 이는선거방송심의규정의제4조정치적중립조항,제5조공정성조항,제6조형평성조항을위반한것이다.대선단하루전에이러한허위뉴스를근거로상대후보와상대당대표의발언을소개하는것은매우불공정하며형평성에어긋난다. PD수첩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그게 다가 아니다. 정책과 공약을 점검한다더니 후보 단일화 문제를 길게 설명했다. 그나마 편파적이었다. 먼저 이재명-김동연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설명만 했다. 시간은 30초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에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4분 넘게 잘근잘근 씹어댔다. 안 후보가 윤 후보를 비난했던 과거 발언까지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섬뜩한	

						악의가 느껴졌다.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시민 인터뷰는 균형을 갖추는 척했지만 비난하는 목소리가 훨씬 자극적이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한다면서, 주택공급 공약이 이재명 후보는 311만 채 윤석열 후보는 250만 채라고 그래프를 그려 비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폭등시킨 부동산 정책 실패와 그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 약 1분간 방송했다. 검찰의 민주당 비리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우려는 외면했다. 그러니 전문가 반박 인터뷰가 겉돌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후보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맹공을 퍼부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개최한 기자회견 화면과 윤 후보를 비난하는 구호부터 방송했다. 전문가들 찬반 인터뷰도 누구나 들으면 교묘한 편파 수준을 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5.20대대선전날PD수첩방송은미디어를악용한부정선거나다름없었다. 이를방치하면다음선거때도PD수첩의작가와PD들이똑같은짓을반복할 것이다.더이상공영방송이특정정치세력의선거운동도구로추락해서는 안된다.방송심의위원회는이러한pd수첩의선거방송심의규정제12조사실보도의무위반에대해서도심의하여다시는선거직전심층시사보도물이특정후보를비방하는대선개입을 하지않도록강력히제재해주기바란다. 2023년9월10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155	2023-09-11 10:51	개인	PD수첩	2022-03-08	MBC PD수첩 심의신청	Mbc pd수첩은 지난 2022년 대선을 하루앞둔 3월8일 방송에서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점검을 빌미로 김만배가	과징금 부과

	:49			22:30		신학림 전언론노조의원장과 한 가짜인터뷰를 여과없이 방영함으로써 노골적 선거개입 혐의가 있어 엄중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156	2023-09-12 16:09:29	단체	PD수첩	2022-03-08 22:30:00	MBC-TV <PD수첩>('22.3.8. 22:30)	-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를 주제로 이틀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의 '짜깁기 인터뷰'를 1분 이상 방송하고,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주임 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언급합니다"라는 자막까지 동원했으며, 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함. -또이재명-김동연후보단일화는두사람이손을잡고등장하는장면으로시작해합동유세하는장면을30초동안보여준반면,윤석열-안철수후보단일화는과거안후보가윤후보를비판했던장면으로시작해,국민의당홈페이지에당원들의반발이이어졌다며'이재명으로갈아탑시다''기호1번이재명후보지지합니다'등의자막이담긴화면까지무려4분넘게부정적으로방송했음. -검찰출신기용에대해서도노무현·문재인정부에비해이명박·박근혜정부를부정적으로묘사하는그래픽화면을방송하고,검찰개혁에대한공약비교에서도과거정부의검찰출신중용의부작용에대한설명을집중적으로보도하는등, -대선전날밤,좌편향인터넷매체뉴스타파의짜깁기인터뷰보도를조우형씨에대한팩트체크등최소한의검증도없이방송하고,여야후보의단일화나공약비교역시이재명후보를부각시키고윤석열후보는부정적으로묘사하는등,사실상이재명후보선거운동수준의방송을함. -방송심의규정제9조(공정성)제1~3항,제14조(객관성)위반	과징금부과
157	2023-09-	단체	PD수첩	2022-03-	MBC-TV <PD수첩	MBC-TV <PD수첩>('22.3.8. 22:30)	과징금부과

	18 14:58			08 22:30 :00	>('22.3.8. 22:30)	-<대선D-1,결정하셨습니까?>를주제로,방송도입부에"TV토론처음부터마지막까지대장동문제가이슈였습니다"라고한후,TV토론중두후보의공방에이어이틀전'뉴스타파'가보도한김만배-신학림'가짜인터뷰'를2회나방송하고(방송후반1회포함),특히뉴스타파가짜깁기한"통했지,그냥봐줬지'대목도2회나방송해윤석열후보의'수사무마의혹'을부각시킨후송영길민주당대표가"왜대장동몸통이윤석열과박영수인가가증명되는녹취록이공개됐습니다",이재명후보도"대장동사건의진실이드러나고있습니다.거짓은참을이길수없습니다"라고말하는내용을보도함. -후보들을소개할때이재명후보에대해"인권변호사로활동하다성남시장과경기도지사를지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라고했으나,인권변호사는일반적으로'인권침해를당한사회적약자등의편에서서변론하는변호사'로볼수있는데,이재명후보가변호사로활동한2009년이전까지맡은형사사건중20건이상이살인,강간,폭행,횡령,사기,음주운전,문서위조,성매매알선관련사건이었는데도,이후보측의자칭'인권변호사'타이틀을그대로사용해미화함. -또이재명-김동연후보단일화는두사람이손을잡고등장하는장면으로시작해합동유세하는장면을30초동안보여준반면,윤석열-안철수후보단일화는과거안후보가윤후보를비판했던장면으로시작해,국민의당홈페이지에당원들의반발이이어졌다며'이재명으로갈아탑시다''기호1번이재명후보지지합니다'등의자막이담긴화면까지무려4분넘게부정적으로묘사했음. -특히이재명-김동연단일화에대해서는상대진영의반응은전혀소개하지않은반면윤석열-안철수단일화에대해서는우상호당시민주당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새벽에갑자기이뤄진두후보의단일화는자리나눠먹기형야합으로규정한다"며"국민들에게밝힐수없는어떤이면합의가있었는지소상히밝힐필요가있다"고비판하는내용을덧붙임. -빅데이터전문가가이재명후보는"거래의리더십",윤석열후보는"응징의리더십"이보인다고평가하며,이	

						후보는"어떤난관이있을때마다문제를풀어나가는방식은결국상대방한테무언가를내놓는것","거국내각을만들자,통합정부를구성하자손내미는것도문제해결을하는수단으로거래를하는것으로이해된다"라며'타협'의이미지를부각시킨반면,윤후보는"검사의정체성이결국피의자인상대방을제압하는방식이기때문에정치하면서도동일하게발현되는것"이라며"응징의대상이대외적으론북한,대내적으론민주당정부인사들이될수있다고해석된다"라고부정적으로묘사함. -검찰출신기용에대해서도노무현·문재인정부에비해이명박·박근혜정부를부정적으로묘사하는그래픽화면을방송하고,검찰개혁에대한공약비교에서도과거정부의검찰출신중용의부작용에대한설명을집중적으로보도했으며,부동산공약비교에서도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는전혀언급하지않았음. -대선전날밤,좌편향인터넷매체뉴스타파의짜깁기인터뷰보도를조우형씨에대한팩트체크등최소한의검증도없이방송하고,여야후보의단일화나공약비교,이미지역시이재명후보는긍정적으로부각시킨반면윤석열후보는부정적으로묘사하는등,사실상이재명후보선거운동수준의방송을함. -방송심의규정제9조(공정성)제1~3항,제14조(객관성)위반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가) 김민정 증인(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에 대한 부실수사를 보도한 언론인에 대한 탄압적인 수사가 한편으로는 방심위의 민원사주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는지?	○ 그러함.
○ 본인과 가족, 지인을 이용한 민원사주의 부실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음. 2026년 1월 발표를 보면 당시 방심위의 감사가 부실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을 알고 있는지? 당시 부실감사를 주도한 감사실장이 여전히 현직에 있는지? 징계라든가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	○ 알고있음. 현직임. 감사원의 조치 요구사항 관련하여 위원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후속 조치할 예정임.
○ 류희림의 민원사주로 인해서 봉지욱, 한상진, 김용진 등 언론인들이 탄압을 받았고 아시겠지만 MBC, JTBC, 얼마나 많은 언론사에서 몇천만 원씩 경제적 제재를 받지 않았는지? 이러한 사항을 바로잡을 필요.	○ 맞음. 과징금임.

10) 예금보험공사

가) 보고내용

Ⅰ. 일반 현황

1 공사 업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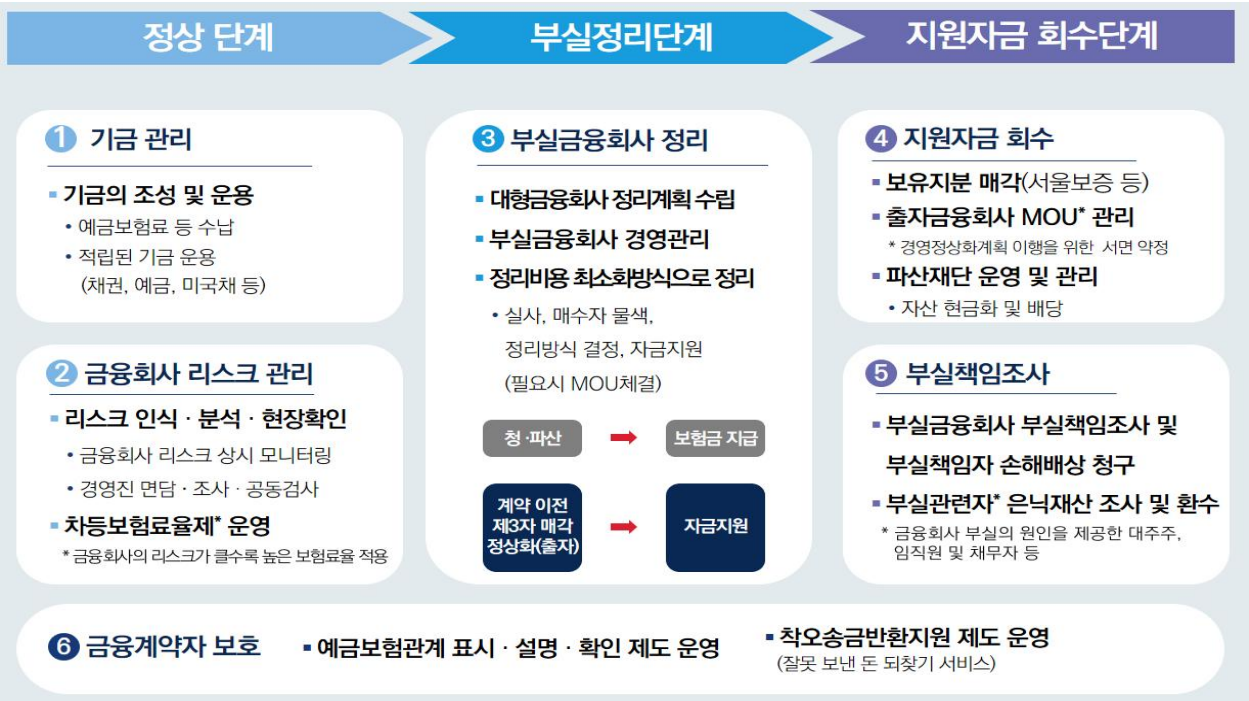
□ **(설립)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통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96.6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

□ **(예금보험제도 운영)** 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여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 예금보험금 지급 등 **구조조정(정리) 자금으로 사용**

○ 지원한 자금은 **출자지분 매각,**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을 통한 파산배당** 등을 통해 회수

○ 또한,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 있는 임직원, 주주, 채무기업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소송 등을 통해 **책임 추궁**

【공사 주요 업무 흐름】



2 부실책임추궁 업무 프로세스

◈ 공사는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면 **부실책임조사**를 통해 부실을 일으킨 관련자를 조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재산조사 등을 통해 손실 금액을 환수**

1 **(부실책임조사)** 부실에 책임 있는 임직원, 채무기업 등의 **업무,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

2 **(부실책임심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부실관련자의 **책임 여부와 범위를 심의**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정**

3 **(손해배상청구)** 심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4 **(재산조사·회수)**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 등을 추적**하여 **압류 등 회수 절차** 진행

【부실책임추궁 업무 절차】

1 부실책임조사	부실금융회사·부실채무기업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불법·부당행위 등 조사	
2 부실책임심의	손실초래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심의	검찰 앞 수사 의뢰 (형사)
3 손해배상청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재산조사·회수	부실관련자의 재산상황 및 은닉재산 조사, 발견 재산에 대한 압류 등 회수	

【부실책임조사 등을 통한 조사 및 회수 실적】

ㅇ(부실책임청구) 대상자 423명, 청구금액 3,524억원, 회수금액 996억원
ㅇ(재산조사회수) 5,324억원 (부실채무자 등에 대한 부동산·예금 등 재산조사를 통한 회수금액)

Ⅱ. 국정조사 관련 현황

1 저축은행 부실사태 및 부실책임조사

□ **저축은행** 업계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PF대출 건전성 악화로 부실 심화**

○ '11년 부산저축은행 등 16개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5년간 총 30개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어 공사는 **총 27.2조원을 투입**

□ 공사는 자금회수 및 책임추궁을 위해 **즉시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직접 관련자인 **저축은행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

○ **채무기업은** 조사 대상이 방대(총 3,907개)해 **대출규모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조사** 실시

【'11년 이후 저축은행 정리 현황】

('11년 ~ '25년, 단위: 억원)

저축은행	영업정지	지원	회수	저축은행	영업정지	지원	회수
삼화	'11.1.14.	5,936	2,561	솔로몬	'12.5.6.	35,245	31,627
부산	'11.2.17.	31,582	7,405	미래	'12.5.6.	12,550	5,877
대전	'11.2.17.	9,819	4,908	한국	'12.5.6.	11,765	8,404
부산2	'11.2.19.	18,545	4,002	한주	'12.5.6.	1,893	377
중앙부산	'11.2.19.	2,558	709	토마토2	'12.10.19.	5,095	2,966
전주	'11.2.19.	2,173	939	진흥	'12.11.16.	10,372	8,728
보해	'11.2.19.	8,549	1,007	경기	'12.12.28.	9,566	9,115
도민	'11.2.22.	824	427	더블유	'12.12.28.	3,672	3,678
경은	'11.8.5.	1,272	855	서울	'13.2.15.	6,298	5,537
프라임	'11.9.18.	6,260	4,219	영남	'13.2.15.	2,767	2,747
제일	'11.9.18.	23,941	6,616	신라	'13.4.12.	6,677	5,573
제일2	'11.9.18.	2,656	2,028	스마일	'13.11.1.	1,100	876
토마토	'11.9.18.	30,151	9,563	한울	'13.12.27.	1,372	1,291
에이스	'11.9.18.	11,615	2,378	해솔	'14.5.2.	2,994	2,769
파랑새	'11.9.18.	2,521	1,583	골든브릿지	'15.1.16.	520	338
총 30개 저축은행에 27.2조원을 지원하고 14조원을 회수							

2 대장동 관련 부실채무기업 조사

가 관련 대출 등 개요

《대출취급 및 부실화》

□ '09~'10년 **부산 등 11개 저축은행***은 **3개사(다한울, 판교PFV, 나인하우스)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1,805억원 대출**

*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한국, 경기, 진흥, 영남, 제일, 프라임

○ 3개 차주사는 토지를 매입하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 개발방식 변경** 등으로 **관련 대출이 부실화**

《대출취급 회수》

□ 파산 이전 대출채권 매각 등으로 **789억원이 회수**되어 **파산 당시 잔액은 1,016억원**이었으며,

○ 공영개발이 진행 중이고 담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완전하지 않아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는 소유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645억원 회수**

【대장동 관련 파산재단 대출채권 잔액 현황】

('26.2월말 현재, 단위: 억원)

대주단	차주사	대표	대출 시기	파산시 잔액	회수	대출잔액		
						원금	이자	합계
대전, 진흥, 제일, 경기, 영남, 한국, 프라임	**다한울**	**남욱 이강길**	'09.11.	491	468	32	813	845
부산, 대전	**판교PFV**		'09.12. ~'10.6.	270	66	205	1,177	1,382
부산, 대전, 전주	**나인 하우스**		'10.3. ~'10.6.	255	111	146	612	758
계				**1,016**	**645***	**383**	**2,602**	**2,985**

* 633억원을 대출원금 상환에 충당하고 12억원은 회수 관련 비용으로 집행

나 관련 부실채무기업 조사 내용

《'13년 ㈜다한울 등 3개사 조사》

□ 공사는 저축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하는 한편, **'12년부터 부실규모,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

○ 이에 따라, **'13.11월 ~ '14.7월** ㈜다한울 등 **대장동 관련 3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 **공사**는 차주사 대표 **이강길, 남욱** 등의 횡령·배임 등 범죄혐의점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14.4월, '14.6월)**

■ **공사의 조사 대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채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주요 주주'로 제한**되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인의 경우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수사 의뢰**

○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사의 수사 의뢰 대상자뿐만 아니라 **조우형*(대출브로커) 등 여타 혐의자를 기소**

* 알선수재 및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16.9.)

【 대장동 관련 공사 수사 의뢰 및 형사처벌 내역】

대상자	직업	의뢰일	범죄 혐의	형사처벌
윤○○	前 LH공사 본부장	'14.4.4.	변호사법 위반	**유죄**('16.9.8.) * 징역 3년, 추징13.8억원
남 욱	변호사			**무죄**('16.3.18.)
권○○	보좌관			**불기소**('15.7.31.): 증거불충분
이강길	시행사 대표이사	'14.6.24.	특경가법위반(횡령)	**유죄**('16.9.8.) * 징역 3년, 추징2.5억원
남 욱	변호사		업무상배임	**불기소**('15.12.17.): **증거불충분**

《조우형 채권현황 및 재산 환수》

□ 공사(파산재단)는 조우형의 유죄(배임) 확정을 계기로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승소(약 90억원, '20.3월)

○ 한편, 검찰 수사와 공사 은닉재산조사에서 확인한 **비자금에 대한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14.8월)해 승소(약 6억원, '16.4월)

【파산재단의 조우형 관련 채권 잔액】

('25년말 현재, 단위: 억원)

파산재단(채권)	원금	지연이자 등	회수액	채권잔액
부산2(손해배상)	90	59	4	145
부산(원상회복청구)	6	12	1	17
합 계	**96**	**71**	**5**	**163**

○ 공사는 **매년** 부실관련자 조우형에 대해 **정기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시 즉각 환수 조치** 예정

《조우형 관련 3개사 조사》

□ **'21년** ㈜더뮤지엄양지 등 **조우형 관련 3개사를 조사**하였으며, **추가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 종결**

■ 조우형은 **검찰 수사를 통해 '16년 이미 실형이 확정**되었으나, 차명으로 운영한 SPC 등에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 예금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관련 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추진

【3개사 부실책임조사 실시 결과】

부실채무기업	조사 결과
더뮤지엄양지	대출금 사용 관련 불법성 및 은닉재산 미발견
세 움	
벨리타하우스	일부 불법 사항은 형사처벌 기 완료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가) 김성식 증인(예금보험공사 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부산저축은행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 맞는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환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 맞음. 27조 2000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음. 14조 3000억원 정도임.
○ 대장동 사건의 원인으로 저축은행의 불법·부실대출을 지적할 수 있는데,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때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음에도 적절한 수사가 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는 다른 저축은행에 비하여 회수율이 낮음.	○ 본인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자료에 따르면 당시 대장동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의 명의로 운영한 불법대출은 아니었다는 것임.
○ 부산저축은행 관련하여 2011년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 의뢰했던 당시와 2014년도 수사 두 번의 수사가 있었던 것이 맞는지?	○ 맞음.

11) 기타사항

가) 주요 질의·답변 내용

(가)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공수처에 법적 조치가 들어와 있는지?	○ 고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공수처에서 접수된 대장동 사건을 확실하게 수사할 것인지?	○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음.

다. [4월 9일, 3차]

1) 법무부

가) 보고내용

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1 사건 개요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서훈·김홍희는 2심 재판 중**, **서욱·박지원·노은채는 무죄 판결 확정**

○ **피고인**

- **(피격사실 은폐·자진월북 조작) 서훈**(前 국가안보실장), **서욱**(前 국방부장관), **김홍희**(前 해경청장)
- **(피격사실 은폐) 박지원**(前 국정원장), **노은채**(前 국정원 비서실장)

○ **공소사실 요지**

- **(피격사실 은폐)** '20. 9. 22. 15:31경 실종자 **故이대준**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21:47경 **북한군에 의해 피격·시신 소각**되자, **보안유지 및 첩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은폐 시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국정원법위반 등]**

  ※ 故이대준(당시 48세,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서기) '20. 9. 21. 02:00~11:30경 실종

- **(자진월북 조작)** '20. 9. 23.경 언론보도로 故이대준 피격 사망 사실이 공개되자, 정부에 대한 비판(미조치, 대북정책 등)을 피하기 위해 **'자진월북'으로 조작하여 언론에 보도자료 등 발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사자명예훼손 등]**

2 주요 경과

○ ’22. 6.~7. 고발장 접수(유족 3회, 국정원 1회)

※ ’22. 10. 17. 감사원 수사의뢰서 접수

○ ’22. 12. 9. 서울중앙지검, **서훈·김홍희 기소**(서훈 구속)

○ ’22. 12. 29. 서울중앙지검, **서욱·박지원·노은채 기소**

※ ①서욱(’22. 10. 22. 구속, 11. 8. 적부심 인용), ②김홍희(’22. 10. 22. 구속, 11. 11. 적부심 인용), ③서훈(’22. 12. 3. 구속, ’23. 4. 3. 보석 석방)

○ ’25. 12. 26.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전부 무죄)**

※ ’25. 12. 29. 국정원 고발 취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1심 판결 요지]

공소유형	무죄 이유	
사실은폐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삭제 등)	**절차적 위법성**	▲ 실종보고, 대응, 수사진행, 결과 발표 등 전반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은 위법사항 확인 안 됨** ▲ 월북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검토 끝에 이루어졌고, **강요·권유 정황은 확인 안 됨**
	첩보 삭제	▲ 배포선이 제한되어 전파되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제한 조치 없이 (일반)전파된 것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삭제(회수)한 첩보들은 폐쇄망에 그대로 존재함
	고의	▲ 모든 조치들은 적법한 회의,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은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월북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 ‘근거를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살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후적 관점에서의 평가, 지적, 의견 등에 불과** ▲ 피고인들이 특정한 방향의 판단을 내리거나 내리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 없으므로 **허위성 인식 인정 어려움** ▲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이라고 판단한다’는 표현 자체는 제한된 정보만을 전제한 잠정적 판단이며,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 - 제한된 정보 내에서 위 판단에 합리성·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월북 판단 근거도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	

- ’26. 1. 2. 서울중앙지검, **일부 항소 제기**

※ ①**서훈·김홍희** 일부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사자명예훼손 등 항소 제기(해경 보도자료 부분만 항소, 이에 관여한 바 없는 **서욱**은 항소 부제기), ②나머지 피고인 및 공소사실은 항소 부제기(판결 확정)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항소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보 요지]

○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 항소를 제기**하였음

- 故이대준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 등에 대하여 항소 제기**(피고인 서훈・김홍희 일부 공소사실)
-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항소 부제기

Ⅱ 통계조작 사건

1 사건 개요

○ 감사원 수사요청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통계', '고용통계', '소득통계' 수정에 관여한 **김수현 前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여 **1심 재판 중**

○ **피고인**

- **(주택 통계)** ① **김수현**(前 BH 사회수석, 前 BH 정책실장), ② **윤성원**(前 국토부 1차관, 前 BH 국토교통비서관), ③ **김상조**(前 BH 정책실장), ④ **하동수**(前 BH 국토교통비서관), ⑤ **김현미**(前 국토부장관), ⑥ **이문기**(前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⑦ **김홍진**(前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고용 통계)** ③ **김상조**(前 BH정책실장), ⑧ **황덕순**(前 BH일자리수석), ⑨ **이준협**(前 BH일자리수석), ⑩ **강신욱**(前 통계청장)
- **(소득 통계)** ⑪ **홍장표**(前 BH경제수석)

○ **공소사실 요지**

- **(주택 통계)** ▲ '17. 6. ~ '21. 11. 법령상·계약상 근거 없이 **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에 관한 **주중조사 추가 요구**, ▲ '17. 6. ~ '21. 11. 주중조사 결과인 '주중치', '속보치'를 **BH와 국토부에 보고** 및 금요일 공표 예정인 '확정치'를 **BH에 사전 보고하도록 요구**, ▲ '17. 11. ~ '21. 11. 통계 변경 목적으로 부동산원에

가격변동률 하향을 요구 **[통계법위반, 직권남용]**

- **(고용 통계)** ’19. 10.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87만 명 증가가 예상**되자, ‘**병행조사’가 원인인지 불분명**함에도 **통계청으로 하여금 마치 병행조사로 인해 비정규직이 급증**해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 [통계법위반, 직권남용]**

  * 근로 형태나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고용 예상 기간’ 등 부가적인 질문

- **(소득 통계)** ’18. 5. 발표된 2018년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으로 확인되자, 통계청 직원으로 하여금 **통계법 절차를 위반해 통계 기초자료를 청와대 측에 제공**하도록 함 **[직권남용]**

2 주요 경과

○ ’22. 9. ~ ’23. 8. **감사원**, 국토부·통계청 등 대상 **감사 실시**

○ ’23. 9. 19. **감사원**, 검찰에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 관련 **위법행위 의심자 22명 수사요청**

○ ’24. 1. 2. 대전지검,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청구** → **기각**

※ 기각사유 :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압수수색을 통해 다량의 증거가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추상적 위험이 아닌 구체적 개연성 부족

○ ’24. 2. 22. 대전지검,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재청구** → **기각**

※ 기각사유 : 주거 일정, 향후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까지 하기 어려움

○ ’24. 3. 14. 대전지검, **김수현 등 11명 불구속 기소**

※ 장하성(前 BH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

○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 피고인과 증인이 다수인 사건으로, 기소 후 약 2년 경과(기일 18회 진행)하였음에도 재판이 장기화

3 참고 사항

○ **‘조작’→‘수정’ 취지 공소장 변경 관련**

- 검찰이 ’24. 3. 공소 제기 시에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발표하였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의 변동률 ‘조작’ 부분을 ‘수정’으로 변경하였다는 논란

○ **임의 편집된 증거 제시 관련**

-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빼고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며 조사를 함으로써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논란도 존재

Ⅲ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진상조사 경과

1 개요

○ 법무부는 **'25. 9. 17.** 본건 당시 국가정보원에 감찰심의관으로 파견 중이던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 접수**

- 대상자 : 최혁 검사(사연 33기, 現 서울고검 검사)
- 감찰 요청인 :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 한준호, 전용기, 이건태, 박선원, 양부남, 김기표, 이주희

2 감찰 요청 요지

○ 국가정보원 감찰심의관으로 재직하던 '22. 7. ~ 12.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故 이대준이 실종되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첩보와 보고서가 삭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삭제된 것처럼 감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 위 보고서 등이 삭제되었음을 전제로, 그 삭제를 지시한 박지원 前 국정원장 등이 불구속 기소됨

3 진행 경과

○ 법무부는 검사에 대한 감찰과 관련하여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감찰 요청 민원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였음

4 향후 계획

○ **진상조사 등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예정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가) 김진영 증인(법무부 형사법제과 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주희 의원 제시한 카톡 편집 장면 관련해서, 증인이 저 카톡을 편집 및 조작한 사실이 없는지?	○ 없음. 본 적도 없음.

2) 국방부

가) 보고내용

국 방 부

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초기 상황 경과('20.9.21.(월)~29.(화))

○ **9. 21. (월) 13:02**, 군 최초 상황접수(중부해양경찰청 → 해군 2함대)

- 실종 신고 접수 : 9. 21. (월) 12:51(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 해양경찰)

○ **9. 22. (화) 15:31**, 합참,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첩보 확인

○ **9. 22. (화) 21:40경**, 합참, 북한 단속정에서 실종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해상에서 불타는 불빛 관측) 첩보 확인

○ **9. 23. (수) 16:35**, 대북 전통문 발송

- 북측 수역 또는 해변에서 실종자 발견여부 통보 요청

○ **9. 24. (목) 11:00**, 군 입장 발표(합참 작전본부장)

-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

○ **9. 24. (목) 16:00**,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

- 실종자의 월북시도 가능성 언급 : 실종자가 구명조끼 착용, 본인 신발 유기, 소형 부유물 이용, 월북의사 표명 정황

○ **9. 25. (금) 14:00**, 북한 전통문 접수 및 발표(안보실장)

- 북한군은 실종공무원을 불법침입자로 규정하고 10여발의 총탄을 사격하여 사살(추정)
- 부유물만 소각하였음을 주장하며 시신 훼손은 인정하지 않음.

○ **9. 29. (화) 10:00**, 해경 중간수사 결과 발표

-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 : 실종자가 구명조끼 착용,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 소상히 인지, 북측에 월북의사 표명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음, 표류 예측 시스템 분석결과

Ⅱ 이후 주요 경과 ('20. 10월 ~ 현재)

□ 정보공개 청구

○ **'20. 11. 2. (월),** 유가족측 1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지

- ①시신훼손 비디오 파일, ②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 **'20. 11. 6. (금),** 유가족측 2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 통지

- ①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발견한 좌표 (대략적인 위치 공개), ②국제상선통신망 통신내용 (비공개)

○ **'21. 1. 13. (수),** 유가족측 서울행정법원에 영상·감청 녹음·위치 (발견좌표)· VHF-16 (선박 긴급통신용 채널) 녹음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

○ **'21. 11. 12. (금),** 서울행정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국가안보실·해경 부분공개 결정, 국방부 승소 (미공개)

○ **'21. 11. 30. (화),** 국가안보실·해양경찰청 항소장 제출

○ **'22. 5. 30. (화),**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국방부 향후조치 검토

◦ 합참 1차 발표 ('20. 9. 24.)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재확인
◦ 추가설명이 가능한 부분 검토 : 불빛 영상 부분공개 등
◦ 설명자료 작성 전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및 보안 관련 문제 사전 차단
◦ 해경측과 발표내용·시기·장소·방법 등에 대해 사전 긴밀히 협조하 시행

□ 해경 수사종결 발표

○ **'22. 6. 16. (목),** 인천 해경,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종결 발표

-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 정보 공개 예정

○ **'22. 6. 16. (목),** 국방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추가 설명

- 해경의 수사종결과 연계하여 관련내용을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음.' 설명

□ 감사원 감사

○ **'22. 7. 19. (목) ~ 10. 14. (금),** 국방부·해경 등이 기존의 발표 내용을 번복하여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감사원에서 국방부·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실시

○ **'22. 10. 14. (금),** 직무유기,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개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총 20명 중 국방부 7명), 수사요청서 상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3. 12. 1. (금),**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 처분 요구사항 통보(경징계 1건, 기관주의 4건, 개인주의 1건, 통보 2건)

Ⅲ 주 요 조 치

□ 국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

○ 요구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 국조특위 활동 적극 지원

○ 국조특위 운영 결과 감사, 조사 등 필요 시 후속조치 추진

□ 군사비밀 보호대책 강화

○ 대외로 군사비밀 제공 또는 설명 시 규정 및 절차 준수 강화

○ 대외기관에서 SI(특수정보) 열람 등을 위한 잠정인가 조치는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하고 대외노출 통제를 위한 보호대책 강구

Ⅳ 향후 추진

□ 국민의 군대로서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판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

○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및 연합방위체제 지속 유지

□ 국방운영의 투명성 확보 노력 강화

○ 군 관련 상황발생 시 국민들께 신속·정확하게 상황을 알리고, 진행경과를 수시로 공유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신뢰 제고

○ 의혹이 예상되는 사안은 선제적으로 군 자체 감사, 조사 기능을 활용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투명성 확보 강화

Ⅴ 결 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가) 안규백 증인(국방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25개 검찰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임. 고 이대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불법 지시로 국정원 등에 전파된 초기 첩보 보고서가 삭제되지 않았다는 내용임. 국방부 장관님은 제대로 다시 자체조사 해주기 바람.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자진 월북으로 국방부는 판단하는지?	○ 현재 입장은 당시의 해경 조사 결과를, 중간조사 결과를 존중함.
○ 2020년 9월 20일부터 실종이 되었는데 9월 23일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종전 연설이 있어서 쉬쉬하다가 9월 24일 오전에서야 11시에 전부 작전회의를 하였음. 청와대에서 작전회의를 하고 국방부, 국정원 문서를 없애라고 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함.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을 파리 목숨 하였음. 이런 식의 사건을 보면서 남북관계	○ 일단, 문재인 정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님. 고 이대준 씨가 NLL 이남에 있던 것이 아니라 북측 수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과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음. 그리고 최초 평가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이었고, 이후 우리 군이 과학적 근거를 수집해서 여러 가지 상황 평가를 한 이후에 군의 여러 가지 첩보들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은 완전히 파리 목숨이라는 것에 울분을 가지고 있음.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자진 월북은 조작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림.	수집됨에 따라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다시 재차 판단하게 된 경우임. 즉, 최초 판단은 정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그 이후의 판단은 부유물, 장애물, 또 종합적인 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림.
○ 2022년 5월 24일, 5월 26일에 있었던 NSC 회의에서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현 의원이 참가한 것이 확인된 사실인지?	○ 확인이 필요함.
○ 법률비서관이 NSC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 아님. 통상적으로 화요일에 안보실 1차관 주재로 외교·안보·통일차관들이 실무조정회의를 하고, 목요일에 안보장관이 직접 모여서 상임위 회의를 하는 것이 관례임. 따라서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 장관님은 서해 공무원 사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 당초 해경의 중간 발표를 보면,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고, 2022년 5월 10일 정권 교체 이후 2022년 6월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번복되는 계기가 됨.
○ 장관님은 자진 월북이었던 상	○ 여러가지 SI 정보, 한미연합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황이 윤석열 정부에서 고의로 조작, 사건이 왜곡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산 및 과학적 정밀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였음.
○ 국방부 차원에서 고 이대준씨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일찍 감지를 하였고, 첩보 확인을 22일 3시 31분에 하였는데, 그러면 이후에 21일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22일 북한에 의해서 발견된 첩보가 확인이 되었으면, 구조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그 해역이 NLL 이북의 북쪽 해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닿지 않는 길임. 2020년 9월 29일 해경의 중간 발표를 보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북측에서 월북 의사가 표방하는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을 잘 파악했다는 증거 등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실종자가 월북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임.
○ 북한군이 왜 사살을 하고 소이까지 해서, 적대적 의도로 넘어간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잔인하게 사살하고 소이하였을지?	○ 국방부에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찌 된 일인지 거의 모든 것이 다 소실되고 없는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이 특위에서 여러 가지 포렌식을 포함해서 여기서 의결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 국정조사의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 때 어떠한 조작과 왜곡이 없었는지임. 지금 담당 검사의 말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 군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해야 될 입장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새로 들여다 본 것이, 그 당시 많은 의혹에 대한 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봤다는 것임. 장관님 본인도 안타깝고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하셔야 함.	
○ 북한 관련해서 심각한 상황이 감지되는 것이 있는지? 새로운 무기체계를 실험하는 도발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인지? 주한미군 일부 무기체계가 중동 전선으로 이전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 특별한 상황 변화와 특이점은 발견할 수 없음. 새로운 시도라기보다는 서너 차례 했던 것으로 기억함. 한미 정보자산을 통해서 대응체계를 생각하고 있음. 미세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산 등의 변동과 변화는 없음.
○ 지금 북한은 러시아 전선에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병력인지 파악되는지? 공병이 아니라 드론전이나 최전선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닌지? 특수전 부대가 같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닌지?	○ 1만 3,500명 정도 공병대대 중심임. 누적인원은 아님. 전쟁 초기에는 최전선에 나가 있었음. 특수전 부대 관련은 드릴 말씀이 없음.
○ 북한군은 지금 실전을 통해서 최신 무기에도 익숙해져 있고 다양한 전술 전략을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안보체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 지상·해상·공중에서 연합방위자산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대비 태세에 완비하고 있음.
○ 방첩사 정상 기능 작동되고 있는지?	○ 방첩사는 5·16 군사정변, 5·17 전국 계엄 확대, 5·18, 12·3 일련의 사건에 있어서 역사의 변곡점에 있었고 이번에 상당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모멘텀을 갖는 계기가 될 것임.

(나) 김성구 증인(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6월 10일 안보실1차장 주관 회의를 했고, 협의한 결과 월북이 아니라 조작한 것이다라고 바꾸라는 회의가 있었고, 그러한 지시가 있었는지?	○ 전날까지 국방부는 내부 자체적으로 TF를 편성해서 회의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보고를 하였음.
○ 국방부는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하고, 이렇게 대통령실로 갔는지?	○ 맞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국방비서관이나 국방 담당 차장이 아닌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1차장이 증인을 심하게 질책하였는지?	○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음. 요구를 해서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였음.
○ 김태효가 직접 수정하고 그 사이에 아무런 조사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태효가 새로 수정해서 그대로 국방부와 해경에 발표하라고 한 것이 아닌지?	○ 맞음.
○ 월북을 번복하라는 지시가 김태효 1차장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서 월북 정황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월북이 아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국방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초기에 월북했다고 추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 일단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안보실 지침에 따라서 중간중간 수사결과 및 발표내용을 조금 수정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직접 수정을 하였음.
○ 그러니까 안보실 1차장의 주관하에 이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이 아닌지?	○ 맞음.
○ 이러한 수정이 6월인지?	○ 그때가 6월, 해경하고 국방부가 발표하기 바로 전주임.
○ 어떤 경위로 해경은 기존의 결정을 번복한다, 월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발표를 하고, 국방부는 최초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였는지?	○ 그 당시 본인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분위기는 보도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고, 그 다음주에 있을 해경 발표 때 발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해경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 그 때 느낌은 사전에 좀 어느정도 정리가 됐다는 느낌이었음.
○ 해경이 ‘월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결정을 발표하도록 이미 사전에 조율된 것 같은 느낌이었지, 그 자리에서 이것을 하자고 논의된 것은 아	○ 맞음.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니었다는 의미인지? ○ 2022년 당시 김성구 사단장은 국방부 기획정책기획차장, 윤형진 국방부 주미 국방무관은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하였는데, 2022년 6월 10일에 국가안보실 김태효 차장에게 같이 불려갔는지?	○ 그때는 국방부에서는 저만 갔음.
○ 2022년 6월 16일에 국방부·해양경찰청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존 수사결과를 번복하였는데, 새로운 조사나 추가 증거 없이 수사결과를 수정한 것이 맞는지?	○ 새로운 추가 증거나 조사는 없었음. 일부 내용을 수정한 사실이 있음.

(다) 이두희(국방부 차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 사건의 핵심은 우리 대한민국이 해수부 공무원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임.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없음. 3시간 후에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연설이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각 이것을 알리고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우리 군이 대응해서 이대준 씨를 살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 데려올 노력을 아무도 안한 것임. 월북의 증거가 실족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배에 있었던 구명조끼는 모두 배에 그대로 있었고, 해상에서 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산 표기가 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신발도 배에 그대로 있었음. 여론이 잘 가라앉지 않으니 이 사람이 빚에 시달렸다가 자진 월북하였다는 일종의 여론전을 펼침. 월북자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면, 감청 정보 같은 것을 보니까 '너 누구냐'고 물으니, '월북하러 왔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것 밖에 없음.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는 그냥 덮었음. 이것이 그냥 덮어야 하는 사건인지?	
○ 2020년 9월 21일 서해 공무원이 실종되었다고 하는 게 군에 최초로 상황 접수가 되었고, 9월 24일 군에서 합참작전본부장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음. 그런데 그날 9월 24일 오후 4시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한다고	○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움. 당시 국방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군에서 얻은 첩보로 발언을 했을 것으로 보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소집되는데, 그날 오후에는 실종자의 월북 시도 가능성이 언급됨. 당시 보고서에서는 누가 그러한 사실을 언급했는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음. 군에서 언급한게 맞는지?	
○ 2020년 9월 24일 오전 발언과 오후 발언이 배치되는 것 아닌지?	○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우리 국민이 그러한 사건을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임.
○ 국방부에서 제공한 것을 해경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20년 10월 22일 발표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음. 이 부분이 지금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맞는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임.	○ SI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 정리하면 이것은 월북이나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라 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애초에 국방부나 해경이 발표했던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 판단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번복이 되느냐, 그 배경이 무엇이냐가 조사에 있어서 초점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번복되었다는 것의 문제의 초점임.	
○ 당시 해당 공무원이 북방한계선 북쪽에 있다는 것은 누가	○ 첩보자산에 의하여 확인되었음.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첩보자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수 없고, 해양경찰청에 당시 관련 내용을 모두 제공하였음.

(라) 윤형진 증인(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국방무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이었는지?	○ 그러함.

3) 해양수산부

가) 보고내용

서해어업관리단 피격사건 보고

□ **희생자 : 서해어업관리단 이대준(男, 무궁화 10호* 1등항해사)**

* 총톤수 499톤, 승선원 16명, 9.16~25일간 연평어장 어업질서 지도·관리 목적 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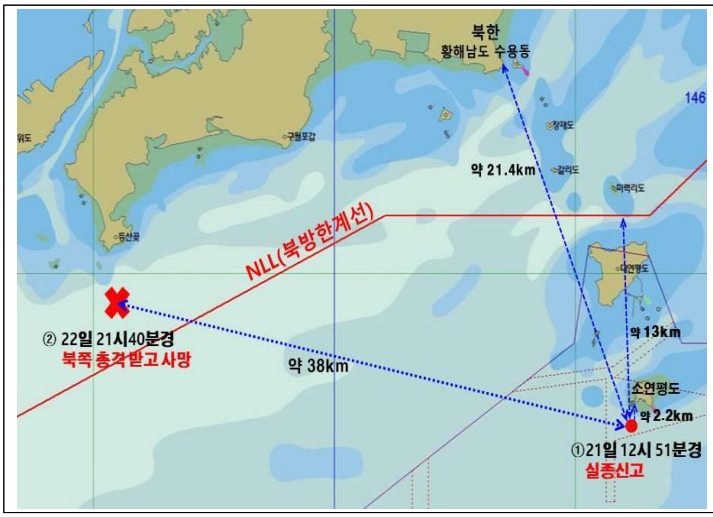
□ **사고 경위**

○ **(실종위치) 소연평도 남단 2.2km(1.2해리) 해상**

○ **(주요경위)**

- **'20년 9월 21일 00시부터**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당직사관)
- 당직근무 중이던 **01시 35분경** 당직부원(8급)에게 행정실(1층)에서 **문서작업**을 한다고 말하고 조타실(3층)을 떠났으나 **이후 미복귀**
- **'20년 9월 21일** 11시 30분경에도 점심식사를 하지 않아 선박전체, 인근 해상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12시 51분경 해경에 신고**
- **'20년 9월 21일 13시 50분부터 9월 24일 11시 25분까지** 군·경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인근 해역에 대한 **해상수색 실시**
- **'20년 9월 24일 11시 국방부**는 **9월 22일 21시 40분경** 등산곶 부근 해상에서 **피격**되었다고 발표

< 사고 인근 해역도 및 국방부 발표 내용 >



① **실종위치** : 무궁화 10호가 묘박 중이던 소연평도 2.2km 남단

② **피격시간 · 장소(추정)** : '20년 9월 22일 21시 40분경 등산곶 부근 해상

□ 조치사항

○ (**인사발령**)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22.6)로 **고인**의 **사망일**이 **특정**('20.9.22)됨에 따라 사망일 익일('20.9.23)로 **당연퇴직 인사발령**('22.7.28)

* 실종('20.9.21) ⇒ 휴직('20.9.21~'20.12.20,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20.12.21, 휴직 사유 소멸 후에도 직무에 미복귀시)

○ (**장례**) 유가족의 요청('22.8.9, 서해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장**(葬)을 **결정**('22.8.31)하고, **해수부장 거행**('22.9.22)

* 위원장(차관), 위원(기획조정실장 등 8명) 등 9명으로 구성

○ (**순직**)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서류 등 확인** 및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결정('22.10.26) 및 통보('22.10.31)**

- **유가족**이 **서해어업관리단**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22.7.6)함에 따라 **사망경위조사서*** **등**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22.8.2)

  * 사고 발생 개요·원인, 위험직무순직 신청 사유 등이 포함되며, 사고 원인은 해경 측의 '수사중지결정서'(피의자, 피의사실, 수사중지 사유 등)를 바탕으로 작성

□ **재발방지 대책**

○ (**근무체계 정비**) **어업관리단 상황실**에서 해역별로 출동한 어업지도선의 **취약시간대(야간) 근무상황 점검 실시** 및 **규정*** **정비**

* 당직교대, 야간근무 순찰 등 근무요령 구체화하여 지도선 복무규칙 개정

○ (**선내모니터링 강화**) **CCTV 확충(286→886대), 개인용 위치발신장치** 전직원 보급(461→**985대)**

○ (**장비 및 물품관리**) 주요 장비 및 물품에 대해 **출동 전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기록 유지,** 출항 시 **개수**와 **비치 장소 확인·점검**

* CCTV, 항해기록장치 등 주요 장비에 대해 출동 전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및 기록 유지, 구명조끼・펜더・소화기・안전모 등 안전 관련 물품관리 체계화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가) 황종우 증인(해양수산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NLL 인근에서 어업 지도를 하고 있는 어업 지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조난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 실시하고 있음. 어업지도선의 승선원들은 모두 해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자격증 교육과정에 조난 대응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4) 감사원

가) 보고내용

Ⅰ. 국정조사 대상 감사 개요 및 결과

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점검

□ 감사배경

○ 국방부와 해경은 '22. 6. 16.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20. 9. 21. 발생)에 대해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

- 이에, 국방부, 해경 등의 최초 사건보고 과정·절차, 초동대응 등을 점검

□ 감사 진행경과

○ 실지감사('22. 7. 19.~10. 14., 59일*, 18명) → 수사요청 및 중간발표('22. 10. 14.) → 감사위원회의 의결('23. 10. 5.) → 감사결과 보도자료 배포('23. 12. 7.)

* 본감사: '22. 7. 19.~8. 23. / 1차 연장: 8. 24.~9. 23. / 2차 연장: 9. 26.~10. 14.

□ 주요 감사결과

○ 안보실, 해경,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 서해 공무원 생존 당시, 위기관리 매뉴얼 등에 따른 조치 미이행, 사망 인지 후에는, 실종(생존) 상태인 것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첩보에 없는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 판단

➠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 (인사자료)

-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대해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안보실 등 5개 기관의 관련자 20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요청

2.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 감사배경

○ 국가통계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품질관리가 중요하나, 언론 등에서 주택, 소득분배 통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

- 이에 국토부·통계청 등의 주요 통계 작성·활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

□ 감사 진행경과

○ 실지감사('22. 9월~'23. 3월, 83일*, 28명) → 수사요청('23. 9. 13.) → 중간발표('23. 9. 15.) → 감사위원회의 의결('25. 4. 10.) → 감사결과 보도자료 배포('25. 4. 17.)

* 본감사: '22. 9. 26.~10. 25. / 1차 연장: 10. 31.~11. 18. / 2차 연장: 11. 21.~12. 16. / 3차 연장: '23. 2. 20.~3. 10. / 4차 연장: 3. 13.~3. 31.

□ 주요 감사결과

○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 관계기관에서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고 변동률 등을 수정하거나, 가계동향조사 통계의 가계소득 및 소득 5분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의 변동요인(보도자료) 등도 수정

➠ 대통령비서실 등 4개 기관의 관련자 31명에 대해 징계, 통보(인사자료)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대해 통계작성·공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등

※ 대통령비서실 등 4개 기관의 총 2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

Ⅱ. 「감사원 운영쇄신 TF」 점검결과

1. TF 활동 개요

□ 목적 및 임무

○ 그간 논란과 비판이 제기된 감사사항 및 인사권·감찰권 남용 등에 대해 감사원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하여 운영쇄신 TF를 구성

-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11조에 따라 국토환경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운영(42명, '25. 9. 16.~12. 5.)

➠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등 쇄신방안 마련

□ 점검 범위

○ 표적감사, 강압감사 등 논란이 제기되었던 「7대 감사사항*」의 감사 사무처리(다만,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사항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 「월성」, 「권익위」, 「서해」, 「사드」, 「GP」, 「관저」, 「통계」

○ 직원의 사기 저하 및 불만을 가져온 「인사권·감찰권」 남용

□ 활동 경과

○ 감사원 소속 직원 대상으로 90건의 익명 의견을 수렴('25. 9. 17.~24.)

○ 외부 전문가 8명(학계·언론·시민단체 등) 위촉, 자문회의 개최('25. 11. 19.)

- 책임규명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의견을 TF 활동 결과에 반영

○ 점검결과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중간발표('25. 11. 20., 26.)하고, 최종 결과발표*(12. 3.)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포함

*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점검결과 발표와 함께 무리한 감사로 고통받은 관련자에게 사과

2. 주요 점검결과

가. 점검결과 총괄

○ 점검 대상 감사사항은 前 사무총장 주도*로 비정상적 감사착수,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운영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려웠음

* 인사·감찰권을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장은 이에 동조

비판 사유	감사사항별 특징
비정상적 감사착수 및 특조국 활용	▪「**서해**」: 前 총장 지시로 특조 감사착수, 이에 따라 검찰도 수사개시 ▪「권익위/사드/GP」: 언론 등의 논란 제기 후 특조국에서 감사착수 ▪「사드/GP」: 前 총장 지시로 감사가능하게 규정 개정 후 특조국 감사착수
수사요청 후 언론발표	▪「**서해**/**통계**/권익위」: 고위직 수사요청 대상자를 특정하여 발표 ▪「GP」: 前 총장 주도로 특정 언론사에 수사요청 내용 유출 의심
과도한 감사운영기간	▪7대 감사 평균은 544일로 같은 기간 전체 평균 252일의 2.2배
감사위원회의 패싱	▪「**서해**」: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하였는데도 보도자료 배포 ▪「권익위」: 사무처가 전산을 조작, 주심 감사위원 열람결재권 패싱 ▪「월성」: 감사위원회의에서 송부 않기로 한 자료를 수사참고자료로 송부
봐주기 감사	▪「관저」 : 기존 방침과 달리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 지시, 포렌식 미실시

○ 이에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고, 이는 감사원의 대국민 신뢰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

* '25. 9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결과 감사원의 신뢰도는 10점 중 4.08점으로 검찰(3.06)을 제외한 최하 수준

나. 비정상적 감사운영의 원인

□ 강압적 리더십으로 인한 감사원의 내부통제 시스템 무력화

○ **(감사위원회의 무력화)** 前 사무총장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유명무실화하거나 결재라인을 패싱(서해, 권익위)

○ **(내부통제 형해화)** 이러한 과정에서 감사원이 그간 구축해온 각종 내부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회피하는 등 형해화* (서해, 통계, 권익위, GP)

* 법률자문관 검토 등 수사요청 관련 통제절차 미준수, 디지털 포렌식 실시 규정 완화 등

○ **(강압적 리더십으로 조직 장악)** 인사·감찰권을 남용하여 前 사무총장의 의사에 반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감찰조치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

□ 무차별적 감사가 가능한 조직 활용

○ 특별조사국은 특정 기관에 대한 업무분장 없이 감사기간·범위에 제한을 크게 받지 않고 직무감찰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제

- 통제가 미흡하면 강압감사 등으로 과잉 발현되거나 정치·표적감사에 반복 동원(서해, 통계, 권익위, 사드, GP)

□ 비리 적발 감사문화 조장 및 성과 압박

○ 지난 3년간 감사원 지휘부는 고위직 비리 적발 감사를 강조하고 해당 분야에 감사 자원을 집중 투입

- 승진·유학 등 인사상 보상도 집중, 고발·수사요청 등을 하여야 능력 있는 감사인이라는 분위기 조성

다. 개별 감사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점검

□ 감사 중 취득한 군사기밀 누설

○ (1차 군사기밀 누설) 서해감사팀은 '22. 10월 검찰에 국방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죄혐의로 수사요청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

- 보도자료에는 감청정보 분석자료 등 군사기밀(Ⅱ급)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비밀내용 공개를 위한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내용을 그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누설

○ (2차 군사기밀 누설) 수사요청 1년 후 '23. 10월 감사위원회의에서 군사기밀(Ⅱ급)이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감사결과를 '비공개 결정' 하였는데도

- '22. 10월 수사요청서에 포함되었던 군사기밀(Ⅱ급)의 내용을 다시 포함하여 '23. 12월 '주요 감사결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군사기밀을 재차 누설

□ 대변인실에 군사기밀이 포함된 보도자료 배포 지시 등

○ (1차 배포지시) '22. 10월 수사요청 보도자료 배포 전 회의(사무총장 주재) 당시 '군사기밀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도 '22. 10. 13. 군사기밀(Ⅱ급)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대변인실에 공개 지시

○ (2차 배포지시) '23. 10월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 된 감사결과를 대변인실로 하여금 '23. 12. 6. 배포하도록 재차 지시

➠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관련자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 운영쇄신 TF는 통계감사와 관련한 강압감사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감사 도중 취득·생산한 문답서 등* 증거자료를 전수 확인

* 증거서류 52권 23,677페이지, 녹취록 및 녹음파일 1,000여 분(486개), 문답 녹화영상 5,100여 분(91개) 및 녹음 4,400여 분(44개) 분량 등

- 당시 피감사자 대상 면담조사도 실시하려 했으나, 일부 대상자들이 면담을 거부*함에 따라 원활한 조사 진행 불가

* "감사 당시를 떠올리기가 싫다", "재판중"이라는 등의 사유로 인해 피감사자 진술 미확인

○ 다만, 통계감사 관련 재판에서 강압감사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드러나거나, 피감사자가 강압감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 상존

- 이에 따라 강압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담당관실로 이관, 재판결과 등 모니터링 및 추후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인사상 조치를 할 계획

※ 감사착수·기간 및 범위, 증거수집 및 채택, 감사결과 발표 시기 등도 점검했으나, 위법·부당사항 미발견

3. 제도개선 추진상황

❖ TF 점검 결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

□ 특별조사국 폐지 등 조직개편

○ **(점검결과)** 특별조사국은 특정 기관에 대한 업무분장 없이 감사기간·범위에 제한을 크게 받지 않고 직무감찰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수행

○ **(추진상황)** 본연의 "대인감찰 및 부패차단" 임무수행에 중점을 둔 반부패조사국으로 전면 재설계, 기존 5개 과를 3개 과로 축소·개편('26. 2월)

- 공직사회 및 국회·기업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담당부서를 보강(1개 과→2개 과)하고, 국회협력 담당관을 신설(1개 과)

□ 감사착수·수사요청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통제 강화

○ **(점검결과)** 연간감사계획(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반영되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점검」 등은 前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감사착수

- 감사위원회의를 거치지 않는 수사요청이 급증('21년 39명→

'24년 146명)하고, 수사요청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여 당사자의 권익침해 발생

○ **(추진상황)** 연간감사계획 외에 연중 추가되는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감사원 규칙 개정 예정('26. 4월)

*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실시 여부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보고를 거치도록 개선('25. 12월)

- 불가피하게 수사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간발표도 감사위원회의 보고 대상에 포함('26. 4월 규정 개정 예정)

□ 감사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점검결과)** 서해·통계 감사 등 7대 감사는 감사운영기간이 평균 544일로 과도하고, 부적절한 언행·밤샘조사 등으로 피조사자의 인권침해사례 발생

- 또한, 前 사무총장 취임 후 구체적 실시기준 삭제 등으로 포렌식이 크게 증가하고, 수사요청을 하면서 포렌식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

○ **(추진상황)** 디지털 자료는 현장에서 원본으로부터 선별·추출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증거서류 제공 시 포렌식 결과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정('26. 1월)

- 실지감사 종료 후 후속 감사출장에 대해서는 출장통제부서가

목적·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간·인원을 엄격히 사전 통제('26. 2월 시행)

-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피감사자에 대한 적절한 언행, 조사 횟수·시간·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 개정 예정)

□ 행정 현장의 이해와 공감 제고를 위해 대상기관 파견근무 도입

○ **(점검결과)** 감사원 직원은 행정사무 경험 없이 근무를 시작함으로써 행정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를 실시

- 이에 따라 '비현실적 지적', '고압적 감사' 등을 한다는 불만·비판 제기

○ **(추진상황)** '26. 4. 1.부터 국방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파견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5급 직원 위주로 선발·파견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계획인사교류제도를 활용하여 대상기관 직원과 감사원 직원 교류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가) 정상우 증인(감사원 사무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6월 17일 김태효 지시로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사건 조사 결과를 번복해서 발표한 바로 다음날 감사원이 해당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것이 맞는지?	○ 그러함. 그때 지시가 이루어졌음.
○ 당시 감사원이 첩보입수부대에 가서, 첩보입수부대가 어디 있는지 아는지?	○ 알고 있음. 쓰리세븐 부대임.

(2) 통계조작 의혹 사건 관련

(가) 정상우 증인(감사원 사무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감사원의 본질적인 임무는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이고, 때로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 맞음.
○ 이러한 고발은 적법한 감사에 따른 고발이고, 적법한 감사 없는 고발은 당연히 안되는 것인지?	○ 맞음.
○ 2025년 12월 감사원 운영 쇄신 TF 활동 경과 종합 보고에 있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것처럼 표적감사라고 인정하셨는지?	
○ 평균적인 감사 기간이 252일인데, 통계 조작사건 이 건은 932일이 걸렸음. 청와대와 관련해 행정관들이 변동률 조작에 정책실장이 전혀 관여된 것이 없는데 두 사람을 변동률 조작과 관련해서 기소를 하여 수사 요청이 이루어졌음. 또한 감사원의 표적 및 강압 감사와 관련해서 육아휴직 중이던 여직원을 오전 9시 34분에 데려와서 다음날 새벽 6시 9분까지 감사를 하게 됨.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잘 생각해 봐라, 통계 업무가 날아가면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협박성 용어를 통해 강압적인 감사를 한 것이 마찬가지로 감사원 운영 쇄신 TF에 나오는 보고 내용이 맞는지?	○ 맞음.
○ 감사원 타이거파에서 강압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진 것은 확인된 것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나 형사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검찰의 경우에는 인권침해 TF에서 이 통계 관련 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 육아휴직인 직원을 아침 9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조사를 하였으나, 당사자의 동의를 전부 다 받은 것임. 6시 넘으면 시간외 조사 동의를 받고 9시 넘으면 계속 조사 동의를 받고, 밤 12시가 넘으면 심야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감찰이 필요하다고 봄.	사 요청서 동의를 받음. 그래서 세 차례 동의를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어긴 것은 없음. 다만 외견상으로 이것이 강압감사로 보여짐. 어머니 이야기도 마찬가지임. 어머니 이야기는 감사관이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고 피감자가 먼저 꺼낸 것임. 후속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피감자 분들에게 강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려고 접촉을 하였으나, '감사원 사람 상대하기 싫다, 재판 중이다'라는 이유로 거의 다 거부를 하였음. 15명 중 8명이 거부를 함. 마지막으로, 저런 발언 정도가 문서에 남아있다는 것 정도로 감사원 직원을 징계하기는 어려움. 그래서 현재로서는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감사 당시 사무총장이 누구인지?	○ 유병호임.
○ 감사원 운영 쇄신 TF 활동 경과에 보면,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이후 부적절한 언행, 진술 강요, 밤샘 조사 등 피조사자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 기우제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식 감사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나오는데, 맞는지?	
○ 특별감사의 절차적 위법이 있음.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한 감사기간 이후에도 검찰에 제공할 증거 수집을 위한 집중적 감사를 진행한 것은 감사원법 제27조 위법인지? 감사원법 제27조제5항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임. 감사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검찰의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정상적인 감사활동이 아니다라고 조사한 것인지?	○ 맞음. 감사는 자료 조사를 한 다음에 현장 감사를 하고 들어와서 보고서를 써서 위원회를 통과시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 수사 요청을 하면서 검찰에 제공할 서류를 복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후에야 수사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수사 요청이었다는 내용이 있음. 이것도 그러면 감사 자체가 수사 요청이 위법하다고 감사원에서는 점검하신 것인지?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타이거파들의 감사 실태 및 감사원 감사관들이 검찰과 협조를 해서 검찰이 압수해 나갈 자료들을 잘 모아놓고 의도에 맞는 자료만 가져가는 것 등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할 말이 있는지?	○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임. 지난 번 감사할 때에는 이런 내용들의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나) 손종국 증인(감사원 외교국방1과 감사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통계조작 사건 조사을 진행하였는지? 강압조사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 당시 무슨 일을 하였는지?	○ 부동산 쪽에 현장 조사를 담당하였음.
○ 부동산 쪽에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 감사관들은 사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감사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나, 피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다시 생각해 봐야할 것 같음.
○ 잠 안 재우기식 조사, 기우제식 조사를 했다고 감사원 운영 쇄신 TF 활동 경과에 나와있음. 본인이 했던 최장시간 조사는 몇 시까지 하였는지?	○ 초저녁에 문답을 마쳤는데 새벽까지 진행한 적은 있음.
○ 이주희 의원 제시한 카톡 편집 장면 관련해서, 증인이 저 카톡을 편집 및 조작한 사실이 없	○ 없음. 본 적도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지?	
○ 오늘 증인 선서를 한 손종국 증인 저 카톡 자료를 담당한 감사관이 맞는지?	○ 카톡자료는 포렌식 팀에서 한꺼번에 다 주어진 것이고, 부동산원 관계자는 제가 문답을 진행했었고 그 수많은 자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제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재는 없음.
○ 포렌식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를 받으면 그것을 검사실에서 하는 포렌식처럼 분석을 하는 것인지?	○ 정확한 절차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름. 그리고 포렌식을 한 적도 없음.
○ 포렌식하는 센터가 감사원 내에 있는지?	○ 전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음.
○ 감사는 영장 없이 동의만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내부적으로 통제를 받고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음.
○ 음주 후 감사하신 적이 있는지?	○ 없음.

(다) 윤휘철 증인(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통계조작 사건 조사을 진행하였는지? 강압조사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사하였음. 강압 조사하지 않았음.
○ 당시 무슨 일을 하였는지?	○ 주택 통계 분야 감사하였음.
○ 감사하면서 포렌식 한 것이 있는지?	○ 감사관들이 직접 포렌식 하는 것은 아니고 포렌식 대상 기관 직원들이 동의를 해서 컴퓨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를 내면 별도로 함.
○ 동의 받아서 포렌식 한 것이 있는지?	○ 감사한 지 오래 되어서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지, 다 기억하지는 못함.
○ 본인이 했던 최장시간 조사는 몇 시까지 하였는지?	○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새벽 3시 내외 정도까지 한번 한 적이 있음.
○ 이주희 의원 제시한 카톡 편집 장면 관련해서, 증인이 저 카톡을 편집 및 조작한 사실이 없는지?	○ 없음. 본적도 없음.
○ 음주 후 감사하신 적이 있는지?	○ 없음.

(라) 이상훈 증인(감사원 심사2담당관실 감사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통계조작 사건 조사을 진행하였는지? 강압조사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사하였음.
○ 당시 무슨 일을 하였는지?	○ 주택 통계 분야 감사하였음.
○ 본인이 했던 최장시간 조사는 몇 시까지 하였는지?	○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새벽 두세시 정도까지 한 적이 있음.
○ 이주희 의원 제시한 카톡 편집 장면 관련해서, 증인이 저 카톡을 편집 및 조작한 사실이 없는지?	○ 없음.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음. 카톡 원본을 보았음.
○ 카톡 원본이 짜깁기 되어서 지금 수사 자료에 있는 것인지?	○ 그 관계는 알지 못함. 부동산원 관련 그 분 조사한 적이 없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음.
○ 음주 후 감사하신 적이 있는지?	○ 없음.

(마) 장문기 증인(감사원 부감사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통계조작 사건 조사을 진행하였는지? 강압조사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 사정 불문하고 당사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 당시 무슨 일을 하였는지?	○ 현재 휴직 중이고, 당시 주택분야 감사하였음.
○ 이주희 의원 제시한 카톡 편집 장면 관련해서, 증인이 저 카톡을 편집 및 조작한 사실이 없는지?	○ 저 카톡은 처음 보는 것이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음.
○ 음주 후 감사하신 적이 있는지?	○ 없음.

5) 국가정보원

가) 보고내용: 2급 비밀로 기관보고 시 별도 배포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가) 김호홍 증인(국가정보원 제2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정원에 검찰 출신들이 들어와서 감찰부서를 장악했는지? 당시 이석범 감찰실장 대신 감찰기획관이 들어왔는지?	○ 그런 적이 있음.
○ 국정원 차장이 보고하였다시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조사상황 및 향후 계획' 이라는 문서를 최혁이 들고 갔는지, 김규현이 들고갔는지?	○ 김규현 원장이 보고하러 간 것임.
○ 김규현 원장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本' 이 문서를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고, 대통령이 7월 5일 09시 30분 고발 지시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 그러함.
○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 맞음. 그 다음날 고발하였음.
○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자료가 국정원 자료인지?	○ 맞음. 전 정부 때 국정원에서 보고한 자료임.
○ 2022년 7월 6일 국정원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 당시 감찰심의관으로 최혁 검사가 파견되어 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되는데, 그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가 누구인지 아는지?	
○ 최혁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을 와서 서해 사건과 관련된 것을 감찰하였는지?	○ 여러가지 감찰을 했는데, 서해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음.
○ 국정원에 감찰을 했던 검사들이 나중에 공소까지 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기획수사라고 볼 수 있음. 여기에 2022년 7월 4일 이희동 부장검사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 정식 발령을 받게 되는데, 그 이전 6월말부터 중앙지검에서 관련 문건을 검토하게 됨. 최혁 검사가 7월 4일 발령받고, 7월 6일 국정원에서 박지원, 서훈 안보실장을 고발하게 됨. 이것은 검찰과 국정원에 파견된 감찰, 중앙지검에 있는 이희동 검사가 함께 연합 구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 미리 계획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본인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저희 국정원에 파견 검사가 왔었고 그 파견 검사가 이 건에 대해서 감찰을 하였고, 이러한 팩트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음.
○ 2022년 7월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 지시를 누가 한 것인지?	○ 7월 5일 김규현 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
○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서해 피격 관련해서 자료를 다 없애라는 등 은폐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였는데, 그 자료 지금 국정원에 있고. 모두 확인 가능	○ 그러함. 그대로 다 있음. 확인 가능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은폐라든지 삭제를 지시한 적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한 정보인지?	
○ 최혁 검사에게 고발을 지시한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규현 전 국정원장인지?	○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은 것은 국정원장이 지시를 하는 것이 보고체계상 맞다고 생각함.
○ 2022년 7월 5일 김규현 전 원장은 보고를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통령에게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고, 그것을 들어 7월 6일에 국정원장이 최혁 검사에게 고발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 맞는지?	○ 맞음. 수사 의뢰를 보고하였는데, 고발 지시가 온 것임.
○ 최혁 검사는 부산지검 특수통 출신인데 맞는지?	○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함.
○ 1심 판결문 재판부 강조사항 1 페이지를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함’임. 이것은 사건의 실체와 달리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증가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임. 아까 국정원의 첩보와 보고서에 대한 삭제 지시를 안했다고 했는데 맞는지?	○ 삭제 지시는 없었음.
○ 판결문을 보면 삭제를 지시했는데 다만 원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나옴. 즉, 삭제 지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 아님.	○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국정원이 지난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내부 감찰을 했는지?	
○ 특별 감사 종료일은 10월 30일이었는지?	○ 11월 30일임.
○ 6월부터 11월 30일, 그런데 감사가 끝나기도 전인 9월 16일에 제1심 재판부에서 특별감사 결과를 서둘러 제출하였는지?	○ 그것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원에 요청이 와서. 국정원은 법에 따라 제출을 한 것임.
○ 당시 박지원 피고인이 '곧 재판부에 낼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것을 들었는지? 감사에 참여한 사람은 000 2급 감사관 그리고 000 1차장이 맞는지?	○ 듣지 못했음. 확인해 줄 수 없음.
○ 감사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인데, 재판부가 내라고 했기 때문에 9월에 서둘러 감사를 종료한 것인지?	○ 국정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검토해서 그렇게 제출한 것임.
○ 당시 감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박○○, 이○○인데, 박지원·노은채 피고인들의 측근들, 비서실장들 아닌지? 이렇게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을 감사시킨다는 것이 맞는지?	○ 당시 특별감사팀 구성은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감사의 경험이 가장 많은 직원들을 선발한 것임. 이해충돌은 없다고 생각했고 가장 전문성 있고 가장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음.
○ 이해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함. 이 사건 감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승진한 것이 맞는지?	○ 맞음. 국정원 내부 인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특별감사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월북으로 몰고간 사실이 없다고 1심 판결문에 나온 것인지? 서훈 감옥에 갔는지?	○ 특별감사를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음. 네. 서훈은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음.
○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TF 팀장, TF 팀원들한테 보안 차원 유지 회수 조치였고, 삭제가 아니었다는 그런 진술을 한 것이 맞는지?	○ 맞음. 그런 진술이 많이 있었음.
○ 국정원의 보고서에 김규현이 자필로 '윤 뭐 V 지시, 검찰 고발할 것' 이렇게 적어두었는지?	○ 그 필적은 김규현 원자의 필적은 아니고 그때 수사했던 수사담당관 또는 조사담당관의 필적으로 보임.
○ 최혁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되어서 한 일이 무엇인지?	○ 감찰심의관으로서 기본적인 일과 함께 정상화 TF 활동 거기에 주력을 하였음.
○ 특별감사 결과 몇가지 확인하겠음. 최혁 검사가 실질 감찰부서장으로 파견되어서 국정원, 검찰 간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 맞는지?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된 거 말씀해 주기 바람.	○ 맞음. 감찰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함. 감사정책관이 말씀드리겠음.
○ 박지원 전 원장의 지시도 삭제가 아니고 첩보 출처의 민감성을 고려한 보완 조치로 기재되어 있는지?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검찰은 23년 10월 국정원 직원의 증인 출석에 앞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는 기존 진술조서 복사본을 주면서 증언 방향을 미리 환기시켰다는 것이 맞는지?	○ 특별감사 결과 내용이 거의 그대로임.
○ 당시 상위 직급으로 감찰실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위직급인 감찰심의관이 TF를 총괄한 것은 권한 침해가 아닌지?	○ 일단 규정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박지원 원장의 자료 삭제 지시 및 고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 첫째, 박지원 원장의 삭제 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국정원 많은 직원들이 삭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음. 또 하나는 삭제 지시를 만약 하였다면 처음에 보고서를 배포하였을 때 저장했다든지 아니면 복사했다든지 하는 직원도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찾아서 그걸 다 없애 버렸을 것인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음. 마지막으로, 아까 폐쇄망에 그냥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으면 언제든지 이 보고서는 배포가 되고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한 상태임.
○ 서해 공무원이 북쪽으로 갔다고 국정원에서 인지한 때가 언	○ 9월 22일 오후 4시 55분에 우리가 표류 인원이 발견되었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제인지?	는 첩보를 입수하였음.
○ 오후 4시 55분에 첩보를 입수하고, 당일 21시에 소사당했는데, 그 7시간 동안 국정원이 무엇을 하였는지? 국정원 차원에서 북한에서 소통하였는지?	○ 저희는 회의 참석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같이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당시 월북 관련 첩보 회수는 배포처 통제에 따른 것임. 국가정보원에서 배포처 통제를 위해 회수하면 해당 문서가 삭제되는지?	○ 삭제되지 않음.
○ SI 회수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다시 첩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 가능함.
○ 역대 대통령 중 국정원장에게 직접 고발 지시를 한 사례가 있는지?	○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 인력에 대한 22건의 인사명령을 살펴보면, 다수의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되었는데, 역대에 이와 같이 파견검사가 많았던 사례가 있는지?	○ 이렇게 많이 파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나) ○○○ 증인(국가정보원 감사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정원에 검찰 출신들이 들어와서 감찰부서를 장악했는지?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당시 이석범 감찰실장 대신 감찰기획관이 들어왔는지?	

(다) ○○○ 증인(전 국가정보원 감사책임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검찰이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수사 단계에서 입을 막았다는 의혹이 있음. 입맛에 맞는 사람만 증인석에 앉혔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혹시 검찰에서 직원들에게 정답지를 나눠주고 이대로 증언해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 그런 부분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없음.
○ 검찰에서 진술조서를 교부해서 이렇게 증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 진술조서 복사본을 받아온 적은 한 번 있었음.
○ 중국 어선 승선 현황 같은 증거들은 공소장에서 뺐는데 진술을 맞추고 보완조치였다라고 하면서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 못 가게 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못가게 한 부분들이 있는지?	○ 직원들 중 어떤 진술을 한 직원이 있는데 그 진술을 한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들은 조금 있었음.
○ 첩보 원본은 모두 국정원 첩보망에 남아있는지?	○ 그러함.

6) 대검찰청

가) 보고내용

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사건 개요

○ ’20. 9.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서해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자, ’22. 6.~7. 유족과 국정원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어, 前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피격 관련 첩보·보고서를 삭제하게 하고, 수색 상황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작성·배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 수사 경과

○ 유족(’22. 6. 22.~7. 8. 3회) 및 국정원(’22. 7. 6.)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제1부)에서 약 6개월간 수사 진행

○ ’22. 12. 9. 前 국가안보실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구속기소, 前 해양경찰청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불구속기소

○ ’22. 12. 29. 前 국방부장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 前 국가정보원장, 前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각 공용 전자기록등손상, 국가정보원법위반) 각각 불구속기소

※ 이와 별개로 ’22. 10. 14. 감사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요청한 사건이 있고, 현재 수사 중임

□ 재판 경과

○ ’23. 1.~’2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진행(공판준비기일 3회, 공판기일 70회)되었고, ’25. 12. 26. 피고인 5명에 대하여 전부 무죄 선고

○ ’26. 1. 2. 서울중앙지검은 유족의 명예회복,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의 범위, 국가의 공표행위 기준 및 한계, 정책 결정에 있어서 재량 인정 필요성, 항소 실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前 국가안보실장과 前 해양경찰청장의 ①해경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와 ②사망 공무원과 유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항소 제기

○ ’26.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예정

Ⅱ 국가통계 조작 사건

□ 사건 개요

○ 감사원은 ’22. 9.부터 ’23. 8.까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3. 9.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였음

○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 대통령실, 국토부의 고위공직자였던 피고인들이 부동산원 등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율을 낮추게 하는 등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여,

- ’24. 3. 14. 前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을 통계법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하였음

※ 11명은 혐의없음 처분

○ 이 사건은 ’24. 5.부터 현재까지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4회 공판준비기일 및 19회 공판기일을 진행함

□ 감사원 수사요청 및 검찰 기소 범위

○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요청 범위 내에서 일부 사실을 기소하고, 일부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함

○ 감사원 수사요청서에 없었던 내용을 기소한 것은 '주택통계'에 있어 前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前 대통령비서실 주택도시비서관의 '19. 4. 19.자 범행 1건으로, 수사결과 추가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하였음

※ 감사원 수사요청 내용과 공소사실 비교는 [별지]와 같음

○ 주택통계 관련 검찰 보도자료의 범행 횟수는 '125회'이고, 감사원 보도자료의 범행 횟수는 '94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으나, 감사원 보도자료는 확실한 것만 '최소 94회'라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어서, 실제로 감사원 수사요청 외에 추가 기소한 범행은 앞서 설명한 1건만 확인됨 ▨

[별지] 감사원 수사요청 내용 및 공소사실 비교

【주택 통계】

피고인	감사원 수사요청 내용 및 공소사실 비교	
김수현 (사회수석, 정책실장)	**감사원 수사요청**	(1) '17. 6.~'19. 6. 주중조사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게 하여 영향력 행사, (2) **'18. 1.~'18. 9. 13회 가량** 영향력 행사하여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사문서등행사, 업무방해】**
	공소사실	(1) '17. 6.~'19. 6. 주중조사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게 하여 영향력 행사, (2) **'17. 11.~'19. 6. 10회** 영향력 행사함과 동시에 **8회**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 공소사실 (2) 중 ①'17. 11. / '19. 6. 범행은 상피고인에 대한 수사요청서에 있던 내용이고, ②'19. 4. 19. 범행은 수사요청서에 없던 내용이나 각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 감사원 수사요청 (2) 중 **6건**('18. 2. 23. / '18. 3. 16. / '18. 3. 23. / '18. 4. 13. / '18. 5. 25. / '18. 9. 28.)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
윤성원 (주택도시 비서관, 국토교통 비서관, 국토부차관)	**감사원 수사요청**	(1) '17. 6.~'21. 11. 주중조사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게 하여 영향력 행사, (2) **'17. 8.~'21. 8. 46회 가량** 영향력 행사하여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사문서등행사, 업무방해】**
	공소사실	(1) '17. 6.~'21. 11. 주중조사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게 하여 영향력 행사, (2) **'17. 11.~'21. 8. 36회** 영향력 행사함과 동시에 **26회**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 공소사실 (2) 중 ①'19. 4. 8. / '19. 6. / '19. 7. 초중순 / '19. 8. 초중순 / '19. 9. 하순 / '19. 11. 6. / '20. 7. 중순 중 일부 / '21. 7. 중순 중 일부 등 범행은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피고인 外 다른 위법행위 부분에 있던 내용이고, ② '19. 4. 19. 범행은 감사원 수사요청서에 없던 내용이나 각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 감사원 수사요청 (2) 중 **15건** ('18. 9. 28. / '20. 7. 17. / '20. 7. 24. / '21. 2. 15. / '21. 4. 12. / '21. 5. 17. / '21. 7. 19. / '21. 7. 27. / '21. 8. 30. / '21. 10. 18. / '21. 11. 15. / '21. 6. 28. / '21. 7. 5. / '21. 7.~8. / '21. 8. 16.)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

피고인	감사원 수사요청 내용 및 공소사실 비교	
김상조 (정책실장)	**감사원 수사요청**	(1) '19. 6.~'21. 3. 주중조사 실시 및 통계 사전제공 묵인, '20. 2.~'21. 3. 주중조사 확대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게 하여 영향력 행사 (2) **'19. 9.~'20. 12. 16회 가량** 영향력 행사하여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사문서등행사, 업무방해】**
	공소사실	(1) '20. 4.~'21. 3. 주중조사 확대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게 하여 영향력 행사, (2) **'19. 7.~'20. 10. 10회** 영향력 행사함과 동시에 **9회** 변동률을 낮추게 함**【직권남용, 통계법위반】** ※ 공소사실 (2) 중 '19. 7. 초중순 / '19. 8. 초중순 / '19. 9. 2. 등 범행은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피고인 外 다른 위법행위 부분에 있던 내용으로 각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 감사원 수사요청 (1) 중 **'주중조사 실시 및 통계 사전제공 묵인' 부분** 및 감사원 수사요청 (2) 중 6건('19. 9. / '20. 3. 20. / '20. 7. 24. / '20. 11. 13./ '20. 11. 27. / '20. 12. 4.)은 각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
하동수 (국토교통 비서관)	**감사원 수사요청**	'20. 9.~'21. 7. **14회** 가량 영향력 행사하여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사문서등행사, 업무방해】**
	공소사실	'20. 9.~'21. 7. **6회** 영향력 행사함과 동시에 **4회**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 공소사실 중 '20. 9. 중 일부 / '21. 7. 중순 등 범행은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피고인 外 다른 위법행위 부분에 있던 내용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 감사원 수사요청 중 **8건** ('20. 12. 2. / '21. 7. 14. / '21. 3. 22. / '21. 4. 16. / '21. 7. 23. / '21. 7. 30. / '21. 8. 6. / '21. 8. 27.)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감사원 수사요청**	(1) '17. 7.~'20. 12. 주중조사 실시 및 통계 사전제공 묵인, '20. 4.~12. 주중조사 확대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도록 영향력 행사 (2) **'18. 8.~'20. 11. 32회 가량** 영향력 행사하여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사문서등행사, 업무방해】**
	공소사실	(1) '20. 4.~12. 주중조사 확대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게 하여 영향력 행사, (2) **'19. 6.~'20. 7. 7회** 영향력 행사함과 동시에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 공소사실 (2) 중 '20. 2. 4. 중 일부 범행은 상피고인에 대한 감사원 수사요청서에 있던 내용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 감사원 수사요청 (1) 중 **'주중조사 실시 및 통계 사전제공 묵인' 부분** 및 감사원 수사요청 (2) 중 **25건** ('20. 10. 5. / '19. 7. / 재직 중 국토부 영향력 행사로 인한 주택통계 명세 23건)은 각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

피고인	감사원 수사요청 내용 및 공소사실 비교	
가○○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	**감사원 수사요청**	'18. 7.~'20. 1. **18회** 가량 영향력 행사하여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사문서등행사, 업무방해】**
	공소사실	'18. 7.~'20. 1. **12회**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9회**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감사원 수사요청서에 있던 내용임 ※ 감사원 수사요청 중 **6건**('18. 8. 31. / '18. 9. 7. / '18. 8. 23. / '18. 10. 18. / '18. 10. 19. / '19. 7. 12. 범행)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
나○○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	**감사원 수사요청**	**'19. 5.~'20. 10. 16회** 가량 영향력 행사하여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사문서등행사, 업무방해】**
	공소사실	**'18. 10.~'20. 6. 7회**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5회**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 공소사실 중 '20. 2. 4. 중 일부 / '18. 10. 19. / '19. 6. 28. 등 범행은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피고인 外 다른 위법행위 부분에 있던 내용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 감사원 수사요청 중 **12건**('20. 3. 27. / '20. 6. 26. / '20. 7. 14. / '20. 7. 24. / '20. 8. 7. / '20. 8. 11. / '20. 8. 18. / '20. 8. 25. / '20. 9. 24. / '20. 10. 13. / '19. 6. 24. / '19. 11. 8.)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

※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기준으로 감사원 수사요청 혐의사실과의 차이를 정리한 것으로, 불기소 처분한 범죄사실은 제외하였음

【고용 통계】

피고인	감사원 수사요청 내용 및 공소사실 비교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감사원** **수사요청**	'19. 10. 전년 대비 기간제 79만 명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87만 명 증가가 예상되자, '병행조사'가 원인인지 불명확함에도 통계청으로 하여금 마치 병행조사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응답한 인원이 늘어나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 **강신욱** (통계청장)	**공소사실**	상동

※ 불기소 처분 없음

【소득 통계】

피고인	감사원 수사요청 내용 및 공소사실 비교	
홍장표 (경제수석)	**감사원** **수사요청**	'18. 5. 발표된 2018년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으로 확인되자 통계청 직원으로 하여금 통계법 절차를 위반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등에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함 **【직권남용】**
	공소사실	상동

※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 기준으로 감사원 수사요청 혐의사실과의 차이를 정리한 것으로, 불기소 처분한 범죄사실은 제외함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가) 이희동 증인(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주임검사였는지? 이것이 조작인지 확실하게 말씀 부탁함.	○ 당시 유족의 고발이 있어서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조작 및 왜곡은 없었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나왔는지?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
○ 윤석열 정부 때 수사검사의 조작 기소다, 아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본인의 입장은 어떠한지?	○ 일단 저희 단계에서는 유족의 고발을 받고 통상적인 절차대로 수사하였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어업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되어서 사망하고 사체가 소각되었는데, 그 이틀 후에 월북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그렇게까지 이틀 만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음. 그리고 해경 직원들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할 상황이 아니라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
○ 고 이대준 씨는 왜 NLL 북방한계선 위에 가게 된 것인지?	○ 그 부분이 항소해서 항소심 중에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한 가지만 말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드리면 저희가 확보한 증거로는 고 이대준 씨가 9월 22일 사망하였는데 18일에 8살 된 딸과 통화를 하면서 24일에 생일선물을 사 가지고 가겠다고 한 통화도 확인이 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고의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임.
○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실수인지 그리고 구명조끼나 이런건 입고 있었다고 하였는지?	○ 구명조끼는 무궁화호에 그대로 있었음. 나중에 확인된 것이 구명조끼에는 중국어가 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궁화호의 구명조끼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음. 무궁화호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은 것이 아니고 떨어진 다음에 헤엄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입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 판단하고 있음.
○ 실족으로 생각하는지?	○ 제 생각으로는 실족을 해서 표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함.
○ 고 이대준씨의 형님 되시는 분이 고발했고, 국정원 고발도 같이 들어왔는지?	○ 국정원에서 고발한 것은 국정원 내에 자료 파기에 대해서만 들어온 것임.
○ 언제 고발이 들어왔는지?	○ 본인이 7월 4일에 부임하였는데 유족 고발은 그 전에 있었고, 국정원 고발은 7월 6일 즈음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감찰 부서에서 2022년 7월 국정원 직원 검찰 출석 시에 밀봉된 봉투를 주며 전달토록 하였으나 검사가 압수 목록을 미교부 하였다고 하였음. 인정하는지?	○ 이는 재판에서 소명이 되었는데, 압수 목록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자료는 나중에 법원의 증거로 활용이 되었는지?	○ 본인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음.
○ 검찰은 2023년 10월 국정원 직원의 증인 출석에 앞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는 기존 진술조서 복사본을 주면서 증언 방향을 미리 환기해 준 사실이 있는지?	○ 재판에서 다 설명이 되었을 것이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음. 2023년 7월에 다른 곳으로 옮겨서, 2023년 10월 일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님.
○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수사를 하였는지?	○ 하였음.
○ 당시 중앙지검 공공수사의 일부였는지?	○ 맞음.
○ 그 당시에 부장이었는지?	○ 부장이었음.
○ 당시 차장검사와 지검장이 누구였는지?	○ 차장검사는 박기동 검사, 지검장은 송경호 검사였음.
○ 당시 수사팀은 좀 방대하게 꾸린 것 같은데, 총 몇 명이었는지?	○ 저까지 10명이었음.
○ 수사팀 구성 지시는 누가 하였는지?	○ 제가 요청도 하고, 차장과 검사장한테 인원이 부족해서 하기 어렵다고도 했음.
○ 당시 수사를 진행하면서 윤석열 직접 고발 지시가 국정원에	○ 전혀 몰랐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되었는지?	
○ 이 사건 관련해서 고 이대준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은 실족이라고 보는지?	○ 그러함.
○ 아까 실족이라고 증언은 했는데, 검찰은 법정에서 어떠한 입장인지?	○ 자진해서 월북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임.
○ 1심 재판에 조도준 검사는 '검찰은 실족이라고 말한 적 없다. 수사 및 공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서에 보면 나옴. 동료 검사가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실족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그 내용은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움.
○ 이 사건을 어떤 모종의 압력을 받아서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하니, 법리에 반하는 것이 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소한 것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압력을 받았다면 유족들의 고발장, 피해 회복을 위한 그런 것임.
○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항소를 하지 않았고, 허위공문서 작성만 항소한 것인지?	○ 맞음.
○ 그렇다면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는 이미 증인도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겠다는 입장인지? 왜 이와 관련한 항소는 포기한 것	○ 법원의 판단을 수응하는 입장은 아님. 그리고 항소 과정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아서 항소 포기 관련 내용은 잘 모름. 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인지?	약 항소를 했다면 다른 판단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함.
○ 증인이 수사팀을 스스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것이 맞는지?	○ 그러함.
○ 국민의 억울함은 국가가 풀어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수사를 한 것인지?	○ 그러함. 통상적인 고발장을 받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였음.
○ 38km나 되는데, 서해 공무원이 이 거리를 어떻게 갔다고 생각하는지?	○ 조류에 의해서 갔을 것으로 생각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월북 의사로 생각했다면 도저히 뛰어들 수 없는 거리임. 그래서 이는 실족한 것이고, 조류에 의해서 갔다고 생각함.
○ 서해 공무원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는 어떻게 입었는지?	○ 중국어가 쓰여져 있는 구명조끼였는데, 확보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 이희동 검사는 2022년 7월 4일에 반부패1부장으로 인사발령되었는데, 2022년 6월부터 이미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음. 사실인지?	○ 인사명령 전에는 불가능함.
○ 수사팀인 이희동 검사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실족이라고 본 것은 실족이면 자진월북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그럼에도 공소장에서 실족이 제외된 것은 실족의 객관적 증거와 정황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	○ 월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사팀과 공판팀의 의견이 일치하였음. 공판팀은 실족인지 자살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문이 아닌지?	
○ 당시 해류는 우리 해역 쪽으로 흘렀다고 알고 있는데, 북쪽으로 흘렀는지, 아니면 남동쪽으로 흘렀는지?	○ 북쪽으로 흘렀음. 해류가 남동으로 흐르면 그것을 거슬러서 북으로 가기 쉽지 않음.
○ ‘피고인 서훈 등은 2020년 9월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까지 사이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강건작으로부터 수색 상황에 대해 조류 방향이 남쪽으로 흘러 연평도 인근 NLL 남쪽으로 수색하고 있었고 대공 용의점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공소장에 쓰여져 있는데, 이 공소장은 누가 쓴 것인지?	○ 제가 쓴 것임.
○ 실제로 어디에서 북쪽으로 흘렀다고 확인했는지, 무엇을 통해 확인하신 것인지? 본인이 그냥 생각한 것인지?	○ 북한으로 흐른 것은 맞는데, 확인해서 이따가 보고드리겠음. /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겠음. 반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도는데 남쪽으로 해류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위로 올라갈 때는 북한으로 갈 수도 있음. 그래서 남쪽 및 북쪽 가능성이 모두 있는데, 더미 실험 즉 물건을 던져서 했을 때 북한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도저히 물살을 거스르고 북한으로 갈 수는 없음. 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가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고 이대준 씨가 떨어졌을 때는 반시계 방향에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북한으로 그 물살을 타고 갔다고 기억하는 것임. 남쪽으로 유속이 있을 경우에 유속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러 헤엄쳐서 북한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함.
○ 오늘 명확하게 위증했음. 지난번 관봉권 띠지 때도 '위원님, 저것은 2018년 돈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이후의 돈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사하고 피해를 줬는지 윤석열이 지시한 거고 그걸 김태호, 주진우가 지시한 것임.	○ 지난 번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님. 전혀 그렇지 않음.

(나) 최혁 증인(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6월 13일 국정원 감찰부서 책임자로서 정상화 TF 가동에서 책임자인지?	○ 맞음. 본인이 TF 장으로서 TF 총괄하였음.
○ 그 당시 월북 몰이, 첩보 삭제 지시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였는지?	○ 서해 사건 관련해서 직무감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음.
○ 국정원 특별점검 결과에 의하면, 당시 보안 유지 차원의 접	○ 본인 기억으로는 당시에 그런 진술은 없었고, 삭제 지시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수 회수 조치였다는 국정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첩보 보고서 삭제 결론 내렸다고 아까 보고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였는지?	받았다는 진술만 확인하였음.
○ 당시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TF 팀장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는지?	○ 기억이 나지 않음.
○ 당시 3차장실 지시가 은폐를 위한 첩보 삭제가 아니라, 보안 강화를 위한 배포 제한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었다는 것임. 이 자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 삭제 지시가 있는 그런 자료를 본 기억은 나는데, 지금 말씀한 그런 자료를 본 기억은 없음.
○ 밀봉해서 국정원이 검찰에 전달한 봉투 내용이 무엇인지?	○ 그 당시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한 적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억나지 않음.
○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감사관인지, 감사실장인지?	○ 감찰심의관임.
○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은 누가 작성하였는지?	○ 고발장 작성은 저희 TF에서 총괄해서 작성하였고, 제가 총괄하였음. 당시 감찰실장으로 이석근 실장님이 있었고, TF와 관련된 것은 총괄은 제가 하지만 일반 감찰실 업무는 매주 회의하고 보고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음.
○ 본인이 마지막에 최후 검수를 하였다는 것인지?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정보 첩보의 제한 때문이지, 원본은 그대로 있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다운받아서 접근을 하고 활용을 했다는 것이 결론이 맞는지?	○ 그러함.
○ 고발장을 쓰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며칠만에 작성한 것인지?	○ 하루이틀 정도 였던 것 같음.
○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건 담당시, 자료가 현존하고 있는지 조사했는지?	○ 현존을 확인하였음. 다른 폐쇄망에 있는데, 그 폐쇄망 자체는 극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별도의 망임.
○ 고발장을 쓸 때, 폐쇄망이 존재한다고 썼는지?	○ 저희는 그것을 양형 사유로 보고, 적시하지 않았음.
○ 폐쇄망에 자료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는 폐쇄망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 오늘 확인이 되었는데 어떠한지?	○ 고의적인 누락은 없음.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수사 의뢰를 보고받았는데, 직접 고발하라고 했고, 그래서 국정원이 고발한 것인지?	○ 전혀 모르는 사실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음.
○ 고발을 국정원장이 시킨 것인지?	○ 고발 지시 자체는 원장님이 지시를 한 것임.
○ 박지원 원장 삭제 지시 관련 왜 무죄가 나왔는지?	○ 1심 판결문을 보면, 국정원 특별감사 결과 삭제 지시를 안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다고 했지만, 1심 판결문에는 국정원에서 삭제 지시를 한 것이 맞고 실제로 삭제된 것도 맞다. 그러나 그것을 법률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고의가 없어서 무죄가 난 것이지, 삭제 지시와 삭제된 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최혁 검사는 자료가 일부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으면서 하루이틀만에 고발한 것이 아닌지?	○ 문건 자체는 일부 직원들이 삭제 지시에 대한, 이것이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몰래 자기가 저장하고 있었던 것임. 고발장은 하루이틀만에 쓰지만 그 전에 충분히 TF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증을 한 결과를 고발장으로 정리한 것임.
○ 그러면 박지원 원장은 다 지우라고 했는데 일부 양심 있는 직원이 몰래 삭제를 안한 것인지?	○ 양심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몰래 저장하고 있었던 것임.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문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음.
○ SI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 월북” 이라는 단어를 보았는지?	○ 이대준이라는 단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월북이라는 단어는 본 기억이 남.
○ 최혁 검사가 국정원 내부 감찰 보고를 김기현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7월 5일 김기현 국정원장을 만	○ 감찰 보고는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였으나, 고발 지시의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못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나 고발 지시를 한 것을 알고 있는지?	
○ 2022년 6월에 국정원에 파견되었는데, 인사발령 받기 전에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기록을 검토하였는지?	○ 전혀 아님.
○ TF 책임자로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급자인 감찰실장에게 보고를 하였는지?	○ 아님, 이석범 감찰실장이 있었는데, 국정원장님 지시로 하는 것은 본인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했음.

(다)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에 대하여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임. 또한 당시 검찰이 다루었던 중요 사건들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가 됐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최종 보고는 대통령실까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생각은?	○ 살펴보겠음.
○ 최혁 증인 이후 국정원으로 발령된 유도윤 검사도 국정원 문건 66건 중 13건에 대한 비닉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혁 증인도 유사한 것으로 보임. 검찰에 관련 자료를	○ 수원고검에서 관련 사항 및 경위를 살펴보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보내지 않았음. 오늘 수원지검 현장방문에 가보니, 수감자들의 면회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사기록 목록에 왜 빠져있었는지? 증거 은닉한 것 아닌지?	
○ 자진월북 했다인지, 자진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인가? 이희동 검사의 답변은 판단의 영역이지 사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자체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이는 법원의 판결('당시 발표내용은 객관적 사실의 방증이라기 보다 제한적 정도에 기초한 판단 또는 의견 표명에 가깝고 검찰이 주장하는 허위의 개입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무엇이 허위인지 어떤 점에서 허위인지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을 통해서도 나타났음. 그런데 검찰은 다시 항소하였고, 총장대행은 왜 이런 항소를 허용하는지?	○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형태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항소를 한 것임.

(2) 통계조작 의혹 사건 관련

(가)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는 당연히 다른 범주인지?	○ 그러함.
○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범인 발견, 증거 수집하는 국가 형사절차이고 강제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강압적인 조사, 회유, 협박, 밤샘 조사 같은 불법 조사는 엄격히 금지되며, 감사는 업무수행의 적정성, 회계 투명성 이런 것을 확인하는 행정절차인데 맞는지?	○ 그러함.
○ 감사원 타이거파에서 강압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진 것은 확인된 것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나 형사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검찰의 경우에는 인권침해 TF에서 이 통계 관련 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감찰이 필요하다고 봄.	○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임. 성실하게 공소 유지에 임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수사 과정이나 기소 과정에서의 잘못이 있다면 유념해서 살펴보겠음.

(나) 이상윤 증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가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담당했는지?	○ 수사팀의 일원으로 담당했었음.
○ 이 사건 공소장에 김상조 정책	○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실장, 부동산원 예산삭감 압력, 주택 통계 조작을 계속하도록 압박했다 이런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그리고 검사는 그 증거로 감사원이 제출한 김능진 부동산원 부동산통계처장의 카톡 대화 증거로 제출하였음. 이 증거를 기억하는지?	있지 못함.
○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호도된 언론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셨음’ 이런 문구가 완전히 삭제된 채 증거가 제출되었음. 그리고 메시지 조작이 한두번이 아닌데, 부동산원의 주간 조사에 대해서 당분간 공표해야 하지 않나라는 건 김상조 실장이 아니라 경제수석이 한 말인데, 이 문장도 삭제되었음. 그래서 마치 김상조 실장이 계속 주간 조사를 하라고 압박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되어 있는데, 삭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수사 단계에서 확보하였음.
○ 카톡 자료가 편집 및 조작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지?	○ 제가 조사에서 사용한 카톡인지 자체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 카톡 자체를 본 적이 없음.

(다) 박영식 증인(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주희 의원 제시한 카톡 편집 장면 관련해서, 증인이 저 카톡을 편집 및 조작한 사실이 없는지?	○ 없음. 본 기억이 나지 않음.

7) 대전지방검찰청

가) 보고내용

Ⅰ 수사 경과

□ 사건 진행 경과

○ ’23. 9. 13. 대검, 감사원 수사요청 공문 접수

※ 감사원 수사요청 내용과 공소사실 비교는 [별지]와 같음

○ ’23. 9. 19. 대검, 감사원 수사요청 사건 대전지검 이첩

※ 대전지검 관할 지역에 국토부(세종) 및 통계청(대전 서구) 위치

○ ’23. 10. 5. 국토부 등 6개 기관, 윤성원 등 12명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 ’23. 10. 19.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23. 11. 16. 황덕순 등 5명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 ’23. 12. 20. 김수현, 하동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 ’24. 1. 2. 윤성원, A(前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구속영장 청구 ⇨ 기각

※ 기각사유 요지 :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증거인멸의 추상적 위험이 아닌 구체적 개연성 부족

○ ’24. 2. 22. 윤성원, A(前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구속영장 재청구 ⇨ 기각

※ 기각사유 요지 : 주거 일정, 향후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까지 하기 어려움

○ ’24. 3. 14. 피고인 김수현 등 11명 불구속 기소

※ 감사원 수사요청 된 22명 중 기소된 11명을 제외한 ① 나머지 11명 및 ② 기소된 2명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

□ 피고인별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피고인	범행시 직위	공소사실	비고
1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17. 5.~'18. 11.)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18. 11.~'19. 6.)	▲ **(주중조사 요구)** '17. 6.~'21. 11. 통계 변경 목적으로 법령상·계약상 근거 없이 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매주 주택가격 변동률에 관한 주중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하여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통계법위반, 직권남용]** ▲ **(사전제공 요구)** '17. 6.~'21. 11. 통계 변경 목적으로 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위 주중조사 결과인 '주중치', 주간조사 직후 산정된 '속보치'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요일 공표가 예정된 '확정치'를 대통령비서실에 사전 보고하게 하여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통계법위반, 직권남용]** ▲ **(가격변동률 하향 요구)** '17. 11.~'21. 11. 통계 변경 목적으로 부동산원에 변동률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추게 함 **[통계법위반, 직권남용]**	주택 통계
2	**윤성원**	대통령비서실 주택도시비서관 ('17. 5.~'18. 11.)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18. 11.~'20. 7.) 국토부 1차관 ('20. 11.~'22. 5.)		
3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19. 6.~'21. 3.)		
4	**하동수**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20. 7.~'21. 8.)		
5	**김현미**	국토부장관 ('17. 6.~'20. 12.)		
6	**A**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18. 7.~'20. 1.)		
7	**B**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0. 3.~'21. 2.)		
(3)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19. 6.~'21. 3.)	▲ '19. 10. 전년 대비 기간제 79만 명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87만 명 증가가 예상되자, '병행조사'가 원인인지 불명확함에도 통계청으로 하여금 마치 병행조사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응답한 인원이 늘어나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부가조사 통계를 서술하는 정보를 공표 전 변경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통계법위반, 직권남용]**	고용 통계
8	**황덕순**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19. 7.~'20. 11.)		
9	**이준협**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19. 10.~'21. 6.)		
10	**강신욱**	통계청장 ('18. 8.~'20. 12.)		

순번	피고인	범행시 직위	공소사실	비고
11	**홍장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17. 7.~'18. 6.)	▲'18. 5. 발표된 2018년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으로 확인되자 통계청 직원으로 하여금 통계법 절차를 위반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등에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직권남용]**	소득통계

□ 불기소 피의자 현황

· **[주택통계]** 장하성(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호승(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C, D(각 부동산원 원장), E(부동산원 부원장), A(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일부 불기소, 일부 기소)

· **[소득통계]** 차영환(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F(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G(통계청 차장), H(통계청 국장), I(통계청 과장), J(통계청 사무관), 홍장표(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 일부 불기소, 일부 기소)

Ⅱ 재판 경과

○ ’24. 5. ~ 12. 1~4회 공판준비기일 진행

- 피고인들 범행 전부 부인

○ ’25. 3. 26. 1회 공판기일 진행

- 검사, 기소 요지 진술

○ ’25. 5. ~ 11. 2~12회 공판기일 진행

- K(’18. 7. ~ ’20. 6.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부장) 증인신문

○ ’25. 12. ~ ’26. 4. 13~19회 공판기일 진행

- L(’20. 7.~’21. 6.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부장) 증인신문

○ ’26. 4. 22. 20회 공판기일 예정

-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계속

[별지] 감사원 수사요청 내용 및 공소사실 비교

【주택 통계】

피고인	감사원 수사요청 내용 및 공소사실 비교	
김수현 (사회수석, 정책실장)	**감사원 수사요청**	(1) '17. 6.~'19. 6. 주중조사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게 하여 영향력 행사, (2) **'18. 1.~'18. 9. 13회 가량** 영향력 행사하여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사문서등행사, 업무방해】**
	공소사실	(1) '17. 6.~'19. 6. 주중조사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게 하여 영향력 행사, (2) **'17. 11.~'19. 6. 10회** 영향력 행사함과 동시에 **8회**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 공소사실 (2) 중 ①'17. 11. / '19. 6. 범행은 상피고인에 대한 수사요청서에 있던 내용이고, ②'19. 4. 19. 범행은 수사요청서에 없던 내용이나 각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 감사원 수사요청 (2) 중 **6건**('18. 2. 23. / '18. 3. 16. / '18. 3. 23. / '18. 4. 13. / '18. 5. 25. / '18. 9. 28.)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
윤성원 (주택도시 비서관, 국토교통 비서관, 국토부차관)	**감사원 수사요청**	(1) '17. 6.~'21. 11. 주중조사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게 하여 영향력 행사, (2) **'17. 8.~'21. 8. 46회 가량** 영향력 행사하여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사문서등행사, 업무방해】**
	공소사실	(1) '17. 6.~'21. 11. 주중조사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게 하여 영향력 행사, (2) **'17. 11.~'21. 8. 36회** 영향력 행사함과 동시에 **26회**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 공소사실 (2) 중 ①'19. 4. 8. / '19. 6. / '19. 7. 초중순 / '19. 8. 초중순 / '19. 9. 하순 / '19. 11. 6. / '20. 7. 중순 중 일부 / '21. 7. 중순 중 일부 등 범행은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피고인 外 다른 위법행위 부분에 있던 내용이고, ② '19. 4. 19. 범행은 감사원 수사요청서에 없던 내용이나 각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 감사원 수사요청 (2) 중 **15건** ('18. 9. 28. / '20. 7. 17. / '20. 7. 24. / '21. 2. 15. / '21. 4. 12. / '21. 5. 17. / '21. 7. 19. / '21. 7. 27. / '21. 8. 30. / '21. 10. 18. / '21. 11. 15. / '21. 6. 28. / '21. 7. 5. / '21. 7.~8. / '21. 8. 16.)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

피고인	감사원 수사요청 내용 및 공소사실 비교	
김상조 (정책실장)	**감사원 수사요청**	(1) '19. 6.~'21. 3. 주중조사 실시 및 통계 사전제공 묵인, '20. 2.~'21. 3. 주중조사 확대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게 하여 영향력 행사 (2) **'19. 9.~'20. 12. 16회 가량** 영향력 행사하여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사문서등행사, 업무방해】**
	공소사실	(1) '20. 4.~'21. 3. 주중조사 확대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게 하여 영향력 행사, (2) **'19. 7.~'20. 10. 10회** 영향력 행사함과 동시에 **9회** 변동률을 낮추게 함**【직권남용, 통계법위반】** ※ 공소사실 (2) 중 '19. 7. 초중순 / '19. 8. 초중순 / '19. 9. 2. 등 범행은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피고인 外 다른 위법행위 부분에 있던 내용으로 각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 감사원 수사요청 (1) 중 **'주중조사 실시 및 통계 사전제공 묵인' 부분** 및 감사원 수사요청 (2) 중 **6건**('19. 9. / '20. 3. 20. / '20. 7. 24. / '20. 11. 13./ '20. 11. 27. / '20. 12. 4.)은 각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
하동수 (국토교통 비서관)	**감사원 수사요청**	'20. 9.~'21. 7. **14회** 가량 영향력 행사하여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사문서등행사, 업무방해】**
	공소사실	'20. 9.~'21. 7. **6회** 영향력 행사함과 동시에 **4회**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 공소사실 중 '20. 9. 중 일부 / '21. 7. 중순 등 범행은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피고인 外 다른 위법행위 부분에 있던 내용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 감사원 수사요청 중 **8건** ('20. 12. 2. / '21. 7. 14. / '21. 3. 22. / '21. 4. 16. / '21. 7. 23. / '21. 7. 30. / '21. 8. 6. / '21. 8. 27.)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감사원 수사요청**	(1) '17. 7.~'20. 12. 주중조사 실시 및 통계 사전제공 묵인, '20. 4.~12. 주중조사 확대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도록 영향력 행사 (2) **'18. 8.~'20. 11. 32회 가량** 영향력 행사하여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사문서등행사, 업무방해】**
	공소사실	(1) '20. 4.~12. 주중조사 확대 실시 및 주중치·속보치·확정치 사전제공하게 하여 영향력 행사, (2) **'19. 6.~'20. 7. 7회** 영향력 행사함과 동시에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 공소사실 (2) 중 '20. 2. 4. 중 일부 범행은 상피고인에 대한 감사원 수사요청서에 있던 내용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 감사원 수사요청 (1) 중 **'주중조사 실시 및 통계 사전제공 묵인' 부분** 및 감사원 수사요청 (2) 중 **25건** ('20. 10. 5. / '19. 7. / 재직 중 국토부 영향력 행사로 인한 주택통계 명세 23건)은 각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

피고인	감사원 수사요청 내용 및 공소사실 비교	
가○○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	감사원 수사요청	'18. 7.~'20. 1. **18회** 가량 영향력 행사하여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사문서등행사, 업무방해】**
	공소사실	'18. 7.~'20. 1. **12회**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9회**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감사원 수사요청서에 있던 내용임 ※ 감사원 수사요청 중 **6건**('18. 8. 31. / '18. 9. 7. / '18. 8. 23. / '18. 10. 18. / '18. 10. 19. / '19. 7. 12. 범행)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
나○○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	감사원 수사요청	**'19. 5.~'20. 10. 16회** 가량 영향력 행사하여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사문서등행사, 업무방해】**
	공소사실	**'18. 10.~'20. 6. 7회**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5회** 변동률을 낮추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 공소사실 중 '20. 2. 4. 중 일부 / '18. 10. 19. / '19. 6. 28. 등 범행은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피고인 外 다른 위법행위 부분에 있던 내용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 감사원 수사요청 중 **12건**('20. 3. 27. / '20. 6. 26. / '20. 7. 14. / '20. 7. 24. / '20. 8. 7. / '20. 8. 11. / '20. 8. 18. / '20. 8. 25. / '20. 9. 24. / '20. 10. 13. / '19. 6. 24. / '19. 11. 8.)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범위에서 제외

※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기준으로 감사원 수사요청 혐의사실과의 차이를 정리한 것으로, 불기소 처분한 범죄사실은 제외하였음

○ 감사원 수사요청 범행 횟수[7]와 검찰 공소사실 범행 횟수[8] 관련

- 감사원의 수사요청 범위 내에서 일부 사실을 기소하고, 일부는 공소사실에서 제외

7) 검찰 보도자료의 범행 횟수는 '125회'이고 감사원 보도자료의 범행 횟수는 '94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으나, 이는 범행 횟수 산정기준의 차이에 기인함

8) 검찰은 수정된 지역별 통계 항목을 기준으로 범행 횟수를 125회로 산정

【고용 통계】

피고인	감사원 수사요청 내용 및 공소사실 비교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감사원** **수사요청**	'19. 10. 전년 대비 기간제 79만 명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87만 명 증가가 예상되자, '병행조사'가 원인인지 불명확함에도 통계청으로 하여금 마치 병행조사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응답한 인원이 늘어나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함 **【직권남용, 통계법위반】**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 **강신욱** (통계청장)	**공소사실**	상동

※ 불기소 처분 없음

【소득 통계】

피고인	감사원 수사요청 내용 및 공소사실 비교	
홍장표 (경제수석)	**감사원** **수사요청**	'18. 5. 발표된 2018년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으로 확인되자 통계청 직원으로 하여금 통계법 절차를 위반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등에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함 **【직권남용】**
	공소사실	상동

※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 기준으로 감사원 수사요청 혐의사실과의 차이를 정리한 것으로, 불기소 처분한 범죄사실은 제외함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통계조작 의혹 사건 관련

(가) 김도완 증인(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4년 3월 14일 국가통계조작 사건 수사 결과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 및 왜곡하였다고 대전지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있는데 맞는지?	○ 맞음.
○ 2025년 7월 16일 첫 번째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데, 변동률 조작이 아니고 변동률 수정이라고 함. 맞는지?	○ 맞으나, 정확히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공소장 정정으로 되어 있음.
○ ‘피고인들의 통계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한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무관하다. 이 재판에서 조작을 놓고 더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조작을 수정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음. 맞는지?	○ 맞음.
○ 핵심은 대통령비서실이 관여했는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문제인데, 2025년 11월 12일 재판에서 검찰은 이 문서에 대해서 가중치를 임의적용한 것에	○ 저렇게 공판검사가 발언한 것은 사실임. 저 취지는 모든 증인에 대해 증거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증인한테 제시하는 과정에서 증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서 삭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음. 사실인지?	인한테는 저 부분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한 것임.
○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은 삭제하겠다고 밝힌 것이 맞는지?	○ 맞음. 저 부분은 증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 여튼 조작을 수정으로 변경하였고, 그 다음에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 맞는지?	○ 그런 취지는 아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공판검사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부분이고, 조작이라는 단어는 구성요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평가적인 개념의 단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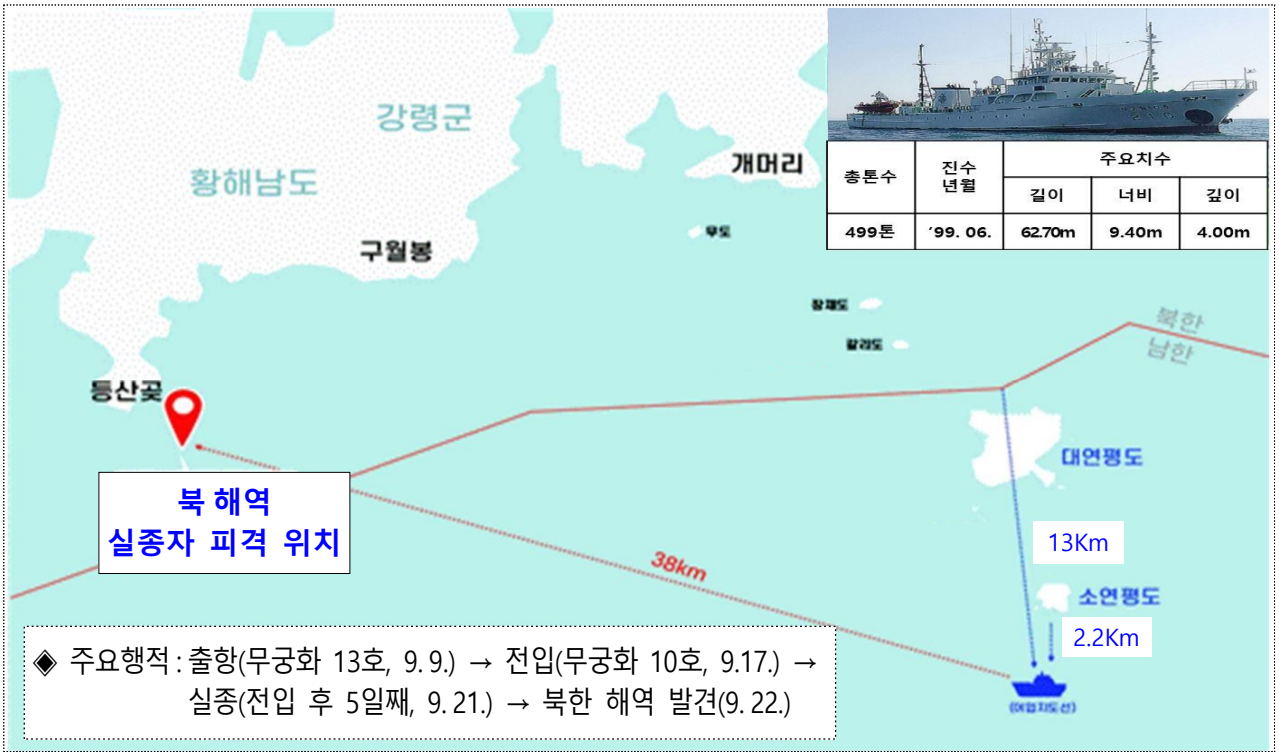
8) 해양경찰청

가) 보고내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보고

’20. 9. 21.(월) 12:51경(실종 신고시각) 인천시 소연평도 남방 해상에서 실종된 해수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9. 22.(화) 북측해역에서 발견·피격

* 이○○(1973년생, 남, 목포거주,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총톤수	진수 년월	주요치수		
		길이	너비	깊이
499톤	’99. 06.	62.70m	9.40m	4.00m

□ 신고접수 및 해상수색

○ **(신고접수)** ’20. 9. 21. 12:51경 서해어업관리단→중부해경청 전화신고

【신고내용】 9.21.(월) 00시부터 당직근무 중 01:35경 문서작업을 한다며 조타실 이탈, 같은 날 11:30경 점심식사를 하지 않아 선내를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신고

○ **(해상수색)** 구조세력 출동 지시 및 수색 실시, 해군 등 유관기관 상황

전파, 인근 어선·항행선박 등에 수색 협조 요청

【수색상황】 9.21. 13:22 수색 실시 → 9.24. 11:25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발견했다"는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 따라 수색 중단 → 9.24. 16:43 북측의 희생자 수습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상 표류 가능성 대비 수색 재개 → 10.31. 수색 종료

□ 주요 수사 경과

○ **('20. 9.21.)** 실종사건 접수, 수사 착수

○ **('20. 9.24.)** 1차 발표(인천해양경찰서장)

- 어업지도선 內 실종자 행적, 국방부 발표 등을 고려

▌(해경청 발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세히 조사 진행할 계획"

▌(9.24. 국방부 발표)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이... 자진 월북을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20. 9.29.)** 2차 발표(수사정보국장)

- 어업지도선 실황조사, 표류예측 분석, 주변인 조사 등을 종합

▌(발표 주요 내용) "실종자가 북측해역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 북측에 월북의사 표명한 정황,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

○ **('20. 9.30.)** 검찰 지휘*, 실종사건에서 변사사건으로 변경

*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북한군 총탄에 맞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

○ **('20.10.22.)** 3차 발표(수사정보국장)

- 실종 당일 행적* 등 그간 수사사항을 고려

* 당직 근무(9.20. 23:40경) → 조타실 이탈(9.21. 01:35경) → 서무실에서 본인 USB에 저장된 파일 및 공용PC 폴더 삭제(9.21. 01:36~01:38) → 핸드폰 최종연결 시간(9.21. 01:51경) → 실종 사실 인지(9.21. 11:30) → 실종 신고(9.21. 12:51경) → 피격 추정(9.22. 21:40경 / 국방부)

(발표 주요 내용) "북측 민간선박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중간수사 브리핑과 같이, 판단됨"

○ **('20. 12. 16.)** 同 사건 조사를 위해 휴대전화에 연동된 구글 웹 검색 기록 등을 美 법무부에 국제형사 사법공조 요청('20. 12. 16.)

※ 미 법무부 회신 → 1차 '22. 1. 11. 2차 '22. 5. 27. 3차 '24. 1. 23.

○ **('21. 9. 9.)** 인천지검과 협의, 성명불상 가해자를 살인죄로 입건

□ 수사 중지 관련

○ **('22. 6. 9.)** 수사 중지 결정

- (수사중지)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소재 또한 불명으로 수사 중지(피의자 중지) 결정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6. 3. / 외부 전문가 등)

○ **('22. 6. 16.)**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한 발표(인천해양경찰서장)

(발표 주요 내용)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음...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중지로 결정하였음..."

□ 향후 계획

○ 피의자 관련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면 再 수사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서해 공무우너 피격사건 관련

(가) 장인식 증인(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6월 16일에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월북은 있었는데 왜 월북을 했는지 그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 아닌지?	○ 그러함.
○ 김태효 1차장이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관련 보고 다시 해주고, 지시 내용이 나온 것이 있는지?	○ 당시 NSC 회의에는 청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본인이 알 수 없음. 어떤 내용이 회의에서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음.
○ NSC 회의 후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정봉훈, 수사했던 김성종 등 이 사람들 관련 보고 내용이 없는데, 지금은 어떠한지?	○ 그 부분은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람.
○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0일 해상 실종괴고, 22일 오후 3시 반 첩보를 입수하고, 오후 9시 40분에 피격을 당함.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일단 해경이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이 수사팀으로부터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는데, BH 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 가자고 하니까 수사팀이 아니다	○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라고 하는데 해경청장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음. 그리고 구명조끼가 중국산인데, 한국에서는 중국산 구명조끼를 해상에서 입지 않기 때문에, 자진 월북에 반하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냥 자진 월북으로 밀어붙였음. 당시 9월 24일 오전 11시인가 국방부 합참의 안영호 작전본부장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고, 국가안보실 지침을 보면 해안지도선에 신발이 있고, 가정불화가 있다고 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라는 것으로 나옴. 본인은 상식적으로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해경에서 그래서 2022년 6월에 다시 입장을 바꾸어서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닌지? 당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에서 이런식으로 하라고 지침을 받았는지?	
○ 윤석열 정부에서 명백한 사건 왜곡이 있다고 보는지?	○ 해양경찰청은 국방부 자료와 당시 정황 증거를 수집해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였음. 1심 재판부는 해양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였음.
○ 이 사건의 핵심은 우리 대한민국이 해수부 공무원을 살리고	○ 해양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였고, 월북으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임.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없음. 3시간 후에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연설이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각 이것을 알리고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우리 군이 대응해서 이대준 씨를 살려서 데려올 노력을 아무도 안한 것임. 월북의 증거가 실족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배에 있었던 구명조끼는 모두 배에 그대로 있었고, 해상에서 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산 표기가 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신발도 배에 그대로 있었음. 여론이 잘 가라앉이 않으니 이 사람이 빚에 시달렸다가 자진 월북하였다는 일종의 여론전을 펼침. 월북자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면, 감청 정보 같은 것을 보니까 '너 누구냐'고 물으니, '월북하러 왔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것 밖에 없음.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는 그냥 덮었음. 이것이 그냥 덮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한 것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는 해경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하였음.
○ 그 때 발표했던 내용이, '자진	○ 월북으로 판단된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월북했다'인지,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다'인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된다'인지?	
○ 승선 경력이 몇 년인지?	○ 승선 경력은 얼마 안됨.
○ 어업지도선을 뭘로 만들었는지?	○ 네. 강철로 만들었음.
○ 그걸 강선이라고 함. 맞는지?	○ 네. 강선임.
○ 강선의 바닦을 뭘로 칠하는지?	○ 페인트로 칠함
○ 페인트 종류가 뭔지?	○ 페인트를 미끄러지지 않게 칠함.
○ 강선은 주로 외부는 에폭시, 내부는 에나멜을 칠함.	○ 그러함.
○ 어업지도선이 새벽 1시 반에 출항하여, 목적지에 도착해서 드리프팅을 함. 그래서 앵커링을 하는지?	○ 앵커링을 함.
○ 고 이대준씨는 당직을 서다가 문서를 작성한다고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	○ 맞음.
○ 그 시간이 대충 미루어 짐작컨대 새벽 5시 정도 되는지? 당직을 하면 몇 명이서 몇 시간씩 서는지?	○ 4시간 서게 됨.
○ 새벽 4~5시 정도로 추정을 해보면 그 당시 에폭시로 된 갑판이 포말로 많이 뒤덮여져 있음. 그리고 새벽 이슬로 자칫하면 미끄러짐. 앵커링을 해도 실족사를 하게 되면 새벽 4시, 5	○ 가설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시는 선부, 부원들 모두 자고 있어서 고함을 질러도 들리지 않음. 고 이대준씨는 완도 수산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1등 수산, 1등 항해사이고, 원양 헤엄을 치기 때문에 물에 떠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 9월은 기온 및 수온이 괜찮은데, 실족을 하더라도 그냥 원양 헤엄으로 부력을 통해서 30km 조류만 타면 그냥 가는 것임. 그리고 중국제 한자가 있는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발견하고 구명조끼를 던져 줬다는 생각은 안해봤는지?	
○ 총으로 죽이면 되는 것이지 왜 소각을 시켰는지는 생각 안해봤는지? 발견되는 즉시 구명조끼를 주었다고 본다면, 배에서 의사를 타진했을 것임.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남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물었을 것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서해 공무원 피격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해양경찰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의 전제에서 수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림.
○ 국정조사 들어오면서 서해 피격 관련 진상조사를 하였는지?	○ 별도로 진상조사는 하지 않았음.
○ 2020년 9월 29일 2차 발표 대어업지도선 실활조사 표류 예측 분석 주변인 조사 등을 종합해서 월북으로 발표했으나, 2022년 6월 16일 종합적인 수	○ 정황 증거에 대한 수사 및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음. 이 진행을 통해 새로운 근거나 새로운 자료는 없었음. 대통령실 부분은 답변드리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렇게 발표하게 된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대통령실에서 뒤집으라고 종용해서인지?	어렵고, 그 부분은 알고 있지 못함.
○ 당시 해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 표류예측시스템으로 당시의 조류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가동하고 더미 실험을 함. 시험 결과는 북쪽으로 가지 않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 소연평도 남쪽으로 도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럼 북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인지?	○ 표류예측시스템에서는 그러하였음.
○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형사사법 공조를 한 것이 있는데, 5월 27일에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더 알아볼 것이 있다면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수사 중지를 내림. 미국에서 형사사법 공조를 받아볼 의향도 없고 진행을 안한 것인데, 형사사법 공조를 확인해보기 바람.	○ 확인하겠음.

(나) 박상춘 증인(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인천해양경찰서장이었는데, 당시 윤성현 전 해남서장, 청장과 대화하면서 별로 바	○ 그런 기억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뀐 것도 없는데 자진 월북 입증 가능성이 없다고 몰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 번복 발표할 때, 2022년 6월 16일에 브리핑을 직접 하였는지?	○ 직접 하였음.
○ 발표 당시 애초에 월북 판단을 번복할 새로운 사실이 있었는지?	○ 그 사건이 2020년 9월 21일에 발생하였고, 저는 2022년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인천서장으로 갔음. 최초 발표는 인천서장이 2020년 9월 24일에 하면서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세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였고, 인천서에서는 일차적으로 제가 두 번째 발표를 하면서 '월북 의도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음. 인천서의 입장에서는 번복이 아니고, 1차 발표는 2020년 9월 24일, 2차 발표는 2022년 6월 16일이고, 2차 및 3차 발표는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제가 수사 라인에 없었음.
○ 최초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던 사람이 윤성현 당시 정보수사국장임. 이 분이 한겨레 보도 시 그리고 작년 국감에 나와서 한 증언은 아래	○ 기억이 없음. 그것은 윤성현 전 청장의 일방적인 주장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와 같음. 윤성현 청장이 증인과 통화한 내용인데, “수사결과 발표 전날 내가 당시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했다. 박 서장이 본청에서 우리에게 발표를 하라고 한다. 인천해경서에,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냐고 묻자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발표를 저에게 하라고 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번복 발표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자 당시 박서장(증인)이 청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것 아시지 않느냐, 중간수사 발표는 본청에서 했는데 이런 민감한 것을 왜 우리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했음. 증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다) 박홍식 증인(강릉해양경찰서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인천해양경찰서에 전화를 함. 판결문에 나와있음. 전화를 해서 서해 공무원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의한 적이 있는지? 누구의	○ 그런 기억은 없음. 사건을 챙겨보라 이런 전화는 전혀 인천 쪽에 한 적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시로 왜 챙긴 것인지?	
○ 2022년 5월 24일 NSC 회의 때 전임 해경청장하고 김성종 수석 등이 참석하고 5월 25일 해경 자체 회의를 했는데, 그 때 증인이 그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 지금은 기억이 없음.
○ 6월 10일 김태효 주재 안보실 무자회의에는 참석을 하였는지?	○ 그때는 참석하였음.
○ 김성구 사단장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국방부는 처음 발표가 맞고, 번복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해경은 누구 지시로, 어떤 이유로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기로 결정하였는지?	○ 당시 회의에서 본인은 실무자 입장에서 참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음.
○ 당시 수사실무자로 갔는데 이러한 합의 내용(번복 결정)이 도출된 경위를 모르는지?	○ 저희들은 이 내용을 거기서 합의하고 그런게 없음.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은 정보공개 거부취소소송에 대해서....
○ 2020년 5월 24일과 5월 26 NSC 회의에 정봉훈 해양청장과 김성종 해양수사국장이 참석한 것을 아는지?	○ 간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시 증인이 김성종 해경 수사국장의 지시로 해양 형사과장으로서 NSC 관련 보고서 작성하였는지?	○ 그렇지 않음. 그 당시 계장이었음.
○ NSC에 직속 상관인 김성종 해경 수사국장이 참석하였는데	○ 듣지 못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거기서 서해 피격 사건 월북을 뒤집으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지?	

(다) 김태균 증인(前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월북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때 1차 수사팀을 총괄하였는지? ○ 월북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 저는 2차 수사결과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 나오고 난 후 10월 11일경부터 사건 담당 과장으로 있었음. ○ 월북 판단은 제가 담당하기 전의 판단이었는데, 제가 사건을 담당하고 난 후 월북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관계나 수사기록을 본 적은 없음. 그리고 기존의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기타 여러 상황 등을 종합해서 해경청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음.

(라) 안성식 증인(前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 ○ 증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해경 최초로 2022년 3월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되었는데 맞는지?	○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에 처음 뵈었음. ○ 맞음. 공식적인 경로는 인사혁신처를 통해서이고, 충암고 선후배들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어떠한 경로로 인수위에 파견되었는지?	기를 하기도 했음.
○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했는지? 해경 경비과와 해경 함정사업이런 곳에서 근무한 적은 있는지?	○ 수사 분야에서 일했고, 해경 경비과 및 해경 함정사업에서 직접적으로 근무한 적은 없음.
○ 대통령실로부터 인수위 시절에 해경 서해 피격사건 수사기록을 뒤집으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 전혀 없음.
○ 김태효 안보실1차장 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한테 수사기록을 뒤집으라는 지시를 받은적이 없는지?	○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음.
○ 다시 형사과장으로 복귀해서 일한 지 두달 만인 2022년 7월 15일 국정상황실로 파견가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 2022년 5월 10일에 인수위 해단식을 하고, 다시 국정상황실로 파견을 가서 해양 관련 재난업무를 담당하였음.
○ 국정상황실에 파견간 이후부터 대통령실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조작된 서해 피격 사건을 관리하고 검찰 조작 조사에 해경이 협조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	○ 전혀 그렇지 않음.

2. 현장조사

가. [4월 9일, 1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개요

○ 일시 : 2026년 4월 9일 10:23~12:25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 검사실 등

○ 참석자 : 국정조사특위 위원 10인(서영교, 김동아, 양부남, 이용우, 이주희, 정태호, 김형동, 송석준, 신동욱, 손솔),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 제1차장검사 안동건, 사무국장 정영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서울구치소 관계자 등

○ 현장조사 실시내용 : 현황보고, 구치감, 검사실(1006호, 1008호, 1010호), 영상녹화조사실(1037호, 1043호) 등 현장조사, 특위 위원 질의·답변

2) 주요 내용

시각	주요 내용
10:23	서영교 위원장이 14층 상황실에서 현장조사 실시를 선언하고,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수사가 어떻게 과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구치감, 검사실 등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언급함.
10:44	인권보호관이 구치감 일반현황 등 보고함.
10:58	별관 2층 구치감 상황실로 이동하여 위원과 구치소장 간 질답 진행
11:15	구치감 내부로 이동하여 현장조사 실시함
11:25	검사실로 이동하여 위원과 검사장 간 질답 진행
11:54	영상녹화조사실로 이동하여 위원과 검사장 간 질답 진행
12:14	서울중앙지검 1층에서 여당 및 비교섭단체 위원 브리핑 진행

3) 주요 질의·답변 내용

가) 박삼재(서울구치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구치감 독방 크기가 다른지? 화장실은 있는지?	○같음. 4.62㎡(약 1.4평)임. 화장실 있음.
○수감 시간에 제한이 있는지?	○이 곳은 검사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한시간은 따로 없음.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중앙 통제하는 난방조절기가 있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기 판넬 공사를 했고, 2020년 5월 난방조절기까지 설치 완료함.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구치소에서 가져옴.
○구치감에서 취침한 사례가 있는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사안 이외에는 없음.
○유동규가 혼거실에 수용되었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있었는지?	○11.9㎡(약 3.6)평 혼거실에 혼자 있었음.
○남욱이 수용된 구치감은 어디었는지? 16일 18시 이후에는 기록이 왜 남아있지 않고, 구치감이 특정되지 않는지?	○1동 9호실로 추정됨. 9.58㎡(약 2.9평)임. 주말에 구치감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함.
○환기시설이나 선풍기가 있는지?	○없음.
○2박 3일 취침 당시 제공된 것이 무엇인지?	○직원이 근무 보고서에 정확히 적시를 해놓음. 속옷 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벌, 양말 2개, 세면도구, 식수, 선풍기, 이불, 베개 등임.
○2박 3일 구치감 수용 당시 남욱을 관리하는 교정직원은 어떻게 있었는지?	○휴게실에 있는 소파에서 취침함. 최소 4명에서 5명이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9월인데 날씨가 더워 선풍기가 들어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터뷰에서는 남욱이 추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	
○통상적으로 구치감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공범이 왔을 때는 통상적으로 구역 별로 분리함.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따로 있는지?	○방마다 세면대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세면대 공간이 있음.
○검사실로 이동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을 하는지?	○하고 있음
○구치감 내부 CCTV는 24시간 켜져있는지?	○한명이라도 있으면 키고, 아무도 없으면 키지 않음.
○유동규와 남욱이 같이 불려온 게 몇 번인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제출하겠음.
○신체검사실의 용도는?	○마약사범 등이 검사 조사 후 밀반입하지 않는지 등 검사 목적임.
○구치감 운영규정 등 내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겠음.

나) 박철우(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교도관은 검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 최근엔 그렇지 않음. 최소한 신변을 시선 내에서 확인할 수 있게 계호 상태를 유지함.
○ 영상녹화조사실에 카메라는 몇 개인지?	○ 2개 있음.
○ 영상녹화조사실은 자동으로 녹화가 진행되는지?	○ 영상녹화 시작버튼을 눌러야 시작됨.
○ 영상녹화 없이도 영상녹화조사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조사실 부족 등 사유가 있으면 가능함.
○ 영상녹화를 임의로 할 수 있는지?	○ 피조사자의 녹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 영상녹화를 다른 곳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 확인이 필요함.
○ 영상녹화조사실 내 조사자가 다른 방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 채팅은 가능한지?	○ 확인이 필요함.
○ 유동규, 남욱 영상녹화 파일 있는지 확인하고 파일 제출 요구함.	○ 확인하겠음.

4) 특이사항

○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송경호 지검장, 고형곤 차장검사, 엄희준 부장검사, 강백신 부장검사 등) 당시 검사실, 남욱이 수용되었던 구치감 및 조사를 받았던 영상녹화 조사실 등을 현장 조사함.

○ 현장조사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위원 및 비교섭단체 위원이 중앙지검 1층에서 12시 14분부터 11분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함.

나. [4월 9일, 2반, 수원지방검찰청]

1) 개요

○ 일　시 : 2026년 4월 9일 10:00~11:50

○ 장　소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1313호), 영상녹화실 등

○ 참석자 : 국정조사특위 위원 10인(박성준, 김승원, 박선원, 이건태, 전용기, 곽규택, 나경원, 윤상현, 이상휘, 차규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 관계자 등

○ 현장조사 실시내용 : 수원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브리핑, 검사실(1313호), 영상녹화실, 창고(1315호) 등 현장조사 및 기자회견

2) 주요 내용

시각	주요 내용
10:00	1층 로비에서 박성준 간사를 비롯한 여야 위원들이 공동으로 브리핑을 실시함
10:15	12층 브리핑 룸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브리핑 실시하였고, 12층 이외 기자 출입 제한 문제 및 사진 촬영 제한 근거 규정 제출 요구 등이 제기되었음
10:29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10인(박성준, 김승원, 박선원, 이건태, 전용기, 곽규택, 나경원, 윤상현, 이상휘, 차규근)이 13층 보안구역으로 이동하며 현장조사 시작함
10:30	검사실(1313호) 및 영상녹화실 조사 시 사진 촬영 제한으로 각 교섭단체당 1인씩 사진 촬영하되, 영상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촬영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협의함
10:39	검사실(1313호) 맞은 편 창고(1315호) 현장조사 실시함

시각	주요 내용
10:43	1313호 검사실 집기가 없는 공실 상태라 유사검사실(1318호) 조사 실시함
10:50	2층 후문으로 이동하여 게이트 등 현장 확인, 방문증 교부 및 일과시간 이후 반납 방식 질의함
11:00	지검 앞 편의점 현장 확인 후 위원 4인(곽규택, 나경원, 윤상현, 이상휘)은 2층 로비로 먼저 이동하였고, 위원 6인(박성준, 김승원, 박선원, 이건태, 전용기, 차규근)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당시 쌍방울 직원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넣었다'는 증언을 재연함
11:14	2층 후문 게이트 앞에서 위원 6인(박성준, 김승원, 박선원, 이건태, 전용기, 차규근)이 별도로 준비해온 연어회 덮밥과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들고 취재진에게 발언함
11:16	13층에서 잠시 하차하여 소요시간 확인 후 녹취록이 보관된 15층 형사6부장실 앞 창고(1526호)로 이동함
11:21	15층 기록보관창고(1526호), 제한구역이라는 사유로 위원 10인 한정하여 현장 확인함
11:30	위원 6인(박성준, 김승원, 박선원, 이건태, 전용기, 차규근) 12층 브리핑 룸에서 백브리핑 실시함
11:38	청사 1층 입구에서 위원 4인(곽규택, 나경원, 윤상현, 이상휘) 백브리핑 실시함
11:46	위원 6인(박성준, 김승원, 박선원, 이건태, 전용기, 차규근) 백브리핑 종료
11:50	위원 4인(곽규택, 나경원, 윤상현, 이상휘) 백브리핑 종료

3) 주요 질의·답변 내용

가) 김재혁(수원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상용 검사가 사용하였던 검사실 1313호 책상 하나만 남았다고 하는데 원상태를 훼손하였는지?	○ 2023년 12월까지 박상용 검사가 사용한 후 집기는 다른 검사실 등으로 이동한 상태임
○ 검사가 전출하면 검사실 집기를 그대로 두고 다른 검사가 부임하면 사용하는데 집기를 뺀 시점은 언제인지? 뺀 이유는 무엇이고 누구 지시였는지?	○ 확인해 보겠음
○ 검사 인사이동이 있으면 보통 공실로 만드는지? 사례가 있는지?	○ 검사 수가 줄어 공실로 놔두고 타 부서에 집기가 필요하면 이동함. 현 검사 정원보다 현원이 미달하여 공실이 많이 있음
○ 13층이 보안 구역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 13층은 공공수사부가 근무하는 곳으로 법무부 보안규정이 있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제한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 13층이 보안구역이라고 국정조사 현장조사단은 사진도 못 찍게 하면서 김성태의 수행 비서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3층에서 사진을 못 찍는 규정 제시 바람	○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에 따른 제한 구역임
○ 박상웅이 거의 매일 1313호에 참고인 명목으로 출석을 해서 김성태 회장의 수발을 들었는데 참고인 출입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출입증을 어디서 받고 어디서 반납하는지, 출입 시 시스템에서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	○ 통상 북측(2층) 민원인 방문 데스크에서 출입증을 교부받아 12층, 13층, 15층 등 층별 방문증을 받아 출입함. 해당 층에서 업무가 끝나면 2층에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출입증 교부 시 제출한 신분증을 회수해서 나가게 됨
○ 13층 보안구역에 출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검사가 허용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 검사실에서 출입등록을 해주는 사람에 한하여 들어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변호사 등 수사와 직접 관련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지?	○ 일반적으로 그러함
○ 박상용 검사가 참고인으로 박상웅을 소환했는데 실제로는 김성태를 수발할 목적으로 출입시킨 것이라면 수원지검 청사 관리자인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입장은 이를 허용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나) 이영주(수원지방검찰청 2층 출입증 교부처 검찰행정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일과시간 이후인 20시 이후에도 나갈 수 있는 건지?	○ 야간 조사가 있으면 일과 이후 가능함. 야간은 직원 상황실 1곳만 출입문을 개방하고 출입증도 그곳에서 반납함
○ 2층 출입증 교부처는 언제 마감하는지? 실제 나가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에는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 일반적으로 18시 30분에 마감함. 출입증 교부처는 18시 30분에 마감하고 상황실은 프로그램이 아닌 종이로 별도 기록하여, 마감시간인 18시 30분에 나간 것으로 기록된 것일 수 있음. 다만, 방문증 태그 기록은 남아 있을 것임
○ 18시 30분 이후에도 2층 출입구로 직원은 다닐 수 있는지?	○ 19시 정도까지는 음식배달 받기도 함
○ 여기가 게이트 '중' 인지?	○ 2층은 게이트가 3개라 각각 '중, 우, 좌'임
○ 1층에도 게이트가 있는데 '중'이라고 하지 않는지?	○ 1층은 게이트가 2개라 게이트 '중'이라는 것이 없음
○ 18시 30분에 게이트 자체를 닫는 건 아니고 여기가 마감된다는 것인지?	○ 그러함

4) 참고사항

○ 수원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브리핑 시, 박성준·박선원 의원 등은 보안구역인 13층 내 사진 촬영 제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관련 보안규정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박상용 검사실(1313호) 내 집기 이전 경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음.

다. [4월 23일, 1반, 감사원]

1) 개요

○ 일　시 : 2026년 4월 23일 10:00~12:55

○ 장　소 : 감사원 1별관(지하 2층) 영상세미나실 등

○ 참석자 : 국정조사특위 위원 8명(서영교(위원장), 곽규택, 박선원, 송석준, 손솔, 양부남, 이주희, 정태호), 감사원 사무총장·기획조정실장·재정경제감사국장 등

○ 현장조사 실시내용

-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문답 및 디지털 포렌식 현황 보고
- 감사보고서 및 문답서 등 증거서류 열람·확인
- 조사실 등 조사환경 확인

2) 주요 내용

시각	주요 내용
10:17	감사원 1별관(지하 2층) 영상세미나실에서 현장 조사 개시
10:18	감사원 사무총장 현황보고 및 질의 응답
11:25	위원 2인(곽규택, 송석준) 일정상 질의응답 후 복귀
11:30	감사원 본관 6층 조사실 현장조사 실시

시각	주요 내용
12:00	위원 1인(양부남)은 일정상 조사실 현장조사 후 복귀하였고, 위원 5인(서영교, 박선원, 정태호, 이주희, 손솔)은 감사원 1별관 지하 2층 문서열람실로 이동하여, 국가 통계조작 사건 등 관련 감사원 조사문서(박선원 위원이 열람한 2급 기밀 조사문서 포함) 열람
12:30	위원 5인(서영교, 박선원, 정태호, 이주희, 손솔) 감사원 정문에서 백브리핑 실시
12:55	위원 5인(서영교, 박선원, 정태호, 이주희, 손솔) 백브리핑 종료

3) 주요 질의·답변 내용

가) 정상우(감사원 사무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포렌식 자료를 감사원에 가져오면 어디에 보관하는지? SI 첩보에 대한 전산 및 녹음을 떠서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어떻게 제출하는지?	○ 실무적인 부분이라 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음.
○ 총장님께서 발표하신 것과 국방부에서 실제로 합참 국방정보본부 379명 30개 기관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감사관이 온 사람은 20명 이상이었다라고 하는데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자료를 보	○ 실무자를 오게 하여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관하는지? SCIF 해당하는 보안시설있는지? 누가 어떻게 관리했고 검찰에 어떻게 넘겼는지?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 보고자료를 보면, 감사원 당시의 조사 지휘본원이 105회, 명동 사무실이 264회에서 조사가 되었음. 당시 조사 과반이뤄졌던 공간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라도 제공됐어야 할 거 같은데 지금 달랑 방 4개 평면도만 있음. 현장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길 부탁드림. 감사과정에 있던 감사관들이 진행했던 문답서와 문답서에 편철된 첨부자료를 완전체로 제출하길 바람.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사례들, 적법절차 위배한 사례는 감사원 사무규칙, 감사원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행위임. 전수조사해서 통계 내지는 정확한 보고서로 제출해주길 바람.	(답변하지 않음)
○ 실질감사가 3월 31일에 끝나는데 국정감사에 현장에 오	○ 실질감사는 현장감사임. 기관에 출장을 가서 현장점검 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셨던 국토교통부 참고인들이 강압적인 수사를 감사를 겪었던 시점이 23년 4월에서 8월임. 그 이유가 해명될 필요가 있음. 의결이 필요한 고발을 한 게 아니라 수사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해명이 필요함. 지금까지 TF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추가로 확인을 할 계획이신지?	듯이 기간은 열흘이든 보름이든 가서 있다가 추가적 조사 및 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문답이 필요할 때 대상기관의 업무를 좀 더 계속할 수 있음. 안에 영상녹화실이 있어서 본인들이 필요하면 녹화할 수 있고,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들어와서 문답을 하는 것이 맞음. 다만 추가적인 조사 기간을 표기하지 않은 건 저희 관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함. 국토교통부 홍승희 사무관을 4, 5월에 조사한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함. 육아휴직 중인데 6차례 걸쳐서 몇 번은 심야까지 이뤄지는 부분은 절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할 것임. 수사요청의 긴급성 부분은 말씀하셨듯 감사원법엔 고발만 있음. 사무처리 규칙에 고발 예외 사항으로 긴급성이나 증거인멸, 도주우려 때문에 수사 요청을 하게 되는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누락됐다는 것이 지난번 TF 점검 결과임.
○ 국조특위 진행 중에 부동산원 감사실장과 소통한 감사원 실장이 누군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확인된 바가 있는지?	○ 감사실장 부분은 퇴직자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인 중에 있음.
○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문답조사가 거칠게 이루어졌고, 디지털 포렌식도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인지?	○ 인정함.
○ 문재인 정부 때 주요 사건 중 문답조사가 일탈적으로 과도하게 진행된 사례와 디지털 포렌식이 과도하게 문제 있게 이뤄진 사례를 추출해서 국정조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림.	○ 알겠음.
○ 포렌식을 과도하게 했는데, 그것이 어떤 국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배하여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이야기 해야하는 것이지, 횟수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문	○ 포렌식은 최후의 수단임.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후에는 PC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포렌식을 하게 됨. 그리고 보충성도 필요한 요건인데, 유병호 체제 들어와서는 그런 것 없이 처음 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제가 있는 것 아닌지?	사에 착수하면서부터 자료 제출을 포렌식을 할테니 동의해 달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는 말이 안되는 행태임.
○ 술냄새 풍기며 조롱하는 행태를 모 감사관이 보였다는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는지? 이는 한 개인 감사관의 일탈행위이지, 감사원의 조직적 행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떠한지?	○ 이유여하 막론하고 그러한 행위가 우리 직원에게 있었다는 것은 감사원 전체의 오명임.
○ 핸드폰 포렌식이 너무 많아졌는데,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일단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동의서는 서면으로 받았는지?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포렌식을 한 경우는 없는지?	○ 동의 없이 한 경우는 없음.
○ 포렌식 장비는 언제 구입한 것인지?	○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반영된 예산으로 구입하였음.
○ 감사원에서 각 정부 부처에서 내란 몰이를 핑계로 동의하에 했다고 하면서 강제로 휴대폰 포렌식 한 것을 철저하게 감사하시기 바람.	○ 검토하겠음.
○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감사원 대전사무소 와서 조사를	○ 친정이 제주도이고, 국토부 공무원이다 보니 거주지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받았는데 실거주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었음. 그런데 대전사무소 와서 조사를 받으니, 동의 받아서 다음에 또 출석하는 게 번거로워 동의하에 조사했다고 말한 것이 맞는지?	세종임.
○ 청문회 때 조사받는 입장에서 또 오는 게 번거로우니 심야조사까지 받겠다고 한 직원이 맞는지?	○ 6차 조사 중 새벽 한 두시를 넘어서 조사한 것도 두 차례 있었는데, 9시부터 익일 6시까지 조사한 경우는 마지막 여섯 번째임.
○ 심야조사 했다는 분들 서면동의 받은 것을 확인해서 서면동의서 자체는 아니더라도 동의서 횟수와 조사 횟수가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림.	○ 알겠음.
○ 감사원에 특별사법경찰 자격이 부여되신 직원이 있는지?	○ 없음.
○ 포렌식 관리 세부지침은 2026년 1월에 만들어졌는데 처음 만들어진 것인지?	○ 그 전에 2014년 2016년에도 만들었음.
○ 포렌식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검찰 및 경찰에서도 포렌식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함. 앞으로 포렌식을 하고 싶으면, 특사경 자격을 받	○ 회계 감사는 가능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아서 검찰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고 해야할 것임. 그리고 심야조사, 자정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함. 동의라고 하여 진정한 동의가 아님. 감사원은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금융계좌 영장 없이 금융 거래를 다 받을 수 있음.	
○ 명동에 있었다던 조사실은 임대가 종료되어 볼 수 없는 것인지?	○ 그러함.
○ 15개 조사실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방 하나의 구조가 어떠한지?	○ 감사원 내에 있는 조사실에 비해서 명동 조사실은 크기가 더 좁음.
○ 타이거라는 조직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이 되었는지?	○ 분류된 직원들이 있음. 문제된 감사에 투입된 사람들이 다수 그렇게 포함되었다고 보면 됨.

나) 김태호(감사원 운영혁신 TF 실무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특수정보 보관시설 및 검찰 인계 시 인계 대장, 특수정보 보관하고 있다면 관리책임자가 누군지, 보안시설에 어떠	○ 특수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해서 2022년 6월 말부터 인가를 받았음. 국방정부본부로부터 받았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혜 보관돼 있는지. SCIF 정도의 시설에 보관돼 있는지? SI는 군사기밀 2급 보호시설 장소에 보관중인지?	서류 보관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 합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인사 받은 사람들이 합참에 들어갈 때에는 그 인가 자료를 확인해서 SCIF에 가서 확인을 했고, 감사가 시작 되었을 때에는 합참 지하 벙커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임시 SCIF를 설정하기 위해 777사령부와 협의해서 보안점검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군인들이 와서 대기하면서 그 안에서만 서류를 본 것을 본인이 확인하였음. 감사원에는 군사 2급 자료만 있고 금고에 보관되어 있음.
○ SI 인가 받은 사람은 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가를 안 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 제가 보기에는 1명 있었음.

라. [4월 23일, 2반, 금융감독원]

1) 개요

○ 일시 : 2026년 4월 23일 10:19~11:31

○ 장소 :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국정조사특위 위원 9인(박성준, 김동아, 김승원, 이건태, 이용우, 전용기, 신동욱, 이상휘, 차규근),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수석부원장 이세훈, 자본시장부원장 황선오, 기획전략부원장보 김충진, 공시조사부원장보 이승우 등

○ 현장조사 실시내용 : 현황보고, 특위 위원 질의·답변 및 자료 확인·조사

2) 주요 내용

시각	주요 내용
10:25	쌍방울 불공정거래 조사 경과 보고
10:43	금융감독원장 등과 질의·응답 진행
11:29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확인
11:32	금융감독원 1층 로비에서 여당 및 비교섭단체 위원 언론 브리핑 진행

3) 주요 질의·답변 내용

가) 이찬진(금융감독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동료위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보면,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등 검사들의 직계가족의 15년간 금융계좌 거래내역이 있음. 이를 제출하였는지?	○ 실명법상 요건 등에 비추어 조회가 불가한 상황임.
○ 해당 요청을 금감원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요건이 아직은 충족이 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는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임. 이에 대하여 응하지 않길 바람.	
○ 지난 기관보고 당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례적으로 거액의 금액이 유죄혐의로 확인됐다고 하였음. 그런데 조사 결과물은 가져가지 않고 있음. 지금도 이 조사 결과물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고 하신 것이 맞는지?	○ 금감원 입장에서 판단해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됨.

나) 이승우(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확실한 부정거래의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음.	
○ 2023. 3. 23. 검찰이 추가 요청사항 청구를 했는데 3. 27. 날 금감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금감원의 조사대상은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인데, 검찰이 요청한 것은 횡령·배임에 관한 금융자료를 추적해달라는 취지였어서 이는 금감원의 권한 사항이 아니므로 곤란하는 입장이었던 것인지?	○ 불공정 거래가 아닌 자금 거래 관련 요청을 했던 것임.
○ 그것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받아 수사해야 할 부분이고 금감원에 요청할 부분은 아님.	○ 그러함.
○ 8월 2일, 3일에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3개 종목에 대해서 통보했는데, 통상 패스트 트랙으로 통보가 된 사안은 거의 100% 기소가 되지 않는지?	○ 부정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70% 이상 검찰이 기소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패스트 트랙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은 좀 이례적인 것인지?	○ 약 30% 정도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는데 본 건은 증거를 가져가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함.
○ 2020년 1월 22일에 1,025원이던 주가가 2월 3일에 1,255원으로 상승하고, 코로나 시점이라 대부분의 다른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금방 주가가 올랐다는 점이 지적됨. 그런데 이는 마스크 공급계약이 따른 주가 상승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실제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쌍방울 관련자들은 중국 정부로 면 마스크로 59만 장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도 300만 장 추가 주문에 대한 발주를 받았음.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가 상승을 주가 조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지? 금감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 전부 범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지?	○ 확정되는 것은 아님.
○ 이에 대해 검찰이 봐주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중국에 실제로 마스크 공급	○ 이 건은 저희가 인지한 게 아니라 검찰이 혐의를 인지하여 거래 관련 부분을 집중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계약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임.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이런 사실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주가의 흐름과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는지만을 확인함.	조사했고, 부정거래 행위, 허위사실 관련 증거 자체는 검찰에서 상당히 확인되었다고 해서 어떤 자료가 검찰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 금감원에서 마스크 허위 공시 부분에 대한 실체적 내용을 조사한건 아니지 않은지?	○ 그러함.
○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허위 공시로 판단한 것인지?	○ 저희 쪽에 검찰에서 정보 사항을 제공하면서, 검찰에서는 마스크 공급 관련 허위성에 대한 상당 부분 확인이 되었다는 식의 기재를 해서 보내왔는데, 그간 저희와 검찰 간 소통 시 이런 식의 강력한 표현을 잘 하지는 않음. 단순히 공시만 보고는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압수를 통해 휴대폰 등으로 확보한 기록 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저희가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회사에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증거인멸이 문제될 수 있음.
○ 실제로 1,025원이던 주가가 2	○ 저희는 주가가 얼마나 올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월 3일에 1,255원으로 오르고 그 관련사인 착한이인베스트가 2월 5일부터 주식을 팔았는데 그 매도 단가가 1,107원임. 이를 주가조작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는지보다, 부정거래 행위 및 위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할 의도나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부당이득의 규모에 따라서는 형량이 달라지기도 함.
○ 상식적으로, 1,025원이던 주가가의 한 달 후 매도 단가가 1,107원이었는데 이를 주가조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실제로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찰에서 상당한 사유를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림.	
○ 당시 수원지검 담당 검사실은 누구였는지?	○ 문서 기록상 2명이 확인됨. 처음 2022년 11월 정보 상황을 보내올 때 결재한 검사는 한강일 검사이고, 2023년 1월 이후 계속 저희와 협의를 하여 최종 결정한 검사는 이윤환 검사임.
○ 당시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인데, 혹시 조사 과정에서 이복현 원장이 외압을 행사한 흔적은 없는지?	○ 저도 그 당시 조사를 직접하지 않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였으나, 공교롭게 해외에 나가 있거나 퇴사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많이 한 상태였음. 참고로, 확인해보니 당시 이복현 원장이 이 건을 수원지검에서 조사해달라고 한 것에 탐탁치 않아 했으며, 최소한의 조사만 하고, 두 번째 추가 요청을 했을 때도 해주지 마라는 말씀을 했다는 내용은 있음.
○그렇다면 원장이 그런 최소한의 조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금감원에서는 좀 더 많은 조사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의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고 수원지검에서 정보사항이 오니까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 조사하겠다, 그렇게 조사하라라고 지시가 이루어졌던 부분임.
○제공 자료를 보면 금감원과 수원지검 간 조사 종결 절차 협의가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 달 걸렸데, 통상적으로 조사 종결 절차 협의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례가 있는지?	○검찰이 저희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바로 가져감.
○부당거래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내부자 거래한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카톡 단톡방 내용도 나와 있음. 2019년 1	○내부자 거래 관련 조사내용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월 쌍방울 주가가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뛰는 등 시세 조종을 위한 흔적들이 있었는데, 검찰 및 금감원 조사 내용 중에 2019년 1월 이전 내부자 거래 관련 조사 내용은 없는지?	
○ 검찰에서 처음에 협조요청을 해왔을 때도, 공문에 내부자 거래 관련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은 없었는지?	○ 이스타 항공 인수와 관련해서는 내부자 거래라는 표현은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부정거래로 보았음.
○ 이스타 항공의 시점은 2018, 2019년 즈음은 아니었고, 2018, 2019년 즈음에 쌍방울의 내부자 거래 관련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은 검찰의 요청 공문에서 없었던 것인지? 금감원에서 그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조사한 것도 없었는지?	○ 공문에 없었고, 별도로 조사한 것도 없었음.
○ 당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함. 혹시 검찰에서 보낸 자료나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 중 김성태 회장의 과도한 주식 담보 대	○ 저희가 CB 자금 추적과정에서 CB로 발행을 하면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면 그 자금이 어디서 쓰였는지 확인을 함. 해당 자금은 차입금 상환을 위해 쓰였고 그 차입금에는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주식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출 등 내용이 담겨져 있거나 금감원이 조사한 사실은 없었는지?	이 담보로 계속 제공되면서 문어발식으로 회사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할 당시에도 조사한 자료를 다 주지는 못하였음. 패스트 트랙은 수사 절차 신속화를 위한 좋은 절차로 보이는데, 실제로 조사한 내용 관련 자료들은 보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공문만 보내게 된 것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을 부탁함.	○ 통상적으로는 증선위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발 통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경우 혐의자의 진술을 듣는 등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그런데 패스트 트랙을 하는 이유는 해당 절차를 거칠 시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어 검찰에서 '수사는 우리가 할테니, 조사만 빨리 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이 패스트 트랙 절차의 목적임. 그리고 증선위 의결을 통한 고발 또는 패스트 트랙 통보 시 증거자료는 전달되지 않고 혐의 내용만 감. 패스트 트랙의 경우 보통 약 2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
○ 그 당시도 그럼 2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간 것인지?	○ 그러함. 각각 2건으로 갔음.
○ 당시 쌍방울 임·직원 단톡방에 쌍방울 관련 계열사들의 주가 부양을 위한 여러 모의·실행 등이 검찰 압수수색으	○ 검찰이 저희 쪽에 별도의 증거자료를 보여주지는 않고 정보 사항 형태로만 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혐의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로 공개되어 수사를 세게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단톡방 내용은 확보하였는지?	확인은 다 되었으니 자금 추적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
○ 주가 조작 또는 부정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를 공유하지 않은 것 아닌지?	○ 통상 검찰에서 저희 쪽에 조사 요청하면서 가지고 있는 증거를 공유하긴 함.
○ 쌍방울 임원이 국회에 나와 너무 조사를 세게 받아서 탈탈 털렸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지?	○ 저희는 검찰이 주가조작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수사했는지 아는 바가 없음.
○ 이번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수원지검이 아닌 대검에서 직접 수사를 했고, 그 중심에 반부패 기획관이 있으며, 대검에서 수원지검에 검사 2명을 파견시켜서 몇 달 동안 수색을 한 것으로 보임. 수원지검6부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검에 직보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바, 대검에서 금감원에 보낸 공문에도 검찰 대검찰청 반부패 기획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음.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대검 얘기가 싹 빠져있는 이	○ 정보 사항은 그 당시 수원지검에 파견 가 있던 한강일 검사를 통해 형사6부로부터 받은 것이고, 패스트 트랙은 실질적으로 금감원이 보내는 것인데, 이는 증선위원장 명의로 보내고 받는 주체는 수사기획관으로 단일화 되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유는 무엇인지?	
○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공문 관련, 반부패 기획관 명의로 금감원에 보낸 것을 다 보내드렸는데, 일부만 보여주시는 것인지 다른 공문이 있는 것인지? 해당 사안에 대한 보완·보충하여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람.	○ 저희가 가진 모든 문서를 찾아서 정리한 것인데 다시 확인해보겠음.
○ 검찰에서 가져가지 않은 자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 출력 형태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파일별로 USB에 담아서 제공을 함.
○ 현장에 있는 저 정도의 분량이 금감원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고, 검찰은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다는 말씀인지?	○ 테이블 위 2개가 있는데 왼쪽 편 자료는 쌍방울과 관련한 증거자료이고, 오른쪽은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임.
○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범죄혐의를 보면 고발할 의무가 있음. 저 자료에는 쌍방울 주가조작 관련 혐의가 있는데, 이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검찰에게 거듭 요청 할 필요는 없는지?	○ 저희는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서, 수사 결과를 전달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음.
○ 검찰에서 15개 혐의에 대해 통보하고 조사해달라고 했고, 3개는 조사하여 1월에 보고하였음. 나머지 12개 혐의에	○ 해당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고, 횡령·배임 등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대하여는 조사를 아예 안한 것인지?	
○ 12개가 다 횡령·배임 관련 혐의라는 것인지?	○ 주로 해외에 보내거나 주식을 싸게 취득했다는 횡령·배임 관련 내용으로 알고 있음.
○ 금감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내용들을 조사하다 보면 횡령·배임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검찰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쌍방울 계열사의 사내 이사들, 특히 특수부 검사 출신 이사들이 사내에 많이 포진되어 자문료를 받으며 쌍방울 그룹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한 조사를 하였는지?	○ 그런 조사는 하지 않았음. 거래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하였음.
○ 검사들의 개인 계좌를 요청한 것은, 박모 검사가 변호사를 하면서 수십억 내지 백억을 벌었고, 연대출신 유 모와 같이 많은 주가조작 부정거래를 했다는 제보가 있음. 이러한 제보가 상당히 많은데, 박모 검사가 특수부 검사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게 로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계좌 등을 통해 혹시 뇌물로 받은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음. 따라서 이에 대해 인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 생각함.	
○ 금감원은 부정거래라고 판단해서 패스트 트랙을 활용, 검찰에 핵심사항을 정리해서 보냈는데, 그렇다면 검찰은 이를 중대사안으로 보고 수사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런 내용을 빼고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나?	○ 제가 알기론 없음.
○ 검찰은 수사할 때 금감원 의견을 수용해서 수사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동의함. 저희가 고발통보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단 하나, 아직 수사를 안한 것임. 수사를 하게 되면 사건이 많다보니 바로 착수를 하지 않을 순 있으나,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가져가고 있음.
○ 위와 같이 내용이 반영이 안 되었으니 김성태 일부 혐의 없음. 일부 공소권없음, 일부 각하처리, 유갑종 일부 각하	○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된 사례도 있긴 함. 전체 기소율은 약 70% 정도 됨. 나머지 30%는 무혐의 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등 결과가 나오는 것임. 이원석 검찰총장도 주가 조작 관련 엄단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가 조작한 사람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리해준 것임. 부정거래에 대해 이렇게 무혐의 처리한 사례가 있었는지?	리됨.
○ 광림 같은 경우 수백억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처리를 했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임.	○
○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함. 기간, 주가, 기획임.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임. 주가 작전이라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통상 작전을 짠다고 하면, 기간이 정해져야 하는데, 쌍방울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주가 조작을 한 것인지?	○ 저희가 조사한 기간은 짧으나, 기획은 그 앞쪽에 이루어진 부분임.
○ 기획 단계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보아야 함. 쌍방울의 작전은 경험칙 측면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계획을 짜야 함. 이를 감안할 때 쌍방울 사건은 너무 기간이 짧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다음으로, 주가에 대한 목표 측면에서, 2020. 1. 22. 1,025원이던 주가는 2020. 2. 3. 1,255원으로 상승함. 이러한 목표를 위해 범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음.	○ 당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던 시점이었음.
○ 해당 주가조작을 기획으로 본다고 하면, 주가조작을 단톡방에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은지?	○ 단톡도 증거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별도 자료 목록을 보니, 수원지검에서 금감원에 정보사항 제공 요청 당시, 담당 검사는 한강일 검사고, 당시 형사6부장은 김영남 검사임. 이는 피의자 김성태 등의 부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회신해달라는 취지임. 통보받은 사항 중 시세조종 사항이 있었는지?	○ 시세조종은 포괄적인 기재로 이해됨.
○ 2023년 1월 30일 자 수원지검과의 협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를 보니, 수원지검 이윤환 검사가 참석했는데, 금감원에서 조사한 결과 및 향후	○ 맞음. 협의 결과에 문구가 녹아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 수원지검과 협의함.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신고한 금융거래 정보 등 조사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논의했다’고 기재되어 있음. 맞는지? 당시 뭐라고 하였는지?	
○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조사자료를 제공하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조사 종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호 합의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음. 상호 합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가져가지 않은 것인지?	○ 그러함.
○ 진행 상황 보고 관련 추가 요청사항을 송부했다고 했으나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음. 이유는 무엇인지?	○ 추가 정보를 제공해온 내용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음.
○ 7월에 수원지검이 금감원장에게 긴급 조치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나, 정작 핵심 조사자료는 가져가지 않았음. 그로부터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돼서야 최종 사건 종결을 하는데, 종결한 내용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와 같이 다 거의 불기소 무	○ 판단은 검찰이 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혐의 처분임.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기괴함.	
○ 검찰의 1월 불기소 결정을 보면, 혐의자 김성태 유갑종이 주식회사 광림과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착한이인베스트와 주식회사 쌍방울의 주식을 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함에도 미이행했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각하처분 하였음. 각하처분의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위 통보 내용 외에 다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수사 착수에 필요한 단서가 부족하다는 것임. 따라서 검찰 결정에 따르면 금감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임. 저희 직원을 소환하여 고발인 진술을 듣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술을 기록으로 남기고 증거 기록을 확인한 뒤 검찰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존중함. 그러나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무혐의를 처분한다면 다른 이유를 대야지 금감원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가 거꾸로 된 것임. 검찰이 영장에 의해 요청을 해야 줄 수 있는 자료임.
○ 검찰이 아무런 자료요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금감원이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 각하처분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완전한 봐주기 수사임.	○
○ 검찰이 금감원에 협조요청을 하고 금감원이 자료제공을 했다면, 혐의사실인 주식회사	○ 그 부분은 대량 보유 보고 지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라 부정 거래보다는 훨씬 간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광림 특수관계인 착한이인베스트와 주식 합산 보고를 해야한다는 입증 자료가 금감원에 확보가 되어 있는지?	한 사건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만으로도 입증이 됨.
○ 검찰이 15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조사요청을 할 때, 검찰이 중국 마스크 공급계약, 이스타 항공 인수 관련 허위성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는 식의 기재가 있었는데, 검찰이 다른 기관인 금감원에게 조사요청하면서 이런 기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 않은지?	○ 저는 처음 보았음.
○ 금감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례적인 혐의입증에 대한 확신을 담은 문구를 볼 때, 검찰이 허위성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떠한지?	○ 이 부분은 공시가 된 것도 아니고, 쌍방울 그룹 측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보도가 되었던 사안임. 보도만 보고는 진실인지 허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에 관한 상당한 확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임.
○ 마스크 공급 계약이든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이든 간에, 순수한 의도로 참여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안된 것이라	○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면, 주가가 올랐을 때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비싼 가격에 주식을 처분하고, 해당 주식 처분금이 최종적으로 김성태나 쌍방울 측으로 최종 귀속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어야 함.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가가 올랐을 때 CB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해당 주식의 처분금이 결국 쌍방울과 김성태 쪽으로 흘러 갔음. 그렇다면 결국 이는 시세조종성 허위공시로 강력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 금감원은 앞 부분의 허위공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닌데, 검찰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혐의를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제공 자료를 보면, 대부분 CB와 관련된 조사만 진행하셨는데, 이외에도 전반적인 주가 상승 국면에서의 김성태 및 그 측근들의 주가 조작 등 행위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했으나 CB만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 만약에 금감원이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를 처음부터 했다면 주가 상승 과정을 전반적으로 봤을 것임. 그러나 본건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검찰이 요청한 내용만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인지 아니면 검찰이 CB 조사만 요청해서 해당 관련 자금 흐름만 추적한 것인지? ○ 그렇다면 지금 CB 관련 혐의만 나오고 있으나,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는 없으니, 이런 상황이라면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다른 혐의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 조사전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움.

3. 청문회 주요 질의·답변 요지

가. [4월 14일, 1차 청문회]

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가) 불법적 편의제공 등을 통한 진술 회유·압박 관련

(가) 고두성 증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연어 술파티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쌍방울 관계자의 음식 반입 사실이 일체 없으며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하는데, 법무부 TF 발표문이나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나온 내용과도 달라 허위인지 의심이 듦. 고두성 증인 조서 녹취에 따르면 '영상녹화실에서 초창기에, 작년 한 2월, 3월 정도에 영상녹화실에서 식사를 한 번 한 적은 있기는 있다고 하던데 혹시 거기 관련해서 좀 아시는 게 있어요?'라고 물어본 후 전진걸 증인이 분명히 음식이 반입됐다고 이야기를 해 증인이 이를 자료에 남긴 것이 맞는지?	○ 맞음. 남겼음.
○ 작년 2월, 3월에 영상녹화실에서 식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 다른 교도관을 통해서 들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나) 서현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출석한 교도관들의 대부분이 외부음식을 목격하였다고 하는데, 전진걸 교도관 한 명 빼고 다 못봤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것은 수원구치소에서 똑바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임.	○ 저희가 조사할 당시를 말씀드린 것임.
○ 음식 반입이나 외부식사 제공 사실이 일체 없다는 보고서 기재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전혀 다르게 쓰인 것 아닌지?	○ 당시 전진걸 교도관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갔던 교도관 전원을 조사한 결과 외부음식 반입은 없었던 것으로 전원 일치하게 진술하였으며, 일부 교도관들이 기억하는 커피와 과자도 모두 검사실 또는 회의실에 있던 것과 일치함.
○ 그 당시 전진걸 교도관과 시간, 장소 같던 교도관 전원을 다 조사했는데 전진걸 교도관 빼고는 커피와 과자 기억했던 교도관들이 전부 다 검사실 또는 회의실에서 있었던 커피와 과자로 일관되게 얘기했는데 맞는지?	○ 맞음.
○ 전진걸 증인으로부터 음식 반입 사실을 청취한 고두성 증인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들어간 다수의 교도관 중 전진걸 교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 보고서가 올라왔음에도 어떻게 전혀 반입이 안 됐다고 보고서를 썼는지?	관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도관들은 모두 외부음식이 없었다거나 커피·과자 등도 검사실, 회의실에 있던 것이라고 일치되게 말했기 때문임.
○ 한 명만 했더라도 그 증언을 묵살하면 안 되며, 그 당시 38명의 교도관이 수원지검에서 감찰 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과 출정일지 등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수원지검이 떳떳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자료에 상세히 적어놓았으나 본인은 현재 자료 제출 권한이 없음.
○ 전진걸 교도관은 음식이 반입됐다는데 보고서엔 없고, 고두성 증인도 식사 사실을 아는데 보고서엔 없는바, 이것은 수원지검의 또 다른 범죄행위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데 과연 그런지 자료로 확인해야 하지 않는지?	○ 당시 들었던 내용을 모두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현재는 교도관들의 과거 진술과 법무부 TF에서의 증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여짐.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람.
○ 음식도 들어갔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것 모두 다시 확인이 되었는지?	○ 그렇게 진술한 것은 전진걸 교도관 한 명으로 기억함.
○ 교도관들이 검찰 측에서 조사받을 때와 법무부 TF 증언이 다르다는 것인지?	○ 그런 것으로 보임.

(다) 김춘한 증인(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근무한 20년동안 한 번도 외부에서 음식을 시켜준 적이 없는지?	○ 제가 수사관으로 있을 때는 없었음.
○ 정상적 증거에 입각한 수사였는지? 회유나 압박 이런 것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검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음.
○ 피의자들 한곳에 모아 두는 것 가능한지?	○ 외화가 밀반출 등 동선 확인 때문에 소환자들이 많았음.
○ 연어회덮밥 보았는지? 5월 17일에 회덮밥이 들어가는 걸 보았는지?	○ 회덮밥은 주말에 구치소 식사가 제공되지 않을 때 외부에서 음식을 시켜서 모두가 다 같이 먹음. 평일에 외부음식을 시켜 먹었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5월 17일에 술 먹는 모습을 본 적은 없음.
○ 증인은 1313호에 근무했는지? 검사가 이화영 증인을 수사할 때 옆에 있었는지?	○ 그러함. 수사관이 2명이었고, 조서를 받을 때 참여한 적이 있었음.
○ 3명이 쉬는 시간에는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대기하는지?	○ 1313호 옆에 있는 창고 방에서 수감자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대기하고 필요하면 데리고 와 진술을 하게 함.
○ 박상용 검사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런데 변호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 보는지?	○ 변호인 측에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보고를 들은 바 있음.
○ 조재연 변호사를 아는지?	○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윗선을 설득하겠다라고 박상용 증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윗선은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중임. ○ 박상용 검사가 언론에서 계속 서민석 변호사가 방조로 의율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바, 만약 변호사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검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임.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사안의 경우 방조범으로 의율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임.

(라) 이상봉 증인(서울구치소 사회복귀 과장) 외 11인 (前·現 수원구치소 교도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화영 증인이 술을 마시고 술냄새가 나거나, 얼굴이 홍조로 바뀐 것을 본 교도관이 있는지?	○ (이상봉 증인) 저는 없음. ○ (강우영 증인) 본적 없음. ○ (김동규 증인) 본적 없음. ○ (김용제 증인) 본적 없음. ○ (박재훈 증인) 본적 없음. ○ (봉우리 증인) 본적 없음. ○ (성기현 증인) 본적 없음. ○ (안세원 증인) 본적 없음. ○ (전진걸 증인) 본적 없음. ○ (황성준 증인) 본적 없음. ○ (김 관 증인) 본적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윤주성 증인) 그 질문에는 없음.

(마) 김동규·전진걸·황성준 증인(수원구치소 교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증인 세 분이 5월 17일 저녁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다 같이 출정 나온 것이 맞는지?	○(김동규 증인) 같이 근무하였음.
○당시 연어 회덮밥을 먹을 때 설주완 변호사가 영상녹화실에 있었는지?	○(황성준 증인) 그 당시 기억나는 건 없음.
○그 장소에 혹시 변호사가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피고인·피의자들만 같이 있었는지?	○(황성준 증인) 특정해서 기억하기 어려움.
○평소에 보통은 어땠는지?	○(김동규 증인) 평소에는 같이 있었던 걸 많이 봤음.
○이화영 피고인이랑 김성태 피고인이랑 방용철 피고인이랑 같이 있을 때 변호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인지?	○(김동규 증인) 매번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몇 번 같이 있었던 것이 기억남.
○영상녹화실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김동규 증인) 그러함.
○수원지검 조사 당시, 서현욱 증인이 그 얘기 할 때 제대로 조사가 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아까 녹음파일 들었던 것처럼 “그런 사실이 없었지요”라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질	○(황성준 증인) 답변을 빠르게 요구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음. ○(김동규 증인) 주로 술 위주로 질문이 왔었고 저도 그날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1분 내외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문해서 답변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던 것인지?	짧게 조사했음.
○ 교도관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드림. 지난 4월 3일에 국정조사에 나와서 당시 수용자들이 모여 있었고 외부음식 취식했으며 편의 제공 사실이 있었다, 목격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 맞는지?	○ 맞음.
○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 10조에 따라서 편의 제공 및 타인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나 윗선 검사들에게 사전 고지받은 적이 있는지?	○ 없음.

(바) 김동규 증인(수원구치소 교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5월 17일 날 수요일 날 그날 연어회덮밥을 1층에서 받아왔는지?	○ 본인이 받아왔음.
○ 5월 17일은 평일 저녁인데 영상녹화실에서 외부 도시락인 회덮밥으로 식사하게 한 이유가 검사실하고 이야기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씀 하신 것이 맞는지?	○ 그렇게 대답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5월 1일부터 7월까지, 김성태 계호하는 동안 주로 육회덮밥이나 외부 도시락이 들어갔고, 기억하는 이유는 교도관들이 육회덮밥을 도시락으로 자주 먹게 돼서 지겹다고 했다는 것인데, 교도관들 것까지 같이 들어왔다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육회덮밥 등을 가지고 왔고, 그 양이 좀 많았는지?	○맞음. 직접 육회덮밥을 가지고 왔고, 그 양도 많았음.
○'전진걸 교도관께서는 박상용에게 항의도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는지?	○제가 보지는 않았고 들어서 알고 있음.
○구치감으로 내려가서 육회 도시락을 먹은 적도 있습니까?	○그러함. 휴일에는 보통 검사실에서 도시락을 제공했는데 그때는 식사 시간 맞춰서 수용자를 구치감으로 이동시킨 후에 거기서 먹었음.
○치킨이 배달된 것을 근무자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내용은 무엇인지?	○2월에서 3월경이었고, 주말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제가 그때 소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한 2시 정도였음. 그전에 한 번 간식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치킨이 한 번 배달이 됐었고 근무자들이랑 나눠 먹은 기억이 있음.
○지금까지 교도관 생활을 하시면서 이전에도 그러한 적이 있는지?	○그때가 처음이었음.

(사) 전진걸 증인(수원구치소 교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원지검에서 조사할 당시 외부음식 봤다고 대답한 사람이 있는지?	○ 시간이 좀 오래 지나 기억을 못 했었는데, 당시 고두성 검사와 통화한 내용이 있어 그것을 틀어드리겠음(통화녹음 재생).
○ 수원지검이 조사를 똑바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방용철이 검사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서 등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씀한 적이 있는지? 결국, 이 서류는 전진걸 교도관님의 항의에 의해 회수가 된 것인지?	○ 제가 직접 회수한 건 아님.
○ 어떤 서류라고 하였는지?	○ 일단 소에서 나가는 서류는 휴대용 서류이기 때문에 전달이 불가함. 소에 관한, 보안에 관한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음.
○ 보안사항이 무엇인지?	○ 소의 처우에 관한 문제로 알고 있음.
○ 여기 알고 계신 분이 계신지?	○ 그 회수는 출정교감이 하였음. 오성윤 계장임.
○ 박상민·박상웅, 김성태의 수행·수발을 든 사람들이 김성태를 면회하기 위해서 수시로 들락날락했다는 걸 보신 것인지?	○ 맞음.
○ 그 장소가 어디인지?	○ 소위 창고라고 하는 1315호임.

(아)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교도관들은 전혀 홍조를 띤 것을 보거나 술 냄새를 맡은 적도 없다고 함.	○저는 술을 마셨다고 한 적 없음. 입에 대니 술이어서 안 마셨다고 함.
○보도에 보면 김성태가 '이화영이 다 이야기해서 수원지검이 좋아서 난리 났다'는 내용이 있고, 오늘 국정조사 과정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는 13층에서 이화영 증인이 협조하면 15층에서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있음. 이를 보면 별건의 수사들을 한꺼번에 수사했고, 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도 그러한 점을 보거나 느낀 점이 있는지?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음. 13층에서 박상용 검사가 하다가 제 진술이 마음에 안 들면 15층을 올라가라 해서 15층에 올라가면 한강일 검사가 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뇌물을 주지 않았냐고 협박한 걸 들이대면서 기소할 것이라고 함. 제가 당황하면 다시 13층에 내려가라하면 내려가서 박상용 검사가 다시 다그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적으로 하였음.
○이것이 박상용 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렇지 않음. 15층·14층에는 송민경 검사, 한강일 검사 여러 사람이 있었음. 그 검사실들을 돌림을 시키고 다시 13층에 내려보내는 일들이 반복되었음.
○5월 17일 당시 김성태랑 김태헌이랑 같이 박상용 검사실에서 같이 식사한 것인지?	○5월 17일 저하고 김성태 박상용 검사 교도관 2~3분이 영상녹화실 밖에서 관찰하고 계셨고, 김태헌 증인은 그때 구치감으로 가 있었던 것 맞음.
○ 수감 중 조재연 변호사 만났는지?	○3차례 만났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본인이 선임했는지? 박상용검사가 만나게 한 것인지? 조재연 검사는 박상용 검사가 모시던 검사장임. 조재연은 윤석열 이원석과 함께 일했고 퇴직 전 고검장까지 했었음	○ 선임한 적 없고, 박상용검사가 만나게 한 것임. 수원지검 1313호실 가니까 박상용 검사실로 저, 박상용 검사, 조재연 변호사하고 들어가서 박상용검사는 다른 문으로 나가고 조재연 변호사와 저만 둘이 남아있었음. 조재연 변호사가 검찰의 최고위층에 확인을 받았으니 협조를 하라고 지시하였음.
○ 확인을 받았다는 말은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는 이야기인지? 조재연 변호사가 검찰 최고위층 이름 거론은 안 했는지? 누구라고 추정하는지?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재연이 이원석보다 선배였음. 이화영 증인에게 딜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박상용 검사가 부른 것이라 생각하는지?	○ 이해찬 전 총리님 문제, 저의 별건 수사까지 덮어주겠다는 내용이었음.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고 검찰 최상위층이라고만 들었음. 딜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부른 것으로 생각함.
○ 5월 25일 10일 전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증인 회유 시도를 했고 이화영 증인이 서민석 변호사에게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 맞음. 법정에서 전달받았으나 길게 듣지는 못했음.
○ 신문조서, 피의자 대질신문이 이루어졌다는 김영남 증인의 발언에 대한 입장은?	○ 제가 그 당시에 특히 2023년 5월, 6월 사이에 1313호 검사실 등 수원지검에 불려 나갔을 때 지금 김영남 증인이 진술한 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실확인서 그런 것들을 남긴 적 없음.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림. 정용환 고검장님이 감찰할 때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네 차례 출석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후에 정용환 그 당시 감찰팀장님에게 물어보시면 그 정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함.
○ 술자리 회유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일곱 차례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음. 개별 증언 시에는 아주 상세한 기억이 있으나, 자꾸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거짓말을 자꾸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질의위원이 인신공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 방조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 있는지?	○ 박상용 검사가 반복적으로 한 설명으로, 서민석 변호사 녹취에 나왔음. 본인을 방조범으로 해서 형을 낮추고 바로 석방해 주겠다는 제안이었음.
○ 수원지검의 수사 과정들을 보면 지침 위반, 규정 위반이 너무나 명백함. 수사 과정확인서 작성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 그러함. 심지어 면담보고서나 수사과정확인서, 수사보고서가 전부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음.
○ 이화영 증인의 출정시간 관련 오전 10시에 출정한 사람을 오후 2시에 왔다라고 기록한 것	○ 수사과정확인서 및 면담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수십 건, 백여 건 이상임. 감찰 결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은 허위공문서 아닌지?	로 밝혀질 것으로 보임. 김영남 증인이 서면으로 보고받았다면 그것은 허위일 것임.
○ 조작기소라고 생각하는지? 대법 판결을 부정하는지?	○ 네, 판결 후에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있으면 재심 가능함.
○ 2019년 5월 17일 연어파티 사실인지?	○ 사실임.
○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 제가 서민석 변호사의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는 김영남 전 부장검사의 진술은 사실이 아님. 수임 계약 당시부터 검찰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법정 재판만 관여하기로 약속했음.
○ 이화영 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이 아닌지?	○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
○ 2023년 6월 21일 검찰 조사에 대한 이화영 증인의 메모에는 박상용도 기존 진술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부장검사에게 불려가서 이재명 대표에 관한 보충질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부장검사는 김영남 변호사인지?	○ 그러함.
○ 이재명이 연결되어야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수 있고, 이전 진술로는 부장검사와 상부가 만족할 수 없어 이재명에게 보고하였다는 보다 구체적인 정	○ 그러함. 시종일관 이재명 당시 대표님에 대해서 더 진술해 달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날짜를 얘기해 달라는 등의 압박과 회유를 반복적으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황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맞는지?	받았음.
○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 김영남 전 부장검사의 말은 사실이 아님. 수임 계약 당시부터 검찰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법정 재판만 관여하기로 약속했음.
○ 이화영 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이 아닌지?	○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
○ 김성태와의 술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를 연결해 주었다는 언론 보도와 사진이 있는데, 증인은 이 사진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 그런 사진이 있다면 목을 걸 것이니 증거를 가져오길 바라며, 김성태도 나중에 이를 부인했음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 함.
○ 김성태를 사면시켜 주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사면 관련 본 위원의 질문이 왜 야비하다는 것인지?	○ 사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규명하자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분열적이고 야비한 말씀을 하니 국민의 인권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람.
○ 대법원 확정판결으로 10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대북사업을 벌였다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법원이 법을 왜곡했다는 것인지?	○ 국가가 폭력을 행사한 사법살인이며, 판결이 하느님의 말씀인 것은 아님.
○ 판결의 전제가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재심 신청은 왜 당장 하지 않는 것인지?	○ 판결 이후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야 재심을 하는 것이며, 신청 시기는 본인 마음임.
○ 일정이 조율되어서 불렀던 것	○ 수원지검에 가면 허위 진술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인지? 우리가 정리한 자료에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불렀음.	강요하여 견디기가 어려웠음. 그렇게 불렀던 것이 맞음.
○ 술과 연어파티를 하고 난 다음 대북송금 대납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고 자백을 했다는 것인가?	○ 김영남 증인은 변호사가 대동했다고 하는데 정해진 것만 가지고 가도록 하였음. 검찰과 상호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5월 17일 연어술파티는 사실상 항복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와 같았음. 면담보고서 형태로 문서를 만들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파티를 한 것임.
○ 같은 공간에서 김성태증인은 어떠하였으며, 실제 외국환거래법위반 공판과정에서 증언내용 중 이 부분은 좋았다 등의 품평이 있었는지?	○ 박상용검사가 저와 김성태 단둘로 만들었고 김성태가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이재명은 끝났다고 함. 증언을 시연하면서 불리한 진술 인정하지 않으면 김성태가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 하고, 박상용검사가 진술세미나를 넘어서 공판품평회를 하면서 얘기함. 모해위증교사로 느껴졌음.
○ 이화영부지사가 말을 바꿈. 사진 없다고 했는데 영상도 있음. 협약식하고 폭탄주 만들고 대통령 만들자면서 웃음. 이제 국정원이 나섬. 이종석원장이 국내정치 앞장서고 있음. 국정원이 리호남 없었다 하면서 위조여권으로 들어왔을 가능성 있	○ 국회에서 몇차례 청문회가 있었음.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증언하였고 법무부 조사로 사실로 확인됨. 국민의힘에서 위증이라고 수원지검에 고발함. 수원지검은 접수하고 기소해서 재판 중임. 이미 위증고발하고 수원지검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만 정보 입수한 적은 없다함. 서해피격사건 뒤집으려고 감찰함.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해 역사가 국가폭력이라고 책임을 물을 것임. 이화영은 위증 고발해야 함.	서 검찰수사함. 더구나 수원지검 검사가 조사도 없이 그냥 기소하였음.
○ 이번 특위사건은 문제 있으면 재심청구하면 됨. 이렇게 국회에서 함정 파고 왜곡된 증거와 증인을 모아놓고 왜곡된 국정조사 하는 중임. 국조특위 불러서 업무보고받고 사건결론 뒤집는 기관증인을 얻어냄. 감찰하고 고검TF 하고 오늘 국정조사청문회 함. 조작을 위한 청문회를 하는데 짜고 치는 고스돕 같음. 청문회 하루종일 하지만 이렇게 왜곡된 국조 보면서 법치주의 무너지고 국민들 탄식함. 이제는 특검에 고발에 들어갈 것임. 대통령임명 특검이고 특검보는 이화영 증인과 박용철 증인을 변호한 당사자임. 뇌물공여자와 수수자를 변호하던 분이 특검보로 가 있음.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장난만도 못한 국정조사임. 증인은 이재명지사한테 보고한 적 없다했는데 아는 바 있는지?	○ 답변하지 않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3년 5월 17일은 어떤 날이었는지? 여러 차례 압박과 회유로 인해서 결국 진술을 맞추게 된 날인지?	○ 그해 3월부터 허위진술을 압박·회유하고, 이해찬 총리 구속시키겠다고 하며, 가족들에 대한 압박까지 심해짐. 5월 17일 이전부터 진술 세미나는 계속 있었고 17일 이후로 거의 방치되었음.
○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회유·압박을 당했는지? 심경은 어떤지?	○ 5월 17일에도 수사기록목록이 빠져 있었고, 검찰청에 출석한 많은 날들이 대거 누락되어 있으며, 제출되지 않아 허위보고를 법원에 한 것임. 면담보고서의 경우에도 허위로 보는 이유는 김성태와 형태, 시작과 끝시간, 서명이 똑같아 사후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임. 또한, 별건수사를 통한 수백회 압수에 따른 5만건을 압수하는 등의 압박이 있었음. 또한 이재명, 이해찬, 가족, 시골친구에 대해서도 연락·압박하였음. 당시 죽고 싶은 심정이었음. 박상용검사가 '당신 보석, 당신 몇 개월 구형할 거야' 등등을 이야기했었고, 실제 협력하면 풀어주는 것을 보여주어서 압박과 회유를 받았음.

(자) 김형수 증인(前 쌍방울 미래전략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봉지욱 기자가 인터뷰하고 진술 세미나 뒷받침하는 진술을 들었다고 하는데, 1313호가 어디인지?	○ 쌍방울 그만둔 게 2023년 7월이고 봉지욱기자는 몰랐을 때 전화통화함. 1313호실은 5회 갔고 영상기록실은 3회 갔음. 1313호는 조사가 아니라 검사 입장에서 알리바이, 즉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알리바이를 얘기해달라고 검사가 요청함. 그때 참석당사자로서 기억을 형성하지 못해 알리바이를 못 만들었음. 포렌식부터 가택수사까지 쌍방울 내부자로 당시 깊숙이 관련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음. 일단 계약서작성 참여했고 IR 자료 직접 만들고 검찰 조사하면서 단톡방도 만들었는데도 참여하여서 주범으로 지목받음. 그 상황에서 지적받고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수사 초반 혹독한 조사를 받았는지?	○ 조사를 받다 보니 열거한 가담 행위들에 대해 심하게 조사받음. 그게 확정적으로 수원지검 조사보고서에 나옴. 당시 계약서 쓸 때도 적시되었고 IR 자료에도 계약서가 명시되었으며, 쓸 때도 모르고 쓰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검찰보고서 내용과 제목도 시세차익을 위한 주가조작으로 결론 냄. 카톡방 대화내용에도 주가부양 있다 보니 검찰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림.

(차) 양선길 증인(前 쌍방울 사장, 前 디모아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태균과 김성태가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아는지?	○ 비즈니스 관계로 오래 전부터 아는 관계였음.

(카) 박상웅·박상민 증인(前 쌍방울 이사·前 쌍방울 회장 수행비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태균과 김성태가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아는지?	○ 10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음.

(타) 지승만 증인(前 쌍방울 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태균과 김성태가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아는지?	○ 두 분의 관계를 잘 모름.

(파) 김영남 증인(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상용 검사가 1313호실에 공범들을 모아놓고 편하게 대화하도록 하고 김성태의 수하인	○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박상웅·박상민이 김성태의 수발을 들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 김성태가 지시를 내리고 박상웅·박상민이 업무를 보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한 것이 맞는지?	○ 임직원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임. 특정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
○ 임직원이 검찰청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한 것 아닌지?	○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확인해야 되는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결정하고 지시하고 임직원들이 그걸 수행하면서 실제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됐는지, 수행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들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임.
○ 증인도 박상용 검사가 했던 것처럼 쌍방울 김성태, 방용철 등등을 통해서 말 맞추기 하거나 회유하려고 한 적이 있는지?	○ 그런적 없음.
○ 김성태·방용철·이화영·김태헌 등에 대하여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적은 있는지?	○ 이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한 번 잠깐 면담했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 면담을 3분 내외로 한 번 했었음.
○ 김태헌 접견녹취록을 들어보면 부장님이 한 말을 언급하였음. 사실인지?	○ 김태헌을 본 적도 없고 해당 발언을 한 적도 없음.
○ 박상용 검사로부터 수사 과정에 관해서 다 보고 받고 수사	○ 주요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과정확인서나 이런 것도 함께 검토하고 하셨는지?	
○ 수사보고서의 피신을 작성 안 할 때 담당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지?	○ 그 과정은 남기도록 되어있음.
○ 2023년 5월 17일 수사보고서에는 서명이 없음. 왜 없는 것인지?	○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잘 모르겠음.
○ 신문조서도 남기지 않고 사실확인서도 남기지 않고 피의자랑 대질신문도 하지 않고 이러고 불러내면 불법인지?	○ 전부 다 이루어졌음.
○ 수사보고서 내용은 본 적이 있는지?	○ 서면 보고는 됐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이화영 출정시간 관련 오전 10시에 출정한 사람을 오후 2시에 왔다라고 기록한 것은 허위공문서 아닌지?	○ 경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음.
○ 김성태도 그렇고 방용철의 경우도 실제 출정시간과 기록 시간이 다름. 본인들이 저녁에 연어회덮밥 및 술 먹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조작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	○ 사실은 수사 상황은 전체 수사에서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아님.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은 것이 맞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서류들은 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보고는 안 받았을 것 같음.
○ 박상용 검사가 했더라도 임의로 저렇게 했을 것이라는 말인지?	○ 박상용 검사, 작성자한테 경위를 확인할 부분이 있어 보임.
○ 이 사건의 기소장은 누가 쓴 것인지?	○ 여러 개의 기소가 이루어졌고 상당 부분은 제 이름으로 작성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되었음.
○ 휴일에는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밥을 못 가지고 오니 수사관이 내려가서 가지고 올라왔다는 답변 내용 관련하여 휴일에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 재판이 주 2회 정도 이루어졌고, 재판 출석이나 변호사 면담으로 주중에는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정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였음.
○ 1313호실 앞에 창고가 있는 것을 아는지? 수원지검에서의 방 호수는?	○ 그 당시에는 창고가 있는 것을 몰랐고, 방 호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음.
○ 방 호수는 1502호임. 그 앞에는 뭐가 있는지? 관계자들이 구치소에서 접견, 면회하면서 만든 녹취록은 어디에 두었는지?	○ 구치소에서는 영상으로 기록함.
○ 김영남 증인 방 앞에 창고가 있음. 1526호임.	○ 녹취록은 전부 CD 형태로 구치소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CD 형태로 구치소에서 보관한다고 하면 우리 국정조사위원님들이 가서 본 1만 5,000쪽의 자료가 어디 있는지?	○ 잘 모르는 내용임.
○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 들어보셨는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 감찰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지적한 후, 해당 지침이 만들어짐. 당시 법무부 보도자료에도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를 제한하고 수사 정보 취득 목적의	○ 지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발표하였음.	
○ 진술 모의, 외부 음식물 반입 몰랐고 대체로 사실관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음. 맞는지?	○ 그러함.
○ 증인은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서 당시에 소속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규정을 준수하여 수사하는지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서장이었음. 김성태·방용철·이화영·안부수 소환 횟수가 많은 것은 알고 있었는지?	○ 소환 횟수가 많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횟수를 알지는 못했음.
○ 박상용 검사가 수용자 반복 조사에 관해서 증인에게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 그때그때 승인했는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보고하고 출석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출석요구 대장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 기억이 잘 나지 않음.
○ 관련 규정을 위반한 수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수사를 진행하라고 이야기하였음.
○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 10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인 접견, 외부 음식물 취식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교도관들에게 사유와 편의 내용을 고지한 후 조서 등 서면에 반드시 기재하도	○ 관련 규정을 다 준수해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록 하고 있음. 증인이 지휘·감독한 검사들이 이 지침을 제대로 준수했다고 생각하는지?	
○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 김성태 접견 녹취록, 전화 녹취록에서 편의 제공 정황이 다수 확인됨. 수사할 때 수사상 비밀 보호를 위해 공범들 간에 분리 수사·조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녹취록을 들어보면 공범들 간에 모여서 진술 맞추기를 했음. 적법한 수사인지?	○ (답변하지 않음)
○ 공범들 간 분리 수사가 원칙인데, 녹취록에는 모두 불러서 수사 받은 내용이 있음. 공범들 간 진술맞추기가 적법한지?	
○ 당시 수원지검의 수사는 지침 10조 위반이 명백함.	
○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 11조에 따르면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수사 기록에 편철해야 함.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 박상용 증인이 그렇게 사람들 만나게 하고 불러다 놓게 하는 것 다 지시한 것 아닌지? 김영남 증인 전부 다 위반했고 다 알고 있고 다 지시한 것 아닌지?	○ 지시한 적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까 다 보고하게 되어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규정이 있는데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임.
○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지?	○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지금도 그 사실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움. 확인할 방법이 없음.
○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관련 청문회를 수도 없이 했음. 그리고 우리가 수원구치소 가서 자료를 받아서 이화영·김성태·방용철 출정 내역을 모두 확인했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려 나올 거면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 제가 사직한 지 2년이 지났고 지금 그 흔한 공소장 하나 수사보고서 하나 가지고 있던 적도 없고, 사실 오늘 증인으로 나오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은 검색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겨우 구해서 읽어 봤음. 관련 언론 자료 읽어 보고 나온 것이 전부임.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김영남 증인, 이화영 증인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은 없음.
○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부장검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 한 적 있음.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함.
○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 이화영 전 부지사가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요구했는데, 서민석 변호사가 소극적이어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였음.
○ 수사할 때 이화영 증인이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영남 부장검사까지 동원돼서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했다는 방금의 진술이 사실인지?	○ 설주완 변호사 상임 이후에 한동안 서민석 변호사님이나 그 어쏘 변호사가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기억함.
○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진술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재명 대표 기소장에는 그 진술이 쓰이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 맞음. 검찰은 단 한 번도 진술을 조작하거나 회유한 적이 없으며 사실대로 수사하였음.
○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였는지가 핵심인지?	○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했고 의혹을 가졌던 것은 사실임.
○ 김영남 증인은 서민석 증인의 발언에 대하여 잘못된 발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변호사가 거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검사가 잘못 발언한 것이 아닌지?	○ 잘못된 발언이라기보다는 박상용 검사의 해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임. 변호인 측에서 특가법상 뇌물을 일반 뇌물죄로 선처하는 조건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받았음.
○ 모든 수사 내용은 다 보고받고 그리고 차장검사와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지?	○ 주요 내용은 다 보고하였음.
○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드는 진술을 해 수사에 협조해주면 보석해 주고 영장 재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해	○ 그런 사실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당 내용을 박상용 검사가 증인에게 허락받았는지?	

(하) 서민석 증인(법무법인 해광 변호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변호사가 녹취한 것을 조금씩 공개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공개하기를 원하였음.
○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중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	○ 주로 박상용 검사가 먼저 전화를 걸었음. 현재 공개한 통화 두 건도 박상용 검사가 먼저 건 것임.
○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2023년 6월 19일 자에서 “이화영 씨 진술밖에 없고,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부분은 거래를 제안하는 내용이 아닌지?	○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음. 그리고 제가 선처를 요구하였다는 김영남 증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님.
○ 서민석 증인은 이화영 증인이 검사에게 수사받을 때 같이 있었는지?	○ 수사 입회를 한 사실은 없음.
○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 변호인으로서 선처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 검찰 간부와 설주완 변호사 측에서 먼저 이화영 부지사에게 접근해 회유를 끝낸 상태였고, 검찰 측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임.
○ 본인이 포스터에 '이재명을 지	○ 검찰과 딜을 한 것이 아니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켰다'고 썼으면서 정작 검찰과 딜을 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이 부지사와 '이미 나온 진술 범위에서 절대로 나가지 말자'고 사전에 약속한 것이었음.
○ 녹취의 전후 맥락이 명백한 거짓 진술 강요였다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어 주면' 같은 대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음.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검사의 말에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이화영 증인의 죄를 깎아보려고만 노력한 것이 보이는데 뭘 이재명을 지켰다는 것인지?	○ 본인은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평소 변호사가 전화해도 안 만나주던 검사가 먼저 연락해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하면 일단 '그렇습니까?'라고 응대하는 것이 당연함.
○ 청주시장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에 제출할 실적을 만들기 위해 이 전후 맥락을 공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재명을 지켰다는 증거는 없고 그저 이화영 증인의 죄를 줄이려다 해임당한 것이 사실 아닌지?	○ 본인의 답변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임.
○ '이화영 증인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자폭할 경우 민주당에서 배신자로 찍히는 것을 제일 괴로워할 것'이라 말한 적이 있는지?	○ 본인의 통화 녹음에 나오는 이야기일 것임.
○ '나는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800만 달러는 다 무죄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한 것은 문건을 확인한 뒤에는 범죄 사실을 빼도 박도 못 하겠다고 박상용 검사에게 심경을 토로한 것 아닌지?	○ 저렇게 말한 적은 있으나 말씀하시는 뜻은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상용 검사가 ‘국정원 문건과 회의록은 제삼자 뇌물까지 거의 메이드시켜 버린다’고 하자 ‘알겠다,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오히려 본인이 800만 달러가 진짜 북에 갔음을 확인한 뒤에 박 검사에게 요청하는 내용 아닌지?	○ 8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무죄라고 생각하나, 당시 국정원에서 스마트팜 약속 미이행으로 북한이 비난했다는 문건 하나만 나와 ‘처음보다는 약간 나빠졌구나’라고 언급했을 뿐임. 이후 해당 송금이 주가 부양 목적이었다는 국정원 문건과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당시 일부 불리한 정황이 나왔다고 느꼈을 뿐 본인은 계속해서 무죄 변론을 이어갔음. ○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는 이 부지사가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및 가족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각적인 결정을 유예해달라고 한 것이며, 배신이라는 것은 허위 진술로 이득을 얻거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의 입장을 이 부지사의 심정에서 추측하여 설명한 것임.
○ 증인의 최근 행보가 과거와 달리 당시 의뢰인인 이화영 증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오늘 증언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보이며, 왜 녹취록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여기 나와서 구술로	○ 녹취록은 이미 검찰청에 모두 제출했으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전문을 드렸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풀었는지? ○ 모욕을 당하셨다는 내용 관련 발언을 해주기 바람.	○ 저는 이 자리에서 거짓말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였음. 선서한 사람에게 본인의 추측만 늘어놓으면 안됨. 저는 경선에 탈락했음. 저는 국정조사가 열린다기에 진실을 말하기 위해 나왔음. 어떤 의원님은 제가 녹음파일을 미리 갖고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드러냈다고 하는데, 저는 3월 27일에 해당 녹음파일을 발견했음. 그 전에 포렌식하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도 있음. 제가 이를 선거에서 이용하려면 청주시장 경선 전에 당에게 이를 밝혔을 것임.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에 대해 그동안 말하지 않은 것임.

(거) 조경식 증인(前 KH그룹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성태, 배상윤, 조경식 증인은 서로 가까운 사이인지?	○ 34년을 같이 했음.
○ 나노스 투자유치 업무를 맡았다는 김태균 씨 아는지?	○ 잘 모름.
○ 국정감사시 ‘조경식이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연어·술 파	○ 저는 이 자리에 제 전과 사실을 전국에 공개하려고 나온 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티에 직접 참석했으며’라고 하였으나 검찰 조사 결과 직접 참석한 적 없음. 또한 같은 해 11월에서 12월 세 차례 초밥 17인분, 25인분 그리고 68인분이 검찰청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쪽지가 공개가 되었는데, 법무부 조사 결과 조경식은 식사한 기록이 전혀 없음. 혹시 위증으로 고발당하였는지?	람이 아니며, 대북송금 사업의 실체를 밝히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온 사람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음.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2025년 6월 SBS와 단독 인터뷰를 하셨지만 이재명 지사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언급한바 있음. KH 배상윤 회장님이 하와이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외유 중이셨는데 느닷없이 이런 사건들이 터져 못 들어오는 것임.
○ 박상용 검사실에 외부 도시락이 들어갔을 때 같이 먹은 적이 있는지?	○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함.

나) '시세조종' 은폐 및 '대북송금' 조작 등 기획 수사 관련

(가)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선양의 켐핀스키 호텔은 왜 간 것인지? 아까 나온 동영상은 선양의 켐핀스키 호텔 가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고, 2024년 5월에는 김성태에게 '이재명과 통화했다, 이재명이 좋은 일 해 줘서 고맙다' 이런 말 하지 않았는지?	○ 전혀 그런 적 없음.
○ 100억 현찰로 주는데 경기도가 뭘 해주기로 했는지?	○ 그런걸 약속한 바 없음.
○ 당시 재판에서 알려진 이재명 방북신청 등의 행위가 별의미가 없는 것인지?	○ 방북신청 한적없음.
○ 이화영 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이 아닌지?	○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
○ 경기도 부지사가 지사에게 아무 보고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증인이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어마어마한 대북사업을 사업을 꾸며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은 셈인데, 혹시 경기도나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있는	○ 말씀하신 전제 자체가 틀렸고, 쌍방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 내용을 조작해서 진술했기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며, 고발당한 사실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 리호남의 제3국 존재증명 등이 재판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아서 사실인정을 못함. 이는 검사가 선별적으로 취합한 진술만을 테이블에 올려놓았기 때문임. 우리나라 국정원 정리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임. 쌍방울 측은 주가조작으로 제대로 증언할 수 없고 모든 유력한 증거는 반대로 향하고 있음. 안부수도 리호남 못 봤다고 하고, 국정원도 그러함. 금감원도 쌍방울 측 주가조작 혐의 포착함. 이런 상황에서의 재판은 편향적 증거의 재판이고 검찰이 만들어낸 조작기소임. 이런 부분 밝히겠으며, 증인은 박상용검사실에 수차례 불려나감.	○ 이재명 대표의 관여사항을 초지일관 물어봤고 피고인으로서 진행된 외국환거래법 사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내용이었음. 취조 정도가 아니라 협박이고,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의 구속협박, 처와 아들 구속을 언급함.

(나) 방용철 증인(前 쌍방울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재명의 경기도가 없었다면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없었을 것인지?	○ 그러함.
○ 김성태 회장의 방북 목적은 장차 있을 이재명 지사의 방북 등을 준비하고, 김정은도 만나	○ 비슷한 맥락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고, 희토류에 대한 계약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도 작업한 것이 맞는지?	
○ 리호남과의 협상을 통해 방북비를 5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내린 것이 맞는지?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당에, 100만 달러는 인사 비용 맞는지?	○ 그러함. 그러함.
○ 70만 달러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줬고 나머지 30만 달러는 2020년 1월 중국에서 준 것 맞는지?	○ 그러함.
○ 이와 같은 사실은 모두 진실이 맞는지?	○ 그러함.
○ 결국 이재명 지사를 위한 방북비용이었다는 것이 김성태와 증인, 리호남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인지? 협상한 것인지?	○ 그러함.
○ 이것에 대해서 이화영 증인도 확실히 알고 있었는지?	○ 그러함.
○ 이화영 증인이 쌍방울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 급여도 받고 법인카드도 계속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유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 급여는 받지 않으셨고, 차량은 한 2개월도 받았음.
○ 2019년도에 수행비서를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급여를 준 내역서가 있는데 이화영 증인만 보고 이렇게 한 것인지	○ 경기도까지 봐야되는 그 정도의 분은 아니셨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고려한 것인지?	
○ 어떤 이유로 퇴직하신 분인지? 그것과 급여를 준 것은 별개의 문제인지?	○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여성분임. 그러함.
○ 방용철 증인 2018년 단기순이익이 얼마였는지? 매출이 1,000억 원인데 800만불은 적은 것 아닌지? 리호남에 뭐에 담아서 줬는지? 한방에서 줬는지?	○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 매출은 1,000억 언저리 였던 것으로 기억함. 답변하지 않겠음. 답변하지 않겠음.
○ 리호남 봤는지?	○ 답변하지 않겠음. 증언 거부함.
○ 2019년 7월 24일 리호남 만난 것 사실인지? 국정원, 봉지욱 등 반박하고 있음. 입법부가 사법부 판단을 완전히 뒤집고 있고, 증인이 리호남을 봤다는데 국정원은 리호남이 없었다 하고, 그런 국가기관이 왜 있어야 하는지, 리호남은 간 적 없다고 하는데 당연한 것이라 생각함. 북한 공작원이 그 사실을 인정할 이유가 없음. 이화영 증인하고 리호남하고 사이 안 좋고 증인은 리호남과 사이 좋은지? 국회의원들이 조작기소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황당할 것임.	○ 7월 24일 리호남 만난 것 사실임. 이화영 증인하고 리호남하고 사이 안 좋고 저는 리호남과 사이 좋음. 4년을 징역 살고 나왔는데 또 고통받고 있음. 증거로 방용철 PC에서 확보한 서류가 나왔다는데 저는 컴퓨터를 못함. 오히려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직원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해야 맞는 얘기임.
○ 김성태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음 12p 보면 법원 출석 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	○ 제 PC가 아니고 누구 것인지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실을 밝힌다고 기재함. 이화영과 공범관계는 인정하나 이재명과 공범관계 없다고 기재함. 방용철 PC에서 나왔다는 서류의 PC가 누구 PC인지?	
○ 리호남에 대한 기사가 2024년 8월 달에 언론에 나올 정도인데 그 무렵(2024년 10월 24일경)이화영에 대한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증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쌍방울 실무자하고 함께 리호남과 위챗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한 대화를 했고 김성태와 리호남은 분명히 필리핀 호텔에서 만났고 밤색가방에 70만 달러를 넣어 줬다' 이런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나오는데 맞는지?	○ 맞음.
○ 오늘(4월 14일) 언론에 난 기사를 보면, 2022년 검찰 조사에서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은 쌍방울 측에서 이화영이 아닌 이화영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함. 그런데 반대되는 증거하고 증인 진술이 나오자 진술을 번복하게 되고, 방용철 증인이 검찰조사와 진술이 다르다는 재판부 질문에 대해서 '검찰조사 발언을 후회하고 법정에서는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기사가 되어있음. 맞는지?	
○ 2023년 3월 23일 재판에서 진술 번복 경위를 설명하면서 “권영빈이 소속된 한결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의논했고, 그러니까 뇌물을 어떻게 이화영한테 줬냐 이런 것들을 논의했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방용철 증인이 이렇게 재판에서 증언한 것이 맞는지?	○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한 4년 가까이 재판을 겪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가 가고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권영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초창기에 이화영 씨가 소개시켜 준 것은 맞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변호사 인맥도 없고 그래서 혹시 유능하신 분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고 한 3~4개월 정도 자본시장법, 제가 부인을 할 때 잠깐 변호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마음을 돌려서 다른 변호사님들이 하셔서 지금 그분에 대한 추측성으로 기자분들 연락도 많이 오시는데 괜히 내가 그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피해가 갈까봐 말씀드림.
○ 증인이 2023년 3월 23일 재판에서 “한결이라는 변호사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의논했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	○ 변호사님하고 상담할 때 제가 문승욱 씨라고 주장을 할 때 사건의 경위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얘기한 거지 변호사님한테 제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를 받은 것” 이렇게 증언한 것이 맞는지?	있으니까 이것을 커버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음.
○ 김태균과 김성태가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아는지?	○ 5년 이상 오래된 친구임. 동갑내기이고, 가끔 한 번씩 보는 사이임.
○ 쌍방울 중국 훈춘공장은 어제부터 가동되었는지?	○ 30년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쌍방울 중국 훈춘공장에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적이 있는지?	○ 저희가 직접 고용할 수는 없고, 중국 업체들이 고용한 것 같음.
○ 증인은 김성태 회장하고 오랜 지인인지? 30년 정도.	○ 맞음.
○ 이화영 부지사와 함께 뇌물 공여, 외환법 위반이 됐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맞는지?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도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맞는지?	○ 맞음.
○ 같은 공범이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 실형을 받았음. 검찰에서 김성태 구형 시 ‘수사에 적극 협조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김성태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방용철 부회장 등은 너그럽게 선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법정에 나가서 한 진술로 알고 있음.
○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는 기업인가?	○ 아님.
○ 쌍방울이 어떻게 8백만 달러를	○ 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보내게 된 것인지? 당연히 이화영이 도움 요청한 거 아닌가? 목적과 방북비용이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	
○ 수사 당시 상황을 진술하면서 “13층에서 일이 잘 풀리면 - 이화영 부지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15층 쌍방울 조사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였는데, 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 자본시장법 조사를 받은 김태헌 이사로부터 전달받은 이야기이나, 조사받는 입장에서 13층(이화영 부지사)이 협조적이면 15층 분위기가 좋았다는 분위기를 느낀 것 같음.
○ 기관보고시 국정원에서는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리호남을 만나서 안내한 것이 맞는지?	○ 김성태 회장 대북송금 항소심 중요증인이고, 계속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법정 진술로 대신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림.
○ 필리핀에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왔는지? 70만 달러를 직접 주었는지?	○ 왔음. 직접 주지는 않았고 회장님이 전달해 주심. 회장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는 하였음.
○ 리호남의 얼굴은 보았는지?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 보았음. 위증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 70만 달러를 왜 주었는지? 어느 숙소에 묵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 방북 대가로 준 것임. 리호남이 묵은 숙소는 알 수 없고, 오카다 호텔 후문 입구에서 만나서 김성태 회장 방으로 안내하였음.
○ 리호남하고 직접 만났으니 얼굴도 기억하고 사진도 가지고 있는지?	○ 기억함. 찍은 사진은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형기간 중 또는 조사 중에 검사실 또는 맞은편 창고방 1315호라는 곳에서 자유롭게 대화한 적이 있는지?	○ 짧게 짧게 그런 경험 있음.

(다) 김형수 증인(前 쌍방울 미래전략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훈춘의 쌍방울 공장에 북한 공원들 100여 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방용철이 송명철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이 있는데 맞는지?	○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북한 사람들이 고용됐다라는 것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음.

(라) 김영남 증인(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윤환·조주연·한강일 검사가 대검에서 수원지검 15층으로 파견 온 것인지?	○ 한강일 검사는 원래 수원지검 소속이었고 나머지 두 분만 왔음.
○ 파견 형식인지, 인사 발령을 받은 것인지?	○ 파견 형식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음.
○ 대검에서는 원래 무엇이었는지?	○ 연구관 직책에 있었던 것 같음.
○ 그 당시 담당했던 대북송금 관련 수사 파트는 무엇이었는지?	○ 금융 관련 전문성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해당 부분에만 한정했는지?	○ 그러함.
○ 언제까지 근무하다가 돌아갔는지?	○ 정확하지 않으나 2023년 6월이나 7월 경이 아닐까 싶음.
○ 이재명 대표 제삼자 뇌물 관련해서도 이 사람들이 같이 수사했는지?	○ 아님. 쌍방울 관련해서만 수사함.
○ 이 수사 과정에서 대검에 계속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받고 했다는 것인지?	○ 수사 상황은 대검에 계속 보고하였음.
○ 검찰이 안부수와 김성태, 이화영과 방용철, 외국환관리법 위반 관련해서 별도로, 순차적으로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 당시 신병 확보가 있었는데, 신병 확보 구속기간이 최대 20일임.
○ 협조가 되는 안부수를 먼저 기소한 후 판결받아서 순차적으로 뒤에 사건에 영향 주려고 한 것이 아닌지?	○ 그것은 아니었던 듯 함.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는 하나인데 그것을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뇌물죄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음. 최근에는 동일 사건 중복 기소로 인해 공소기각 당한 것이 맞는지?	○ 최근 내용은 잘 알지 못함.
○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등은 같이 수사하여 기소하여야 할 사건인데 이것을 따로 분리하여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그때 체포영장으로 강제 신병 확보가 되다 보니 구속시킬 수 있는 기간이 20일 밖에 안되어, 확인할 수 있는 범죄로 먼저 기소했던 것으로 기억함.
○ 얽매려고 분리해서 기소한 것	○ 그런 것은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임.	
○ 2022년 11월 17일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송금 사건은 대북 뇌물 사건이고, 검찰에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엄명함. 문재인 정부의 서훈 국정원장 등, 이와 관련된 수사는 없었는지?	○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음.
○ 신문조서도 남기지 않고 사실확인서도 남기지 않고 피의자랑 대질신문도 하지 않고 이러고 불러내면 불법인지?	○ 전부 다 이루어졌음.
○ 쌍방울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김성태·방용철 등의 진술말고는 없음. 유일하게 있는 것이 김태균이라는 투자 유치한다는 사람의 회의록임. 이 회의록은 2023년 5월 17일 문제의 연어술모임 직후 이틀 후인 5월 19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했고 법정 증인으로 나왔음. 회의록 보시면 작성 장소와 날짜가 다르지만 형식과 글자체는 완전 동일함.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미국·일본·홍콩에서 그 회의록을 프린트했다는데 공용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하였음. 실제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당 호텔에서는 한글 프린트가 안 되고, 이	○ 지금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그리고 실제 저 문서 제가 기억을 못 함.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공용컴퓨터를 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그것을 질문하신지도 이해가 잘 안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또한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였음. 증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에게 보고받고 이것 이상하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 판결문에 '김성태가 안부수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별 다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은 안부수 말만 듣고 대북사업을 결심하면서 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 측에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 맞음.
○ 그 밖에 판결문에는 쌍방울그룹은 이화영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받았는데, 이것도 맞는지? 이런 북남협력사업 제안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쌍방울은 대북 스마트팜 비용을 보내게 되는 것이 아닌지?	○ 맞음. 쌍방울이 왜 대북사업을 시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음. 김성태 회장은 대북사업이나 북한 관련해서 전문가가 전혀 아님.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에 뛰어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평화부지사 입장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지킬 수 없는 스마트팜 사업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에 뛰어든 거지, 물론 그 과정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떤 경제적 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익, 주가 부양 이런 목적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함. 그것에 대해서 저희 수사할 때 그런 것 전혀 없었다라고 한 적 없고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공소장에도 그런 부분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함. 그래서 꼭 주가 부양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볼 수는 없고, 사건의 시작점을 한번 봐 주시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지점이 있음.
○ 박상용 검사는 계속 부장한테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회유하고 압박하고 하는 거 전혀 못 들었는지?	○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임.
○ 24일 날 이화영 씨의 진술이 바뀌니까 급하게 박상용 검사가 전화함. ‘부장님, 내일 좀 들어와 주십시오. 제발 이화영 좀 만나 주십시오. 윗선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부인했으면 진짜 10년 이상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가 25일임. 17일부터 진술 회유가 시작됐고 18일, 19일, 20일 김성태 씨의 증언이 정확하게 감사결과에 나와 있음. 그리고 25일이 도래하고,	○ 알지 못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어제 만났는데’라는 서민석 변호사의 답변에도 내일 또 들어와 달라고 얘기함. 이것에 대해 전혀 몰랐는지?	
○ 자백을 하면 보석, 공익제보자 지정, 처우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사의 발언이 변호인에게 할 수 있는 내용인지?	○ 질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으나, 변호인 측에서 선처를 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이 있었던 것 같다고 알고 있음.
○ 박상용 검사 윗선이 부장검사였던 증인 아닌지?	○ 그러함.
○ 수사 늦추자 또는 하지 말자는 제안을 박상용 검사한테 받은 적이 있는지?	○ 없음.
○ 박상용 검사의 거짓말인지?	○ 답변하기 곤란함.
○ 박상용 검사가 모든 수사를 일거수일투족 매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라고 입장문을 냈는데 증인에게 하나도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 수사 진행상황이 매일 보고가 이루어진 건 맞음.
○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6월 19일 녹취록에 따르면 재증언 지시를 못 하게 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박상용 검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함.
○ 박상용 검사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런데 변호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 보는지?	○ 변호인 측에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보고를 받은 바 있음.
○ 조재연 변호사를 아는지?	○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윗선을 설득하겠다라고 박상용 증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윗선은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중임.	○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임.
○ 박상용 검사가 언론에서 계속 서민석 변호사가 방조에 대한 의율을 해 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바, 만약 변호사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검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사안의 경우 방조범 의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임.
○ 조작기소했는지?	○ 조작한 적 없음.
○ 수원고법 판결이 나올 때 이 사건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사관, 경찰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 정확한 규모는 생각나지 않으나 검사 5명 정도와 검사당 1~2명의 수사관이 투입되었던 것으로 기억함.
○ 이 판결문에 왜 이 지사를 방북시켰는지에 대한 동기와 중국 행사 때 경기도 직원들이 같이 참석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것이 맞는지?	○ 그렇게 알고 있음.
○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의 허위계약, 주가조작을 인식하였던 것, 주가조작은 기소하지 않았음. 금감원에서 기관보고 때 주가조작 100억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김성태가 주가조작 불기소로 이득을 정리해봄. 증인 2월 3일 기소하면서 주가조작 관련 내용 불기소하였는지?	○ 쌍방울 주가조작 관련 수사한 사실이 맞음, 다만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혐의사실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 제공했고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검찰 수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와서 다시 조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다른 입증 범죄 혐의를 우선 기소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주가조작을 만 2년이 지나서 처벌했다는 것은 검찰이 봐준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음. 재판 결과가 검찰 수사와 모순됨	○ 취지는 이해하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답변드림. 현재 기록을 다 검찰이 가지고 있고 수원지검이나 검찰이 답변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전 수원지검 형사 6부장이었음.
○ 박상용 증인선서 거부 적절한지? 회덮밥, 진술세미나 사건을 아는지? 1313호 앞에 창고 있는것 알고 있는지? 이후 수많은 사건이 기사화되었는데 모른다는 것인지?	○ 과거 부하직원은 맞으나 질문에 답변은 부적절해 보임. 회덮밥 진술 세미나 저는 알지 못함. 15층에 부장실이 있었고 13층에 창고 있는지는 모름. 그 당시는 몰랐으나 이후 알게 되었음.
○ 쌍방울사건 수사총괄 및 기소책임자인지? 박상용 검사의 수사 진행상황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 그러함. 수사 진행상황 보고가 이루어졌음.
○ 박상용 검사는 세세한 내용을 다 일일이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증인은 박상용 검사의 통화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는데 맞는지?	○ 그러함. 주요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 받았지만 통화내용까지 보고 받지는 못함.
○ 수사 당시에 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무마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상의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인지?	○ 그러함.
○ 박상용 검사가 총장까지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 주요 사건은 대검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검에 보고가 이루어진다하면 총장까지 보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되는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임.
○ 쌍방울이 회사 발전을 위해 경기도를 활용한 것인지, 경기도가 대북사업 성과를 위하여 쌍방울을 활용한 것인지? 그렇다면 경기도가 쌍방울을 활용한 것인지?	○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임. 그런 측면이 있음.
○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이 아닌지?	○ 그러함.
○ 김영남 증인, 이화영 증인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은 없음.
○ 국정원 문건을 선별한 적 없다고 했으나 23년 4월 20일 수원지검이 국정원에 자료제출 요구 후 36건을 임의제출 받고 대북수집 관련 66건은 목록만 받는데, 한 달 후 유도윤 검사가 13건을 특정하여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이 해당 13건만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제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국정원 자료를 선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 국정원 압수수색은 직접 뒤지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제시하고 국정원에서 주는 자료를 받아 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특정된 13건을 제외하고 그 전에 임의제출 받은 자료 중 경	○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기도를 배제하라는 등 검찰의 프레임과 반대되는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를 법원에 제출 안 했다는 것이 아닌지?	
○ 대검에서 파견된 조주연, 이윤환, 한강일 검사가 15층에서 근무했는지?	○ 15층에서 근무했음.
○ 이들이 맡은 업무는 쌍방울그룹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같은 사건인지?	○ 그러함.
○ 이들을 누가 지휘했으며, 본인이 지휘하지 않았는지?	○ 수원지검의 검사장, 차장이 지휘했고, 본인은 지휘하지 않았음.
○ 이들은 대검에서 직할로 내려보내 형사6부장도 지휘하지 않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이 직접 지휘했는지?	○ 한강일 검사는 원래 6부 소속이었는데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었으며 파견된 검사가 아님.
○ 13층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대북송금 파트를 수사했는지?	○ 13층에는 박상용 검사만 있었고 나머지 검사들은 전부 15층에서 근무했음.
○ 13층과 15층 합쳐서 형사6부 검사들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고, 이것은 증인이 지휘했는지?	○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음.
○ 800만 불이 오로지 경기도를 위한 돈이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면 1억 달러짜리 사업권을 주는 계약을 하면서 북한은 쌍방울한테 받는 대가가 무엇인지?	○ 재판의 실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북한이 쌍방울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않으면서 1억 불 사업권 계약해 줄 수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는지?	○ 관련 내용은 전부 다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이루어진 내용임.
○ 결국, 증인은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 아닌지?	○ 그렇지는 않음.
○ 안부수가 북한의 김성혜에게 스마트팜 시범농장 사업 추진해야 하는데 이삼백만 불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냐는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 2018년 12월 3일 자 국정원 문건과, 리호남이 김한신에게 쌍방울 계열사 주가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김한신이 국정원 직원에게 이야기해 이를 옮겨 적은 2020년 1월 30일 자 국정원 보고 문건 두 가지와, 첫 번째 문건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했고 두 번째 문건은 신빙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지?	○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확히는 기억을 잘 못 함.
○ 압수수색 당시 12월 3일 자 국정원 문건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당시 조사받던 이화영 피의자가 먼저 알려주어 문건을 확보하게 된 것인지?	○ 이화영 증인이 법정에서 계속 “국정원 문건이 있다,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함.
○ 국정원 직원인 친척을 통해 보고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화영	○ 수사 단계에서는 국정원 문건을 확보할 생각을 못 했으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증인이 “내가 자백하는 것이 맞으니까 당시에 국정원 문건도 작성된 게 있다. 그걸 확인해 보라”고 하여 문건이 압수된 것이 맞는지?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증인이 계속 국정원 문건 이야기를 하여 재판부를 통해 문건을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함.
○ 검찰도 모르는 국정원 보고서를 이화영 증인이 먼저 이야기했다면, 그 내용을 이화영 증인이 알고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 아닌지?	○ 그렇게 기억하고 있음.
○ 2023년 5월에 국정원 압수수색 했는지?	○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하였음.
○ 압수수색 당시 주가조작에 대한 자료는 아니고 대북송금 관련된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당시 관련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나오는 것을 유도윤 부장과 사전에 협의했는지?	○ 사전에 연락한 적 없음. 또한, 법원에서 직권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변호인과 함께 압수수색을 하였음.
○ 당시 쌍방울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계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음.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사업을 위해 영입한 사람인 만큼 당연히 검찰이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했어야 했을 것임. 이화영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해서 다른 진술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유죄 판단을 한 것 아닌지?	○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임. 이화영에 대하여는 그러함.
○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국정원 보고서,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 판결문을 보면 법정에서 주장이 되었고 상당 부분 배척이 된 것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리호남의 행적 등은 이미 법정에서 이화영과 변호인이 주장한 것 아닌지?	으로 알고 있음.
○ 국정원 보고서도 법정에서 현출되었는데, 법원이 일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 일부를 채택한 이유 판결문에 다 드러난 것 아닌가?	○ 국정원 문건에 대하여는 검찰이 선별한 것은 없음.
○ 리호남의 행적도 판결문에 보면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다는 것이 다 인정된 사실 아닌가?	○ 당시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가지고 수사하였음.

(마) 김국훈 증인(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 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성태 회장과 2018년경에 알게 되었고 김성태에게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의 김태균 법정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며, 필리핀 생체정보 출입국 심사가 2017년 12월부터 이루어진 것을 고려할 때 리호남의 필리핀 체류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없음. 이러한 배경 하에, 수원지검 참고인 조사 당시 “리호남은 마닐라에 오지 않았다”라고 검사에게 두세 번 답변했으나 조서에 담기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지?	○ 그러함.
○ 그 검사가 누구이며, 박상용 수	○ 박상용 수사 후이나, 누구인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 검사 전인지, 수사 후인지?	기억은 못 하겠음.
○ 임성수 아니면 이경환 검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지?	○ 기억은 나지 않음.
○ 어쨌든 검사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서에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인지?	○ 그러함.
○ 안부수 아태협 본부장으로 총괄기획담당이었는데,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고 확답하였다는데 잘 몰랐던 거 아닌지?	○ 북경에 계셔서 오실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대표단에 대한 통제, 경호 등을 우리 회사에서 직접 담당했었는데, 리호남 참사의 이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만약 리호남이 왔다면 안부수가 움직였을터인데 안부수의 이동도 보고받은 바 없음. 4개 객실을 예약했다가 2개 객실을 취소하고 하나만 안부수 회장만 사용하여 다른 방은 비어있었음. 만약 리호남이 왔다면 안부수 회장이 객실 예약이라도 요구했을 것임.
○ 김성태와 함께 있었던 여성분이 있지 않은지? 김성태와 같이 있었던 여성분은? 만찬은 몇시에 끝났는지?	○ 안부수 회장과 함께 호텔에 계셨던 분임. 그건 모름. 도중에 블록체인 관련 영상이 나오면서 문제가 있어 조금 일찍 7~8시쯤 끝났음.
○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언제 들었는지? 안부수의 주가조작에 대해 누구한테 들었다고 알고 있는지? 방용철 아닌지? 안	○ 시기는 말하기 어렵고 1년 이내에 들었음. 쌍방울 측이라고만 알고 있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함.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부수조차 리호남을 못봤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렇지 않을까 싶음.

(바) 조경식 증인(前 KH그룹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성태, 배상윤, 조경식 증인은 서로 가까운 사이인지?	○ 34년을 같이 했음.
○ 필리핀에서 김성태 회장과 같이 있었는지?	○ 2차 대회 당시 방용철 부회장, 전 쌍방울 회장을 공항에서 출입국 절차를 거치게 하고, 필리핀에서 로열스위트 방 3개를 잡은 후 당시 부인, 따님, 조카 등이 방문했으며, 본인은 김성태 회장과 함께 숙박함.
○ 김성태 회장과 함께 호텔에서 잠을 같이 잤고 제3자가 들어온 적은 없다는 것인지?	○ 그러함.
○ 김성태 회장과 리호남이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인지?	○ 그러함.
○ 호텔에서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달러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말인지?	○ 그러함.

(사) 노은채 증인(前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 네, 그 당시에 들었던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뇌물 스캔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 뉴스는 들어보셨는지?	
○ 당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건을 전 정권 차원의 북한에 돈을 준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음. 노은채 전 기조실장님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있었던 2019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 북한정보수집국장을 하고 있었음.
○ 북한정보수집국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 대북정보 수집이 주 업무임.
○ 그러면 대북정보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 대부분을 다 제가 총괄했음.
○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기록을 보면, 2018년 당시 국정원은 김정은의 최측근 외교안보 책사인 김성혜의 속마음을 듣기 위해 안부수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 김성혜가 그 당시 국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었고, 김성혜를 접촉할 수 있는 안부수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치있는 인물이었음.
○ 김성혜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안부수가 필요했다 이 얘기 아닌지?	○ 네, 그러함.
○ 김성혜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안부수가 왜 중도탈락을 하게 된건지?	○ 안부수와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활용해서 주가를 조작한다는 정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되었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단절을 했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지시해서 조치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북 관계에서 안부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대북정보를 해보니까 안부수가 쌍방울과 함께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이용한 거 아니겠냐라는 첩보가 들어왔다는 것인지?	○ 여러 경로로 들어와 있었음.
○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022년 11월에 이 사건은 북한과 문재인 정부와 연결된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그 당시에...(답변하려고 했으나 국가정보원 증인 1이 답변하겠다고 함)
○ 국정원은 2022년 7월에 검찰 수사관 이창연을 감찰하였고, 쌍방울과 경기도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냄. 그런데 유도윤 검사가 다시 파견되어 수원지검과 연결되었고, 주가조작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검에서도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덮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당시 유엔의 대북 제재, 미국의 행정 조치, 그리고 5.24 조치 이렇게 3중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송금 대납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봄. 2022년과 2023년도에 쌍방울을 둘러싼 여러 언론 보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입장이었고, 그 때 정치권과 검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원을 겨냥하는 기류가 있었음. 차츰 시간이 경과하면서 검찰의 수사 타깃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정원에서 이재명 지사로 바뀌는 흐름이 있었음. 저도 2022년과 202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남.
○ 검찰에서 증인을 수사했던 적이 있는지?	○ 제가 그 당시에는 북한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안부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를 참고인이나 법원의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 저도 상당히 의아했음.
○ 국정원장이 하신 것은 첩보인지, 정보인지?	○ 첩보와 정보가 다 융합돼 있음. 최초의 첩보가 여러 경로로 입수됐고 그 첩보를 종합한 게 정보임.

(아) 국가정보원 비공개 증인 1(당시 요원,주재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담당관은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람.	○ 제가 안부수 씨의 협조를 받아서 그 일을 직접 했던 담당관이고, 2019년 2월 1일 자 비밀보고서를 작성했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순수하게 국정원의 고유 업무 측면에서 안부수씨의 협조를 얻어서 접근한 것으로,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님의 그 말씀은 사실과 완전히 배치됨.
○ 국정원에서 조사했을 때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 맞음. 제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1월 24일에 주가가 82% 뛰었고, 1월 중순에 쌍방울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드러났다는거 아닌지?	북한 박명철쪽의 접촉이 있었고 당시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이 영입이 되었다는 대북 소스가 언론에 보도됨.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뛰었으며 이건 인위적인 부양으로 봐야함.
○ 쌍방울 사건은 대북송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으로,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북한에 전달된 돈은 김성태의 방북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의 언급이 정확하며, 송금된 800만달러의 성격이 이 사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함. 만약 판결에 나오는 800만 불이 경기도를 위한 대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설명이 되지 않음.
○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	○ 안부수임. 국정원 측은 쌍방울 관여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배제하려고 하였음. 그러나 안부수는 쌍방울 측 김성태 회장을 데리고 2018년 11월 29일에서 12월 1일까지 단둥을 방문했을 때 북한 측이 관계자를 소개시켰고, 해당 사실을 속인바 있음. 이런 사실 등을 고려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유지하려고 했던 동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함.
○ 국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활용하기 위해 '48번'이라는 번호를 부여하고, 그가 제공한 김성혜 접촉 및 김정은 방남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 국정원 공작반이 안부수와 이화영을 연결해 북한 통전부 첩보를 획득하려 했으나, 안부수가 2018년 12월 평양 초대소에서 김영철·김성혜·박철 등 북측 고위 인사를 따로 만난 것은 국가보안법상 임무 지시를 하달받은 것과 다름없지 않은지?	○ 안부수가 초대소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것은 사실임. 다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으나 너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
○ 검찰에 낸 첩보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부수가 쌍방울 이사로 들어가 사업을 하면서 아태위와 경제 공작 합작에 들어가고 경기도의 DMZ 포럼 행사 등 경기도를 배제하게 되는지?	○ 해당 보고서는 지금 처음 봄.
○ 남북관계에서 ‘방북 의전비’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김성태 회장이 평양에 가기 위해 미리 깔아준 돈이 2019년 9월 이후 송금된 300만 달러의 용도라고 볼 수 있는지?	○ ‘방북 의전비’라는 말은 처음 들으며, 김성태 회장의 방북 용도로 준 돈이라는 점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음.
○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보관이 사용하는 접촉·조정 대상자는 아니고 국정원에서 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경기도가 돈 내서 평양 가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협조자라는 것인지?	○ 이화영 부지사는 협조자라기보다는 예전부터 북한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라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원을 도와준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함.
○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소리가	○ 리호남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복잡하여 잘 안들렸어서 한 번 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림.	겠음. 제가 1,2심 법정 증인으로 갔는데, 1심에서는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이 쟁점이 아니었고 2심에서 쟁점이 되었는데, 2심에서 '경험칙상 리호남이 올 수 없는 구조다, 리호남은 올 이유도 없다' 라고 양심적인 증언의 말씀을 드림. 그리고 살펴봤더니 그 당시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에 대한 증거가 2개임. 하나는 김성태의 진술, 또 하나는 방용철의 진술임. 그런데 이 두사람은 진술을 유리하게 할 동기가 충분한데도, 그 두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되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회의를 가졌음. 추가적으로, 이종석 원장의 기관보고 증언에 대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가기관장의 발언은 객관적 증거와 상황,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저희 국정원장의 발언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함.
○ 국가기관장이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통	○ 그렇게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해 파악했고,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자기 여권으로 움직여 제3국에 있었다는 보고를 하신 것인지?	
○ 방용철, 김성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인지?	○ 방용철 증인이 말씀하실 때 스스로 자인을 했다라고 생각함.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함.
○ 방용철 증인이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실이 아닌 걸 자인했다라는 말씀이신지?	○ 사실은 항상 하나임. 2개는 양립할 수 없음.

(자) 김현철 참고인(법무법인 유한 케이앤씨 변호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환치기 수법으로 김태헌에게 돈을 줬는지? 김태헌은 11억원 필리핀에 보냈다고 하고 김성태는 100만불 지급했다고 하고 방용철은 70만불 지급했다는데 보낸 것은 몇 번이고 밀반출한 것인지?	○ 김태헌에게 주었음. 일단 돈 보낸 것은 확실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한지는 모름. 3번 보냈음.
○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조경식 증인 답변) 전자담배 케이스에 100만달러 뭉치 3개를 담으면 꽉참
	○ 본 사건은 검찰의 사건 조작과 법원의 위법적 재판으로 인해 불합리한 판결이 도출된 것임. 2019년 쌍방울과 북측 간 체결된 본계약은 1억 달러 규모의 지하자원 채굴권 등 막대한 경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제적 이권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지급된 500만 불은 경기도를 위한 대납이 아닌 김성태 회장의 사적 사업권 확보 및 계열사 주가 부양을 위한 이행보증금 성격이었음. 방용철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내부 문건들은 '회장님의 방북'을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있으나 방북 명단에 경기도 인사는 전무하였으며,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 위기에 처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대납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것임.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배척한 채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음.
○ 방용철 컴퓨터에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타진한다"는 내용은 언제의 문건인지?	○ 검찰이 압수하여 증거기록으로 제출한 것임.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진술만을 채택함.

(차) 봉지욱 참고인(前 뉴스타파 기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리호남이 북경과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던데 봉지욱 기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 리호남 참사는 저희 지자체 관계자가 지난 달에 만남. 올 초 그리고 작년 말에도 저희 대북사업가들을 계속해서 만났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리고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평양에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겠다고 함. ○ 이 사진은 올 초 리호남 참사의 모습으로, 녹음파일은 취재원이 노출되서 공개하지 않겠음. ○ 결론은 리호남은 필리핀에 가지 않았고, 그 돈을 받지 않음. 북한에서는 개인 착복을 할 수 없음. 800만 달러 중 700만 달러는 송명철 부실장이 영수증을 써줬고, 영수증이 없는 100만 달러는 리호남이 받았다고 검찰이 만든 것으로 생각함.
○ 리호남은 필리핀에 간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그런 돈을 받았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들었다는 건지?	○ 정치수용소에 갔을 것이라는 것임.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북한으로 돈이 건너갔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며, 2020년 1월부터는 쌍방울과 북한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음. 2020년 6월경 리호남이 방북 초청장을 남북 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대표한테 보낸 것으로 들음.
○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과 스마트팜 분담제안서 왜곡시켰다는 인터뷰가 있었음.	○ 2024년에 대북송금 문건공개부터 많은 취재를 하였고 비공개 증인과 메시지 입수를 하였는데, 이화영 부지사 유죄판결은 회의록 정도의 증거임. 이번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국정원과 금감원에서 이 정도 밝혀진 것 보면 조작이 아닌 창작임. 2년 전 과방위에 나갔다가 수사받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작보도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음. 이 사건도 이 정도 창작이면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함.

(카) 이찬진 참고인(금융감독원 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방용철 부회장이 진술한 부분에 있어서 위증하는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 조경식 회장도 리호남이 올 리가 없다, 그리고 김국훈 이사장도 올 리가 없다, 그리고 안부수도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방용철 부회장만 저렇게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주가조작 관련해서 4,532억, 배임 등 15건 전부 불기소를 함. 이 얘기는 김성태·방용철은 그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	○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임.
○ 수원지검하고 금융감독원이 협의를 맺는데, 그 중 하나가 쌍방울을 위해서 3개에서 주가조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작 관련된 부분,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맺은 것인지?	
○ 그때 이윤환 검사, 이윤환 검사가 대검에서 파견 검사로 오고, 실질적으로 3건의 부정거래, 주가조작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원지검이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만 압수수색 안 한 것이 맞는지?	○ 맞음.
○ 이것은 김성태, 방용철을 봐 주려고 하는 것임. 자신들의 주가조작에 의한 이득, 4,500억원이 되는 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위증하는 것이 아닌지?	○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그때 패스트트랙으로 주가조작 사건 조사라는 게 있는데 KH그룹하고 장원테크를 다 조사한 거를 증선위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보냈음. 그 부분도 사실은 금액이 굉장히, 그걸 김성태 회장까지 포함해서 공공으로 되어있던 사건인데 그 부분도 수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쌍방울이 대북사업 호재를 이용해 나노스 주가조작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고, 수원지검은 이미 김성태 등이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등에 의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조사 요청하였는데, 사실인지?	○ 국회에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였음. 금감원이 관련하여 조사하였고, 관련 자료를 가져가지 않은 것은 분명함.
○ 패스트트랙은 언제 하는지? 증	○ 증거인멸의 경우가 있거나 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거인멸의 경우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닌지? ○ 이번 경우 패스트트랙을 걸었다는 것은 검찰이 신속히 그 결과를 받고 싶어 했던 이유인지? ○ 결국 봐줘야 되는데 패스트트랙을 걸었다는 말씀이신지? ○ 결국은 2019년 1월 달부터 연말 송금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김성태 회장의 방북 용인데 이 결론이 갑자기 뒤집어진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음.	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함. ○ 그냥 알리바이용으로 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음. ○ 그게 아니라 저희가 종결해야겠다고 자꾸만 요구하니까 그것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타) 조성우 참고인(금융감독원 하노이 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쌍방울이 대북사업 호재를 이용해 나노스 주가조작한 사실이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되었고, 수원지검은 이미 김성태 등이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등에 의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조사 요청하였는데, 사실인지? ○ 김용남 증인에 따르면, 금감원	○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조사 요청하였는데, 내용이 방대하여 검찰에서 파악한 불공정 혐의에 한하여 조사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보충적으로 조사하고 설명하였음. ○ 12월에 검찰 방문하였고, 어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정보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금감원이 추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불기소처분하였다고 함. 금감원은 어떤 내용을 조사했고 금감원이 1. 30. 검찰에 뭘 가서 증언한 것이었는지? 설명시간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했었음. 검찰에서 이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보고 위반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걸 검찰에 전달함. 조사결과와 처리 방향을 논의하면서 2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기억함.
○ 조사결과 보고서가 상세한데, 이건 검찰이 알려준 게 아니지 않나? 1. 30.에 압수수색 등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는지?	○ 금감원의 추가조사를 통하여 추가한 것임. 압수수색영장으로 가져가는 방안과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 방안을 소개한 다음, 영장을 사용하는 방안이 낫겠다고 이야기함.
○ 검찰에서 영장을 주지 않았는지? 영장청구가 없어서 전달 못한 것인지?	○ 추가 조사를 요청했었는데 해당 부분이 불공정거래 범위를 넘어선다는 판단이 있어 그 부분까지 조사하지는 않았음. 그렇게 알고 있음.

다) 이중기소 등 기소권 남용 및 부실 감찰 등 관련

(가)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원지검이 금감원에 22.11. 쌍방울을 조사요청하며 보낸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사항 제공' 공문에는 15건의 김성태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등 혐의사실이 정리되어 있음. 지난 기관보고 때 수원지검장에게 해당 불기소 결정문을 요청하였으나, 오늘 아침에야 불기소 결정의 요지를 보내주었음. 1-3사건의 요지는 2018.7.~9. 제우스 1호투자조합 조합원들의 출자지분의 70%를 임의 감액한 후 해당지분을 김성태 지분으로 변경, 조합원들에게 4,532억원의 피해를 가한 것임.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김성태·김태헌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임. 재산국외도피에 대해 특경가법 적용 시 쌍방울과 김성태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것이므로 검찰이 이를 덮어주고 봐준 것임. 수원고검장과 서울고검직무대행은 감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반드시 감찰해서 바로 잡을 필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철저히 진상조사토록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요가 있음. 한편, 김성태는 방용철 등과 공모하여 30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찰은 방용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함. 다음으로 3-2 사건의 경우 2020년 4월 비비안으로 하여금 미래아이앤지가 보유하고 있는 인피니티엔티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수해 324억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비비안에 손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함. 이는 명백한 쌍방울에 대한 봐주기 수사임. 이 사건에 대해 감찰을 할 의향이 있는지?	
○ 수원지검의 수사가 적법한 것으로 보는지?	○ 조속히 진상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음.
○ 이화영 증인이 면담한 적이 없는데 면담한 것으로 기록하면 불법이 아닌지?	○ 진상조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움.
○ 이번 국정조사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보복·표적·기획·편파·강압 수사라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성명에 동의하는지?	○ 동의하지 않으며 국회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진 국정조사이므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함.
○ 수사 과정에서 사람을 여러 번 불러내면 보고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지침 위반에 해당됨.

(나) 이정현 증인(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검사가 면담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만약 허위로 작성했다면 법률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이 문제가 될 것 같음.
○ 이화영 피고인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부장검사가 담당사건 피의자의 변호사에게 전화해도 되는지? 이례적인 상황인지?	○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그러함.
○ 부장검사가 담당사건 피의자의 변호사에게 전화해도 되는지? 이례적인 상황인지?	○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그러함.
○ 이번 국정조사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보복·표적·기획·편파·강압 수사라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성명에 동의하는지?	○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 이런 식으로 수사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임.
○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인지?	○ 지금 서울고검에서 감찰 진행 중이라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음.
○ 본인이 하신 것은 아니나 이런 식의 잘못된 수사 방식이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대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어떤지?	○ 29년째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들께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며, 검찰은 '환부만 도려내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해 왔으나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해 왔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림.
○ 전진걸 교도관은 음식이 반입됐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고, 고두성 증인조차도 영상녹화실에서 식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수원지검의 또 다른 범죄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는바, 확인을 위해 38명 교도관의 진술 자료와 출정일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수원지검은 왜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 해당 기록은 수원고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관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전달하겠음.
○ 수형자 조사지침 관련 수원지검 직원들이 지침을 위반해서 수사한 것이 명백한 것임. 제11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게 기본이지만 조서작성을 안 하는 경우라도 수사과정확인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수형자의 서명을 받아 편철해야 함. 대표적으로 2023년 5월 17일 면담조사 사례를 보면 방용철과 김성태는 수사과정확인서가 있는 반면 이화영증인에게는 수사과정확인서가 없음. 수원지검의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명백한 지침위반이 맞는 것 아닌지?	
○ 이화영 증인이 말한 압박·회유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수사해도 되는 것인지?	○ 29년간 검사를 하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 같음.
○ 수원지검이 금감원에 22.11. 쌍방울을 조사요청하며 보낸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사항 제공' 공문에는 15건의 김성태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등 혐의 사실이 정리되어 있음. 지난 기관보고 때 수원지검장에게 해당 불기소 결정문을 요청하였으나, 오늘 아침에야 불기소 결정의 요지를 보내주었음. 1-3사건의 요지는 2018.7.~9. 제우스 1호투자조합 조합원들의 출자지분의 70%를 임의 감액한 후 해당지분을 김성태 지분으로 변경, 조합원들에게 4,532억 원의 피해를 가한 것임.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김성태·김태헌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임. 재산국외도피에 대해 특경가법 적용 시 쌍방울과 김성태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것이므로 검찰이 이를 덮어주고 봐준 것임. 수원고검장과 서울고검직무대행은 감찰권	○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으나, 재산국외도피 관련,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서 처분권·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북한 측에 지급한 걸로 구성하여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반드시 감찰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한편, 김성태는 방용철 등과 공모하여 30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찰은 방용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함. 다음으로 3-2 사건의 경우 2020년 4월 비비안으로 하여금 미래아이앤지가 보유하고 있는 인피니티엔터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수해서 324억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비비안에 손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함. 이는 명백한 쌍방울에 대한 봐주기 수사임.	
○ 이 사건에 대해 감찰을 할 의향이 있는지?	○ 그 부분은 추후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음.
○ 쌍방울 사건에서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골라서 취사 선택함. 국정원 감찰 부서 파견된 부장검사가 66건 문서 확인한 뒤 13건만 추려서 압수수색 대비를 지시함. 그 중에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았음. 이는 명백한 객관의무 위반 아닌지?	○ 만약 66건 중 13건만 제출한 것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싶음.
○ 수원지검 형사6부장실 옆 창고에서 미편철된 다수 접견 녹취록이 발견된 것도 같은 맥락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공정·진실·정의·인권·청렴은 검찰의 5대 가치임. 검찰이 과연 그 가치에 부합하게 행위하는 것인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골라서 제출하는 것은 공정한 것인지?	○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임.

(다) 정원두 증인(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수원지검 공공형사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는지?	○ 맞음.
○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쌍방울이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 23억 원을 대납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비 대납사건 이게 지금 사건화됐고 그것을 불기소 처분하셨던 그 부장검사님인지?	○ 맞음.
○ 검찰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이재명 당시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 이재명이 약 2년의 기간 동안 동건 형사사건 및 형사보상청구 소송 등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약 2억 5000만 원은 통상	○ 기억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소액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적시되어 있음. 기억이 나는지?	

나. [4월 16일, 2차 청문회]

1)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사건

(가)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장동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남욱 등 민간사업자에게 매수되어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부패 사건임. 이재명 시장은 이후 추가로 1,120억원을 요구해 1,120억을 받아냄. 이는 이재명 시장이 남욱 등과 결탁되어 있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임. 1기 수사가 시작되면서 무엇을 보고하였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는지?	○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음.
○ 이재명 성남 시장을 비롯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이 아닌지?	○ 그러함.
○ 지난번 기관 보고 때는 자치단체 수사 시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와 다르게 증언하지 않았는지?	○ 당시에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씀 드렸음.
○ 추가 수사는 필요하지만 본인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음.
○ 지금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감찰을 맡고 있는지? 정용환	○ 감찰이 아니고 대검 이첩 사건에 대해서 이첩 사건에 대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증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림. ○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정영학 녹취록임. 정영학은 녹취록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자필로 기재함. 2020년 10월 30일 자 분당 노래방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인데 이 돈을 유동규에게 어떻게 넘길지 설명하는 메모임.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2기 수사팀은 증거들을 무시·배제함. ○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보복 기소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남욱·유동규에 대한 별건·협박·회유 수사였음. ○ 기관보고 당시 1기 수사팀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는데 이재명, 정진상, 김용 세 명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이 맞는지? 2기 수사팀은 세 사람을 기소했는데, 1기 수사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한 것이 맞는지? ○ 엄희준·강백신 증인이 수사 기록을 어떻게 입수해서 보았는지를 알고 있는지? 증인으로부터 허락받은 적은 없는지?	조사 업무를 하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기 수사팀이 강백신 엄희준 직무대리 관련 사실과 2기 수사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는 사실이 맞는지?	○ 몰랐음.
○ 중앙지검 직무대리가 고검 근무장소에서 중앙지검 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지? 사건을 내부망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지?	○ 근무 장소는 어디든 문제는 없음. 기관장이 업무 분장을 해서 지시하면 가능함. 전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 1기 수사팀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무능했거나 둘 중의 하나임. 1기 수사팀의 보고서에는 '혐의점이 전혀 없다'고 적시했는지? 어떠한 사항을 적시하였는지?	○ 보고서에 그 당시의 증거관계라든가 진행 경과 등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언론 보도도 되었던 것으로 방금 확인함.
○ 2021년 10월 기소 이후 공소유지는 1기 수사팀이 직관하였는지?	○ 1기 수사팀원 중 일부가 관여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는 바가 없음.
○ 2기 수사팀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이 맞는지?	○ 그러함.
○ 증인이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차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정진상과의 관련성 부분은 밝혀내지 못한 건지?	○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씀드림.
○ (김태훈, 정용환)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 수사 당시에 아이들 사진이 수사기록에 있었던 것인지?	○ 기록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외에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었는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장동 사건의 최종이익이 어디	○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들을 토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로 돌아갔는지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된 것이 천화동인 1호라고 봄.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그것이 유동규의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그렇게 추정한 바 있었는지? 만약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대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김용·정진상 몫이 있었다면 당시 수사팀이 기소하였을 것임. 맞는지?	로 해서 기소하였고 공소유지를 했음.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맞음. 당시 본인들이 수집했던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하였던 것임.
○ 정영학 엑셀파일 관련하여, 남재현 검사가 1기·2기 수사팀에 모두 있었던 것이 맞는지?	○ 그렇게 알고 있음.
○ 지난번에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있는 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맞는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는지?	○ 저나 제 주위 검사들이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피의자를 재운 적은 없었음. 그러함.
○ 구치감에 피의자를 2박 3일간 수용하며 조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해당 사안은 현재 대검 이첩 사건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충실히 진상조사하겠음.
○ 지역에서 개발을 진행하면 그 개발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하기 쉽지 않음. 지역개발을 통한 공공공이익 환수를 홍보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재판을 받았고 그것이 맞다고 판결을 받은 사건임. 이재명 성남시장이 엄청난 일을 한 것임. 1,822억원 현금 배당 수익, 여의도 공원의	○ 새로 부임하신 송경호 검사장님께 미제 고발 사건들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한 것이 전부임.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임.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씀드린 상태 그대로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3 크기인 1공단 공원 및 서판교 터널 개발 등 지역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 것임. 대장동 개발의 초기에 조우영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브로커 역할을 하는데, 조우형이 범죄를 저질렀고, 조우형의 검사가 윤석열이었음. 그렇게 해서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매수하였음. 이에 대해 수사했는지? 언론 보도에는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나오는데 맞는지?	
○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천화동인이 7%지분으로 각각 577억원, 3,469억원을 가지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지분으로 1,830억원을 가지고 가는 등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는 배당이 핵심임. 1기 수사팀에서 이재명, 정진상 등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는지?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1기 수사팀 보고서에 “대장동 자금을 추적해 업무상 배임·횡령·뇌물 관련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음. 정확한 것은 문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함.
○ 수사보고서가 서울고검에 있는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 본인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음. 고발 민사 사건이 상당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데에 대한 입장은?	있었으므로, 미제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 당시 수사 상황을 정리한 자료로 기억하고 있으나 확인해보겠음.
○(김태훈, 정용환)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덮고 문재인 정부가 덮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	○11월 19일자로 대장동 사건 1팀장을 맡게 되었는데, 당시 여러 상황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편견이나 사심 없이 열심히 수사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림.

(나) 이원석 증인(前 검찰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첫째, 이 사건은 철저한 조작·기획 수사임. 이재명을 엮겠다는 큰 기획하에 억지로 배임죄를 구성함. 송경호 증인이 입건 안 된 사건이라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누구 이름을 적을까 하다가 피의자를 이재명으로 적었다고 언급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죄를 자백한 것임. 둘째, 각종 진술 조작부터 시작해서 녹취록 변조와 문서위조와 같은 범죄 조작행위를 자행함.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엑셀파일 평당 1,400만 원을 임의로 1,500만 원으로 바꿔 정영학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 원본인 것처럼 본인에게 허위 진술을 압박함. 녹취록 원본에 있던 ‘재창이형’이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자기들 입맛대로 바꿈. 셋째, 조폭이나 할 법한 인권침해, 잔혹한 협박을 함. 남욱 등 관련자를 임시로만 머물러야 하는 구치감에 강제로 48시간 입감하여 인권을 침해함. 정일권 검사는 피의자 가족사진 들이밀면서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며 협박함.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헌정질서를 짓밟은 검찰 농단이고 공권력 남용임.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구속 전 피의자의 구치소 대기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의 피고인 대기실이나 검찰 구치감에 대기시키는 것이 덜 인권침해적이라는 취지의 법안을 왜곡시켜 발언하지 않기를 바람.	○ 법안 취지에 법률가로서 동의하는 바임.
○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시작되었는지?	○ 그러함.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 불거져 나온 사건임.
○ 대장동 사건에 대한 1차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고, 중단되었다가 2기 수사팀으로 넘어갔는데, 민주당의 주장은 그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	○ 검찰총장 부임 이후 확인하였을 때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수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도 종결된 사안을 재수사하였다는 것인데 맞는지?	마무리지었을 뿐임.
○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없는지?	○ 없음.
○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인 이재명 제거를 위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제1전선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제2전선을 구축하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임명해 칼잡이 역할을 시킨 것 아닌지?	○ 송경호 지검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함.
○ 두 전선에 검사들을 파견해 유명한 강백신 제1전선 엄희준, 정일권, 호승진을 보냈고 제2전선에 김영남, 박상용 검사를 보냈는데 한국 정치사에서 한 명을 잡으려고 150명에 달하는 검사를 파견·임명했던 적이 있는지?	○ 150명은 정확하지 않은 숫자이며, 해당 사건들은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넘어온 것들임.
○ 검사 150명에 수사관까지 하면 수백 명, 수천 명까지 투입해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후보를 잡으려고 했던 수사였던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 150명까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함.
○ 이재명을 잡는 것에 검찰을 도구화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아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윤석열 사람’으로 낙인찍힌다는 것을 아는지?	○ 본인은 누구의 사람인 적도 없고 누구의 사단을 만든 적도 없음.
○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규전에서 패	○ 5년만 지나면 말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인데 검사가 유동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배하자 유동규·방용철 등을 회유하는 이간계와 회유책을 썼고, 세 번째로 이화영을 회유하다 안 된 것 아닌지?	이화영·방용철 같은 이들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회유를 하지는 않을 것임.
○ 검찰 수사가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지?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민주당에서 다 없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음.
○ 정규전과 회유책이 모두 실패하니 정영학 녹취록에 '실장'이라는 단어를 넣어 조작하는 암수를 쓴 것이 아닌지?	○ 법정에는 녹음파일 원본과 녹취록이 함께 제출되고 판사가 녹음파일 원본을 직접 듣고 녹취록 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1심 판결에서도 녹음파일 원본이 증거로 채택되고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위례신도시 '윗어른' 관련 내용은 1차 수사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음.
○ 조작인지 아닌지 핵심을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닌지?	○ 녹취록은 듣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고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처럼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녹음파일 원본을 듣는 것임.
○ 당시 검찰총장으로써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필요성을 보고 받았는지?	○ 통상의 보고를 받았음.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로 나온 것처럼 자치단체에 대해 수사할 때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임.
○ 대장동 사건은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이 아니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 간 대선	○ 그것은 수사의 기본임.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는데, 대선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었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임. 관련하여,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1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아니하였음. 이유가 무엇인지?	수 있다고 생각함.
○ 이원석 증인이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음.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임.	
○ 이원석 전 총장의 답변에 참담하고 실망스러움. 위원들은 법정신을 말하고 있는데 법기술을 얘기하고 있음. 정치적 중립을 상실해서 검찰권을 남용해서 검찰청이 폐지되었고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있음.	
○ 국정조사가 상당히 위법하고 불법적이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는지?	○ 양당 위원님들이 동일한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이나 동일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다투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법절차로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봄.
○ 4월 12일 증인은 국정조사는 보복·기획·편파·강압·표적 수사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 놨다, 또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	○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으로 반한다는 입장문을 내셨는데, 같은 입장인지?	
○ 수사·기소는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국회는 대표자로서 충분히 국정감사를 할 수 있음. 이번 국정조사는 공소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이 아님. 2025년 법무부 TF에서 기소와 관련된 위법성이 나왔음에도 검찰 스스로 시시비비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국회는 이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	○ 한병도 원내대표도 제가 지난 정부에서 침묵했다고 했지만, 침묵하지 않았음. 언론에 우리 법에 예외·성역·특혜가 없다고 이야기했음.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검찰청에 소환 조사하도록 지시함. 전담 수사팀을 만들라고 한 것도, 그것을 공개하라고 한 것도 본인임. 추미애 장관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인사 패싱, 수사 패싱당했지만 사퇴하라는 주장에도 꿋꿋이 버텼음. 일선 청에서 불기소 의견이 와도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회에 회부하였음.
○ 이번 국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언론에 밝혔는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임. 이런 용기를 가지고 총장 재임 시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황제 조사, 주가조작 지휘권과 관련하여 총장이 장관에게 강하게 어필하여 복원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총장을 패싱하였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 정권에 검찰의 중립에 대한 소신 발언을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임.	
○ 역사상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있었는지?	○ 그런 적은 없음.
○ 한마디로 헌법 파괴, 법치주의	○ 저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파괴인지?	고 생각함.
○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됨. 맞는지?	○ 국정원장 이종석 원장의 증언과 방용철 부회장의 증언을 다투는 것은 법정에서 판단해야지 정치권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함.
○ 윤석열의 비극은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검찰총장이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에 있던 사람이 정치권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전 총장으로서 간단한 소회를 부탁드림.	○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이 정치권에, 대통령으로 직행함으로써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고 또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속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임. 미래 권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줄 알고 있음. 그러나 정치권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음. 일선에서 증거와 법리만 보라고 하였음. 증거와 법리만 봤는데 그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총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현재 계속 중인 재판,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알	○ 며칠 전에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에 무죄판결을 선고하라고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고 있는지?	있음.
○ 남욱 증인에 대한 피의 사실은 무엇인지?	○ 남욱 증인 원래 배임죄로 처벌받았고, 이후 체포시에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서 수사하였음. 징역 4년 선고받고 추징금은 전혀 부과받지 않음.
○ 7,800억 범죄수익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자괴감 느끼게 함.	○ 남욱 증인은 중견 법조인으로 정일권 검사와 연수원 기수가 같음. 정부가 바뀜에 따라 계속 진술이 변경됨. 이것은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임. 그것은 국회에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치권에서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함.
○ 남욱과 유동규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문재인 정권의 1기 수사팀이 덮으려던 사건을 2기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밝혀가는 과정이 2기 수사팀의 수사라고 해석되는데, 맞는지?	○ 저는 오늘 처음 본 것임.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음. 저희가 수사를 하면 꼭 한 쪽에서는 부실수사로, 한 쪽에서는 과잉수사로 말씀하심.
○ 2기 수사팀이 수사를 했는데 결국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시킴. 이원석 총장님이라면 그 항소를 포기하겠는지? 항소 포기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	○ 법률상 항소심에서 형량이나 추징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제 생각에는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것임. 그렇게 생각함.
○ 대장동 사건 판결을 보면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고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바, 상식적으로 검찰에서 항소하는 것	○ 당시 수사팀은 항소하겠다는 의견이었음. 통상의 절차라면 부당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 맞지 않는지? 검찰의 항소 포기와 항소 포기 항의 성명에 참여한 검사의 좌천에 대하여 입장이 어떠한지?	
○ 남욱 증인의 진술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 2개월 만에 번복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함. 총장님 시절에 검찰이 권력형 수사에 대해 항소 포기를 한 적 있는지?	○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음.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도 못 해서 공소유지도 어렵게 됨.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이익을 주게 됨.
○ 2022년 12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당시 남욱이 진실대로 말을 함. 그러다 2025년 11월 7일이 되어서야 본인이 위협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음.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12월 7일 당시에는 본인과 말이 다르면 연기한다고 말했다가 지금와서는 대장동 일당을 포장해주고 있음.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에 1심보다 훨씬 더 형량이 작아지지 않는지? 성남시 지휘부에 반하는 진술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지?	○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항소 포기 당시에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셨음.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했고 재판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음. 그런데 몇 달 뒤에 민주당에 감찰 의뢰를 받아서 대장동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수사한 검사 9명을 감찰 지시를 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실패한 재판으로 뒤집혔는데, 저는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음.
○ 그런데 왜 검찰들은 거기에 따라가는지?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한번 계몽시켜 주시길 바람.	○ 저는 재임 중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내란세력이라고 함. 저희들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니, 사법의 일을 제발 사법에 맡겨 주시기를 부탁드림.
○ 노만석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 정성호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는 언급을 함. 그로 인해 남욱 증인이 편안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것임. 본인 범죄 수익은 그대로 챙겼음.	
○ 특정 발언으로 수사의 방향이나 결론이 바뀌는지? 증거와 법리로 하는 것임.	○ 정영학 녹취록의 몇 마디, 증인의 진술 몇 마디가 아니라 많은 물적증거와 서면 증거, 여러 차례의 공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나온 것임.
○ 공문서는 내용의 허위만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맞는지? 압수조서는 장래 재판증거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로, 기재사항 중 피의자 피의사실, 압수유형은 매우 중요하지 않는	○ 맞음. 허위공문서 작성임.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 강백신 증인이 지난번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해사실은 오기라고 인정하였는데, 증인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 현장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지 못함.
○ 수사준칙에 따라 혐의가 있는 사람을 출석 요구하여 조사하면 수사 개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것인지?	○ 맞음. 수사개시로 간주되는 사례는 여럿 있음.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것임.
○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박태선 씨)에 대한 압수조서 작성 당일이 2022년 10월 13일인데, 수사준칙에 따르면 압수조서는 유동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 사건으로 기재하면 되지 피의자로 지목할 대상자가 없다고 하여 아무나 기재해도 상관없다는 송경호 증인의 발언은 맞는 것인지?	○ 실수나 오류는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이재명이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압수조서 목록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혀있음. 이 피의 조서가 잘된 건지?	○ 조작이면 완벽하게 없애지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임.
○ 정일권 검사가 '목표는 하나다'라고 남욱 증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 '목표는 하나다'라는 말은 정일권 검사가 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며, 이는 남욱 증인의 주장일 뿐임.
○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	○ 정일권 증인은 그런 말을 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 잘 생각해 봐라'라는 말을 여러 검사가 여러 차례 했다는 증언에 대해 정일권 검사도 이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원석 증인이 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맞는지?	적이 없다고 아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중앙지검 구치감에 피의자를 2박 3일간 입감시키고 대기시킨 적이 있는지? 서울구치소장이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던 사례라고 하였는데?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일주일이니 일단 복귀시켰다가 출석하지 않으면 또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집행 유효기간을 말씀드린 것임.	○본인은 그런 경험이 없으나, 법령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음.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집행한 것임. 이틀임. 체포영장 48시간임.
○피의자를 2박 3일간 재판이나 조사를 위해 잠시 대기하는 공간인 검찰청 구치감에 유치한 채 조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피의자를 고립된 공간에 두고 조사한 것이 회유와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임을 지적하는 것임.	○구치감은 법령에 따른 유치 장소이며, 발부된 영장에도 유치 장소로 명시되어 있음. 구속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남욱 증인의 진술과 같이 변호인 접견 없이 구치감에 구금한 채로 2박 3일 간 수사(면담)가 이루어졌음.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것이 수사준칙 등의 원칙이 아닌지?	○본인이 변호사이고 중견법조인이므로 접견요청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남욱 증인에 대한 2박 3일 동안의 구금 사실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 법령의 범위 안에 들어 있는 상황임.
○ 2017년 드라마 '피고인'을 보고 사람들이 '구치감에 들어가면 다 사람 죽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7년 3월 21일에 페이스북에 구치감에는 하루 이상 머물지 않으며, 밤을 새우면서까지 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문제와 강압수사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명을 하였음. 질의의 초점은 절대 하루 이상 구금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2박 3일을 구치감에 머물게 했다는 것임.	○ 위원님 말씀대로 밤을 새우면서 조사하지 않음. 구치감은 우리 법령상 유치시설로 되어 있음.
○ 체포영장에 유치장소를 구치감이라고 써 놓은 것인지?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체포영장 유치장소에 구치감으로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발부한 것으로 알게 됨.
○ 법무부에 구치감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구치감에 두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음.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유함. 폐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으	○ 앞으로 검찰이 폐지되기 때문에 구치감이 이제 의미가 없어질 것임.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 검사들의 정의감 또 의욕이 앞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그 점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게 법령의 범위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로서 인권 감수성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지 지적하는 것임.	고 싶음.
○ 사람이 하는 거라고 수사를 조작한단 말인지? 아까 남욱 증인이 자신의 진술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2박 3일의 구치감 구금이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았는지?	○ 남욱 증인의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될지 하는 것을 선입견 없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음. ○ 남욱 증인이 진술을 바꾼 계기에 대해서 언론과 인터뷰 한 많은 자료들이 있음.
○ 대장동 수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받으셨는지? 진행되는 상황은 다 보고받았는지?	○ 총장이 수사 실무까지는 알지 못함. 수시로 보고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음.
○ 남욱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받으셨는지? 검찰총장은 중요한 사건은 매일 보고받지 않는지?	○ 그 당시에는 제가 알지 못하였음. 본인이 67개 청의 1만 2,000명을 통솔함.
○ 증인께서 이 국정조사를 보면서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 입장문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음.
○ 이원석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김건희 관련 권력형 수사를 덮은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봄. 증인은 왜 당시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던 김건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사건 등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그때 결기를 보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저는 여사를 겨냥해서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얘기했음. 지금도 자료를 찾아보시면 제가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수없이 나옴. 본인이 수사심의위원회에도 직권으로 부의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내란 때,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윤석열이 검찰의 선배였지만 이건 내란이자 쿠데타고,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전격 체포해야 된다'라고 했어야 하지 않는지?	○ 위원님 결론에 동의함.
○ 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했고, 마지막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검찰이 역사의 죄인이 된 것임.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날 검찰을 이렇게 만든 것으로 봄.	○ 특별 전담수사팀을 출범시키고, 여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여러 차례 언론에 이야기하며. 검찰청사에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본인임. ○ 쫓겨날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마지막까지 수사를 하라고 했음.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서 판단하도록 했음.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검찰총장은 없었음. 계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함.
○ "바이든 날리면"을 언급하던데, 아직도 그렇게 윤석열을 옹호하고 싶은 것인지?	○ 옹호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임. 위원님이 계엄에 대해서 보시는 시각과 본인의 시각은 완전히 동일함.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서 수사를 했고, 그 특별수사본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 수사가 지금의 내란 특검의 수사에도 기초가 돼서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검찰에서 나름대로 할 일은 했다고 봄.
○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 검찰총장으로 일하면서 누구의 라인도 아니었고 라인을 만든 적은 없음. 검찰에 있을 때 개인적인 인연을 누구와도 따로 만든 적은 없음.
○ 인권탄압 수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보는 것인지?	○ 일을 하다 보면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실수나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증거능력의 문제로 무죄 판단이 날 수 밖에 없음. 그러함.
○ 전체적으로 수사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해 자신한다는 말씀인지?	○ 검사들이 증거와 법리만 쫓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신뢰함.
○ 이원석, 심우정 총장 때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오늘 태도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남욱을 2박 3일 동안 구치감에 두고 수사를 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가 있는 인권의식이라 봄. 윤석열이 본인의 대선 경쟁자를 향해서 8건을 기소 했는데, 그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음.	○ 사죄의 말씀을 드림.
○ 유동규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	○ 당시에 알지 못한 일이고, ‘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장 변경을 요구했는데 결국 안 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것은 공여와 수수 쪽의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지만 상고심을 통해서 다투고 있습니다'라고 구자현 대행이 말한 것 정도만 알고 있음.
○ 예비적 병합을 하면 검찰의 소신도 지키면서 무죄도 막을 수 있었는데, 예비적 병합을 하지 않아서 2심에서까지 무죄가 났다고 보는데? 결국 유동규를 봐주고 변명하는 것임.	○ 정반대의 사실을 어떻게 예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교부와 수수인데 수수가 아니라 교부로 하더라도 봐주기 수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
○ 형사사법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 규명인지, 특정 피의자의 무조건 기소인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해야 되는 것인지?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특정 피의자의 기소를 목적으로 설정하면 안 되는 것이 맞는지?	○ 그렇지 않음.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함께 인권보호 두 가지임. 그러함. 저희는 사건을 수사하지 사람을 수사하지 않음.
○ 검사의 객관의무 관련 피의자·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 말고 유리한 증거가 확인됐을 때 제출 해야 하는지, 제출 안해도 되는지?	○ 제출해야 함.
○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고형곤 거쳐서 행동대장 격인 엄희준·강백신 검사로	○ 교도관이 술 마시는 걸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어지는 정치검찰단의 조직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음. 지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 때 보신 것과 수원지검 1313호에 수감자들 모아 놓고 연어회에 소주 마시면서 진술 맞추기 한 것이 교도관들의 양심적 증인으로 다 드러났는데, 이를 보았는지?	
○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공소 취소하였음. 50억 클럽 무죄에 국민이 분노하자, 송경호 지검장이 강백신 부장 검사를 투입하였음. 강백신 검사가 1심 무죄 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기소하였고, 법원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소 취소하였음.	○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아들까지 뇌물죄로 공범으로 기소하기 위해서 범죄수익은닉죄까지 적용해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음. 오히려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가혹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봐주려고 한 게 아님.
○ 대장동과 대북송금 수사 책임자였는데, 그때 이재명을 타깃으로 한 정치적 기획·조작 수사였는지, 아니면 진실규명을 위한 정당한 수사였는지?	○ 저는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바 없음.
○ 그러면 정당한 수사였다는 말인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점이 없는지?	○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서 넘어온 잔여 사건이었지 새로이 제가 수사를 표적수사 한 것은 없음. 없음.
○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검사들이	○ 로스쿨 강의에서 로스쿨생들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증인으로 나온 것을 보고 어떤지?	게 검찰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많이 와주기 바란다고 말을 했으나, 이제는 공직을 권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을거 같음.
○ 공소취소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 공소취소를 검사 생활 동안 해본 적이 없음.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공소취소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것이 낫다는 고려도 해보았음.
○ 검찰이 처음부터 유동규와 강철호 간의 금전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것이 아닌지? 처음부터 해당 증거가 나왔다면 바로 무죄였을 것임.	○ 강철호 증인은 항소심 화상 증인 신문에서 진술서와 전혀 관계없는 증언을 하였고, 해당 진술대로라면 항소심 증언은 위증이라고 봄. 현재 시점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강철호 증인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임.
○ 강철호 증인의 진술서를 보았는지?	○ 보지 못하였음.

(다) 김태훈 증인(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정권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년 7월 4일 엄희준, 강백신을 반부패 1·3 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배치함. 그런데 2개월 전인 5월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배정받음. 당시 서울고검장, 중앙검사장은 법무부장관이 7월 4일 정식 인사 때 엄희준, 강백신을 반부패 1·3부장에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임.	
○ 1기 수사팀이 강백신, 엄희준 검사의 직무대리 관련 사실과 2기 수사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는 사실이 맞는지?	○ 몰랐음.
○ 검찰 인사는 반드시 대통령실과 협의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개월 전에 미리 배치하여 대장동 수사를 기획하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총장직무대행, 서울고검장, 송경호 중앙검사장 등의 합의 하에 이 수사를 기획하였다는 것임. 검사 인사는 반드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고 있는지?	○ 그러함.
○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무 범위는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음. 맞는지? 공판부 소속 직무대리가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지?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함. 검찰청법에 직무가 한	○ 그렇게 알고 있음. 적절하지 않은 듯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임.	
○ 중앙지검 직무대리가 고검 근무장소에서 중앙지검 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지?	○ 근무장소에 대한 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송경호 검사장이 정용환 반부패 1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정용환 부장의 허락도 없이 다른 검사에게 검토시키고 기록을 보게 한 것은 정용환 검사의 수사권을 침탈한 것이고 직권 남용이고 수사기밀 유출로 보임.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김태훈, 정용환)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 수사 당시에 아이들 사진이 수사기록에 있었던 것인지?	○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 증거로서 아이들 사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진을 입수한 정일권 증인의 설명이 필요함.
○ 임시 대기시설인 구치감에 사람을 2박 3일간 가둬놓고 고립시켜 진술을 압박수단으로 악용하면서 강압·회유하고 원하는 진술을 받는 이런 수사는 범죄행위가 아닌지? 이렇게 절차의 실질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수사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맞는지?	○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임.
○ 구치감에 피의자를 2박 3일간 수용하며 조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당시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상태이므로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면 구치감에 계속 구금 상태로 두면서 조사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 이러한 방식의 조사가 피의자에 대한 협박이나 압박이 아닌지?	○ 구속 상태에서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면 형사소송법상 출석만을 강요할 수 있을 뿐이고 진술이나 다른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임의 수사·조사가 원칙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금 상태를 유지했다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으로 소환만을 강제한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 구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에서 민간업자들을 기소하였는데 갑자기 수사팀이 전체적으로 교체된 이유는?	○ 기본적으로 1기 수사팀에 대해 수사 방향과 결론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음. ○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짧은 시간에 성과를 이루었음. 대부분 주요한 수사팀은 남기는게 그동안이 검찰 관행이었는데,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음. ○ 2기 수사팀의 경우 1기 수사팀에서 증거가 없었던 부분인 성남시장, 정진상을 공범으로 집어 넣고, 배임과 관련된 부분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수사범위를 확장했음. ○1심 재판 선과 결과에서 2기 수사팀에서 변경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공감함.
○재판 진행 중에 담당 검사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는게 적절한지?	○통상은 전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1기 수사팀에서 수사한 내용은 대체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고 진술한 것이 맞는지?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이 국정조사장에서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에 이익을 준 사업이므로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1기 수사팀의 수사도 잘못된 것이 아닌지? 결국 김태훈 증인과 남욱 증인의 진술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함.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치밀한 공모과정이 필요함. 미래에 예상되는 거대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형태의 계약을 만들었다는 것이 배임의 기소 내용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모가 필요하므로, 이를 알지 못하면 전체적인 내용은 배임이 아닌 구조가 될 수 있음.
○대장동 수사의 방향 변경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대장동 수사에서 기존 1기 수사팀의 의견은 왜 배제된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봄.
○어떤 사건을 볼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라고 봄. 수사 이전에 가까운 사람끼리 통화한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임. 수사를 받으면서 나온 진술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성이 있고 많은 분량의 실시간 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진실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죄 모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가 있으면 당시 내용에 무게감을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이 대장동 카르텔의 주범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주범을 이재명, 김용, 정진상으로 만들어 주범을 종범으로 만들었음.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오염, 조작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주범을 만들어낸 것임.	○ 그렇게 판단하였음.
○ (김태훈, 정용환)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덮고 문재인 정부가 덮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	○ 수사 초기 언론에 대장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천화동인 제1호 지분의 실제 주인이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오보가 확대재생산된 바 있음. 그 부분은 국정감사 시 이종수 검사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언을 한 뒤에도 정정되지 아니하였음.
○ 그분이라고 하는 기사는 언제쯤 나오는 것인지?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당시임. 모든 녹취록에 색인 기능을 활용하여 확인하였으나 다른 맥락에서 나오는 두 군데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았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형사사건의 증거는 녹취록이 아니라 녹음파일 원본임. 어느 수사팀에서 작성한 녹취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의 요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요지를 누군가 주장했고 원용했으면 그 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봄.

(라)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강백신, 엄희준) 대장동 수사기록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강백신, 엄희준) 남욱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9월 16일인지 17일인지? 석방되기 전이었는지? ○(강백신, 엄희준) 유동규에 대한 접견제한 조치는 왜 한 것인지? 유동규가 2021년 10월 구속된 후 2022년 7월까지 10개월간 제한 없이 접견이 되다가 증인들이 온 이후 접견이 안된 이유는? ○(강백신, 엄희준) 접견제한 조치를 해 두고 김경완 검사가 10월 13일에 소환하여, 유동규와 사	○자료를 받은 기억은 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음. ○반부패1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이어서, 실시간으로 전달받지는 못하였음. 석방되기 전에는 전달받았을 것이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 4월 7일 기관보고 당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확인된 것이 없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실혼 배우자를 김영석 검사실에서 조사하면서 실질적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 대장동 사건 검찰 증거자료, 정영학 녹취록 등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모든 각을 유동규·이재명·최윤길, 이 세 사람이서 각본부터 진행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처음부터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임. 맞는지?	○ 맞음.
○ 정영학 녹취록에서 “시장님이 빼라고 그래서”, “남욱이를 넣기가 보기에도 그런 거야.” 이 부분은 민간업자 지정도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여했다는 맥락으로 보임. 맞는지?	○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임.
○ 정영학녹취록에 이재명이 몇 번 나오는지? 21번 나옴. 녹취록을 듣고 정영학이 그림을 그린 메모를 보면 모든 사건의 제일 위에는 Lee라고 써 있음. 결국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비리의 최종책임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 횟수는 알지 못함. 메모만 보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음. 어떤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엄청난 수사가 많이 필요함.
○ 그래서 추가를 수사로 하셨고 그래서 진실을 밝혀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이재명	○ 그런 부분은 법정에서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시장이 기획한 것이라 판단하는지?	
○ 대장동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아도, 이재명 당시 시장의 관여에 대해서 판결문과 정영학 녹취록이 같은 방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대장동 사건으로 성남시민에게 가야 했을 7,880억이 사라졌음. 남욱 증인은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수사를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결과적 사실임.
○ 당시 피의자 입건이 되지 않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하여 피의자 압수수색한 것, 남욱증인이 청문회장에서 사실에 어긋난 발언에 대하여 진술할 사항이 있는지?	○ 당시 이재명 전 시장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14건이었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10월초에 혐의가 포착되었음. 압수조서가 작성된 10월 3일까지도 유동규 씨 진술을 검증하기 위한 물증 확보 과정으로, 별도 사건 분리 전에 (압수)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의자 이재명으로 되어 있는 14건 사건이 있었으므로, 물적 자료 확보가 필요했음.
○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입건이 된 것인지 아닌지?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된 것으로 입건이 되어 있었는지? 그러한 방식은 범죄임.	○ 대장동 사건으로 입건된 건이 14건 있었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였으나 그 사건이 별도로 분리되기 전이었음. 수사관이 따로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대장동 사건의 일부라고 보고 “피의자 이재명” 하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등”으로 기재하였다고 확인하였음.
○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 언제 입건되었는지 인지하는지? 입건된 것이 2023년 2월임.	○ 사건 인계를 받을 당시 “피의자 이재명”으로 되어 있는 건이 14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함. 그 사건은 영장 청구를 위해 인계한 사건임.
○ 2022년 10월 13일 압수조서 관련, 이재명 대표가 이미 15건 입건되어 있어 피의자 이재명이라 기록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정권 출범 150일이 안 되었음에도 저인망식으로 정적을 죽이려는 의도임.	
○ (강백신, 엄희준)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대장동 사건만 담당하였는지? 대장동 사건 외에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 조국 사건 공판 당시 주임부장으로, 공판 수행을 하였음.
○ (강백신, 엄희준) 1기 수사팀은 민간업자들을 기소하였는데, 2기 수사팀은 공직자 등을 중심으로 한 사건에 집중한 것인지?	○ 나중에 말씀드리겠음.
○ (강백신, 엄희준) 직무대리 발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 공직자 등의 혐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는지?	○ 당시 검토했던 것은 대장동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1팀에서는 배임, 2팀에서는 50억 클럽이었음.
○ (강백신, 엄희준) 직무대리 발령하면서 한달 뒤에 정식 발령	○ 그런 이야기는 들은바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할 것으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고 일단 직무대리로 일하자는 제안받은 것 아닌지?	
○ 증인의 입장은?	○ 22년 5월 23일경 중앙검사장이 새로 부임을 했던 것 같고 25~26일경 작성된 자료로 보이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팀에서는 배임 관련해서 수사상황을 보고를 했고 2팀에서는 50억 클럽 관련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음.
	○ 배임 관련해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 관련 수사사항 및 수사필요사항이 정리되어 있었음. 그 주요 내용은 수사 계속 중 그리고 관련 주요한 증거관계로 누구 조사했고 누구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적 증거와 대장동 사업 관련 여러 서류 및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중요 물증으로 정리를 해 놨음. 정영학 녹취록에 정영학 씨와 남욱 씨가 얘기를 하면서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누가누가 짜고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거다 이렇게 된 것을 10여 곳에 정리를 해 놨던 것 같음.
○ 그러면 이재명 시장에 대한 증	○ 마지막에 '새로운 수사 아이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거없음, 혐의없음은 거짓말인지? 정영학 증인이 위증한 것인지?	발굴 중'으로 보고서를 썼던 것으로 확인을 했음.
○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정규전과 회유책에 모두 실패하자 녹취록을 조작하는 '암수'를 쓴 것 아닌지? 방금 들려준 녹취 파일의 음성이 '실장님'으로 들리는지?	○ 오늘 들어보니 '재창이형'으로 들리기는 하나 녹취록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
○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를 모르는지?	○ 기억에 없음.
○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가 단독으로 낸 기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선별해 유출한 보도가 아니면 이렇게 보도될 수 없음. 공소유지팀 자료를 유출했는지?	○ 유출한 적 없음.

(마)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5월 파견됐을 당시 기록 검토하였다고 한 것이 맞는지? 송경호 증인 지시로 검토한 것이 맞는지? 파일 형식은 기억나지 않는지?	○ 그러함. 중앙검사장 지시임. 기억나지 않음.
○ (강백신, 엄희준) 대장동 수사기록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 기억이 나지 않음.
○ 위례 사건 관련, 부패방지법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법원 판단	○ 중앙지검 지휘라인에만 보고함. 그것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 있었음. 위례 사건으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남욱과 유동규를 체포하겠다는 계획을 차장, 송경호 검사, 신봉수 반부패 부장검사에게 보고하였는지? 중앙지검 검사장이 대검에 보고하였는지?	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음.
○(강백신, 엄희준) 남욱 증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9월 16일인지 17일인지? 석방되기 전이었는지?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쯤에 알았음. 정확히는 모름. 석방되기 전임.
○(강백신, 엄희준) 남욱 증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목적은 소환조사이므로, 진술을 거부한 순간 이 사건은 조사 불능이 되어 체포영장의 목적이 소멸됨. 진술을 거부한 순간 즉시 석방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이후의 모든 행위는 불법체포·감금으로, 그 기간에 이루어진 남욱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증인들은 실증법을 위반하였음.	○체포영장은 48시간 구금할 수 있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구치소로 다시 가면 또다시 출석을 불응할 것이라 보고 영장에 의해 법이 허용하는 48시간 동안 조사한 것임.
○(강백신, 엄희준) 유동규에 대한 접견제한 조치는 왜 한 것인지? 유동규가 2021년 10월 구속된 후 2022년 7월까지 10개월간 제한없이 접견이 되다가 증인들이 온 이후 접견이	○접견제한 조치를 하였는지는 확인해 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안된 이유는? ○(강백신, 엄희준) 접견제한 조치를 해 두고 김경완 검사가 10월 13일에 소환하여, 유동규와 사실혼 배우자를 김영석 검사실에서 조사하면서 실질적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남욱씨를 구치감에 구금한 것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발언기회를 드림.	○구치소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아오라고 한 것으로, 출석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구치감에 구금하였던 것임. 구치소에서 출석 거부를 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함.
○남욱 체포영장의 유치장소가 서울 구치감이 맞는지? 법원에도 구치감에 인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영장 청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유치장소를 기재해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함.
○과거에도 구속된 피의자를 데려다가 구치감에 넣어 놓고 2박 3일 동안 조사한 적이 있는지?	
○구금상태인 피조사자가 검찰에 출석을 안 한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아닌지? 48시간 동안 잠 안 재우고 계속 깨워서 수사를 했는지? 그 내용들을 법원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을 거 아닌지?	○그러함. 그렇지는 않음. 다 주장된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입건이 되어야 피의자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검찰 내부의 수사절차 규정상 그런 것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상 수사대상이 피의자인 것임. 법원에서 이것을 문제라고 보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임.	
○ 남욱의 환부, 장기 등의 주장도 수사와 재판 당시에는 나오지 않다가 2025년 11월에 처음 주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수사한 검사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입증할 증거는 없는 것이 아닌지?	○ 그러함. 맞음.
○ (강백신, 엄희준) 대장동 사건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대장동 사건만 담당하였는지? 대장동 사건 외에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 여러 건의 사건을 검토하였음.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기 곤란함.
○ (강백신, 엄희준) 직무대리 발령 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 공직자 등의 혐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공직자 중심이었는지를 묻는 것임	○ 당시 잔여 사건을 검토하였음. 잔여 사건은 민간사업자와 공직자 모두 있어 전체적으로 검토하였음.
○ (강백신, 엄희준) 직무대리 발령하면서 한달 뒤에 정식 발령할 것으로 듣고 일단 직무대리로 일하자는 제안받은 것 아닌지?	○ 보직이 많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바 없음.

(바) 정일권 증인(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목표가 누구였는지? 그런 말 한 적 없는지?	○ 목표가 누구라는 말을 한 적 없음. 다만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사실대로만 말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임. 그리고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
○ 목표 얘기는 안 했다는 건지?	○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그리고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임.
○ 항소 포기 날 남욱 증인은 '배 가르고'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진술을 번복함. 해당 표현은 어떤 뜻으로 한 것인지?	○ 남욱 씨의 배를 가른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음. 당시 남욱 씨는 기존 1기 수사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제가 새로 생긴 수사팀은 편견 없이 사실대로 수사를 하겠으니 조사에 응해 달라고 하면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의사의 치료과정에 비유하여,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증상을 이야기해 주어야 의사가 정확한 진단하고 환부만 치료하는 수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임. 남욱 씨는 제가 '목표는 하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남욱에게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에게 가야 될 거 아니냐,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들어내는 방식이 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등의 말을 한 것이 아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니 여러 작업을 한 것이 아닌지?	○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목표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음.
○ 2박 3일 동안 혼자 독방에 가둬 놓고 그 사람한테 애들 사진 보여주고 배를 갈라서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드러낼 수도 있다고 한게 협박 아닌지?	○ 당시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 하지 않음.
○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온갖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뒤집고 있다고 봄. 부실수사를 하였던 1기 수사팀의 수사를 2기 수사팀이 바로 잡았는데, 2기 수사팀을 조작 수사라고 압박하는 것임.	
○ 남욱 검찰 조사 당시 아이들 사진은 왜 가지고 있었는지? 인계받은 자료에서 아이들 사진을 왜 가지고 왔는지?	○ 기존 수사팀에서 인계받은 자료에 있었음. 본인에게도 당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 자녀들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남욱에게도 가족을 생각하며 힘든 시기를 견디자는 취지였음.
○ 애들 사진 보여 주면서 ‘선택 잘하라’고 한 적 있지 않은지?	○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 준 적은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부끄럽지 않은지? 잘못한 것 없는지? 아이들 사진 보여준게 잘 한건지?	○ 제가 9월 16일 당시 남욱 증인을 처음 만났음. 가족사진을 보여 준 건 맞지만 가족사진을 보여 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음.
○ 미안한 감정은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닌지? 박선원 위원께서 보여 주셨는데 고문 기술 중하나가 고립시키고 가족사진으로 협박하고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나 종신형을 선고해서 햇빛 못 보게 할 거라고 하고 모든 행정을 통제하는 거임. 딱 검사님이 한 게 이꼴 아닌지?	○ 당시에 저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
○ 이런 행동이 정당했는지?	○ 저는 적법한 수사절차와 적법한 영장에 따른 집행을 했을 뿐임.
○ 박상용 쌍방울 수사 검사 녹취록에서 다 드러난 게 ‘지인 수사 무마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형량 거래를 함. 지금 딱 똑같은 꼴 아닌지? 보복적인 행위,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남욱 씨 지인들에 관련된 혐의를 이야기한 적은 없음. 다만 남욱 씨의 진술이나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이나 지인, 혹은 그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했을 수는 있지만 기소를 안 해 주겠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음. 단언할 수 있음.
○ 남욱 증인에게 지인 이야기를	○ 한 적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였는지?	
○ 남욱을 조사하면서 구치감에 그렇게 구금하면 되는지?	○ 당시 체포영장에 의한 적법한 절차였음. 변호인에 의한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으로 집행한 것임. 서울구치소에서 출석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복귀시킬 수 없었던 것임.
○ 남욱 증인에게 하였던 “환부를 도려낸다”는 발언이 2022년 9월에 있었던 것인지? 협박하거나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정진상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나온 날짜가 2025년 11월 7일인데, 어떤 날이었는지? 남욱 증인이 정진상 증인으로 나가 해당 증언을 하고, 오후에 보도가 나오고 저녁에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것임.	○ 그러함. 전혀 아님.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날임.
○ 지금도 남욱 변호사에게 했던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하명수사였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에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지?	○ 그러한 고문을 하거나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음.
○ 이원석 증인은 주가조작 눈감아주고, 조세포탈 특가법 눈감아주고, 증인은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에 있으면서 800만달러(방북추진비 300만 달러, 스마트팜 500만달러) 북한에 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치고, 김성태 회장 방북 최우선 추진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왜 국가보안법도 봐줬는지? 위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면 국가보안법 불고지죄 및 특수직무유기죄 대상임.	
○ 남욱-유동규 녹취록에서 '이 새끼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내용을 보면 검찰에서 수사를 뭉개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임. 그래서 남욱이 2천만원을 줬다는 이야기를 다 했고, 맨처음에 준 것이 있으니 그 다음 3억원 가는거 아니냐… 이런 내용 기억 못하는지? 그 형들이 누구인지, 이재명·정진상을 포함하는 것인지?	○ 최근 유동규 증인이 항소심 법정에서 제출한 녹취록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들음. 내용을 보면, 남욱 증인은 처음에 "형들에게 줬다"는 내용을 수사과정에서 검사들에게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저 녹취록에서는 마치 검사도 몰랐던 내용을 먼저 설명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알고 있음. 그렇게 알고있음.
○ 녹취록과 관련된 자료를 따로 받았는지?	○ 자료를 따로 받은 것은 아니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알고있음.
○ 남욱-유동규 녹취록은 2023년 4월의 녹취록이 아닌지? 10년 동안 정영학 녹취록에 전혀 안 나오는데 뒤에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 검찰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동규 증인이 항소심 재판정에 제출한 녹취록으로 알고 있음.

(사) 김경완 증인(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의 검사실과 수원지검 1313호와 비슷한지? 협박과 회유는 동전의 양면임. 10월 14일 6시간 반, 10월 15일 10시간 반, 10월 16일 6시간 면담 후 11페이지의 면담보고서만 작성함. 교도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수사인지?	○ 수원지검은 잘 모르겠음. 본인 방에 영상녹화실은 없음.
○ 일지상 유동규를 9월 19일에 체포하고, 당일 24시까지 조사한 후, 다음 날 19시 40분까지 구치감에 대기시킨 것이 맞는지?	○ 체포한 것은 맞고, 그 외 세부 사항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 계산 및 일지상으로는 19시간 40분 동안 구치감에 있게 한 것으로 보임. 맞는지? 19시간 40분간 잠을 자게 했다는 것인지?	○ 그 상황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수면제 등이 필요하여 구치소에서 가져와 먹은 후, 충분히 회복한 뒤 조사했고, 구체적인 시간까지는 기억나지 않음. 본인이 수면제가 필요하다고 교도관에게 요청하였음.
○ 증인은 2022년 10월 13일 전병덕 변호사의 접견을 제한함. 맞는지? 10월 14일 유동규에게 다음 주에 석방하기로 약속하면서 무엇을 조건으로 약속했는지? 임우열 수사관이 오늘은 (유동규가) 접견을 원하지 않고, 다음 주에 출석하니 그때 전화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는지?	○ 제한하지 않았음. 석방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이 무슨 조건으로 유동규에게 석방을 약속하였는지? 10월 16일 마지막 면담에서 “대장동 사업에 정진상·김용의 몫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김만배가 지분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을 하여 석방을 한 것이 아닌지? 누구의 승인 하에 이러한 약속을 한 것인지?	○ 직접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었음. 당시 구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법원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석방한 것이고 석방 권한도 없었음.
○ 검찰에서 영장을 추가로 청구 안하는 방식으로 석방을 의도한 것은 아닌지?	○ 9월 26일 기소하면서 병합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추가 영장도 발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시 유동규가 구치감에 있을 때 준 약이 무슨 약이었는지? 그 약을 김경완 검사가 교도관에게 주라고 한 것인지?	○ 수면제였던 것으로 기억함. 유동규 씨가 교도관에게 요청하였음.
○ 체포영장을 직접 작성했었는지? 당시 체포영장을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는지?	○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음. 수사관이 집행하고 조사했던 것은 맞음. 중앙지검에 요청이 필요한 사항임.
○ 앞선 신문에서 10월 14일, 15일, 16일간 총 22시간 30분 넘는 조사를 했고, 불과 11페이지 분량으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20시간이 넘지 않았는지?	○ 시간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음.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정도 오랜 시간은 아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피의자를 3일간 총 20시간 조사를 하는 경우 이는 면담인지, 피의자신문인지, 수사인지, 조사인지?	○ 조사임. 조사도 수사의 일환임.
○ 수사와 조사는 다름. 참고인으로 3시간만 조사해도 조서가 17~18페이지 나오는데 20시간 넘게 조사 이후 11페이지 분량이 나오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고 요약된 면담보고서로만 남긴 것이 적절한지? 검사실 안에서 수사관과 교도관 배석 없이 변호인도 배석하지 못하게 하고 면담하는 것이 정당한 수사인지?	○ 변호인 배석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음.
○ 나중에 특검 조사를 받게 될 때 해당 조작(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조작)에 대해 제대로 입증해야 함. 유튜브·디지털 시대라 많은 사람이 공소장과 정영학 녹취록을 입수해서 보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이게 실장님이 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 조작의 책임을 누가 지겠는지?	○ 검사가 녹취록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아) 홍상철 증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를 아는지?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은 없는지?	○ 전혀 모름. 전혀 없음.
○ 2024년 11월 1일에 유종헌 기자의 보도를 아는지?	○ 그 당시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음.
○ 보도 보름 전에 있었던 항소심의 미공개 감정 보고서와 홍상철 검사의 의견서가 거의 그대로 보도되었는데, 검찰에서 자료를 준 것은 아닌지?	○ 그렇지 않음.

(자) 김남호 증인[검찰사무관(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11월에 어느 검사실에 있었는지? 분당에 시로코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진협 사장을 만나러 간 사실이 있는지?	○ 정일권 검사실이었음. 맞음.
○ 수사관이 왜 최진협 사장을 만나러 갔는지? 통상적으로 조사실로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왜 소환했는지?	○ 소환했음. 자료 제출받고 진술서 받은 이후에 소환하였음.

(차) 박환택 증인(법무법인 청와 변호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정영학의 변호인이었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10	○ 제출했음. 그러함.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월 1일 검찰에 대장동 관련 자료 담긴 USB 제출했는지? 최근에 증인이 직접 USB 원본 열람·검토하신 적 있는지?	
○ 2015년 2월 26일 자 사업성분석계획서 엑셀파일 원본에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지? 정영학 회계사가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한 파일은 원본에 들어있지 않았음. 맞는지?	○ 맞음. 없었음.
○ 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 1,500만원 엑셀 출력물이 편철되어 있었는데, 아는지? 증인이 어떻게 된 일인지 최근에 확인한 사실이 뭔지?	○ 그러함, 맞음. ○ 조사할 때는 검찰이 그 자료에 들어있다고 했었음. 그런데 그게 문제 되니 검찰이 최후 의견서에 2021년 11월 21일 제4차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정영학 회계사가 비밀번호를 풀고 검찰이 돌렸다고 했음. 그러면서 2월 26일 자를 증거번호 705번, 4월 10일 자를 증거번호 706번으로 제출함. 그러나 2021년 10월 28일 수사 보고서에 해당 액셀 파일이 704번 증거번호로 들어와 있음. ○ 이 사건에서 본인들은 비율제를 준비했으나, 이후 공모지침서에는 확정이익 방식으로 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왔던 것임. 민간이 이익이 얼마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임대주택 부지 1개 필지를 먼저 준다고 할 수 있겠는지. 이를 입증하고자 남재현 검사가 (1,500만원 파일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게 밝혀질까봐 USB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음. 그래서 25년 1월에 제가 법정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법원에 제출되었음.
○ 혹시 남재현 검사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지 않았는지?	○ 왔었음.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 과정에 연락이 왔었고, 부담이 되어서 받지 않았는데, 본인 핸드폰에 문자로 연락이 왔음.
○ 정영학 씨의 변호사로서, 변호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어떤 압박이나 회유를 느꼈는지를 질의하고자 함. 정영학 엑셀파일과 관련하여 기준이 평당 1,500만원이 아니라는 의문을 가지셨던 것이 맞는지? 이것이 증거 순번 705번인지? 그래서 해당 증거가 사실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의견을 낸 것인지?	○ 맞음. 705번으로 제출되어 있음. 그것을 만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믿지 않았음. 그래서 법원에 계속 제출요구를 했던 것임.
○ 정영학 엑셀파일의 증거능력이 상실될 것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검사가 변호인에게 증거와 관련해서 전화를 여러번 한 것	○ 2024년 12월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 남재현 검사가 개인 핸드폰으로 두 번에 걸쳐서 문자를 보냈음. 그 문자 내용은 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인지? 그 전화와 문자를 보고 느꼈던 심경을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람. 그 검사가 남재현 검사였는지?	인이 특수부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를 잊고 있냐는 문자였고,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음.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어 있고, 그러한 증언을 법정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 검사가 법정까지 찾아왔음. 맞음.
○ 2021년 10월 18일 재판의 검찰 참고인 조사 때 처음으로 검찰이 (택지 예상분양가격 평당) 1,500만원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인지?	○ 그 전 진술조사 때부터임.
○ 증인은 검사로부터 제시된 (택지 예상분양가격 평당) 1,500만원이 증인의 입장에서는 정영학이 만든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 기준으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지?	○ 맞음. 그 (자료) 안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음.
○ 수사보고서를 보면, “정영학이 대장동 사업이익 관련 시뮬레이션 한 파일”로, 정영학이 한 것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택지 예상분양가격 평당) 1,400만원과 평당 1,5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음.	○ 맞음.
○ 검찰이 임의로 만든 (택지 예상분양가격 평당) 1,500만원 기준 시뮬레이션 출력물을 정영학이 임의제출한 자료인 것처럼 증거기록에 첨부한 것인지?	○ 맞음. 2025년 1월임. 맞음. 없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증인이 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였는지? 검찰이 법원에 USB를 제출하여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이 맞는지? 증인이 검토한 결과 (택지 예상분양가격 평당) 1,500만원 기준 파일이 없었다는 것이 맞는지?	
○ 증인이 파일(USB) 제출 요구를 세 번 했음에도 검찰이 제출하지 않다가, 12·3 내란과 탄핵 이후 2025년 1월경, 재판 시작 4년 후, 종결 4개월 전 시점에 법원에 제출하였음. 피고인의 방어권이 적절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제출한 것도 재판부에서 요청을 하였기 때문임.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함.
○ (택지 예상분양가격 평당) 1,400만원으로 산출하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평당 1,500만원으로 확대하여 배임죄를 만들어낸 것이 맞는지?	○ (택지 예상분양가격 평당) 1,400과 1,500을 시뮬레이션하여, 사업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계산하고 사업계획서에는 (택지 예상분양가격 평당) 1,400으로 낮추어 제출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임.

(카) 송경호 증인(법무법인 플래닛 대표변호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피의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문제된다는 질의가 있었는데, 심리적 압박을 받아야 범행 사	○ 형사사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고, 수사과정에 법원의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실을 인정할 것이 아닌지? 목표는 하나다, 이재명 당시 시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는데, 설계를 하였다고 하는 핵심을 수사하고 집요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	있음. 증거와 법률을 따라갈 뿐임.
○ 유동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법원에서 이야기했는데 변경하지 않아서 유동규, 정민용은 무죄를 받았음. 유동규는 지금 구속 중인데 검찰의 구형보다 법원이 더 많이 구형함.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이 서로 모의를 해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 수사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보고받았는지? 1기 수사팀의 미진한 수사를 정상화한 것이 2기 수사팀의 수사였음.	○ 1기 수사팀으로부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것은 보고 받았던 것 같음. 지금 추론하자면 김만배, 정진상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과 객관적 이유로 인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보고받았음. 수사 필요성은 1기 수사팀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에 2기 수사팀이 1기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배치되는 일임.
○ 2022년 직무대리 발령자들에게 대장동 사건을 검토하여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지? 대장동 사건을 몇 차례나 보고받았는지? 보고받고 어떠한 추가적	○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 차장을 거쳐서 보고받음. 횟수까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움. 보고받은 사항을 참고하였음.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인 지시를 하였는지? 별도 지시가 없었던 것인지?	함.
○2기 수사팀 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도를 한 것이 맞는지? 2기 수사팀 구성과 관련하여 1기 수사팀에서 민간업자들을 기소하고 했는데, 수사팀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상부에서 수사팀 교체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바가 있는지?	○본인이 직무대리를 추천한 바 있음. 당시 정용환 부장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었음. 없음.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구성 및 강백신·엄희준 검사 직무대리 발령도 스스로의 결정인지?	○건의하여 한 것으로 기억함. 지금 문서를 보지 못했지만, 본인 의사임.
○2022년 5월에 공판부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엄희준, 강백신 증인에 대해 한 달 뒤 정식발령을 내릴테니 일시적으로 직무대리 하라는 이야기를 한적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인지?	○인사권자가 아님. 직무대리는 추천할 수 있지만, 한 달 이후에 있을 인사는 알 수 없음. 없음.
○1기 수사팀이 있는데도 이렇게 급하게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할 필요가 있는지?	○대장동 일당들이 취득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다 판단하기 위한 조치였고, 중앙지검장의 권한임.
○대장동 사건 직무대리 발령 시 자료 열람권한 줬는지?	○구체적인 행정절차까지 중앙검사장이 챙기지 않음. 검토하는 지시만 했을 뿐, 기록이 어디 있고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하진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기 수사팀 정용환 증인에게 기록 열람에 관하여 사전 사후에 동의를 구했는지?	○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음.
○ 담당 주임 검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을 보는 것은 직권 남용 아닌지?	○ 그렇지 않음. 업무 지원을 온 파견 검사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중앙 검사장이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었고, 당시 정용환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없음.
○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은 수사되고 있는 상황을 매일 보고받았는지? 적시에, 수시로 보고받고 대검에 수시로 보고하였는지? 중요한 시기에 보고한다는 것인지? '적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 적시에 보고받았음. 적시에 보고하였음. 적시에 보고받고 적시에 보고함.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시점에 보고드린다는 의미임.
○ 수사를 하고 나면 증인이 적절한 시점에 보고를 받아 적절한 시점에 대검에 보고를 하였다는 것인지? 대장동 2기 수사팀은 매일 문건을 만들어 대검에 보고했다고 되어있는데?	○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적정한 시점에 보고를 받고 적정한 시점에 보고를 드렸음. 보고의 주체를 본인으로 두고 말씀드린 내용이었음.
○ 당시 정용환 수사팀장으로부터 어떤 대책, 보고를 받으셨는지?	○ 당시 정용환 1팀장은 저에게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와 공판 상황을 출력물을 갖고 대면 보고했음. 저는 공직에서 물러났으니까 그 자료를 찾기 어렵지만, 정용환 검사장은 아마 지금도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수사팀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확인을 하면 그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음.
○ 지금 저희에게 그 자료는 다 있어서, 자료요청은 안 했음.	○ 당시 보고의 요지는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음.
○ 이재명에 대해서 증거나 혐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한 적 있는지?	○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입장이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음.
○ 입건되기 전인 사람을 압수조서에 피의자로 기입한 것은 실수인지?	○ 수사실무상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관한 증거물이 자발적으로 임의제출되었을 때, 임의제출은 형제번호가 부여되기 전 압수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어느 피의자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 실무상 가능한 일임.
○ 정일권 증인이 남욱 증인에게 한 조사 과정에서 한 발언이 인도적인 것이 맞는지?	○ 함께 근무한 경험 등에 비추어 정일권 부장의 해명과 입장을 신뢰함.
○ 전직 중앙지검장이자 현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증인이 정일권 검사와 같은 수사 방식을 옹호하는 것인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재확인하는 것은 아닌지?	○ 정일권 검사의 입장과 해명을 신뢰한다는 의미였음.
○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재창이형’이라는 음	○ 지금 들어보니 ‘재창이형’으로 들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성을 ‘실장님’으로 바꾸어 녹취록을 조작한 것 아닌지? 방금 법정에서 튼 영상자료의 음성이 증인의 귀에는 ‘실장님’으로 들리는지, 아니면 무엇으로 들리는지?	

(타) 전병덕 증인(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경완 증인이 유동규를 주로 수사하였는지?	○ 그러함.
○ 이화영을 흔들어 대북송금, 쌍방울 주가조작, 800만불 갖다 바친 국가보안법 교환하였듯 김경완 증인이 유동규와 무엇을 교환하였는지? 어떤 회유를 하였는지?	○ 위례신도시 재판 관련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적 있음. 서울중앙지검에서 유동규씨를 데려갔다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입회 접견신청 함. 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10분 이상 대기시키고 올려보내지 않음. 너무 길어 이상하다고 생각함. 과정을 물어보니 검사가 유동규를 단둘이서 조사하고 있다고 들음. 한참 뒤 유동규가 입회를 원치 않는다고 들었는데, 변호사가 왔는데 당사자가 입회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지 믿을 수 없어 유동규를 직접 연락하고 싶다고 하니, 유동규를 바꿔줌. 유동규가 나에게 검사님과 편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게 면담하고 있다고, 다음주에 석방될 것이라고 웃으면서 말함. 10월 4일 선임계 받으러 처음 접견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불과 10일이 지난 10월 14일 갔을때 유동규는 전화상으로 검사가 본인이랑 편하게 면담하고 있다고 말함.
○ 김경완 검사가 2022년 10월 13일 전병덕 변호사의 접견을 제한한 사실, 임우열 수사관이 오늘은 (유동규가) 접견을 원하지 않고, 다음 주에 출석하니 그때 전화드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 맞음.

(파) 호승진 증인(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장동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기 바람.	○ 대장동 재판은 4년간 190여 회의 공판이 있었음. 또한 김용에 대한 1, 2심 재판도 2년이 넘게 진행되었음. 대장동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법정 공판을 거쳐 25만 페이지에 걸친 기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거친 사건임. 남욱 증인이 오늘 주장한 본인이 469억원의 비용을 투자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확인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실이 아님.
○ 정영학의 엑셀파일이 조작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1기 수사팀에서 수사한 건지, 2기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인지?	○ 1기 수사팀 당시 작성된 것임.
○ 또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정영학 녹취록의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기재했다고 하는 녹취록도 1기 수사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이 사실 청취 불가임. 그래서 1기 수사팀이 윗 어르신이라고 쓴 건데, 1기 수사팀을 맡았던 정용환 검사가 자기가 수사 잘못해 놓고 검사들을 감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맞음. 정영학의 엑셀파일이 조작되었다라는 것은 정영학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이었고, 법원에서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서 1심 판결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1심이 이미 판단을 한 부분임.
○ 문제를 삼고 있는 1기 수사팀의 수사 내용들을 1기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가 또 감찰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지?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조작이라고 한다면 그러함.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 많은 검사님들께서는 이 국정조사가 위법하다고 하시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불법이나 거짓들이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림.	○ 위원님께서는 남욱·유동규의 증언이 회유·협박에 의해서 잘못되었고, 엑셀파일 녹취록이 조작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측, 아니면 그 변호인들의 일방적 주장임. 그 부분들은 이미 1심 재판에서 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단을 받았던 부분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님.
○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줌. 특검을 회피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대장동으로 여론 펼쳐서 당선됨. 남욱과 유동규 외에는 구치감에서 밤새운 적 없음. 목표는 단 한사람 이재명임.	
○ 검찰은 범죄자 잡으라고 있는 것이지 정적 제거하기 위해 협박하고 별건 수사하라는 기관이 아님. 그런데도 호승진 증인이 잡아먹을 기세로 대답하는 거 똑똑히 봤음.	
○ 전혀 새롭지 않다는 건 증인의 생각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윤석열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고, 여러분들이 정치검찰로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함. 그리고 남욱 증인 돈이 간 내용이 하나도 없고 증언·진술이 바뀐 것밖에 없음. 그리고 아이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는게 옳은지? 남욱 증인의 아이 사진은 어디서 나왔는지?	○ 저희는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을 절대 새삼스럽게 믿지 않음. 1기 수사팀이나 2기 수사팀이나 똑같은 결론, 똑같은 입장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그 자료는 인계받았음.
○ 법원에서 유동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하였는데 호승진 검사가 거부한 것 아닌지? 본인이 이것 검토하고 우리는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대로 가겠다고 한 것 아닌지?	
○ 공소장 변경 관련하여 하고 싶은 얘기는?	○ 검사는 실체에 맞게 처벌을 하려는 것이 목적임. 법원 변경 권고와 관련하여서도 유동규 증인을 공여자로 하지 않은 것은 더 높은 형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실체에 맞게 하기 위한 것임. 더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우려가 됨.
○ 남욱 증인이 7,886억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액수일 뿐이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바람.	○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액수 중 검찰이 주장한 액수가 전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맞음. 다만, 기소시 몰수의 비율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사업 배분에 대해 어떠한 기준을 설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법원은 지분율에 의해 50%를 받았어야 된다고 본 것인데, 이 부분은 항소심에 가서 다퉈볼 여지가 있음. 해당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이 두둔되는 것 같아 걱정스러움.
○ 남욱 증인은 투자금이 1억이 아니라 469억원이라고 했는데?	○ 해당 내용은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함.
○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가 단독으로 낸 기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선별해 유출한 보도가 아	○ 유출하지 않음. 제출된 의견서는 피고인들에게 다 열람·등사가 됨. 남욱 증인 측에서 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니면 이렇게 보도될 수 없음. 공소유지팀 자료를 유출했는지? ○ 조선일보 보도는 검찰팀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보도임. 이것이 유출된 것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임.	달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물어봐 주면 감사하겠음.

(하) 남욱 증인(변호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9월 16일 재판정에 갔다 오다가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들어온 것이 맞는지?	○ 맞음.
○ 당시 예기치 못한 체포 상황에 놀랐는지?	○ 놀랐음.
○ 얼마나 수감 중인지? 작년 11월 정진상 재판 증인으로 간 적 있는데, 2022년 9월 16일부터 18일 동안 긴급체포가 되어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3일 있었다는 내용 증언한 적이 있는지? 증언 내용을 보면 구치감은 중앙지검 청사의 햇볕 들지않는 지하였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것이 맞는지?	○ 거의 6개월 되어감. 그러함.
○ 당시에 들은 것 그대로 한번 말씀 주실 수 있는지?	○ 저는 낮에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 주변 지인들, 저와 관련된 사람들 다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저녁에는 장기를 다 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러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제 주변 지인들을 모두 기소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음.
○ 전체 구치감 숫자가 55개로 알려져 있는데, 55개 중 그날 그다음 날 증인이 유일하게 한 개의 방을 쓰고 있었는지?	○ 그러함. 잠을 못 잤음. 첫 날로 기억하는데 검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밤에 해서 잠이 잘 오지 않았음. 밤을 거의 샘.
○ 언론에 알려진 정일권 증인의 그 말 때문이었는지?	○ 그러함.
○ 불법 체포 구금으로 보이는 기간 동안 14번의 야간 조사가 있고 새벽 2시에 귀가했다고 보이는데 그것이 맞는지?	○ 밤늦게까지 계속 조사를 받았음.
○ 6월 16일에 불러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새로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이 사진 보여주고, “목표는 하나다, 환부를 도려내겠다”, 거기서 환부가 누구인지?	
○ 2박 3일간 구치감에서 대기하면서 조사를 받는 남욱 증인에게 가해진 행태는 2024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고문 문서의 “정신적 고문”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 그렇게 생각함.
○ 검찰이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심리적 압박을 하거나, 반복적인 심야조사를 한 것은 대상자가 검찰의 통제 아래 있다고 생각	○ 그것은 사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게 하기 위한 것임.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 미국에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여 주며 '아이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 그러함.
○ 기관보고 때 정일권 증인은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했고, 아이를 못 본지 오래되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사진을 보여줬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당시의 심경은 어떠했는지?	○ 그날 수사받는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밤에 면담을 했는데 정일권 증인이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그게 권한이라고 하면서, 애들사진 보여주면서 계속 여기에 있을거냐? 라면서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보라고 함. 변호인도 없었고, 검찰청에 혼자 있어 위축되어 있었음.
○ 2022년 9월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갇혀 있었는지? 검사실, 영상녹화실 오가면서 반복해서 조사받았는지?	○ 그러함.
○ 구금시 전반적 상태는?	○ 검찰 수사 시에는 당시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느꼈음.
○ 이주용 검사만 신문했는지, 정일권 검사도 공식적으로 신문을 했는지? 정일권 검사의 그 문제 발언은 별도로 다른 때 이야기했다는 것인지?	○ 정일권 검사는 공식적 신문은 안 하였음.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일권 증인은 인도적 견지에서 아이 사진을 보여줬다고 진술했는데, 그렇게 느꼈는지?	○ 그렇게 느끼지 않음.
○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 미국에 있음.
○ 남욱 증인이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위해 구치소에 돌려보내지 않고 구치감에서 2박 3일간 구금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적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면 될 일임. 첫 보도가 '너무 추워서 힘들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다. 죽을 것 같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구치감이 그렇게 추웠는지?	○ 보도는 못 봤지만 추웠던 건 사실임.
○ 이번에 구치감 가서 확인해 봤더니 남욱 증인이 입감한 날 선풍기가 지급이 됐던데 9월 밤에 그렇게 추워서 선풍기를 요청했는지?	○ 방에 선풍기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음.
○ 자료에는 선풍기 및 이불이 지급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인지?	○ 모포는 두 장 받았음.
○ 9월 밤에 선풍기까지 지급받고 추워서 내가 거짓 증언이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거짓 증언한 것인지? 그렇게 추웠는지?	○ 그것은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임. 그렇게 호도하고 왜곡하시니 사실관계가 틀어지는 것임. 춥다기보다, 굉장한 부담을 느꼈던 것은 맞음.
○ 체포시 별건 14건을 수사하겠다고 한 것이 맞는지? 체포 첫날 밤에 내일 부르면 스스로 나올테	○ 그런 취지로 수사받았음. 맞음. 원래 안 된다고 답변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니 구치소로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구치감에 구금한 것인지?	
○ 48시간 변호인 없이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법정 변호인은 있지 않았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으나 수사 변호인이 없다는 얘기는 했는지? 검찰은 법정 변호인이 있음을 알고있었음에도 법정 변호인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였음.	○ 법정에만 있었음. 그러함.
○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필요없다고 하였는지?	○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체포 당시 정신이 없었음.
○ 증인의 2박 3일간의 이례적인 구치감 수용 경험과 정일권 검사와의 만남이 2022년 11월 21일 재판에서 기존 입장 번복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지? 이 과정이 진술 변화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인지?	○ 맞음. 검찰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방향을 말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수사해서 기소하겠다고 한다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정일권 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는지?	○ 수사 과정에서 정일권 검사를 포함한 여러 검사로부터 해당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음.
○ 정일권 검사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지?	○ 그러함.
○ ‘목표는 하나다’라고 한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청함.	○ 이재명 대통령 기소하기 위함임은 모두 알고 있음.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되었을 것임. 왜냐하면 검찰이 목표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정했고, 대장동 사건은 민관 합동 사업으로 민간이 돈을 가져가면 배임, 반대의 상황이 되었다면 제3자 뇌물이 되었을 것임.
	○2차 조사 당시 이재명이 시킨 것 아니냐? 시장이니까 시켰겠지 않겠냐? 라고 하였고, 유동규 본부장은 나중에 거짓말을 함. 결국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됨.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 오늘 자리를 빌어 밝혀졌으면 함.
○검찰에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남욱 증인께서 협조를 하지 않았는지?	○그러함.
○검찰 측에서 목표는 뻔하다고 했었는지?	○목표는 하나고,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 없다고 말함.
○증인은 변호사이니 그 당시에 막연하게라도 불법 수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본인들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음.
○구치감에 갔다 오고 진술이 바뀌고 석방된 이후에 주고받은 내용인지? 정영학 회계사 녹취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지?	○그러함. 없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민주당 당 대표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왔는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음.
○검사들이 원하는 답을 했을 때 검사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대부분 제 조서를 보면 ‘시장님이 지시하시지 않았겠냐’, ‘그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을 것 같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승인권자니까 그러지 않으셨겠냐',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 이유가 결국은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검찰들이 원하는 답을 해 준 이후에 주변 지인들에 대한 돈거래 조사나 여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수사는 진행을 안 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사는 없었음.
○그렇게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 더욱더 협조를 하게 된 것인지?	○그런 면도 있고, 김만배 회장님은 별건으로 다섯 번의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중 두 개는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김만배는 봐주지 않겠다', '두고 봐라' 그랬고, '유동규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함. 이렇게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니까, 제 입장에서도 협조할 수밖에 없었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정진상, 김용 이런 인물들을 언급할 때 검찰들이 이에 대한 의심이나 이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없었는지?	○제 기억은 먼저 검사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꺼냈음.
○먼저 꺼냈다는 게 어떤 건지?	○유동규 본부장 얘기로는 저한테 받아 간 돈의 대부분이 김용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정진상한테 갔다고 하는데 알고 있냐고 해서 처음에는 저는 잘 모른다 했더니 '왜 모르냐, 녹취록에도 나와 있고 이런데' 그렇게 계속 얘기함.
	○당시 정진상·김용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가 싶었음.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되게 잘해줬다는 것 같던데, 혹시 들은 내용 있는지? 검사가 그랬는지?	○어느 순간부터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고 나중에 어느 검사님은 우리가 유동규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함. 저는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음.
○검사가 '유동규는 우리가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 검사 성함 기억하시는지?	○김영석 검사로 알고 있음.
○검찰에서 유동규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다고 했는지? 지난 기관보고 때는 남욱 증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진술함.	○제가 처음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얘기를 꺼낸 게 2022년 11월 1일이라고 조서에 나옴. 그리고 제가 처음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함. 검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제 얘기를 듣고 2022년 11월 21일에 유동규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함. 제 기억과 달리.
○그런데 조사를 받을 때는 유동규가 먼저 실토했다 이렇게 질	○그러함. 1년이나 지난 사건을 갑자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문을 받았다는 건지?	분들인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얘기를 먼저 꺼냈을 리 없음. 그리고 검사님들 주장하시는 것처럼 제가 대장동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냈으면 그 다음 날 유동규 본부장 불러서 확인을 했을 것임. 그런데 21일 동안 조사한 내용이 없음.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물어봄.
○ 검사들은 증인한테는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를 꺼냈다고 하고 유동규한테 가서는 남욱 증인께서 그런 형들 얘기를 꺼냈으니까 협조하라 하고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거짓을 얘기하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끌어냈다고 볼 수 있는지?	○ 제 생각에는 유동규 본부장께서 먼저 협조를 하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본인한테는 책임이 제일 큰 부분이다 보니 내가 쓴 돈이 아니라고 먼저 얘기를 해서 시작된 스토리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음.
○ 2021년 대장동 수사 초기 귀국 직후 검찰 조사시에 유동규에게 3억 원 준 이유를 말하였는지? 이 3억 원은 김용·이재명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이 윗선들 모르게 유동규의 채무상환을 위한 개인 유용 자금이 아니었는지?	○ 그러함. 당시엔 그렇게 알고 있었음.
○ 증인이 처음 피의자 신문 받을 때 유동규에게 준 3억 원가량 돈에 대해서 ‘유동규가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	○ 유동규 본부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 당시 다른 분을 통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옷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돈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술했고 정재창, 정민용 모두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밝히는 자수서와 자술서에도 업자한테 빌린 돈이라고 함. 사실인지?	벗을 수도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
○ 다른 분이 혹시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지?	○ 당시 시의회 의장이셨던 최윤길 의장임.
○ 그러면 당시에 유동규의 개인 채무 때문에 돈을 주는 걸로 생각했었지 정진상이나 김용한테 준다는 생각은 없었던 건지?	○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그 기억만 있었지 정진상 실장님이나 김용 부원장 얘기가 제 기억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임.
○ 2021년 10월 유동규가 준 3억은 개인적인 빚을 갚으려는 것이었다고 진술했고 이후 바뀌었다가 다시 최근에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유동규가 건넨 3억이 김용과 정진상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답변하였는지?	○ 맞음. 처음에는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2차 수사 때 검사들과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주었는데 왜 기억을 못하느냐고 말하여 그렇게 진술을 바꾸었고, 이후에 2013년 당시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함.
○ 유동규가 분당 쪽에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2007년~2008년도에 리모델링 공사 중 하나인 철거공사 명목으로 3억을 빌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당시 자금이 풍부하지 않았음에도 유동규가 전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실혼 배우자	○ 그런 것 같음. 유동규가 김용, 또는 정진상에게 전달할 만한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음.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게 외제차를 사주고, 전세자금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십몇억원 외에 추가로 김용씨, 정진상 씨에게 전달할 만한 돈이 있는지? 그러한 돈은 김용, 정진상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유동규가 사적인 필요에 따라 쓰여진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지?	
○ 정일권 증인은 증인에 대한 언급은 안 했다고 진술하는데?	○ 사실임.
○ 정일권 검사님이 지인 얘기했는지?	○ 지인 얘기는 정일권 증인이 한 게 아님.
○ 실제 지인 중에 조사받은 사람도 있는지?	○ 굉장히 많음.
○ 그렇다면 정일권 증인이 남욱 증인 지인을 건든 것임.	○ 정일권 증인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들도 허위 사실들을 대부분 인정한 것임.
○ 여러 수사 검사들이 남욱 증인에게 와서 지인 수사할 수 있다, 실제 지인 조사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2박 3일간 구치감에 혼자 두고, 그 이후에 정일권 증인이 와서 장기 얘기, 배 가른다 얘기하고 애들 사진 보여 주면서 잘 선택해라 얘기했다는 건지?	○ 그러함.
○ 정일권 증인이 이야기하기 전에	○ 정확한 워딩은 ‘우리는 이걸 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다 기소할 수 있다’, ‘다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검사가 누군지?	보겠다’, ‘우리는 남욱 씨 말을 믿지 않는다. 다 보겠다’ 였음. 그런데 정일권 증인이 장기 얘기를 하니 본인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었음.
○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이 들어왔는지?	○ 저와 돈거래를 했던 사람들 중 저희 큰애 학부모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제가 어떤 수사에 어떻게 수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마치 범죄수익 은닉으로 수사를 받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는 것처럼 함. 어떤 피의자는 대학 다니는 아들 통장까지 다 압류해 놓고 진술 번복시키고 그랬음. 사실 장기간 수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건 사실임.
○ 관계자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 간 아들의 통장을 압류하고 협박했다는 건지?	○ 결국은 그분도 진술을 번복했던 걸로 알고, 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임.
○ 그 사람들의 진술이 그전의 상황에서 바뀌었다는 건지?	○ 네
○ 남욱 증인은 별건 협의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상당한 위협이나 압박감을 느꼈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했는데, 당시 별건 혐의는 무엇이었나?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이었나?	○ 지인들에 대한 범죄 수익 은닉을 전부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였음. 주변 지인들을 포함해 7, 8명에 대한 이야기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본인도 지금 이 사건과 조작수사의 최대 피해자인데 어떻게 보면 또 협조를 하면서도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했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겠음.
○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죄명인 부패방지법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체포나 구속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지?	○ 처음 압수수색 당시 피의 사실은 뇌물 수수였음. 다만 민간업자임에도 뇌물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 의문이 있었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에 응하여 조사에 갔을 때 검사님들의 권한이라고 했음.
○ 중간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이의제기를 한 것인지?	○ 했음.
○ 정일권 증인이 이야기한 부분이 남욱 증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 검찰은 7,880억원 불법 수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건국 이해 민관합동사업 중 이렇게 많은 수익을 관이 가져간 사업은 전무후무함. 인식의 차이라고 보임.
○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결재라인을 보면 정진상부터 최종적으로 이재명 시장까지 있음. 맞는지?	○ 그러함.
○ 관련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장동 개발의 최종 승인·결정권자는 누구인지?	○ 시장임.
○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지 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를 조건으로 하라는 부기까지 되어 있는데,	○ 관여하진 않았지만 그랬을 것이라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는 결재 라인의 중요한 분이 사인을 했을 것임. 동의하는지?	
○ 시장이 관여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고서 대장동 사업이 가능한지?	○ 불가능함.
○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지금 5개 재판정에서 12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 쌍방울 대북송금 청문회 당시 방용철 증인이 ‘분명히 돈을 건네준 것을 봤다’고 진술함. 진실은 변하지 않음.	○ 정확하게 469억 투자함. 수익은 1010억임.
오늘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음. 2021년 9월 14일 날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백브리핑을 통해서 ‘사실 이 설계’, 이게 뭡니까? ‘대장동 사건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라며 그냥 실무자라고 하였음.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자신 있게 내가 설계한 거라 함.	
○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동조자들이 있음.. 김만배, 정진상, 유동규, 남욱, 정영학 다 관련이 돼 있음. 여기에 페이퍼컴퍼니인 성남의뜰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에 모든 권한을 주었음. 그리고 거기에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AMC)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신하여 모든 권리행사를 하면서 각종 이권·이익을 남김. 결국 택지 분양 수익으로 4054억,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3690억, 자산관리위탁 수수료 140억, 이래서 총 7886억이라는 범죄 수익을 남김. 이것이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임. ○ 이 수익을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배당함. 김만배가 대표로 있는 화천대유에 577억 배당함. 5000만 원 내고 577억을 가져갔으니 1154배 수익률임.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또 천화동인 1·2·3호를 관여함. 본인 것 1호, 2호 부인 것, 3호 누나 것, 이렇게 해서 김만배가 3억 원을 투자해서 무려 1410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남김. 거의 500배임. ○ 대장동에서 얼마 투자하셨는지? 수익은 얼마가 되는지?	
○ 증인이 얻은 수익이 한 1000억대라는 소문이 있는데 맞는지?	○ 1070억 원 배당받았고, 469억 원은 비용으로 사용했고 250억 정도는 세금으로 냈음.
○ 떳떳한 수익이라고 생각하는지?	○ 그렇게 생각함.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대장동에 있는 성남시민들은 이주명령 당했는지?	
○ 환지방식은 시장가격으로 주는 것이고, 수용방식은 강제적으로 땅을 빼앗는 것인데 이를 알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님.
○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F, 유동규에게 수용방식으로 신속히 K 개발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것이 1심 판결 내용임.	○ 그것은 검사의 기소 내용으로 알고 있음.
○ 범죄 수익금으로 발생한 7886억인데 환수된 건 김만배 계좌에서 428억 추징된 것이 전부임. 나머지 약 7500억 원은 항소포기로 범죄자들의 수익금으로 돌아감.	
○ 공공개발을 빙자한, 범죄·비리 전문가들과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지방권력이 결탁된 것임. 7,800억의 범죄수익금을 내고 500억밖에 추징 못 하고 7,500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게 됨	
○ 대장동 사업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인정한 공공환수금액이 5,503억이고 기타를 합하면 5,800억이라고 함. 만약 처음부터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허가했다면 성남시	○ 금액으로 환산하기로는 어렵지만, 참고로 1심 법원에서도 5,561억이라는 수익을 인정하였음. 기부채납은 더 적었을 것임.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가 받을 수 있는 기부채납은 어느정도인지? 4백억 정도라고 보는데, 통상 400억의 기부채납을 받을 걸 지금 5,560억 정도 받은 것인데 맞는지?	
○ 개발사업 중에 5천억 원을 공공환수를 해 갔다는 것인지?	○ 5,700억 정도 환수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인정된 사실임.
○ 김형동 위원 질의 관련 이야기할 내용 있는지?	○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700억의 수익을 가져간 사업이고 7,880억은 2차 수사팀에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숫자이며, 1심 판결문상으로도 일부 손해는 인정되나 금액은 확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 사건하고 별개로 범죄수익을 성남 시민들에게 내놓을 생각은 없는지?	○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럴 수 있음.
○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JTBC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 바늘을 찔러도 씨알도 안먹힌다라고 했음.
○ 좀전에 확인했던 과거 영상에서 ‘캐스팅한 분, 발연기’ 발언 배경과 취지, 의미는 무엇인지?	○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그 당시 시장님이셨으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장님도 진실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오전이나 최근 법정에서는 이재명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발언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대장동 사건의 구조가 배임이라는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를 짜서 혹은 승인을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수익의 반 이상을 가져다가 1공단 공원화 등을 하셨고, 그게 건국 이래 관공서에서 가져간 최대수익을 낸 사업으로 알고 있음.
○ 민간업자들이 요구한 5가지 사항을 전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거절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진술하였는지?	○ 그러함. 검찰도 법정에서 다 인정한 사실임.
○ 개발업자들은 민간으로 하고 싶었으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고 성남시의회 다수인 한나라당 시의원들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지 못하고, 민관합동으로 어쩔 수 없이 절충적으로 시작한 것인지?	○ 맞음.
○ 2021년 10월 19일 검찰 조사 당시, 자필 메모에 적힌 “다른 사람(천화동인 1호 소유자)”이 “유동규”라고 진술한 것이 맞는지? 그럼에도 2022년 11월 21일 재판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표 측 지분”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것이 맞는지?	○ 맞음. 날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사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용 사건 관련, 증인이 2021년 5월 3일 정치자금 전달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과거 재판에서 김용이 유원홀딩스에 방문하여 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 본인이 관여한 일이 아니므로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음.
○ 그런데 작년 2025년 10월 24일 정진상 재판에서는 “5월 3일에 유원홀딩스에는 김용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저와 김용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적으로 증언한 배경은 무엇인지? 증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 그 부분(김용의 유원홀딩스 방문)에 대하여 계속 공방이 오갔고, 재판에서 그걸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변호인이 물어봤음. 정민용이 말한 것을 들은 내용임. 정민용이 그 당시에 유동규와 골프 연습장을 다녀와서 그날 김용 부원장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김용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까지 제시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음.
○ 대장동 사건은 민간업자의 유례없는 대규모 수익이 핵심이지 남욱 증인이 2박 3일 구치감에 구금된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2기 수사팀은 증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였는지?	○ 2기 수사팀이 인격적으로 모독한 바는 없음. 1기 수사팀이 사건에 대하여 듣는 입장이었다면 2기 수사팀은 목표를 가지고 수사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차이임.
○ 남욱과 유동규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목소리가 남욱 증인 본인이 맞는지? 이에 따르면 1기 수사팀이 뭔가를 덮으려 하는 것으로 보여짐. ‘벌겋게 돼서 지우	○ 맞음. 그런 부분은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고 지우고', 남욱 증인이 한 말을 1기 수사팀이 제대로 적지 않았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 최대의 개발 비리 사건임. 각종 특혜를 적용해서 막대한 범죄 수익금이 발생한 사건임. 해당 사건은 매우 복잡한 사건으로 유능한 검사들만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면 수익 상한제한(6%)이 있으나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제한이 없도록 하고, 민간개발임에도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하며, 임대용지였던 A10블록을 분양용지로 전환을 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도시개발법상 수의계약 특례조항을 활용하여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 자산관리위탁수수료를 합쳐 합이 7,886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만들어냈음. 그런데 남욱 증인 본인 투자금이 얼마라고 하였는지?	○ 469억원이었음.
○ 대장동 사건은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 사업 아니었는지? 7,886억원의 수익금이라고 지적되는 사항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기	○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금액이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AC 블록 1,822억, 1공단 주차장 설립 비용 등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바람.	1,178억 총 5,561억의 수익을 가져간게 맞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음. 또한 검사들이 주장하는 7,886억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음.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수익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에 유무죄가 갈린 부분임.
○5,561억원은 공공기여라고 해서, 수익이 아니라 사업자가 당연히 하는 비용이 아닌지?	○1심 판결문의 내용임.
○유동규가 김용과 정진상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는 왜 바뀌었는지?	○맞음. 수사 과정에서 들은 내용임. 검사님들과 유동규 본부장이 왜 기억을 못 하는지 여러차례 종용하였음.
○나경원 위원님이 틀었던 유동규와 증인 간의 녹취록(벌겋게 돼서 지우고 지우고) 관련하여 어떤 정황인지 말씀해 주기 바람.	○오늘 처음 들은 내용임. 아마 구속되었다 풀려난 이후 유동규 본부장께서 전화하셔서 통화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한 것으로 보임. 본인이 검찰에 이야기한 내용을 지웠다는 부분은 남재현 검사가 당시 “대부분 남욱이 했다”는 취지의 조서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받았고, 본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정규 검사에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공공이익을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환	○그렇게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수한 사람으로 알고 있음. 맞는지?	
○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민관이 함께 관여하는데, 사업자(민)만 하면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인데 시(관)가 같이 하면 이익이 돌아가게 됨. 관에 돌아간 이익이 얼마였는지?	○ 대법원 5,700억, 1심 5,561억이 성남시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이 맞다고 판결하였음.
○ “7,700억원은 허수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판결문 자체에 “5,561억원이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함.
○ 법정에서 정진상 실장을 기소해야 다음 단계인 이재명 시장을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에 대한 뇌물 수사를 중요시 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는지? 정진상 실장에게 뇌물을 주었는지에 대해 추궁을 당했는지?	○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이야기를 하였음.
○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가 있었던 것처럼 대장동 사건도 유동규와 검사 입회 아래 진술을 맞추는 세미나 같은 것이 있었는지?	○ 세미나와 같은 형태는 아니었지만, 유동규 본부장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해서 같은 공간에서 유동규 본부장의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음.
○ 조금전 나경원 위원님이 증인이 유동규 말에 맞장구치는 형태로 20분간 통화한 녹취록을 재생한 바 있는데? 유동규가 증인에게 “환지방식 끝까지 밀고 갔어야	○ 둘어본 적 없음. 환지방식으로 하였을 경우 성남시가 가져갈 이익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했는데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환지 방식으로 갔더라면 우리 사업자들이 더 이익을 보았을 거라는 의미가 맞는지?	
○ 당시 유동규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지금의 견해는?	○ 당시 녹음하는지 알지 못하였음.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통화하고 싶다고 전달하여, 통화한 기억이 있음. 정일권 검사님이 이에 대하여 한 진술은 사실이 아님.
○ 유동규와 증인과 대화한 것이 어느 시점인지? 2023년 정도인지?	○ 구속되었다 풀려난 이후임. 2023년도 4월 정도였음.
○ 증인이 수사에 잘 협조했음에도 위례 신도시 관련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한 것이 맞는지?	○ 그런걸로 알고 있음.
○ 지금 위례신도시, 윗 어르신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말씀 주실 수 있는지?	○ 법정에서 녹음을 재생했고 ‘제가 듣기에는 저는 위례신도시라고 제가 얘기한 걸로 들립니다’라고 재판에서 답변함.
○ 대장동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를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부실하게 한 것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함.	○ 확인이 안 된 내용이라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 의심은 했음.
○ 2013년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청탁 수사가 아닌지? 영업권을 가진 증인을 수사로 제거하고 다른 사람이 사업권을 갖고오기 위한 의도가 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 이로 인해 50억 클럽 이야기가 나온 것. 이강일, 남욱이 갖고 있던 대장동 사업권을 뺏어 김만배 쪽으로 간 것임. ○ 대장동 사건은 쌍방울 사건과도 비슷함. 쌍방울에서 주가조작 당시 그룹 사외이사 했던 변호사가 있었음. 대장동도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었음.	

(거) 박철희 증인(호반건설 대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호반건설은 이기성 운영의 덕암, 나석규 운영의 금강인프라건설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조성에 함께 사용했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개발공사의 비밀을 이용해 수백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현재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수사 피의자로 입건된 건 아시는지? 그 이후의 조사는 없었는지? 당시 호반건설 회장실도 압수수색 되었는지?	○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게 됐음. 없었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음.
○ 남욱과 다른 혐의자들은 위례 비밀 이용 건으로 모두 기소되	○ 본인들은 최초 사업 공모 당시부터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었는데 증인들은 왜 기소되지 않은 것인지?	고, 성남시에서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임.
○ 이기성 관련 비자금 조성한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검찰에 진술했는지? 조사를 받았는지? 조사도 안 했는데 이미 그런 내용이 다른 사건의 공소장에는 많이 기재되어 있음.	○ 전혀 사실이 아님. 조사를 아직 안 받았음.
○ 박철희 증인은 호반건설 부사장이었다가 대표이사로, 김은정 증인은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하였는지?	○ 그러함.
○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데 승진이 잘 된 이유가 있는지?	○ 회사 경영상 판단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함.
○ 정영학 메모에는 구체적으로 불법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나옴. 호반건설과 금강인프라건설에서 이기성에게 모인 총 50억원이 남욱에게 넘어갔고 남욱이 차명계좌를 거쳐 이 중 8억 3000만원을 김만배에게 넘김. 이렇게 증인들은 대장동 일당들의 횡령과 뇌물에 적극 가담한 공범인데 왜 아직까지 제대로된 기소·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는 것인지?	○ 본인들은 전혀 횡령 등에 공범으로 참여한 적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호반건설이 현재 서울신문 사주인데, 서울신문에서 대장동·위례 사건 관련 사설을 쓴 것을 보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활동함. 특히 서울신문 단독기사는 검찰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사들임. 혹시 강백신 검사나 중앙지검 관계자들로부터 기사 내용을 제공 받은 적 있는지?	○ 없음.
○ 자회사 서울신문 통해서 단독기사 쓰고, 윤석열과 검찰의 입에 맞는 사설을 써가면서 호반건설을 봐주기 수사하고 검찰의 나팔수 역할에 합의한 것 아닌지? 이렇게 건설사가 언론을 죄를 덮는 데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 서울신문은 저희와 독립적으로 대응함. 저희는 위례 사업 관련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함.
○ 언론사를 이용해 계속하여 정권과 검찰에 부역할 것인지? 보도가 다 나와 있는데 언론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 건설사에서 서울신문을 이용하지는 못하고, 신문은 독립적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기사를 저희가 제공하지 않음.
○ 호반건설에서 서울신문으로 임원 발령 난 적 있는지? 김상열 회장은 임원과 회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은지?	○ 건설 직원이 발령 난 것은 없음. 임원도 없음.

(너) 김은정 증인(호반건설 전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철희 증인은 호반건설 부사장이었다가 대표이사로, 김은정 증인은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하였는지?	○ 그러함.
○ 언론사를 이용해 계속하여 정권과 검찰에 부역할 것인지? 보도가 다 나와 있는데 언론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 언론사를 이용한 사실 없음.
○ 회장이 서울신문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모두 알고 있는지?	○ 건설 쪽에서 이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임.

(더) 강철호 증인(철거업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진술서를 보니 유동규가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유동규에게 3억을 주었고,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독촉하여 나중에 3억원을 다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기 바람. 돈을 받은 시점은?	○ 2007년도 또는 2008년도에 리모델링 조합장을 할 때 3억을 빌려주었음. 2010년도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본인에게 일을 주지 않았음. 돈을 받은 시점은 2012년, 2013년임.
○ 유동규에게서 돈을 돌려받은 시점이 진술서에는 2013년, 2014년초로 되어 있는데?	○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음.
○ 당시 유동규에게서 돈을 나누	○ 2012년부터 계속 독촉을 하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어서 돌려받았다는 것인지?	고, 한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나누어 받았으며, 고철업자 이문현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가서 독촉하였으므로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유동규로부터 3억을 받은 것은 맞는지?	○ 받았음.
○ 돈을 받은 시점에 대해 증언대에서는 2012, 2013년으로 말씀하시고, 진술서에는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시점과 누구를 시켜서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 압박 이후에 어떻게 받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람.	○ 2012년도에 (고철업자) 이문현 씨가 도시개발공사를 찾아 갔고, 현금으로 직접 그 돈을 받아 갔고, 저 또한 성남시에 있는 서현동 근처 식당에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받아 왔음.
○ 증언 내용은 정확히 진술서에 나와 있음. 증인은 '2013년 말인지 2014년 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유동규에게 3억을 줄 때 제게 돈 받은 것은 있다'라고 썼음.	

(러) 김경수 참고인(한국정책연구소 기획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성남시를 거쳐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작년 말 정년퇴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지난 시기 검찰의 수사	○ 성남시에서는 전략추진팀장을 맡았음. 전략추진팀은 성남시의 주요 시책을 기획·조정하는 업무와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로 직위해제 등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맡은 업무를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림.	성 타당성 검증성 검토해 정책결정시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팀임.
○ 대장동 사업은 이후 경기도 관내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졌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컨택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음.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6건의 벤치마킹 실적 보여줬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본인은 사업초기 검토단계에만 관여했음. 공공사업은 실제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일정한 이익을 현출하면서 실질 부담을 적게 하는 차원에서 대장동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하였음. 5,500억에서 5,6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낸 것이 전국 지자체 최초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함.
○ 대장동 개발 사례는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하고싶어 할 정도로 잘 된 사례임. 처음 LH에서 하려고 했는데, 당시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예산배정 등을 막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공공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봄. 좋은 사례로 만들고자 했던 것인데 윤석열 취임 이후 뇌물로 둔갑함. 이에 대한 입장은?	○ 지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은 실패의 위험성이 많아 꺼려함. 그래서 보통은 사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을 다 가져감. 그러나 대장동 사업은 시에서 일정한 이익이라도 갖자고 해서 한 사례임.
○ 성남FC 사건으로도 기소되어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이나 심정은?	○ 왜 본인이 기소되었는지 모르겠음. 검사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아 그랬다고 생각함. 이로 인해 작년 1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친구들도 다 끊김. 직위해제 당해 월급도 깎이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고통스러웠음.

(머) 백종덕 참고인(법무법인 로우 변호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천화동인에 대한 자금흐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림.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씨 소유인데 유동규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한 녹취록이 있었고, 2호는 김만배씨 부인, 3호는 김만배씨 친누나, 5호는 정영학 회계사, 6호는 조현성인데 조우형의 것으로 추정이 되고, 7호는 배성준 기자로 되어 있음. 여기에 김용 또는 정진상 몫이 있었는지?	○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음. “걔네”라는 말은 있는데, 그러한 일부 명확하지 않은 명칭을 가지고 이재명 측으로 보고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대장동 사건에서 추징이 왜 안 된 것인지? 판결문에서 추징의 액수를 검찰이 산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 법적 평가를 다 하기는 쉽지 않음. 다만, 최근에 유동규가 33부 재판부에서 신문 당시 5,500억 환수에 대해 본인과 성남시, 공사가 열심히 해서 환수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음.
○ 대장동 사건이 이전에는 ‘혐의없음’으로 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사단이 들어오면서 모든 수사가 시작되었음. 박태선 씨 압수조서 목록인데 입건되지 않은 이재명을 쓴 것이 가능한지?	

(버) 신알찬 참고인(법무법인 세담 변호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참고인은 김용 사건 변호를 맡았는데, 쟁점은 철거업자로부터 유동규가 빌린 돈을 김용에게 전달했는지가 쟁점이었음.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고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철거업자의 진술이 있었음. 이에 대해 부가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	○ 상고심 단계에서 강철호 증인이 진술한 바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가 제출된 바 있음. 다만, 항소심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소 다른 증언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김용 사건 변호 당시 구글 타임라인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높은 증거로 위치 추적에 쭉 사용되어 왔는데, 구글 타임라인이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인 것인지? 예컨대 A와 B 건물 사이 어딘가에 있었는지도 나타나는지?	○ GPS나 와이파이 둘 중의 하나로 수집이 되는데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오차만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김용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가 구글 타임라인상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김용이 실제로 있었던 시간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인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증거라면 구글 타임라인 증거가 배척된 이유가 무엇인지? 유동규의 진술뿐인지?	○ 그러함. 2021년 5월 3일 오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김용이 근무하던 장소에서 나가 주거지가 있는 서초구 쪽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위치가 이동한 기록이 있음. 유동규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그 외에 일부 배치되지 않는 카드 사용내역이라던가 몇 년의 기간 동안 몇 건 있었음.

2) 기타

(가) 이원석 증인(前 검찰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에서 2022년 4월 20일에 국정원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하여 국정원이 36건의 자료를 임의 제출하였고, 대북 첩보 보고서 66건은 목록만 제출하였음. 당시 국정원에 파견되었던 유도윤 검사가 23년 5월 10일에 이를 열람하고 13건을 추렸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미리 이야기하여,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해당 13건만 압수하였음.	○ 국정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대북기밀 66건 중 13건을 제외한 53건 중 하나의 정보는 리호남이 2019년 5월 수술을 해서 거동이 불편했다는 그런 내용들, 필리핀에 왔다는 검찰의 프레임에 반하는 정보임. 이러한 선별적인 증거 제출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는지?	
○ 임의 제출받은 자료에도 방북 비용이 건너간 이후에도 북한이 경기도를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는 제출하지	○ 언론보도를 통해 반대되는 내용들도 1심·2심에서 다투어졌다고 알고 있음.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만을 제출하였다는 것임. 이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별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함. 이게 바로 조작기소고 선별적인 검사의 객관적인 의무를 무시하는 검찰의 수사 행태라고 봄.	
○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 대검 소속 조주연, 한강일, 이윤환 검사를 수원지검에 파견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검사들이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것이 맞는지?	○ 있음.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에 대하여 어떤 수사를 했는지까지 알기는 어려우나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수사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음.
○ 금융감독원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였음에도 쌍방울 그룹만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과 이화영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교환한 결과가 아닌지?	○ 그렇지 않음.
○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국정조사 기관보고 출석 당시 쌍방울의 주가조작 유죄 혐의를 확인하였다고 하였는데, 검찰은 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압수도 하지 않았음. 쌍방울 사건은 왜 묻은 것인지? 불기소 무혐의 처리된 것이 아닌지?	○ 묻은 적 없고, 퇴임 후에 처리되었음.
○ 통일전선부 김영철, 정찰총국 리호남에게 현금으로 800만 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러 지급했다고 하는 것을 증인은 알고 있었음. 이는 금품수수, 잠입·탈출, 각종 가중처벌, 특가법 대상이며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임.	
○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 거래하는 발언들은 문제없다고 보는지?	○ 제가 최근의 녹취록만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음.
○ 서민석 변호사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 검사가 직접 전화해서 부탁한다는 소리까지 함. 이건 명백히 거래임.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람.	○ 알겠음.

(나) 정순욱 증인(前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는지? 법인카드 사건 관련하여 비서실장이라는 이유로 기소당했는지?	○ 맞음. 그렇게 보임. 증거가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당했음.
○ 당시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증인도 그러하였는지?	○ 2024년 1월 1일자로 광명 부시장으로 부임하였는데, 사무실, 주택, 관사, 개인차량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음.
○ 당시 업무추진비, 경기도청의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비서실장이 알았	○ 맞음. 20여명의 공무원을 모이게하여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되었음. 수많은 텔레그램 및 카톡으로도 증거가 발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으니 도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기소된 것인지? 당시 소회를 함께 밝혀 줄 수 있는지?	되지 않았음. 대한민국 어떤 도지사가 샌드위치 심부름을 시키는지 반문하고 싶음. 조사 이후 심리치료 또는 휴직 등을 겪었는데, 직업공무원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함.

다. [4월 21일, 3차 청문회]

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가) 김성한 증인(前 국가안보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해경에서 인수위 처음 왔다고 하는 안성식 증인을 잘 알고 있는지?	○ 성함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음.
○ 5월 24일, 5월 26일 NSC 실무조정회의, NSC 상임위원회 연속했고 이 내용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 정권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안보 사안으로 올라온 것이 맞는지?	○ 맞음.
○ 처음부터 윤석열의 선거공약으로도 시작돼서 윤석열 하명 사건이니까 그 바쁜 안보실 초기에 연속해서 실무조정회의, 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맞는지?	○ 이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고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한 사안임.
○ 2020년 9월 29일 수사정보국장 해경에서 밝힌 내용임. 왜 월북으로 판단했는지를 보면, 구명조끼, 북측에서 실종자 인적사항 알고, 월북 의사 표명했고, 연평도 해역 알고 있고, 표류예측 분석결과 종합해서 판단 것임. 그러나 6월 10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안보실 협의 결과는 추가 정보도 없고 추가 사실도 없으며 조사도 안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김태효가 불러서 입장을 바꿔라,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새롭게 조사한 것도 없기 때문에 입장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김태효가 수정하고 국방부가 반발하니까 해경이 6월 16일에 발표함. 이런 것은 윤석열의 명령 없이는 못하는 것인지?	
○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는지?	○ SI를 직접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고 알고 있음.
○ 감사원이나 아니면 국정원이나 검찰에다가 이 사건을 감사를 하고 고발을 하고 기소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였는지?	○ 국가안보실은 정책조정기관이지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님.
○ 서해피격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소통한 내용을 말씀 부탁드림.	○ 소통한 적 없음.
○ 김태효 1차장이 대선 때부터 주도했던 서해공무원 사건 정치 전선을 치고 윤석열이 하명하니까 이걸 주도해서 쭉 끌고 간 것 아닌지? 여기에 안보실장은 배제된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 부탁드림.	○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님. NSC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실무적인 그런 일들을 안보실장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음.
○ 아태위는 대북제재 대상이 맞는지?	○ 제가 안보실장으로 있을 때 이건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

(나) 김규현 증인(前 국가정보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에 검사가 많이 파견되었는데, 본인이 요청한 사람들인지?	○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음.
○ 김규현 국정원장이 150명 교육 2차·3차 보내고, 1급 한 번에 다 찍어서 직무정지 시키고, 2급짜리 1급 직무대리 시키고, 3급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 2급 직무대리 시켜서 국가정보원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검찰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최혁 검사는 누가 받은 것인지?	○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최혁 검사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하라고 누가 시켰는지?	○ 본인이 시켰음.
○ 감찰실장 있는데 감찰실장 제치고 감사기획관으로 받아들인 것은 본인이 받아들인 것인지?	○ 감찰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분인데, 본인이 사직을 안하고 있었고, 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한 임무를 제가 특정한 사람한테 임명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음.
○ 원장의 직속기관인데 전 정권 사람이 있으니까 제치고 최혁을 감사기획관으로 받아들인 것이 맞는지?	○ 그런 사실을 자꾸 왜곡하지 말기를 바람.
○ SI 인가증은 누가 주는 것인지?	○ SI 인가증은 그 임무를 담당하는 특수한 직원에 한해서 주는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한민국 공무원 월북’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있었는지? 새로운 증거도, 조사도 없이 월북이 아니라고 했는데, 전 정권이 조작했다고 몰아가는 것에 앞장선 것 아닌지?	○ 의원 지적에 동의하지 않음.
○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는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정원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저는 제가 그 SI 기록을 검토한 것이 아님.
○ 2022년 7월 오전 9시 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한테 보고하였는지?	○ 맞음.
○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는지?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했는지? 대통령의 반응이 무엇인지?	○ 그 당시 제가 보고한 내용은 감찰 결과에 대한 보고였음. 핵심적인 것은 이 감찰 결과의 문서, 전자기록 문서를 파기한 그러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 실제 수사를 의뢰하는 필요성에 관한 것이 중점이었음.
○ 박지원 전 원장 등 전부 고발 조치하라고 얘기하였는지?	○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고드렸고 보통 보고를 드리면 아시다시피 대통령과의 의견 교환이 있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것은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결국은 제가 기관장으로서 그 결정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고발해야 되겠다 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 고발로 최종적으로 판단했고 행정 조치로서 제가 고발하도록 지시를 한 것임. 이 관련 규정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 1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고, 특히 저희 국정원법 제2조에는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음. 그리고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 규정이 되어 있음. 그래서 저의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은 법에 따라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림.
○'대통령께 수사 의뢰를 보고했고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서 고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한 것인지?	○고발하게 된 게 아니라 결국은 국정원장으로서 행정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제가 한 것임.
○김규현 증인의 자필 기록이 있고,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고발 지시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제 자필이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고발을 판단했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임.	
○SI 보고서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는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음.
○서해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 준비를 하고 갔을 것인데, 당시 반팔티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음. 중국산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게 맞는지?	○당시 간자체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음.
○NLL 주변에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횡행하고 있었음. 표류하는 서해 공무원에게 중국 불법 어선이 구명조끼를 던져준 것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 동의하는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추정은 잘 모르겠음. 다만, NLL 주변에 중국 불법 어업선이 많았던 것은 맞음.
○월북을 준비했다면 구명조끼 입고 그다음에 잠수복 입고 그리고 월북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당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로부터도 ‘월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되어 있음. 국정원이 당시 3시 49분에 발견되고 9시 45분까지의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SI 첩보를 받고 아마 나중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않았을까 싶음.
○월북이라고 볼 수 없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월북몰이를 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삭제 지시를 하지 않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점, 그리고 6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점이 있는데, 이 중 방치한 이유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서를 보면 '공개 시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 대외 입지 위축'이라고 적혀 있음. 이는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인데, 국가가 북한 눈치 보느라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SI 보고 내용을 삭제 지시할 수 있는지?	것으로 알고 있고 현 국정원에서 보완조치라는 말로 문건을 회수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전자문서는 회수라는 말 자체가 일반 문건과 달라서 결국 회수한다는 건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
○ 삭제할 수 없는 자료를 삭제했고 지금 현 국정원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삭제가 아니라 회수로 둔갑시킨 것이 맞는지?	○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
○ 국정원에서 이것을 삭제 지시했다면 이것은 형법 141조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된 김규현 원장으로서는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 아닌지? 그래서 고발한 것이 아닌지?	○ 그러함. 형법 141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이 공무소에서 공문 또는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보완조치를 취한 것임.
○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삭제했다라고 하는 게 국정원장으로서 계실 때 고발장인데, 그 자료가 왜 남아 있는 것인지?	○ 그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지난번에, 당시 감찰을 담당했던 최 검사 말에 의하면 저희 폐쇄망에 남아 있고 일부 직원들이 일괄 삭제 지시에 대해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어서 일부 간직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박지원 원장이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고 고발조치 하라고 한 것인지? 은폐하기 위한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고 공모하고, 그것이 지금 고발장의 내용임.	○ 그것은 혐의에 관한 것으로, 그 판단은 수사기관의 기소를 통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내용임.
○ 원본이 서버에 남아 있어서 삭제가 안 된다는 실무 국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김규현 원장이 질책을 한 적이 있음. 2022년 11월 정보위 국정감사 당시에 윤건영 위원이 SI 첩보는 국정원 서버에 존안 보존되어 삭제가 안 된다는 질의에 당시 실무 국장이 맞다고 답변하니까 김규현 원장이 담당 국장을 질책했고 심야시간대에 대변인을 통해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추가 브리핑을 진행하였음. 왜 그런 것인지?	○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폐쇄망에 있는 것은 삭제가 안 되고 일반인 직원들이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에서 삭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임.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전문가의 보고 내용대로 그날 진술을 한 것임.
○ 대통령께 수사 의뢰를 이야기했고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들었다는 게 맞는지?	○ 감찰 결과를 보고드렸고, 그래서 그때 중요한 내용은 수사기관이 그런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중심적인 내용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어서 이제 서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드리는 과정에 그걸 듣고서 대통령께서 그것은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의견 교환은 의견 교환이고 기관장으로서 최종적인 판단은 국정원장이 그러한 방향이 타당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고발로 최종적인 결정을, 행정적인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고발하도록 밑의 직원에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였음.
○ 2022년 6월 17일 날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고 6월 20일 날 국정원이 이어서 감찰에 착수함. 공교롭게도 감사와 감찰 착수에 다 검사들이 관여되어 있음. 7월 6일 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정원이 고발을 하는데 7월 5일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 지시를 했음. 그리고 10월 13일 날 감사원이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9일 날 검찰이 1차로 서훈, 김홍희 두 분을 기소함. 그리고 12월 29일 날 2차로 박지원, 서욱, 노은채 이 세 분을	○ 검찰 인사와 맞물려서 한 것으로 기억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기소함. 그런데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내역을 살펴봤더니 감찰부서에 최혁 다음에 유도윤 검사가 파견되는데 최혁은 감찰심의관, 유도윤은 감찰부서 부서장으로 파견됨. 김규현 증인이 최혁과 유도윤의 파견을 요청한 것인지?	
○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 사실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 자세하게 기억은 안남.
○ 조상준 기조실장과 최혁 감찰심의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으로 임명이 되는데, 서해피격사건 담당하는 주된 역할을 맡고 왔다는 사실을 아는지?	○ 들은 바가 없음.
○ 조상준 기조실장이 당시 22년 10월 달 국정감사 직전에 사의 표명했는데 이시원 증인에게 통보받았는지?	○ 누구한테 통보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사직서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남.
○ 조상준 실장한테 직접 사의 통보받은 적은 없는지?	○ 조상준 실장이 직접 저에게 하지는 않았음.
○ 조상준 실장이 서해 피격 관련해서 면직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 조상준 기획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돼서 면직됐다는 것을 처음 들음. 면직 사유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서해 피격 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 북한과 어떤 라인이나 루트	○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국정원의 대북 통로 채널에 대해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를 통해서 서로 교신을 하는지?	는 말하기 어려움.
○ 이대준 씨가 실종되고 아까 해경에 신고 접수 그다음에 합참 또는 국정원이 확인한 시간대별로 정리해보면, 무려 40시간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었음. 북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짧게는 4~5시간, 길게는 6~7시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남북이 이 시각에 분명히 어떤 교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짐작하고 주장하는데 확인한 바가 있는지?	○ 당시에 국정원에 있지 않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제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 또한 이후 확인되거나 보고받은 예도 없음.
○ 세월호 보고 시각을, 조작 같다는 혐의 때문에 아마 수사선상에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에 김규현 증인이 미국으로 도망갔고 그다음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지 않았는지?	○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정원에 특활비 제공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 저는 국정원에서 청와대에다가, 용산에다가 특활비 지원한 적이 없음.
○ 국정원 측에서는 안보실 김태효 차장이 1년 동안 1억 5,200만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했는데 무엇인지?	○ 김태효 전 차장 말씀대로 국정원이 해외 영향력 사업으로 디자인해서 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보안 컨설팅이라는 의미로 보안감사를 시키고 2023년 10월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끼치도록 했고 이 보안감사 결과를 가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세 차례 이상 만났는지?	○ 그 사안은 오늘 여기서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음.
○ 2023년 가을 대규모 간첩 사건 조작이 실패하니 협조하지 않은 공작부서 직원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 직원이 버티니까 지방으로 좌천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다시 바람.	○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렸음.
○ 국정원에 있을 때 블랙리스트 작성 작업하지 않았는지?	○ 한 적 없음.
○ 2020년 9월 23일 원장 지시사항에 보면, 전량 회수 원본 보존 지시를 내림. 이것을 본 적이 있는지?	○ 못 봤음.
○ 전자정보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말했는데 맞는지?	○ 전자를 어떻게 회수하는지는 모름. 회수라는 게 제가 말을 회수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문서가 파기되는 것임. 지금 파기된 걸로 그 당시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감찰해서 파기된 것을 확인했고 그것은 지금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음.
○ SI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가 종	○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종 있는지?	음.
○ 최혁 증인이 국정원 감찰심의관으로 와서 첫 임무로 서해피격사건 처리를 담당했는데, 증인의 지시로 이런 업무를 한 것인지?	○ 감찰 지시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국정원에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보고 하였는지? 해당 사건 관련 아태위를 대북제재기관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이시원 증인임. 기획재정부에서는 대북제재기관이 아니라고 했음.	○ 감찰실 실무관들이 당시 용산 관계관들과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다) 윤성현 참고인(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0년 9월 중간 수사 결과를 왜 참고인이 발표했는지? 해경서장 또는 인천서장이 해야하는데 왜 증인인 한 것인지?	○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의 중대성 또는 본청 차원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의를 거쳐서 본청에서 한 것임.
○ 당시 인천해경서장이 못 하겠다고 한 것임. 김홍희 청장이 증인에게 어떻게 회유하였는지?	○ 회유한 적 없음.
○ 해경 인천서장이 해야 될 것을 참고인이 하고, 그것 때문에 치	○ 보직 자체가 진급을 할 수 있는 자리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안감으로 승진하고 그 다음 결국 해경청장까지 간 것이 아닌지?	
○ 9월 22일, 9월 30일은 청와대·국방부·안보실·합참·국정원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굉장히 군사작전처럼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해경이 만들어줌. 첫 조사 결과를 신동삼 인천서장이 발표한 것을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 신동삼 인천서장은 퇴직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 정황과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여론의 대세였다는게 맞는지?	○ 아님. 여러 가지 의견은 있었음.
○ 여론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구명조끼가 배에 그냥 있었다, 신발이 어쨌다, 그래서 바다를 헤엄쳐서 33㎞를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음. 윤성현 증인이 3차 발표 때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고, 채무·도박·이혼한 것 때문에 월북했다고 했는데, 채무·도박·이혼한 사람은 월북하는지?	○ 그것이 동기일 수 있겠다고 기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채무·도박·이혼이 월북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 중요한 동기였다고 검찰에서도 진술을 했음. 그리고 슬리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대준 씨가 3년간 근무했던 무궁화 13호에서 본 것 같다고 30명 중에 7명이 진술을 했음. 그러나 슬리퍼는 결국 10호 선미의 홋줄더미에서 발견되었는데, 결국 슬리퍼가 13호에서 10호로 넘어왔다는 이야기가 됨.
○ 9월 달에 밤바다를 30㎞ 이상 떨어진 곳에 뛰어내려 가지고 내가 채무가 있고 가정사가 좀 괴롭다고 해서 북한으로 월북을 해야 될 동기를 그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 있는지? 윤 청장님이 분명히 어떤 압박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함.	○ 제가 당시 수사국장으로서 발표를 두 번 했었는데 청와대나 안보실과 저와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전화 한 통화 한적이 없음. 해경이 월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는 국방부가 제공한 SI에 근거한 것임. 그리고 해경이 맡았던 것은 인천 해경이 일부를 했고 본청에서 또 일부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근거와 동기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던 것임.
○ 9월의 밤바다를 33㎞ 헤엄쳐 가서 월북을 할 각오를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것인지?	○ 그것은 누구도 단정할 수 없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들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서 설명을 보충적으로 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0년 9월 달 서해 피격사건 당시에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수사 총괄을 했는지?	○ 맞음.
○ 2020년 9월 29일 날 중간수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당시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근거는 충분히 있었다고 자신하는지?	○ 그러함.
○ 2022년 6월 16일 날 번복 입장 발표를 해경에서 했는데, 당시 인천해경서장 박상춘이 함.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으로부터 '본청에서 인천해경서에 발표를 하라고 한다, 새로운 증거는 없다, 청장 지시를 거역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들었는지?	○ 통화를 했었음.
○ 이 건으로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를 지독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의 억울한 사정 내지 압박수사에 대해 소상히 말씀 부탁드림.	○ 그 당시에 유가족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있었음. 그래서 정보청구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해서 가서 보고를 했음.
○ 중국의 구명조끼, 상처 치료,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검찰이 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지?	○ 당시 2020년 9월과 10월에 밝힌 2차·3차 발표의 내용이 대부분 나와 있고, 정부가 바뀌어서 2022년 10월 14일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발표 12쪽 하단에 그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던, 감사원이 국민들에게 밝혔던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어선에 이 실종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가 구조돼서 붕대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불과 10㎞ 떨어진 곳임. 당직 중에 사라졌는데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본선에, 아선에 일어났는지를 다 알텐데, 실종이 되었다면 바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가족보다도 먼저 본선에 위치를 알리고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을 텐데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탈것과 조끼를 다시 입고 붕대 치료까지 받은 후에 북으로 향한 것은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를 저는 지금도 의문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계속 감사원에 답을 요청했었음.
○ 무궁화10호에 연락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인지?	○ 그것은 기본적으로 VHF 무선 단말기를 통해서 바로 가능함.
○ 월북 판단 당시 해경수사 결과 그다음에 국방부 SI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한 것인지?	○ 두 번째 월북 판단을 하였고, 다 종합해서 판단함.
○ 미국과의 수사공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종결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는지?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성능검사단장으로 공기부양정 부실한 것으로 2018년에 징계를 받았음. 당시 신동삼 인천해경서장은 자진 월북으로 못 한다고 했음. 중부 해양경찰청도 못 한다고 했음.	○ 퇴직한 제 명예를 훼손하시는 말씀임.
○ 2020년 9월 20일 오후 3시 31분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SI 정보로 알았음. 그때 우리 측에서 안 것은 구조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눈 밑에 검은 띠가 있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 사람들 100여 명이 인지를 하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지 않음. 사실 중국제 구명조끼를 입었다 그리고 붕대를 했다는 것 SI 정보로 다 알고 있었음. 그러면 만약에 붕대를, 중국 측 어선으로부터 그렇게까지 대접을, 치료를 받았다면 당연히 모선에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연락을 못했음. 결국 중국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것은 중국 어선이 북한 경비정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위급상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린 것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진 월북으로 볼 수 없	○ 방수복은 생존복임. 3시간 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입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용이 아님. 구조해 올 때까지 거기서, 상당한 부력재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주로 유사한 자리에서 구조세력이 올 때까지 떠 있는 자리임. 따라서 이것은 전혀 근거가 될 수 없음. 다음으로, 중국제 조끼라고 하셨는데 한자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SI 정보를 통해 알긴 알았는데, 이 한자가 사람이 쓴 필기체인지, 인쇄체인지, 중국에서 쓰는 간자체인지 우리가 쓰는 정자체인지, 본인이 유사시에 말리고 할 때 여러 조끼들이 같은 위치에서 여러 개가 혼재될 수 있으니까 표시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 이름이 김이면 김 씨라고 표시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는 등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동료 선원들한테, 어업지도선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방수복을 입어야 3시간 이상을 수영할 수 있다. 만약에 방수복이 없으면 저체온증 때문에 죽는다'라고 매번 얘기를 했음. 어업지도선에는 구명조끼가 없고 간체자가 있는 중국제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없기 때문에 자진 월북으로 볼 수가 없음.	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발표나 3차 발표 때 명확하지 않은 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20년 9월 21일 01시 35분에 당직 자리를 이탈하면서 부당직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멘트가 이것임. 다음 당직 인수인계할 때는 정당직관이 서명을 함. 4시에 바뀌는데 보통 20분 전에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새벽 3시 40~45분 사이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데 1시 35분이면 약 2시간 전이고, 2시간 전에 이탈을 하면서 부당직관한테 소위 '가라 사인'을 해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나감. 이것은 첫째, 2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종이라는 일부 주장하는 사람과 전혀 배치되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인수인계 때 내가 없더라도 날 찾지 말라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직관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짓 사인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다음날 12시 쯤 식사 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도 안 보이고 해서 그 때서야 찾게 된 것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2시간에서 길게는 약 10시간 이상을 확보한 사람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이 사람이 월북이다 아니다는 100%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국민들게 말씀을 드린 것임. 그리고 당시에 20년 9월 21일날 실종자가 없어지고 난 다음 무궁화호를 같이 탄 여러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실족 가능성은 거의 없고 차라리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함. 왜 그런지 물어보니, 여기서는 실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동료들로부터도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어졌다며 자살 가능성 정도를 생각을 했었다고 답했음.
○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가 수사도 없이 월북을 번복시킨다라고 하는 공작을 통해서 마치 문재인 정권이 월북으로 몰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 2차·3차 발표를 하고 2년 후에 윤석열 정부하에서 6월 16일 4차이자 수사 중지·종결, 사실상 종결 발표를 하는데 저는 동문서답 발표라고 생각함. 2차와 3차는 여러 가지 SI 정보하고 남측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종자의 주변 환경을 종합해서 월북으로 판단한다라는, 즉 행적과 행위, 동기 등을 발표한 것이었는데 이 수사종결 발표와 중지 발표는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법적인 어떤 수사를 계속할 법리적 또는 법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수사를 종결했는데, 6일 후인 6월 22일 날, 2022년 6월 22일 날 당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청장 입장문을 발표했다가 금방 내렸지만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갖고 있음. 그 두 장짜리에 보면 당시 2차·3차 발표가 정당한 근거와 정당한 목적을 갖고 했다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음. 강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이 사람을 더 이상 법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법적인 증거를, SI라든가 이런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수사를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지한다라는 애매모호한 내용이 적혀 있음. 2022년 6월 16일 날 수사 발표, 우리가 번복 발표라고 하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음. 2차·3차 발표는 행적에 대한 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표였고 4차 발표는 사실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걸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맥락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지난 정부하에서는 해석을 수사 번복을 했다고 해서 수사와 감사가 시작된 건데 저는 한말씀만 제안 드리고 싶음. 이것이 과연 본청이나 위에서 시켜서 인천서로 내려간 건지 박상춘 제주서장이 여러 차례 국회에 와서 자신 있게 증거한 것처럼 자신들이 그 문안을 구체적으로 써서 22년 6월 16일 발표를 했는지는 최종이 발표 문안의 초안, 수정안 그다음에 최종안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그 파일이 어떻게 유통되어서 박상춘 서장한테까지 갔는지 포렌식과 추적을 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이것을 누가 작성했고 어떤 경위로 인천서에서 발표를 했고 당시에 박상춘 서장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는 해경 내에서는 다 아는 사실임.
○ 참고인께서 이탈할, 자진 월북할 정황이 있다면서 교대할 때	○ 아까 당직을 인수인계하면서 소위 당직 서명을 네가 하라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가라 사인해라, 날 찾지 마라’ 이것은 한마디로 이탈 예고한 결정적인 진술임. 무궁화호 10호 7명의 누구 진술인지? 2020년 9월 참고인께서 탈북,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게 첫째, 빚이 많다고 했음. 그리고 구명조끼도 말했음. 중국산인 것은 이야기 하지 않음.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을 보면 터무니 없다고 함. 이래진 씨, 가족들도 절대로 탈북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했음.	했던 것은 유일하게 그 당직실에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부당직관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수사기록에 편철이 돼 있을 것임. 두 번째로 동료들이 전체가 다 월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저도 연평도 근처에 가서 직접 민간 선박을 타고 같은 위치까지 우리 직원을 데리고 제가 수사국장 시절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위치상의 특수성이 있음. 그리고 거기는 진짜 월북이라든가 또는 북이라는 단어는 바로 거기서 서로 통신이 들릴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민감한 단어임. 그래서 자기가 보고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를, 월북했을거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임. 실족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했다면 저희들은 자살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왜 자살이냐라고 조사관이 물어보니까 평상시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호소했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런 의미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것임. 그다음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맨 마지막으로 조끼에서 한자 부분이라든가 이게 해수부 조끼냐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설명자료에도 명확히 적시가 돼 있지만 이것이 해상에서 습득했거나 중국배라든가 다른 곳에서 얻었을 확률도, 얻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즉 다시 말해서 실제로 해양수산부 무궁화 10호에서는 이 배의 조끼 정수 관리가 정확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게 없어졌고 어느 게 추가로 남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끼를 입고 갔을 가능성을 얘기했던 것은 첫째는 SI 첩보에 북에서 조끼를 입은 채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탈했을 당시에, 2020년 10월에 두 번 있었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무궁화 10호 선장이 명확히 얘기했음. 우리들은 주야간 당직 근무를 설 때는 전혀 조끼를 착용하지 않는다. 조끼를 착용한 적도 없고 이 시간 현재도 조끼를 착용하지 않는다. 즉 조끼를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심이 약 40~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50m쯤 되고 유속이 제법 있는 곳에서 중국 어선까지 NLL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북까지 가는데 조끼를 중간에서 습득했을 가능성, 그 희박한 가능성을 수사에 담아서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는 없었음.

(라) 서주석 증인(前 국가안보실 제1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0년 9월 해경이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을 때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는지?	○ 맞음.
○ 2022년 6월에 증인께서 방송에 나와서 'SI 정보를 보면 자진 월북한 걸로 판단한다'라고 방송에서 말씀하였는지?	○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음.
○ 지금도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는지?	○ 저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그 이유는 저희가 무슨 조사나 수사를 하는 주체가 아니고 안보실이, 결국은 국방부 정보본부나 아니면 해경의 수사 결과들을 보고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상황을 말씀드림.
○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겠다	○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실 기억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고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북한군들이 얘기한 건 아마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이대준 씨가 그런 의사표명을 했을 수도 있음. 이것이 거짓 진술일 가능성도 있음. 어업지도선의 슬리퍼는 누구 것인지?	이 잘 안남.
○ 국가수사연구원에서 그 슬리퍼에서 여러 개의 DNA를 발견했음. 운동화는 누구 것인지?	○ 그런 판단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님.
○ SI 전문을 보면 자진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가 한 번 나오고, 구명조끼가 중국산 간자체로 적혀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는지?	○ 맞음.
○ 해류 방향이 어떠하였는지? 북쪽인지?	○ 해류 방향이 자력으로 헤엄치지 않으면 북쪽으로 가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은 기억이 있음.
○ 그 배가 정박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상황이었는지?	○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정박이었던 것 같음.
○ 그 배에 사다리가 바다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있는지?	○ 구체적인 사실들은 잘 기억나지 않음.
○ 중국의 구명조끼, 상처 치료,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검찰이 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지?	○ 그 내용은 잘 모름. 당시에는 그 사항들을 잘 모르고 있었음.
○ 2022년 5월 24일, 26일 NSC 회의가 열렸을 때 1차 실무회의는 김태효 차장이 주관하고, 2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차 회의는 김성한 실정이 하는데, 서주석 증인은 국가안보실에 있었는지?	
○ 해경 수사국장이 NSC 회의에 들어온 일이 있는지?	○ 제 기억으로는 없음.
○ 2020년 9월 24일 해경에서 발표한 '연평도 민간인 월북 관련 상황개요' 해 가지고 '전 출처 정보 분석 결과 현재까지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 그 당시에 국방부나 해경의 전문적인 평가와 발표에 대해서 다 신뢰를 하고 있음.

(마) 김성종 증인(前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시절인 2022년 3월 30일 서해 피격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 방문해서 옆에 있는 김대한 당시 형사계장을 만났는지?	○ 그 때 다른 안건으로 갔었음.
○ 증인이 당시 김대한 증인한테 서해 피격 수사 중단과 월북 판단 뒤집으라고 지시했는지?	○ 지시한 적 없음.
○ 1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 김성종 증인이 김대한에게 '이 사건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 정확한 기록은 기억은 없지만 그때 중부청에서 수사를 더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할 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대한 증인이 '구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변하자 당시 김성종 증인은 재차 '수사심의관들이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히 더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봐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압박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닌지? 또한 4월 7일 저런 김성종 증인의 지시를 받고 중부지방해경청을 방문해 월북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기록에 편철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는지?	남았는지 물었던 기억은 남.
○ 2022년 3월 30일하고 4월경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시절, 누구로부터 이 사건에 관해서 지시받고 김대한 증인한테 지시한 것인지?	○ 지시받은 적 없고 2021년 12월에 오니 이미 수사가 종결되어 있었음.
○ 당시 인수위에 파견된 안성식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소통한 적 있는지?	○ 안성식 증인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한 번도 소통한 적 없음.
○ 정봉훈 당시 청장이 이 서해 피격 사건 월북이 아니다라는 판단 관련해서 상의한 적 있는지?	○ 정봉훈 청장님한테도 특별히 그렇게 발표하라고 지시받은 적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렇다면 본인이 다 책임지고 뒤집었는지?	○해양경찰청법에 보면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국장이 하게 되어 있고, 본인이 책임지고 다 했음.
○ 2022년 5월 24일과 5월 26일 NSC회의에 참석했는지? 당시 월북 판단을 뒤집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24일하고 26일 참석했는데 저는 수행원 자격이었고, 첫 번째 실무급 회의에는 뒷자리에 배석해 앉아 있었고 26일에는 아예 못 들어갔음. 월북 판단을 뒤집으라는 지시는 전혀 없었음.
○NSC 다녀오고 정봉훈 청장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청장할 것 같다, 자기 잘릴 줄알았는데’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함. 당시 배석한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음.
○정봉훈 청장이 NSC회의에 몇 번 다녀오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청장 할 거다’라고, ‘기분이 좋다’, ‘계속 갈 것 같다, 비서실도 좋아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지?	○전혀 그때 듣지 못했음.
○6월 10일 실무회의 자료를 보면 ‘해경은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소송 관련 해경의 항소를 취하하고 수사 종결 및 실종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확신할 증거가 없음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음. 이것을 본	○그때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저런 보고서도 있고 그랬다면 제가 했을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인이 하였는지?	
○ 왜 아무런 새로운 사실관계나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없는데 왜 수사 종결과 실종 공무원 자진 월북을 뒤집었는지?	○ 저희 해경에서는, 애초에 해경 수사팀에서는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한 적이 없음. 수사 기록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음.
○ 월북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지 않은지, 판단했다고 발표했지 않은지?	○ 그 판단은 인천해경 수사 실무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기록에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음. 제가 21년 12월에 수사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기록 어디에도 우리 수사관들은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음.
○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과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월북 의사 표현한 정황도 몰랐는지?	○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그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하려면 기록에 편철해야 되는데, 전혀 기록에 편철조차 안 되어 있었음.
○ 월북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그냥 종결만 얘기했다는 것인지?	○ 그 말을 했는지는 기억에 없는데, 했다면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을 것임.
○ 월북 판단된 관련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다는 말인지?	○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말을 했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결론이 나 있었고, 결론은 수사 실무자들이 내린 것임. 인천 수사팀에서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린 것임.
○ 수사 종결을 주도했는데, 판단을 번복할 때 SI 정보는 확인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 그러함. 수사 편철이 안 되어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없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정부 인수위 당시 인수위에 파견된 안성식 증인하고 서해 피격 관련 건으로 소통했는지? 대통령실 당시에는 소통했는지? ○ 김태효 1차장이 보도 자료 내용을 직접 수정했다라고 김성구 사단장이 증언한 거 기억하는지? 이 내용에 동의하는지?	○ 인수위 시절 소통 기억은 없음. 대통령실에도 안성식 과장이 행정관으로 있을 때는 그 안건으로는 소통한 적이 없는 것 같음. ○ TV로 보았고, 저희 안건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음.

(바) 김대한 증인(前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 김성종 증인이 김대한에게 ‘이 사건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대한 증인이 ‘구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변하자 당시 김성종 증인은 재차 ‘수사심의관들이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히 더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봐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압박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닌지? 또한 4월 7일 저런 김성종 증인의 지시를 받고 중부지방해	○ 정확한 기록은 기억은 없지만 그때 중부청에서 수사를 더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할 게 남았는지 물었던 기억은 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경청을 방문해 월북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기록에 편철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는지?	
○ 김성종 증인이 그때 이 수사를 왜 계속 하느냐고 다그친 적 있는지?	○ 다그친 것은 아니지만, 이 수사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물은 적이 있음.
○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중간 보고 발표 당시 같이 참여했는지?	○ 참여하지 않았음.
○ 수사를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닌지?	○ 처음부터 했지만 부르지도 않았음.
○ SI 관련된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 이것도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지극히 단편적인 조각이었고 차후에 수사를 하면서 얼핏 들은 기억은 남.
○ SI 정보 없이 판단이 번복되었는데, 증인은 미국과의 공조수사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이 많은데 맞는지?	○ 맞음.
○ 2022년 5월 27일 미국으로부터 이메일이 왔고,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 주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음.	○ 메일이 왔음.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은 5월 27일 이전인 것 같음.
○ 2020년 당시 3차 발표 이후에 2022년 입장 발표 당시까지 추가된 자료로 고인의 실종이 실종이 아니라는 취지의 수사보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고서가 있는데 맞는지? ○ 20년 3차 발표, 즉 월북 판단이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게 실족이 아니라는 수사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맞는지?	○ 보고서는 있었음.
○ 미국과의 공조수사 중이어서 입장 발표를 늦추자고 증인이 건의를 했는지?	○ 하였음.

(사) 최혁 증인(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TF 책임자인지?	○ 본인이 총괄하였음.
○ TF에서 보고자료를 만들었으니까 국정원장님께서 대통령께 보고했을 것이고,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해서 고발한 것이 맞는지?	○ 보고서는 본인이 작성하였음.
○ 최혁 검사께서는 내부 직원들이 삭제하라고만 했지 보완조치 남겨 놓으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맞는지?	○ 보완조치라고 남겨두라고 한 지시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음. 보안 조치를 위해서 회수하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음. 일부 직원이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음.
○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 매일 그거를 검증을 하기는 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국정원장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보고하는지?	는데 저희 TF 간사를 통해서 진술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걸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수십 명 이상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문답서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음.
○ 7월 7일 날 진술서 보니까 '원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받은 바 없고 당시 첩보가 민감한 내용이라 담당자들만 볼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최혁 검사께서 그리고 국정원이 고발하고 난 이후에 나온 진술서임. 7월 6일 고발한 당일 날 진술서를 보면, '간혹 민감한 첩보들의 경우 과거 시스템에서 배포되었다가 회수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되어 있음. 그 전 진술을 보면, '00처 이외 다른 처에서 볼 수 없도록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진술서에 뻔하게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보안 조치였다라고 하는 진술이 그대로 남아 있음.	○ 저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음.
○ 최혁 검사님이 한 2주 만에 TF 돌려 가지고 국정원장한테 보고자료 만들고 국정원장은 그거 다 믿고 대통령한테 보고	○ 지금 저 내용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고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를 했는데 누군가 진술서를 뭉개고 보고를 하는지? 답정너 고발이 아니었는지?	
○ 6월 30일 진술 조서를 보면, '당시 첩보는 회수되었다', '간혹 민감한 첩보의 경우 과거 시스템 배포 후 회수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되어 있음. 무엇을 보고 TF에서 결론을 내서 은폐 목적의 삭제 지시였다라고 판단하고 국정원장께 보고해서 국정원장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만들었는지?	○ 본인이 확인한 내용은 아님. 저거에 반대되는 수많은 증거와 진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또 증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저런 일부 진술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함.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공소유지 담당하고 재판을 담당하였는지?	○ 아님, 그 당시 국정원 파견 기간 중이었고, 수사나 공판에 관여한 적은 없음.
○ 국정원에서 SI 첩보를 회수해라, 삭제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게 확인되었는지?	○ 삭제 지시가 확인이 됐고 실제로 삭제가 된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이첩하게 된 것임.
○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정보 자체가 국정원 망에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자기록 손상이라고 하는 게 원본 파일을 없애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접근을 현저하게 곤란할 경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무죄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1심 판결도 삭제 지시한 사실과 실제 삭제가 된 사실 자체는 그 고발장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했고 다만 이게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효용을 해할 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우에는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1심에서 무죄 난 이후에 지금 항소포기를 했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로서 법적으로 판단하면 어떠한지?	의를 부정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거지 저희 고발장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전부 1심 판결에서 인정이 된 것임.
○ 지금 1심 판결문조차도 이게 비공개로 진행돼 가지고 판결문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고, 판결에는 분명히 삭제 지시한 것 자체는 인정이 됐다는 말인지?	○ 맞음.
○ 삭제 지시 등에 대해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 다퉈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고 안타까운지?	○ 그것까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님.
○ 사실관계의 부분하고 법리의 부분이 있는데 사실에 있어서 삭제 지시가 있었고 실제 삭제했고 그리고 기소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인지?	○ 저희는 고발하는 입장이었고, 검찰에서는 아마 그런 입장으로 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파견 즉시 서해 피격 사건 다룬 것은 누구 지시로 다루게 된 것인지?	○ 국정원장님 지시임.
○ 서해 피격 사건 수사 개시 경과, 결과 등에 대해서 수시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하고 소	○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통했는지? ○ 대장동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받았어야 했는데 항소를 포기함. 그리고 남욱 증인은 나와서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이화영 증인은 1·2·3심에서 유죄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와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함. 지금 이 국정조사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아) 노은채 증인(前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7월 5일에 작성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문건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 문건을 살펴보면, '박지원 첩보배포 중단, 첩보활용보고서 삭제 지시, 지시에 따라 첩보 관련 보고 일체 삭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 문헌에 의하더라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첩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보배포를 중단한다, 첩보를 활용한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첩보 자체 삭제가 아님. 국회의 경우에도 인터넷망에서 텔레그램 단체 카톡방에 어떤 정보를 회수하고 싶으면 이를 삭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지?	
○ 정보 회수하기 위한 삭제를 본래 음해 삭제라고 주장하는데, 국히 내부망에 있는 정보는 그대로 폐쇄망에 남아 있는 것임. 그러면 삭제된 것은 아닌 것이 아닌지?	○ 맞음.
○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원초적으로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것처럼 보고하고 문건을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그러함.
○ 이 사건의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문재인 정권의 국가 안보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권 차원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렇게 봄. 국정원에서 고발하고 또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됐을 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SI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검찰에서는 25개의 항목으로 해서 쪼개기 기소를 했고, 지귀연 재판부에서 작년 12월 26일 1심에서 모두 무협의 처분을 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감사원의 포렌식은 얼마나 받았는지?	○ 그 당시에 퇴직을 한 이후였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찰은, 감사원에서는 국정원에 대해서 한 두 달에 걸쳐서 현지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노은채 증인 관련 압수수색 영장, 22년 9월 1일 노은채 증인이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8월 12일 한 달 전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은채 증인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거짓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인지?	○ 그러함.
○ 박지원 원장이 삭제 지시한 적 있는지?	○ 없음.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도 삭제하라고 전달한 사실도 없음.
○ 삭제되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음. 그래서 이번에 무죄 판결된 것인지?	○ 그러함.

(자) 정상우 참고인(감사원 사무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형록 검사가 22년 9월에서 2023년 9월까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는데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점검에 대해서 감사결	○ 처음 듣는 내용임. 그러나 통상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파견 나온 검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과에서 법률자문한 내역이 확인됨. 그리고 22년 10월 7일 날 접수돼서 김형록 검사가 22년 10월 11일 날 결재를 하는데 감사원이 이틀 뒤인 10월 13일 날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그 중간결과의 내용이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내용임. 그러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중간결과 발표에 김형록 검사가 법률자문 결재를 했다는 것인데, 이를 내부에서 확인하였는지?	음. 요즘은 파견받고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파견 나온 검사가 범죄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서 그다음에 수사 요청을 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0월 11일 날 결재를 김형록 검사가 했고 이틀 뒤에 중간결과 발표해서 20명 검찰에서 수사하기로 했으면 이것은 김형록 검사의 관여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맞음. 그 판단이 있음.
○ 2022년 10월 13일 감사원에서 낸 보도자료 12페이지 맨 하단에 따르면, ‘이대준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있던 정황,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 등이, 최초 월북 의사 관련한 정황 등이 들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시길 바람.	○ 그 자료에는 비문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내린 상태임. 비문을 익명 처리한 후 제출하겠음.
○ 포렌식은 영장이 있어야 하는지?	○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라서 하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유병호 사단 등 윤석열 정권하의 감사원이 포렌식을 거의 압박과 협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을 부탁드림.	○ 알겠음.

(차) 이시원 증인(前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정부 초기에, 2022년 6월 초에 조상준 당시 변호사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 사실에 관해 조상준 씨에게 통보하였는지?	○ 통보한 바 없음.
○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과 관련해서 둘이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는지?	○ 검증은 받았을텐데, 본인이 했는지 인수위 팀에서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음.
○ 최혁 검사가 국정원 감찰심의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조상준 기조실장이 한 역할을 아는지?	○ 정확한 과정은 알지 못함.
○ 조상준 실장과 최혁 감찰심의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으로 임명이 되는데, 서해피격 사건 담당하는 주된 역할을 맡고 왔다는 사실을 아는지?	○ 알지 못함.
○ 조상준 기조실장이 당시 2022년 10월 달 국정감사 직전에	○ 확인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의 표명하는데, 이시원 증인한테 사의 통보를 했는지?	
○ 이시원 증인이 거꾸로 김규현 국정원장한테 ‘조상준 기조실장 사의 통보 했습니다’라고 전달했는지?	○ 그때 원장께 전달하였는지는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음. 조상준 당시 기조실장의 의원면직 의사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말씀드렸다면, 제가 말씀드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음.
○ 조상준 기조실장 사의 의사표명을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 보고드렸고, 면직 처리를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 같음.
○ 윤석열 정권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고, 그 이전에 검사 생활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 아닌지?	○ 주임검사였고, 공판 과정 검사였음.
○ 검찰이 유우성씨에 대해 간첩혐의 무죄판결 나자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보복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건이고 해당 사건의 당사자 아닌지?	○ 두 번째 기소에는 관여한 바 없음.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안이 있는지?	○ 이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증언하기 어려움.
○ 공직비서관 때 통전부·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재부 유권해석에 반발해서 국정원에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증언·감정법 3조 1항에 따라서 증언드리기 어려움을 말씀드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정원으로부터 통전부·아태위 등 노동당 산하 조직은 제재 대상이라는 취지의 초도의견을 전달받자 부처별 해석이 달라 허점이 있다면서 국정원장 주관의 관계기관 회의개최 및 대북제재 해석 기준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 어려움.
○ 조태용 전 원장은 해외출장 중에 이 비서관의 언급 내용을 보고받고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했는지?	○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기 어려움.
○ 국정원 협의가 여의치 않자 증인은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대북제재에 대한 광의의 해석 기준 마련을 추진함. 그 당시 증인은 '그렇다면 해석 기준은 안보실에 맡기자. 안보실 관계 비서관도 노동당 산하인 것을 아는 이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라'라고 언급을 했음. 그리고 기재부 유권해석 내용과 관련해서 공직비서관실 파견관은 서면으로 국정원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고 황원진 제2차장은 노동당 대북제재 지정 경과 노동당·통전부 관계를 검토하도록 지시해서 결국 황 전 차장이 검토한 보고서가 이시	○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기 어려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원 공직비서관실 파견관에게 전송됨. 그런데 이게 전송된 이후에 조태용 원장이 그걸 회수하고 수정본을 또 보냄. 이게 전반적인 경과 사실인데 왜 이런 걸, 공직비서관이 자기의 업무가 아닌데 왜 이걸 검토하는지?	

(카) 정봉훈 증인(前 해양경찰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5월 24일과 같은 달 26일에 누구의 지시로 NSC 참석했는지?	○ 본청 수사국장의 통보를 받고 참석하였음.
○ 당시에 무슨 내용의 논의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부탁 드림.	○ 그 당시에 계급정년이 3년 정도 남은 상태였는데 2022년 6월 16일 날 번복 이후에 감사원에서 불러 가지고 한 번 갔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즉 청와대의 하명 수사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2~3일 후에,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위를 박탈당하고 그때부터 2022년 7월 7일부터 퇴직할 때까지 만 36개월간 대기발령 그다음에 직위해제, 중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징계 이것을 계속 거듭했고. 그다음에 경찰청 수사,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여섯 번 하면서 허리가 터지고 체중이 10kg, 구점몇 kg 빠졌으며, 서울중앙지검·감사원 12시간씩 6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과에서 10시간 이상씩 5회를 받고 그 이후에는 직위해제하고 징계 상태에서 별실에 유폐돼 있다가 36개월 마치니까 퇴직 시점이 되었음. 그래서 약 9개월 전에 퇴직하고 지금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음.
○ 해경청이 수사심의위원회를 2022년 5월 30일에 요청했는데 6월 2일 날 소집이 됨. 그런데 이례적으로 중부청장이 신청을 했고, 보통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면 3개월이 소요되는데 이틀 만에 결과가 나옴. 이렇게 급했는지?	○ 수사 진행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건 없음.

(타) 유병호 증인(감사원 감사위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당시에 감사해서 수사 의뢰한 것 때문에 이재명 정권 들어	○ 맞음. 당초 2020년 9월부터 정부 측에서 발표할 때에는 훨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TF를 만들어서 당시의 감사가 잘못된 거다는 식의 뒤집는 감사를 하였는데, 결론은 당시 감사원에서 결론을 잘못 내린 것이 아니라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군사기밀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발표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기는 어려움. 그러나 감사원은 평어 2개 정도 쓴 것 가지고 문제 삼아지고 있는 것임. TF 자체도 불법임.
○ 감사할 때 그 감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누가 했는지?	○ 그것은 하기가 불가능함. 감사원 시스템이라는 게 사무처에서도 수십 명이 수십 번 증거를 검증함.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법리검토 등 종합적 검토를 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손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님.
○ 당시에 북한군의 감청 정보에 따라서 월북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은 확인이 된 것인지?	○ 증거 구성으로 볼 때 적어도 감사원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그대로 저희가 존중해 하고, 월북이라 단정할 수 없는 증거가 압도적이었음. 일단 예를 들면 북한까지 한 30㎞ 되는 줄 아는데 조류도 있고 파도도 있고, 9월 말이면 한 20도 정도 될 것임. 구명조끼가 없으면 거기 저체온증 견디는 게 한 반 정도가 안 됨. 그러면 바다를 잘 아는 분이 자진 월북이면 무궁화호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는 게 정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임. 중국 어선으로 보이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것은 살고자 하고 구조됐다는 뜻임. 상처 치료도 받았고, 붕대도 감고 있었음.
○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것 이것은 공소시효 없는 국가폭력을 문재인 정부가 행한 거고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이고 또 이대준 씨를 두 번 죽인 것으로 생각함.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파사현정의 자세로 국정원이나 감사원이나 국기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당연한 것임. 맞는지?	○ 그것은 감사원 직무감찰 사항의 당연한 임무임. 종합적인 증거, 맥락, 관계 법리에 따라서 그리고 감사원의 정확한,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었음. 감사 결과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상규명 점검이었는데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임. 전문직업인들이 열과 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가 바뀌더라도 존중해주길 바람.
○ 증인은 자진 월북이라고 생각하는지?	○ 그 당시 제가 총장이었는데, 압축된 보고서를 받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임.
○ 이탈할, 자진 월북할 정황이 있다면서 교대할 때 ‘가라 사인해라, 날 찾지 마라’ 이것은 한마디로 이탈 예고에 대해서 미리 들어본 적이 있는지?	○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종 감사결과보고서 그다음에 공소장 그다음에 법원의 일심 판결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판결문과 관계 증거를 균형 있게 봐 주시면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함. 어떤 단편적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간접 진술이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각조각들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음. 이 건 감사는 2년간 국민적 의혹이 폭발했고 유족의 호소도 있었고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무겁게 의혹을 다루었음. 감사원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한 1번 임무였고, 진상규명 감사였고 그에 충실했을 뿐임.

(파) 김태효 증인(前 국가안보실 제1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증인에게 국정원 예산이 제공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림.	○ 제공된 적이 없고 제 기억으로는 국정원에서 기획한 해외 영향력 사업이나 세미나 이런 거를 영수증을 다 증빙해서 국정원이 기획을 하면 그 세부 이행사항을 같이 협조를 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함.
○ 김규현 증인으로부터 1년 동안 1억 5200만 원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지?	○ 국가안보실에서 받은 적 없고, 국정원이 직접 다 집행한 일임.
○ 6월 10일 날 청와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안보실 협의를 한 것이 맞는지?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최초 발	○ 그러함. 최초 발표는 북한의 만행, 북한이 협조하지 않아 월북임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 최초 발표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표한 내용과 북한 주장에 차이가 있어서 관련 정보를 다시 종합 분석한 결과 최초 발표한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재확인한 것이 맞는지? ○ 2022년 5월 27일 미국 정부가 형사사법 공조를 이메일로 보내온 것에 대한 답변은?	○ 2022년 5월 27일에 미국 정부가 형사사법 공조로 필요한 게 있느냐, 정보를 드리겠다 했는데 해경이 여기에 대해 답을 안 하고 당시 국가안보실에도 알려 주지 않았음. 아마 알려줬으면 좀 늦추면서 미국 정보도 받고 좀 더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감사하겠음.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전 정부에서 유족들한테 정보공개를 막고 있으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었음. 그래서 22년 5월 26일에 NSC 결정이 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처 사람들을 만난 거고 그 결과가 6월 22일 항소 재판 기일보다 조금 앞서서 6월 16일 날 최종적으로 해경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임. 그래서 국가안보실은 그 이후에 감사나 고발을 전혀 원하지 않았고 그냥 정보가 필요한 만큼만 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족들에게 공개되면 좋겠다는 미션을 수행한 것임. 그리고 월북이다 아니다 판단할 권한도 없었음. 가장 객관적으로 어떤 것도 입증할 증거는 없다 이렇게 해서 상황을 끝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 2022년 5월 24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군사기밀정보 정식 취급인가도 없이 보고받고 본 적이 있는지?	○ 사령관도 다 인가를 받고 설명할 사람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도 인가를 받고 보았음.
○ 증인이 SI 비밀취급인가 명부에 이름이 처음 입력된 게 2022년 7월 29일 승인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본 것은 정식 승인 없이 본 것 아닌지? NSC 실무위원회를 개최했고, 당시 주진우 비서관 참석했는지? 보통 주진우 비서관이 참석하는지?	○ 정무적으로 이제 공식 임명돼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장 사령관도 그것을 다 감안해서 사전인가를 구두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음. 주진우 비서관이 참석했는지 정확히 모르나 참석 안 하더라도 자문은 구했을 것임. 법률사항이 있는 경우 1~2번 참석함
○ 2022년 6월 10일 국방부랑 해경 불러서 안보실에서 회의 개최를 했는지?	○ 5월 26일 NSC 회의의 이행을 위한 준비모임임.
○ 이 회의를 보면 공동발표를 증인이 주관했는데, 왜 공동발표를 안보실이 국방부와 해경을 주관하는지?	○ 그날 주제는 항소 취하 날짜를 정하는 것이고, 6월 16일로 정하고, 국방부와 해경이 각자 초안을 가지고 와서 공유를 받았음.
○ 항소 취하에 관해서 국방부와	○ 항소 취하는 해경과 국가안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해경이 왜 합동발표를 하는지?	실이 당사자이고, 국방부와 해경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서해 공무원 사건 공식 조사를 종료한다는 발표는 두 부서가 하는 것임.
○ 국방부 보도자료 가져와서 증인이 그 보도자료 직접 수정했는지?	○ 전혀 아님. 그날 사인펜도 들고 있지 않았음.
○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성구 단장이 증인이 아무런 조사도 없이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그 보도자료에 선을 긋고 수정했다라고 증언했는데 사실이 아닌지?	○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질의응답을 몰아가시니까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음. 저는 맹세코 지운 적도 없고 펜을 든 적도 없음.
○ 정보본부는 새로운 정보 및 첩보가 없기 때문에 종래 정보보고서에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증인께서 해경이 최종 수사결과 발표할 때 국방부도 같이 발표하라, 국방부 입장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였는지?	○ 둘이 같이 발표하는 것은 NSC에 같이 들어온 국방부·해경도 동의한 내용이고, 국방부의 입장이 약하다 그 얘기는 처음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을 때 제가 국방부의 입장을 오해했었는데 들어 보니까 저와 의견이 같아서 잘 알았다고 했음.
○ 2022년 5월 24일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안건을 누가 결정하였는지? 사무처 결정이라는 것인지?	○ NSC 사무처에서 부처와 의견을 취합해서 안건이 올라가게 됨. 맞음.
○ 서해피격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소통한 내용을 말씀 부탁드림.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바도 없는지?	○ 소통한 적 없음. 보고 및 지시받은 적도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정보공개 소송 외에 수사 종결 사항도 논의했다고 했는데, 수사 종결사항에 대하여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	○ 맞음.
○ 김성구 사단장이 지난번 기관보고 때 2022년 6월 10일 날 증인의 지시에 따라서 증인이 직접 수정 지시했다고 했는데 맞는지?	○ 그런 사실 전혀 없음.
○ 2022년 6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는지? 무엇을 보고하였는지? 6월 16일 입장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지?	○ 6월 13일에 전체 안보실이 함께 보고하였음. 그렇지 않음.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것으로, 국방부는 입장번복을 한 사항이 없고 해경은 지난 정부에서 치우쳤던 사항을 좀더 객관적으로 발표하려는 취지로 6월 10일에 초안을 가져왔음.
○ 서해피격사건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는지?	○ NSC 회의 전에 소통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임.
○ 6월 13일 보고할 때 6월 16일 발표와 관련해서 보고한 것인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하였는지?	○ 맞음. 발표는 두 부처가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고개를 끄덕한 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음.
○ 2020년 9월 24일 날 국방부의 입장은 명확함. 월북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이 입장을 그대	○ 그렇지 않음. 24일, 27일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만행이 분명하고, 북한이 협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로 2022년 6월 10일 증인이 주관하는 회의에서도 유지를 했는데 국방부의 입장이 너무 약하다 이러면서 수정 지시했다라는 게 김성구 사단장의 증언임.	를 하지 않아서 월북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저도 완전히 동의한 것임.
○ 기존의 부처에서 올라온 의견을 안보실 1차장의 지위로서 바꾸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 바꾸라고 할 필요가 없음. 해경은 20년 9월·10월에 세 번 발표했는데 유족들한테 일부 정보공개가 될 걸 생각하니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건의를 했음.
○ 안보실 차장 입장에서 부처의 입장을 변경하거나 왜곡하거나 바꾸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 것이 맞는지?	○ 맞음.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해양경찰청이 수사를 종결한 이후 국가안보실이 따로 뭔가를 한 바가 없음.
○ NSC든 아니면 최종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하든 지금 나와 계시는 증인이 1차장의 위치에서 지위도 권한도 없을뿐더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왜곡하거나 바꾸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 맞는지?	○ 맞음. 오로지 국민들이 볼 때 진실에 가깝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고 지난 정권의 안보실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으며,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연속선상에서 서로 어긋나게 있으면 교정해 주자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일했다는 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음.
○ 김태효 증인께서 얘기하셨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6월 10일 이후에 변화된, 번복된 입장	○ 절대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김성구 씨의 국조특위에서 발언을 놓고 보면 김태효 증인의 발언은 위증의 혐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함.	
○ 서해 공무원 사건 지금 월북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삭제하는 지시를 했다는 것임. ‘금일 정무직 티타임 대참 결과입니다. 원장님 강조 말씀, 첩보는 회수·삭제 조치해라’. ‘비서실장이 정무직 티타임 시 대신 전달, 첩보는 회수해서 삭제’라고 나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파장 보고임. 결국 이렇게 숨기려고 했던 정보가 공개되었는지?	○ 비밀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가족들에게 알려 보고자 한 게 결국에 취임초 항소 기일 전에 국가안보실이 항소 취하를 한 것임. 그 본질이 자꾸 가려지고 다른 데로 정치적인 해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 결과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전임 정부가 뭘 얼마나 기록을 했는지 또 유족들에게 결과적으로 알려진 바가 여태까지 없어서 항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음.

(하) 안성식 증인(前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4년 3월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 중 방첩사와 같이 합수부 구성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 맞음.
○ 2024년 3월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방첩사를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방문한 적이 있는지? ○ 거기에서 방문한 이후에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일어나니까 매뉴얼에 따라 합수부에 파견할 해경 인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는지? ○ 윤석열 정부 인수위 파견 당시에 김성종 해경 국장, 당시 국장하고 수시로 소통했는지?	○ 합수부에 파견할 명단을 줄테니 파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아님. 통화한 것조차 기억이 안남.

(거) 강건작 증인(前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실종이 됐는데 북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납북이 되거나 월북을 하거나 표류임. 그런데 만약에 연평도에서 중국 쪽으로 가는 배에 구조돼서 올라탔다. 그래서 자신이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등산곶 밑에서, 북에서 발견된 거다. 만약 그것이 아니고 그 배를 타고 위해가 됐든 중국 대련에 갔으면 거기서 무사히 우리나라로 귀환할 수 있었음. 아니면 중국 구명조끼와 상처 치료까지 받고 붕대로 감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어선에 연락하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공선에 인계가 될 수 있었음. 그	○ 직책상 그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함. 그런 것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구명조끼와 상처 치료의 흔적이 있는 이 사람이 표류 상태가 아니고 어떤 증거를 봐도 납북 상태가 아닌 그 상황에서 남은 상황, 월북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기 때문에 월북으로 판단한다, 이런것 아닌지?	
○ 배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배가 웨이하이로 가든 청도로 가든 다롄으로 가든 쭉 타고 가면 중국 땅에 도착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생존할 수 있었음. 그래서 실종 이후 표류도 아니고 납북도 아니고 중국 배에 올라타서 어디론가 뛰어내린 것 같은데 북에서 발견됐으니 SI도 있고 해서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지?	○ 판단은 군과 해경에서 한 것이고 그 내용을 그렇게 전달받았음.

2) 국가통계 조작 사건

(가) 윤성원 참고인(前 국토교통부 1차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검찰과 감사원이 '호도된 언론'이라는 카톡 내용을 '호도된 개선'이라고 메시지 중간 내용을 쏙 빼고 메시지 조작한 사실을 체크했는데, 그 때이 카톡 조작 증거가 한번이 아니었음. 재판 과정에서 참고인은 검찰이 카톡을 편집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는데 맞는지?	○ 맞음.
○ 참고인이 김영한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관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인데요. 여기 보면 '최고가 실거래 신고 취소되면 보정해야 한다', 이것은 합리적 지시로 보이는데, 이때 주택통계부장은 말미에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된다' 분명히 언급을 하였음. 그런데 이상윤 검사는 조사 당시에는 이 말을 쏙 빼고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을 조사하였고, 사무관 입장에서는 기억이 잘 안나니 이 말이 빠진 메시지의 맥락에 따라서 윤성원 차관의 지시로 변동률 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음. 2번은 주택정책	○ 국토부 토지정책과 소관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과 소관인지?	
○ 애초부터 이 2번 지시 주택과 소관도 아니고 부장 또한 2번 지시 고려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이 말을 빼 버리니까 마치 윤 참고인이 상대방이 할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처럼 되었음. 이것은 진술조작 및 증거조작인 것으로 보임.	○ 저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님.
○ 전체 카톡 포렌식 결과를 처음부터 증거로 다 제출했다고 검찰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증거로 다 제출한 것이 맞는지?	○ 감사원에서 만든 별권이 있음.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만든 본권이 있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감사원 별권 어디엔가는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검찰이 수사할 때는 원본을 보여 주고 해야 함. 그런데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핵심 메시지 한 줄을 빼고 발췌해서 함.
○ 감사원에서 부동산원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조사하고 검찰에 넘겨서 기소하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됐었는데, 특히 부동산원 직원들이 답변을 서로 상의하고 공유해 짜맞췄다는 정황이 있음. 관련해서 날짜나 경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게 있는지?	○ 재판 과정에서 보았는데, 2022년 11월 9일 날 당시 부동산원 감사실장이 감사원과 협의한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끼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그런 녹취록이 나왔음.
○ 부동산원 감사실장은 감사원 출신인지?	○ 그렇게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감사원에서 감사실장과 협의를 해서 부동산원 직원들과 '우리 답변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통화 녹취록이 있다는 말씀인지?	○ 그 녹취록이 재판에서 현출되었음.
○ 감사원이 포렌식한 카톡을 전부 검찰에 넘겼다는데 그중에서 윤성원 차관방, 즉 국토부 내의 대화방에서 일부 내용이 증거에서 빠진 것이 맞는지?	○ 맞음. 다 빠졌음.
○ 변호인이 이 누락을 재판 중에 발견하고서 전체 내용 제출해 달라고 항의한 것이 맞는지? 그런데 검찰은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증거도 아닌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한 것이 맞는지?	○ 맞음.
○ 카톡방 자료를 보면, 'BH 입맛에 맞게 잘 해줘라고 하셨답니다' 이렇게 하고 수치 고치라고 합고, 두 번째,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이게 다 부동산원 직원들의 카톡방임. 세 번째,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다 차관과 I와 행정관 X하고 대화를 한 후 보냄. '0.13 하나만 가시죠. 살려 주세요ㅋㅋ' 이 카톡 다 위조인지? 네 번째, '안좋으면 바로 J비서관님이 전화 옴. 더 억울한 건 집값 오르는 거에 기여 1도 안	○ 제가 비서관일 때 부동산원 전 원장과 2018년 3월 8일 같이 저녁을 한 다음에 제가 저렇게 '앞으로 BH 입맛대로 하라'라고 감사원은 주장을 하는데, 저한테 감사할 때는 저걸 물은 적도 없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였음. 저기에 많은 카톡들은 앞뒤, 전후의 내용을 같이 봐야함. 저걸 잘라 버린 다음에 저것만 일방적으로 보여 주고 저걸 통계조작으로 몰아 버리면 안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했는데’ 이 카톡방이 다 위조인지? 이것 보면 명백하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 통계 조작한 것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이게 조작수사라는 것인지?	
○ 통계조작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전화 통화한 녹음파일이 무려 57개임. 그래서 꼭 그거를 들어 봐야 되고 검찰이 작성해서 제출했던 녹취서를 보면 그 안에서 아비규환이 벌어짐. 우리가 원할 때까지, 원하는 답을 안하면 집에 안 보낸다는 것임.
○ 시민단체랑 그 당시에 부동산원의 통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은지?	○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거는 KB와 부동산원 그 변동률 간에 왜 차이가 났냐는 것이고 양자는 가격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름. 그래서 부동산원 직원들도 양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을 때는 전부 다 그럴 것임. 우리가 본사가 열심히 일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들이 고친 것은 전부 다 국토부나 청와대의 지시로 조작을 한 거다’ 이렇게 나가서 만들어 감.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녹취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사원 개네들은 악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랄하게 짜맞추는 거야. 통계 조작으로 몰아가는 거지. 우리는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맞춥니다. 지사는 본사에다가 밀고 본사는 국토부에 밀고 국토부는 청와대에 밀고 그렇게 말을 맞춤.

(나) 이상윤 증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토부 좌명한 사무관과 부동산원 이종민 주택통계부장이 나눈 대화를 보면, 변동률이 정확한지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지 합리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상윤 검사가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이 빨간 박스 답장 빼고 사무관을 조사하였음. 당시에 본인이 좌명한 사무관의 지적사항 수긍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겠다고 답했던 이 메시지 보지 못하고 사무관은 역시 남은 메시지 맥락에 따라 '변동률을 낮출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답을 하였음. 이렇게 원본과 동일하지 않은 증거로 재형성된 진술들을 바	○ 지난번에 언론 보도가 떠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탕으로 해서 검찰은 마치 차관이 압력을 가해서 사무관이 부동산을 압박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임. 이 문장들을 빼고 조사한 것이 기억이 안나는지?	
○ 공판 과정에서 참고인 변호인이 증거 짜깁기 조작수사 지적을 하자 검찰은 이렇게 반응하였음. '수사할 때 질문과 관련된 부분 발췌해 제시한 것, 원본 전체 카톡은 재판 증거로 다 신청해 놨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내용만 봐도 검찰도 짜깁기 증거로 수사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수사한 것은 맞는지?	○ 보여 주신 카톡 중에 안 보여줬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저거보다 앞선 조사에서 이미 그 좌 모 사무관에게 전부 제시가 되고 조사가 되었음. 앞선 조사는 감사원 문답 조사이고, 여기서 전부 다 제시가 되고 간인까지 한 상태로 조사가 되었음. 조사할 때에는 저희 피의사실 관련된 부분으로 제시를 하였음.
○ 전체 카톡 포렌식 결과를 처음부터 증거로 다 제출했다고 검찰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증거로 다 제출한 것이 맞는지?	○ 그 당시 확인했던 증거는 기소할 때 수사팀에 정리해서 다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대전지검에서 '국가통계 조작사건 수사 결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조작사건이라고 보도자료 낸 것은 알고 있는지?	○ 보도된 것을 알고 있음.
○ 재판에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처음에는 '변동률 조작'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변동률 수정'으로 바꾸었는데, 알고 있는지?	○ 제가 공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사후에 언론 보도로 확인한 정도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조작이 왜 수정으로 바뀌었는지?	○ 기소할 때 공소장 본문에 조작이라는 단어 사용을 아예 하지 않았음.
○ 왜 공소장 본문에 조작이라는 단어 사용을 하지 않았는지?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인지?	○ 그렇지는 않고, 통계법 위반 법률 조항에 구성요건에 조작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임. 저희가 기소한 죄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부분임.

(다) 손종국 증인(감사원 외교국방감사국 제1과 감사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난번에 감사원 강압·불법 조사 저희가 확인했고 일부 인정을 하였음. 증인은 이렇게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 저는 저런 사실이 없고, 이러한 감사는 문제가 있다고 봄.
○ 당사자들은 이런 압박과 모욕 조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 제가 감사 실무자로 조사랑 감사를 했는데 제가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모르겠음. 다른 분들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음.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감사 수행 시 인권존중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시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되고,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며,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걸리면	○ 매우 부적절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죽는다, 당신이 주범이야? 끝까지 거부할 경우 너만 문제된다"는 식의 언행이 인권존중에 부합한지?	
○'문 열고 조사받는 동안 감사관이 큰 소리로 복도 돌아다니면서 트로트 불러서 위압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극도의 모멸감을 느꼈다, 옆 조사실 문 열어놓고 조사 내용이나 감사관의 고성·폭언이 모두 들리도록 하면서 인격을 모독했다, 심야조사 중에 음주 상태의 감사관이 조사실에 들어와서 다른 상급자의 답변을 희화화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원 내에서 이 노래가 유행 중이라고 조롱을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본인은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이 맞는지?	○맞음. 본인은 그런 사실 없음.
○감사관들에게 강압 조사하라고 진술 조작하라고 위에서 압박했는지?	○저희가 감사를 시작하면 일단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빨리 진행하라는 그런 지시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끝내는 게 피감자나 저희 감사자에게 타당함. 위에서 지시받은 적 없음.

(라) 홍승희 참고인(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 총괄과 사무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3년 4월에서 5월에 감사를 받은 것이 맞는지?	○ 맞음.
○ 당시 육아 휴직 상태였는지?	○ 맞음. 출산하고 4개월 차로 육아휴직 상태였음.
○ 문답 기록을 보니까 홍승희 참고인 조사 시작 시간이 대체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였던 것 같은데 맞는지?	○ 맞음. 전날 늦게까지 조사한 날은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출석을 했고 9시부터 출석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 문답 기록을 보니까 조사 종료 시간이 4월 4일에는 밤 11시 56분, 4월 6일 자정 넘어서 0시 20분, 4월 7일에는 새벽 3시까지 하셨고 5월 5일에는 새벽 3시 35분, 5월 10일에는 새벽 6시 9분까지 조사를 하였음. 기억하는지?	○ 정확한 시간은 확실하지 않으나, 늦게까지 조사받았던 것 같음.
○ 전날 10시부터 시작해서 제일 길게 한 날이 새벽 6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대단히 장시간 조사를 받으셨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으면 마음도 어렵고 상황이 어려웠을 것 같음.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 아기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었음.
○ 시간이 이렇게 장시간 되는데 혹시 잠을 못 자고 밤샘	○ 중간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었지만 따로 잠을 자거나 하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조사를 받았던 것인지?	는 못했음.
○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문답조서 형태로 남아있는데 살펴보면, 좌명한 서기관에게 홍승희 사무관의 문답서를 보여주고 뭐라고 진술했는지 읽게 함. 그리고 홍승희 사무관의 문답서를 읽고 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봄. 또 다음에 윤의식 행정관에게 허온 사무관의 문답서를 읽게 한 다음에 진술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다시 물어봄. 저는 감사원에서 국토부 직원들의 진술의 일관성을 만들어 내고 감사원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답변하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임.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문답 내용을 보셨던 과정이 있는지?	○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문답을 몇 번 보여 주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진술할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었음. 이렇게 진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음.
○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건지?	○ 이렇게 진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음.

(마) 정상우 참고인(감사원 사무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아기가 있는 사람을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6시에 보내는 감사는 적절한지?	○ 적절하지 않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음.
○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임. 그 때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답변했던 적이 있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의 감사를 했던 사람들을 다 철저히 처벌해야 함. 수사 의뢰하였는지?	○ 아직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음.
○ 하동수 참고인이 부당한 조사 결과 및 수사 요청으로 징계를 당했고, 아직도 회복이 안되고 있음. 다시 조사를 요구함.	○ 지금 재심의가 청구되어 있어서 다시 살펴보고 있음.
○ 진상조사 TF에서 나온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인권침해와 이런 것들을 감사원 감사관들이 자행한 걸로 결론을 내렸는지? 밤늦게까지 조사받고 이런 것을 인권침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감사원 감사의 선을 넘어가는 인권침해적	○ 객관적으로 볼 때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봐서 저희도 TF에서 그런 사항들을 적시하였음. 그다음에 강압감사 여부는 당사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심야조사를 했다라든지 등 부분은 감사원 예규에 어긋난다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치하겠음.
○ 감사원에서 피감사자에게 제시한 증거자료, 문답서에도 기재하고 당연히 첨부자료로 첨부하는지?	○ 그러함.
○ 감사 수행할 때 관계자 인권 존중하고 적법절차 준수해야 한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 실시해야 한다, 권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감사절차와 기준을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관계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감사대상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명시되어 있는지?	○ 맞음.
○ ‘헌법기관을 X로 아네. 저분이 우리 두목이다, 걸리면 죽는다, 끝까지 거부하면 너만 문제 된다, 저기 빈 방 가서 1시간 동안 잘 생각해 보고 와’, 이런 말들이 인권 존중 철저히 하라는 감사원규칙에 부합하는지?	○ 매우 부적절함.
○ 부동산 통계에 대한 것은, 통계 감사는 감사원이 경실련 등 여러 기관께서 통계조작	○ 맞음. 출발은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야기가 나와서 연례 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한 것 맞는지? 보복성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이 맞는지?	
○ 진상규명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는데 어떤 분이 연락을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이익진 참고인이 말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지?	○ 문답을 많이 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22명인가를 추출했는데 그중에 15명을 먼저 연락드렸는데 주로 부동산원·통계청이, 7명·6명 해서 13명이 된 것 같음. 그리고 그때 보고가 오기를 '이분들이 재판 중이다. 감사원 사람을 못 믿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사가 있었고 그 뒤에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1급 두 분, 하동수 비서관님하고 그다음에 이문기 실장님이 따로 연락이 오셔서 두분은 다시 우리 직원을 보내서 면담을 시켰음. 그래서 총 열다섯 분임. 그래서 국토부 직원들이 제일 많이 재심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듣고 싶었으나 앞선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토교통부 참고인들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 통계 감사와 관련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었을 국토부 직원들에 대해서 사무처를 대표해서 사과드림.
○ 11월 9일에 부동산원 직원들이 진술을 맞췄던 정황, 거기에 부동산원 감사실장이 역할을 했고 그 감사실장과 감사원에서 소통을 했던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것 같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들이 많이 나왔고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국토부에서도 재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임.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음.
○ 2023년 9월 감사원 수사요청서 455페이지에서 456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원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날 5주차 강남 4구의 매매 주중치 상승 폭이 확인된 것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에 각각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음. 그러고 이후에 그 밑에 있던 행정관이 압박을 받자마자 동향계장한테 같은 날 17시경에 부동산원한테 변동률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함. 그러니까 행정관은 11월 27일 날 17시경에	○ 체크를 해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변동률을 낮추라고 요구했는데 그전에 지금 국토부가 각각 보고했다라는 시간은 밤 10시 30분임. 타임머신 타고가 가지고 국토부가 보고한 것인지? 어떻게 10시 반에 카톡 보낸 게 17시에 가 가지고 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받고 요구했다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위에는 시간을 누락시키고 밑에는 시간을 명시시킨 것 아닌지? 이것은 감사원 수사요청서 455페이지에서 456페이지 그대로 쭉 보면 나오는데 어떤지?	

(바) 하동수 참고인(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3년 7월 달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때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보는 것이 국토부 사무관들이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를 조작하게 한 원인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감사원 조사에 들어가 있었던 것 있었는	○ 맞음. 감사원 문답 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음. 그것을 조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하고 제가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 2023년 9월 달에 감사원이 검찰에다가 수사요청서를 보내는데, 그 요청서에 위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 수사요청서는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자료였음. 감사원 수사 신청으로 인해 바로 직위해제를 당했고, 감사원 자료를 모두 샅샅이 뒤져 보니 뜻밖에 수사요청서에 문답서에서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의 범죄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부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음. 그 확인한 사실을 1년 전쯤에 감사원에 알렸고, 이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감사원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
○ 수사요청서에 조작 혐의가 의심스러운게 하나 더 있다고 한 것을 말씀 부탁드림.	○ 2020년 11월 5주 차 변동률을 제가 국토비서관으로서 조작 지시했다고 수사요청서에는 적시되어 있음. 금요일 오후에 국토부 동향계장으로부터 다음 주 변동률을 청와대가 카톡으로 보고함.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고 저희 부하 직원한테 확인해보라고 그러고 저희 부하 직원이 국토부에 다시 확인해 보라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러고 국토부 사무관이 다시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했다는 스토리임. 그런데 교묘한 것은 소위 국토부 사무관이 부동산원에 조작 지시했다고 하는 카톡의 시간은 수사요청서에 17시경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분명히 그 동일한 사무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카톡의 변동률 보고 시간은 수사요청서에 없음. 그래서 동일한 사무관의 카톡이 왜 포렌식을 했는데 한쪽 시간이 있고 다른 쪽 시간이 없는지 궁금해서 감사원 자료를 다 뒤지니 있었음.
○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상화TF에서 연락한 사람과 관련한 발언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교정이 필요함.	○ 조금 전에 정상화TF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고 저하고 만났다는 사실은 사실과 다름. 제가 먼저 정상화TF에 제 소명서를 보냈음. 그랬더니 정상화TF에서 이메일로 재심사담당관실에 보내라 해서 보낸 거지 감사원에서 먼저 저한테 연락온 바는 전혀 없음. 그리고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통계사건에서 증거조작에 대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 주었는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 질문한 걸 감사원이 앞뒤 말 다 잘라내고 이것 통계조작 지시로 둔갑하셨다고 한 것이 맞는지? 증거 조작에 대해서 더 할 말씀이 있는지?	○ 맞음.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국토부에 어떠한 행정·일반적인 업무상 질문이나 전화, 카톡이 있는 주는 다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킴. 심지어 그 주에 변동률이 아무런 변화도, 수정도 없었던 주에도 감사원은 시간차 조작 지시라고. 조작 지시를 해도 그 주는 안 듣다가 그다음 주도 들을 수 있으니 시간차 조작 지시라는 듣도 보도 못 한 말을 하였음. 대표적인 게 2020년 11월 달에 있었음. 11월 19일 날 전세공급 확대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그 대책은 11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아침 티타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세대책을 만들어라는 지시를 하셔서 보름 만에 만든 대책임. 그 대통령 지시를 하시기 전에 제가 바로 전날 수석으로부터 다음날 대통령께 전세동향 보고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날 국토부의 전세동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음. 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것을 조작 지시로 둔갑시킴. 그런데 그 주는 변동률이 수정되지 않았음. 그다음 주 변동률이 수정된 게 청와대의 지시라고함. 그런데 그다음 주는 11·19대책 바로 직전 주임. 대책이 발표되는 게 예정되어 있는 그 전주에 변동률을 낮추는 그런 어리석은 조작 지시를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대책 효과를 과장하게 해서 낮춘다 해도 어불성설인데 대책 발표 전주에 변동률을 낮추는 조작 지시를 청와대가 했다고 함. 그게 감사원 수사요청서에 있음.
○사실 감사 관련된 절차가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그러면 승진·전보가 제한되거나 이런 불이익 조치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겪은 피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림.	○저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한 직후에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음. 이유도 모름. 그 감사관이 저한테 갖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를 알기까지 1년이 걸렸음. 젊은 후배들이 감사원 조사를 받으면서 받았을 트라우마가 과연 치유가 되어서 그 많은 남은 공직생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기간 동안 감사원 눈치 안 보고 적극적으로 공무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큰 걱정임.

(사) 윤의식 참고인(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다른 사람의 문답 내용을 보고 읽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수사를 받았는지?	○그런 적 있음.
○동료들을 불러 놓고 고언과 협박도 있었다라는 것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음. 또한 감사원이 요구한 이 모범 답안의 내용이 공소장에 그대로 실림. 공소장에 대통령실이 변동률을 낮추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국토부는 이 취지를 부동산원에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부동산원은 압박을 느껴 시장 상황과 다르게 조작했다, 이게 유도된 감사원이 요구한 답변임. 알기로는 참고인께서 이런 유도된 답변에도 불구	○저를 조사할 때 제 상관의 지시의 의도를 계속 물어봐서 기본적으로 제가 모시는 분이긴 하지만 모시는 분의 의도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함. 그리고 그런 조작의 지시를 한 의도가 있었지 않냐고 계속 물어봐서 그 말씀은 드릴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동의한다고 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고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던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상황과 본인이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 ○ 감사원 감사 과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림.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는,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일도 했었음.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통계 조작으로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그래서 저희 감사받을 때 사실 강압도 있었고 그다음에 진술에 일종의 진술 왜곡 이런 부분도 있었음. 더 힘들었던 것은 '너희들은 죄가 없다. 너희들 위가 문제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상사들을 계속 다그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괴로웠고 힘들었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진상을 좀 규명해 주시고 저희의 얘기를 들으셨으면 하는 그 바람 하나임.

(아) 좌명한 참고인(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 총괄과 서기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다른 사람의 문답 내용을 보고 읽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수사를 받았는지?	○ 그런 적 있음.
○ 감사하러 오신 분들이 술 냄새 나는 경우가 있었는지?	○ 술 냄새가 나는 경우를 보았음.
○ 노래를 부르면서 '너희 같은 공무원은 단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멸감을 느끼신 분도 있는지?	○ 낮에 감사 중에도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장면을 보았고, 술 먹고 회식 중에 돌아와서 저희의 발언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조롱하는 장면도 보았음.
○ 조사실 문을 열어 놓고 옆방 감사관의 고성과 폭언을 듣는 과정 그리고 감사관이 큰 소리로 트로트를 부르며 돌아다니는 위압적인 분위기도 있었는지?	○ 본 적이 있음.

(자) 이익진 참고인(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다른 사람의 문답 내용을 보고 읽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수사를 받았는지?	○ 그런 적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감사원 감사 과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림.	○9시에 가서 그다음 날 6시 반까지 거의 2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적도 있음. 저희 비서관님이나 옆에 동행하는 행정관이 조작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에게 자꾸 답변을 강요하였음. 그래서 아무 말도, 답변을 안 하니까 '고개를 끄덕임'이라고 그렇게 각본처럼 써 놓음. 그래서 문답확인서에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고 수정을 해 달라고 하니까 수정을 해 주지 않아서 그 역시 제가 수기로 고치고 지장을 찍은 바 있음. 진상규명 관련해서도 저희는 연락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에게 연락을 했는지 조금 궁금함.
○진상규명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는데 어떤 분이 연락을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 맞는지?	○운영쇄신TF에서 15명에게 연락을 드렸다고 했는데 적어도 저희 징계받고 재심을 요청한 사람 중에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연락을 받은 분이 없다고 함. 그래서 어떤 분에게 연락을 해서 운영쇄신TF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견을 들었는지 궁금함.

(차) 김수상 참고인(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감사원 감사 상황에 대한 말씀	○재심 신청도 하고 감사원 감사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들어 주지를 않았음. 특히 감사원 감사 때는 감사원 생각하고 상충된 답변은 문답서에 전혀 기재를 하지 않았음. 통계조작 여부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저의 조작 사실이 없었고 다른 직원들도 조작 사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작 관련 내용이나 정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 카톡 내용은 정상적인 업무 내용이다. 차관님 지시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했지만 한 마디도 거기에 반영하지 않았음. 그 과정에서 당시 감사관은 문답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담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 내용을 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것이라고 하면서 감사원의 시각에 따라 문답서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저희를 그렇게 압박하였음. 또 하나는 질문하고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문답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감사 결과에 포함하였음. 질문으로 묻고, 문답서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음. 제가 지적당한 내용 중의 하나는 당초 7월 청와대 회의 결과로 결정된 내용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때 7월 달에 있었던 회의 결과는 7월 통계 표본 개편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구표본도 새로, 따로 병행조사를 해서 참고적으로 발표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 회의 결과를 왜곡해서 과거에 있었던, 5월·6월 달의 구표본 발표 시에 있었던, 시험적으로 조사했던 신표본 결과를 병행하지 않은 것으로 저의 잘못으로 몰고 갔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도 받지 않은 내용이고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았던 내용임. 그것이 번듯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임. 여기에 대해서 재심 청구서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음. 그렇지만 재심도 1년이 지나도록 그 내용들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정상화 TF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국토부 직원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음. 여기 나와서 그동안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던 부분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함.

(카) 김영한 참고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감사원 감사 상황에 대한 말씀	○감사를 받으면서 어려웠던 점은 감사관들이 끊임없이 '하위직원들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네가 데리고 일했던 사무관·서기관·과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 사람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 인사와 장래 문제를 전부 망가뜨리겠다'는 식으로 겁박을 하는 부분이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고 괴로운 부분이었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네가 모셨던 상사들이 이런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진술하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했고, 그런 압박을 제가 견디지를 못하고 저의 진의와 다르게 쓰여진 진술서에 무기력하게 동의를 하고 날인을 해서 특히 윤성원 차관님을 비롯한 많은 상사분들께서 고초를 겪게 돼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임. 저희 대부분이 다 감사원에 재심 청구를 해 놓은 상황임. 감사원에서 오늘 여러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실체적 진실과 다른 부분이 감사 내용에 담긴 것도 확인을 하셨으니 철저하게 재심 청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겠음.

(타) 김민태 참고인(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감사원 감사 상황에 대한 말씀	○제가 가장 괴로웠다거나 자괴감을 느낀 부분은 당시에 시장 분석이나 그다음에 현장 점검과 같은 정상적인 업무조차 통계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받고 동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당시 상사로 모셨던 분들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파) 유병호 증인(감사원 감사위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붙어 있는 카톡방 관련된 자료를 보면 분명히 부동산원은 그 당시에 이 통계를 조작했음.	○감사 결과 전부를 외지는 못합니다만 당시 압축된 내용으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조작행위는 분명히 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맞는지?	

(하) 이종민 증인(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통계조작 사건 때 주택부장을 했는지? 35회 조사를 받았는지?	○ 맞음. 25회 조사를 받았음.
○ 어떤 경위로 그렇게 많이 조사를 받았는지?	○ 법원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제가 강남지사에서 2년을 근무했고 그다음에 본사에서 1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었던 것은 사실임.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판사님이 물어보신 것 중의 하나가 어떤 연유에서 25번을 꼭 가야만 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감사원이 부르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 가서 어떤 회유와 압박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저희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고만 말씀을 드린 사항임. 회유와 압박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조사받았던 부처의, 협박당한 국토부 직원이 조금 전에 증언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는지?	○ 제가 비슷하게 겪은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음.

3)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가)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장동 게이트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단일 사업으로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몰아준 사건임. 이 본질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주범이라는 형태로 보도가 됨.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오보가 아니고, 국가적인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임. 강백신 검사는 당시에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는지?	○ 그러함.
○ 이 사건을 가장 표본적이고 기본적인 권언유착이라고 보는지?	○ 그러함. 해당 사건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가 당시 유착관계에 있던 전 성남시장의 선거를 돕고 그를 통하여 자기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살포까지한 범행으로 확인을 하였음.
○ 김만배하고 신학림 녹취는 2021년 9월에 이루어진 게 사실인지?	○ 9월 15일경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함.
○ 대선 3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모호성을 가지고 전언적 형태로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치의 영역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만배의 씨가 허위사실을 만들어 신학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씨에게 얘기를 했고 그와 같은 사실이 대선 국면에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던 사실은 확인하였음.
○ 중대선거범죄로 보아야하는지?	○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시효가 지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선거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행위로 판단하였음.
○ 이 사건이 명예훼손으로 수사가 된 것인지?	○ 김만배 씨의 금품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명예훼손으로 수사가 된 것임.
○ 명예훼손의 요건 자체가 실질적 악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실질적 악의가 판단되었는지?	○ 그러함. 악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증거에 기해서 그 악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소하고 악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불기소하거나 인지를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함.
○ 2011년 중수2과장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수사하고 4년 후 조우형 수사를 안함. 윤석열의 수사 전에 박영수와 법률자문 계약 있었는데 실질은 변론임. 성공보수 1억원 준 다음 윤석열이 사건 봐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임. 허위보도의 정점에는 강백신 증인이 있었음.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고	○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음. 적법절차 지켜 수사함. 내편 네편 가리는 개념은 수사에 없음. 명예훼손사건은 반의사불벌이라 기소 안 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발하지 않는데 검찰이 나서서 수사함. 검찰이 스스로 나선 것을 본 적 없음. 검찰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된 사건임. 검찰조직이 흥신소로 전락함. 강백신 증인이 영달을 위해 검찰을 상납한 것임.	
○ 남욱 수사검사는 왜 입건하지 않았는지?	○ 철저하게 수사했음. 곽상도 관련 의심스러운 부분 있었고 최선의 수사를 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했음. 알선수재나 금품수수 없었음
○ 명예훼손 허위보도 수사 당시 통신조회를 수천 건 하였는지?	○ 수사 과정에서 통신사실 자료를 확인했던 것은 맞음.
○ 신학림 관련된 사건 수사는 아까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2023년 8월, 9월이 맞는지?	○ 맞음.
○ 박영수는 조우형의 변호사가 맞는지? 윤석열은 중수2과장이 맞는지?	○ 2011년 무렵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변호사를 했던 것은 맞음. 윤석열은 중수2과장이었던 것도 맞음.
○ 2023년 9월 7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는지? 이재명만 타깃으로 해서 수사팀 구성한 것인지?	○ 맞음. 대장동 관련 수사를 할 때 저 언론 기사를 참고로 해서 수사를 한 건 아님. 그 사건은 김만배가 기자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유포와 그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구성 송경호 지검장이 지시해서 구성했는지?	○ 송경호 중앙검사장님 시절에 구성되었던 건 맞음.
○ 한상진 기자 폰 문자 메시지 내용에 없는 '한 건 했습니다'가 수사보고서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포렌식 수사관이 포렌식을 하다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발견하여 검사에게 보고했고, 검사가 압수를 하겠다고 하니 한상진 피의자와 변호인이 사생활 부분인데 압수를 하는지 항의한 것임.
○ 녹취록이 조작되었다는 봉지욱 참고인의 말에 대해 어떠한지? 봉지욱 참고인이 재판에서 해당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 해당 녹취록은 처음 보는 것이어서 공판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봉지욱 기자로 작성된 것이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함. 봉지욱 기자님이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하고 통화한 것을 속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확인돼서 오류가 시정된 것이라고 보고를 받음. ○ 정성호 장관님이 수사 검사들 직관을 금지하고 있어서 세세히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음.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봉지욱 기자님 얘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음.

(나) 이철수 증인(조우형 사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자 조우형씨 사촌 형 맞는지?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은 2023년 강백신 검사팀이 뉴스타파 보도를 빌미로 정치공작이다라고 하며 언론인들을 탄압한 사건인데, 조우형이 첫 번째 조사받았을 때와 달리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당시 너무 다른 분위기로 커피만 마시고 나왔다고 2026년 3월에 법정진술하였는데 맞는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추궁 없이 그냥 나왔고, 이후 수사는 종결되었다는 것인지?	○ 맞음. 2010년에서 2011년쯤 정치자금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음. 첫 번째 조사 때는 굉장히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우형이 변호사를 박영수로 선임하고 난 다음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조사 없이 그냥 커피만 마시고 나왔다고 하였음. 맞음.
○ 부산저축은행 임원진 중 광주일보 출신들이 많아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 쪽에서 로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사하였으나, 조사하다 보니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김윤옥 여사, 소망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수사를 덮었다는 첩보가 있었음. 들은 바가 있는지? 제가 받았던 첩보와 일치한다고 봄.	○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저축은행 마지막 사태가 터지기 전 고위 주주회의가 있었음. 박연호, 김양, 박형선 등 주주들이 모였는데, 당시 2대주주였던 박형선씨가 광주사람이었고 노무현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었으나, 김양 회장이 로비한 대상은 영포라인이었다고 당시 주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였음. 수사 시작 후 정치자금 관련해서 민주당 쪽으로 나올 것으로 여론에서도 보도되고 했으나, 결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민주당 관련성이 나온 게 없고 영포라인 쪽만 계속 나오니까 수사 방향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음.

(다) 봉지욱 참고인(前 뉴스타파 기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2011.4.)에도 지금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불법대출을 확인했음. 계열사간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에 대하여 수사해야한다는 자료를 예금보험공사가 정식으로 대검찰청 중수부에 보낸 것 아닌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 내용을 당연히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부산2저축은행에서 2012년 2월에 조우형에 대해서 수사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도 확인했는지?	○ 윤석열이 대선후보이던 당시, 대장동 대출은 일반대출이고 PF대출이 아니라고 한 바 있음. 2011년 4월에 예금보험공사가 이것은 일반대출이 아니고 부동산 PF대출이 맞다고 문건을 작성한 것임. 그러함. 보도 당시에 이미 다 확인을 하였고, 대검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함.
○ 대장동 사업 초기사업자인 이강길 씨도 박영수 변호사를 산덕에 차 한잔 마시고 다 무마되었고,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음. 조우형의 사촌형인 이철수씨도 조우	○ 2023년 1월에 이재명 민주당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되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 당시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대장동 사건이었는데,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2023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형이 두 번째 조사때에는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의 편의를 봐주었다고 한 바 있음. ○ 이러한 부실수사를 확인·검증한 뒤 보도하였는데, 참고인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160번이 언급된다고 들었음. 강백신 특별수사팀은 참고인을 잡기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경로로서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는데?	년 2월에 이재명 대표를 서울중앙지검(강백신 팀장)이 불러서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하면서 보도에 나오는 공산당 프레임을 김만배와 당신이 만들어서 유포한 것 아닌지를 질문하였음. 즉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당시 대표를 구속하는 것이 실패하자 언론사들과 이재명을 묶어서 기획했던 것이고, 동시에 수원지검은 대북송금사건 조작을 시작하였다고 봄. ○ 2023년 9월, 실제로 본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나흘 뒤에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 대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18개월 후에야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였다고밖에 볼 수 없음.
○ 강일민 증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이미지 압수할 때 새로운 압수영장 제시가 없었다는 것인지?	○ 포렌식 이후에 다시 압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압수목록은 2023년 9월 24일 압수수색 당일에 교부받았고,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이미지를 떴는데 휴대폰 3대 중에 1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돌려줄 때 교부서를 다시 준 것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임. 본인은 이미지를 또다시 압수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를 했다고 봄. 강일민 증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설명을 하시니까 나중에 좀 다퉈 보도록 하겠음. 없었음.
○ 강백신 증인과 강일민 증인 관련하여 취재한 내용은?	○ 강백신검사와 강일민검사가 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건을 흐림. 우선, 정영학, 남욱, 조우형 수사하면서 압수한 녹음기 안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장동 업자들의 대화, 유동규와 남욱 씨의 대화 등의 녹취록이 담겨 있었고, 이를 압수하였는데 수사하지 않고, 정영학을 기소하지 않았던 것임. 1심에서 기소와 공소를 동시에 한 강일민검사의 뜻으로 봄. ○ 또한, 강백신 검사가 곽상도를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하면서 작성한 추가 공소장에 김만배와 곽상도를 통해 남욱의 공소장 변경을 못 하도록 수사 무마 로비를 하였고, 로비가 성공하여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에게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혐의가 기재되어 있음. ○ 정영학에 대해 그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장동사건은 당시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끝났음. 2011년 대검 중수부, 2012년 서울중앙지검과 경기 분당경찰서, 2014년 경기지방경찰청 등 김만배를 통해 네 번의 수사 무마를 한 사실이 정영학 녹취록에 다 있었음. 본인이 보도하니 압수수색은 하였으나 녹취록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임.
○ 2022년 언론보도는 윤석열이 2011년 당시 검사로 대장동·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을 보도한 것인데 그에 대해 탄압받은 것으로 보임. 증인 본인이 당한 불법 압수수색 및 인권침해 수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조우형과 저는 통화한 적이 없고 2021년 10월 26일 만나기만 했는데 저와 조우형이 4번 통화한 것처럼 녹취서를 조작했음. ○ 강백신 팀원 중 한 명인 강일민 검사는 제 휴대전화 3대를 4개월 만에 돌려주면서 삭제폐기확인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만 말하면서 휴대전화 3대 중 1대의 전자정보를 전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고,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의 휴대전화 정보도 강일민 검사의 지휘로 전체 정보가 디넷에 올라갔음. ○ 본인이 자녀 등교를 도와주기 위해 아침에 문밖에 나가니 강백신 팀 이창주 수사관이 집 앞에서 새벽 4시부터 대기하다가 압수수색 영장 제시도 없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즉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등교를 도와주고 와서 하겠다는 요청을 거절함. 수사관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20분 후에야 검사가 영장을 들고 왔고 당시 S22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임의로 잠금을 열어서 8시간 동안 보고 자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상부에 보고하고 난 후에야 압수물을 봉인지에 넣었음.
○ 조우형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검찰의 녹취록을 보면 21년 10월 27일 날 봉지욱·조우형 간에 53분 10초 또 3분 37초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음. 참고인은 분명히 통화한 적이 없는지?	○ 통화한 적 없음. 녹취서 내용을 다 확인했음. 녹취록에서 저를 지칭하는 말이 나옴. '팀장님'. 제가 저때 팀장이었음. 팀장님하고 저를 지칭하는 얘기가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것을 녹취록 4개를 제가 통화한 것으로 조작을 했던 것임.
○ 속기사들은 들리는 대로 목소리를 그냥 봉지욱이라고 썼을 것임. 속기사 두 사람한테 누가 이 목소리를 봉지욱이라고 입력해 줬느냐가 문제인데, 수사관 아니면 검사일 것임.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 저 안에서 라정주 PD가 조우형 씨랑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이 만난 적 없지요?' 하니까 '만난 적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묻고 들었는데 그 반론을 반영을 안 한 것처럼 지금 검찰이 공소사실을 구성해 놓은 것임. 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음. 제가 조우형 씨한테 '윤석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열 만난 적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없는데 검찰이 지금 다른 사람이랑 통화한 그 내용을 갖다가 붙여서 제가 물어보고 들었는데 빼 버린 것처럼 한 것임.
○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까지 압수수색 당한 것이 맞는지? 영장 범위를 넘어선 집행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이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되어야 함.	○ 맞음.
○ 그 밖에 증거조작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 7,800억원 혈세를 징수하였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장동 사건은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부터 보아야 함. ○ 2023년 기준 대장동 대출금 미회수금과 이자를 합쳐 2,731억원, 조우형 씨가 차명으로 운영하던 부산저축은행 SPC와 차명회사인 더뮤지엄양지라는 차명회사까지 하면 5000억 원 가까이 되며, 공적자금이 27조가 들어갔음. ○ 윤석열 주임검사는 대출금 회수에 관심 없고 언론브리핑만 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경 씀. 김만배 배당금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의 출처가 없음. 그러나 그 보도로 인해 대장동 주범이 이재명이 됨. 대장동과 조폭설로 대선이 뒤집힘. 이번 국조에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추후 정정보도 등이 필요하다고 봄.
○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 속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언론인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견되었음. 수사팀장 강백신 증인의 수사팀에서 속기록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 더 이야기 할 것이 있는지?	○ 이강길 증인이 오늘 여기 국정조사 현장에서 말한 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음. 2011년에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 씨의 대장동 사건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저희 뉴스타파 재판 법정에서 세 차례 나와서 똑같은 증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검사가 물은 게 아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물은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님. 검찰 조사 때는 그러면 왜 이런 답변을 못 했을까 봤더니 심지어 이강길 씨를 검찰 강백신팀 수사관이 차량으로 미행을 했다고 함. 미행을 해 가지고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해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증언을 함. 그리고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말씀이 조우형 씨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인 것은 2011년 11월부터 검찰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소를 안했음.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계속 틀고 있는 유동규와 남욱의 녹취록 관련해서 그 녹음을 2023년 4월에 했다고 했는데, 그 두 달 전인 2023년 2월 21일에 유동규 씨가 서울중앙지검 김형석 검사 방에 가서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 받는데, 당시의 유동규는 뉴스타파 보도 경위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몰라요'라고 대답함. 두 달 전에 전혀 모르던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욱 변호사가 검사한테 들은 얘기, 훈련받은 얘기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라) 조우형 증인(대장동 대출 브로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증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건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에 대한 견해는?	○그것을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함.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맞음. 그 시점으로 기억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시작될 당시 3월 1일 날 박 영수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증인은 (박 영수 변호사와의) 법률자문계약을 최초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잡았음. 명목은 풍동 사업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관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함.	
○ 증인은 대검찰청 중수부에 다섯 번을 감. 네 번은 박모씨들의 알선수재죄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한 두달 뒤 검사와 면담을 하고 커피 한잔을 먹고 나온 것이 맞는지? 검사와 면담한 내용이 무엇인지?	○ 맞음. 이미 16년 된 일이어서 기억이 부정확하나 면담은 박길배 검사님와 한 것으로 기억함. 수사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고위 임원들 간에 좀 특이한 부분들, 그 당시에 대표이사였던 분과 부회장,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함. 그래서 오지열 중앙저축은행장님과 김민영 부회장님이 사돈 관계셨기 때문에 두 분이 좀 각별했던 것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함. 그때 이제 커피를 한잔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음. ○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와서 김만배 팀장에게 이번에는 간단한 사안에 대해 물어보았고 아는 선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드림. 그때 커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한잔 마시고 나왔다고 했더니 놀리는 말투로 '이젠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오는 사이구나'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런 좋지 못한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함.
○ 증인이 리베이트 10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이 되었던 것이 맞는지?	○ 맞음. 그것은 2015년 일임.
○ 대검찰청 중수부에 가서 4개의 범죄 혐의 수사관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백한 적이 있는지? 2011년 이것 관련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 없는 것이 맞는지?	○ 있음. 처벌 받은 것은 없음.
○ 이강길 증인으로부터 받은 (불법대출 수수료) 10억 3000만 원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용역비로 회계처리하였는지? 더뮤지엄인지, 벨리인지?	○ 법인으로 정상적으로 다 입금했음. 용역비로 회계처리 함.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 1억원의 성공보수를 왜 주었는지? 박 씨들 알선수재하는 데 돈 전달한 건 무마 대가라는 것인지?	○ 박태규 씨라는 분의 사건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 그 당시 제 나이가 30대 중후반 정도이고, 제가 전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불려 간 사실이 있음.
○ 박길배 검사와 면담한 이후 허용진 변호사에게 연락이 온 것이 맞는지? 입건이 안 되었으니 성공보수를 달라고 한 것이 맞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이 더뮤지엄양지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 아님.
○ 봉지욱 참고인과 통화한 적 있는지?	○ 문자를 받은 기억은 있는데 통화에 대해서는 불확실함.

(마) 한상진 참고인(뉴스타파 기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과 관련하여, 대상이 되었던 뉴스타파 보도는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 은행 사건 해결’이라고 했는데, 김만배 씨가 당시 인터뷰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고,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맞는지?	○ 맞음.
○ 결론은 이 사건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도 2011년 부산저축은행·대장동 수사 당시에 과연 윤석열이 이 사건을 봐줬느냐, 조우형에 대한 사건을 봐줬느냐가 핵심이라고 판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인데 맞는지?	○ 맞음.
○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라인을 보면, 김홍일 중수부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장이 있다가 최재경 중수부장으로 바뀌고 또 당시 수사기획관은 우병우였고, 윤석열이 중수2과장으로 불법대출과 대주주 비리를 수사하는 과장이었음. 조우형에 대해서는 2011년 4월에 우선 대장동 초기사업자인 이강길이 대검 중수부수사관 면담을 했고, 이후 4월 18일 이강길에 대한 대검 중수부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윤석열이 당시 이미 조우형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하였던 것이 맞는지?	
○ 그리고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 3회를 하고, 2011년 9월 조우형 씨가 검찰에 출석해 박길배 검사와 만나 커피를 마시는 사건이 있은 뒤, 조우형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는 대가로 박영수는 조우형으로부터 총 변호사 비용을 1억 6,00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조우형에 대한 출국금지 문서가 윤석열 중수2과장 결재로 4월 19일에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 맞음.
○ 다 확인하고 보도한 것인지?	○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 기록에서 확인한 것이고, 기록은 검찰이 스스로 법원에 낸 것임.
○ 조우형 씨가 본인의 범죄 4건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대해서 자백했다는 모두는 진술이 있던데 이것도 맞는지? ○ 사냥식 수사를 당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림.	○ 지금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음. 그 2년 내내 저희가 재판에서 했었던 일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의 대장동·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되짚는 과정이었고, 조우형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거의 확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음. ○ 본인들에 대한 70쪽이 넘는 공소장에 피해자라고 적시되어 있는 윤석열 씨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임. 본인들의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보도 내용과 민주당과 이재명을 연결시켜 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음. 그런데 공소장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로 구성이 되어있었음. 그리고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을 때 검찰은 공소장을 세 번 변경하여, 공소장이 30여 쪽으로 줄어들면서 이재명 관련된 부분이 다 날아감. 그럼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언론보도는 윤석열이 2011년 당시 검사로 대장동·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을 보도한 것인데 그에 대해 탄압받은 것으로 보임. 증인 본인이 당한 불법 압수수색 및 인권침해 수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강백신 검사가 국정조사에 나와 법과 원칙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음. 법원이 압수·수색하도록 한 범위에 노트북이 없었음에도, 딸아이가 쓰던 노트북까지 다 분해해서 2,000건이 넘는 이메일까지 모두 열람했음. 또한, 저희는 윤석열씨가 커피를 타줬다는 보도를 한 바 없음. 이에 관하여 전 법무부장관 한동훈,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현직 국회의원 박정훈 세 분에 대하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음. 수사기록을 보고 알게 된 것이며 알게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기자분은 김만배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음. 그분의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돈을 빌려줘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김만배씨에게 농산물을 보냈고. 김만배씨는 받기만 하기에는 미안해서 과일값을 송금한 것 같은데 이걸 김만배씨와 그분이 공모한 증거로 사용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려는 수사기록을 봤음.
○ 영장범위를 넘어서는 집행은 영장주의에 어긋남. 검찰은 공소장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반으로 공소장을 3번 고쳤음. 공판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음에도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공소장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부에서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라고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는지? 명백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보임.	○ 법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음.
○ 검찰 수사보고서에서 ‘윤석열 잡아야지요, 한 건 했습니다’라고 한상진의 문자메시지가 발견되었다고 적고 있는데, 이 말이 있었는지?	○ 없음. 제 휴대폰에 확인했고, 포렌식을 통해서도 확인하였음. ○ 관련해서 문자 없다는 것을 뉴스타파를 포함한 여러 채널에서 말함. 실제로 저 문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찰은 본인에게 단 한 번도 문의 없이 수사보고서를 만들고, 저런 문자가 없다는 본인의 주장이 허위이므로 양형에 참고해 달라고 기재하였음.

(바) 김우철 참고인(前 민주당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언론보도는 윤석열이 2011년 당시 검사로 대장동·부	○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그 당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영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을 보도한 것인데 그에 대해 탄압받은 것으로 보임. 김우철 증인 본인이 당한 불법 압수수색 및 인권침해 수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에 나오는 김만배, 허재현, 식학림, 조우형, 이철수 이런 분들 한번도 본적이 없고 핸드폰에서 전혀 나온 적이 없음. 그럼에도 수사 종결하지 않고 2년간 6번 조사받았고, 야간·새벽에도 조사를 받았음. ○ 포렌식한 몇십만 건의 사진에 대해 각각 소명해야 했고, 제 핸드폰에 있는 9,000여명의 사람들에 대한 통신내역을 전부 조회하였음. 30년간 본적도 없는 친인척, 초등동창생 등에 대해 통신조회하고, 저는 출국정지까지 당함. 윤석열 정권에서 무혐의 받았으나 누구하나 미안하다 전화받은 적 없음. 90세이신 저의 어머니 속옷 장까지 압수수색 당하였음. ○ 수사받을 때 제가 10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받으면 검사가 질문지를 책처럼 작성해놓고 있음. 그 자리에서 이재명과 관련있는지를 지속해서 물어보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조서상에는 기재되어 있었음. 제가 한 말이 아닌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어 지워달라고 하여도, 이미 등록되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 조서를 바꿀 수 없다면서 조서에 지장 찍도록 하였음.

(사) 강일민 증인(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5년에 남욱 증인을 수원지검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한 사건 관련, 1심에서 무죄 났고 2심 때 증인은 횡령죄 공소장 변경으로 속행하였는데, 맞는지? 당시에 곽상도 씨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은 없는지? 곽상도와 대학동문이 아닌지?	○ 1심까지만 유지하고 항소심 검사와는 소통한 적 없음. 없었음. 곽상도씨와 대학동문 아님.
○ 1심에서는 왜 횡령죄로 기소하지 않았는지?	○ 1심에서는 당시 예금보험공사 수사 의뢰 자체가 이강길 씨의 횡령금을 일부 로비 자금으로 쓴 것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음. 그래서 전체 변호사법 위반으로-로비스트로-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기소를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1심에서는 하지 않았음.
○ 1심 수사검사로서 할 말이 있는지? 선택적 기소나 예비적 기소는 왜 하지 않았는지?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수사 의뢰 자체가 그렇게 왔고 저희 수사로서도 변호사법 위반이 맞겠다, 다만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은 동전의 양면 같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은 것이어서 이게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면 끝까지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을 변경을 하자는 것임. 기소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봉지욱 참고인은 강일민 증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휴대폰 이미지를 재압수할 때 새로운 압수영장 제시가 없었다고 하는데 반론은?	○ 봉기자님이 다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23년 10월경 봉 기자님 휴대폰에서 선별을 한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폐기 지휘하였으므로 재압수를 하려고 해도 압수할 대상이 없고, 이를 압수 지시한 사실도 없음. 다만, 압수목록 교부서가 늦게 나간 것은 휴대폰은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본인 대면 교부가 원칙이고, 기자님이 나오신 날 휴대폰을 교부하면서 미처 드리지 못한 교부서를 늦게 드렸을 뿐임. ○ 또한, 정영학 녹음부분은 제가 15년에 수원지검에서 수사할 때 들었던 기억이 없고 정영학에 대한 주무검사가 아니기에 정영학을 봐줄 이유가 전혀 없음. 그리고 남욱씨 항소심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고 어떠한 것도 받은 적이 없음. 봐주려 했으면 구속기소하지 않았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것임. 저는 그때 예금보험공사가 로비스트로 수사 의뢰한 모든 분을 구속기소했을 뿐임.

(아) 이강길 증인(前 씨세븐 대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증인은 지난 3월 10일 법정에서,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에 가서 조사받을 때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 증언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사실인지? ○“수사관이 조우형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대검에서 전부 사실을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더라. 그리고 재판장의 질문에 대검 중수부 수사관이 수수료, 리베이트 조우형에게 준 적이 있냐 물어봐서 준 적이 있다”, “수사관이 조우형 것은 빼고, 개인 약정서는 빼고 관련된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해서 그렇게 써서 줬다”, 증인이 소개한 “노땡땡이라는 회장님이 증인한테 전화해서 대검에서 유선상으로 조우형에게 준 것을 불어라, 진술하라고 한다, 어떻게 받겠냐 이렇게 증인이 전화를 받았다”,	○사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조우형이가 ‘차 한잔 마시고 다행히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	
○ 추가적으로,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증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초기 대장동사업을 하면서 조우형 소개로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가로 조우형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그 사실을 수사관에게 다 이야기를 한 것이 맞는지? 그럼에도 수사가 안 됐다는 것임. 이 증언이 맞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분위기에 대해 추가로 할 말이 있는지?	○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 그 당시 수사관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리베이트,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지분이 있는지 없는지 대출을 일으키면서 그걸 물어보았음. 없다고 하니 부산저축은행 대출한 각 현장, 사업장에서 조우형이 수수료를 받은 것 중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서 모른다고 대답하였음. 이후 수사관이 전화하여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받으면서 수수료 100억 외에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그 확인서는 부산저축은행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해명하기 위해서 저한테 요청하는 건데 검찰에서 그것을 해 달라하는 것들이 좀 이상하긴 했었음.
○ 리베이트를 줬다는 사실을, 수수료를 줬다는 사실을 수사관 앞에서 진술을 하신 것인지?	○ 면담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음.
○ 조우형의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금액 1,800억원과 관련되는 수사를 제대로 받아서 처벌	○ 조우형 씨가 2016년도, 저하고 같은 사건으로 2015년도 12월에 구속되었음. 그런데 그 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을 받았으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 이런 부분들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던게 맞는지?	은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계약서 허위계약서를 썼고, 그것이 드러나서 구속된 것임. ○ 그런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할 때 해당 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미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아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라고 말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음. 그 이후에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고,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대출을 알선한 그런 수수료였다는 게 인정되어 조우형 씨와 제가 구속되었던 것임.
○ 오늘 쟁점 중의 하나가 2023년 9월 강백신 수사팀을 중심으로 윤석열 주임검사의 대장동 부실수사 보도에 대하여 언론인과 인터뷰한 사람들을 탄압했다는 것인데, 2021년 증인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였는지? 2011년 부산저축은행·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우형이 리베이트 10억 3,000만원을 받은 것과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대장동 사건 대출에 대해 수사를 무마	○ 하였음. 대검찰청 중수과에 있는 관련된 수사기관에서 저를 불렀을 때 면담이 첫 번째 있었고, 면담 때 수사관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중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해서 우리가 준 수수료 외에 어떠한 주주 관계나 다른 리베이트 관계가 또 있는지 확인을 했었음. 또 하나는 조우형이 다른데도 이러한 우리처럼 약정을 해 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대출이 나가는 곳마다 이런 수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 맞는지?	료를 받는 게 몇 건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한테 알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서 그 당시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면담을 끝내고 나왔음.
○ 대장동 건뿐만 아니라 풍동지구라 등 여러 사업지에 조우형 씨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관련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는 것인지?	○ 맞음.
○ 사실에 의한 인터뷰를 한 건데 증인께서 2023년도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가 사실이 아니다, 조우형한테 리베이트 준 것을 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그 진술에 기반해서 경향신문 기자들 4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당시 왜 그 진술을 바꾸셨는지? 그랬다가 2026년 최근 3월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음.	○ 제가 그 당시 진술을 뭘 바꿔서 한 게 아니라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말을 한 것 같음. 그러나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게 그 당시 저뿐만 아니고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했던 노양은 회장님이라고 계심. 지금도 제 진술은 변함이 없고 제가 그 당시에 수사관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나 제가 진술을 지금까지 해 온 건 변함이 없음.

4) 기타

(가)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왜 아태위가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닌데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대북제재 대상을 만들라고 강요를 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 만약 아태위가 대북제재 대상이 분명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북제재 위반 사범이 되는 것임. 광의로 보면 대북제재 대상이 맞음. 그런데 그 당시 아태위는 대북제재 대상 기관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국정원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상한 주장을 함. 이에 대한 입장은?	○ 지금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인을 국정조사에서 다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임. 이것은 재판에 관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법권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음. 그리고 이 강길 증인의 경우 리베이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2011년도 당시에는 중수부에서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고 자기도 진술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그리고 그 외 기타 다른 수많은 증거에 의해서 2011년 당시 중수부가 불법 리베이트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기소를 했던 것이고 이 강길 증인이 아까 양부남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조서, 아마 피고인 측 변호인 신문조서로 제가 이름은 보이는데 그와 같은 진술을 했던 것은 제 기억상으로 아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처음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해서 언론에 보도됐던 것으로 알고 그 뒤에 검사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다음 기일에 반대신문을 해서 2011년 당시 검찰에서 물어봤던 것은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회사이냐 그리고 이게 담보 없는 대출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점적인 대상이었음.
○ 남욱이 검사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진술했다는 시기 이전에 유동규와 남욱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맞는지?	○ 그러함. 지금 남욱 증인의 진술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검사에게 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얘기한 부분이 많음.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음.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법정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예정임.
○ 남욱 유동규 녹취록("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다 짠거야 선거 3일 전에") 제시, 이 녹취파일들은 적있는지? 수사는 2023년 8월에 착수했는지?	○ 유동규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녹취파일임. 2023년 4월에 유동규와 남욱이 대화한 것임.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고 김만배씨의 금품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항을 수사한 것으로 2023년 여름 이후 가을 무렵 시작한 것임.
○ 2021년 10월 9일 동아일보는 정영학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알고있는지?	○ 당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사후에 봤던 것으로 기억함.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 맞음. 당시 현장에 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윤석열은 2021년 10월 1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그분임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특검의 수사를 자청하라’라는 글을 게시함. 윤석열은 그분이 바로 이재명이라고 좌표를 찍고, 이후 대장동 그분 보도가 쏟아져 나오게 됨.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보도가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 2021년 10월 14일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녹취록 속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음. 또 국정조사 현장에서 김태훈 당시 부장검사 역시 ‘오보다’라고 밝혔음. ‘오보다’라는 내용도 같이 들었는지?	
○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이렇게 얘기한 사실 녹취록 자체에 없는게 맞는지?	○ 그분이라는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음.
○ 형사소송법이 여러 번 개정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가장 신중하고 가장 적법절차를 지켜 가면서 수사를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 그러함.
○ 국정조사는 법원에서 이미 검찰이 해야 될 걸 다시 두 번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세번 한것을확인하는 절차일 뿐이고, 법원의 판결을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더 존중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나) 남욱 증인(변호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재명이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진술함. 2021년 당사자가 국회소통관에서 밝힌 내용임. 화천대유가 김만배가 만든 회사고 많은 인사가 일을 함.	○ 국정조사장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중을 따질 수 없음. 법률적으로 같은 위증죄임. 재판중이고 수사중인 사건 일부 포함되고 대장동사건 핵심관계자로 내용을 알고 있음. 민간부문은 정영학이 대부분의 구조를 만들었고 공공부문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이 잘 알고 있음.
○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가 이재명 본인일 수 있음. 시간이 된다면 정영학 유동규의 배후인 정진상 김현지 등 불러서 규명해야 한다고 봄.	○ 천화동인 위탁자는 수익권을 가지며, 의사결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는 유동규 측이라고 들음. 대장동 그분이란 표현은 오보이고 확정이익 관련하여 이재명지사 방침은 인정하지만 확정이익 자체가 배임이라 볼 수 없고 다만 유동규가 김만배와 협의과정에서 손해를 끼쳐 그 부분이 배임이라 판결서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기재됨. 7,820억 이익 민간에게 몰아준 것은 사실이 아님. 법인설립자본금이 투자금인 것처럼 호도됨.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1기 수사팀의 조사도 받았고, 2기 수사팀 검사들 조사도 받았는지? 지금 결론은 2기 검사들에 의해서 부당한 조사를 받았고 조작기소를 당했다고 생각하는지?	○ 맞음.
○ 1기 검사들한테는 그런 부당한 대우는 받지 않았는지?	○ 담당 검사한테는 특별히 그런 건 없었음. 다만, 다른 피의자를 수사한 검사님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을 주장하셨음.
○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 잘 모름.
○ 천화동인 1호는 시장 측이라는 말로 김만배가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게 맞는지?	○ 들은 적이 있지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심.
○ 김만배 씨가 편취한 돈은 얼마인지? 증인이 편취한 돈은 1,100억원이 맞는지?	○ 수수료 포함해서 1,500억원 정도임. 그 정도 됨.
○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 지금은 김만배 회장님임.
○ 조우형 씨가 2011년도·2012년도 다 처벌을 피했는데, 당시 조우형 씨가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증인과 김만배 이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프로젝트도 무산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	○ 그렇게 되었다면 진행이 어려웠을 수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로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 조우형과 관련된 수사를 윤석열 중수2과장이 하고, 변호사가 박영수인데 박영수를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 아닌지?	○ 맞음.
○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 줌. 이것은 김만배와 윤석열이 너무나 가깝다는 얘기고 사막에 서 바늘 찾는 정도로 우연의 일치임. 혹시 아는 내용이 있는지?	○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집을 사 주신 건 박영수 고검장이 중간에 소개를 하셔서 사 주셨다고 들었고, 2011년도 일은 박영수 고검장께서 당시에 다 데리고 계셨던 검사님들이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박영수 고검장께서 부탁하셔서 조우형 대표가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다) 조우형 증인(대장동 대출 브로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가 맞는지?	○ 아님. 대장동 사업에 김만배 회장의 부탁을 받고 돈의 조달을 도왔던 계기로 천화동인 6호의 지분이 생겨난 것은 맞음. 그런데 아까 언급된 것처럼 2015년도 4월에 구속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곤궁함 때문에 조현성 변호사한테 준 사실이 있음.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조현성 변호사까지 이 일에 끌려들어 오게 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
○ 2021년도에 강백신 수사팀은 증인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라고 파악을 하고 입건을 했음. 그런데 아직도 기소된 적 없는게 맞는지?	○ 맞음.

라. [4월 28일, 4차 청문회]

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가) 정성호 증인(법무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정원장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방용철 부회장은 김성태가 리호남을 만났다고 진술함. 둘 중 한 명은 위증하는데,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지? 누가 위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확인할 필요가 있음. 공직자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함.
○ 형사소송법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중요사실이 나왔는데, 재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재심하려면 확정판결이 필요함. 추후 판단하겠음.
○ 만나서 돈 줬다는 말 외에 사진 한 장 없음. 이재명은 무엇을 줄 수 있기에 이런 요구를 쌍방울이 받아들이는지?	○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 2023년 5월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진술을 조작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2023년 9월 국회에서 가결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포함된 이화영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음. 체포동의 요구서에는 이재명 대표가 공모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11가지의 주요 증거는 김성태 및 이화영의 진술과 경기도 공문서	○ 적법 절차를 지키지 못한 여러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음. 그래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만, 국정조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생각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임. 위증교사 혐의 역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되었음에도 체포동의안에 포함되었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박상용 검사 혼자 저지를 수 없는 일이고, 수많은 검사가 개입했으며, 한동훈 장관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함.	
○ 평검사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된 것 아닌지?	○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체계상 위에까지 보고되는 것이 일반적임.
○ 조작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 일선 검찰의 일반 수사관의 인사는 장관이 관여하지 않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전체 수사 과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국정조사하고 있는 사건들에서 검찰이 증거조작 증거 은폐, 허위 의견서 작성, 조서 미작성, 수사상황유출 등 수많은 범죄 검사가 해도 되는지? 공범 모아놓고 진술세미나, 직권남용 아닌지? 공소권 남용 등 위법한 수사에 대한 조치 준비하고 있는지?	○ 직권남용 맞음. 위법 부당하고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음.
○ 박상용 검사가 수사현황을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 검찰총장까지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통상 이것	○ 확인한 바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을 일보라고 하며 보고했다는 데 확인한 바 있는지?	
○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 상황을 대검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일일보고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고되었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지휘를 했다고 볼 수 있음. 장관님의 의견은?	○ 당시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선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가끔 영장청구나 재판결과 보고가 오지만, 특정사건을 보고하라는 경우는 없고, 법무부 차원에서 사건을 아는 차원이었지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은 없음.
○ 쌍방울 사건에서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변호사비 대납사건 등이 반복적인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로 확대되기 시작함.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향후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의견은?	○ 부당했고 충분히 비판을 받을 만 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 중이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검사가 공소권을 통해 재판부가 판결할 사항을 운영하고 잇는 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검찰권을 남용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특정인을 표적 수사하고 자백을 요구하여 양형을 거래하는 등의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함.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현재 이재명 대통령 관련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이 있는데, 전	○ 국정조사 관련하여 대통령의 어떠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음. 본인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자는 공소취소를 못하고 1심이 진행 중인 후자에 대해서 공소취소가 가능하니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것은 아님.
○ 증인이 있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증거도 다 제출되었으니 대통령이 억울하면 재판 재개를 통해 무리한 기소인지 아닌지를 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는 게 아닌지?	○ 재판 재개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음.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해서 인권침해점거 TF에서 일부 나오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나오고 있어 점검해볼 생각임.
○ 수원고검의 감찰 보고서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가 3번의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 보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대검 감찰부장이나 감찰부의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음. 수원 집단 퇴정 관련하여서도 관련 기록들을 법무부로 이관받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 수용자 출석 요구 및 조사 지침을 위반하면서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 조치를 확실히 해주시길 바람.	○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음.
○ 검찰이 있는 증거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으로 대부분 기소한 이 상황이 검찰의 어떠한 의도 없이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청문회에서 방용철 증언으로 검찰의 거래 정황도 드러난바, 쌍방울 공	○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범들을 회유·협박하여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게 하고 나머지 혐의는 눈감아 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듦. 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시길 바람.	
○ 법무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안타까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 저도 참담한 심정임. 국정조사 결과, 법무부 인권침해 TF 및 특별점검팀 조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검찰의 수사 행태와 관련한 종합적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4월 14일 청문회 당시 2020년경 방북 초청장이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에게 전달되었다는 증언이 있었음. 통일부 확인결과,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5월 북한 보건성이 이재명 경기지사, 김한신 대표, 홍익표 의원 등을 초청하는 통지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실은 KBS에서 보도도 이루어짐. 김한신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이러한 내용을 수사	○ 당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서류를 입수했다면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경위를 파악해야 할 의무가 검찰에게도 있을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내용에서 제외하였음. 방북을 위한 대금을 송금했다는 프레임을 위해 유력한 증거와 증인을 선택적으로 제외한 것임.	
○ 판결은 뒤집을 수 없다는 것, 북으로 800만불이 갔다는 것, 서해에서 국민이 소사당한 것, 수천억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들을 여당이 비호한다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을 것임. 이것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임.	○ 무너진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함.
○ 윤석열정권 8건의 기소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함. 8건 중 1~2건만 부합하고 나머지는 반대증거나 중립증거가 있음. 검사의 정당한 공소권행사가 아님. 특검이 이 부분을 판단해야 함.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취사선택한 것인지 따져야 하는데, 불법기소라고 생각함.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며 불법체포감금이고 독직폭행임. 지금 검사들은 기소편의주의에 숨어서 진술에 기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함. 하지만 구속과 압박에 의해 허위진술한 것이고 다른 증거들도 중립증거에 불과함.	○ 핵심은 공정과 균형이고, 그동안의 행태는 공소권의 남용이며 차제에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함.
○ 교도관들 챙겨주어야 함. 국정조사에서 통화녹취록도 공개하	○ 검사의 지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 법무부 직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등 교도관들이 해온 역할을 인정하고 보호조치 해야 함. 교정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기 바람. ○ 5공 청문회는 정치군인에 대한 거고, 이번 청문회는 정치검사에 대한 것임. 윤석열 정권은 150명의 정치검찰 군사퍼레이드를 했음. 어마어마한 군단으로 이재명 제거작업에 들어갔던 것임. 특검 통해서 밝혀야 함.	모두가 지금 장관이 교정에 제일 관심이 많다고 인정하고 있음.

(나)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재판은 판사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검사가 재판할 수 없는 사이즈다', '부지사는 시간이 다 되어 구속 기간 만료로 나갈 거다' 등 판결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재판장이 청구할 수 있는 사이즈냐 부분과 보석 요구 부분 다 부적절하다고 지난번 답변 드린 바와 동일함.
○ 검사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인지 조작 기소인지 판단하려면, 판사가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맞음.
○ 검찰이 별건 수사로 원하는 진	○ 객관적 증거, 증인 진술 등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술 받아내고 선별적으로 압수·수색한 증거로 기소하는 경우 법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다)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법무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서 하고있는 내용들이 위로도 다 보고가 되는지?	○ 개별검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다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건 맞음.
○ 박상용 검사와 국민의 힘과 가짜 청문회를 밖에서 했는데, 그때 자신은 부장검사에게, 그리고 차장검사에게, 검사장에게 그리고 대검으로 매일 보고한다고 이야기 했음.	
○ 검찰이 조작 기소, 조작 수사했는지?	○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하게 공소유지하는 책임을 갖고 있음.
○ 이번 국정조사 결과를 특검에 넘겨 수사하고 결국 공소취소까지 이어진다는 예측에 대해 검찰 간부로서의 입장은 어떤지?	○ 이번 국정조사에서 공소취소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현재 맡고있는 재판들에 대해 객관 의무를 갖고 공소유지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임.
○ 성실하게 기소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검찰의 민낯, 충격적임. 조작 기소 매커니즘은 타깃을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정하고 주변을 털어 죄에 맞추고 증거조작, 진술 조작까지 이루어짐. 증거조작 시 형법 제155조 위반 맞는지?	
○ 검찰 수사관련 보고 사무규칙상 통상적으로 보고는 발생보고・수리보고・처분보고・재판결과보고 4종이 있는데 맞는지?	○ 규정에서 유형을 그렇게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단계에 있어서 보고・협의・의사결정 받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쌍방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수사상황을 비공식적 형태로 보고했다는데 알고 있는지? 수사하면서 이런 경우를 보았는지?	○ 아님.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 당시 상황 평가를 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대검에서 대통령실에 사건 보고는 하지 않음.
○ 윤석열 정권 당시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이재명 대표 사건의 수사 경과를 대검, 검찰총장선에 보고한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는지?	○ 없음.
○ 2차 수사팀으로 변경되면서 재창이형이 실장님으로 녹취록을 조작한 것임. 조작된 게 맞는지? 재창이형으로 들리는지?	○ 녹취록 파일 전체가 법정에 제출되었고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재창이형으로 들림.
○ 검찰이 공소권을 가지고 남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 국정조사 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고 있음.
○ 검사는 기소한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지, 공소유지를 해야하는	○ 공소유지 해야 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 법원에서 전례없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해놨는데, 검찰이 재판 재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것은 공소유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 책임 방기가 아니라 그 부분은 소송 지휘권의 영역이라고 생각함.
○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하면서 공범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음.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검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료가 있음에도 검사들이 해당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고 이후 2년이 지난 2025년 1월에 모두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그 사유 대부분이 증거불충분임. 기소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 유죄입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는바, 이 사건에서 증거가 이렇게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검사들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함.	○ 나중에 설명드리겠음.
○ 검찰 임관 시 선서를 하는데 검사들이 벌여 온 일들이 선서 내용에 부합하는지? 검찰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안타까움.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 관련 재판에서 최근에 금감원 자료에 대한 문서촉탁을 신청했고, 자료가 도착하면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검찰의 요청으로 금감원이 조사하였고, 금감원은 유죄 혐의를 확정하면서 관련 금액이 100억 원대가 넘는 금액이라고 하였음. 수원지검과 협의하여 금감원 조사 자료를 수원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제공하고 금감원은 조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합의되었으나, 계속해서 자료 제공이 지연되었고 패스트트랙으로 통보까지 하였음. 그런데도 2년 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렸음. 특히 금융감독원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바, 이 부분을 철저히 살펴보시길 바람.	○ 알겠음. 최근 금감원 자료에 대한 촉탁을 신청했고, 자료가 도착하면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함.
○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	○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렸음.
○ 금번 국정조사에서 진행한 현장조사 당시 김경완 검사실에 방문한 적 있음. 검사집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람. 증인은 종종 그러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진술한 적 있는데, 현장조사 영	○ 참여의 의미라는 점에서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상을 보고 실제 조사가 가능했다고 보이는지?	

(라) 김호홍 증인(국가정보원 2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정원에서 작년에 세 차례 특별감사를 했음.	○ 작년 한 차례 특별감사를 했고, 정보위 등에 보고를 세 차례하였음.
○ 국정원장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 지난 4월 3일에 국정원장의 리호남 행적 관련 보고는 감사결과와 객관적 확인한 사항을 보고한 것이고, 법원과 검찰에 미제출된 새로운 사실임.
○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 7월 22일에서 24일까지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고, 7월 26일에는 또 다른 제3국에 있었다는 게 저희가 확인한 사실임. 나중에 필요하신 경우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음.
○ 리호남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에 없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해주시길.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리호남이 제3국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고, 그때 같이 있던 사람도 알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있음. 그리고 7월 26일에도 필리핀이 아닌 다른 제3국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음.
○ 이종석 국정원장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하는데, 방용철, 김성태 등의 법정 진술과 배치됨.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의 경우에도 국정원 자료를 보면, 당사자가 북한 측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다가 거듭된 추궁을 받자 월북이라고 답한 것뿐이고 국정원도 처음에는 자진 월북으로 보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닌지? 이렇게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정치 관여 금지 원칙에 반하고, 내부감찰 실시 등 역시 정치행위임.	○ 특별감사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 특별감사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정치 개입이라는 지적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봄. 거두어 주시기 바람. 서해공무원 사건 역시 국정원은 자진월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유관기관인 해경 등이 판단한 것임. 알아서 잘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함. 국정원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음.
○ 국조특위 발언만 보아도 25일 리호남 일정이 비어있음을 알 수 있고, 리호남의 위조여권 활용 이력을 입수한 바 없음. 리호남 부재설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	○ 확인된 것만 말하고 있음.
○ 계엄 당일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2024년 가을 대규모 간첩 사건을 만들려다 실패하고 특정 직원을 간첩으로 조작하려 함. 블랙리스트 사	○ 특검에서 파견요청 했는데 지휘부에서 승인 안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님. 특검에서 요청이 있었고 법적 문제를 검토 중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건 추가 수사해야 하며, 증인은 지휘부에 돌아가서 대응해야 함.	

(마) 이찬진 증인(금융감독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쌍방울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과정이 기괴함. 검찰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가지 않은 쌍방울 불공정거래 관련 유죄 증거가 있음. 증인이 일관되게 이런 취지로 증언한 것이 맞는지?	○ 맞음.
○ 금감원 현장조사 당시 임원 진술을 통해 이복현 원장이 수원지검의 수사 요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조사를 축소하거나 추가 수사 요청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남.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 태도와 금감원장의 수사 방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요청받은 15개 항목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이며, 배임·횡령 등은 금감원의 권한 밖으로 형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임.

(바) 이정현 증인(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원고검에서는 이화영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는지?	○ 맞음.
○ 2번에 걸쳐 대검에 보고한 것이 맞는지?	○ 3번 보고했음.
○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 맞는지?	○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해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대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3번에 걸쳐 보완 조치 요구가 내려온 것이 맞는지?	○ 맞음.
○ 대검 감찰부에서 보완 조치를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 대검에서는 해당 사안은 검사의 자유 재량행위라고 판단했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보고 의무 위반이 맞는지 등을 중점으로 요구한 것으로 기억함.
○ 의원면직이 되지 않은 검사에 대해서 사직서가 제출된 상태이면 징계하면 안 된다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맞는지?	○ 맞음. 전 형사6부장에 대해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음.
○ 대검 감찰부의 보완 조치 요구를 수긍할 수 있었는지?	○ 전혀 수긍할 수 없었음.
○ 최근 대검 감찰부에서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이 났는데, 이는 수원 고검의 의견과 정반대인데 어떤 생각인지?	○ 전혀 동의할 수 없음. 기본적으로 검사의 의무 위반이라고 보임. 징계가 아님을 강요한다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생각이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집단 퇴정 감찰 과정에서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이 수사기록을 방기한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그 기록 중에는 김성태 회장의 녹취록도 있음. 이러한 녹취록을 봤으면 이화영 증인을 기소할 수 없고 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기록에 표출하지 않고 법원을 속인 것으로 보임.	○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대검 감찰부에서 승인한 것인지?	○ 아님. 자체 진상조사 중임.

(사) 이윤환 증인(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부장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성태의 매제인 김태헌 증인이 이윤환 검사 등이 수사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을 가지고 압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하였음. 수사과정에서 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조사받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인지?	○ 언론보도를 보시면 당시 태국으로 도피했던 김성태, 김태현, 양성규 등의 황제 도피 의혹이 있었음. 그런 내용을 질문한 사실이 있음. ○ 유흥업소 종사자까지 생일 파티에 불러서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이 범인 도피 조력자인지에 대한 질문은 태국에서 압송되어 온 피의자에게 검사로서 질문할 수 밖에 없는 것임.
○ 김태헌씨에게 사과할 생각이	○ 김태헌 씨는 2023년 1월에 압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없는지?	송되었는데, 그 전에 이미 이혼한 상태였음. 이간질을 목적으로 질문한 바 없고, 2023년 1월에는 본인이 김성태 증인에 대하여 조사한 적도 없었음. ○ 당시 범죄를 저지르고 황제도피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023년 7월 추가 기소 당시에는 본인이 김성태 증인을 조사한 것은 맞음. 당시 사채업자가 쌍방울을 인수하여 각종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조사하면서 원칙에 따라 수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과도한 것이 있었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음. ○ 김성태 회장의 동생과 범인 도피죄로 구속된 것은 언론 보도로도 확인할 수 있음.
○ 쌍방울 횡령배임 주가조작 수사 담당자인데, 금감원 현장조사하니 증인이 압수수색 요청을 받았다고 함.	○ 2023년 1월 금감원에서 가져왔는데 부적법해서 돌려보냄. 7월에 받는 과정에서 검찰 자료로 자문을 구하고 공문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금감원이 패스트트랙 원해서 협의하다가 패스트트랙으로 받음. 압수수색 얘기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음. 자료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주면서 자문을 맡겼으며 금감원 자료를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음. 이미 수사기록을 갖고 의뢰를 한 것임.
○ 금감원은 조사종결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증인 이야기에 따르면 압수수색할 일 자체가 없는 거 아닌지?	○ 금융자료를 금감원에 검찰이 제공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임.

(아) 이진하 증인(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원지검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 맞음.
○ 2023년 5월 직원 배치표를 보면 수사지원 수사과 소속인데 당시 박상용 검사실에서 근무한 것이 맞는지?	○ 5월에는 맞음.
○ 당시 이화영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보면 증인의 날인이 있는데, 배치표와 다르게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 총무과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5월 22일과 25일, 수사보고서에 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당시 설주완 변호사가 출입내역이 없음에도 변호사 참여하게 진술을 청취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왜 기재되어 있는지?	○ 그 부분은 잘 모르겠음.
○ 5월 17일 출정 일지를 보면 이	○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시간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이 20시 30분에 수원지검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이 작성한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르면 18시라고 되어 있음. 왜 시간을 조작해서 작성했는지?	조작할 이유가 없음.
○그 날 공범들하고 같이 있었는지?	○그 당시 어떻게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음.
○당시 피신조서 작성이 되지 않았는데 왜 거짓 증언하는지?	○피신조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음.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
○수사보고서 혹은 확인서를 단 한 번이라도 사후에 피의자를 불러 날인해달라고 하여 작성한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1~2번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음.
○이화영 부지사 증언에 따르면, 면담 보고서 등의 양식이 모두 똑같고 사인도 다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음. 해당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음.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 조사실이나 창고에 공범들을 모아둔 적이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음. 한 번에 모여 동시에 조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조금 전 수사과정 확인서를 한두 차례 사후작성했다고 증언한 것 맞는지?	○다음날에 작성했을 것임.
○사후 작성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심각한 범죄인 것 아는지?	○당시 너무 바쁜 상황이라 깜빡한 것이고 고의는 아니었음.
○“2023년 5월 17일 연어회덮밥	○당직실에서 받아온 것은 맞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을 시켰고 이진하 수사관과 받아왔다"는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는데 같이 받아왔는지?	나, 평일 수요일이 아닌 휴일에 받아온 것으로 기억함.
○ 수사관 생활 중 평일에 외부음식이 반입된 적이 있는지?	○ 특별수사는 그때 처음 참여해 보았고 평소 일반 검사실에서는 평일 저녁조사를 한 적은 없음.
○ 그런데 실제로 저녁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 저녁조사가 있었으니 주문하고 받아왔을 것임.
○ 김성태의 검찰청 출입이 1년간 184회, 박상웅의 검찰청 출입은 10개월 간 146회로, 박상웅은 김성태 출입 시 항상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상적인 참고인의 출입이 맞는지?	○ 검사가 소환하라고 하여서 한 것으로, 김성태 회장의 기억이 애매할 때가 많았음.

(자) 이시원 증인(前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쌍방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원지검 형사6부,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직접 보고한 적이 있는지? 이재명 대표 사건의 일일상황 보고라고 하면서 검사실 조사내용, 특이사항, 향후 조사, 증거분석 일정 등을 보고	○ 21일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던 동일 이유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획단계부터 수사진행과정 모든 것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윤석열 정권 당시 4.28~4.30.까지 사흘간 '쌍방울 그룹 횡령 등 사건 수사' 상황을 일일보고 형태로 보고했음. 5.1. 수사계획서까지 포함되어 있음. 일보 받으셨는지?	○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림.
○ 수사상황 보고받은 게 증인과 무슨 관계인지? 증언거부 사유가 없으니 고발되어야 함. 역사적 책임감 없이 비겁하게 나가고 있음.	○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수사 등을 보고받았는지는 증언거부 사유임.

(차)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이제명지사 방북 비용을 위해 대북송금한 것이 맞는지?	○ 재판 중이므로 답변 거부함.
○ 언론을 통해 이제명지사와는 공범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함.	○ 재판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와는 관련이 있으나, 그분을 본 적도 대가받은 것도 없어 공범을 부인함.
○ 이제명지사와 통화는 몇 번했는지? 이제명지사와는 무관한 것인지?	○ 재판 관련된 것은 재판에서 말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심양에서 이화영을 통해 통화한 적 있는 것 아닌지? 증인이 돈 되는 것 알고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한 것 아닌지?	○ 재판 중이므로 답변 거부함.
○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 만난 것이 맞는지?	
○ 당시 돈을 7,000만불 주고, 30만불은 도박으로 못준 것 아닌지? 결국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 준거 사실 아닌지?	
○ 박상용 검사가 기소한 것이 조작 기소인지? 연어, 술 파티해서 거짓 증언한 것인지? 증인이 형을 받고 유죄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닌지?	
○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이제명지사가 보고받고 관여한 것 아닌지? 이제명지사가 보안사항이나 과도한 북한 요구사항을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만들고 있다고 발언하였음. 검찰은 조작 기소가 아닌 진술규명을 위한 수사를 한 것임. 쌍방울이 그 당시 돈을 준 것은 대북제재 및 남북협력교류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외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증인이 이에 대해 왜 말 안 하는지?	○ 불러서 나왔음.
○ 증인은 검찰 조작수사의 공범	○ 검사가 압박해도 대응할 수 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인지 희생물인지 의문임. 구치소 접견 녹취록 등에 의하면 김성태 증인이 센 압박수사를 받은 것 같고, 어떤 수준의 압박을 받았는지?	으나, 가족, 동료들을 구속하는 것에 원망했음. 당시 정신과 약으로 화가 많았음. 그 정도 표현은 보통이라고 생각함. 검찰 비호할 마음은 없음.
○ 임원 17명 구속에 대해 굉장한 압박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 혼자 조사하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가까운 친인척, 지인들을 구속한 것은... 존경하고 지지한 분들에게 죄송함. 속죄하고 있음.
○ 이미 대북송금사건은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작년 국정원이 세 차례 특별감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있음.	
○ 오늘 국방부차관이 대참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김성태 증인이 위원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다수의 증언이 있어서 물어본 것임. 김성태 증인은 아까 위원장실 부속실이라도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맞는지?	○ 모르겠고, 오른쪽 사무실에 물을 마시러 들어갔다 나옴.
○ 대북송금 관련하여, 김성태 증인이 주가조작을 위해 돈을 송금하고, 카지노에서 도박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는지?	○ 사실이 아니지만, 재판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음.
○ 국정원 특별감사결과에서는 김성태와 리호남 미접촉가능성이 있고 카지노와 사기도박 가능성이 있는데, 맞는지?	○ 사실이 아니지만, 재판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배상윤 회장은 지난 4월 14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배 회장 본인은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 목적에 따른 것이며 경기도와 무관하고, 당시 경기도지사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는 SBS 인터뷰 내용이 사실임을 재확인한다”는 확인서를 보내왔음. 알고 계신지?	○ 네
○ 또한, 배상윤 회장이 불출석 이유에 대해 말했음. 모든 일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수사, 즉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수사에서 비롯되었음. 귀국해서 회사를 지키려했으나, 수사의 최종 목표가 자신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를 변호인을 통해 전해 듣고 귀국이 어렵다고 판단했음. 이후 수사가 확대되며 장기간에 걸쳐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루어졌고, 관련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검찰은 경기도 대북송금에 연결지어 별건의 수사를 이어감.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마다 이재명 지사 이름이 반복적으로 거론됐으며, 임	○ 네,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직원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비인간적인 수사의 행태를 보였음.	
○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그룹도 거의 저렇게 당한 건 사실이 아닌지?	
○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이재명 방북이라는 표현이 없고, 이재명 방북 대가도 없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을 만나서 북한하고 사업을 같이하자고 논의한 적도 없음. 그 세 가지는 사실인지?	○ 재판과 관련된 얘기는 할 수 없음.
○ 이재명 지사를 만나서 방북 문제라든지 대북 사업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는지?	○ 뵌 적이 한 번도 없음.
○ 2019년 5월 김성태 증인이 리호남을 중국 어디에서 만났는지?	○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림.
○ 못 만났는지?	○ 재판과 관련된 것이라 답변 못 드림.
○ 국정원 기록에 따르면 2019년 5월 6일 리호남은 중국 대련에서 입원해 5월 10일에 수술을 하였음. 그리고 퇴원 후 5월 12일 열차로 북한에 들어갔고, 5월 14일까지 평양에 체류했음. 리호남과 만난 사진이라든지 리호남이 직접 서명한 문서가 있는지? 없지 않은지?	○ 답변 못 드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5월 12일에 방용철이 가서 남북한의 협력사업을 거의 다 싹 쓸이 하다시피 한 매우 중요한 날인데, 리호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을 못하는지? ○이 자리에 리호남은 없었음. 리호남을 추적한 객관적인 증거가 2019년부터 있었음. ○2019년 7월 1일에 작성된 쌍방울 내부 자료에는 '이재명 관련 추진'이 아니라 '회장 방북 추진'이 최우선 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300만 달러의 자금 용처도 '방북 의전비'로 기재되어 있음. '방북 의전비'라는 표현은 국가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업 내부 용어임. ○방용철은 7월 24일 리호남을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리호남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음. 그리고 7월 25일, 26일에는 중국에 있었음. 그 당시 국정원은 마닐라 3개 호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음. ○증인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매우 좋아했었고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죄송하지만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음.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다가 옆에 있는 분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 아무 말을 하길래 싸우다가 파출소에 갔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 이 사건 이전에도 검찰과 악연이 많이 있었는지?	○ 5번 정도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악연이라기 보다는 운명임.
○ 증인이 대북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바뀌는 틈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해보려고 했던 것 같음. 쌍용자동차 인수를 검토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북 사업도 비슷한 차원에서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 네
○ 그런데 갑자기 검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대납으로 끌고 감. 증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법정에서 이미 공범관계가 아님을 진술했음. 나머지 부분은 재판과 관련되어 답변 드리기 곤란함.
○ 이 쌍방울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 전에 변호사비 대납부터 이야기가 되면서 계속 성격이 바뀌면서 수사를 계속 당한 거 아닌지? 수사를 당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 2022년도 말부터 해서, 4~5년 된 것 같음.
○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해서 대북송금까지 끌고 온 것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와 엮으려고 검찰에서 계속 몰고 갔던 것이 아닌가 싶음. 증인께서는 이재명 지사를 본 적도 없고	○ 네 맞음.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공범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람.	
○ 방용철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봤다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돈을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회장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했다라는 증언을 한 것을 보았는지? 사실과 같은지?	○ 방송으로 보았음. 재판 관련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려움.
○ 당시 필리핀을 간 것은 맞는지?	○ 재판 관련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려움.
○ 조경식 씨를 아는지?	○ 알고 있음.
○ 증인이 필리핀에 있을 당시 조경식 본인이 같은 호텔방을 썼고,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 서울고검 TF에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있어 답변하기 어려움.
○ 국정원 직원 증언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까 주가조작을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이 맞는지?	○ 주가조작이라면 어떤 범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태국을 다녀온 뒤로 조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음.
○ 금융감독원에 쌍방울 주가조작 관련 자료가 있고, 당시 검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증언을 봐주려고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라는데, 증인이 주가조작을 위해 800만 달러를 썼는지?	○ 주가조작을 하려면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조작할 이유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5월 7일 연어 회 술파티 관련 주장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관련하여 수사받았음.
○당시 실제로 직원이 사와 식사를 하고, 증인은 그 안에 있는 소주를 마셨는지?	○당시 술을 먹지 않았고, 먹는 것 관련 질문은 그만해주셨으면 좋겠음.
○이화영 부지사와는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되었는지?	○20년 조금 넘었음.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에 근무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의 관계에서 증인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라고 말할 그런 관계인지?	○자기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오늘 위원장 부속실에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CCTV 열람을 위해서 증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협조해줄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고 결정하겠음.
○오늘 위원장실 가서 위원장을 본 적이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음.
○금융감독원 현장조사 결과, 수원지검의 요청에 의해서 쌍방울 계열사들의 시세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수사했던 수천 페이지 수사기록을 봤는데 이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가 없었다는 것인지?	○당시 외국에 있어서 직접 조사받은 적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이 직접 수사를 받은 건 아니더라도 비서실장이나 미래전략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수사를 받기도 하는 등의 사실을 모르는지?	○ 직원들이 조사를 받은 것은 후에 알았음.
○ 김영수는 뭐하는 사람인지?	○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임.
○ 엄용수 비서실장이 수원지검 조사에서 IR 자료, 쌍방울의 투자 협약서 같은 자료를 만들어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고, 증인이 북한과 합의한 것을 가지고 IR을 하면서 PR을 하고 다녔으며, 그래서 나노스 주가가 움직였다는 답변 등을 했는데 지금 증인은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왜 그런 것인지?	○ 사실이 아닌 주장을 가지고 질문하고 계신 것임.
○ 2019년 7월 쌍방울 내부 문서에 따르면 최우선적 협의 안건은 '회장님의 방북 추진'이라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방북 문제를 아태 평화교류협회와 함께 3자 합의로 추진하자는 보고를 받았는지?	○ 답변드리지 못하겠음.
○ 금융감독원 현장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이복현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쌍방울 주가조작에 대해서 조사하지 말고, 자잘한 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라고 현장에서 부원장보가 답변함.	○ 그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녹취록에 증인이 비서실에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내가 술 한 잔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나와있지 않은지?	○ 독방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음. 그렇다고 실제로 먹은 것은 아님.
○ 검찰이 본인을 수사했을 때 실제 목표가 누구였다고 생각하는지?	○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분이라고 하겠음.
○ 당시에도 본인들을 위한 수사는 아니라고 느꼈는지?	○ 보통 금융사건은 남부지검이나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해야 하는데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것을 보면 목표는 정해져있지 않았나 생각됨.
○ 박상용 검사에게 수사를 받으면서 회유, 압박의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 검사가 기업범죄를 수사하면 압박, 회유는 당연하며, 수원지검에서 수사했던 특수부, 형사6부, 공공수사부, 방산부 등 여러 팀 중 한쪽에서는 공격을 하고 한쪽에서는 회유하거나 잘해주었는데 그게 박상용 검사였음. 개인적으로는 박상용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했고 의욕이 넘치다 보니 본인을 수시로 불렀던 것으로 생각됨.
○ 검찰이 조작기소한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 조작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음.
○ 연어 회 술 파티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는지?	○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음.
○ 방용철 증인이 거짓말을 잘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	○ 30년 된 신뢰하는 친구임.
○ 방용철 증인이 필리핀에서의	○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일을 증언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닌지? 일말의 양심과 용기로 진실을 이야기한 것 아닌지?	답변드릴 말이 없음.
○ 2023년 1월 17일 귀국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나는 이재명을 모른다. 이재명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답변함. 그런데, 2주 뒤인 1월 31일 (대북송금 비용이) 방북비용-스마트팜비용-대납이라고 하여 진술이 바뀌었음. 그 계기가 무엇인지?	○ 정확한 귀국일자는 기억나지 않음. 태국 이민보호소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구속되었고, 당시 여당 의원님들의 회유 또는 제의가 있었음.
○ 요약하자면, 태국 이민보호소에 있을 당시에도 여당으로부터 많은 회유가 있었고, 귀국해 보니 많은 주변인을 구속하는 등 압박하여 증인이 진술을 바꾼 것인데, 직접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검사가 이야기한 것인지?	○ 제가 진술을 바꾼 것은 없음.
○ 질문을 바꾸어 해보겠음. 북한에 돈을 송금하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와 상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있는지? 북한에 자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과정과 이재명 지사는 단절되었다는 것인데, 맞는지?	○ 없음. 관련 내용은 재판이나 조사에서 답변하겠음. ○ 단절이라는 단어보다는 뵌 적이 없음.
○ 5월 17일 오후 증인의 접견 녹취록을 보면, “아무튼 오늘 결전의 날이야. 소주라도 한잔 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고 나서 이야기하면 편할 텐데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물 있잖아, 석수"라는 부분이 있음. 증인은 술 파티가 없었다고 증언하지만, 증인의 접견 녹취록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임.	
○ 다음으로, 출정 일지임. 보통의 출정 일지는 화장실 가고 식사한 시간까지 작성함. 그런데 5월 17일의 출정 일지를 보면 20시 30분까지 식사한 내용이 없음. 굶었다는 말인지? 이 날 외부음식이 반입된 증거임. 아니라고 답변하지만 양심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으로 봄.	○ 양심껏 답변드린 것임. 술을 안 먹었는데 술을 먹었다고 할 수는 없음. 구속되어 있으면서 소주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음.
○ 5월 17일 이진하 수사관이 작성한 면담 보고서에 "이화영 부지사가 스마트팜 전반적으로 다 진술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정리하겠다"는 면담 내용이 있고, 증인과의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음. 그러므로 그날을 기념일로 선택했다는 것으로 봄.	
○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하다 발각되어, 이를 회유하여 대북송금 수사로 몰고 갔다는 것임. 그런데, 주가조작-작전-을 하려면	○ 특별한 이익이 없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치밀한 기획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지? 부정거래를 통한 특정이익이 있는지?	
○ 주가조작은 주가의 목표액이 있어야 하는데, 2020년 1월 21일에 1,025원대의 주가가 2월 3일 1,255원으로 상승한 것이 전부임. 내부자거래나 부정거래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그걸 담합을 해서 작전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임.	
○ 이재명 대표를 잘 몰랐다고 답변하였는데, 은밀성을 가지고 하향식(Top-down)으로 진행되는 대북사업은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 파트너가 있으니 증인은 이재명 당시 지사와 직접적 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직적·종속 라인에 있는 평화부지사만 만나면 되었던 것으로 봄.	
○ 조경식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이 너무 많은 핍박을 주고 자기 주위에 친동생, 처, 아이들까지 압박하니 당시 김성태의 심정은 죽고 싶다는 마음이었고, 수사하는 담당 검	○ 와전된 이야기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참한 상황으로 유서를 지인에게 보낸 사실은 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를 13층에서 끌어안고 뛰어내리자는 이야기를 하였다.”, “쌍방울 자회사를 주식 거래 등기를 시켜놓고 그룹 하나 박살 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압박하니 어느 누가 회유당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든 적은 있는지?	
○ 어떤 검사에게 수사받을 때인지? 수원지검 검사들 악마들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인지?	○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음. 유사하게 답변하였으나 확대하여 쓴 것으로 보임.
○ 어떤 검사들이 수사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13층 검사인지, 15층 검사인지, 아니면 저기 있는 이윤환 검사인지?	○ 검사들은 다 한팀이지 누가 다르고 할 것이 없었음.
○ 전에 증인이 어떤 검사들을 회유하는 팀도 있고 어떤 검사들은 좀 악랄하게 이렇게 수사하는 팀도 있었다고 증언하지 않았는지?	○ 그때는 그 사람들을 좀 저한테 안 좋게 하는 검사들에 대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검사들은 어차피 한 팀이었음.
○ 김태헌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 사생활로 압박을 받아 힘들었고, 결과적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음. 이윤환 검사님은 위증하고 있음. 저희 회사를 추가 기소할 때 왜 가족을 건드는지 물어보니 김태헌이 태국에서 바람을 피운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않았는지 의문이고, 황제도피 의혹도 사실이 아님.
○ 김성태 증인은 오늘 국정조사에 조경식 증인과 같이 오신 것인지? 위원장실에서 왜 물 마시고 온 것인지?	○ 같이 오지 않음. 의원님과 마주쳤을 때 우연히 뒤에 있었던 것임. 방 입구에 정수기가 있어서 물 마시고 나온 것임.
○ 연어회 파티 기사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연어회랑 술 마신 적 있는지?	○ 솔직히 웃었음. 먹은 적 없음. 구치소가 옛날같지 않아 담배나 술을 상상도 못함.
○ 회사 키울 욕심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일 텐데 800만불을 이화영만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 재판 관련 사항이라 답변 어려움.
○ (방용철 증인의 증언화면제시) 방용철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임. 이화영을 뭘 믿고 그렇게 한 것인지? 이화영만을 믿은 것인지?	○ 지위 때문이 아니고.. 그냥 친한 선후배여서..
○ 방용철 증인 상태 어떤지	○ 방용철 국정조사 받을 몸 상태가 아님 2년간 구속 이후로 공황장애 우울증 앓고 있음. 친구인데 통화하면 공범끼리 통모했다고 뭐라 할 것 같아 통화도 못하고 있음.
○ 김영남 쌍방울 부회장이 친동생 맞는지? 그 다음 박희승은? 양선길은 사촌 형이고 쌍방울 근무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게 가족들 검찰수사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었다고 말한 것 맞는	○ 김영남이 아니라 김영모임. 박희승은 누군지 잘 모르겠음. 양선길은 저희 사촌 형임.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 (증인의 녹취록 제시) 녹취록과 같은 발언한 사실 있는지? 녹취록 발언 취지가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진짜 주었으면 주었다고 말이라도 하고싶다라는 취지인 것인지? 실제로 돈을 준 적 없는지?	○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주는지..뵌 적이 없는데..
○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보이고, 소위 말하는 가족들을 수사하면서 도륙냈다라고 할 정도에 수사를 당했다는 것들로 인해 감정이 쌓여있던 것 같은데 맞는지? 검찰 수사가 정해놓은 목표를 정해놓고 몰아간 것으로 느낀 것인지? 재판 법정에서 대북송금과 이재명은 관련 없다고 발언한 것 맞는지?	○ 당시에 감정이 좋지는 않았음. 수사하는 검사들은 인간적인 부분까지는 안건들임. 죄를 악날하게 까발리는 수사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면, 예를 들어 제 입장에서는 동생을 집으로 빨리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수사가 자기들 생각에 맞춰가는 것이 있음. 제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부인한 취지임.
○ 이화영 증인은 반복하여 연어회 술파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거짓 진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 그 이유는 모르겠음.
○ 방용철 증인은 일관적으로 리호남이 필리핀에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용철 증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지?	○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국정원이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기록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웃고 있지 않은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이 재판에 나가, 2019년 심양에서 이화영 부지사와 술을 마시다가 이재명 지사와 통화하였고,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사건을 알고 있었으며, 통화시 북한과의 사업을 잘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 아닌지?	
○ 재판에서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똑같이 답변하고 있음.
○ 이제까지 불출석하다가 갑자기 출석하게 된 것은 민주당 측의 회유로 인한 것이 아닌지?	○ 그렇지 않음.
○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부지사로 하여금 증인과 소통하게 한 것은 UN대북제재로 인하여 북한에 금전을 제공한 것이 남북교류협력법, 정치자금법, 외환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임.	
○ 법정에서도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았는지?	○ 통화내용의 경우 재판과 관련되어 있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정에서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므로, 완전히 사실이라고 한 것처럼 말하기는 어려움.
○ 증인이 위원장실에서 나온 것을 본 사람이 2명임. 위원장실 문 앞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해야 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리호남에게 돈을 언제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 재판 중이라 답변하기 어려움.
○ 어제 라운지에서 소주 마시고 국민의 힘 의원 만났는지?	○ 만난 바 없음.
○ 방용철, 이화영, 김성태가 한 방에 있었는데 밥은 먹고 술은 안 먹은 것인지? 박상용 검사를 악마라고 하지 않았는지?	○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음.
○ 쌍방울과 조선 아태위 간 합의서에 포괄적 합의했는데 이때 경기도가 없음. 5월 12일 자에도 경기도 없음. 김태균 회의록에도 처음에 경기도는 없었고 이후에 들어감. 문건 형식이 다름. 쌍방울은 합법적으로 사업했다고 주장하면 됨.	○ 할 말은 많은데 재판을 앞두고 있음.
○ 조경식 증인과 특별한 관계인지?	○ 알고 지낸 지 37년 되었음.
○ 오늘 아침에도 왜 여기에 왔나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 전혀 관련이 없음.
○ 오늘 오전 대북송금 항소심 재판을 국정조사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요청했다는 기사를 보았는지?	○ 보지 못했음.
○ 증인의 변호인 측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이후로 재판을 미루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전혀 모르는지?	○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전에 재판할 때 변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음.
○ 재판 진행에 관한 요청이 현재	○ 공소기각된 부분을 수원지검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서 기소 조작으로 밝혀지면 증인에게 유리해질 수 있고, 민주당과 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이 맞는지?	서 항소했는데, 그 부분 병합과 관련하여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음.
○ 회장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북송금은 리스크가 있는데 안전장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지?	○ 기업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한 것임.
○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으나, 방용철 증인의 이야기나 기존에 있단 재판 과정에서 확인 사실 등은 증인이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임. 연어 회술 파티 같은 것은 없었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하여 진술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에 영향을 미쳐서 이화영 부지사가 증언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도 말했음. 또한, 증인이 2025년 8월 11일 법원에 출석한 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맞는지?	○ 맞음.
○ 국회에서의 증언은 처음인지?	○ 처음임.
○ 이화영 부지사는 모두 확정판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결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해봐야 아는 것으로 보임. 김성태 증인은 그것에 대해 공범이다 아니다를 평가할 위치가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 오전에 검찰이 주변 인물들을 마구잡이로 조사하면서 협박내지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맞는지? 증인의 접견 녹취록에도 그러한 정황이 곳곳에 보임. 2023년 및 2024년에 검찰이 184회나 불러 반복 조사하면서 지인에 대해 구속하겠다고 했을 때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지점에 대해 억울한 것이 맞는지?	○ 그러함.
○ 오전에 증인이 속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뜻인지?	○ 제 자신이 많이 부족했던 것, 부끄러운 것에 대해 속죄한다는 뜻임.
○ 증인과 가까운 두 분을 뽑으라고 하면, 방용철, 조경식 부회장인지?	○ 방용철과는 원래 친구고, 조경식과는 오래됐지만 자주 보지는 못함.
○ 조경식 부회장은 지난번 청문회에 나와서 해외출장을 가면 김성태 회장과 같은 스위트룸을 쓰면서 투숙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맞는지?	○ 같이 잔 적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음.
○ 방용철씨와는 같이 자는지?	○ 방을 같이 쓰진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상식적으로 방용철보다는 조경식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 비교할 수 없음.
○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가까운 사람과 방을 같이 씀. 조경식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보지 못했다고 했고, 방용철은 리호남을 봤다고 했음. 친구들과 같이 방을 쓰면 이런저런 얘기하게 됨.	○ 방을 같이 쓰긴 했지만, 24시간 붙어 있지는 않았음.
○ 증인이 방용철보다 조경식 부회장이 더 가까운데, 조경식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보지 못했다고 했고, 방용철은 리호남을 봤다고 했음. 그러면 우리는 방을 같이 쓰고 가까운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음.	○ 방용철은 저와 일을 30년 함께 했음.
○ 방용철은 이화영과 공범인데 외환거래법, 국가보안법 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화영은 7년 8개월을 받았음. 그러면 방용철은 검찰과 결탁했다고 생각하게 됨. 그렇지 않은지?	○ 이화영 부지사는 뇌물이 6년이고, 외환거래법이 1년 6개월임.
○ 위중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방용철을 집행유예로 풀어줌. 5월 17일 이화영의 진술이 바뀌면서 적대 세력인 검찰과 결탁한 시점임. 김성태 증인은 이재명 지사를 모르며 한 번도	○ 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본 적이 없지 않은지?	
○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대신해서 돈을 갖다 주는지? 누가 믿을 수 있겠는지? 검찰은 김성태 증인의 가장 약한 고리인 이화영, 방용철 안부수의 약점을 잡아 일종의 결탁을 한 것임.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시길 바람.	○ 의원님 말씀에 동의못함. 방용철이 검찰과 결탁할 게 없음. 방용철은 단순한 뇌물 공여자였음. 제 지시로 이화영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해서 방용철씨는 집행유예 받은 거고 저는 실형을 받았음.
○ 그 부분이 설득이 안 되는 것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김성태 증인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안부수, 방용철은 일관되게 그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임.	
○ 김성태 전 회장의 시기별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최근까지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진술이 계속 바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재판 중이라 구체적 답변은 어려움.
○ 필리핀에서 송명철과 계약하였다면 송명철에게 돈을 주면 될 텐데, 왜 리호남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 아태평화위원회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었고, 쌍방울은 대북사업으로 투자를 한 것임. 대북교류 주체는 다양할 수 있음.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교류를 한 사람이 김문수 지사였음. 이것을 검찰이 무리하게 엮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것임. ○ 김성태 증인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의 피해자임. 김성태 증인을 표적 삼아 17명의 지인을 구속함. 지금 정황증거 숙지하고 있어 물어보는 것인데 특검에서 밝히려고 하는 게 아쉬움. ○ 그간 모두가 죽을 만큼 힘들었음. 그 과정에서 죽으려고 한 사람도 수없이 많음.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진실규명임.	○ 이윤환검사도 억울한 것이 있을 것이고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이화영하고 관계없다고 말못함. 다들 거짓말이라 생각하고 나는 피해만 봤음.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송금했다고 해서 조사받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똑같이 하는 거 같음. 상장폐지되고 소액주주 다 몰락했는데 뭐가 주가조작인지 모르겠음.

(카) 박상웅 증인(前 쌍방울 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 말을 듣고 김성태 회장이 법원 앞 편의점에 가서 법인카드로 술 사고, 담배 사고 한 것이 입·출입 기록에 다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인지?	○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음.
○ 5월 17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수원지검 13층 박상용 검사실에 있었는지?	○ 오후 1시 50분~2시부터 있었고 정확히 몇 시에 검사실에서 나왔는지는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5월 17일에 검사실에 갔던 것은 맞는지?	○맞음.
○마닐라에서 리호남 만났는지? 박상용 검사실에서 술 마셨는지? 민주당이 집권한 상황에서 소주마셨다고 하면 편할 텐데 안 마셨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안 마셔서 그런 것인지?	○그날 술 산 것은 맞음. 개인적으로 마시려고 샀음. 차 안에서 마셨음. 소주 구입 관련해서 구속영장까지 받은 상황임. 맞음. 검사실에서 안 마셨음.
○억울하지 않은지?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이화영은 술 마신 것이 7월이라고 하다가 6월 말 6월 초 등 수도 없이 바뀜. 그러나 그날 제가 마시려고 술을 사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기에 후회됨.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힘들어서 차에서 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편의점에서 사서 바로 차에 가서 술을 드신 것인지?	○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여서 끝나고 올라갈 때 먹으려고 직원에게 소주 3~4병을 사다 놓으라고 한 것임. 나와서 일찍 올라갔으면 올라가면서 먹었을 것이고, 늦게 나왔으면 늦게 올라가면서 괴로운 마음에 먹었던 것 같음.
○수원지검에서 나온 시간이 6시 32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시간이 6시 34분, 소주를 한 병 더 산 시간이 6시 37분, 다시 수원지검에 들어간 시간이 6시 41분임. 수원지검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시간은 2시간 후인 8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시 34분임. 상식적으로 힘들었다면 이후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사 마셨으면 될 것 같은데, 해당 증언은 국정조사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문이 듦.	
○ 수원지검 앞에서 소주를 구매하고 본인이 마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마신 것인지?	○ 검찰 기록으로는 20시 34분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함.
○ 출입기록을 보면 18시 32분에 나가 18시 34분에 소주를 구매하고 다시 18시 41분에 수원지검에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차에 둔 것인지?	○ 본인은 잘 모르겠고 소주를 구매한 직원이 차에 뒀다고 이야기함.
○ 2시간 후 20시 34분에 수원지검에서 나왔는데 그때 마신 것인지? 수원지검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에 직원이 운전하는 차에서 마신 것인지?	○ 그러함.
○ 강남구 삼성동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그 사이에 소주 4병을 마시면서 왔는지?	○ 정확히 기억은 없으나 올라오면서 차에서 마신 것 같고 1병인지 반병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음.
○ 깡 소주인지?	○ 깡 소주를 마신 기억이 수도 없음.
○ 그날 김성태 증인이 “오늘 결전의 날이다. 소주라도”라고 했는데 왜 본인이 마시는지?	○ 당시 회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구속되어 눈물로 세월을 보냈음.
○ 교도관들이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했음. 담배 피는지?	○ 고검 인권침해팀 수사과정에서 던힐 플러스가 구입되었다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여러분이 수사를 받고 가족들이 털린 이유는 이재명 잡으려고 한 것 아닌지? 이재명을 주범으로 해야 하니 제발 도와달라는 박상용 검사의 육성을 들었는지?	이야기를 들었고 이는 비서실 운전 수행기사 담배로 확인되었음. ○ 언론을 통해 들었음.

(타) 하동혁 증인(통일운동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9년 필리핀에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하셨는데 해당 부분을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사업은 본래 쌍방울이 순수하게 대북교류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금전전달과정에서 불법외화반출이 되었던 것임. 당시 필리핀에서 국제행사를 했었는데, 그 행사에 초청받지는 못하였으나 관계자와의 교분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참여하여 안부수 회장과 대화도 나누고 하였었는데, 리호남은 오지 않았음.

(파) 증인A(국가정보원 당시 요원, 주재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정원 문건 내용 중 검찰이	○ 2018년 하반기, 2019년 1월 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수사 중인 스마트팜 비용 또는 방북 의전비용 대납 시점 이후 북한이 경기도를 챙겨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그 이후 북한이 경기도를 배제하거나 안부수가 2020년도 제3차 대회를 경기도를 제외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 바람.	까지 안부수 씨와 같이 일을 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잘 알지 못함. 쌍방울 측에서 800만 불을 북한에 줬다고 이야기되는데, '대납'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대납은 줘야 될 사람이 의무가 있든지 또는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임. 그런 다음 줘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는 것이 대납이 되는 것임. 500만 불에 대해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2018년 10월 방북해서 5~6개 항을 합의해 오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음. 지금은 대북제재 기간이라 현금은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을 생각한 적도, 약속한 적도 없고, 스마트팜 등 현물로 구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음.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해주었음. 실무부서가 있냐고 물어보니 자기를 도와주는 실무부서가 있다고 말하였음. 다시 말씀드리자면 500만 불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북한에 계약하거나 약속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림.
○ UN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	○ 없음. 법정에서 증언했고 이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서 증거확보한 것이 있는지?	영 부지사를 만났다는 보고서가 있어서 제출하였음. 쌍방울은 2018년 11월 말에 갑자기 나타남.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음.

(하) 김국훈 참고인(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 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인 안부수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있음. 검찰은 안부수의 진술을 신뢰하여 기소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하였음. 참고인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안부수가 나이와 학력을 일관되지 않게 말하였다는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해 말씀 바람.	○ 처음 만났을 때는 나이가 62년생이라고 하고, 학력은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와세다대학, 버클리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음. 이후 단동과 신양 출장 등을 함께 다니며 그분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음.
○ 일본 동경 조선학교 지원금과 관련하여 한 달에 5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아태협이 쌍방울로부터 일시불로 6천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한 번만 지원한 것이 맞는지, 나머지 금액의 사용 내역은 알 수 없는 것인지?	○ 쌍방울이 일시불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일본에 지원한 것은 한 차례임. 나머지 금액의 사용 내역은 알 수 없음.
○ 안부수가 경기도 대북사업 보조금으로 받은 15억 원(묘목	○ 경기도와 밀가루 1,651톤, 묘목 11만 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원 5억 원, 밀가루 10억 원)과 관련하여, 참고인이 안부수가 북한과 경기도를 모두 속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림.	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묘목은 11만 주를 지원하였음. 다만 밀가루의 경우 처음 300톤을 지원한 이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마지막에 219톤을 지원하여 총 519톤만 지원하였음. 그럼에도 법정에서는 1,651톤으로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한 밀가루는 519톤뿐이라고 증언하였음.
○ 국정원 문건 내용 중 검찰이 수사 중인 스마트팜 비용 또는 방북 의전비용 대납 시점 이후 북한이 경기도를 챙겨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그 이후 북한이 경기도를 배제하거나 안부수가 2020년도 제3차 대회를 경기도를 제외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 바람.	○ 제3차 국제대회는 기획은 모두 했었으나 2차 대회 때 필리핀에서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자 안부수 회장이 이제 경기도와는 더 이상 대회를 치르지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제3국으로 해서 한다고 기획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기획서를 작성했던 것임.
○ KH 회장인 배상용 회장이 우리에게 “우리는 대북 투자 사업을 한 것임. 이재명과는 무관하고 그것은 그전에 SBS에 방송할 때 말했듯이 이재명과는 무관하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이라고 사실 확인서를 써서 보냈음.	○ 저는 세 가지 의문이 들었음. 첫째, 리호남이 왜 이 사건에 계속 등장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리호남 참사는 필리핀에 가지 않았음. ○ 둘째, 저는 약 200만 달러(쌍방울에서 150만 달러 + 안부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왜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지? 송명철에게 주면 되는데 왜 리호남이 나오며, 이 엄청난 계약의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로 갔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으니 정리해 주시길 바람.	회장이 준비한 50만 달러) 정도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800만 달러(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쌍방울에서 경기도에 대납했다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음. 그렇다면 민경련과 쌍방울에서 체결했던 광물 자원 등 4개 항목에 대해 계약을 한 것인데,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계약금 지불을 안 했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듦. 셋째, 안부수 회장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7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의 형량을 받은 것이 의문임.
○ 합의서에 대한 계약금 내용이 없다는 것인지?	○ 그 부분은 언급이 안되어 있음.
○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지?	○ 분명히 오지 않음.
○ 증인이 그 날 그 현장에 있었는지?	○ 필리핀에 27일까지 있었음.

2)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사건

(가) 정성호 증인(법무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 상황을 대검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일보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고되었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지휘를 했다고 볼 수 있음. 장관님의 의견은?	○ 당시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선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가끔 영장청구나 재판결과 보고가 오지만, 특정사건을 보고하라는 경우는 없고, 법무부차원에서 사건을 아는 차원이었지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은 없음.
○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 및 기소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중 백현동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 동업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배임이라는 것이었음. 그런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권을 들어 동업지분을 요구하면 그게 뇌물 아닌지? 이거야말로 해당 기소 자체가 조작기소, 정치보복임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런 식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구속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임.
○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장 정용환 증인 모르게 엄희준, 강백신 증인이 사건 기록을 입수, 검토하여 송경호 증인에게 보고함. 정용환 증인이 패싱된 것. 직권남용으로 보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엄희준, 강백신 증인에게 해당 기록을 누구로부터 받았냐고 수차례 질의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지 않고 있음. 이는 숨기고 있는 것임. 꼭 밝혀주길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남욱 주장은 2기 수사팀에서 위례신도시에 대해 이주용검사가 녹음했다가 윗어르신이 되었다는 것임. 법무부 내부에서 검토하기 바람.	○ 대검찰청과 검토하겠음.
○ 정재창 공갈 혐의가 지난번 증인신문 과정에서 60억이라고 나옴. 그런데 강백신 증인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중앙지검 수사내용과 종합 검토해야함을 듦. 대장동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 60억 공갈을 영장기각 하는지?	
○ 유동규 뇌물수수 고발사건이 새로 접수되었는데, 기록을 주지 않으면서 '공소유지 등 직무수행의 곤란함을 들어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함. 정재창이나 유동규의 진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하고 기록물을 못주겠다고 한 것임.	
○ 60억 공갈기수 및 30억 미수사	○ 감찰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건,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대범죄임. 양형기준을 보면 50억이상은 기본이 5년에서 9년임. 이 사건의 영장을 어떻게 기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민용을 35억 뇌물혐의로 기소했는데, 공소사실을 보면 정민용은 부정행위를 실행했다고 한 반면, 유동규 부정행위를 실행할 정민용을 채용했다는 것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정민용과 공범인 것이 명백함. 그럼에도 정민용은 기소하고 11억 8,000만원을 받아간 유동규는 기소하지 않음.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임.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표적수사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고, 국정조사 통해 많은 것들이 밝혀졌으므로 저희가 준비하겠음.
○ 이는 명백히 유동규 진술을 유지해서 조작기소를 하기 위함임. 감찰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함.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르면, 도시공사의 타법인 출자의 경우 직전연도 자본금의 10% 이하로만 가능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이 392억원에 불과하여 출자할 수 있는 게 얼마되지 않았음.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증거기록에서 뺀 것임. 살펴봐 주시	○ 그렇게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기 바람.	
○ 누구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됨. 최근 송경호 증인이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대장동 항소포기라고 언급함. 내부감찰을 해야하고, 내부감찰을 못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함.	○ 송경호 증인은 입이 10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됨. 송경호 증인은 당사자임. ○ 국민적 불신 때문에 검찰 개혁 노력이 있는 것임. 가능한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함. 진실은 어떻게든 드러남.
○ 7개 사건 중 어느 하나도 깔끔하게 수사한 것이 없다고 언급하였는데, 요즘 사건들이 모두 치열함. 대장동 사건은 법사위에서 잘된 수사라 한 적이 있는데, 검찰 구형과 다르게 추징금이 상당 부분 깎였고, 일부 법리적인 문제로 무죄를 받은 부분도 있음.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증인이 막지 않았는지?	○ 유동규 관련해서 유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한 것임. ○ 항소심에 가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함. 헌법재판소에 문제제기 하였으나, 국정조사 끝날때까지 기다려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려는 것 같음. 유동규, 정진상 증인으로 불러야함에도 민주당에서 모두 거절함. 말 계속 바꾸는 남욱을 불러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현실임. 검찰 수사가 훨씬 나음.	○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정권의 8건 기소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음. 검사기소편의주의 한계임. 10개의 증거 중 1~2개만 기소 취지에 부합하고, 나머지는 반대 증거이거나 중립 증거일 때, 검사가 1~2개 증거를 통해 기소했을 때 정당한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검사의 정당한 공소권행사 아님. 이 사건으로 특검이 구성된다면 이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증거판단이 적정한 것인지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취사선택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 윤석열 정권 기소는 불법기소라고 생각함.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고 불법체포감금임. 지금 검사들은 기소편의주의에 숨어서 진술에 기반한 것이라 정당하다 함. 하지만 구속과 압박에 의해 허위진술된 것임. 다른 거의 모든 증거들은 반대증거이거나 중립증거임. ○ 5공 청문회는 정치군인에 대한 것이고, 이번 청문회는 정치검사에 대한 것임. 윤석열 정권은 150명의 정치검찰 군사 퍼레이	○ 공감함. 검찰권 행사는 정의에 기반해야 함. 핵심은 공정과 균형임. 그동안의 행태는 공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봄. 차제에 근본적 반성과 대책 있어야 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드를 했음. 어마어마한 군단으로 이재명 제거 작업에 들어갔던 것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함.	

(나)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검찰 수사관련 보고 사무규칙상 통상적으로 보고는 발생보고・수리보고・처분보고・재판결과보고 4종이 있는데 맞는지?	○ 규정에서 유형을 그렇게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단계에 있어서 보고・협의・의사결정 받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대장동,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수사상황을 비공식적 형태로 보고했다는데 알고 있는지? 수사하면서 이런 경우를 보았는지? 수원지검 형사6부, 반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제보가 있음.	○ 아님.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 당시 상황 평가를 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대검에서 대통령실에 사건 보고는 하지 않음.
○ 윤석열 정권 당시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 수사 경과를 대검, 검찰총장 선에 보고한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는지?	○ 없음.
○ 2차 수사팀으로 변경되면서 '재	○ 녹취록 파일 전체가 법정에 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창이형’이 ‘실장님’으로 녹취록이 조작된 것임. 조작된 게 맞는지? ‘재창이형’으로 들리는지?	출되었고 심리가 충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재창이형으로 들림.
○ 서울중앙지검 현장조사 당시 김경완 검사실에 방문한 적이 있음. 검사집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람. 그런데 증인은 국정조사서 종종 그렇게 수사한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조사가 가능한지?	○ 참여라는 의미에 대해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임. 음향이 차단되고 공간이 분리된 공간이라면 지적에 일리가 있음.
○ 남욱 증인이 유동규에게 1기 수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에 더해 공무원 한 명 정도 구속하고 정리할 것이니 들어와서 도와주라”고 말한 녹취가 있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니 어쩔 수 없지만, 풀어주겠다”고 언급함. 문재인 정권 1기 수사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임. 2기 수사팀이 조작한 것이 아님.	
○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국정조사를 하고 있음. 이는 헌정사에 기록될 것임. 부끄러움. 국정조사를 하지 말고 재심청구를 할 필요.	○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림.
○ (구자현, 기우종) 군사정권에서 용공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사건	○ 유념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을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 재심 과정에서 과거 검찰 기록을 들여다보니 고문 가혹행위 등이 있었음. 법원과 검찰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며,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기계적 수사, 안이한 재판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	

(다)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재창이형으로 들리는지?	○ 그러함.
○ 4월 7일 국정조사에서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기소되어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검찰이 공소장을 엉망으로 쓰면 실제로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한 것이 맞는지?	○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내릴 수 없음.
○ 50억클럽 무죄 이후 추가기소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었는데, 유동규·정민용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검토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거부하여 두 피고인은 무죄가 나왔음. 이처럼 검찰이 기소	○ 법원은 기소된 사실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권을 가지고 사실상 공소장을 엉망으로 쓰거나 법원으로부터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공소기각을 받으면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게 아닌지?	
○ 검찰이 조작 기소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여 봐주고 싶은 사람은 공소기각 판결까지 받아주는 것은 사법을 농단하는 것이 아닌지?	○ 그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 공범들을 모아 진술을 맞추고, 2박 3일 사람이 살 수 없는 구치감에 가두어 가족 사진 보여주며 진술을 받아내고, 별건에 별건 수사를 하며 다른 범죄 무마하는 대가로 원하는 진술 받아내고, 주범과 종범 바꾼다고 회유하고,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확보하지 않고 불리한 증거만 골라 압수수색하여 공소제기 한다면, 법정에서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음. 관련 증인들이 어떻게 증언하느냐, 객관적인 자료를 뒷받침하느냐 등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구자현, 기우종) 군사정권에서 용공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을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 재심 과정에서 과거 검찰 기록을 들여다보니 고문 가혹행위 등이 있었음. 법원과 검찰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며, 이	○ 말씀 명심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기계적 수사, 안이한 재판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	

(라) 이시원 증인(前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장동,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는지?	○ 21일 청문회와 같이 답변드리기 어려움.
○ 수사상황 보고받은 게 증인과 무슨 관계인지? 증언거부 사유가 없으니 고발되어야 함. 역사적 책임감 없이 비겁하게 나가고 있음.	○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수사 등을 보고받았는지는 증언거부 사유임.
○ 이재명 대표 사건 일일상황 보고로 되어 있음. 각 검사실 조사 내용, 특이사항, 향후 조사, 증거분석 일정과 같은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 이것은 기획단계부터 수사진행과정 전부 윤석열이 직접 지시하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마) 증인 B(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속기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재창이형, 실장님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 2기 수사팀의 담당 속기사가 맞는지? 어쨌든 검찰 속기사 맞으신지?	○ 1기, 2기 같은 것은 잘 모르고 잘 기억이 나지 않음. 전에 일했었음.
○ 정영학 녹취록에 “이제 ○○○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들리는지? 속기할 때 이렇게 들리면 뭐라고 적는지?	○ 지금 듣기로는 ‘재창이형’이라고 들림. 들리는 대로 적음.
○ 2기 수사팀으로 넘어가면서 “재창이형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를 “실장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로 속기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인지?	○ 녹취록을 작성할 때 음성파일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라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는 잘 모름.
○ 그 당시 누군가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꾸라는 제안은 못 받은 것인지?	○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음.
○ 증인은 ‘재창이형’으로 들린다는 것인지?	○ 그러함.
○ 검찰 속기록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녹음파일을 검사실에서 받아 속기사가 초안을 작성한 후 검사실로 보내 확인받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검사실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유지할 것은 유지한 후, 최종 확정이 나면 기명날인 후 검사실에 제공하는 프로세스가 맞는지?	○ 음성파일 받으면 작성해서 제출함. 수정 요청은 많지 않고 가끔 들어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정 요청이 있어도 속기사가 다시 확인하는지? 최종 속기사 서명날인 하는지? 내용이 만약 실제 녹음내용과 달리 작성되었다면 속기사도 민형사상, 징계상 책임이 있어 신중할 것 같은데, 그러한지?	○ 그러함. 맞음. 그러함.
○ 재창이형과 실장님은 너무나 다른 내용인데 최종 확인하고 날인한 것인지? 재창이형에서 실장님으로 의견을 직접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증인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확정됐을 것으로 보이는지?	○ 정확히 기억이 안남. 4~5년 전 작성한 것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음. 내용 자체도 기억이 안남.
○ 재창이형이 실장님으로 바뀌기에는 너무 다른 단어가 아닌지?	○ 재창이형 단어 관련, 수사기록이나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작성하다 보니 잘 모르겠음.
○ 증인이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수정해서 작성했다는 것인지? 들리는대로 '재창이형'이라고 제출했는데 어느 순간 실장님으로 변경된 것인지?	○ 수정을 하진 않음. 기억을 하고 싶으나 내용이 기억나지 않음.

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가) 정성호 증인(법무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희동 검사로부터 메일로 증언보충서를 받았는데, 메일로 보낸 내용을 보면 공소장과 판결문 한 문장의 절반만 떼어 인용하는 등 짜깁기한 문서임.	○ 이희동 검사 위증은 고발조치해야 하고, 증거의 취사 선택에 부적절한 면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음.
○ 국회제출 문서를 짜깁기하여 인용하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려움.	○ 적절하지 못한 인용은 왜곡임.
○ 수사해야 하는데 선별적 항소가 이루어지고 있음. 서훈 등에 대한 선별 항소는 문제가 있음.	○ 조작이 있었으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취사 선택한 것인지 조사해야 함.

(나) 김성종 증인(前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방부, 해경, 미국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했는바, 당시 수사국장이었는데 SI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 직원들이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고 들은 것임.
○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2차 발표 때는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함. 해경이 정보보고 한 것인데 나중에 입장번복 시 SI 정보의 확인은	○ 국가기밀이라 진술할 수 없다고 했고, 팩트 관련해서는 더 요구할 것이 없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없었음. 해경에서 미국과의 수사 공조를 요청하고 답변도 왔는데 무시했음. 미국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메일 왔음. 해경은 SI 정보 확인 안 하고 무언가 지시에 의해 발표한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6월 10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 회의에 두 분이 같이 참석하셨는데, 김성구 증인의 증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음.
○ 김태효 1차장이 내용을 수정했던 것은 기억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이야기인지?	○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정도임.
○ 해경은 이미 정리된 상태로 온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해경 입장에서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다 마친 상태로 참석한 것인지?	○ 협의한 적은 없고 저희들 의견이 확정된 상태였음.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수사 시 초창기에는 월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했는지?	○ 인천서 수사 시 처음부터 단정짓지는 않음.
○ 캄캄한 밤에 바다에 빠지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림. 당시 파도 높이가 얼마인지 아는지?	○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음.
○ 중국어선에서 태워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중국어선에 대해 조사해봤는지? 공해상이나 원양조업을 나가면 표류하	○ 구체적으로는 조사해보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사람들 잘 건지지 않는데 구조해주다 보면 조업을 못 하기 때문임.	
○ 38km를 목적성 없이 수영해서 갔겠는가?	○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연구해보았지만 한쪽으로 결론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다) 안규백 증인(국방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했음. 이 보고서는 사실이고 입장 변화가 없는지?	○ 국방부는 정보와 첩보를 기초로 월북 판단을 내린 것임. 지금도 그 가능성을 가진다는 입장임.
○ 기존의 정보 고려 안 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한 후 최종적으로 팩트를 조작해서 번복하였음. 그 뒤를 이어서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인 서해피격 사건임.	○ 동의함.
○ 국방부의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가 나간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인지?	○ 당시에 제가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다만 동일한 사안을 정권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어떤 계기와 어떤 내용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달리 판단하게 됐는가는 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장소에서 밝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함.
○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 21일 00시에서 9월 22일 24시까지 중국어선 조업 현황 자료, SI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맞는지?	○ 예측시스템 등 여러 종합 증거를 가지고 월북했다고 판단한 것임.
○ 2021년 문재인 정권 마지막 1년간 감사원 포렌식 81건 있었는데, 이후 포렌식 수백건 있었음. 서해피격 사건은 외교안보조사국에서 해야 하는데, 특수조사국에서 했음. 무단출입하면서 증거를 수집해 감. 지금도 특수조사국에 군사1급 비밀과 SI 정보가 방치되고 있음. 국방부는 감사원과 이야기해서 자료를 회수해야 함.	○ 적극 검토하겠음.

(라) 김성구 증인(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4월 9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2022년 6월 10일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 회의에서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가서 직접 수정했다'고 증언했는데 맞는지?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태효 증인은 그런 적이 결코 없다라고 하고 펜도 든 적이 없다라고 하고 또 이 증언 이외에도 아예 볼펜 자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사실인지?	○ 그 현장에서 일부 내용을 삭선하고 청와대 안보실의 지침을 하달받아 이것을 직접 쓰셨습니다. 쓰셨고 수정을 일차적으로 한 이후에 복귀해서도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전화가 와서 문구를 좀 수정하라고까지 이야기했음.
○ ‘국방부의 입장이 최초 발표했던 내용과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기재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김태효 증인이 하는 얘기로는 ‘최초의 입장이 월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당시 최초의 입장이 월북 추정이 맞았는지?	○ 맞음.
○ 그 입장을 김태효한테도 상의를 했고, 다만 김태효가 이런 입장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직접 수정한 것인지?	○ 해경의 발표와 연계해서 국방부가 최초에 월북으로 추정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 일단은 유감을 표명하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해경 발표와 연계해서 월북을 확인할 수 없음을, 정확히 어떤 표현을 수정하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삭선하는 부분은 직접 보았음.
○ 김성종 해양 수사국장도 그 자리에 있었는지?	○ 수사국장님인데, 얼굴은 기억이 잘 안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김태효 차장이 이런 저런 수정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당시 해경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 개인적인 느낌은 해경 쪽은 발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급은 없었고 누가 발표할 것인가 언제 발표할 것인가 어디에서 발표할 것인가 이런 발표 시점이라든지 발표 지역이라든지 발표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좀 토의가 됐음.
○ 국가안보실에서 왜 이런 월북 추정을 뒤집는다는 발표를 굳이, 시점도 정하고 발표자도 정하고 기자회견문까지 정하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왜 그렇게 했다고 판단했는지?	○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일단 국방부 입장만 말씀드리면 발표문을 발표하더라도 우리가 기존 입장과 다른 입장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 국방부 자체의 기본 방침이었음.
○ 2022년 6월 10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여, 김태효 1차장이 국방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초안에서 삭제·수정한 문구가 무엇인지?	○ '청와대안보실' 부분과 '지침을 하달받아' 이 부분을 직접 수정함.
○ 그 이후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몇 차례 연락이 온 이유는?	○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도자료 초안 수정본을 가지고 계속 문구 수정을 요구하였음.
○ 수정 내용은?	○ 수정 문구는 정확히 기억 나지 않음.

4) 국가통계 조작 사건

(가)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난 번 우리가 현장조사 했을 당시 감사원의 조사실인데, 창문도 없고 안에 있으면 큰 공포심을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였음. 통계조작 사건과 서해공무원 관련 조사는 명동에 있는 별도의 조사실에서 이루어졌고, 감사원 조사실보다 더 좁았다고 함. 당연히 조사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었음. 검찰 조사 시에도 이런 공간에서 조사하는지?	○ 영상 녹화실을 제외하면, 일반 검사실에서 참여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음.
○ 윤성원 증인 요청대로 재판 증거 기록이 있는지?	○ 재판의 전체 증거 신청이 되어 있음.
○ 통계조작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에 대하여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음.

(나) 정상우 증인(감사원 사무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제가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조사실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해놓는데, 여기는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었음. 옛날 전두환 시절	○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남영동 대공분실이나 안기부 남산 조사실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음. 여기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신만 덤탱이 쓰고 징역 몇 년을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안되려면 협조하라”는 말을 들으면 조사관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저는 느꼈음. 이게 정상적인 건지?	
○ 현장조사 결과 주택통계 변동율 조작에 대한 하동수의 진술을 보면 문답서에서는 삭제한 진술이 수사요청서에서는 범죄혐의사실로 적시되어 있는데, 확인했는지?	○ 확인했음.
○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조작 의혹 감사와 수사에 대한 기사가 실시간으로 변함. 탄원서 내용도 가짜뉴스를 조선일보에서 배포한 것임. 이런 방식으로 호도하고 왜곡하는 시도 있음. 정정보도 등 조치가 있는지? 한국부동산원에서 국회에 장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는 자료 제출했음.	○ 탄원서 확인하니 17일 자로 제출됨. 제출자는 한국부동산원 노조위원장이고 강압감사 내용은 없었음. 한국부동산원은 법위반 인식보다는 정부 지원을 위한 시급한 미션으로 인식함. 국조에서 여러 강압감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탄원서 포함해서 살펴보겠음.
○ 부동산원이 감사원에 낸 탄원서를 보면, ‘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	○ 부동산원, 그것도 노조위원장 명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팩트라고 보고 우리는 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통부 등이 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되었다고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 이번 부동산원 감사 결과 처분과 관련하여 정상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넷째,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통계법 위반에 대한 엄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반성과 함께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라고 적혀있고, '역사적인 비상상황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특단의 범정부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원은 상급 기관의 정책상 요구를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고 나옴. ○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가 통계조작을 한 것은 맞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폭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상급 기관의 요구에 우리가 수용해서 통계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으니 다시 감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 참작해 달라라는 것이 부동산원의 탄원	것도 하나의 부동산원의 의견이고 또 의원실에 제출된 그런 의견들도 또 이견이 있다고 보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 내용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 위 질의에 나온 문건은 노조위원장의 문건이 아님. 탄원서와 소명서는 다르고, ‘심심한 감사’ 이러한 내용은 탄원서에 없음. 소명서라고 정확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림.	
○ 통계조작을 했다는 것을 부동산원 노조위원장이 사실상 시인하고 있음. 그리고 감사원이 통계조작 사실을 제대로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통계조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음. 그런데 총장님은 감사원 직원들이 통계조작 관련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 말씀 하지 않았음. 직원들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여러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였음. 지난번 TF 과정에서 부동산원이나 통계청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진술의 기회를 드렸지만 그때 저희가 충분히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재심의가 청구가 됐는데 재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강압 감사 얘기는 거의 없었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안 됐는데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분들이 다시 말씀을 하시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게 저희 판단임.
○ 금번 국정조사에서 여러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증언이 있었음. 검찰의 수사로 성남시, 국토교통부 등 공무원들이 고	○ 현재 청구 재심의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토할 예정임. ○ 국정조사에서 강압감사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구체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통받음. 공무원들이 무분별한 수사, 감사의 대상이 되면 책임행정, 적극행정이 어렵게 됨. 감사원의 강압감사가 공무원들에게 어려움을 줬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련하여 직권 재심의 가능한 것 아닌지?	인 신청이 필요함. 감사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으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한 점 고려해주시기 바람.
○ 감사원이 국정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MBC에 보도게재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국정조사 청문회라는 공식적 자리에서 감사관의 답변,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한 보도게재를 중단 요청한 점, “강압조사를 인정하지 않는 장면을 연출함”이라는 내용, 방송사 중 MBC에만 보도게재 중단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 MBC 9시 뉴스 도입부에 손종국 감사관의 사진이 장시간 노출되면서 ‘조롱·협박 감사, 허위진술 강요’ 등을 보도하였음. 이에 손종국 감사관이 특정되어, 인트로 부분에서 손종국 감사관의 사진을 편집요청한 것으로, 전체 진술을 삭제요청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림.
○ 탄원서 이야기 있었는데, 이 중 소명서는 과거자료임. 감사원 처분 나오기 전에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임. 이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둔하고 있었음.	

(다) 정성호 증인(법무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문답서에서 삭제한 진술이 수	○ 처벌해야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요청서에는 기재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 이상윤 검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화 내용 전체가 제시되었으나, 검찰 조사 시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였다고 말한 바 있음. 그렇게 할 경우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그 발췌본에 따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그러함.
○ 공소장에서 참고인이 하지 않은 내용까지 기재하였다가, 문제가 드러나니 공소장에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이라고 수정하였음.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라)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사 의뢰서, 증거 목록 등을 법원에서 잘 파악해주셔야 됨.	○ 각 재판부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보임.

(마) 윤성원 참고인(前 국토교통부 차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카카오톡 원본에 따르면 국토부 차관이 발신한 메신지 내용	○ 해당 문구는 보도자료를 잘 만들고, 앞으로는 차관에게 미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다음부터 공급통계 보도자료는 내 컨펌받은 후 내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만 빼고 부동산원에 지시해서 통계를 조작한 것처럼 검찰에서 조작한게 맞는지?	보고한 후 배포하도록 하라는 의미인데, 검찰에서는 특정 문구를 빼고 심지어 검찰에 제출한 증거 목록 어디에도 없음.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고소장에는 안넣음. 검찰총장 직무대리께 요청해 증거 기록 어디에 있는지 오늘 오후 중으로 확인하고 싶음.
○ 공소장을 받아보니 2019년 10월부터 202년 12월 사이에 있었던 1,158건 중 하락한 것만 사례를 뽑아서 범죄 혐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상승도 다 조정 절차로서 들어가고 하는 것 아닌지?	○ 실제로 부동산 직원들 간 녹취록을 보면, 근무하는 동안 2,000개를 구성했고 그 가운데 1,800개는 올렸음. 그리고 200개는 검색을 해서 맞춘건데 감사관한테 물으니 올린 거는 감사관이 묻지를 않았다 했음. 낮춘 것만 끝까지 통계 조작으로 몰아가는 것임.
○ 참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를 가공한 것인데, 표를 보면 참고인이 대통령비서실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동산원 직원으로 하여금 2020년 7월 16일과 30일, 2020년 8월 13일에 통계를 조작하게 했다고 나와 있음. 그런데 참고인,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언제까지 재직하였는지?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임관된 것은 언제였는지?	○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오전까지 근무하였음. 2020년 11월임.
○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서도 비	○ 그렇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통계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것인지? ○ 오늘 못한 말 있는지?	○ 감사원의 수사요청서 보면 재정경제3과장이 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2023년 3월 31일까지는 재정경제3과에서 하다가 이후 특별조사국에서 함. 고위공무원들 6, 7, 8월에 불려감.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광역감사는 특조국에 한 것인데 특조국 감사는 감추고 싶어 함. 감사원 사무총장은 4월 5일 감사원 문답서 봐야 함. 4월 6일 문답서 출력해서 한국부동산원 부장에게 서명받으려 했음.

5)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가) 정성호 증인(법무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강일민이 조우형을 수사했던 검사이므로, 봉지욱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내용이 거짓임을 모를 리가 없음. 박정훈 대령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는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데, 이러한 검사는 여전히 현직에서 직무를 수행해도 된다고 보는지? ○ 남욱 증인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가 사게 된 경위에 대한 질의에 박영수 검사의 소개가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음. 2011년 조우형 브로커 수사담당 중수2과장이 윤석열 당시 검사, 박영수가 조우형의 변호사였고 김만배가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 조우형은 입건도 되지 않았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도 이와 같았음.	○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이므로 절차에 따라 방안을 고려해 보겠음.

(나) 봉지욱 참고인(前 뉴스타파 기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당시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 대장동 미회수금 약 2,700억원, 벨리타하우스 941억원, 더뮤지엄양지 552억원 등 약 5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음. 동의하는지?	○ 동의함. 대장동 사업시행권이 조우형에게 있었다는 점, 벨리타하우스와 더뮤지엄양지 모두 조우형이 실소유주였으므로 조우형에 대하여 대장동만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었음.
○ 부실수사를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수사를 받게 되는데,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거짓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내용을 살펴보면, “조우형의 알선수재 혐의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조우형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박영수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없었음.” 등이 거짓말로 보임. 동의하는지?	○ 동의함.
○ 2011년 5월에 세움에 대한 부실대출(30억원)에 대하여 부산저축은행을 배임죄로 기소하였음.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460억원가량을 불법대출하고, 세움에 70억원 가량을 이체한 벨리타하우스 및 이를 실소유한 조우형의 혐의는 덮어주었음.	○ 세움에 대한 70억원의 이체금액 중 10억원은 대검 중수부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조우형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세움을 수사했다면 해당 내역도 알 수 있었을 것임.
○ 조우형 항소심 판결문에도 조	○ 2011년 9월경, 조우형이 박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우형이 2007년 11월 28일부터 2011년 4월 26일까지 벨리타하우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총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 벨리타하우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배 검사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나왔을 때,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김양 부회장만 기소하고 조우형을 덮어주었음.
○ 2015년에 조우형을 수사해서 구속시킨 검사가 누구인지? 2023년 9월에 봉지욱, 한상진 기자 등을 수사한 검사가 누구인지?	○ 강일민 검사였음. 저희 담당 강일민 검사였음.

Ⅳ. 국정조사 결과

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사건별 경위 및 진상규명 내용

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사건경위]

○ 검찰은 2021년 10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토대로 쌍방울 그룹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 및 자금세탁 등 의혹을 수사하였음.

- 그 과정에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및 쌍방울 그룹의 ‘미승인 대북협력사업 추진’, ‘외화 밀반출’ 등 정황을 파악하여 수사를 병행하였음.

○ 검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기소하였음.

- 2022년 10월 14일 이화영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함.

- 2023년 2월 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화영에 대한 뇌물공여죄·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외환당국 허가 없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급했다는 등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함.

- 2023년 3월 21일 이화영을 김성태와 공모하여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급했다는 등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추

가 기소함.

- 2024년 4월 8일 김성태를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함.

- 2024년 6월 12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죄로, 이화영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로, 김성태를 뇌물공여죄로 각 불구속 기소함.

○ 공판 과정에서 이화영은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외부음식과 음주를 제공받으면서 진술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음.

○ 2024년 4월 수원지검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발표하였음.

○ 이에 대한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2025년 9월) 다음과 같이 수원지검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발견되었음.

-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외부음식(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 취식 및 음주 정황

- 수원지검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공범들이 접촉한 정황

- 쌍방울 직원이 1313호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한 정황

- 현직 교도관이 담당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한 정황 등

○ 그 밖에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는 검찰이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을 통하여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으로 하여금 '시세조종 목적'의 800만달러를 '방북비 대납 목적'이었다고 진술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등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됨.

[진상규명]

1) 불법적 편의제공 등을 통한 진술 회유·압박

□ 수사 당시 검사실에 외부음식 및 주류가 반입된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2023년 5월 17일 당시 박상용 검사실에서 김성태·김태헌과 식사한 것이 맞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본인과 김성태, 박상용 검사, 교도관 2~3명이 있었고, 김태헌 증인은 그때 구치감에 가 있었다고 답변함.

○ 2023년 5월 17일 1313호 검사실에서 연어회·술 파티가 실제로 있었는지, 특히 직원이 사온 소주를 마셨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술을 마신 적은 없고, 입에 대어 보니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고 답변함.

-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은 관련 수사를 받았고, 당시 술은 먹지 않았다고 답변함.

○ 1313호 검사실에서의 음주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 박상웅 증인(前 쌍방울 이사)은 그날 술을 산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마시기 위하여 직원에게 소주 3~4병을 사다 놓으라고 한 것이고, 검사실에서 마시지 않고 차 안에서 마셨

으며, 이화영이 음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계속 바뀌고 있다고 답변함.

○ 위 질의와 관련하여 조경식 부회장이 언급했던 23년 11월의 이야기와 23년 5월의 연어회 술 파티 이야기는 다른 사안이라고 정정해주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잘못 질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수원지검 앞에서 소주를 구매하여 박상웅 증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마신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박상웅 증인(前 쌍방울 이사)은 검찰 기록으로는 20시 34분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며, 1병인지 반병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박상웅 증인이 수원지검에서 나온 시간과 다시 들어간 시간을 비교해 볼 때, 본인이 마시려고 구입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1313호 검사실 주류 반입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은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에 적시하였던 것으로,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보고는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발표하겠다고 답변함.

○ 5월 17일에 직접 연어회덮밥을 받아온 것이 맞는지, 외부 배달업체로부터 받아온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동규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1층 검찰청사에서 수사관과 함께 받아 왔고, 정확하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에서 받아왔으며, 해당 연어회덮밥은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이 먹었다고 답변함.

- 이진하 증인(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은 당직실에서 받아온 것은 맞으나, 평일 수요일이 아닌 휴일에 받아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함.

○ 5월 17일에 연어회덮밥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춘한 증인(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은 주말에 구치소 식사가 제공되지 않을 때 외부에서 회덮밥을 시켜 모두 다 같이 먹었으며, 평일에 외부음식을 시켜 먹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5월 17일에 술 먹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고 답변함.

○ 당시 연어회덮밥을 먹을 때 설주완 변호사가 영상녹화실에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황성준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그 당시를 특정해서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함.

○ 이화영 증인이 술을 마셔 술 냄새가 나거나, 얼굴이 홍조로 바뀐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상봉 증인(서울구치소 사회복귀 과장) 및 강우영·김동규·김용제·박재훈·봉우리·성기현·안세원·전진걸·황성준·김관·윤주성

증인(前·現 수원구치소 교도관)은 본 적 없다고 답변함.

○ 5월 17일 출정일지 상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은 20시 30분에 수원지검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이 작성한 수사과정 확인서에 18시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 피신조서 작성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진하 증인(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은 당시 너무 바쁜 상황이라 깜빡한 것이고 고의는 아니었으며, 피신조서를 직접 작성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함.

○ 실제 출정시간과 기록시간이 다른 이유는 본인들이 저녁에 연어회덮밥 및 술을 먹은 것을 감추기 위하여 조작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수사 상황의 경우 전체 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을 것 같다고 답변함.

○ 쌍방울 직원들이 수시로 반입한 갈비탕, 초밥 등 외부음식을 김성태 등이 구치감이 아닌 검사실이나 창고에서 먹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현창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처음 외부음식을 제공할 때는 검사실 쪽 창고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후에는 구치감에서 식사하였다고 답변함.

○ 검사실에 외부음식 반입 등을 보았다는 증언이 사실인지, 당시 그 모습을 보고 심경이 어떠하였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황성준 증인(수원구치소 교도관)은 외부음식 반입을 보면서 교도관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답변함.

○ 이전에도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외부에서 음식을 시켜준 적이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춘한 증인(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은 본인이 수사관으로 있을 때는 없었다고 답변함.

- 이진하 증인(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은 특별수사는 그때 처음 참여하여 평소 일반 검사실에서는 평일 저녁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함.

○ 5월 1일부터 7월까지, 김성태를 계호하는 동안 주로 육회덮밥이나 외부 도시락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교도관들 것까지 같이 들어온 것이 맞는지, 그 양이 많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동규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해당 사실이 있고, 직접 육회덮밥을 가지고 왔으며, 그 양도 많았다고 답변함.

○ 치킨이 배달된 것을 근무자들끼리 나눠 먹은 적이 있다는 내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 김동규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2월에서 3월경, 주말조사가 이루어져 새벽 2시쯤 도착하니 치킨이 배달왔고 근무자들과 나눠 먹은 기억이 있다고 답변함.

○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에게 외부음식을 제공하거나 검사실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가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현창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특혜라기보다는 특별한 상황으로, 관외출장 등으로 수용자가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경우 책임감독자의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검사실에서 수용자 식사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변함.

○ 조경식 증인이 외부로 유출한 쪽지에는 조경식 증인이 연어·술 파티에 직접 참석했으며, 같은 해 11월에서 12월 세 차례 초밥 17인분, 25인분, 68인분이 검찰청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조경식 증인은 직접 참석한 사실이 없는바, 실체가 불분명한 해당 쪽지로 인해 연어·술파티 의혹이 시작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조경식 증인(前 KH그룹 부회장)은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변호사비 대납으로 수사하다가 대북송금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사건이며,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이재명 지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언급하였다고 진술함.

□ 대기 명목으로 1315호, 소위 ‘창고’라는 공간에 공범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했다는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외부음식이 반입되고, 공범들끼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검사가 마련해준 것을 목격한 점이 사실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전진걸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1313호 맞은편 창고에서 수사관, 검사 없이 공범들끼리 장시간 얘기하면서 대기하는 걸 본 적 있다고 답변함.

- 김현창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증인이 근무할 때는 공범들 간 모여 있더라도 수사관 한 명씩은 동석하였다고 답변함.

- 이진하 증인(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은 잘 기억나지 않으며, 한 번에 모여 동시에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박상용 검사가 공범들 간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교도관 등의 답변을 확인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은 진술 내용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함.

○ 해당 사안에 대해 박상용 검사에게 항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항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전진걸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공범 분리문제와 가족 간 접견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출정 시 부정물품 수수나 도주 등 교정사고 문제 때문에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데, 사전에 교도관과 협의 없이 외부인과 접촉하게 한 점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답변함.

- 김동규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전진걸 증인이 박상용 검사에게 항의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들어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검사에게 항의한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전진걸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당시 검사가 못마땅해하였으나 결국 요구에 따라 접견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수사관도 배치하였다고 답변함.

○ 평소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같이 있을 때 변호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황성준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매번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몇 번 같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답변함.

○ 피의자를 한 곳에 모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춘한 증인(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은 외화 밀반출 등 동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환자들이 많았다고 답변함.

○ 동시에 공범관계인 사람을 불러 2인 이상 동시조사를 100여 회, 3인 이상 동시조사를 25회 하는 등 진술조작 세미나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경우가 이 사건 말고 또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현창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출정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범들을 자유롭게 같이 조사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고 답변함.

○ 구속 피의자·피고인 관리상 교사의 근접이 필요한데도 창고·영상녹화실에서 교사들을 내보내고 진술 연습을 했다는 제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 전진걸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그러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답변함.

- 김현창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영상녹화실에서 할 때는 바깥에서 계호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검찰 측에서 교도관들이 나가 있기를 바라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답변함.

○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진술세미나는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위반하여 조서 또는 조서 미작성 사유를 남기지 않고 50회 이상 이루어진 불법적인 수사방식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답변하기 조심스럽다고 답변함.

○ 서류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한 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 전진걸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당시 방용철이 관계자에게 휴대용 서류를 건네려고 한 것을 본인이 적발하였고, 이것을 출정 교감(오성윤 계장)에게 보고하여, 교감이 이를 회수하였

다고 답변함.

○ 해당 서류가 어떤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전진걸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소에 관한 사항과 보안에 관한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김성태 회장이 184회 출정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직원 박상웅·박상민이 상주하듯 출입하며 수발을 들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김성태가 쌍방울 관계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목격한 적 있는지, 혹시 지시하거나 음식을 시키는 것을 목격한 적은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현창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계속 봤고, 교도관들은 주로 바깥 통로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녹화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듣지는 못하였으나, 이야기하는 장면 자체를 목격한 적은 있다고 답변함.

○ 영상녹화실 밖에서 대기한다고 하여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현창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외부에서는 잘 들리지 않고, 혹시나 모를 신체접촉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함.

○ 이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입한 것인지, 이에 대한 교도관들의 항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은 1313호실 직원이 참고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도관들의 항의가 있었던 사실은 일부 진술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현재 조사 중이므로, 금일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함.

- 고두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은 당시 본인은 15층에 있었고, 박상용 검사는 13층에 있어서 듣거나 보지 못했다고 답변함.

○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김성태 회장의 지시로 법원 앞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술·담배를 구입한 내역 및 출입기록이 확인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 박상웅 증인(前 쌍방울 이사)은 해당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고 답변함.

○ 박상웅의 검찰청 출입은 10개월간 146회로, 사실상 김성태의 검찰청 출입 시 거의 동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출입이 일반적인 참고인의 출입 횟수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진하 증인(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은 검사의 소환 지시에 따른 소환으로, 김성태 회장의 기억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고 답변함.

○ 쌍방울 직원 박상웅·박상민이 1313호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해당 직원들이 무엇을 했던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현창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본 적 있으며, 참고인이라고 그냥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함.

○ 2023. 5. 17. 수원지검 방문증 태그 기록에 따르면 박상웅은 6시 41분 승강기2로 들어가고 8시 34분에 나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동안 박상웅의 저녁 출입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해온 검사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봉현 증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처음에는 출입증 발급 내역만 보고 확인한 것이고, 출입 태그기록은 이후에 확인된 것이라 답변함.

□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이화영·김성태·안부수 등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을 회유·협박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국정조사 과정에서 13층에서 이화영 증인이 협조하면 15층에서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련하여 보거나 느낀 점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15층·14층에는 송민경·한강일 검사 등 여러 사람이 있어서, 13층에서 박상용 검사가 조사하다가 진술이 마음에 안 들면 15층으로 보냈고, 15층에서 한강일 검사가 증인의 주변 사람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하여 증인이 당황하면, 다시 13층으로 보내서 박상용 검사가 재차 다그치는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답변함.

○ 같은 공간에서 김성태는 어떠하였는지, 실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과정에서의 증언내용 중 이 부분은 좋았다 등 품평이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와 증인 둘만 있게 만들면 김성태가 회유·협박하였고, 증언을 시연하면서 불리한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면 김성태가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진술세미나를 넘어 공판 품평회를 하였는데, 이는 모해위증교사로 느껴졌다고 답변함.

○ 박상용 검사에게 수사를 받으면서 회유·압박의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은 검사가 기업범죄를 수사하면서 회유·압박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수원지검에서 수사했던 특수부, 형사6부 등 여러 팀 중 한 쪽은 공격하고 한 쪽은 회유하거나 잘해줬는데, 후자가 박상용 검사였다고 답변함.

-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수 백회의 압수와 30건

이상 별건 입건이 있었고, 이해찬 총리를 포함한 가족과 친구들을 연락·압박하여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며, 본인에게 실제 협력하는 경우 풀어주면서 회유하는 정황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고 답변함.

○ 검찰에서의 많은 핍박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수사하는 담당 검사를 13층에서 끌어안고 뛰어내리자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룹 하나 박살 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압박당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은 해당 내용은 와전된 이야기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참한 심정으로 유서를 지인에게 보낸 사실은 있었다고 답변함.

○ 검찰은 김성태 증인의 가장 약한 고리인 이화영, 방용철, 안부수의 약점을 잡아 일종의 결탁을 행한 것이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은 방용철은 단순한 뇌물 공여자로서 검찰과 결탁을 행할 것이 없고, 증인의 지시로 이화영에게 뇌물을 준 점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라고 답변함.

○ 검찰이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은 조작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변함.

○ 고검장 출신의 높은 변호사가 김성태나 이화영에게 접촉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 있는지, 해당 변호인이 정상적으로 수임된 변호사였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현창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변호사 한 사람이 검사실로 들어갔고, 그 사람이 고검장 출신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수임 여부까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 수감 중 조재연 변호사를 세 차례 만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증인이 선임한 적 없고, 박상용 검사가 만나게 한 것으로, 수원지검 1313호실에 조재연 변호사와 둘만 남게 되자 조재연 변호사가 검찰 최고위층에 확인을 받았으니 협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답변함.

○ 확인을 받았다는 것은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는 의미인지, 검찰 최고위층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이해찬 전 총리 문제, 증인의 별건 수사까지 덮어주겠다는 내용이었고,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고 검찰 최상위층이라고만 들었으며, 거래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부른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변함.

○ 박상용 검사의 방조범 제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해당 제안은 박상용 검

사가 반복적으로 한 설명으로, 본인을 방조범으로 해서 형을 낮추고 바로 석방해 주겠다는 제안이었다고 답변함.

○ 이재명이 연결되어야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수 있고, 이전 진술로는 부장검사와 상부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보고하였다'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요구한 것이 맞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달라', '날짜를 얘기해 달라'는 등의 압박과 회유를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실제 이재명 대표 기소장에는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조작하여 얻은 진술이 쓰이지 않은 것이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해당 사실이 맞고, 검찰은 단 한 번도 진술을 조작하거나 회유한 적이 없으며 사실대로 수사하였다고 답변함.

○ 수원지검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면담보고서나 수사과정확인서, 수사보고서가 전부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고, 이는 수십 건, 백여 건 이상이라고 답변함.

○ 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도 남기지 않고 피의자와 대질 신

문도 하지 않는 불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신문조서 작성 및 피의자 대질신문이 이루어졌다고 답변함.

-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2023년 5월, 6월 사이에 1313호 검사실 등 수원지검에 불려 나갔을 때 김영남 증인이 진술한 것과 같은 수사과정확인서 등을 남긴 적은 없다고 답변함.

○ 박상용 검사가 수용자 반복조사에 관해 증인에게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그때그때 승인했는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보고하고 출석요구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함.

○ 박상용 검사는 모든 수사를 매일 보고 하고 지휘를 받았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증인에게 보고되지는 않은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수사 진행상황이 매일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맞다고 답변함.

○ 출석요구 대장을 확인해본 적이 있는지, 증인이 지휘·감독한 검사들이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출석요구 대장 관련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관련 규정을 다 준수하여 수사하라고 지시한 적 있다고 답변함.

○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는 부부장검사였는지, 수사팀 내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수사팀 차원에서 박상용에게 해당 역할이 부여된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고두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은 당시 박상용 검사는 평검사였고, 수사팀은 수사 증거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바, 기소 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함

○ 이화영 부지사는 7월 12일 검찰과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압박 속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를 정상적인 수사로 볼 수 있는지, 진술 변화가 과연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가공할 압박과 위법한 회유 과정에서 조작된 것이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주민철 증인(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적절한 수사로 보이지 않고,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답변함.

- 김춘한 증인(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은 검사가 누구를 소환하라고 요청하면 그에 따라 소환한 것이고, 면담은 검사가 한 것이며, 수사관은 검사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 답변함.

○ 박상용 검사가 왜 이화영을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한 진술을 받으려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수사 당시에 박상용 검사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고두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은 구체적인 경위는 잘 모르고, 관련 사건이 재판 중인데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보통의 검사로서 상부의 결정에 따른 지시가 있지 않은 한 이와 같은 수사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해당 사건이 이재명 대표 사건의 일일 상황보고로 통칭되어 조사 내용, 특이사항, 향후 조사·증거분석 일정 등이 수원지검 형사6부,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장관으로서 일선 사건에 대해 가끔 보고를 받긴 하나, 특정한 사건을 보고받는 경우는 없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경우도 없다고 답변함.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당시 상황 평가를 하긴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대검에서 대통령

실에 사건 보고를 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함.

- 이시원 증인(前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음.

○ 수사 당시 본인들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고 느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은 보통 금융사건은 남부지검이나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해야 하는데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것을 보면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함.

○ 김성태·방용철·이화영 등과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박상용 검사와 마찬가지로 주요 피의자 등에 대한 말 맞추기, 회유를 시도하였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한 번 잠깐 면담했고, 김성태 회장 면담을 3분 내외로 한 번 했으나, 말 맞추기 또는 회유 시도를 한 적은 없다고 답변함.

○ 김태헌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받는 사람에게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윤환 증인(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부장검사)은 당시 태국으로 도피했던 김성태, 김태현, 양성규 등의 황제 도피 의혹

이 있는 상황에서, 검사로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고, 김태헌 씨는 2023. 1. 압송 당시 이미 이혼한 상태로서 이간질을 목적으로 질문한 바 없다고 답변함.

○ 김성태 증인이 2023년 1월 17일 귀국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이재명을 모르고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2주 뒤인 1월 31일 대북송금 비용을 방북 및 스마트팜 대납 비용으로 진술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은 태국 이민보호소에 있을 당시 여당 의원들의 회유 또는 제의 등이 있었고, 태국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이재명 지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방송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수감 중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많이 구속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 답변함.

○ 국회에서 이화영의 술파티 주장에 대한 위증 논란이 있었고, 결국 이화영이 위증으로 기소되었는데, 기소하면서 참고인을 포함하여 아무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것이 맞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봉현 증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사자는 조사를 거부하여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전화 진술을 통해서 술 냄새를 맡았는지, 술 먹은 것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록 2023년 6월 19일 자에서 ‘이화영 씨 진술밖에 없고,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

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부분은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서민석 증인(법무법인 해광 변호사)은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고, 증인이 선처를 요구하였다는 김영남 증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바, 검찰 간부와 설주완 변호사 측에서 먼저 이화영 부지사에게 접근해 회유를 끝낸 상태였고, 검찰 측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증인이 청주시장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에 제출할 실적을 만들기 위해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음.

○ 박상용 검사와의 5월 25일 자 통화에서, '일단 국정원 문건하고 회의록 보면 또 생각이 많아지실 거다. 그건 제삼자 뇌물까지 거의 메이드시켜 버린다'고 하자 '알겠다,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오히려 본인이 800만 달러가 진짜 북에 갔음을 확인한 뒤에 박 검사에게 요청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서민석 증인(법무법인 해광 변호사)은 당시 발언은 국정원 문건 중 일부 불리한 정황에 대한 일시적 판단일 뿐 계속 무죄 변론을 유지했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은 의뢰인 및 가족과 상의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변호인으로서의 절차적 협조였다고 답변함.

○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지, 부장검사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

하여,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전화한 적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함.

- 이정현 증인(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함.

○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요구했는데, 서민석 변호사가 소극적이어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고 답변함.

○ 변호사가 해당 통화 내용을 거래로 받아들인 것이라면 검사의 발언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잘못된 발언이라기보다는 박상용 검사의 해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고, 변호인 측에서 특가법상 뇌물을 일반 뇌물죄로 선처하는 조건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변함.

○ 검사가 변호인에게 회유하는 내용으로 전화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은 지켜야 할 선은 있어

야 하며, 해당 통화 내용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함.

2) '시세조종' 은폐 및 '대북송금' 조작 등 기획 수사

□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500만 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2019. 1. 29. 작성된 나노스 IR 리포트는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자료로서,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500만 불은 1억 불 희토류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하여,

- 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변함.

○ 김성태가 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구체적인 방식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고두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은 밀반출 또는 환치기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 20명 이상의 쌍방울 직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기억하나, 기억이 일부 훼손되어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함.

○ 김성태가 이화영 또는 이재명과 어떠한 채무관계·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달러를 책에 숨겨 전달하는 고생까지 감수하면서 자금을 제공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고두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함.

○ 김성태 회장의 방북 목적은 장차 있을 이재명 지사의 방북 등을 준비하고, 김정은을 만나며, 희토류 계약을 하기 위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방용철 증인(前 쌍방울 부회장)은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답변함.

○ 쌍방울이 북한에 500만 불을 송금한 이후에도 경기도는 2019년, 2020년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2020년 8월 UN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았는바,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대북사업과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불은 무관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2019년 5월 초 및 2019. 8. 28. 자 국정원 문서에 의하면, 북한이 경기도 배제를 요구하는데, 당시 이화영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스마트팜 관련 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라면 북한이 경기도를 배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익명의 증인(국가정보원 직원)은 대납이 성립하려면 지급 의무나 약속이 전제되어야 하나, 당시 경기도는 대북제재를 고려해 스마트팜 현물 지원만을 구상했을 뿐 현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청취하였다고 답변함.

○ 스마트팜 비용 또는 방북 의전비용 대납 시점 이후 북한이 경기도를 배제하거나 안부수가 2020년도 제3차 대회를 경기도를 제외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 김국훈 참고인(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 의장)은 2차 국제대회를 필리핀에서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자 안부수 회장이 이제 경기도와는 더 이상 대회를 치르지 못하겠다고 하여, 참고인이 제3국으로 변경할 기획서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함.

○ 경기도 대외협력국 문서상 '초청을 해달라'는 문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 이종석 증인(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문구이며, 다른 지자체도 대북사업 시 현장을 가기 위해 단장으로서 지사나 시장을 언급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함.

○ 실제로 황해도 지역에 스마트팜이 건설되지 않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종석 증인(국가정보원장)은 그 당시 우주영상으로 확인되었다고 답변함.

○ 2019년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김정은이 남한과 접촉 금지 지시를 내린 시점이 언제인지, 해당 시점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할 수 있었겠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종석 증인(국가정보원장)은 접촉 금지 지시가 몇 차례 있었는데, 2019년 여름 이후 완전히 끊어졌고, 그러한 상황에서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 현금을 주고 방북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변함.

○ 2019년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선거무효형을 받은 이재명지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방북 의전 비용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 이종석 증인(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작성 이재명 지사 방북 관련 보고서에 있는 경기도 간부의 발언 중에는 5월에 1심이 나왔을 때는 방북을 추진해보고 싶었으나 2심 결과 때문에 방북은 이제 물 건너 갔다며 허탈해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함.

□ 검찰이 국정원 문건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하여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검찰 정권이 차기 대선후보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하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종석 증인(국가정보원장)은 질문의 취지에는 상당 부분 공감하며,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들로는 대북송금을 입증할 근

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검찰에의 협조를 일반 직원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답변함.

○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한 이창연 특별수사관이 주도했던 감찰결과서는 수원지검에 공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국정원 기관보고에 대하여,

-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 판단에 중요한 검찰 주장의 반대 증거들이 재판과정에서 누락된 채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핵심 물증인 안부수 수첩과 국정원 문건 등 명백한 증거들을 검찰이 초기에 제대로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윤석열 정권에서 수원지검 형사 6부의 쌍방울 관련 자료 요청이 있었으나, 국정원 현안대응 TF에서 만든 보고서 및 쌍방울 김성태·안부수 활동일지 관련 목록 66개 중 13개 자료만을 취사 선택하여 수사의 목적에 맞는 자료만을 가져갔다는 지적이 있었음.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국정원 압수수색은 직접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제시하고 국정원에서 주는 자료를 받아 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 2023년 5월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관련 자료 중 일부만 가지

고 나오는 것을 유도윤 부장과 사전에 협의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사전에 연락한 적 없으며, 법원에서 직권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변호인과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고 답변함.

□ 김성태 회장이 리호남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300만 달러로 합의하고,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아태평화대회에서 그 중 70만 달러를 주었다는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2019년 7월 당시 필리핀을 간 것은 맞는지, 2019년 5월 중국에서 리호남을 만났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은 재판 관련 사항으로 답변을 거부함.

○ 수사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으로 가서 언제·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도착하자마자 받았는지, 도착 이후에 받았는지, 어디 호텔에서 받았는지 파악하였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고두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은 기소한 지 시간이 좀 지나, 날짜는 2019년 7월 정도로 기억하지만 장소 등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함.

○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보고서에 따르면 리호남은 해당 대회

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김성태가 밤 중에 호텔방으로 찾아온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주었다는 것은 거짓 진술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 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관련해서 최근 국정원 내부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며 객관적인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어 곧 입증되리라고 본다고 진술함.

- 이종석 증인(국가정보원장)은 당시 필리핀 대회에 송명철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방북 의전 비용 200만 달러를 건넸다고 가정한다면, 그 대상은 정찰총국 소속인 리호남이 아닌 민경련 소속의 송명철이어야 한다고 진술함.

- 하동혁 증인(통일운동가)은 해당 사업은 본래 쌍방울이 순수하게 대북교류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금전전달과정에서 불법 외화반출이 되었던 것이며, 당시 필리핀 국제행사에 참여하였을 때 안부수 회장과 대화도 나누었지만 리호남은 오지 않았다고 진술함.

- 김국훈 참고인 (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 의장)은 당시 필리핀에 27일까지 체류하였고, 리호남은 분명히 오지 않았다고 진술함.

○ 리호남과의 협상을 통해 방북비를 5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낮추고, 200만 달러는 당에, 100만 달러는 인사 비용으로, 그 중 70만 달러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나머지 30만 달러

는 2020년 1월 중국에서 준 것 맞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방용철 증인(前 쌍방울 부회장)은 사실이라고 답변함.

○ 김성태 회장과 리호남이 만나는 것을 보았는지, 호텔에서 김성태가 달러를 준 것이 맞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방용철 증인(前 쌍방울 부회장)은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고, 오카다 호텔 후문 입구에서 만나서 김성태 회장 방으로 안내하였으며, 70만 달러는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다고 답변함.

- 조경식 증인(前 KH그룹 부회장)은 김성태 회장과 같이 숙박하였으나 제3자가 들어온 적은 없고 김성태 회장과 리호남이 만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답변함.

○ 리호남과 직접 만났으니 얼굴도 기억하고 사진도 갖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방용철 증인(前 쌍방울 부회장)은 얼굴을 기억하며, 찍은 사진은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방용철 증인은 일관적으로 리호남이 필리핀에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용철 증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은 답변을 거부함.

○ 국정원의 보고에 의하면 리호남은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7월 24일부터 2

6일까지 실명여권을 사용하여 이동하였으며, 7월 26일부터는 또 다른 제3국에 체류했다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종석 증인(국가정보원장)은 그렇다고 답변함.

- 김호홍 증인(국가정보원 2차장)은 해당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했다고 답변함.

○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아태평화대회가 있던 당시 쌍방울 김성태, KH그룹 배상윤이 대회 참석 후 하얏트 정호일 등과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하였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익명의 증인(국가정보원 직원)은 2023년 2월 해외에서 입수한 첩보에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졌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답변함.

- 이와 관련하여 70만 불은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카라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재판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함.

-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은 해당 정보를 들어보긴 했으나, 당시 상황이 인권침해점검TF의 진상조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이재명 지사를 만나 방북 문제나 대북사업에 대해 상의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지사를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공범이 아닌 점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고 답변함.

○ 증인이 법정에서, 2019년 심양에서 이화영 부지사와 술을 마시다가 이재명 지사와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은 통화내용의 경우 재판과 관련되어 있어 답변이 어렵고, 법정에서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답변함.

○ 2023년부터 최근까지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진술이 계속 바뀌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은 답변을 거부함.

○ 김성태와의 술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를 연결해 주었다는 언론 보도 및 사진과 관련하여, 증인은 해당 사진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사실이 아니며, 김성태도 나중에 이를 부인하였다고 답변함.

○ 경기도 부지사가 지사에게 보고 없이 이러한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그에 따르면 증인이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대북사업을 사업을 꾸몄다는 것인데, 혹시 경기도나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해당 사건은 쌍방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 내용을 조작해서 진술하여 시작된 사건이며, 고발당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함.

○ 당시 쌍방울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계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이화영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다른 진술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유죄 판단을 한 것이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화영에 대하여는 그러하다고 답변함.

□ 금융감독원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 등 혐의를 확인하였으나 검찰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회피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2022. 11. 16. 수원지검이 금융감독원에 쌍방울 그룹의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조사실시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2023. 1. 30. 금융감독원이 수원지검을 방문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했고, 2023년 6월말 수원지검의 긴급조치 (패스트트랙) 요청에 따라 2023. 8. 2.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금지 위반, 외환보유액 보고의무 위반, 주요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혐의를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원지검은 공시의무 위반만 기소하고, 일부 혐의 없음, 일부 각하 처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

- 수원지검이 쌍방울 김성태의 4,500억 원대 배임 및 재산국외도피 등 중대 범죄 혐의들을 불기소처분하며 수사를 무마했고, 공범인 방용철에게는 기소유예 혜택을 주는 등 명백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바,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덮어준 것은 치명적인 봐주기이므로, 고검 차원의 엄중한 감찰과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정현 증인(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서 처분권·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북한 측에 지급한 걸로 구성하여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 조사요청 당시 수원지검이 금융감독원에 보냈던 자료에는 김성태 등 쌍방울 그룹의 시세조종 등 불법 혐의 15개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남부지검은 해당 15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성상헌 증인(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일 조사에서 현출되는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겠다고 진술함.

○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혐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김성태 등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묻어둠으로써 소재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찬진 증인(금융감독원장)은 당시 조사한 부당이득액이 100억 원이 넘어 당연히 중죄로 처리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검찰에서 사건을 가져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후 상황을 금감원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이와 같은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변함.

- 김성태 증인(前 쌍방울 회장)은 부정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없어서 주가조작을 할 이유도 없고, 어떠한 범죄행위도 없어 태국을 다녀온 뒤로 조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주가조작은 주가의 목표액이 있어야 하는데, 2020년 1월 22일에 1,025원이던 주가가 2월 3일에 1,255원으로 상승한 것만으로 내부 담합·작전을 통한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음.

○ 쌍방울·광림·비비안 3개 사 부정거래 혐의는 유죄의 충분한 소

명이 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가져오면 일체 자료를 제공하기로 상호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찬진 증인(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실명법상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압수수색이 유일한 방법이어서 해당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답변함.

○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가져가라고 요청한 때가 1월 30일이고, 검사는 2월 3일 기소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포함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은 판결의 당부를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좋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진술함.

□ 2026년 4월 23일 금융감독원 현장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쌍방울이 마스크 공급계약을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 판단의 근거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우는 검찰이 마스크 공급 허위성을 확인했다는 이례적 표현을 사용한바, 검찰이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함.

○ 검찰에서 보낸 자료나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 중 김성태 회장의 과도한 주식 담보 대출 등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우는 CB 자금 추적과정에서 쌍방울이 CB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주식 담보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해당 차입금에 주식이 담보로 계속 제공되면서 문어발식으로 회사를 확장한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답변함.

○ 통상 패스트트랙으로 통보된 사안의 기소율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우는 부정거래 혐의에 있어서 검찰 기소율은 약 70% 정도라고 답변함.

□ 기타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의 프레임을 왜곡·조작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2019. 7. 1. 지시사항으로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언급된 쌍방울 내부 문건 등 대북송금이 김성태의 방북 비용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허위진술에만 근거하여 조작 기소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히 감찰하고 문제가 되면 수사할 것이며, 검사의 공정성, 객관의무 등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진술함.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정에서 객관의무에 따라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진술함.

○ 2020년 5월 북한 보건성이 이재명 지사 등을 초청한 방북 통지문의 존재와 관련 보도가 확인되었음에도, 검찰이 대북송금 프레임 유지를 위해 합법적 남북교류 사업 증거와 김한신 대표의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은 당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서류를 입수했다면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경위를 파악해야 할 의무가 검찰에게도 있을 것이라 진술함.

○ 대북송금 사건의 미편철된 녹음파일은 언제 발견된 것인지, 누가 수원구치소에 요구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봉현 증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집단퇴정 관련 수원고검에서 진상조사 중에 발견되었고, 정확하게 어떤 접견록을 누가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함.

- 이정현 증인(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이에 대한 별도 조사

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대검 감찰부의 승인은 없었으나 자체 진상조사 중이라고 답변함.

○ 해당 미편철 자료는 검찰의 공소유지에 아주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검찰이 의식적으로 창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사실로서 사건의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종범은 박상용 검사이고 주범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체계상 상부까지 보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변함.

- 이진수 증인(법무부 차관)은 박상용 검사의 수사 방식은 크게 잘못되었으며 이러한 행동이 박상용 검사 혼자만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현재 진행되는 TF에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답변함.

○ 2023. 9.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적시할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박상용 검사가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있었음.

3) 이중기소 등 기소권 남용 및 부실 감찰 등

□ 검찰의 이중기소·쪼개기 기소 등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검찰의 악의적인 쪼개기 기소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술함.

○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있으므로, 쪼개기 기소 또한 공소권 남용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재판부에서 개별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함.

○ 검찰이 안부수와 김성태, 이화영과 방용철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관련해서 별도로, 순차적으로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김영남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은 당시 체포영장으로 강제 신병확보가 되다 보니, 구속시킬 수 있는 기간이 20일 밖에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범죄로 먼저 기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함.

○ 검찰이 물증을 외면한 채 협박·회유로 얻은 진술과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적시했다가 변호인 항의와 재판부 지적 후 뒤늦게 공소장을 수정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은 엄중한 감찰과 드러난 혐의에 대

한 수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진술함.

□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진술 세미나, 연어·술 파티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수원지검에서 5월 17일 발표한 연어·술 파티에 대한 자체 감찰결과 입장문에 따르면 쌍방울 관계자의 음식 반입 사실은 일체 없으며,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법무부 TF의 조사결과나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과 달라 허위인지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음.

- 서현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은 당시 들었던 내용을 모두 상세히 기록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고, 교도관들의 과거 진술과 법무부 TF에서의 증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술함.

○ 수원지검 조사 당시, 실제로는 녹취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런 사실이 없었지요?’라고 소극적으로 질문해서 답변도 소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황성준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답변을 빠르게 요구해서 그렇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함.

- 김동규 증인(수원구치소 교사)은 주로 술 위주로 질문이 왔었

고, 증인도 그날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1분 내외로 짧게 조사했다고 답변함.

○ 전진걸 증인에게 작년 2, 3월 정도 영상녹화실에서 식사를 한 사실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전진걸 증인이 음식이 반입된 이야기를 한 것이 맞는지, 영상녹화실에서 식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고두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은 전진걸 증인이 음식이 반입됐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자료에 남겼으며, 해당 사실은 다른 교도관을 통해 들었다고 답변함.

○ 당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조사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고두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은 형사6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고형곤 차장이나 신봉수 검사장은 보고라인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지시는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함.

○ 연어·술파티의 진상을 확인함에 있어 전진걸 증인이 공범 간 동석 및 외부음식 반입에 대해 항의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고두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은 내부 보고서상에는 정확히 기재하여 내부 보고를 마쳤으나, 전체적으로 외부 발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은 시간이 지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함.

○ 전진걸 증인으로부터 음식 반입 사실을 청취한 고두성 증인의 보고서가 올라왔음에도 어떻게 전혀 외부음식 반입이 없었다는 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서현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들어간 다수의 교도관 중 전진걸 교도관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도관들은 모두 외부음식이 없었다거나 커피·과자 등도 검사실, 회의실에 있던 것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교도관 단 한 명의 증언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묵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안부수와 방용철, 김성태 등을 조서 작성도 하지 않고 면담하는 등 박상용 검사와 함께 대북송금 사건을 조사한 고두성 검사가 연어·술파티 관련 진상을 조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어, 회피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고두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은 당시에는 연어·술파티 유무가 쟁점이 되어 빨리 진상 파악을 해보라는 지시에 의해 조사한 것이라고 진술함.

○ 2024년 4월 수원지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보고서 및 소환내역에 공범자들을 1313호실에 모이게 한 일시, 장소, 머문 시간 등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정현 증인(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부분을 확인하였고 별도로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날짜별 쌍방울 직원 출입내역을 통해 결국 박상용 검사의 말이 틀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허위 보고서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고 고발 및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수원지검의 자체감찰 결과를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하여, 해당 입장문을 누가 작성한 것인지, 증인은 관여한 바 없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고두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은 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입장문의 발표 시점 등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 수원지검의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한 입장문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진상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하겠으며, 수사대상의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답변함.

□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퇴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감찰 상황 및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정현 증인(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진상조사를 마치고 3월에 대검에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수원고검에서는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한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답변함.

○ 대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세 번에 걸쳐 보완조치 요구를 한 것이 맞는지, 해당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정현 증인(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세 번에 걸쳐 보완조치 요구가 내려온 것이 맞고, 대검은 해당 사안은 검사의 자유재량 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보고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함.

○ 의원면직이 되지 않았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검사에 대하여는 징계하면 안된다는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정현 증인(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실이 있으며, 전 형사6부장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답변함.

○ 대검 감찰부의 보완조치 요구를 수긍할 수 있는지, 대검 감찰부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정현 증인(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대검 감찰부의 의견을 전혀 수긍할 수 없고, 이는 기본적인 검사의 의무 위반으로

생각하며,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요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함.

□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주가조작 수사팀 검사는 누구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고두성 증인(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은 조주연 부장 및 그 밑의 검사들이라고 답변함.

○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 관련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및 즉시 감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감찰한 적 없고, 지금 단계에서 감찰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살펴보겠다고 진술함.

○ 2025. 9. 17.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수원지검 및 국정원과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은 교도관들의 진술이나 주장만 가지고 바로 징계위에 회부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갈 필요가 있고, 검찰의 내부감찰을 통해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함.

○ 현재 인천지검에서 근무 중인 박상용 검사는 수사의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방송활동을 병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므로, 대기발령시키거나 비수사부서로 발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진술함.

○ 박상용 검사는 근무시간 중에도 개인 SNS를 게시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치적 중립성 관점에서 게시물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신속히 감찰할지 살펴보겠다고 진술함.

○ 2025. 9. 22.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한 후 진술세미나 또는 연어·술파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위증에 해당하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이진수 증인(법무부 차관)은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함.

-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은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함.

□ 기타 중단되거나 확정된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이 있었음.

○ 법원에서 전례 없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였는데, 검찰이 재판을 재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공소유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소송지휘권의 영역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함.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잘못된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존중한다고 답변함.

- 이화영 증인(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확정판결의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나. 대장동 사건

[사건경위]

○ 「'15.경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 선정, 이익 분배 등에 있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4,895억 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민간사업자(김만배, 남욱, 정영학)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유동규, 정민용) 등을 기소한 사건임.

○ '21. 9.경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다수의 고소·고발장과 진정서가 접수되어 수사에 착수함.

○ 서울중앙지검 1기 수사팀은 '21. 10. ~ '22. 5.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및 민간사업자들을 특경법위반(배임)죄 등으로 순차 기소함.

○ '22. 5. ~ '22. 7.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이동으로 수사팀이 변경되었고,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은 '23. 1.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및 민간사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하였음.

○ 이후 2기 수사팀은 '23. 1.경 「유동규와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하여, '14. 8.경부터 비밀의 사전 누설을 통하여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용적률 등을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여 합계 7,88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하였음.

○ 그 이후 유동규 등과 민간사업자들의 특경법위반(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 대한 공모 혐의와 관련하여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정진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23. 3. 이재명 전 성남시장 및 정책비서관(정진상)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와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 등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함.

<수사팀 변동 사항 및 기소 현황>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기소 현황
<1기 수사팀> **이정수 검사장** ('21. 6.~'22. 5.)	4차장 **김태훈**('21. 7.~'22. 5.) 경제범죄형사부장 **유경필**('21. 7.~'22. 2.)	'21. 10. 21. 유동규 기소 [특가(뇌물)] '21. 11. 1. 유동규 기소 [특경(배임)] '21. 11. 22. 김만배, 남욱, 정영학 기소 [특경(배임) 등] '21. 12. 21. 정민용 기소 [특경(배임) 등]
	4차장 **김태훈**('21. 7.~'22. 5.) 반부패1부장 **정용환**('21. 7.~'22. 7.)	'22. 1. 28. 김만배 기소 [청탁금지법위반] '22. 4. 4. 남욱 [특경(횡령) 등], 유동규 기소 [증거인멸교사] '22. 5. 16. 김만배 기소 [특경(횡령)]
<2기 수사팀> **송경호 검사장** ('22. 5.~'24. 5.)	4차장 **고형곤**('22. 5.~'24. 5.) 반부패1부장 **엄희준**('22. 7.~'23. 9.)	'22. 12. 9. 정진상·유동규 기소 [특가(뇌물) 등]
	4차장 **고형곤**('22. 5.~'23. 9.) 반부패3부장 **강백신**('22. 7.~'23. 9.)	'23. 1. 12. 유동규·정민용·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이해충돌방지법위반] '23. 3. 22. 이재명·정진상 기소 [특경(배임) 등] ※ 수사는 반부패3부, 기소는 반부패1부)

○ '25. 10. 31. 서울중앙지법은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에 대하여 1심 선고함. 특경법위반(배임) 부분은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액,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됨.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분은 해당 내용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비밀 이

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 유동규: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 810,000,000원, 일부 무죄
- 김만배: 징역 8년, 추징 42,801,650,000원, 일부 무죄
- 남욱: 징역 4년, 일부 무죄
- 정영학: 징역 5년, 일부 무죄
- 정민용: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 3,722,000,000원, 일부 무죄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임. 다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함.

○ ’23. 5. ~ ’26.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진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전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변론이 분리되어 기일이 추정된 상태임.

[진상규명]

1) 특정 목적을 위한 2기 수사팀 구성 의혹

○ 2기 수사팀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수사팀 교체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송경호 증인(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교체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일당들이 취득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다 판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진술함.

- 김태훈 증인(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교체의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얼마 전에 있었던 1심 재판부 판결을 봤을 때 1기 수사팀에서 결론 내린 바와 거의 같고, 2기 수사팀에서 수사 방향을 틀어서 변경했는데 1기 수사팀에서는 거의 증거가 없어서 수사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했던 정진상과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포함하고 배임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확장했다고 진술함.

○ 1기 수사팀은 2021년 11월 당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배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공식 발표한 바 있는데, 1기 수사팀이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실히 수사를 하였으나 혐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것인지에 대한 질의함.

-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직무대리)은 1기 수사팀 모두 성식하게 정말 열심히 수사하였고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물이다라고 진술함.

- 김태훈 증인(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수사 초기에 대장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천하동인 1호 지분의 실제 주인이 그분이라는 대형 오보가 나왔는데 해당 내용은 오보라고 법조팀 간사에게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정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함.

○ 1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 및 관련 측근들에 대한 수사의 진행 여부 및 당시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용환 증인(서울고등법원검찰청검사장 직무대리)은 22월 7월 초 1기 수사팀으로 재직할 때까지는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함.

○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할 당시 정용환 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송경호 증인(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보고의 요지는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음. 이재명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종결했다든지 앞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입장이라는 등의 내용의 보고는 받은 적이 없고, 사건의 구조를 보면 김만배·정진상 등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진술함.

-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직무대리)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함.

○ 당시 검찰총장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원석 증인(전 검찰총장)은 통상의 보고를 받았고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라고 나온 것처럼 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경우 최고의사결정권자를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진술함.

○ 2022년 5월 엄희준, 강백신 증인은 각각 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받았는지 여부와 발령 주체에 대하여 질의함.

-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검사)은 5월에 직무대리 발령받았고, 발령 주체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진술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5월에 발령받은 걸로 기억하고, 당시 서울동부지검 소속이어서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고검장님이 파견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 2022년 5월 직무대리 발령까지 하면서 수사팀을 교체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당시 직무대리 명령이 있었고 2022년 7월에 인사가 있었다는 것은 국정 조사 중에 파악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 2022년 7월에 반부패 1부와 3부에 배치됐던 정일권・이주용・박성진・이종광・김경완・송보형・호승진・홍상철・김영석・송민주 검사들도 그때 같이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해당 검사들은 정기인사 때 발령받았고 5월에 같이 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 2022년 5월에 직무대리 명령을 받고 나서 중앙지검에서 근무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검사)은 중앙지검 공판 5부이고 호실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고검에 있었던 건 맞다고 진술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공판 5부가 중앙지검하고 고검에 사무실에 있었고 본인은 고검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진술함.

○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발령 없이 엄희준, 강백신 부장이 서울고검 근무장소에서 중앙지검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기록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직무대리)은 엄희준, 강백신 부장이 2022년 5월 이후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서울고검 내에 있는 공판 5부의 사무실을 사용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으나, 2022년 7월 정식으로 중앙지검 1부장, 특수 3부장을 보임하기 전 기간 동안 한 일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은 못한 상태라고 진술함.

- 김태훈 증인(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근무 장소에 관한 명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함.

- 이원석 증인(전 검찰총장)은 근무 장소를 어디에 배치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진술함.

○ 당시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는지, 이러한 업무를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검사)은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고, 중앙검사장 지시로 있었다고 증언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는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고 중앙검사장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함.

- 송경호 증인은 본인이 검토하라고 지시는 했고, 기록이 어디에 있으니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연락해서 기록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음.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에는 그 기록이든 어떠한 자료를 보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진술함.

○ 엄희준, 강백신 부장이 정식으로 보임되기 전에 드라이브에 올려져 있던 수사기록을 열람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직무대리)은 수사기록을 드라이브에 업로드에서 당시 (1기)수사팀원들에게 공유했던 것은 맞으나, 수사팀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함.

○ 대장동 사건 기록을 누구로부터 받았고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검사)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종이로 봤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

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함.

○ 대장동 사건 기록을 엄희준·강백신이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당시 기록을 1부하고 3부에서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직무대리)은 원본 양이 많기 때문에 1부 내에서 분산해서 보관했고, 파일 형태의 기록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드라이브)이 있으므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증언함.

○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직무대리)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고 당시에 차장이나 검사장이 있었다면 차장이나 검사장이 부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진술함.

○ 사건의 주임검사와 주임검사의 지시를 받고 있는 1부·3부 검사를 제외하고 다른 검사들이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직무대리)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검사장이나 차장 등을 상대로 확인해봐야 하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정성호 증인(법무부장관)은 당시 사건들을 기록 검토하고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적법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진술함.

- 김익수 증인(대전고등검찰청검사)은 당시 개별적인 수사를 담당하지는 않아서 개별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개별 증거들이나 기록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정일권, 김경완 검사들도 2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미리 들어와서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본 기억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 이미 기소된 사건인데 대장동 기록을 먼저 검토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당시 1기 수사팀에서 일부 기소가 되고 당시 나머지 잔여 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처리해야 하는 현안 중 한 가지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진술함.

○ 22년 5월에 직무대리 발령 받은 당시 기록을 검토한 후 어떠한 문서를 생산하고 해당 문서는 누구에게 보고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기록을 본 후 검토보고서 정도는 작성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공식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하였음. 내부적 보고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사기록으로 편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검사)은 기록을 본 후 검토했다는 보고서는 쓴거 같고, 김영철 차장한테 보고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음. 보고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에는 편철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함.

○ 직무대리 기간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재명에 대해서 작성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검사)은 잔여 사건과 관련해서 메인스트림 사건을 검토했다고 진술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당시 전체 기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바빴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5월부터 반부패 1부장 엄희준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지휘 검사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기록만 검토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이응철 증인(법무부검찰국장)은 해당 부분을 좀 더 체크 해봐야 될 거 같고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함.

- 박철우 증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엄희준 부장이 사건 수사기록 검토에 관여를 했다 해도 공식 지휘 라인을 따로 있었기 때문에 5월부터 표기한 것은 중앙지검 차원에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함.

○ 2기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남욱을 체포하여 수사를 하는 등 이재명과의 연결되는 진술을

만들기 위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은 2기 수사팀이 어떠한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수사를 하였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시효경과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2기 수사팀은 행위의 종료시점을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시점과 재산상 이득을 실제로 취득한 마지막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었고, 당시 기소한 팀에서는 기수 시기에 대한 견해를 달리해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 이원석 증인(전 검찰총장)은 당시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 또는 메신저를 한 바가 없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되어 넘어온 잔여 사건이었지 다른 사건을 새로이 표적 수사한 것이 없다고 진술함.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건을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것인 일반적인지에 대한 질의에, 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 증인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어느 정도까지 쟁점이 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함.

○ 2기 수사팀의 구성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에 이르는 라인으로 수사가 전개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정용환

증인은(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직무대리) 그렇다고 진술함.

○ 2기 수사팀이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기소하기 전에 1기 수사팀과 협의를 하거나 1기 수사팀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1기 수사팀의 결론에 대하여 의견 교환의 필요성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직무대리)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저와의 협의나 저희 팀과의 의견 공유는 없었다고 증언함.

-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검사)은 1기 수사팀의 결론을 재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잔여 사건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달라는 것이었고, 기존 팀에 있었던 검사도 2기 수사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1기 수사팀은 기소를 해놓고 공판을 하고 있었고 2기 수사팀은 수사를 하면서 공판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서로 협의를 했던 부분들은 있다고 진술함.

○ 대장동 사건은 약 7,800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차익이 민간업자에게 간 사건이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건은 내가 설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사안이므로 성남시의 수뇌부,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함.

-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장동 개발의 최종 승인·결정권자는 시장이므로 시장이 관여하지 않거나 지시 또는 승인하지 않고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함.

○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유동규·이재명·최윤길 이 세 사람이 각본부터 짜서 진행한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재명 시장께서 처음부터 대장동 사업 설계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지, '시장님이 빼라고 그래서', '남욱이를 넣기가 보기에도 그런거야. 그런데 동규가 남욱이를 붙인 거야', 이런 내용에 따르면 민간업자를 지정하는 것도 시장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진술함.

○ 2010년 성남시장이 취임한 이후 대장동 일대의 공영개발을 선언한 이후 민간사업자들은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의 명의로 제기한 5대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하고, 2016년 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추가 1,120억원 요구하는 등의 정황을 볼 때 이재명이 민간사업자들과 결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였으나, 이에 검사들은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였고,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공공환수액 5,503억원이 맞다는 판결이 있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민간사업자와 결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남욱 증인은 최근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무관하다고 진술

하였고, 민간업자들이 요구한 다섯 가지 사항들 모두 거절한 게 맞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함.

- 정성호 증인(법무부장관)은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초기부터 면밀히 보고 있다고 진술함.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은 지금 재판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진술함.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서는 공사의 출자한도를 정하고 있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이 329억에 불과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함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남욱과 유동규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공무원 한명 정도만 구속하여 정리할 것이고, 체포 영장은 발부 된 것이라 어쩔 수 없고 풀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1기 수사팀에서 했다고 지적함.

○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 및 녹취록을 종합하여 볼 때 문재인 정권의 1기 수사팀이 덮으려고 했던 사건을 2기 수사팀이 밝히려고 했던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2) 구치감 수용 등 피의자 불법 수사 및 회유 의혹

○ 2025년 11월 남욱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정일권 검사가 남욱

피고인을 2박 3일 동안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대기를 시키고 남욱 피고인에게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애들은 봐야할 것 아니냐,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라.”, “우리는 목표는 하나다.”라는 말을 했음. 이는 특정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수사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 정일권 증인(의정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은 당시 남욱과 이야기할 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했던 사실이 있고, 오랫동안 아이들은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의적·인도적 차원에서 사진을 보여준 것임. 목표는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 말한적 없음. 의식적으로 사진을 찾아온 것은 아니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있던 자료는 맞다고 진술함.

- 남욱 증인은 정일권 검사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당시 변호인의 조력없이 혼자 검찰청에 있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잠을 잘 수도 없었음. 당시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였을 것이고 처음 공무원들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았던 것을 2차 조사를 하면서 ‘이거 다 이재명이 시켰지’, ‘시장이니까 시켰겟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함.

- 정성호 증인(법무부장관)은 언론 보도상의 그러한 내용들은 매우 부적절하고 검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고 진술함.

- 박철우 증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통사의 수사 방식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진술함.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은 당시 남욱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3, 4회 가량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하였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구치감에 유치한 것이기는 하나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진술함.

- 이원석 증인(전 검찰총장)은 구치감은 우리 법령상 유치 장소이고 영장에도 구치감을 유치 장소로 기재하고 있다고 진술함.

- 김태훈 증인(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진술함.

○ 유치 장소를 기재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고 잠을 안재우고 조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당시 구속 중인 남욱에 대하여 왜 체포 영장을 발부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정일권 증인(의정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은 남욱은 별건인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출석요구서를 몇 번 보냈고 변호인을 통하여 출석 요청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적법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임.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장기간 구금

할 수도 구금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까지만 체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진술함.

- 이원석 증인(전 검찰총장)은 우리 법상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수 밖에 없으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함.

- 김태훈 증인(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은 구속상태에서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상 출석만을 강요할 수 있을 뿐이고 진술이나 다른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진술함.

○ 압수물에 가족사진은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이고, 특히 위례 신도시와 같은 경제 관련 사건에 가족사진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왜 보관하고 있었는지 질의함.

- 정일권 증인(의정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은 전임 팀에서 적법하게 확보해 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 가족사진도 압수물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 당시 남욱의 여러 가지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 있었음. 그 자금이 가족들 계좌로 넘어 갔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함.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은 이 케이스에서는 필요한 사안은 아닌거 같다고 진술함.

-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포렌식으로 가져온 전자정보 중 관련 없는 자료는 즉시 폐기해야 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있으나 해당 사항은 따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임.

- 김태훈 증인(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은 1차 수사 당시 증거로서 아이들 사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지만 증거로서 아이들 사진을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함.

-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직무대리)은 기록상에서는 아이들 사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 구치감에 있을 때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일권 증인(의정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은 접견을 못하게 막은 적은 없다고 진술함.

○ 남욱을 2박 3일 구치감에 수용하여 조사한 이 후 유동규도 2박 3일 구치감에 수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경완 검사(청주지방검찰청검사)는 체포해서 조사했던 것은 맞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록상 그렇다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함.

○ 현장조사에서 남욱이 수용된 구치감의 장소, 당시 제공된 물품, 당시 교정직원의 근무 여부에 대한 질의에, 박삼재(서울구

치소장)는 1동 9호실에서 남욱이 수용된 것으로 보이고, 직원의 근무 보고서에 따르면 속옷, 양말, 세면도구, 선풍기, 이불, 베개, 식수 등이 제공되었으며, 교정 직원은 휴게실에 있는 소파에서 취침하였다고 답변함.

○ 구치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구치감 설치를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시한 바 있으므로, 향후 구치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함.

○ 남욱 주변 지인들에 대하여 수사하면서 회유·협박을 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 정일권 증인(의정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은 구체적으로 인원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남욱이 자금을 조성할 때 관련됐던 사람들을 조사했던 것은 맞고, 남욱의 지인들에게 남욱과 관련된 혐의를 이야기하거나 기소를 안해 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함.

- 남욱 증인은 지인 중에 조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고, 큰 아이 학부모를 상대로 마치 범죄수익 은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할 수 있는 것처럼 한 적 있음. 어떤 사람의 경우는 대학 다니는 아들 통장까지 압류해 놓고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진술함.

○ 남욱 증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하여 진술을 계속하여 바꾸고 있고, 대장동 사건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람으로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진술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함.

○ 2기 수사팀은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20일 동안 유동규 등을 집중 면담하면서도 어떠한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11페이지 분량의 수사보고서에도 면담 내용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함.

-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환 시 조사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고, 수사준칙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다고 진술함.

○ 집중 면담이 끝난 이후 유동규 진술이 바뀌었는데, '정진상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기존의 진술이 면담 이후 '요구했다'로 바뀌었고, '아파트 5층까지 올라가서 줬다'라는 기존의 진술이 면담 이후 '아파트 1층 현관 앞 어두운 곳에서 전달했다'라고 바뀌었으며, '비닐봉지에 넣어줬다'라는 기존의 진술이 면담 이후 '쇼핑백에 넣어 줬다'로 변경되었음. 또한 유동규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날인 2022년 10월 20일에 남욱, 최윤길(당시 성남시의회 의장)등과 성남도시공사 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 모두를 김용과 정진상에게 공유했다는 진술을 최초로 하였음. 이렇게 면담 이후 진술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함.

- 김경완 증인(청주지방검찰청검사)은 진술을 바꿨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진술을 추가적으로 한 부분은 있고, 왜

그렇게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함.

○ 2기 수사팀이 유동규를 조사할 당시 유동규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바꿨는지, 질문 시 어떠한 증거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경완 증인(청주지방검찰청검사)은 당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추궁했고 성남시나 공사에서 압수했던 문서, 대화녹음 파일이 있었다고 진술함.

○ 압수했던 문서 또는 증거에 “보고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경완 증인(청주지방검찰청검사)은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문서에 있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고, 녹취에 “보고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했다고 하느냐라고 추궁한 것은 아니고 자료들을 토대로 질문을 한 것이라고 답변함.

○ 유동규 출정기록에 따르면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집중면담을 하였는데 수사준칙 제13조(변호인의 조력 제한 금지),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사신문과 참여자), 수사준칙 제26조(신문 또는 면담을 불문하고 조사과정 기록)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김경완 증인(청주지방검찰청검사)은 면담 시 변호인은 참여시키지 않았고 검찰수사관은 참여하고 있었음. 교도관계자는 안에 있었던 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어떠한 내용을 면담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사보고 형식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진술함.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직무대행) 공간의 구성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음향이 차단되고 공간이 분리되는 장소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함.

- 정성호 증인(법무부장관)은 검사실과 조사실이 분리되어 있고 문이 열려있어 안의 내용을 들을 수는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예외적인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변함.

○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면담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르면 호승진 검사 면담 이후에 김경완 검사가 면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경완 검사와 호승진 검사가 긴밀하게 조사한 게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김경완 증인(청주지방검찰청검사)은 각 부서가 달랐고 호승진 검사의 면담 과정에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부로 불러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함.

○ 잠 안 재우기와 같이 형사소송법 및 관련 수사준칙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행태로 인하여 이끌어 낸 진술들이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 사안의 경우 위법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진술함.

○ 정영학이 정재창을 공갈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3년 6월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신청을 거부하고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않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기소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는 것은 대장동 사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소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함.

- 박철우 증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장기 사건이 적체된 게 있어 늦어졌으나,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진술함.

- 강백신 검사(대구고등검찰청검사)는 그때 당시 공갈 협박에 대한 혐의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공갈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 받았던 기억이 있고, 경찰에서 올라오는 영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면 소명이 부족한 경우가 다소 있다고 진술함.

- 황창선 증인(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중앙지검에서 수사 및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과 종합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영장을 불청구 한다는 것이 당시 사유였다고 진술함.

- 강백신 검사(대구고등검찰청검사)는 혐의와 관련하여 보고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지금 들어보니 그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을 때 해당 내용을 보고를 받았던 것인

지 그 뒤에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보고를 받았던 건지 명확하지 않은 거 같다고 진술함.

○ 남욱의 조사과정에서 유동규의 3억 6,000만원 수수액을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고, 비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남욱에게 빚진 35억 중 11억 8,000만원을 정민용을 통해 전달받은 유동규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민용은 기소하고 유동규의 혐의는 아직 수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는 검찰 단계에서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함.

- 황창선 증인(경기도남부경찰청장) 최초의 수사기록 제공을 요청했는데 협조를 받지 못했고, 수사기록을 보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려고 수원지검에 영장을 청구하였는데 불청구 됐다고 진술함.

○ 유동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27일 이후 접견을 제한하고, 박태선에 대하여도 7월 19일까지만 접견하고 그 이후로는 제한하는 등 증인들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를 한 것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힌 질의에,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검사)는 기억에 없는 내용이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다고 진술함.

3) '피의자 이재명' 압수조서 작성

○ 2022년 10월 13일 김영석 검사가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박

태선으로부터 백팩을 압수할 때 작성한 압수조서에는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사건'으로 되어 있음을 제시하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해당 사건으로 피의자 입건이 된 상태였는지에 대해 질의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 나지는 않으나, 일일이 압수조서를 다 확인하지는 않음. 압수조서라는게 현장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당시에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건이 같이 돌아가고 있었고 압수도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성하는 검사나 수사관이 약간의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됨. 당시 피의자 이재명으로 되어 있는 사건도 여러건 있었기 때문에 오기이고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4. 7. 진술).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 14건이 있었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10월에 가서야 혐의가 포착되었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별도 사건으로 분리되기 전에 그 조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수사관이 대장동 사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진술함(4. 16. 진술).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은 실제와 다른게 맞고 입건 전 단계라고 들었음. 이번에 준비하면서 실제와 다른 오기인 것으로 보고 받았다라고 답변함.

- 정성호 증인(법무부장관)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요 인물인 이재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것은 단순 오해, 오기 또는 착오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다고 진술함.

- 송경호 증인(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전혀 입건이 안된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사실혼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였고, 임의제출하면 형제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압수조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임. 그 당시에는 유동규에 대한 것인지 김용에 대한 것인지 이재명에 대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실무상 가능한 일이라고 진술함.

○ 압수조서를 현장에서 잘못 썼다라고 진술했으나 해당 압수조서를 보면 ‘2022년 10월 13일 16시 35분경 서울중앙지검 601호 검사실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당시 김형석 검사가 지휘를 했고 호승진, 강백신까지 보고가 되었을 것이므로 오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함.

○ 2022년 10월 13일 유동규와 그 사실혼 배우자 박태선씨를 함께 불렀는데 이는 대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각 조사를 받기 위함인데 특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피신조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은 대질조사가 아님에도 가족

을 부른 그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으나 통상적이지는 않은 거 같고, 장시간 면담 형식으로 조사하는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조서 작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 김경완 증인(청주지방검찰청검사) 그날은 제가 조사하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유동규와 박태선 씨가 같이 조사를 받았던 것은 기억이 난다고 답변함.

4) 녹취록 및 엑셀파일 조작 의혹

○ 정영학 녹취록 중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 조작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 정성호(법무부장관)증인은 해당 부분은 일응 그렇고, 진술과 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거 같다고 진술함. 최초에 정영학이 자진 제출한 기존 녹취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는 ‘윗 어르신’이라는 말 없이 그냥 ‘땡땡땡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1기 수사팀의 의뢰로 다른 녹취록이 그 후에 작성되었고 그 녹취록에는 ‘윗 어르신’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또한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남욱이 해당 부분이

“위례 신도시”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진술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지금 들어보니 “재창이 형”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녹취록 작성 과정에서 검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니므로 조작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진술함.

- 송경호 증인(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들어 본 바로는 “재창이 형”으로 들린다고 진술함.

- 김경완 증인(청주지방검찰청검사)은 검사가 녹취록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함.

- 이원석 증인(전 검찰총장)은 1심 판결에서 녹음 파일 원본이 증거로 채택되었고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음.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른’으로 한 것은 1차 수사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 증인 B(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속기사)는 지금 듣기로는 “재창이 형”이라고 들리고, 녹취록을 작성할 때 음성 파일을 받아서 들리는 대로 작성하고 있음. 이후에 어떻게 바뀐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함.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녹취파일 전체가 법정에 제출되었으므로 충분히 심리될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재 “재창이 형”으로 들린다고 진술함.

-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은 “재창이 형”으로 들린다고 진술함.

○ 1기 수사팀에서는 정영학의 녹취록에 “재창이 형”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은 정영학이 제출한 녹음 파일을 속기사들에게 그대로 보냈고 받은 그대로 제출했었다라고 증언함.

○ 검찰에서 녹취록을 작성하는 통상의 절차를 살펴보면, 녹음 파일을 제공받은 후 녹취록 초안을 작성하면 이를 요청한 검사실에 보내서 확인을 받음. 이에 해당 검사실에서 수정 요청할 수 있고 속기사는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여 기재하고 기명·날인 후 해당 검사실에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증인 B(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속기사)는 통상 수정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가끔 들어온 것으로 기억함.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수정하고 기명·날인하여 최종 제공한다고 진술함.

○ 속기사가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증인 B(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속기사)는 4, 5년 전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내용 자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2기 수사팀에서 정영학의 녹취록이 조작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검사)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 조작이 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위는 법정에서 다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음. 정영학이 녹취록을 여러 번 제출하면서 아마도 추가로 낸 어떤 녹취록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전체를 의뢰했고 이를 속기사가 해준 것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이후 재판에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함.

○ “재창이 형”이라고 녹음된 파일은 하나인가에 대하여 질의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하나라고 진술함.

○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11억 8,000만원을 받은 범죄혐의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정일권 검사(의정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는 담당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함.

- 김경완 검사(청주지방검찰청검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 이정우 검사(법무부법무심의관실검사) 담당한 부분이 아니어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 이정규 검사(청주지방검찰청검사) 계좌 추적상 당시 남욱에서 정민용에게 35억원이 갔고 정민용에게 갔던 금원 중 일부가 유동규에게 간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강백신 검사 팀에서 조작된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진술이 있는데 혹시 어디서 만들고 어느 부서를 통하여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은 속기사들로부터 제출받아 가지고 있던 녹취록을 각 공소유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출한 것으로는 확인했고, 강백신 검사 팀에서 만들었다는 진술은 들어본적 없다고 진술함.

○ 오마이 뉴스에 문자로 '실장님 문건은 반부패 3부에서 제출한 거다'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검사)은 오마이 뉴스에 문자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당시 어느 부서에서 생산한 녹취록인지를 후배들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산이 어디에서 되었는지 그것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보도가 난 부분이 크게 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중 2개 부분은 1기 수사팀에서 작성된 녹취록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본인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작성된 녹취록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함.

○ 2020년 10월 30일 분당 정자동 모 노래방 지하에서의 녹취록을 포함하여 10년간 정영학의 녹취록에는 정진상, 김용,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일절 나오지도 않는다고 지적함.

○ 정영학의 녹취록에서 이재명이 21번 나오고 정영학 메모에 'Le

e’라는 라고 쓰여있음. 이는 결국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모라고 지적함.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의 정영학의 녹취록을 통해서 이재명, 정진상, 김용의 혐의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검사)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진술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녹취록에서 입증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진술함.

○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10월 1일 검찰에 제출한 대장인 예상분양가 엑셀파일 원본에는 평당 분양가가 1,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제시한 출력물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음.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1,500만원으로 기재된 파일이 정영학의 외장하드와 함께 편철되어 있는 등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엑셀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정성호 증인(법무부장관)은 현재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함.

- 호승진 증인은 정영학 엑셀 파일이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영학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1심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함.

- 박환택 증인은 2015년 2월 26일자 사업성분석계획 엑셀 파일 원본에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가 평당 1,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냐라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진술함.

○ 검찰은 전체 배당 가능 이익을 9,607억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 70%인 6,725억원을 공공이 가져가야 할 정당한 몫으로 본 다음 이 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1,830억원을 뺀 금액이 4,895억원임. 70% 산정기준의 근거가 없고, 성남시가 관여하지 않은 공동주택 분양 3,691억원을 포함시키는 등 모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배임 액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작이라고 지적함.

5) '428억 약정설'의 증거 부족 및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의혹 등

○ 1기 수사팀에서는 '유동규를 428억 천하동인 1호 소유자'라고 기소를 한 반면, 2기 수사팀에서는 정진상을 기소할 때 '김용·정진상·유동규 지분에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표현을 공소장에 기재함.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할 때에는 '천하동인 1호의 소유, 지분, 구체적인 금액의 공여 방안을 김용·정진상·유동규가 공유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정진상을 통하여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라고 공소장에 기재하였는데, 이를 위

해서는 정진상의 자백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인데 정진상을 당시 조사 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검사)은 정진상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 적은 없음. 당시의 증거관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나 당시 유동규의 진술과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증거관계에 맞게 기소했다고 진술함.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은 실제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소사실을 쓰기 위한 간접적인 다른 정황들을 가지고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함.

○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수사팀을 구성하여 많은 저축은행을 수사했는데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무마되었다는 지적에 김성식 증인(예금보험공사사장)은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나, 대장동 대출의 경우 부산저축은행이 자기들 명의로만 된 SPC형태의 그런 불법 대출은 아니었다고 보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함.

○ 부산저축은행에 당시 4조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부실 수사로 회수가 거의 되지 않았는데,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박영수 변호사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중앙지검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나오면 끝날거야'라고 했는데 당시 커피를 타준 검사와 주임 검사가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는 그때 검사는 박길배 검사였고 당시 커피는 검사가 아닌 직원이 타준걸로 기억하며, 당시 과장 인사가 있어서 전후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사건경위]

○ 「김용이 ’13.~’14.경 유동규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1. 4.~8.경 유동규, 정민용과 함께 남욱으로부터 정치자금 합계 8억 4,7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임.

○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유동규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22. 10.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김용을 체포한 후 ’22. 11. 김용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유동규・정민용・남욱을 불구속 기소함.

○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 외에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22. 12. 김용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로 추가 기소함.

○ 1심 법원은 ’23. 11. 30.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김용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함.

○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은 ’25. 2. 6. 1심과 마찬가지로 김용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함.

○ ’25. 2. 이후 검찰 및 피고인 모두 상고 제기

[진상규명]

○ 1기 수사팀에서는 정재창·정민용 자수서, 남욱 신문조서, 유동규·남욱·김만배 대질신문을 통하여 유동규가 남욱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은 개인적인 채무로 보고 김용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김용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가 나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수사팀에서는 2013년 4월 이매동 삼성아파트 김용 자택 주차장에서 7,000원을 준 것으로 기소 하였는데, 이를 위해 2기 수사팀이 강압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 1기 수사팀장이었던 정용환 증인(서울고등검찰청직무대리)은 2022년 7월 이후의 수사 및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1기 수사팀에서 수사를 할 당시에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함.

○ 철거업자 강철호를 소환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없다고 진술함.

- 엄희준 증인(광주고등검찰청검사)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함.

- 김경완 증인(청주지방검찰청검사)은 수사 과정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김용 사건 항소심에서 화상증인 심문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함.

○ 유동규한테 3억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강철호 증인은 2007년, 2008년도 리모델링 조합할 때 유동규에게 3억원을 줬고 2010년도까지 사업이 계속 지지 부진하면서 일을 본인에게는 주지 않았음. 그래서 본부장에게까지 사람을 보냈고 2013년, 2014년 정도에 돈을 돌려 받았다고 진술함.

○ 남욱 증인은 2021년 10월 경 유동규가 건넨 3억의 목적이 유동규의 개인 채무를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진술이 바뀌었다가 다시 최근에 처음의 진술로 바꿨는데, 유동규가 건네 3억원이 김용과 정진상에게 전달됐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남욱 증인은 처음에는 그것과 관련된 진술은 하지 않았고, 2차 수사 때 검사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그거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 준건데 그때도 너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고 본인에게 말했다고 진술함.

○ 정재창 및 정민용의 자수서에 따르면 유동규가 철거업자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남욱에게 3억원을 요구하여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남욱도 초기에는 유동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3억원을 갚기 위하여 돈을 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다가 2기 수사팀부터 그 진술을 바꾸고 있으며, 유동규·남욱·김만배 대질 조서에도 3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준 것이라고 되어 있음. 철거업자의 최근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유동규에게 3억원을 빌려줬고 당시 3억원을

받아 내기 위하여 유동규에게 요청한 것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종합적으로 볼 때 3억원을 김용 부원자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유동규 개인 채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자료들이 김용 부원장 재판에 다 제출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기우종 증인(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술함.

○ 2025. 10. 24. 정진상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는 김용이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와 정민용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남욱 증인은 당시 정민용이 골프연습장을 갔다와서 집에가고 그래서 김용 부원장을 본 적이 없다고 들었었다고 진술함.

○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김용이 실제 있었던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질의에, 신알찬 증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장해 왔다고 진술함.

○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의 증거 신빙성은 부인하고 진술은 조작하는 것이 객관적인 수사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에, 구자현 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은 구글 타임라인의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 재판부에서 주장이 있어 다루어졌고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배척된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므로 증거관계에 대하여 추

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진술함.

○ 구글 타임라인이 문제가 되었는데 2021년도 서초동 자택 근처에 있던 교회가 2022년도 유동규의 유원홀딩스 바로 옆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 과학수사부장으로서 구글 타임라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허정 증인(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 현재 말한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거 같고 구글 타임라인 분석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함.

○ 2024년 11얼 1월 조선일보 단독으로 보도한 '김용 구글 타임라인, 돈받았다 지목된 날 동선과 2km 오류' 기사가 났는데 항소심의 미공개 감정보고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하여 질의함.

- 홍상철 증인(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검사)은 본인은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은 유출한 적 없다고 진술함.

○ 김용 전 부원장의 1심에서 증거 조작의 사안은 논외로 하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돈을 단순히 전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무죄판결이 났고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은 김용과 유동규가 수수의 공범이라는 구조로 항소심 단계까지 공소장 변경 없이 진행되었고, 1심 및 2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동일한 논리로 상고장 및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함.

- 정성호 증인(법무부장관) 당시 상황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인다고 증언함.

○ 법원의 공소장 변경의 요구를 거절하는 취지의 문건을 낸 사람은 호승진 검사인데 해당 문서에 대한 지휘 내지 결재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에,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 자신이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함.

○ 공소장 변경을 거절하고 유동규·정민용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해주었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판결문을 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무죄판결을 받아주고 있는데 수사 협조자들에 대한 무죄를 받아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는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의 경우 1심 선고에서 곽상도 의원이 무죄가 났는데 검토를 해보니 뇌물죄만 기소가 되었고 범죄수익죄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음. 뇌물죄와 범죄수익죄는 실체적 경함범이라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수익죄만 별도로 곽상도 아들과 함께 공범으로 별도로 추가기소를 했던 것인데 재판

부에서 오해를 하고 판결한 것으로 보임. 무죄를 받아주는 설계를 할 수도 없고 재판 영역을 검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고 진술함.

○ 선택적 병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소신도 지키고 무죄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검사)는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라 진술함.

라. 위례 신도시 사건

[사건경위]

○「’13. 7.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등이 취득한 공사의 내부 비밀(공모일정, 사업타당성 평가, 공모지침서 등 관련)을 이용하여 ‘13. 12. 3. 남욱, 정영학, 정재창이 구성한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업’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14. 8. ~’18. 1 경 이익 분배 결과 남욱 등이 42억원, 호반건설이 169억원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임.

○ 이후 위 혐의와 관련하여 정진상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 정진상을 구속기소하였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추가 수사 통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함.

○ ’26. 1. 28. 유동규 등 민간사업자들에 대하여 1심에서 비밀이용과 재산상 취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선고되어 확정됨. 다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함.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기일이 추정된 상태이고, 정진상 등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 중임.

[진상규명]

○ 최근 위례 신도시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났는데 당시 기수 시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엄희준 증인(광주고검검찰청검사)은 돈을 취득했을 때 기소된 것이라고 봤다고 답변함.

○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 지정이 있을 때 기수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해당 판례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엄희준 증인(광주고검검찰청검사)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돈의 취득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함.

○ 대장동 사건으로 제출된 녹취록에 별도로 숨어져 있던 위례라는 단어를 가지고 반부패수사부가 수사를 하고 남욱을 체포해서 협박했던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에 정일권 검사(의정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는 당시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되지 않았고 특정인이나 특정 목적으로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함.

○ 호반건설의 범죄 협의와 관련하여 남욱은 재판에 넘겼으나 호반건설 관계자들은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정일권 증인(의정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은 현재 수사 중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진술함.

- 박철희 증인은 최초 사업 공모 당시부터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함.

○ 윤석열 정부 당시 호반건설 소유의 서울신문이 중앙지검 관계자들로부터 기사 내용을 제공받고 기사를 제공하는 대신 봐주기식 수사가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 박철희 증인은 호반건설과 서울신문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례사업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김은정 증인은 건설 쪽에서 신문사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건경위]

○ 2020. 9. 21. 12:51경(실종 신고시각) 인천시 소연평도 남방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9. 22. 북측해역에서 발견·피격된 사건이 발생

○ 2020. 9. ~ 10. 해양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 후 3차례 수사 상황을 발표하였고, “실종자가 북측해역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 북측에 월북의사 표명한 정황,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설명

○ 2022. 6. 16. 인천지방해양경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사 종결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국방부는 해양경찰청의 수사종결과 연계하여 관련내용을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종전의 입장을 변경

○ 2022. 6.~7. 유족 및 국가정보원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제1부)에서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이후, 검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기소[9)]

- 2022. 12. 9. 前 국가안보실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구속기소, 前 해양경찰청장(직권남용권

9) 이와 별개로 2022. 10. 14. 감사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요청한 사건은 2026. 4. 현재 수사 중임.

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불구속기소

- 2022. 12. 29. 前 국방부장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前국가정보원장, 前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각 공용 전자기록등손상, 국가정보원법 위반) 각각 불구속기소

○ 2022. 7. 19. ~ 10. 14. 국방부·해경 등이 기존의 발표내용을 번복하여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감사원에서 국방부·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실시

- 2022. 10. 14. 감사원은 직무유기,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개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총 20명 중 국방부 7명), 수사요청서 상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23. 12. 1.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 처분 요구사항 통보(경징계 1건, 기관주의 4건, 개인주의 1건, 통보 2건)

○ 2023. 1. ~ 202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진행[10] 되었고, 2025. 12. 26. 피고인 5명에 대하여 전부 무죄 선고

- 2026. 1. 2. 서울중앙지검은 前 국가안보실장과 前 해양경찰청장의 ① 해경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와 ② 사망 공무원과 유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항

10) 공판준비기일 3회, 공판기일 70회

소 제기[11)]

○ 2025. 12. 29. 국가정보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당시 감찰권 남용·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고발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여, 1심 무죄 판결받은 피고발인·국민께 사과드리고 ‘서해 사건’ 고인·유족께도 위로를 드린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25. 12. 3.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운영쇄신 TF」 점검결과에 해당 사건 감사 과정에 관한 사항 포함

- ① 前 사무총장 지시로 특별조사국이 감사 착수 ② 고위직 수사요청 대상자(前 국정원장 등)를 특정하여 발표 ③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하였는데도 해당 사항이 포함된 보도자료 배포

11) 2026.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진행

[진상규명]

1) 국방부 및 해양경찰청의 월북 판단 번복 관련

○ 당초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였던 사건을 윤석열 정부에서 고의로 조작·왜곡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안규백 증인(국방부장관)은 SI 정보, 한미연합자산 및 과학적 정밀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조작·왜곡이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진술함.

- 유병호 증인(감사원 감사위원)은 증거 구성으로 볼 때 적어도 감사원에서는 월북이라 단정할 수 없는 증거가 압도적이었다고 진술함.

- 이희동 증인(부산고등검찰청 검사)은 확보 증거에 따르면 2022. 9. 18.에 가족과 통화하며 9. 24.에 생일선물을 사 가지고 가겠다고 한 통화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진술함.

○ 2022. 6. 16. 국방부 및 해양경찰청의 월북 판단 번복시 새로운 조사나 추가 증거 없이 수사 결과를 수정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구 증인(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은 일부 내용을 수정한 사실은 있으나 새로운 추가 증거나 조사는 없었다고 진술함.

○ 김태효 前 국가안보실 1차장의 번복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구 증인은 김태효 前 1차장의 해당 언급은 없었고, 안보실 지침에 따라서 중간중간 수사결과 및 발표내용을 직접 수정을 하였다고 진술함.

- 김태효 증인(前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보고자료를 수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2) 前 국가정보원장의 첩보 삭제지시 및 고발·기소 관련

○ 해당 사건과 관련된 3차장실 지시가 은폐를 위한 첩보 및 보고서 삭제가 아니라 보안 강화를 위한 배포 제한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현존하거나 현존사실을 당시에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김호홍 증인(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해당 자료의 폐쇄망 현존이 확인 가능하며, 지시는 첩보 출처의 민감성을 고려한 보완조치로 기재되어 있고 은폐 또는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 최혁 증인(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은 삭제 지시가 있는 자료를 본 기억은 나지만 언급된 자료를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함.

- 김규현 증인(前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삭제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 국정원에서 보완조치

라는 말로 문건을 회수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자문서의 회수는 일반 문건과는 달리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진술함.

○ 김규현 원장이 '보고本' 문서를 윤석열 前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고, 前 대통령이 2022. 7. 5. 고발 지시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김호홍 증인은 그러하다고 진술하였고, 김규현 증인은 당시 보고는 감찰 결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실제 수사를 의뢰하는 필요성에 관한 것이 중점이었으며, 2022. 7. 6. 이루어진 고발에 대한 행정적 판단은 원장인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함.

○ 국가정보원에 파견온 검사가 감찰 및 고발하고 추후 공소제기까지 하는 것은 당연히 기획수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함

- 김호홍 증인은 미리 계획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본인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파견 검사가 이 건에 대해서 감찰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다고 진술함.

- 김OO 증인(국가정보원 감사관)은 당시 국가정보원에 검찰 출신들이 들어와서 감찰부서를 장악하였으며, 감찰실장 대신 파견검사인 감찰기획관이 들어왔다고 진술함.

- 최혁 증인은 고발장 작성은 정상화 TF와 본인이 총괄해서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일반 감찰실 업무는 감찰실장과 매주

회의·보고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진술함.

- 이희동 증인은 해당 사건의 공소장의 범죄사실 부분을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기소를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소제기는 피해 회복 및 유족의 고발장 등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진술함.

3)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련

○ 감사원이 감사 관련하여 확보한 SI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어 있는지 질의함.

- 현장조사시 김태호(감사원 운영혁신 TF 실무자)는 감사원에는 군사2급비밀만 있고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함.

바. 통계조작 사건

[사건경위]

○ 2022. 9 ~ 2023. 8. 감사원이 주택, 소득분배 통계에 대한 언론 등의 각종 의혹 제기에 기초하여 주요 통계 작성·활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부·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 실시

- 2023. 9. 19. 감사원은 검찰에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 관련 위법행위 의심자 22명(대통령비서실 등 4개 기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

- 2025. 4. 감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등 4개 기관의 관련자 31명에 대해 징계, 인사자료 통보

○ 2023. 9. 감사원의 수사요청에 따라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한 이후, 2024. 3. 검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11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 (주택 통계) 법령상·계약상 근거 없이 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에 관한 주중조사 추가 요구, 주중조사 결과인 '주중치', '속보치'를 BH와 국토부에 보고 및 금요일 공표 예정인 '확정치'를 BH에 사전 보고하도록 요구, 통계 변경 목적으로 부동산원에 가격변동률 하향을 요구 [통계법위반, 직권남용]

- (고용 통계)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87만 명 증가가 예상

되자, ‘병행조사’가 원인인지 불분명함에도 통계청으로 하여금 마치 병행조사로 인해 비정규직이 급증해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 [통계법위반, 직권남용]

○ 2025. 12. 3.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운영쇄신 TF」 점검결과에 해당 사건 감사 과정에 관한 사항 포함

- 고위직 수사요청 대상자(前 정책실장)를 특정하여 발표

○ 2024. 5.부터 현재까지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4회 공판준비기일 및 19회 공판기일을 진행

[진상규명]

○ 2025. 12. 발표된 「감사원 운영쇄신 TF」 점검결과에 해당 사건이 부적절한 수사요청과 표적·강압감사로 지적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 정상우 증인(감사원 사무총장)은 그러하다고 진술함.

- 유병호 증인은 당시 압축된 내용으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조작행위는 분명히 있었다고 진술함.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요청서에 첨부된 문답서에 피감사자가 삭제를 요구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하동수 증인(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은 감사원 문답 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을 조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하였으나, 수사요청서 중 범죄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본인의 진술이라고 인용부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었다고 진술함.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요청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의 임의 편집 및 제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 하동수 증인은 국토부 사무관이 부동산원에 조작 지시했다고 하는 카톡의 시간은 수사요청서에 17시경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동일한 사무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카톡의 변동률 보고

시간은 수사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감사원 자료를 찾아보니 거기에는 있었다고 진술함.

- 김진영 증인(법무부 형사법제과), 손종국 증인(감사원 외교국방1과 감사관), 윤휘철 증인(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관) 및 장문기 증인(감사원 부감사관)은 카카오톡 대화의 편집 및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이상훈 증인(감사원 심사2담당관실 감사관)은 해당 카카오톡 대화의 원본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함.

○ 해당 사건의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의 인권침해적 또는 부적절한 감사활동이 있었다고 지적함.

- 참고인인 국토부 공무원들은 감사담당자들이 음주 상태에서 문답을 실시하거나 또는 피감사자를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9시에 가서 그다음 날 6시 반까지 거의 2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도 언급하였으며, 진의와 다르게 감사원 감사내용이 담긴 진술서에 무기력하게 동의·날인을 하여 많은 상사분들께서 고초를 겪게 돼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며, 대부분이 다 감사원에 재심 청구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진술함.

- 손종국 증인, 윤휘철 증인 및 장문기 증인은 음주감사 등의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함.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원 감사실장이 개입하여 직원들이 진술을 맞춘 정황이 있고 그 감사실장이 감사원과 소통을 했던 의혹이 있다고 질의함.

- 정상우 참고인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들이 많이 나왔고 의혹들이 나왔으므로 재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진술함.

○ 해당 사건의 공소장의 기재를 변동률 “조작”에서 “수정”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 김도완 증인(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정 내용은 맞으나 정확히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공소장 정정으로 되어 있다고 진술함.

○ 해당 사건의 감사 재심의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이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통계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부동산원 노조위원장이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는 질의가 있었음.

- 정상우 증인은 해당 탄원서는 재심의 과정 중 한국부동산원 노조위원장 명의로 온 것이므로 하나의 의견으로 볼 것이고, 또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술함.

○ 이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이 제출한 문건에는 노조위원장 명의의 탄원서와 별도의 소명서가 존재하며, 탄원서

에는 감사원 감사(監査)에 대한 감사(感謝) 문구가 없다고 지적함.

○ 통계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전체 카카오톡 대화 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사한 것이 맞는지에 질의함.

- 이상윤 증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은 감사원 문답 조사에서 카카오톡 대화가 전부 제시되고 간인까지 한 상태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찰 수사에서는 피의사실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함.

사.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사건경위]

○ 검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우형(대장동 대출 브로커)에 대해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음.

- 검찰은 해당 보도가 허위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함.

○ 이후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등을 적용하여 김만배 등 7명을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음.

- 2024년 7월 9일 검찰은 김만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뉴스타파 등이 관련 사항을 보도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신학림은 허위 인터뷰 및 보도 대가로 1억 6,500만을 수수하고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보도하였다는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함.

- 2024년 7월 9일 검찰은 한상진, 김용진이 신학림과 공모하여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보도한 것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함.

- 2024년 8월 13일 검찰은 봉지욱이 인터뷰 왜곡 등으로 윤석

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한 것처럼 JTBC를 통해 허위보도한 것을 이유로, 송평수, 허재현은 녹취록을 왜곡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우형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허위보도한 것을 이유로 각각 불구속 기소함.

○ 2026년 4월 현재 김만배 등 7명에 대한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7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918)이 진행중임.

-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대해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법원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공소장일본주의 원칙 위배)는 지적을 하였고,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을 일부 수용하여 공소장 변경(67쪽 → 30쪽)이 이루어졌음.

[진상규명]

1)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 여부 관련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은 명예훼손죄가 주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바,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여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 이에 대하여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김만배가 당시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성남시장을 위해 기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그 금품 제공의 동기 내지 목적, 허위사실 유포 등이 부패·경제범죄와의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통된 증거를 엄밀히 검토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영장에 관한 재판 등을 통해 법원이 일차적인 적법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함.

2)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한 허위 여부 관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우형(대장동 대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언론의 보도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로서 수사를 할 당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보도한 것이므로 보도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한상진 참고인(뉴스타파 기자)은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조우형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3회 진행하였고, 조우형이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조우형에 대한 수사가 무마된 대가로 변호사비용 1억 6,0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 이강길 증인(前 씨세븐 대표)은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조우형이 차 한잔을 마시고 사건을 무마하고 왔고,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또한, 당시 수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조우형의 소개로 대출을 받아 그 대가로 조우형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수사관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받으면서 수수료를 줬다는 사실 외에 다른 사실은 없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조우형 증인(대장동 대출 브로커)은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에 출석하여 박길배 검사와 면담을 하였고, 커피를 마신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철수 증인(조우형 사촌)은 2010년에서 2011년 쯤 조사를 받을 당시 첫 번째 조사 때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조우형이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다음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조사 없이 커피만 마시고

나왔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함.

○ 이에 대하여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은 당시 김만배가 허위사실을 신학림에게 이야기했고, 그러한 사실이 대선 국면에서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가 있는 행위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김만배의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살포 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함.

3)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수사 절차 진행 관련

○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시 피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 절차 진행 및 공소 제기를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통상적으로 반의사불벌죄 사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여부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술함.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언론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의사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

술함.

4) 압수수색 절차 관련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 중 증거 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그 절차와 범위에 어긋난 수사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검찰 수사관들이 기자들의 노트북을 불법 수색하고 핸드폰에서 나온 이미지를 폐기했다는 확인서(2024년 1월 29일)를 써준 당일 영장 없이 해당 이미지를 재압수하였으며, 피압수자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D-NET)에 보관한 이후 필요시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나거나 폐기해야 하는 자료를 보관한 후 별건 수사에 활용하거나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봉지욱 참고인(前 뉴스타파 기자)은 핸드폰에 있는 이미지를 재압수하면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용범위를 넘은 수색 또는 새벽부터 자택에서 대기 후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압수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함.

○ 이에 대하여 구체적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한 증거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등의 답변이 있

었음.

-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은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에서 영장 기재사항 외의 압수수색 등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거나, 증거를 선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술함.

- 구자현 증인(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동일성 및 무결성을 위해 증거 전체를 확보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임의로 추출하여 수사에 활용하거나 별건 수사에 활용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진술함.

- 강일민 증인(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은 봉지욱 참고인에 대한 휴대폰 압수 등과 관련하여 당시 휴대폰에서 일부 사항을 선별한 다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폐기 지휘한 것이 사실이나, 재압수할 대상이 없었고, 재압수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함.

5) 수사절차 진행 관련

○ 언론인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이 조작되거나, 과도한 통신내역 조회 등이 있었다고 지적함.

- 봉지욱 참고인(前 뉴스타파 기자)은 조우형과 통화한 적이 없었음에도 검찰의 녹취록에서 다른 사람(라정주)과 통화한 녹

취록이 조우형과 통화한 것으로 조작되었고, 당시 다른 사람(라정주)와 주고받은 말을 조우형에게 물어본 것과 같이 내용이 구성된 후 공소사실에 적시되었다고 진술함.

- 김우철 참고인(前 민주당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먼 친인척, 초등동창생 등까지 과도한 통신내역 조회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이에 대하여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은 공판검사에게 확인해본 결과 초기 녹취록에는 봉지욱 기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봉지욱 기자가 아닌 라정주 기자와 통화한 부분에 대해 속기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 시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고,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통신내역을 확인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함.

6) 공소제기 및 공소장 변경 관련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검찰의 공소제기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바,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간접정황이 많다는 지적으로 공소장 변경(67쪽 → 30쪽)이 이루어진 점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 검찰이 진행한 수사 결과는 공소장이라는 최종 문서에 완벽

하게 그 결과가 집약될 필요가 있는데, 공소장 내용의 절반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은 수사 및 기소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함.

- 한상진 참고인(뉴스타파 기자)은 검찰이 공소장을 세 번 변경하여 30쪽 분량으로 축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부분은 공소장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진술함.

○ 이에 대하여 강백신 증인(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은 1심 재판부의 지적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으나, 공소장 작성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2.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 사항 및 대책

1) 법무부 및 검찰청은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감찰 등을 통해 진상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2) 법무부 및 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광범위의 압수수색 및 주변인에 대한 별건수사 개시 등 불공정한 수사절차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은 수용자의 검찰 소환조사 시 수사관 입회 없이 공범들을 같은 공간에 두는 행위, 외부인에 의한 사적 편의 제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실 내 수용자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4) 법무부는 교도관들이 교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5) 법무부는 검사 직무대리 제도 및 검사 파견제도가 기획수사에 부당히 이용되지 않도록 검사 인사사무를 점검하고 개선한다.

6) 법무부는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에 대하여 신속한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

7) 감사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강압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 징계요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8) 감사원은 직무감찰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 과도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엄격한 내부규정을 마련한다.

9) 국가정보원은 대북 보고서가 국내정치나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정보의 출처와 객관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접근권한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내부절차를 강화한다.

10)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 특수조사국에 보관 중인 군사비밀 등을 회수한다.

11) 제도개선 및 사후예방 조치 이외에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조작 및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시,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요구 의결 또는 별도의 특별검사 법안의 의결 등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

3. 증인 고발 사항

총 31인(위증 등 22인, 불출석 등 9인)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고발 사유	의결일
1	김영남	변호사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2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3	박상용	검사	선서 거부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4	이윤환	검사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5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6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7	정일권	검사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8	김경완	검사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9	송경호	변호사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10	강백신	검사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11	엄희준	검사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12	조우형	대출브로커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13	박상춘	전 인천해경서장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14	박홍식	전 해경청 수사심사과장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15	최혁	검사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16	김규현	전 국정원장	위증 및 증언거부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17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18	김성종	전 해경 수사국장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고발 사유	의결일
19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위증 및 증언거부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20	이상훈	감사원 감사관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21	강일민	검사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22	손종국	감사원 감사관	위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23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전 화천대유 대주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24	정영학	회계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25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변호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26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불출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27	이완희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	불출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28	남재현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불출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29	정재창	전 보문건설 대표, 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불출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30	이창연	-	불출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
31	박길배	전 부산지검 검사	불출석	2026. 4. 30. (제12차 전체회의)